

20
21

청소년백서

20
21



여성가족부

발간사



우리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디지털시대의 본격 진입을 비롯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나온 발자취를 토대로 장점은 살려서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단점은 보완하여 내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2021 청소년백서」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위한 디딤돌을 쌓고자, 1965년 이후 매년 활동, 복지, 안전·보호, 교육 등 분야별로 청소년정책의 주요성과 및 현황과 전망, 각종 통계 등을 담아 각 시기의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진단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을 위해 더 나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 환경에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정책참여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청소년정책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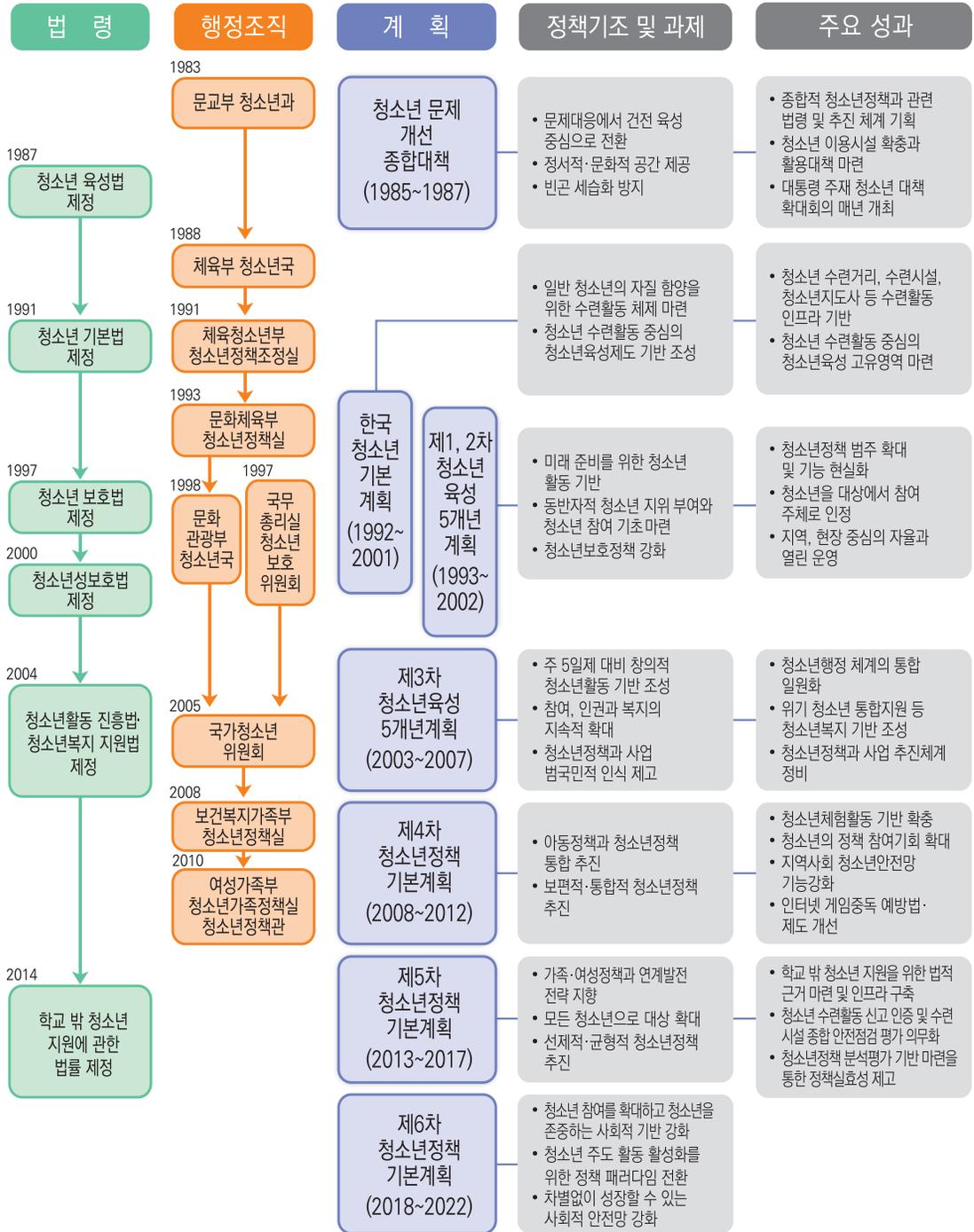
본 백서가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정부부처, 지자체, 청소년 학계 및 시설·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정표가 되어 자주 활용되고, 청소년 정책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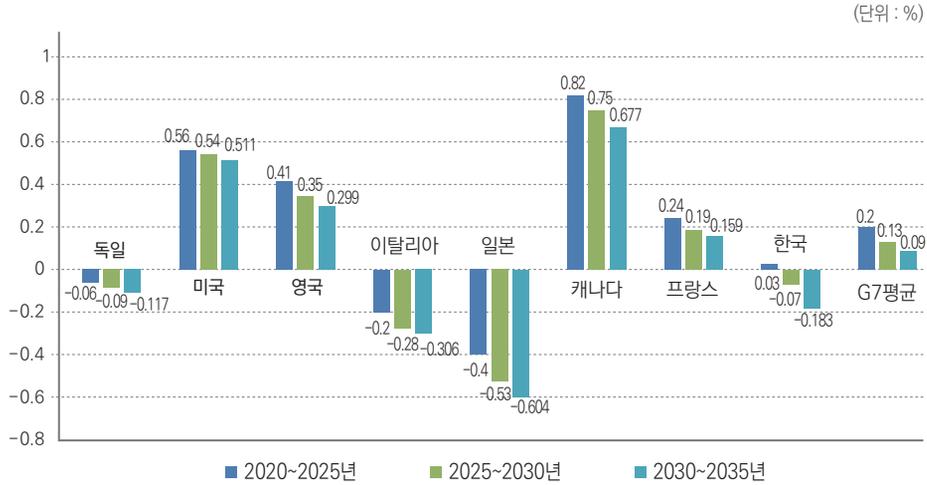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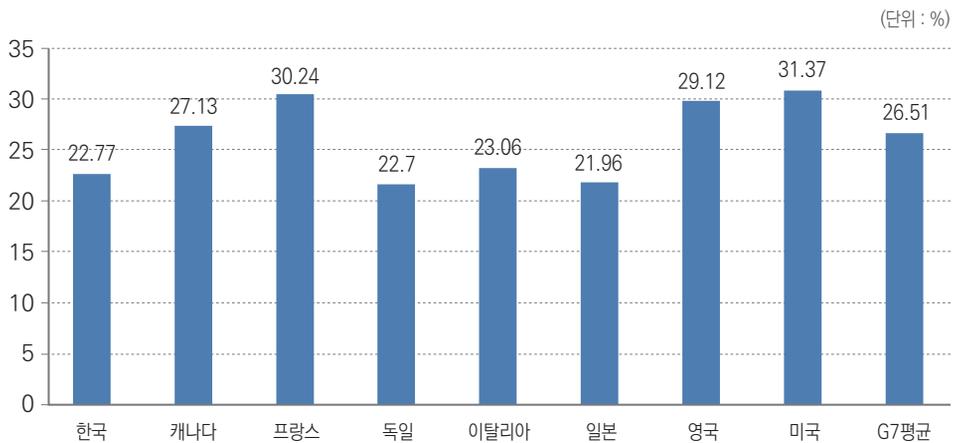


인구 성장률



주 : 인구 성장률(%)은 특정 연도간의 평균 인구 증가(감소)율을 의미하며, $\ln(Pt/P0)/t$ 로 계산함.
 자료 : UN(2021), World Population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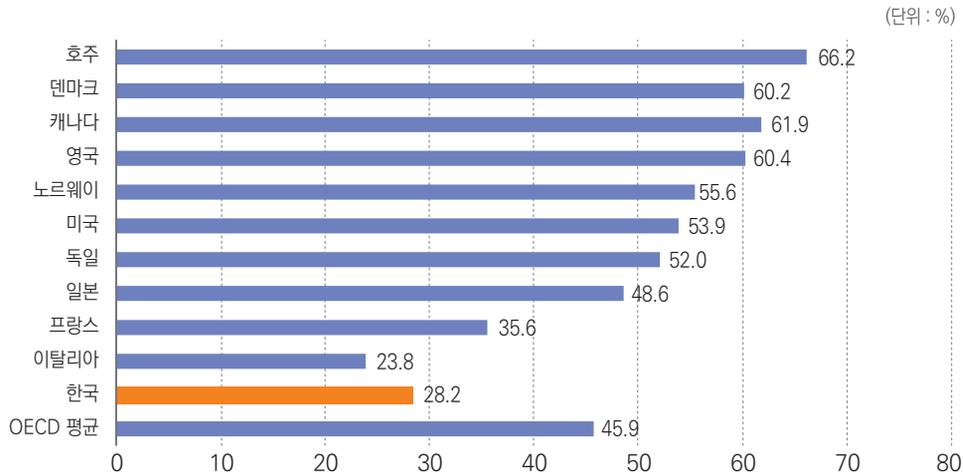
전체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0~24세) 인구



주 : 2020년 기준,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age-structure/>에서 2022. 2. 7. 인출.
 자료 : CIA World Factbook(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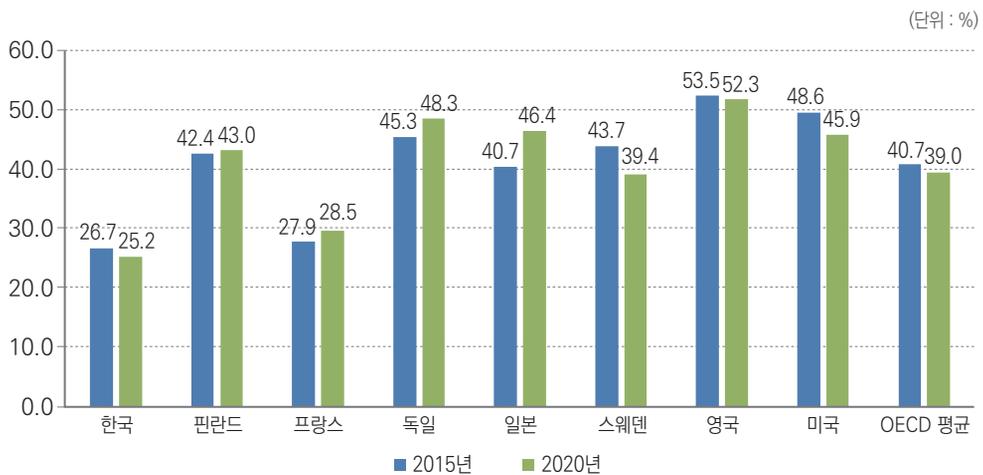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자료 : OECD(2021). 2020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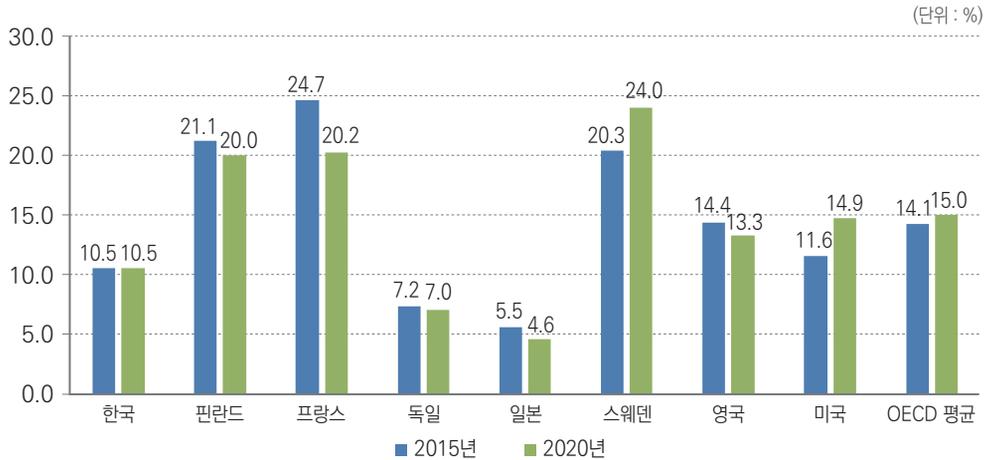
⚙️ 청소년(15~24세) 고용률(2015/2020)



자료 : OECD(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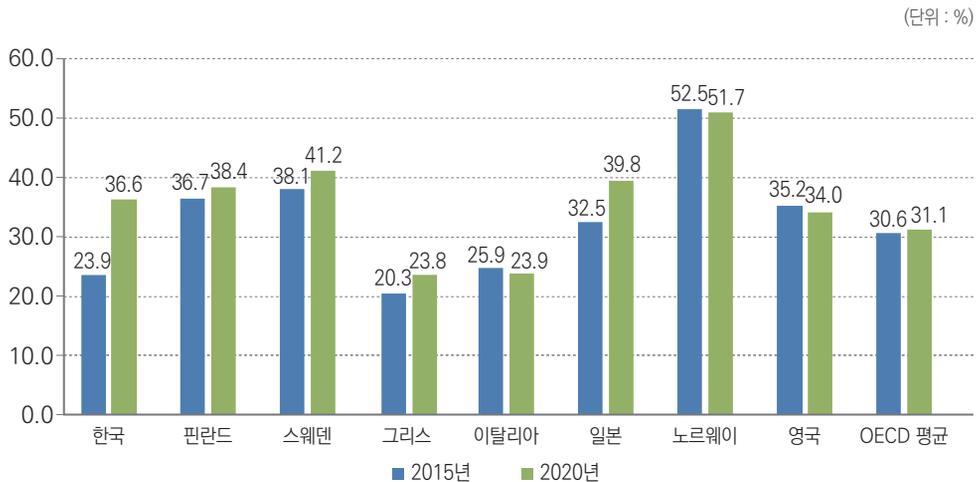


⚙️ 청소년(15~24세) 실업률(2015/2020)



자료 : OECD(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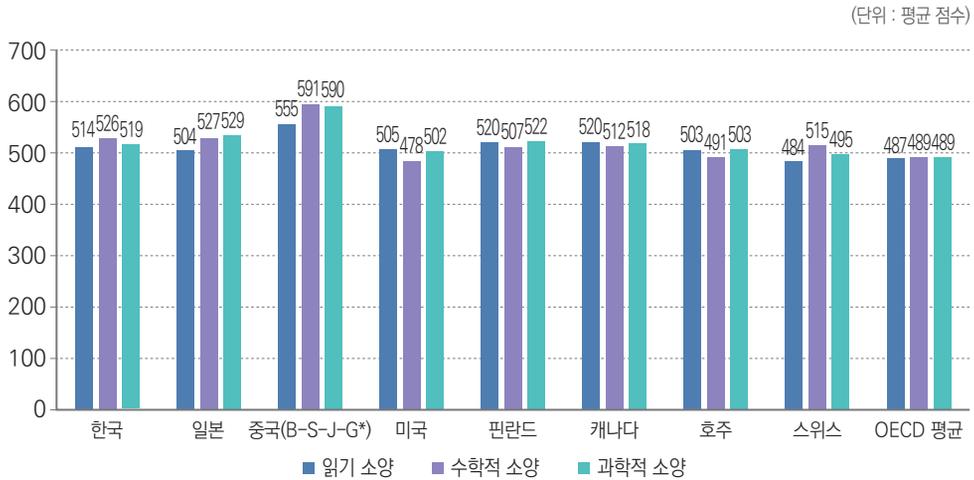
⚙️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5/2020)



자료 : OECD(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 PISA 결과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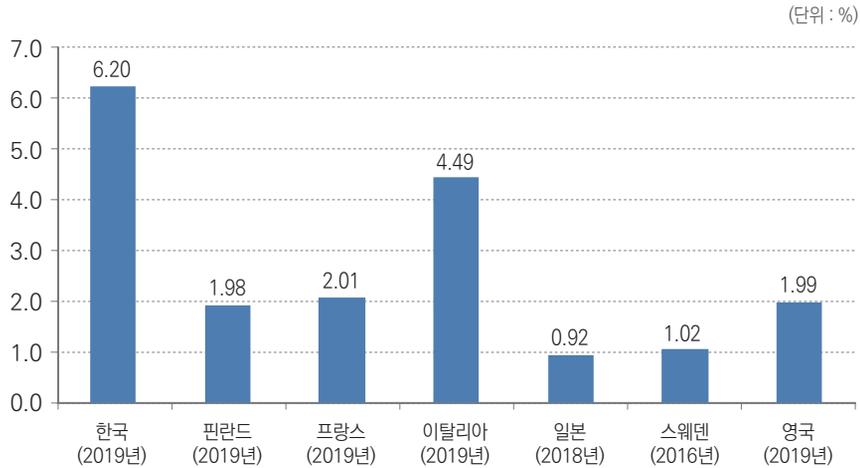


주 : 1)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3년 주기로 실시함.

2) B-S-J-G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지역을 의미함.

자료 : OECD(2020). PISA 2018 Database.

⚙️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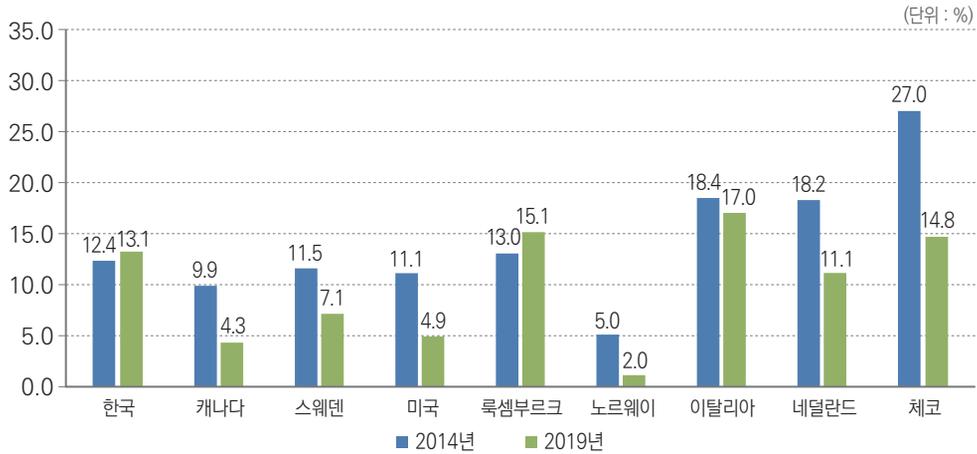


주 : 국가별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을 산출하는 연령 대상에 대한 정보.

자료 : UNESCO(2021). UIS Statistics.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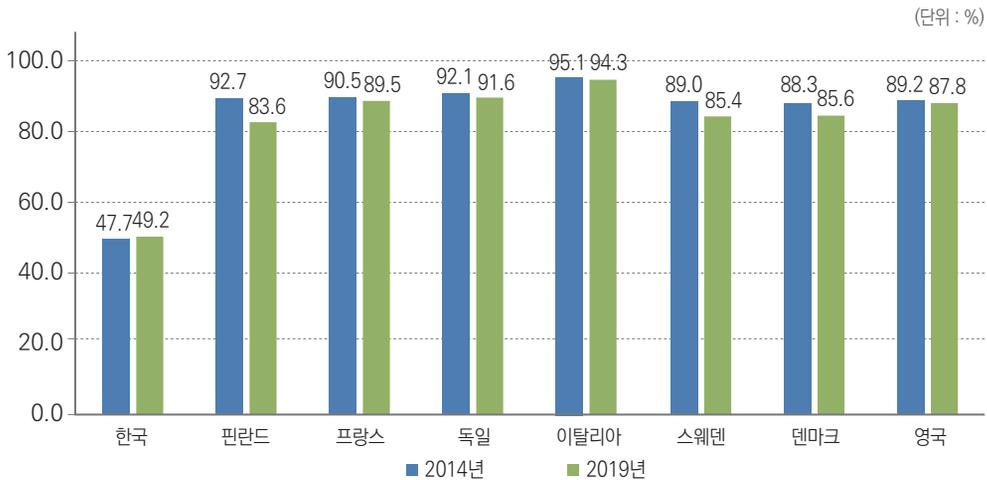


⚙️ 청소년(15~24세) 흡연율(2014/2019)



주 :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일 또는 30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21).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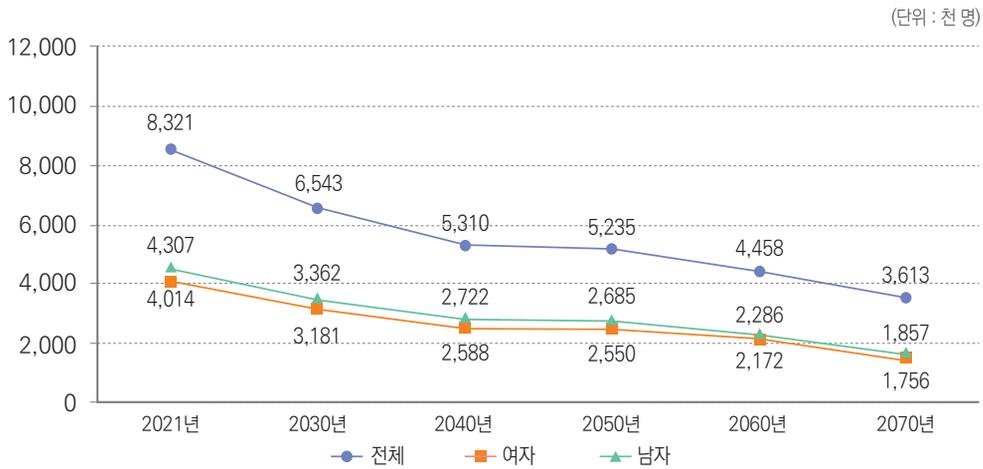
⚙️ 청소년(15~24세)의 주관적 건강상태(2014/2019)



주 :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21). Health Status. Morbidity. Perceived health status by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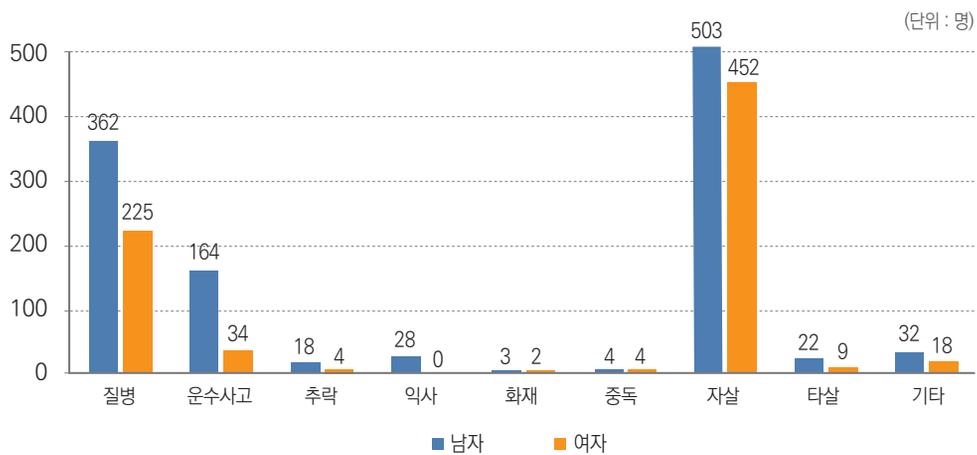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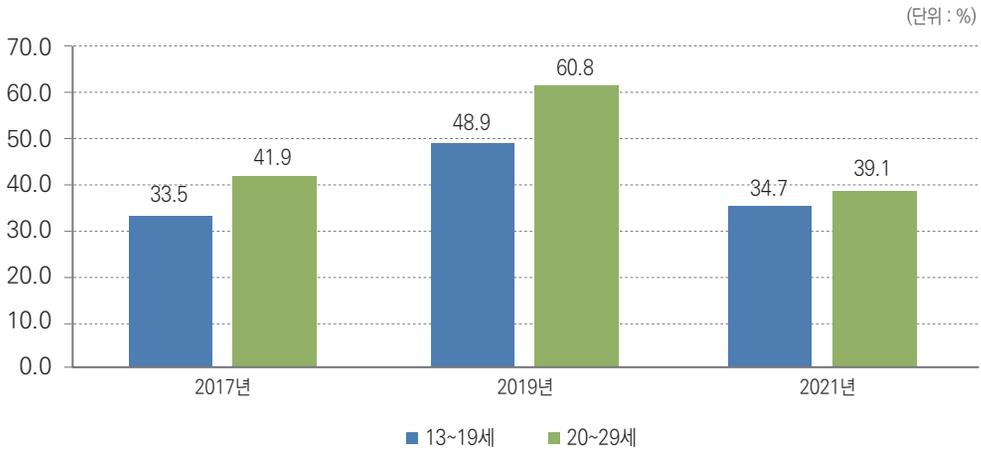
⚙️ 청소년(10~24세) 사망 원인



자료 : 통계청(2021). 2020년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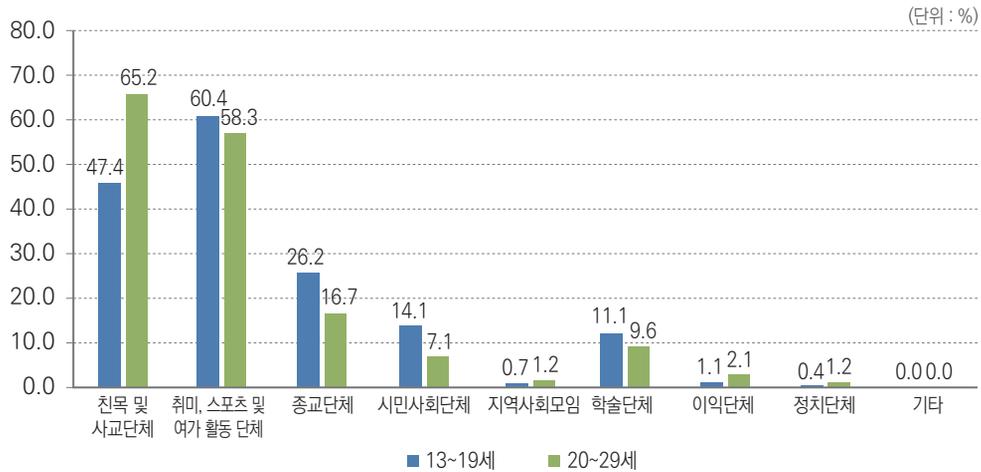


⚙️ 청소년(13~19세) 단체 참여 경험 유형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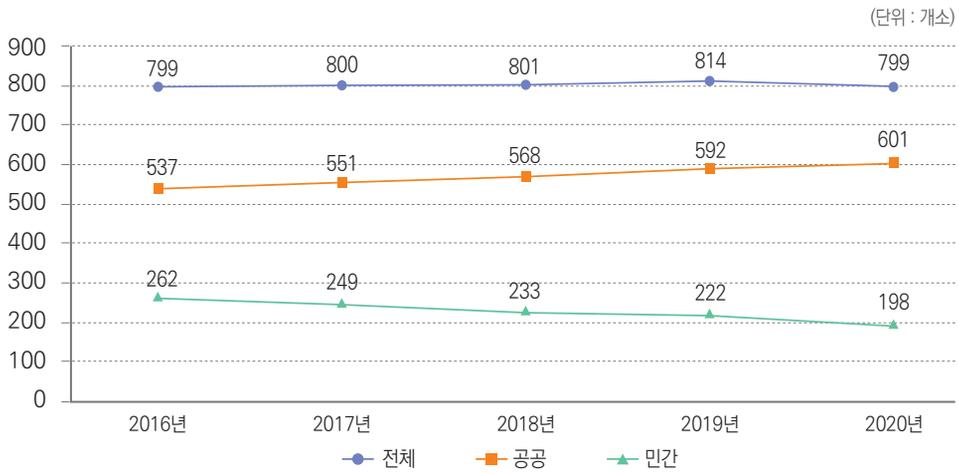
⚙️ 청소년(13~19세) 단체 참여 이유



자료 :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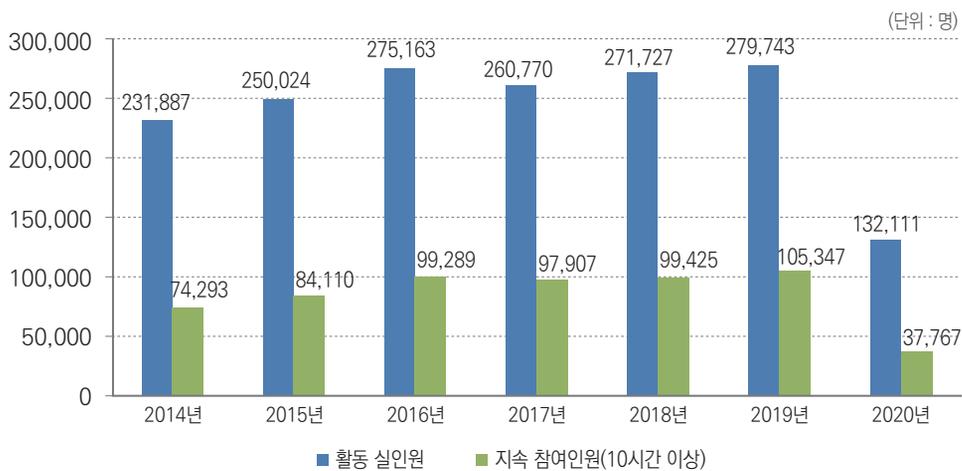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0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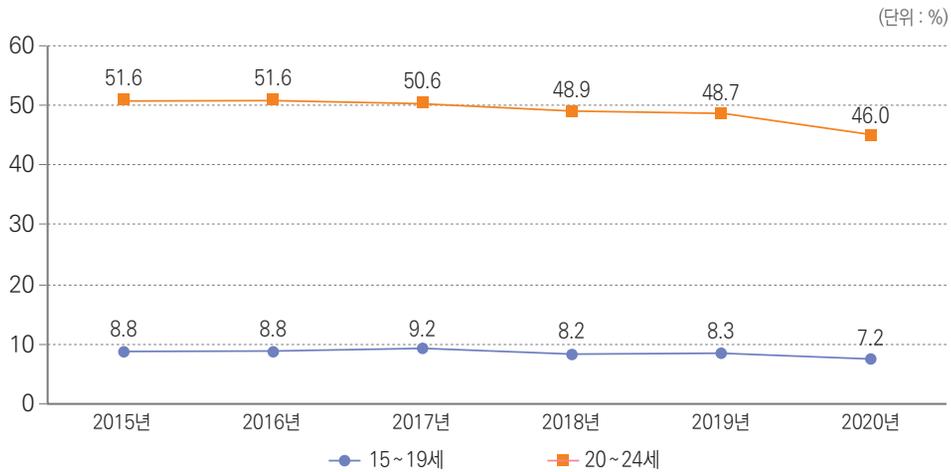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인원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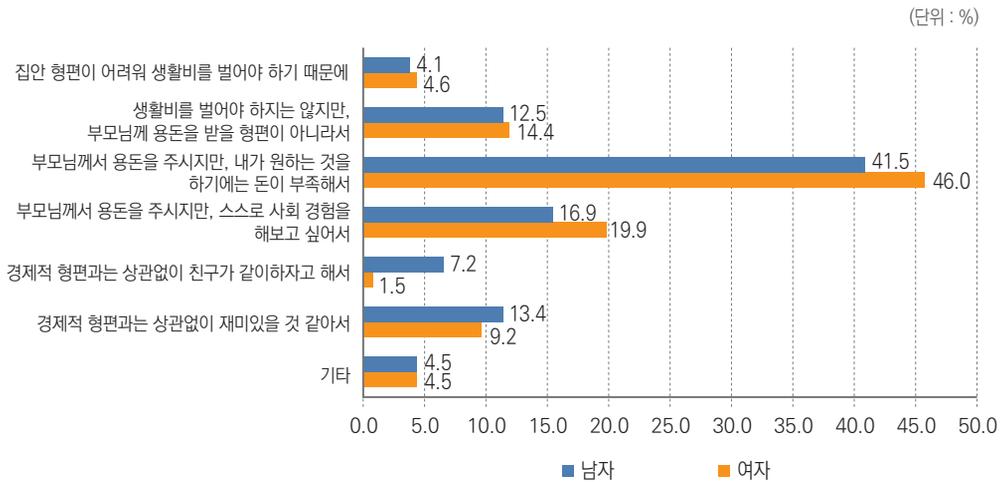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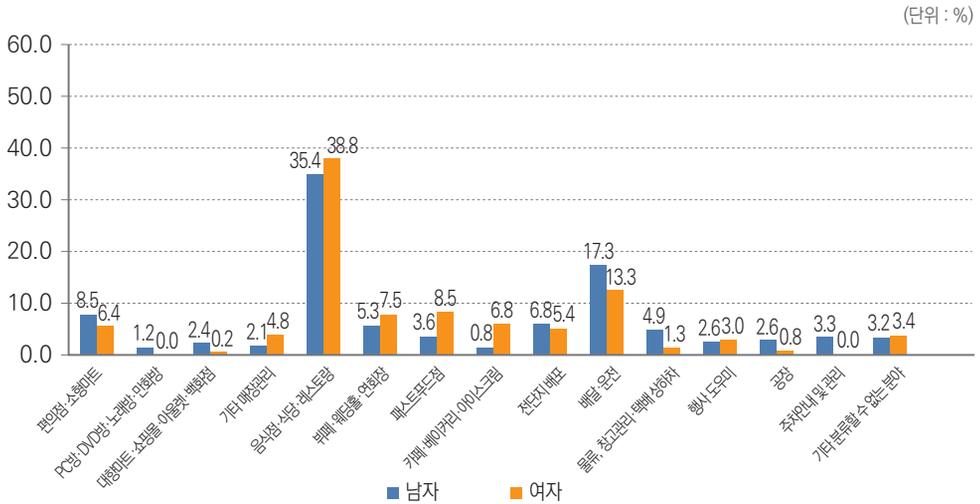
청소년(만 10~18세) 아르바이트 목적



자료 :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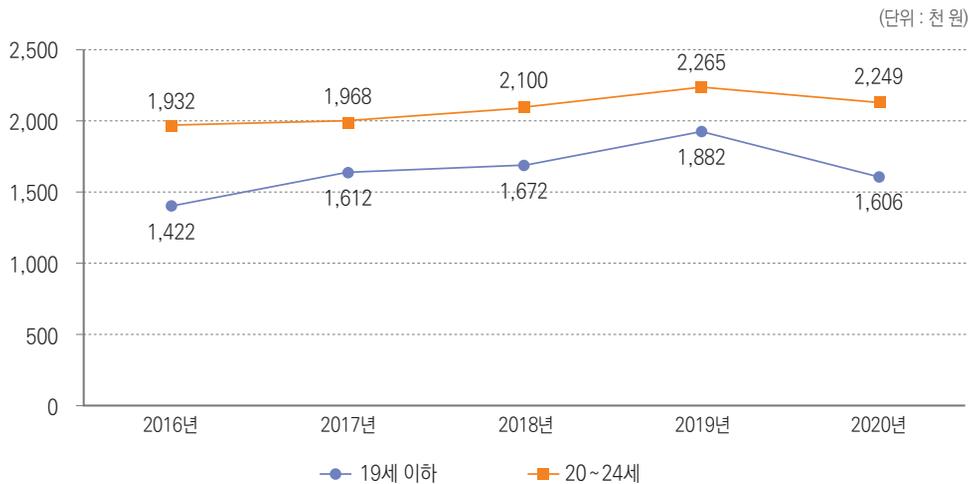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청소년(만 10~18세) 아르바이트 업종별 참여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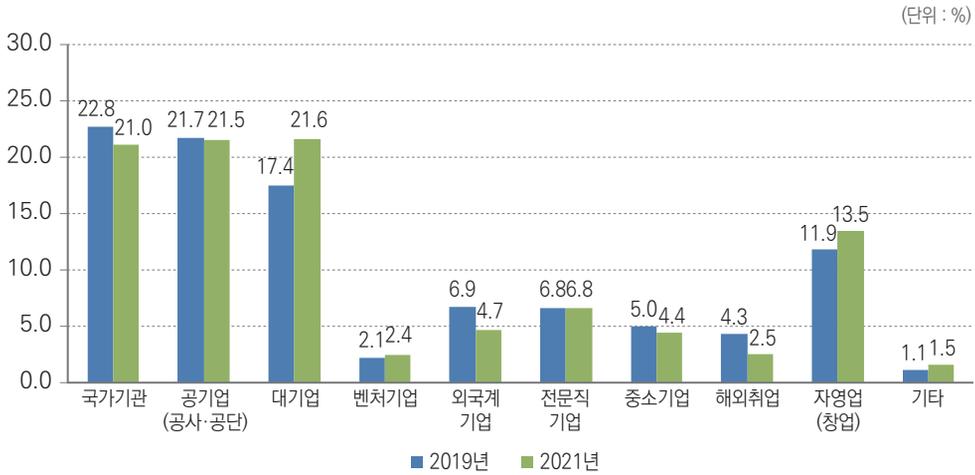


주 : 임금 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2021).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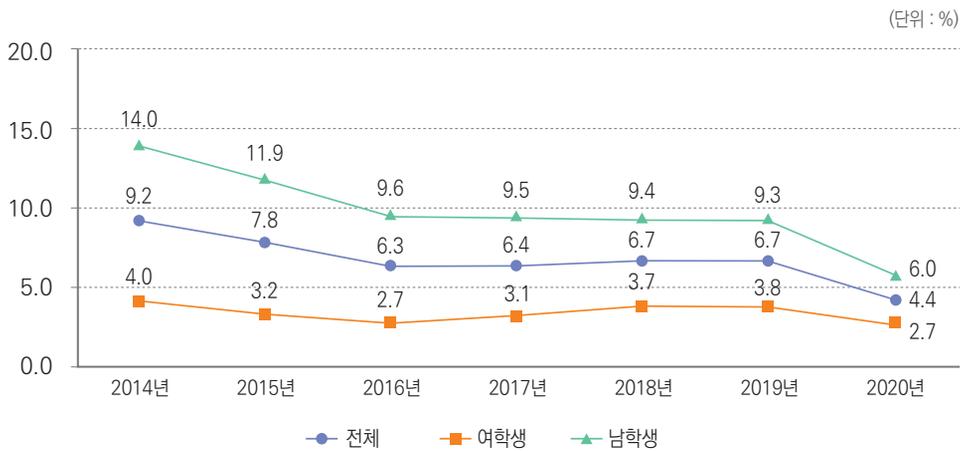


청소년(13~29세)이 선호하는 직장



주 : 2019년까지 조사 대상 연령은 13~29세였으나, 2021년 조사 대상 연령은 13~34세로 변경되었음.
 자료 : 통계청(2021).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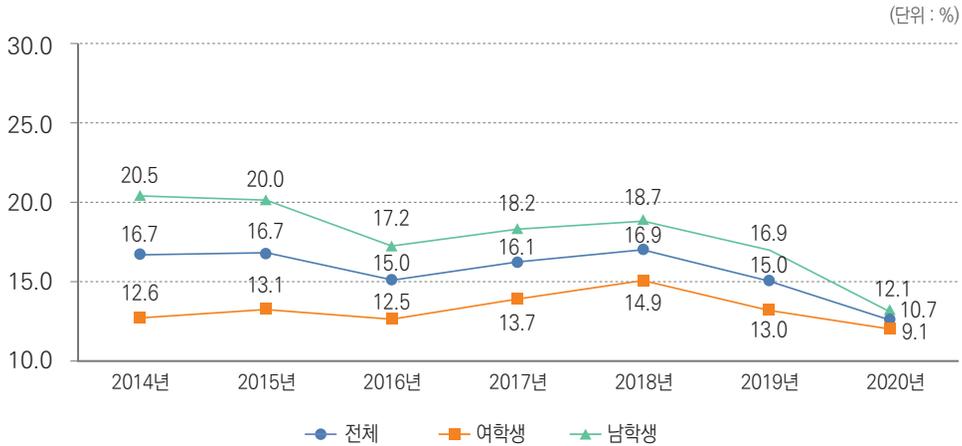
청소년(중·고생) 현재 흡연을 추이



주 : 청소년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임.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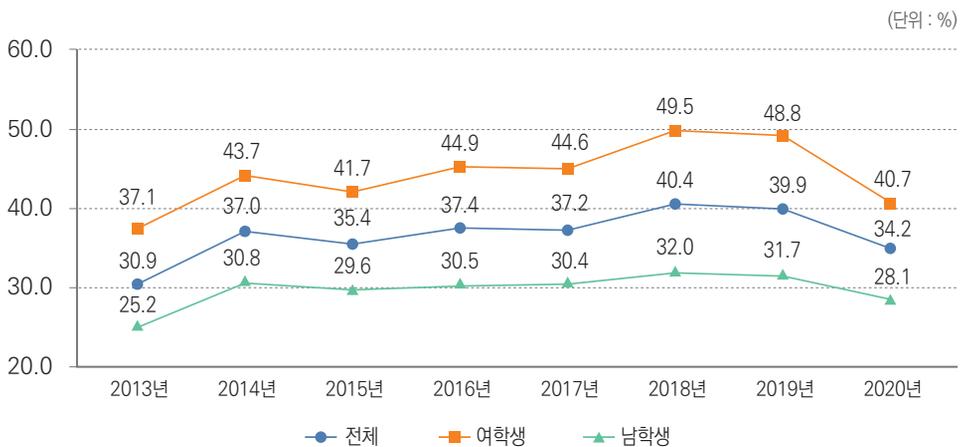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청소년(중·고생) 현재 음주율 추이



주 :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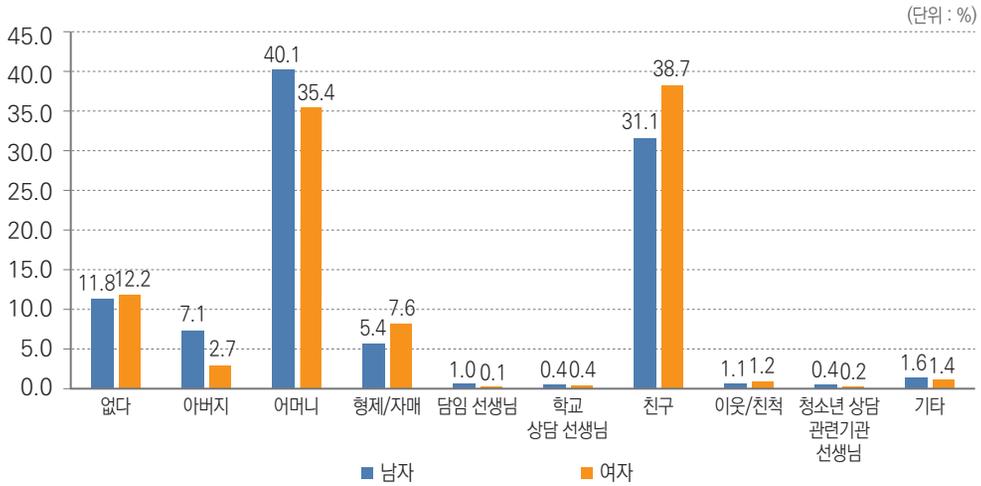
청소년(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



주 :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임.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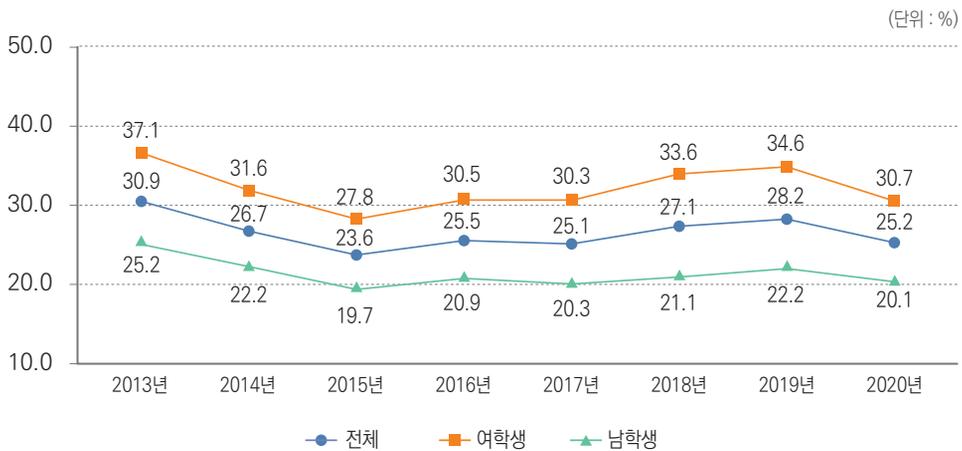


⚙️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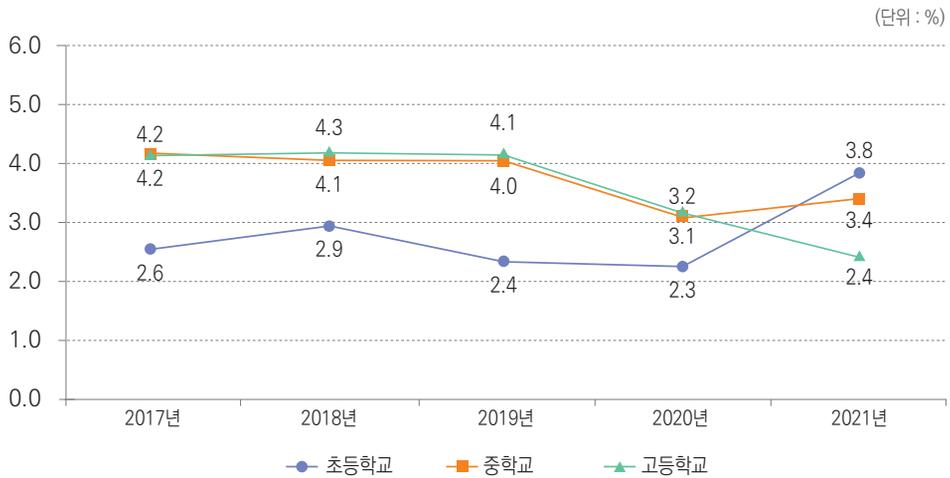
⚙️ 청소년(중·고생) 우울감 경험률



주 :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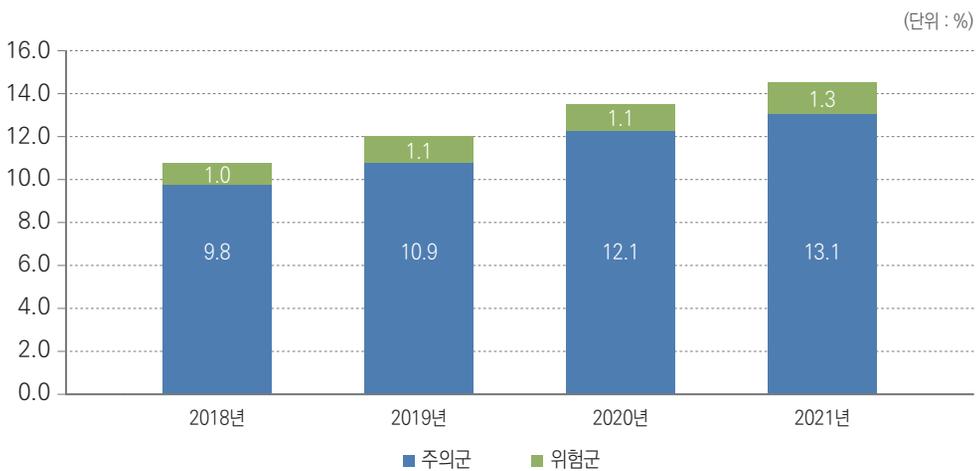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청소년 가출 경험률



주 : 청소년 가출 경험률은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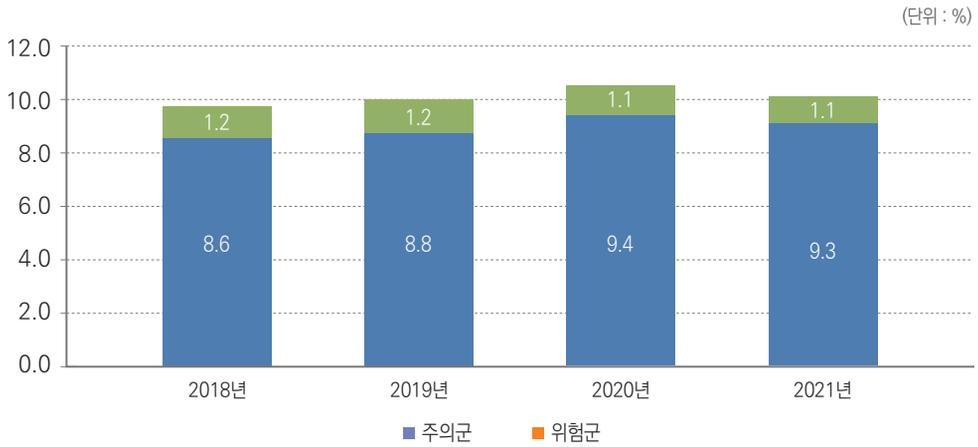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비율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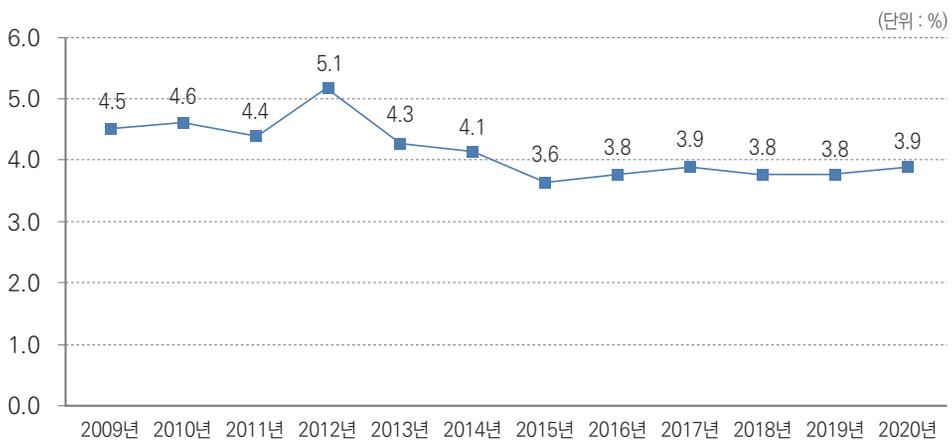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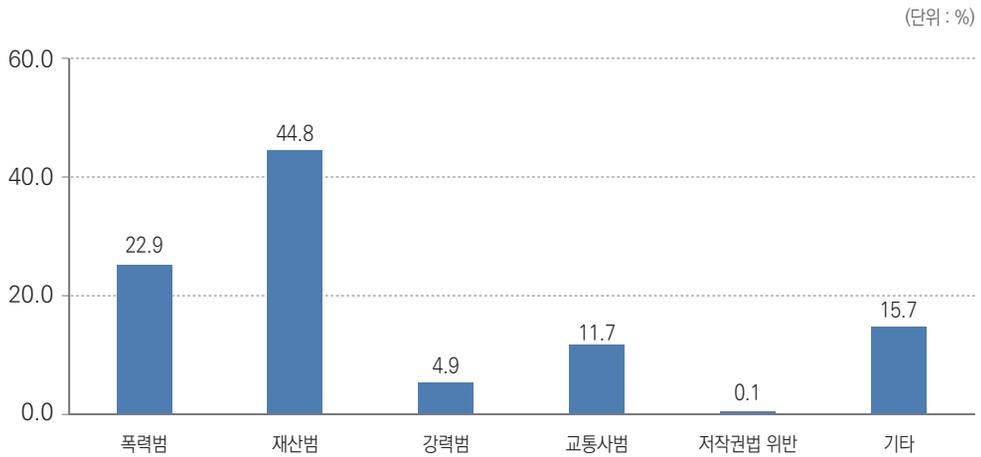
⚙️ 전체 범죄대비 청소년 범죄의 비율 추이



자료 : 대검찰청(2009~2020).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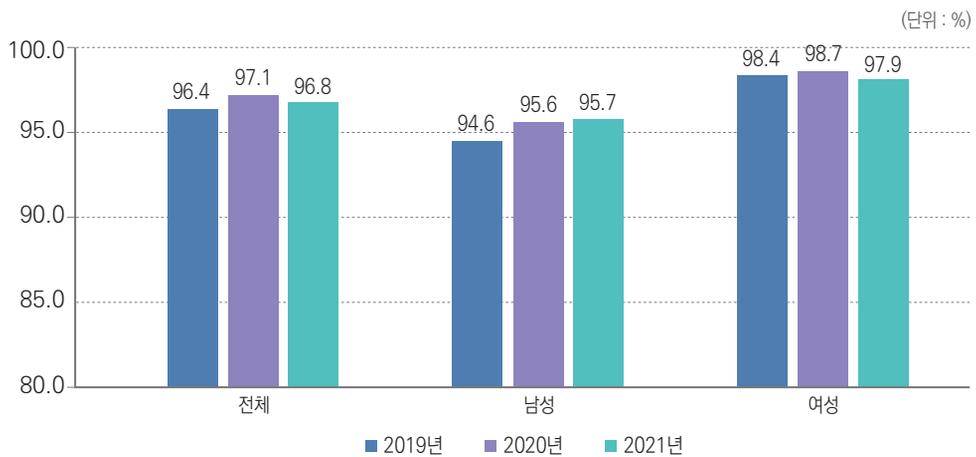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 청소년 범죄 유형



주 : 2020년도 소년범죄자 유형별 현황임.
자료 : 대검찰청(2021).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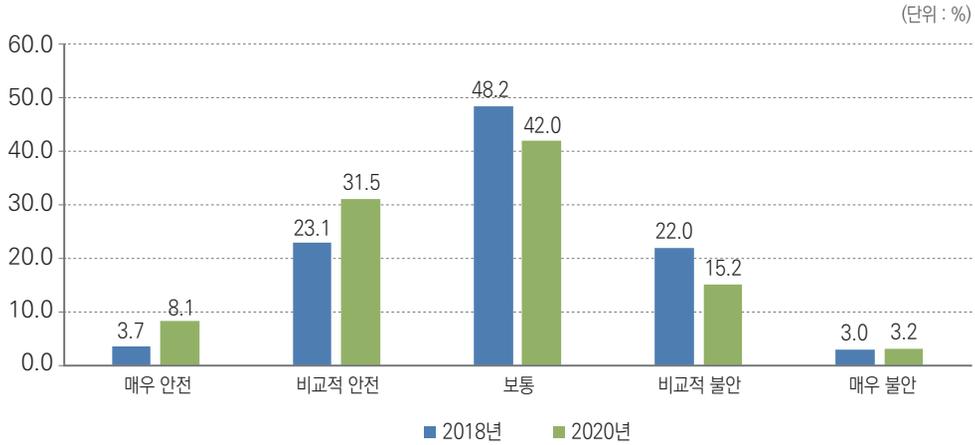
⚙️ 양성평등의식



주 : 양성평등의식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합계를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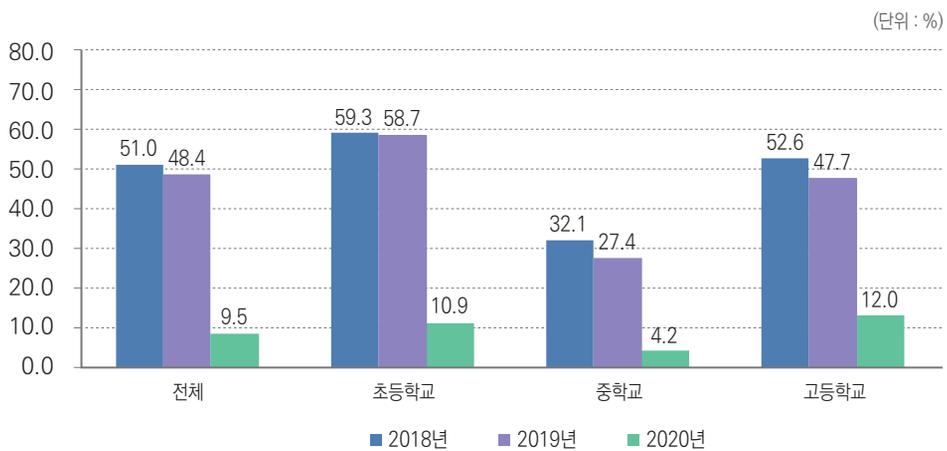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13~1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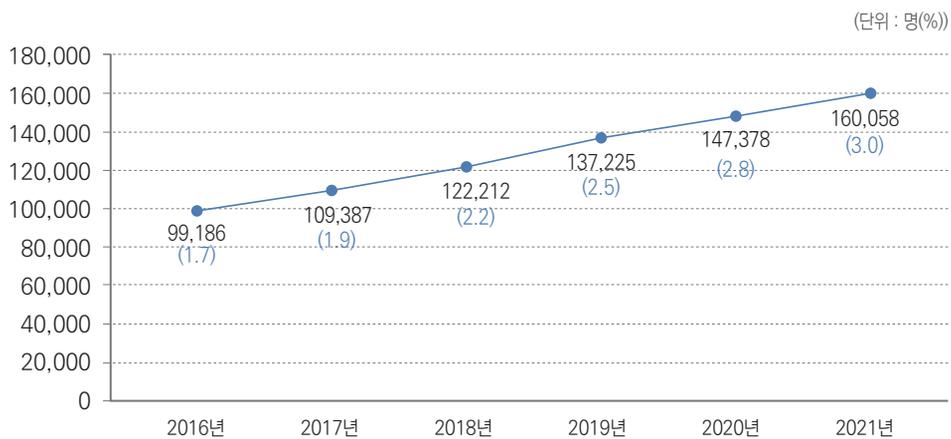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방과후학교 참여율



주 :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유상' 및 '무상'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합한 값임.
 자료 : 통계청(2021), 2020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다문화가정 학생 수, 비율



자료 : 교육부(각 년도), 다문화지원계획.

CONTENTS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02
1. 청소년정책의 범주	02
2.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03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07
1. 총괄	07
2. 추진방향 및 주요 실적	09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30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청소년 연령 현황	30
2. UN 청소년정책 현황	34
3.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현황	40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

제1장 청소년 인구	62
1. 청소년 인구 현황	62
2. 청소년 인구 전망	63
3. 청소년 인구 동태	66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75
1. 가족환경	75
2. 학교환경	90
3. 미디어환경	100

CONTENTS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12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12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113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113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117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126
1. 청소년의 달 행사	126
2.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131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	134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140
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	140
2. 청소년문화활동	141
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143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45
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148
6.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50
제2장 청소년수련활동 제도	153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153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160

제5부
청소년 복지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164

- 1. 청소년 국제교류 164
-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171
- 3.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국제행사 지원 172
- 4.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 개최 지원 172

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 180

- 1. 아동빈곤율 현황 180
- 2. 한부모가구 현황 182
-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183
- 4. 보호대상아동 현황 186

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 191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91
-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196
-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9
- 4. 청소년 특별지원 201
- 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202
-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05
- 7. 지역아동센터 운영 207
- 8.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12
- 9.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217
- 10.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218
- 11. 아동 급식 지원 226
- 12. 보호대상아동 조기 발견·지원(e아동행복지원시스템) 228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230
1. 상담서비스	230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239
3. 청소년상담1388	244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247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248
제4장 청소년의 건강	251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51
2. 청소년의 영양	259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261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64
제1장 청소년 안전	270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270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73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287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301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309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매체환경	318
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318
2.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333
3.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339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3장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344
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344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347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350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352
5.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356

제1장 학교교육 현황	360
1. 학령인구	360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362
3. 조기유학 현황	368
4. 대안교육 학교	369
5. 진학률	370
6. 학업중단을	372
7. 교육재정	373
8.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377
9.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384

제2장 교육복지정책	386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86
2. 방과후학교	393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397
4. 다문화학생 교육	407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413

제8부 청소년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426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426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430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431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434
5. 임금 및 노동시간	437
6. 청소년 아르바이트	441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46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446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447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48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상황	449
제3장 청소년의 고용·노동정책	452
1.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452
2.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457
3. 청소년 고용촉진 대책	461

제9부 청소년 범죄

제1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476
1. 청소년 범죄의 동향	476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481
3. 학생 범죄의 동향	482

제2장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484
1. 경찰의 예방활동	484
2. 검찰의 예방활동	493
3. 법무부의 예방활동	500
제3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504
1. 경찰단계의 사건처리	504
2. 검찰단계의 사건처리	505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 및 처우	507
4. 소년법원에서의 사건처리	511
5.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처리	515
제4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517
1. 소년원의 교정교육	517
2.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524
<hr/>	
제1장 청소년시설	538
1. 청소년 활동시설	538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544
제2장 청소년지도자	549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549
2. 청소년지도사	550
3. 청소년상담사	556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CONTENTS

제3장 청소년 단체	562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62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564
제4장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566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566
2.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	571
3. 청소년 관련 시·도 행정조직	574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575
5. 정부 산하기관	575
제5장 청소년 관련 연구·개발기관	579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79
2. 청소년 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585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587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591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591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593

**부록**

[부록 1] 청소년 관련 학과(전공) 현황	598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602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606
[부록 4]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631
[부록 5]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640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655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657
[부록 8] 청소년백서 용어집	670

CONTENTS | 표목차

2021 청소년백서

<표 1-1-1> 청소년정책의 변천	03
<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30
<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31
<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31
<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32
<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33
<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9~2027)의 3개 분야	42
<표 1-3-7> 일본 아동·청년비전의 우선과제(priority issues)	56
<표 2-1-1> 2021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62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64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67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68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70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71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72
<표 2-1-8> 2020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74
<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76
<표 2-2-2>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	77
<표 2-2-3>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78
<표 2-2-4> 양육관련 만족도 :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79
<표 2-2-5> 양육관련 만족도 : 평소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하다	80
<표 2-2-6>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12년, 2015년, 2018년)	81
<표 2-2-7>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82
<표 2-2-8>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83
<표 2-2-9>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84
<표 2-2-10> 부모님과 대화 여부 및 대화시간(1일 평균)	86

〈표 2-2-11〉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87
〈표 2-2-12〉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87
〈표 2-2-13〉 부모님으로부터의 비용 지원	88
〈표 2-2-14〉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91
〈표 2-2-15〉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92
〈표 2-2-16〉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93
〈표 2-2-17〉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94
〈표 2-2-18〉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95
〈표 2-2-19〉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96
〈표 2-2-20〉 진로교육 경험 :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97
〈표 2-2-21〉 진로교육 경험 : 현장학습 및 견학	98
〈표 2-2-22〉 진로교육 경험 : 상담교사의 상담	99
〈표 2-2-23〉 진로교육 경험 : 진로관련 검사	100
〈표 2-2-24〉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당 평균 이용시간	101
〈표 2-2-25〉 인터넷 이용 용도(복수응답)	103
〈표 2-2-26〉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104
〈표 2-2-27〉 스마트폰 이용 빈도	105
〈표 2-2-28〉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106
〈표 2-2-29〉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107
〈표 2-2-30〉 필수 매체 인식	107
〈표 2-2-31〉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률	108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국고 미지원 포함)	119
〈표 3-2-2〉 2021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중앙참여위원회 제외)	119
〈표 3-2-3〉 2021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120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121
〈표 3-2-5〉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125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126
〈표 3-3-2〉 2021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126
〈표 3-3-3〉 2021년 ‘대한민국청소년 온라인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128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129
〈표 3-3-5〉 유공자 포상 현황	131
〈표 3-3-6〉 역대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132
〈표 3-3-7〉 연도별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최 현황	135
〈표 4-1-1〉 2021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140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141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2011~2021)	142
〈표 4-1-4〉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145
〈표 4-1-5〉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	145
〈표 4-1-6〉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145
〈표 4-1-7〉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46
〈표 4-1-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현황	147
〈표 4-1-9〉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48
〈표 4-1-10〉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현황	149
〈표 4-1-11〉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150
〈표 4-1-1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 기능	151
〈표 4-2-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157
〈표 4-2-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158
〈표 4-2-3〉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158
〈표 4-2-4〉 기관 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159
〈표 4-2-5〉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별 운영 현황	159
〈표 4-2-6〉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60
〈표 4-2-7〉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162

〈표 4-2-8〉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163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9개국)	164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165
〈표 4-3-3〉 한·중 청소년 교류 현황	167
〈표 4-3-4〉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프로그램 현황(2021년)	169
〈표 4-3-5〉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170
〈표 4-3-6〉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171
〈표 4-3-7〉 2021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172
〈표 4-3-8〉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역대 개최 현황	173
〈표 4-3-9〉 조직위 사무국 구성(2단계 : '21. 7.~)	176
〈표 4-3-10〉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177
〈표 5-1-1〉 연도별 아동빈곤율 현황	181
〈표 5-1-2〉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182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수 연령별 현황	184
〈표 5-1-4〉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185
〈표 5-1-5〉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186
〈표 5-1-6〉 2020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186
〈표 5-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87
〈표 5-1-8〉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189
〈표 5-1-9〉 2020년 보호대상아동 보호 세부 현황	190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혁	192
〈표 5-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 현황	193
〈표 5-2-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194
〈표 5-2-4〉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196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97
〈표 5-2-6〉 쉼터의 종류 및 기능	198

〈표 5-2-7〉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199
〈표 5-2-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내용	200
〈표 5-2-9〉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201
〈표 5-2-10〉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202
〈표 5-2-1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03
〈표 5-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206
〈표 5-2-13〉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206
〈표 5-2-1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208
〈표 5-2-15〉 연도별·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210
〈표 5-2-1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211
〈표 5-2-17〉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212
〈표 5-2-18〉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214
〈표 5-2-19〉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216
〈표 5-2-20〉 연도별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218
〈표 5-2-21〉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219
〈표 5-2-22〉 연도별 가정위탁 보호 현황	220
〈표 5-2-23〉 연도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23
〈표 5-2-24〉 국내·외 입양 현황	225
〈표 5-2-25〉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226
〈표 5-2-26〉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227
〈표 5-3-1〉 2020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232
〈표 5-3-2〉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234
〈표 5-3-3〉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235
〈표 5-3-4〉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236
〈표 5-3-5〉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237
〈표 5-3-6〉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238

〈표 5-3-7〉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인원	241
〈표 5-3-8〉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지원서비스 이용건수	242
〈표 5-3-9〉 2020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243
〈표 5-3-10〉 2021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243
〈표 5-3-11〉 청소년상담1388 주요 실적	245
〈표 5-3-12〉 연도별 청소년상담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245
〈표 5-3-13〉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247
〈표 5-3-14〉 2021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248
〈표 5-3-15〉 2021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도)	249
〈표 5-3-16〉 2021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내담자 학교생활 만족도)	250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251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253
〈표 5-4-3〉 성별·연령별 50m 달리기의 추이	255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256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256
〈표 5-4-6〉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윗몸말아올리기)	257
〈표 5-4-7〉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258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259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	260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	260
〈표 5-4-11〉 아침식사 결식률	261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263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264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	271
〈표 6-1-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주요 내용	271
〈표 6-1-3〉 2021년 분야별 점검 결과	272

〈표 6-1-4〉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75
〈표 6-1-5〉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278
〈표 6-1-6〉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280
〈표 6-1-7〉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280
〈표 6-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281
〈표 6-1-9〉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84
〈표 6-1-10〉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285
〈표 6-1-11〉 지역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2020)	289
〈표 6-1-12〉 학대피해아동 발견율(2016~2020)	290
〈표 6-1-13〉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2016~2020)	290
〈표 6-1-14〉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6~2020)	291
〈표 6-1-15〉 아동학대 발생장소(2020)	292
〈표 6-1-16〉 피해아동 상황(2020)	293
〈표 6-1-17〉 아동학대 응급조치 현황(2020)	296
〈표 6-1-18〉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2021)	300
〈표 6-1-19〉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2011~2020)	302
〈표 6-1-20〉 장기실종아동 현황(2021)	303
〈표 6-1-21〉 실종아동등 유전정보 채취 현황(2019~2021)	303
〈표 6-1-22〉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한 실종아동등 발견 현황(2019~2021)	304
〈표 6-1-23〉 실종아동등 지문 사전등록 현황(2021)	304
〈표 6-1-24〉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307
〈표 6-1-25〉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	308
〈표 6-1-26〉 14세 이하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 현황(2016~2020)	310
〈표 6-1-27〉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유형별 사망자 현황(2015~2019)	311
〈표 6-1-28〉 아동(만 13세 미만) 교통사고 현황(2016~2020)	311
〈표 6-1-29〉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과제(2018)	314

〈표 6-1-30〉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2021)	316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319
〈표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319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322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323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324
〈표 6-2-6〉 2021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325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326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327
〈표 6-2-9〉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329
〈표 6-2-10〉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	330
〈표 6-2-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332
〈표 6-2-12〉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334
〈표 6-2-13〉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335
〈표 6-2-14〉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337
〈표 6-3-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지원 현황	345
〈표 6-3-2〉 주요 프로그램 총괄 예시	346
〈표 6-3-3〉 상담 및 사례관리 인원	346
〈표 6-3-4〉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	354
〈표 6-3-5〉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354
〈표 6-3-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355
〈표 6-3-7〉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적 현황	357
〈표 6-3-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적 현황	357
〈표 7-1-1〉 연도별 학령인구	361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363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365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367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유학 현황	368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369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371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372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373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375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8)	376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377
〈표 7-1-13〉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79
〈표 7-1-14〉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80
〈표 7-1-15〉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82
〈표 7-1-16〉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83
〈표 7-1-17〉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385
〈표 7-2-1〉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 수 및 교육지원청명	390
〈표 7-2-2〉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396
〈표 7-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396
〈표 7-2-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397
〈표 7-2-5〉 2000년 이후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추이	398
〈표 7-2-6〉 학교별 등교수업 시기	400
〈표 7-2-7〉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402
〈표 7-2-8〉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지원 현황	403
〈표 7-2-9〉 2019년 화상교실 운영학교 현황	404
〈표 7-2-10〉 화상교실의 교육적 효과 조사 결과	405
〈표 7-2-11〉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407
〈표 7-2-12〉 다문화학생 유형별·학교급별 현황	408

〈표 7-2-13〉 탈북학생 출생지별 지원 비교	413
〈표 7-2-1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414
〈표 7-2-15〉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414
〈표 7-2-16〉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	415
〈표 7-2-17〉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출생지별 재학 현황	416
〈표 7-2-18〉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416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427
〈표 8-1-2〉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29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현황 추이	430
〈표 8-1-4〉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432
〈표 8-1-5〉 연도별 청소년 실업률 추이	434
〈표 8-1-6〉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436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 계층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438
〈표 8-1-8〉 20대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439
〈표 8-1-9〉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440
〈표 8-1-10〉 근로시간 형태별 청소년 근로자 수 현황	442
〈표 8-1-11〉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업종 및 근로조건 현황(2020년)	444
〈표 8-2-1〉 2021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46
〈표 8-2-2〉 2021년 비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47
〈표 8-2-3〉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47
〈표 8-2-4〉 2021년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448
〈표 8-2-5〉 2020년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449
〈표 8-2-6〉 2020년 성별·학제별 취업자 및 취업률	449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467
〈표 8-3-2〉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467
〈표 9-1-1〉 연도별 청소년 범죄자 현황 및 구성비(2011~2020)	476

〈표 9-1-2〉 주요 범죄군별 청소년 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2020)	477
〈표 9-1-3〉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2011~2020)	478
〈표 9-1-4〉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479
〈표 9-1-5〉 청소년 범죄의 성별 현황	480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2011~2020)	481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2009~2019)	482
〈표 9-1-8〉 연도별 학생 범죄 현황	483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2011~2020)	485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2011~2020)	485
〈표 9-2-3〉 학교폭력 신고 추이(2018~2020)	486
〈표 9-2-4〉 연도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2011~2020)	488
〈표 9-2-5〉 연도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2015~2020)	489
〈표 9-2-6〉 연도별 청소년범죄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2011~2020)	490
〈표 9-2-7〉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2015~2020)	490
〈표 9-2-8〉 연도별 명예경찰소년소녀단 현황(2011~2020)	491
〈표 9-2-9〉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현황(2017~2020)	492
〈표 9-2-10〉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현황(2017~2020)	493
〈표 9-2-11〉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 실적(2011~2020)	494
〈표 9-2-12〉 연도별 학교담당감사제 활동 실적(2011~2020)	495
〈표 9-2-13〉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2011~2020)	496
〈표 9-2-1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2013~2020)	497
〈표 9-2-1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2013~2020)	498
〈표 9-2-1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1~2020)	499
〈표 9-2-17〉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500
〈표 9-2-1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502
〈표 9-2-19〉 연도별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현황(2011~2020)	502

〈표 9-2-20〉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자교육 현황(2014~2020)	503
〈표 9-3-1〉 청소년 범죄자 유형별 검거 현황(2011~2020)	504
〈표 9-3-2〉 연도별 청소년범죄 처리 현황(2011~2020)	506
〈표 9-3-3〉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2011~2020)	508
〈표 9-3-4〉 연도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1~2020)	509
〈표 9-3-5〉 연도별 청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2011~2020)	510
〈표 9-3-6〉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2011~2020)	512
〈표 9-3-7〉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현황(2011~2020)	513
〈표 9-3-8〉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 현황(2013~2020)	514
〈표 9-3-9〉 연도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2011~2020)	516
〈표 9-4-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519
〈표 9-4-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2011~2020)	520
〈표 9-4-3〉 연도별 보호소년 수용 현황(2011~2020)	521
〈표 9-4-4〉 연도별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2011~2020)	522
〈표 9-4-5〉 연도별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2011~2020)	522
〈표 9-4-6〉 연도별 상급학교 진학 현황(2011~2020)	522
〈표 9-4-7〉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2011~2020)	524
〈표 9-4-8〉 연도별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2011~2020)	525
〈표 9-4-9〉 청소년 수형자 죄명별 인원(2011~2020)	526
〈표 9-4-10〉 청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11~2020)	527
〈표 9-4-11〉 청소년 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2011~2020)	528
〈표 9-4-12〉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2011~2020)	530
〈표 9-4-13〉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2011~2020)	530
〈표 9-4-14〉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1~2020)	533
〈표 9-4-15〉 연도별 청소년 대상 판결(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 현황(2014~2020)	534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539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540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550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551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553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554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556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557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559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559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560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569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571
〈표 10-4-3〉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571
〈표 10-4-4〉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현황	574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575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588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591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594

[그림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비전, 목표 및 중점과제	08
[그림 2-1-1]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66
[그림 2-2-1] 주중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대화시간 포함)	85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절차	121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124
[그림 4-2-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156
[그림 4-2-2] 청소년수련활동신고 수리 절차	162
[그림 4-3-1]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엠블럼	176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9년, 중위소득 50%)	181
[그림 5-1-2] 한부모가구비율 추이	183
[그림 5-1-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추이	188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194
[그림 5-2-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195
[그림 5-2-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절차	201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09
[그림 5-2-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09
[그림 5-2-6]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213
[그림 5-2-7] 최근 5개년('16~'20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215
[그림 5-2-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216
[그림 5-2-9]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추진 체계	228
[그림 5-3-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체계도	240
[그림 5-3-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244
[그림 5-3-3] 2020년 청소년상담1388 월별 이용실적	246
[그림 5-3-4] 2021년 청소년상담1388 월별 이용실적	246

[그림 5-4-1] 학년별 현재 흡연율	262
[그림 5-4-2] 학년별 현재 음주율	263
[그림 5-4-3]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265
[그림 5-4-4]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266
[그림 6-1-1]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2021)	298
[그림 6-1-2] 청소년(9~24세) 안전사고 현황(2010~2019)	312
[그림 6-2-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334
[그림 6-2-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337
[그림 6-2-3]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340
[그림 7-1-1] 연도별 학령인구	360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366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370
[그림 7-2-1]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유형	391
[그림 7-2-2] 방과후학교 비전·목표·전략	394
[그림 7-2-3] 농어촌 지역 학생 수 변화(본교기준)	398
[그림 7-2-4] 시·도별 폐교학교 수(2020년도)	399
[그림 7-2-5] 도서벽지 화상교실 운영 유형(단일형, 거점형)	404
[그림 7-2-6]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407
[그림 7-2-7]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일반학교 다문화 수용성 변화 비교	411
[그림 7-2-8] 탈북학생 단계별 교육지원 체계	418
[그림 7-2-9]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419
[그림 8-1-1] 2020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428
[그림 8-1-2] 2020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429
[그림 8-1-3]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	432

[그림 8-1-4] 청소년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433
[그림 8-1-5] 청소년 취업자의 취업경로	433
[그림 8-1-6] 2020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435
[그림 8-1-7] 2020년 청소년의 성별 실업률 국제 비교	437
[그림 8-1-8]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20년)	443
[그림 8-1-9]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2020년)	443
[그림 8-2-1]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2020 · 2019년 비교)	450
[그림 8-2-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취업률(2020 · 2019년 비교)	451
[그림 9-1-1]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2020)	478
[그림 10-1-1]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	538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549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552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558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568
[그림 10-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 현황	582

제1부 요약

제1부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연혁 및 기본방향,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간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국가별 청소년 연령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12대 중점과제로는 첫 번째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혁신하고,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며,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위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들은 각 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에서는 UN 등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청소년 연령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UN을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변화와 흐름, 청소년정책 담당 기구 및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UN은 2018년 9월에 발표한 '청소년 2030 전략(The Youth 2030 Strategy)'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하며, 5대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통해 청소년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역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주요 그룹으로 여겨지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해 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유럽 내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과 유럽연대봉사단(European Solidarity Corps)이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모두 청소년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 법령을 구축·정비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주요 핵심 추진 기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01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1. 청소년정책의 범주

청소년정책은 그 개념 및 정의에 따라 크게 광의적 범주와 협의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과 관계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1965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펴낸 청소년백서는 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교육 정책을 포함해 복지, 노동, 비행 및 농어촌 청소년지도 등 청소년과 관계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모두를 청소년정책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까지 발간된 청소년백서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 및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고유 기능과 연계한 정책영역별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정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은 「청소년 기본법(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을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등 대체로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정책들을 말한다. 물론 청소년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청소년복지의 일부 업무)’, ‘교육부(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중 일부 업무)’, ‘고용노동부(청소년과 노동의 일부 업무)’ 등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업무 중 일부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정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적 범주의 청소년정책은 대체로 「청소년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한편, 정책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광의의 시각이 있는 반면,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근거 법률, 즉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0~18세 미만)과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른 청소년(9~24세)의 연령을 나누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정책대상으로 중복되는 만 9~17세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 각기 정책의 수립과 추진차이에 따라 아동정책 혹은 청소년정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백서에서는 청소년정책을 협의적 범주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유관된 아동정책¹⁾을 포함한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위주로 삼고 있다.

2.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중앙정부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및 주요 관계 법령 제정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 1-1-1>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1-1> 청소년정책의 변천

단계	시기	특성	명칭	주무부처(기구)	주요 관계 법령
1단계	1948. 8. ~ 1964. 9.	부처별 산발추진	부처별 관련업무 추진	각 부처	
2단계	1964. 10. ~ 1977. 8.	부처차원의 조정	청소년보호 대책위원회	내무부 무임소장관실	
3단계	1977. 8. ~ 1988. 6.	정부차원의 조정	청소년 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문교부	「청소년육성법」 제정
4단계	1988. 6. ~ 2005. 4.	정부차원의 조정, 부처차원의 총괄 집행	청소년 육성위원회	체육부/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 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1) 아동정책의 예로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사업,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아동급식사업 등이 있음.

단계	시기	특성	명칭	주무부처(기구)	주요 관계 법령
5단계	2005. 4. ~ 2008. 2.	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단일청소년 전담 조직 출범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실	
6단계	2008. 3. ~ 2010. 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7단계	2010. 3. ~ 현재	여성가족부 개편 및 이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자료 : 여성가족부(2016).

1단계는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로, 이 기간은 특별히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정부 행정 기구나 전담기구가 없던 시기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 약 13년간의 시기로서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주요 업무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위주 정책으로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차원의 조정과 규제·보호위주의 청소년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 11년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차원의 청소년 관계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실에 ‘청소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청소년정책이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되었다. 이 때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이 수립되었고, 1987년 11월 28일에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1988년 7월 1일에 동 법률이 시행되었다.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과 청소년일탈 및 비행예방, 규제 등 청소년의 긍정적 개발보다는 청소년을 청소년 비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체이거나 피해대상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이 우세하였다.

4단계는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청소년육성법」의 시행과 함께 출발하였다. 「청소년육성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비로소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수립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육성법」의 시행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그쳐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이 시기는 청소년 관련 전담 조직의 설치·운영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즉 이 시기에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청소년정책 조정실로 확대·개편 되었으며, 「청소년헌장」(구)이 제정(1990. 5. 12.)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변경되면서 청소년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이 수립(1991. 6.)되었고,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1993. 6.)되었으며,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1991. 12.)되었다. 이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되면서 청소년정책조정실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전담기구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8년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에 관한 주요 관계 법령의 제정과 시행이 이어졌고,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개발(참여와 권리존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시기이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청소년 관련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의 곤란과 함께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고, 나아가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운영 하였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 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시기에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청소년복지기반이 조성되었고, 청소년참여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된 이후 2010년 2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하지만 아동 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추진은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다시 분리 되기에 이르렀다.

7단계는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2010. 3. 19.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는 시기다. 이 기간에 여성정책의 조정과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이 일층 강화되면서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정책과 연계하는 발전 전략을 지향하게 되었다.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5년 5월 동 법률이 시행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여 모든 청소년으로 청소년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참사 등의 안전사고들로 인해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있어 청소년의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개정하여 제9조의2에 의거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8년 12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추진단을 구성하여 잼버리 행사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과제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한다는 적극적인 정책 기조가 강조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1.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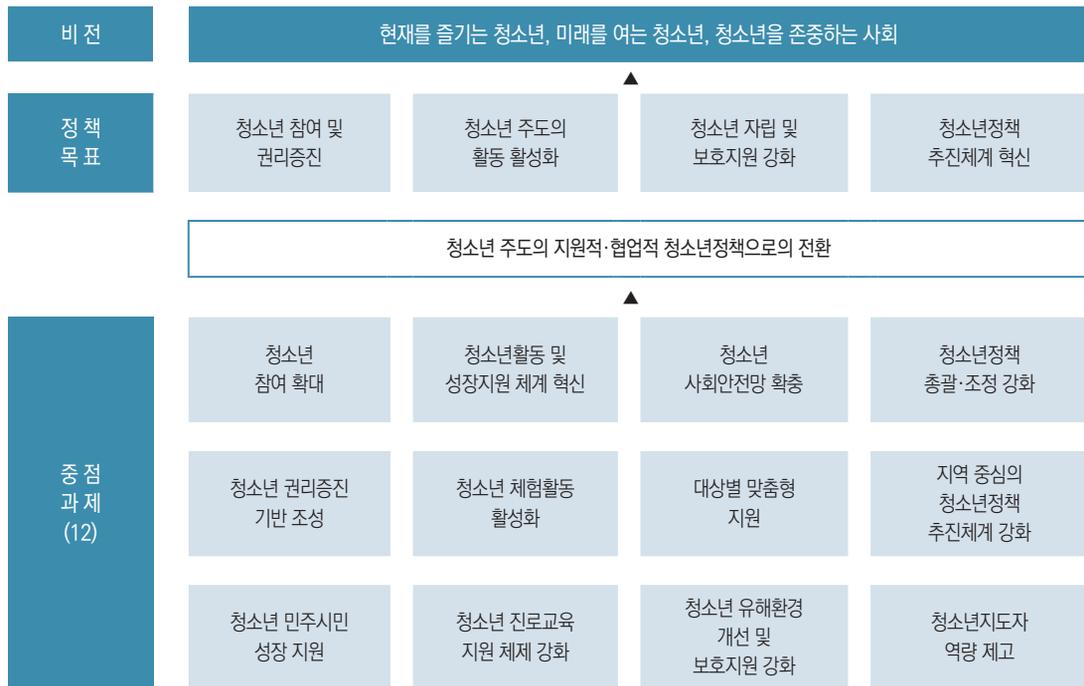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1993년부터 5년마다 법정부적 차원의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2017년까지 추진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영역²⁾의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그동안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구축을 통한 청소년활동 기반 강화, 청소년 체험활동의 다양화로 건강한 성장지원, 청소년정책참여의 기회 확대,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보호·치료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가족 기능의 위축, 뉴미디어와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매체환경의 급변과 이로 인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위험 증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의 부족, 공급자 중심의 수요 예측과 계획에 의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개, 위기 청소년의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지원의 부족, 지역 중심의 성과 지향적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미흡 등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5대 영역: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에 정부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학계, 시설, 단체, 청소년,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였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본 장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비전, 목표 및 중점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 추진방향 및 주요 실적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삶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속에서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협력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한다.

아울러 사회적 격차와 빈곤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 아래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함한다.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과 현장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청소년 시설의 체질을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등의 4대 영역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중점과제 및 세부 과제들과 더불어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실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첫 번째 정책목표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이 중점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컨설팅, 운영모델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공,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및 자기개발 관점의 자기주도형 자원봉사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위원 구성 방법을 다원화하여 청소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실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 제안 등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며,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상의 청소년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청소년(19~24세) 위원의 위촉을 권고하며,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어울림마당 청소년기획단’을 기존 16개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및 활동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와 MBC 특별생방송 및 청소년 유튜브 생중계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의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약 16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2021년에도 온라인 방식의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형 가상 전시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면활동 중심의 청소년활동을 비대면·소규모 양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 및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과 연계한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두볼, Dovol)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및 실적 관련 증빙을 교육부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학생회 법제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지도강사를 파견하는 등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생 자치 역량을 배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233개 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2020~2021년), 청소년참여기구를 모든 청소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험적 민주시민의 장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을 43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과제가 해당 부처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의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참여기구에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청년 등을 포함하는 등 구성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제16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접 투표로 ‘청소년 자립’을 주제로 선정하여 취업·정보·보호·경제 등 5개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였고, 이 가운데 부처 의견수렴 결과 32개 과제가 수용되었으며, 2021년에는 ‘공정’을 주제로 30개 과제를 발굴·제안하였고, 이 가운데 28개 과제가 수용되었다. 또한 2020년 6개, 2021년 10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별 기존 청소년참여 위원회와 연계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참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청소년참여포털³⁾ 시스템을 개편하여 누구나 정책 제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논의할 정책 제안과제로 연계하였다. 또한 온라인 영상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청소년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유 및 부처 간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추천한 청소년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6인을 선정하여 위촉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의 권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권리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권리교육 활성화, 청소년

3)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수칙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통한 운동선수들의 인권 침해 사전 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채널을 통한 근로권익 상담, 근로감독관·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근로권익 침해 구제 지원 및 부당해고 구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 구제를 지원하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근로 동의 발급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식을 제고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을 위해 가정에서의 놀이문화 확산, 학교에서의 놀이·여가 시간 확보 권장,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놀이·여가 필요성 홍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놀이·여가 프로그램 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연계·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심군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며,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체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건강증진학교 운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방식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건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과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포츠인권센터(~'20년 7월)와 스포츠윤리센터('2020. 8.~)를 운영하고,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스포츠 인권향상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 선수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제를 확대 시행하고, e-school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권리보호에 대한 홍보 및 권리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의 신체 건강권 보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실시간 상담 및 현장중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한 상담 및 현장 중재·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제공하고 597개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모바일 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근로현장도우미가 아르바이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상담 및 야간 전화상담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상담창구를 운영하였다. 학교,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교육부 및 서울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역사회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 놀이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선별된 자살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연계·협조·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자살위험군의 전문기관 연계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살이나 폭력 등 위기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였으며,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이버 아웃리치의 신규 추진, 온라인 상담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코로나 블루로 인한 위기 상황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청소년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및 소년원 재원생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제공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검진대상자를 전산등록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체계를 현물지원에서 바우처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라디오 광고와 유튜브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및 대형마트, 편의점, 모바일 앱 등 가맹점을 확대함으로써 바우처 신청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셋째,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토론 능력과 정치참여 의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의 운영을 확대하며,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보급 및 다문화중점학교 확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및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촉진,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 및 활용, 청소년 연령대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확산, 이성애에 대한 상호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평등 캠페인 실시 등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등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등 청소년의 언어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의 확대,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984명의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여 19회에 걸친 입법체험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8개교에 걸쳐 224명의 청소년법제관을 위촉하여 9회의 입법체험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특성화 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 상담 및 학과박람회 개최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진학지도 및 장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58개소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과정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과정에 성평등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개설하였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과정에 철학과 윤리에 대한 특강을 포함하고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과정에는 인성함양을 위한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시민과 사회정서 등과 관련한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을 통하여 농어촌 마을·권역에 구축된 현장체험 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2020년에는 2개 국립청소년수련원에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주요 과제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이다.

첫째,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활동 인프라 재구조화가 제시되어 있다.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지표 개발을 통해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주시민, 사회정서활동, STEAM·메이커 활동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창의적·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활동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하며, 역량기반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청소년이 기획하고 과제를 개발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활동을 연계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확산하며,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 활동 및 아이디어 창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운영과목을 다양화하며, 청소년이 직접 선택해서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집적하는 공유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와 과학교육 간 연결고리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적 기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며, 창의역량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및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적으로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 역량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핵심역량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역량지표 표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STEAM, SW교육,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이커 동아리, 청소년 비즈쿨, 발명교육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공모사업을 역량기반 활동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사전·사후 역량 변화도를 측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80여 곳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 및 과학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과학관이나 출연연구소 등과 연계한 체험중심 캠프 프로그램 운영,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창의 디자인 캠프 운영,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및 수업모델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과목 선이수제(공동AP), 첨단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pre-URP) 등 고교-대학교육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안정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였다. 또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비즈쿨을 통한 기업가정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중·고·특수 학교급별 기업가정신 캠프를 개최하고, 도서·벽지·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즈쿨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다시 청소년이다' 프로그램과 청소년주도형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프로젝트활동 운영모형(KYWA형 PBL 운영모형)을 개발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34개 청소년시설·기관에 보급하여 운영을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에 온라인 비대면 형식을 도입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인 'e-청소년'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페이지를 개설하여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였고, 기존 대면 봉사활동을 전환하여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봉사활동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행정안전부의

1365 나눔포털과 연계하고, 교육부 학생생활기록부 나이스 전산시스템으로의 전송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수련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마당 등을 통한 청소년문화 활동의 장려, 문화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우대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운동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에 적합한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며, 여성청소년의 신체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며, 청소년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함과 더불어 2023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 잼버리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수련 활동의 신고·인증 활성화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과정에 안전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종사자 안전교육을 확대하며, 수련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활동 현장 배치 확대, 위험도 높은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적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문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을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등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 동아리 수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순화 및 문화감수성 함양을 도모하였으며,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 강사를 학교의 수요에 맞게 지원하여 학교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중·고등학교 방문교육을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인성 및 창의력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양질의 무형유산을 활용한 진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재능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 학교, 지자체 등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증의 단체 발급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19. 8.)하여 대형서점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청소년증 우대 혜택 제공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증을 투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국민 안내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 지자체, 조폐공사 등과 협력하여 연중 청소년증을 단체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스포츠교실, 청소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i-League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신체 능력 및 특성을 반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여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여학생 특화 우수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지역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여학생 참여 종목을 5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 여학생의 참여 확대를 위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학생스포츠교실, 청소년스포츠 보급, 유·청소년 축구클럽 리그 운영,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체육 생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청년의 중국파견, 일본 대학생대표단 방한 초청 및 한국 대학생대표단의 일본 파견,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의 모국연수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지원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는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54개국 198명이 참여한 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여 각국별 청소년활동 사례 등 사전 정책 조사 및 사후 공유를 통하여 쌍방향·참여형 청소년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소규모 온택트 방식의 국제교류를 발굴·추진하였다. 즉 11개국 110명이 참여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하였고 아시아 지역 최초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최를 정례화하였으며, 30개국 5,200여 명이 참여한 세계디지털야영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제교류 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일본 및 브루나이와 온택트 방식으로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하여 2020년 7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의 개최 및 법인을 설립하여 3개 본부 7개팀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구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4개 본부 18개팀으로 확대하였다. 청소년 대상 TV 광고, 유튜브채널, 전광판 광고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관련 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안전체험시설 증대 및 생존수영 교육의 청소년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수련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의 운영, 수련활동 현장 점검의 강화, 국가안전 대진단 등 수련시설 및 체험활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련시설별 안전 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를 전산화하여 안전 운영과 관련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지도자 직무별(운영대표자, 활동지도자, 시설관리자) 온·오프라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안전교육의 강화, 찾아가는 안전 교육 실시, 코로나19 대응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수련활동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활동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또한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 과정에 안전과 관련한 사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의 확대 및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초·중·고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진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동아리 등 자율적 진로활동을 활성화하며, 진로 관련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확산할 예정이다. 진로탐색-개발-취업을 연계한 대학생 진로활동을 위해 지역 산업계·대학·고용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직업체험장을 구축하며, 찾아가는 진로 교육이나 원격진로 특강·상담·멘토링 등을 통하여 진로체험 기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과 내일이룸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동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강화를 통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워크넷과 연계한 정보 제공, 청소년(청년) 특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소년(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 내실화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 내실화,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청년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확산 등을 통하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내·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실적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인 ‘꿈길’을 통해 체험처 활동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진로교육 연구학교 운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 진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진로활동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연계가 가능한 자기도전포상제의 신규 영역으로 진로개발을 신설하여 시범 운영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모델을 개발하였다. 현장체험, 찾아가는 멘토, 학교자체 수업 등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미래 성장 산업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의 관심이 높은 우수한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체험버스를 통한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계층·지역 인프라의 불균형에 따른 진로체험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립지원과 더불어 검정고시반, 대입설명회 등 기초학습역량 제고 및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 지원을 포함한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학업 및 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진로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과학기술 잠재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R&D 역량이 부족한 ICT 기업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 신규 지원을 통해 청소년(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청소년의 자립과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안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위기 유형별 청소년에 대한 상담, 회복, 자립지원까지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체계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CYS-Net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서비스 제공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촘촘한 청소년복지지원체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 유형에 따른 필수연계 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기 청소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환경 구축, 위기청소년 평가 및 진단 도구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거리 및 사이버)를 활성화하고,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청소년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상담서비스 질 제고,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 상담 지원 강화,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정서·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 우선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비진학 또는 미취업 후기 청소년(19~24세)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CCTV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아동·청소년 실종 예방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 취약·위기 가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확대하며, 가족 사랑의 날, 가족친화인증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가해·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확대하며, 부모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실적으로 현장 아웃리치 사업을 활성화하고,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에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설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발굴체계를 강화하며 자살이나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80개 지자체에 97명의 위기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신규 배치하였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 및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 요원을 확충 배치하였으며, 거리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연합 아웃리치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연합아웃리치 방식보다는 철저한 방역조치 하여 지역별 소규모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후기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비진학, 미취업 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청소년사회안전망 연계·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안전망을 내실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20년에는 236개, 2021년에는 23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는 2020년 1,349명, 2021년 1,345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365일 24시간 전화, 문자, 사이버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위기 개입 체계를 확보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위기청소년 전담기구(청소년안전망팀) 설치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CCTV 관제기능 통합, 기반조성 등 자치단체 CCTV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연계를 위한 정보연계시스템을 전국 교육청 및 경찰관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전담경찰관 활용,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업무 절차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업무협의,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협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위기 가정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해 실종예방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 온라인 행사, 실종·유괴예방 포스터제작 및 배포, 실종 관련 홍보 공모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실종 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하였고, 실종정보 및 유전자등록 포스터 제작·배포, 실종찾기물품 지원,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의료비 및 심리검사·상담 지원, 실종가족 건강지원 등 실종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가정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등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부처 다자간 협의체의 상설화 및 협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둘째,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시도하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존감 회복 및 관계형성 증진을 위한 전문 적응지원 상담프로그램 제공,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의 학습 및 학력인정 지원, 건강증진 지원, 직업체험 및 전문화된 직업훈련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이란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쉼터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청소년 쉼터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쉼터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주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의 회전문을 차단하고자 한다.

비행 청소년의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적 선도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 기소유예자 및 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비행 청소년의 조기 선도를 강화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고 미혼모 시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며, 양육비 이행 신청 및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며, 공동생활 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취업지원, 청소년 한부모 대상 특화형 내일 이룸학교훈련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 환경이 구비된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학생 미혼모 전담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교육비 및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업 청소년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하였으며,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연계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정보연계의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 및 경찰청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시·군·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2020년 9개소에서 2021년 10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운영, 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반 운영 및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학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개발하여 2021학년도 입시를 위해 전국 4개 대학에서,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6개 대학에서 시범 적용하였으며, 향후 16개 시·도별 1개 대학 이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일이룸학교의 훈련과정 확대 및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훈련 참여도를 제고함으로써 자격 및 학력 취득 인원이 증가하였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135개소로 확대(2020년)하였으며, 쉼터 퇴소 이후에도 자립 여건을 갖추지 못한 후기 청소년(19~24세)에게 주거지원·생활지원 등 종합 자립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0년 9개소에서 2021년 10개소로 확대하는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하였다. 청소년쉼터 입소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보호자 연락 원칙'을 완화하여 청소년의 위기 정도에 따라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청년임대주택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2021년에는 115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특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보호기간 중심의 청소년복지시설 분류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 신규 지원, 자립지원실비 지원, 전세·매입 임대주택 및 청년 건설



임대주택까지 우선 입주가 가능한 주거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회적기업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갈 곳이 없는 비행 경험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20개소로 확대(2020년)하였으며,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의 치유를 위한 상담, 학습지원, 자립지원, 생활·보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확충하여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를 건립하였고, 호남권에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비 및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남한사회 정착 및 학습능력 향상, 재능개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통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6.7만개 기업, 37.5만 명의 청년에 대한 추가고용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387,587명의 청년과 97,511개소의 기업이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76,680명이 만기금을 수령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을 통해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우선 자립여건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월 소득 대비 주택임차료 비율이 높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대학생 대상 행복공공기숙사를 확충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2020년 304개소, 2021년 332개소로 확충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을 실시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 급식과 상담, 학습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등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학원밀집지역 내 유해업소 점검·단속 강화 등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술·담배 판매 업소의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약물에 대한 노출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유해약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재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종 유해·불법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웹툰, 인터넷신문 광고 등의 청소년 유해성 상시 모니터링, 음란정보 및 사이버도박 등 불법·음란정보 차단 및 유통사업자 처벌,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를 내실화하고자 한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체계적 발굴 및 기숙치유프로그램과 가족 치유클럽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고위험군의 적기 전문적 치유 서비스 제공 및 진단·발굴·치유지원·사후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효과적인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기관 합동 및 계기별 기획 점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신변종 유해업소와 매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확대하고, 동시에 학교 주변 유해환경의 이전이나 폐쇄를 유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신문 등의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을 위해 매체물 유통사업자 자율심의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사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광고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해업소 홍보 사이트 및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 및 차단 요청, 구글코리아와 협력하여 유튜브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음악파일) 및 홍보(성인용품 판매, 청소년유해업소 홍보사이트) 영상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 제한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인인증의무 등 청소년보호제도 이행 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를 강화하였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문적·시의적 대응을 위하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알려진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대상제공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신고기능, 대화저장 기능 등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채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인 사이버 안심존 운영 학교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2020년 전국 1,843개교로 확대하였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에 4만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 위험 보호를 위한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발하였고, 2022년부터 섯다운제도가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의하여 정하는 스마트폰 사용시간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였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치유클럽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인터넷 중독 개선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전수 대상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과의존 치유가 필요한 위험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의 운영,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통한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전문적·종합적 과의존 치유 서비스를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게임이해하기 교육 실시, 게임이용자 패널조사 실시,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게임과몰입 실태조사 실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운영 등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업무를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증거기반 정책분석을 위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활동, 보호·복지·상담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입 등 디지털화 작업을 기획·설계하는 청소년사업디지털화 기획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도 단위의 청소년 관련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편을 유도하여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며,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청소년 육성기금의 수입 재원 다각화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청소년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2019년)하였으며, 6명의 청소년을 청소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2020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관련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릴레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의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청소년정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사업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청소년정책 수립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 빅데이터 활용 혁신서비스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7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6개소를 운영하고 분기별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청소년 성장·지원혁신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 홍보영상 제작, 전국 편의점 송출, 카카오톡 배너 광고, 고속도로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송사 및 포털 등과 협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 웹툰 광고 등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을 늘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공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 인구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생태센터(울속도)와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봉화)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5개 국립청소년수련원 내에 VR 기반 디지털 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였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배치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2019년 147명에서 2021년에는 283명의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심의·의결 및 자문기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 자원을 종합·연계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청소년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학습 문화를 조성하며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다양화, 지역 내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역량 확보에 부응하도록 청소년 분야 국가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을 연수 과정에 추가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기준표를 마련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도입 시 임금기준표 적용 여부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가는 등 청소년 지도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제회 설립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정서·행동 장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스트레스나 무력감을 예방하는 등 정신건강 회복 및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와 보수교육 과정에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연수의 제약으로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가 도입되는 등 교육디지털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청소년 연령 현황

유엔(United Nation)은 국제협약 및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청소년(youth)’을 15~24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등 UN 국제 기구들은 ‘청소년(youth)’ 통계를 산출할 때 15~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동(child)’을 12세 미만으로, ‘청소년(youth)’을 12~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UN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CRC)」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역시 18세 미만으로 아동을 규정하고 있다.

〈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기관	대상	연령구분
UN 세계청소년행동계획 (UN's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청소년(youth)	15~24세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청소년(youth)	15~24세
	청소년(adolescent)	10~19세
	청소년(young person)	10~24세
세계은행(World Bank)	아동(child)	12세 미만
	청소년(youth)	12~24세
UN아동권리협약(UNCRC)	아동(child)	18세 미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미국은 「연방 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9(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of 2009)」에 따라,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청소년 연령 기준에 대하여 법령 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은 21세 이하로,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에서 청소년은 14세 이상 21세 이하이다. 아동은 대체로 18세 미만인데,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의 아동은 13세 미만이다.

〈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연방 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9 (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of 2009)	청소년(Youth)	24세 이하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청소년(Youth)	21세 이하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	청소년(Youth)	14세 이상 21세 이하
아동시민법(Child Citizenship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표준소년법(Uniform Juvenile Court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Child)	13세 미만
공정노동표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자료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2)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3) 미국 연방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9 <https://www.congress.gov/111/bills/hr2653/BILLS-111hr2653ih.pdf>.

영국은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에 근거하여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서는 아동을 13세 미만의 연령으로, 청소년(Young person)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아동 및 청소년(Child and Young person)	18세 미만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아동(Child)	13세 미만
	청소년(Young person)	18세 미만

자료 : 1) 김기현(2012).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방향(안).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독일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와 독일 ‘연방청소년협의회(Deutscher Bundesjugendring)’가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은 12~26세이다. 기본적인 규정은 「8번째 사회법(Achtes Sozialgesetzbuch VIII: SGB)」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 서비스관련 사회법」에 근거한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은 14세 미만 연령을 ‘아동(Kind)’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을 ‘청소년(Jugendliche)’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에서 ‘청소년(Heranwachsende)’ 연령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며 「연소근로자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청소년(Jugendliche)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에서 아동은 14세 미만이고, 청소년(Heranwachsende)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다. 참고로 ‘청년(Junge Volljährige)’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다. 독일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이고, 자녀수당은 17세까지 지급되며, 18세부터 26세까지 자녀수당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연소근로자보호법 (Jugendarbeitsschutzgesetz)	아동(Kind)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und Jugendhilfe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27세 미만

자료 : 1) 김기현(2012).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방향(안).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3) 장주리(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일본은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未成年者)’, ‘소년(少年)’, ‘아동(児童)’, ‘연소자(年少者)’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근거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다. 「민법(民法)」의 미성년자와 「소년법(少年法)」상 소년,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및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상의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刑法)」상 형사 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14세 미만이며,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등의 법률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제정하고,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을 통해 아동과 청년(若者)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였고 대상 연령을 30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나아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연령대도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민법(民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형법(刑法)	형사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	만 14세 미만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학령아동(学齡児童)	6세 이상 12세 이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연소자(年少者)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소년(少年)	소학교 취학시기에서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자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아동매춘·아동 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 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법률	호칭	연령구분
모자 및 과부 복지법(母子及び寡婦福祉法)	아동(児童)	13세 미만
소년법(少年法)	소년(少年)	20세 미만
청소년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청소년(青少年)	18세 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아동과 청년(若者)	규정 없음 (지원시책은 30세 미만도 포함)

자료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2)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2. UN 청소년정책 현황

UN의 청소년정책은 국제평화를 위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함께 청소년의 권리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정책의 방향은 1964년 ‘세계 청소년회의’와 1965년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에 관한 선언」, 그리고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 제정과 1995년 ‘세계 청소년의 해’ 10주년 기념을 맞아 발표한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 1998년 「리송본 선언」, 그리고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와 2015년 ‘지속가능 발전목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4년 유엔 전문기구인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프랑스 그레노블(Grenoble)에서 개최한 ‘세계 청소년회의’는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교육의 필요성과 기능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제청소년위원회의 설립
- 청소년지도자와 전문가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이를 통한 정보문헌 조사 연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센터의 설치
-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이러한 요소들의 통합 조정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활동의 활성화
- 이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지역회의 형태나 혹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심층 연구하는 연구모임 형태의 협의기구 설립
-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국 청소년지도자의 지역모임 혹은 국제모임의 소집
- 청소년문제를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문가의 파견
-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교육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들도 자신들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가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
-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원(1995), 프랑스 그레노블 세계청소년회의 자료집.

이어 UN은 1965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청소년의 평화이념과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을 채택하였다. UN은 이 선언문에서 청소년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청소년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고, 그들이 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을 획득하며 평화·자유·만인의 존엄과 평등의 고상한 이상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고취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은 자신들이 관리 하도록 소명 받은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하여야 하며, 인류행복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고무되어야 한다.”

UN은 1985년을 ‘참여(participatio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를 주제로 하여 ‘세계청소년의 해’로 결의하면서 각 회원국이 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당시 UN은 청소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어른이 될 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만이 아닌, 지금 현재 살아 있고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 세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인구, 교육, 고용, 보건 등에 관한 모든 발간물과 통계에서 이 연령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UN은 각국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의 연령 정의 역시 존중하고 있다. 청소년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사회적·문화적·심리적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3~19세의 십대와 20세부터 24세까지의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UN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이념은 이후 1995년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을 맞아 채택한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 1998년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과 동년에 개최된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 2000년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summit)'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 목표(MDGs)」, 2014년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채택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바쿠 선언」, 그리고 2015년 9월 25일 세계 123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개발정상 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으로 지속되었다.

청소년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실행지침은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에서 구체화되었다. UN, 각 회원국 정부, 정부 간 혹은 비정부간 조직,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기관에 대해 향후 청소년분야가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채택되었다. 주요 목적은 '세계 청소년의 해'의 주제인 '참여·개발·평화'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고, 의사결정 참여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청소년의 요구 및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사회·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평화의 이상과 상호 이해 및 존중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실행지침에서는 청소년을 단순한 인구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하위집단 즉, 도시와 비도시 청소년, 어린 여성, 인종차별을 받는 청소년, 어린 노동자, 학생, 어린 이주자와 난민, 장애청소년, 소년범죄자, 소아 약물중독자의 집합체로 청소년집단을 조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 분야를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비행, 여가활동, 여성 및 청소년,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참여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개입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8년 8월 세계 150개국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의 대표 등이 참석하고,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개최된 제3회 'UN 세계 청소년포럼'에서는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Braga Youth Action Plan)」이 채택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청소년정책(청소년정책 분야 간 통합, 국가 내 청소년 업무관련 NGO 간 협력, 빈곤추방 및 청소년 개발), ▲청소년참여(모든 청소년들의 참여, 청소년 조직과 UN기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사회개발을 위한 청소년 고용, 건강과 청소년 개발), ▲청소년인권(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권리 헌장과 청소년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동년 8월 158개국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은 국가수준의 ‘청소년정책’, ‘청소년 참여’, ‘청소년개발’, ‘청소년과 평화’, ‘청소년교육’, ‘청소년고용’, ‘청소년 건강’, ‘마약과 약물남용’ 등을 포함하면서 각 의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한편,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세계 빈곤퇴치 및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2000년 9월에 참여한 191개 UN회원 국가는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영아)사망률 감소 ▲산모건강의 증진 ▲환경지속성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MDGs는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새로운 발전목표로 이어졌다.

2014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Youth Policies)’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바쿠 선언(Baku Commitment to Youth Policies)」을 채택하고 청소년 권리증진에 청소년정책이 기반을 두어야하며, 모든 청소년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이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증거에 기반을 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2015년 9월 25일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난 2000년에 채택되어 이행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신하여 제시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새로운 발전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역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주요 그룹으로 간주되어 왔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며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해 왔다. SDGs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계승되었다. SDGs의 우선순위 과제에는 ‘청소년의 권한 강화’, ‘참여’, ‘역량강화’, ‘교육’, ‘고용’, ‘기업가정신’, ‘성평등’, ‘건강권’, ‘기후변화’,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 ‘빈곤’, ‘이행 기제’ 등이 폭넓게 제시되었다. SDGs의 17개 목표는, ▲빈곤 퇴치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 ▲보건 증진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과 일자리 ▲인프라와 산업화 ▲불평등 해소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자원 ▲육상 생태계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5. 성 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확립한다.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한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양식을 확립한다.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UN은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청소년 2030 전략(The Youth 2030 Strategy)’을 공식 발표하며 평화와 안전, 인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에 걸쳐 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하며 청소년 지원의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후에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청소년 2030(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 YOUTH 2030)’으로 문서화 되었다. UN은 이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영향력 및 세계·국가·지역수준의 행동을 확대하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고, 검토 및 후속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의제 및 프레임워크에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empowerment), 개발 및 참여에 집중하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과정을 강조하여 청소년 중심의 유엔으로 거듭날 것을 표명하였다. UN은 청소년전략을 통해 청소년의 리더십 표본(Leadership Example)을 세우고 지식 및 혁신 선구자(Knowledge and Innovation Pioneer),

투자 및 솔루션 촉매자(Investment and Solution Catalyst), 책무성 리더(Accountability Lead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전략 5대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대 우선순위 : 관계, 참여 및 옹호 -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확대
실행계획 주류화, 확대, 지원, 참여, 표준 수립, 연결, 강화, 증폭
- 2대 우선순위 : 교육 및 보건 기반 - 양질의 교육과 보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확대 지원
실행계획 양질의 교육 옹호, 비형식교육 증진, 접근가능한 청소년 대응 보건 서비스 및 환경 보장, 청소년 친화적 정신 보건 서비스 지원, 성·생식 보건 및 권리 지원
- 3대 우선순위 :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 양질의 일자리 및 생산적인 고용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확대 지원
실행계획 글로벌 공약 이행, 균형 잡힌 접근법 옹호, 안내 및 지원, 서비스 및 생산 자산에 대한 접근 증진,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촉진
- 4대 우선순위 : 청소년과 인권 - 청소년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며 청소년의 시민 및 정치적 참여를 지원
실행계획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구체적인 청소년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증진, 인권 주류화,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촉진, 인권 교육 및 역량 강화
- 5대 우선순위 : 평화 및 탄력성 구축 - 평화와 안보 및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촉매자로서 청소년을 지원
실행계획 가능한 환경 조성, 공식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청소년참여 추진, 안전한 공적 장소 제공, 파트너십 및 힘 실어주기, 지속적인 대화 촉진,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인도주의 환경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9). 청소년 2030 UN 청소년전략.
 UN 홈페이지 : https://www.un.org/youthenvoy/wp-content/uploads/2018/09/18-00080_UN-Youth-Strategy_Web.pdf

UN은 산하에 다양한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두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각 기구별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등이 있다. 유엔 각 기구별 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 특사 사무국 (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s envoy on youth)’에서 협력 지원을 받고 있다.

3.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현황

가. 유럽연합(EU)

유럽 내 국가 연합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따라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의 정부형태는 국가연합이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각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회원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EU)', 각종 정책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4개 기관이 유럽연합의 핵심기구를 형성한다. 이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COR)',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이사회'는 정책분야별로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외교, 일반(general affairs), 경제·재무, 사법·내무, 고용·사회 정책·보건·소비, 경쟁력(competitiveness), 교통·통신·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청(소)년·문화·체육이사회 등 10개의 각료이사회로 구성된다.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을 비롯해 교육과 문화 등 유관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 youth를 15~29세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는 청(소)년으로 표기하였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집행위원회 내 교육문화부서(Directorate-General Education and Culture: EAC)에서 담당한다. EAC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졌던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그동안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2007~2013)'과 '청(소)년 전략 2010~2018(Youth Strategy: 2010 ~ 2018)'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2018년 11월에 새로운 '청(소)년 전략 2019~2027 (Youth Strategy : 2019~2027)'을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2007~2013)과 청(소)년 전략 2010~2018을 간략히 살펴보고, 새롭게 수립된 '청(소)년 전략 2019~2027'을 기술하였다.

우선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서 유럽 내 청(소)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유럽 시민의식과 젊은 유럽인들 간의 연대감·관용을 고취하고, 유럽연합의 미래 형성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삼았다. 또한 청(소)년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 없이 모든 젊은 세대의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의 청(소)년(Youth for Europe) ▲유럽봉사활동서비스(European Voluntary System: EVS) ▲세계의 청(소)년(Youth in the World) ▲청(소)년 지원 시스템(Youth Support System) ▲청(소)년 분야에서 유럽협력을 위한 지원(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Youth) 등 5개의 행동주제로 구성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2010~2018)’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많은 평등한 기회제공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시민이 되고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청년실업률이 점증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고용 및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시민성 함양은 유럽공동체의 유지와 관련된 주제였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정책집행 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교육·문화부서(Directorate-General Education and Culture: EAC)’에서 담당한다. EAC는 2018년 11월 각료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소)년전략 2019~2027’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즉, 전략은 2018년 11월 26일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유럽연합 내 청(소)년 정책협력의 틀로서, 해당 전략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각 회원국가가 중점을 두고 펼쳐가야 할 핵심 정책 의제들이다. 본 청(소)년 전략은 ‘참여하다(Engage), 연결하다(Connect), 권한을 부여하다(Empower)’라는 세 가지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적인 삶에 대한 청(소)년 참여 강화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의 청(소)년 전략 2019~2027은 불확실성이 큰 미래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추도록 도우며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회복탄력성을 기르며, 유럽 사회의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며, 영역별 요구사항에 대해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정책결정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청(소)년 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EU와 청(소)년의 연결, ▲모든 성의 평등, ▲포용적 사회, ▲정보와 건설적인 대화, ▲정신건강과 웰빙, ▲농촌 청년의 개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 ▲양질의 학습, ▲모두를 위한 공간(조성)과 참여, ▲지속 가능한 녹색 유럽, ▲청(소)년 조직 및 유럽 프로그램 등 11개의 유럽 청년 목표를 포함한다.

〈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9~2027)의 3개 분야

분야	세부 정책
참여하다(Eng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EU 청(소)년 대화(EU Youth Dialogue) 출범 • EU에 참여 가능한 유럽 청(소)년 포털의 통합 • 청소년 민주생활 참여 강화 및 유럽과 기타 선거 참여 촉진 • Erasmus+를 통한 유럽 전역의 참여활동에 대한 학습 지원 및 관심 제고 등
연결하다(Conn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과 유럽 밖, 각지의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 정책협력 및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유럽 연대 조직 지원 • 국경 간 학습 이동 및 연대에 대한 참여 확대, 법적·행정적 장벽 제거 검토 등
권한을 부여하다(Em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청(소)년 고용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노동의 인식, 혁신, 역량강화 등을 다루는 풀뿌리 활동 지원 • 디지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상호학습 지원 및 증거 구축 • 청(소)년 근로자 기술 및 청년업무 자금조달 등

자료 : EU (2018. 12. 1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456. volume 61.(2021.12.14. 인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C:2018:456:FULL&from=EN>.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유럽연합 정책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교육·문화부서(Directorate-General Education and Culture: EAC)’에서 담당한다. ‘EAC’는 ▲교육과 훈련 ▲문화와 미디어 ▲청(소)년 ▲스포츠 등 4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 교육과 훈련, 청소년, 스포츠분야의 유럽연합 예산지원 프로그램
-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프로그램
- SALTO-YOUTH : 유럽 청소년을 지원하고 배움과 훈련을 향상시키는(Support, Advanced Learning and Training) 프로그램으로 에라스무스 플러스와 연계하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을 위한 무형식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프로그램(online tools for youth work and training)
- 청소년 포털(Youth portal) : 청소년 대상 유럽 내 사회적 포용, 봉사, 여행, 보건, 학습, 노동에 관한 포털 서비스 정보 지원
- 유럽봉사활동서비스
-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일자리 구하기(Looking for work in another EU country)
- 지역·국가·유럽차원에서의 선거에서 투표하기(Voting in local, national and European election)

자료 : https://ec.europa.eu/info/topics/youth_en에서 2021년 12월 12일 인출.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사회적 포용, 청소년의 고용과 기업가정신, 청소년의 보건과 웰빙, 시민사회에서의 참여, 봉사활동,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이란 주제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별 다양한 문화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빈곤문제’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난민을 비롯한 새로운 이주문제 등의 과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유럽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유례없는 실업과 사회적 배제 및 빈곤의 위기를 안겨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영국의 탈퇴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의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정책을 따로 분리해 진행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고용, 교육, 훈련, 건강, 문화, 디지털미디어,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권, 스포츠와 같은 정책들과 협력하고 상호·보완하여야 함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난민, 니트(NEET)족, 장기 실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많은 청(소)년들이 유럽사회의 완벽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향후 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유럽사회가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유럽연합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선언하게 되는데 선행 조치 중 하나가 바로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임시 제한조치’(proposal for a temporary restriction on non-essential travel to the EU)였다. 이후,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The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대한 위협평가, 공중보건 지침 및 조언을 제공하며 유럽 내 코로나19 모니터링을 하였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쉽게 호전되지 않으면서 각 회원국들의 국경폐쇄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모든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 회원국들의 이동은 사실상 봉쇄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의 발병과 감염사태는 유럽 내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과 유럽연대봉사단(European Solidarity Corps)에도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즉, 당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많은 프로그램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이동 프로그램이 정지되었다.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취해진 모든 봉쇄 조치를 완전히 존중하되, 무엇보다도 에라스무스+ 및 유럽연대봉사단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이자 주요 목표로 삼았다. 에라스무스+ 및 유럽연대봉사단의 참여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EU에 포함되지 않은 북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터키, 세르비아 및 영국이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과정 중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자원 봉사자 및 기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집행부서인 교육, 시청각 및 문화집행기구(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ACEA)는 이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유럽학생연합(European Students' Union)과 에라스무스 학생 네트워크(Erasmus Student Net)는 유럽 전역에서 진행 중인 에라스무스+에 참여했다가 고립된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에라스무스+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들은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거주지에서 온라인 비대면활동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현재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온라인 가상공간을 개발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어학 연습을 위한 주간 약정(주당 4~5시간) 방식의 가상 공간 학습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나. 영국

영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재정 악화와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영국의 국가 채무는 2010년 78.5%까지 치솟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긴축 정책을 펼치며 정부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전체 지출예산의 15~17%를 차지하는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한도를 1,000억 파운드로 설정하고, 경찰, 보건,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행정관리 비용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하였다. 'Big society'라고 불리는 당시 영국 정부의 정책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사회를 부각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를 국가에서 민간과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영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 기조 하에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적은 재원으로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하여 재구조화되었다. 그 특징으로, 첫째,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지속가능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며, 둘째,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배경이나 생활환경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기회를 얻도록 하고, 셋째,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와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청소년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철저하게 성과 지향적으로 개편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한편, 참가청소년이 성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 과정은 물론 성취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영국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 13~19세의 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정책의 새로운 접근(Positive for Youth: A new approach to cross-government policy for young



people aged 13 to 19)』(정책보고서는 2012년 2월 출판)이란 청소년정책을 선언하고, 청소년을 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는 가치 실현을 다짐하였다. 이어 2013년 7월 청소년정책은 이전의 교육부 중심에서,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이끌기 위해 수상 직속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로 이관 되었다. 국무조정실로의 이관은 정부부처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청소년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의 성공에 필요한 지지적 관계 구축 등의 청소년의제(youth agenda)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 정부가 청소년정책 입안과정에서 청소년과 청년그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정책 이관 이후 국무조정실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로 국가 시민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장과 청소년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캠페인 지원, 청년참여 증진, 지역 청소년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영국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Youth in Action'은 국가수준에서 운영 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으로 '영국문화원'이 참가자 선발과 파견, 평가의 역할을 한다. 당초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유럽사회의 통합과 유럽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Youth in Action'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여 이를 통해 고용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대상 복지지원의 역할을 한다. 셋째, 참여청소년은 물론이고 청소년이 방문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도 문화감수성을 높여 성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주요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Positive for Youth: PfY)', '국가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National Citizen Service)', '국제개발과 청소년(Putting young people at the heart of development)', '사회참여촉진 캠페인(I will campaign)'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PfY는 13~19세의 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청소년과 각종 협의회, 자선단체와 기업 등 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PfY의 비전을 개발·지원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정부, 청소년기관, 지역사회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PfY는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예산 지원: 청소년들에 의한 국가정책 감시조직 설립 등 ▶헬프 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지방정부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서비스 운영 ▶청년 취업지원(교육훈련, 인턴제도, 고용주 교육 등) ▶청소년 봉사활동 장려 ▶청소년 문제 조기개입 촉진을 통해 취약 계층 지원 ▶보건서비스 제도 개혁 ▶청소년 노숙자 예방 및 개입 ▶청소년 폭력 예방 ▶청소년 실천그룹(Youth Action

Group)을 통한 9개 부처 간 협력 등이 그것이다.

‘국가시민성 함양 프로그램(NCS)’은 15~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책임 하에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에 운영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리더십, 팀워크,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기술을 습득하며 자기개발 및 사회성 개발을 장려한다. NCS는 3~4주 동안 네 단계(adventure-discovery-social action-celebration)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웹사이트인 NCS Opportunity Hub를 통해 교육, 워크숍, 자원봉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NCS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십은 물론 학위취득까지 제공하는 ‘Get my First job’ 프로젝트 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개발과 청소년’은 영국 정부부처 중 하나인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에서 2016년에 발표한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을 국제개발의 중심에 세우자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목에서부터 밝히고 있다. 국제개발부에서 시행 중인 영국의 해외원조 전략(British Aids Strategy)은 일찍이 ‘세계평화 거버넌스의 강화’, ‘위기대응력 강화’, ‘개발도상국의 번영’, ‘취약 계층 지원’ 등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해 왔다. 하지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각국의 분쟁과 난민 문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실업문제, 빈곤과 문명을 겪고 있는 세계 청소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세계 청소년 문제해결이야말로 영국 원조전략의 목표와 직결되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중심에 청소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조전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국제개발부는 국제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참여를 보장·지원하고 있다. 실행전략으로는 첫째, 청소년팀을 조직해 연구를 위탁하여 정책개발에 반영하고, 둘째, UN과의 파트너십으로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청소년들을 지역, 국가, 국제수준에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참여촉진 캠페인’은 ‘step up to serve’로도 불렸는데, 10~20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I will campaig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청소년들의 사회행동이 그들의 성격과 기술(skill)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입증하고 전달할 것 ▶학교 정규교육과 기타 청소년활동(유소년 클럽, 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 예술 및 문화활동)을 통해 10~20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에게 사회행동을 전파할 것 ▶영국 전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청소년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캠페인을 대표하는 50명의 청소년 대사를 선출하여 온라인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을 멘토링 하거나 지역 청소년행사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00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 교육, 건강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조직으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영국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등이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영국의 청소년활동을 조직·지원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역할과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비록 민간단체이지만 정부 정책과 사업을 전달·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단위 청소년사업의 파트너로서 ‘NCS’, ‘I will campaign’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영국문화원’은 1934년에 설립되었고, 1940년에는 ‘영국왕실인가(Royal Charter)’를 제정하여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110개의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영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유럽연합의 ‘Youth In Action Programme’의 영국지부로서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는 등 민간차원의 청소년교육과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처음 설립될 당시만 해도 영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세계적인 협력 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이 목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198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교육, 흔히 ‘무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주요한 청소년기구라 할 수 있다.

‘영국청소년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외교부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1963년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까지 영국 청소년의 대표적인 자치조직이자 청소년지원 단체가 되었다. 25세 이하의 청소년 스스로에게 자신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삶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민주적 사회건설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활동가, 핵심 의사결정자 및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월 단행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과의 관계변화에 따라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변화될 수도 있다.

다.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내외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사회화,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여러 대책들과 노력들, 그에 따르는 협력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독일은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청소년지원의 법적 토대는 1922년 제정된 제국청소년복지법(Das Reichsjugendwohlfahrtsgesetz : RJWG)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 그리고 직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들의 교육권과 책임의 관계, 민간 청소년지원과 공적지원 간의 관계 확정,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 청소년청(Jugendamt)을 설치하여 청소년복지를 위한 공공 담당기관을 확대·배치하는 등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수급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물질적 박탈 및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법은 1961년 청소년복지법(Das Jugendwohlfahrtsgesetz: JWG)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법은 수급대상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한 법령이 1991년 1월 1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 KJHG)」이다. 청소년복지법에서 수급대상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반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수급대상을 수행 주체로 바라봄으로써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단순한 빈곤 구제 이상의 폭넓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청소년은 교육과 발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청소년청에 묻고 자문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긴급 상황이나 갈등상황에서 이들에게 신뢰 있는 자문을 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 청소년청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개정될 당시, 청소년이 사회에 편입될 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발달의 주체가 된다는 청소년지원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독일사회는 통일이란 급변을 맞이하였고 그에 따른 시대적인 요구 또한 변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원이란 개념과 사회적 지원 방안들을 발전시켰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동·청소년강화법(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은 더욱 강한 공적 조정기구와 포괄적인 공적 책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는 아동

보호, 장애 아동·청소년 보호, 청소년 참여, 요보호아동 등과 관련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또 다른 법적 근거는 2002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으로 최근 독일의 「청소년 보호법」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침해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의 추진, 조기개입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 관계망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추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법적 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추진, 지원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추진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와 관련해 우선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국가 최고 행정기구로서 연방정부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독일 연방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각 주(州)정부의 청소년지원정책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독일 연방정부는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 자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지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받는다. 셋째, 각 주 정부는 임기 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 청소년지원조직의 기본 골격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의 관련 법규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 자치단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 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 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 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매년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 및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 ‘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고, 실질적인 부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위부서인 ‘청소년실(국)’이며, 지역차원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즉,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실’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지역차원에서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 아동·청소년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일은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integration)’,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영역은 다시 ‘청소년복지’,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대행위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사회통합’, ‘연방아동·청소년 계획’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활동’,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년지원’, ‘아동보육관리’, ‘중앙과 지방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청소년지원’, 유럽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뉘어 있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세부적인 사업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육센터의 질을 높이고 확장을 지원
- 2013년 8월 1일 이후 1세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 수립
-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보호 및 약자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 성적 폭력과 착취, 미디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아동포르노 예방)
- 아동과 청소년의 극단적 경향에 대한 예방과 민주주의 프로젝트 추진
-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구현에 대한 국가적 책무
-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권리 구현
- 교육, 건강, 노동시장, 청소년 복지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연방정부청소년위원회 설립
- 지원 및 가치의 방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 구축
- 청소년과 청년 이민자에 대한 노동 조건 불이익의 개선
- 유럽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협력 및 개발
- 독립적인 청소년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보고서의 제공 등

자료 : 장주리(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독일에서 청소년지원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복지, 보호 등을 모두 묶는 총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젝트는 작게는 사회적·교육적 취약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복지관련 프로젝트로 볼 수 있고, 크게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원하는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아동·청소년강화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수행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별 자치권이 인정되므로, 각 주 별로 내용들이 상이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청소년사업으로는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과 바이에른 주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 드레스덴의 ‘청소년 사회통합사업’ 등이 있다.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마을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청의 전문 인력이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과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워크숍과 강연, 코스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은 ‘클릭(Klick)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게 워크숍이나 부모강연, 교사 보수교육, 체험 교육적 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중독이나 폭력, 인종차별, 유해매체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예방차원의 프로젝트이다. 드레스덴은 베를린, 라이프찌히 등과 함께 과거 동독의 핵심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서독 성장세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라. 미국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업청소년 대상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State Government)’에 귀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 및 서비스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은 시나 ‘카운티(County)’ 등과 같은 지방정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정책은 소속 차관보조직인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아동가족실은 미국 전역에 10개의 지역 사무소(the office of regional operation: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캔자스시, 덴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아동가족실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보존에서 난민 재정착, 아동보육 및 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가족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를 제공하며, 특히 그들 스스로를 돕기 위한 주요한

정부기관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대표적인 부서이다. 아동가족실 내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는 아동청소년가족부(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YF), 아동국(Children's Bureau: CB), 가족·청소년 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FYSB) 등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청소년고용 및 실업대책」, 「미성년자 고용의 안전대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 근로자의 고용 및 학대를 제한·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촌청소년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 등을 두어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치유역량을 제고하고 있고, 미성년 재판 및 미성년 비행예방활동 등을 주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청소년 단체 등의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Build'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각 단위별로 독자적인 청소년정책과 다양한 제도들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주정부 산하에 '청소년 서비스국' 및 '복지국' 등을 두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카운티에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협력(National Collaboration for Youth: NCY)'과 '미국 학생협회(US Student Associatio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의 운영예산은 대부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NCY는 미국사회에서 청소년 관련 비영리 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의 하나로, "공정과 정의를 토대로 하여 미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스토리텔링 및 공유, 내러티브 확장, 청소년의 권리 옹호 및 관련 정책의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인 스파크 액션(Spark Action)의 주요 파트너기관이다.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 관련법은 각 부처의 청소년사업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 관련법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 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하월에 소개되었고,

2006년 법률로서 서명된 「연방 청소년정책조정제에 관한 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FYCA, 2009년 개정)」은 ‘Federal Youth Department Council’에 의해 제정되었다. FYCA는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2001년 의회에서 통과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NCLB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된 연방초중등교육법이다. NCLB의 담당국은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국’이다. 그러나 NCLB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NCLB는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으면서 낮은 교육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소외계층의 학생, 소수민족 학생,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각 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빈부격차에 의한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즉, NCLB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은 고질적인 교육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 전체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NCLB의 4대 원리는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유성(freedom)’, ‘방법론(methods)’, ‘선택권(choice)’이다. 4대 원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교원들의 자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NCLB가 제정된 이래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2015년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이 제정되었다. ESSA는 NCLB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방식, 시기 등을 각 주에서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고 공통중핵 성취기준의 채택, 책무성, 구제방안 등에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을 주정부에 일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밖에 2003년 개정된 「가출·노숙 청소년 법(the Run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은 ‘집이 없는 소년(homeless young people)’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설립된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은 광범위한 청년취업 및 고용과 관련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부’에 의해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FLSA)」은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서비스 증진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유지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 및 가족 안전유지법(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은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호 교육문화교류법(The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e Exchange Act)」은 미국 국제청소년 교류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미국 정부가 교육 및 문화 교류를 통해 미국 국민과 다른 국가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교육적, 문화적 관심과 발전, 성취를 보여주고 전 세계 사람들의 평화롭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국가와 미국사회를 결합시키는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즉 교육 및 문화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미국과 세계의 다른 국가 간의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동법의 제정 목적이 있다.

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과 치료, 교정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소외 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대두되고 있는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은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조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청소년 개발은 오늘날 미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 보호처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청소년육성이나 지도처럼 성인을 청소년이 이끈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직업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긍정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경험들을 통해서 당면할 생애주기를 청소년 스스로가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핵심 주제(topics)들을 29개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정책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단서라 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당초 28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s),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청소년(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Youth), 따돌림 예방(Bullying Prevention), 투옥된 부모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데이트 폭력 예방(Dating Violence Prevention), 장애(Disabilities), 운전자의 안전(Driver Safety), 고용(Employment), 출산을 앞두고나 현재 양육중인 청소년 부모(Expectant and Parenting Young Families), 가족의 관여(Family Engagement), 재정 능력 및 문해력(Financial Capability & Literacy), 갱단 참여 예방(Gang Involvement Prevention), 노숙과 가출/Homelessness and Runaway), 청소년 사법(Juvenile Justice),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LGBT), 정신건강(Mental Health), 멘토링(Mentoring), 청소년 기회 제공(Opportunity Youth),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 임신 예방(Pregnancy Prevention), 재해 대비와 복구(Preparedness & Recovery), 학교 분위기(School Climate), 약물사용과 오용(Substance use/misuse), 자살 예방(Suicide Prevention), 인신매매 방지(Trafficking Prevention), 성인기로의 진입(Transition & Aging Out), 폭력 예방(Violence Prevention) 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청소년 건강(Adolescent Health)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미국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청소년활동 및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WHO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에 따른 경고가 잇따르면서 청소년포털을 구축해 코로나19가 청소년의 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유행기간 동안 제한적이 되다시피 한 청소년 참여전략을 새롭게 개발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기반 전략 등을 수립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 일본

일본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5년 청소년비행 등 다양한 청소년문제들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1965년 11월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운동’ 등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육성을 국가 정책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광범위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청소년과 관계되는 시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중장기 계획·관계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내각 부(副)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대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추진본부’(이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의해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본부로 변경)를 설치한 바 있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 산하에는 부(副) 본부장(관방장관, 문부과학성대신,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등)으로 구성된 회의, 청소년 관련부서의 과장급 회의,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연락회의, 청소년비행대책을 위한 과장급회의, 커리어교육 추진회의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고, 이어 2008년 12월에 새로운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다. 2006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 및 안심 추진계획-비행,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2006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의 커리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리어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 특명담당대신을 본부장으로 각 부처의 각료가 참가하는 커리어 교육 등의 추진회의를 설치하였다. 오늘날 일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법률 제71호, 2010년 4월 1일 시행)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아동·청년육성지원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곤란을 겪는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아동·청년비전(vi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을 수립(2010. 6.)하여 모든 아동과 청년의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영위 지원, 취약 아동·청년 및 가정 지원,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정비 등의 3가지 우선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표 1-3-7〉 일본 아동·청년비전의 우선과제(priority issues)

구분	세부우선과제
모든 아동·청년의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영위 지원	1. 아동·청년의 자아형성 지원 2. 아동·청년의 사회형성 및 사회참여 지원 3. 아동·청년의 건강 및 안전 확보 4. 청년의 직업적 자립 및 취업 지원
취약 아동·청년 및 가정 지원	5. 취약 상황별 대응 6. 아동·청년의 피해방지 및 보호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정비	7. 환경 정비 8. 성인 사회구조의 재검토

자료 : 일본 내각부(2010). 아동·청년비전 <http://www8.cao.go.jp/youth/wakugumi.html>(영문판)에서 2019년 11월 25일 인출.

일본 정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하여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본부(본부장 : 총리)를

구성하고, 여기서 아동·청년육성추진대강을 수립하면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를 추진하는 노력의 의무를 갖는다. 2016년 2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 본부에서 결정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의 5대 중점과제는 아래와 같다.

- ①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육성
 -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 학력과 체력의 향상, 규범이나 리(원리, 이치)의 마음(りの心)의 함양
 -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육성
 -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아동·청년 육성지원에 관한 상담창구 정비 촉진
- ②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연령으로 단절되지 않는 새로운 네트워크 및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횡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
 -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아웃리치(방문지원)의 충실
 - 아동의 빈곤대책, 아동학대 방지대책 강화
- ③ 아동·청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
 - 지역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체험, 교류활동의 충실
 -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이용
- ④ 아동·청년의 성장을 돕는 담당자의 양성
 - 관과 민의 제휴와 협력을 통한 지역에서의 공조기능 충실
 - 종합적인 지식을 가진 코디네이터의 양성
- ⑤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아동·청년 지원
 - 글로벌 인재, 과학기술 인재 육성
 -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적응하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지원

자료 :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taikou_gaiyou.pdf에서 2019년 11월 25일 인출.

둘째,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청년기의 단계까지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개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연계하여 수상 직속 ‘국무조정실(내각부)’과 ‘문부과학성’ 등 별도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법적 근거로 2010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청소년 기획, 지원, 환경정비, 국제교류 등 아동·청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관계 부처 사무의 연락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문부과학성’은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로서 청소년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의 지원, 유해환경 대책 및 각종 청소년교육활동과 환경·시설 등을 관장한다. 특히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 제정되면서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

(약 18~30세 미만)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청년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가 정책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최소한 0~30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과제 및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장애(LD)’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장학금제도의 확충, 생활보호,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행소년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원조교제, 집단따돌림(이지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장애, 비행 및 학교중도 탈락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에 관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의료, 복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분야 전문가 등), 청소년지원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학교 내 상담체제의 구축,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학교재량권의 확대, 선택제 수업의 확충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보사회, 소비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회 및 제도적 장치로 ‘타운홀 미팅’, ‘모니터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 계몽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제2부 요약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현황과 동태, 청소년 인구 규모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환경의 현황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1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83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70년대에는 총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9.6%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의 생활환경 현황을 가족·학교(2020년 기준), 미디어환경(2020년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양육자의 만족도는 약 90.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의 양육자가 높은 연령대의 양육자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 10점 중 8.0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환경에 대해서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학업성취도는 보통(49.6%), 우수한 편(4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7%였다. 한편, 청소년이 수업시간에 재미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으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73.7%의 청소년이 진로와 직업 수업을 경험하였으며, 진로와 직업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62.2%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환경에서 10대 청소년은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98.5%이고, 1주일간 평균 27.6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용도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은 교육학습(99.9%), 여가활동(99.1%), 커뮤니케이션(98.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2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99.3%였고, 주당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9.5시간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용도는 자료정보검색이 100%, 커뮤니케이션이 99.9%, 여가활동이 99.8%를 차지하였다.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

제1장 청소년 인구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02

제1장 청소년 인구

1. 청소년 인구 현황

가. 연령별 청소년 인구

2021년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83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82만여 명 중 약 16.2%를 차지하는 수치다. 9~24세 청소년 인구 중 24세 인구가 각각 8.4%로 가장 많은 반면, 15세 인구는 5.1%로 청소년 인구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 1백 명당 남자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2021년 기준 9~24세 청소년 인구의 경우 107.8명으로 청소년의 남녀 간 인구 규모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세 인구의 성비는 1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세의 인구 성비는 104.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1〉 2021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단위 : 천 명,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0세	273	-	2.3	139	133	104.5
1세	291	-	2.5	149	141	105.7
2세	319	-	2.7	164	155	105.8
3세	347	-	3.0	178	169	105.3
4세	385	-	3.3	197	187	105.3
5세	428	-	3.6	219	209	104.8
6세	440	-	3.7	225	215	104.7
7세	432	-	3.7	221	210	105.2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8세	459	-	3.9	235	224	104.9
9세	468	5.6	4.0	240	227	105.7
10세	476	5.7	4.0	244	231	105.6
11세	440	5.2	3.7	227	213	106.6
12세	447	5.3	3.8	230	216	106.5
13세	480	5.7	4.1	247	232	106.5
14세	452	5.4	3.8	233	219	106.4
15세	431	5.1	3.7	223	208	107.2
16세	439	5.2	3.7	227	212	107.1
17세	472	5.6	4.0	245	227	107.9
18세	479	5.7	4.1	249	230	108.3
19세	522	6.2	4.4	271	250	108.4
20세	613	7.3	5.2	318	294	108.2
21세	643	7.7	5.5	335	308	108.8
22세	640	7.6	5.4	335	305	109.8
23세	680	8.1	5.8	354	325	108.9
24세	701	8.4	6.0	367	333	110.2
계(9~24세)	8,383	100	-	4,345	4,030	107.8
계(0~24세)	11,757	-	100	6,072	5,673	107.0

주 :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 청소년 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960년 796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01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출산율의 감소로 청소년 인구도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2000년에는 1,150만 명, 2020년에는 854만여 명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 수는 2030년에 654만 명, 2040년에 531만 명, 2050년에는 52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2060년에는 446만 명, 2070년에는 36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전체 인구의 31.8%에서 1980년에 36.8%까지 계속 증가하다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0년에는 24.5%, 2020년에는 16.5%까지 낮아졌다. 이후에도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12.6%, 2060년에는 10.4%까지 줄어듦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1960년대에 연평균 2%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0~1995년에는 1.01%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이 나타나고, 이는 207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성장률은 1965년 3.72%로 총인구 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80년에는 1.15%, 1985년에는 -0.95%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 인구성장률은 2030년에 -2.41%, 2050년에 -0.55%, 그리고 2070년에 -2.37%로 향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연평균 성장률	청소년 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1960	25,012,374	-	7,956,903	4,072,726	3,884,177	31.8	-
1965	28,704,674	2.54	9,120,576	4,699,931	4,420,645	31.8	3.72
1970	32,240,827	2.18	11,329,714	5,848,491	5,481,223	35.1	4.42
1975	35,280,725	1.68	12,885,563	6,651,771	6,233,792	36.5	2.25
1980	38,123,775	1.56	14,014,932	7,216,195	6,798,737	36.8	1.15
1985	40,805,744	0.98	13,974,697	7,187,699	6,786,998	34.2	-0.95
1990	42,869,283	0.99	13,553,357	6,990,839	6,562,518	31.6	-0.06



연도	총인구	연평균 성장률	청소년 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1995	45,092,991	1.01	12,751,383	6,581,311	6,170,072	28.3	-2.28
2000	47,008,111	0.84	11,501,436	5,987,274	5,514,162	24.5	-1.36
2005	48,184,561	0.21	11,022,283	5,799,481	5,222,802	22.9	-1.51
2010	49,554,112	0.50	10,370,213	5,468,113	4,902,100	20.9	-0.48
2015	51,014,947	0.53	9,653,802	5,080,852	4,572,950	18.9	-2.04
2020	51,780,579	0.14	8,541,708	4,447,614	4,094,094	16.5	-2.58
2025	51,905,126	0.03	7,449,812	3,846,561	3,603,251	14.4	-2.73
2030	51,926,953	-0.03	6,543,356	3,362,034	3,181,322	12.6	-2.41
2035	51,629,895	-0.18	5,822,383	2,986,050	2,836,333	11.3	-1.86
2040	50,855,376	-0.38	5,309,633	2,721,856	2,587,777	10.4	-1.59
2045	49,574,038	-0.60	5,224,223	2,678,649	2,545,574	10.5	0.35
2050	47,744,500	-0.86	5,235,101	2,685,091	2,550,010	11.0	-0.55
2055	45,405,902	-1.09	4,902,818	2,514,390	2,388,428	10.8	-1.66
2060	42,837,900	-1.20	4,458,075	2,285,661	2,172,414	10.4	-2.04
2065	40,293,293	-1.24	4,007,214	2,053,967	1,953,247	9.9	-2.13
2070	37,655,867	-1.24	3,612,695	1,857,005	1,755,690	9.6	-2.37

주 : 1) 연평균 인구 성장률 = $\ln(Pt/Po)/T \times 100$ (Po : 기준연도 인구, Pt : 비교연도 인구, T : 비교기간).

2) 인구 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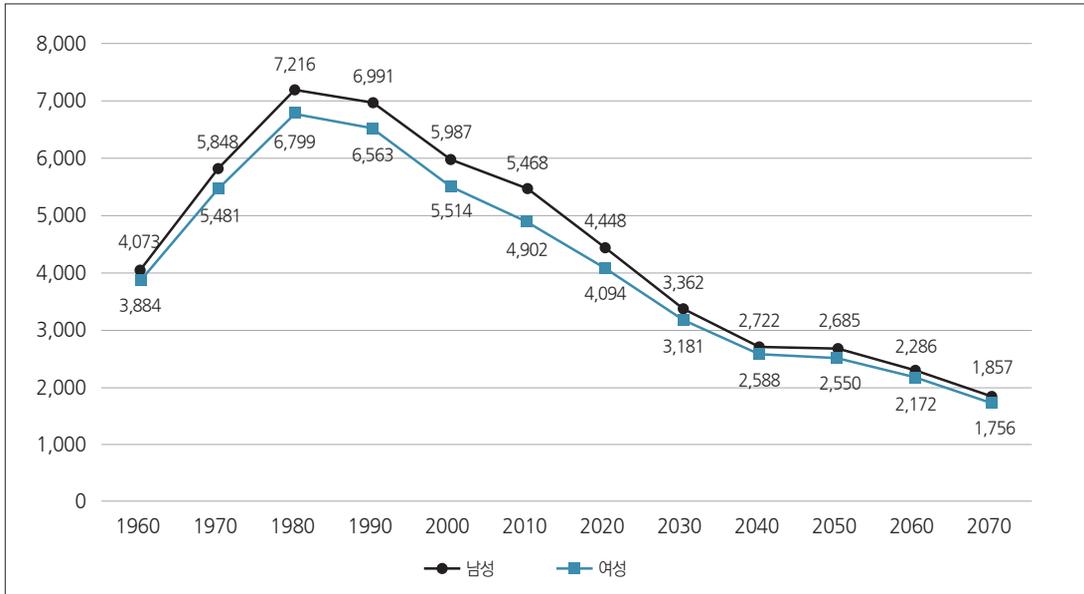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그림 2-1-1]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3. 청소년 인구 동태

인구동태 통계(Vital statistics)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변동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통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다양한 인구동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2천여 명, 사망자 수는 약 30만 5천 명이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자연증가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약 3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셈이다.

출생아 수는 1970년 약 1백만 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절반 이하의 수준인 약 43만 5천 명까지 감소했다. 201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사망자 수는 1970년 약 25만 8천 명에서 증가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약 24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25만 5천 명, 2015년에는 약 27만 5천 명, 2018년에는 약 29만 8천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약 29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약 30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2020년 연간 혼인 건수는 약 21만 건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만 5천 건이 감소하였고, 2020년의 이혼 건수는 약 10만 건으로 2019년에 비해 4천 3백 건 감소했다. 혼인은 1980년 약 40만 3천 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5년 약 31만 4천 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7년에는 약 34만 4천 건까지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다시 약 30만 9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약 21만 3천 건까지 감소했다. 반면 이혼은 1970년 약 1만 2천 건에서 2005년 약 12만 8천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약 10만 8천 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 약 11만 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약 10만 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단위 : 명, 건수)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1970	1,006,645	258,589	748,056	295,137	11,615
1975	874,030	270,657	603,373	283,226	16,453
1980	862,835	277,284	585,551	403,031	23,662
1985	655,489	240,418	415,071	384,686	38,187
1990	649,738	241,616	408,122	399,312	45,694
1995	715,020	242,838	472,182	398,484	68,279
2000	634,501	246,163	388,338	332,090	119,455
2005	435,031	243,883	191,148	314,304	128,035
2006	448,153	242,266	205,887	330,634	124,524
2007	493,189	244,874	248,315	343,559	124,072
2008	465,892	246,113	219,779	327,715	116,535
2009	444,849	246,942	197,907	309,759	123,999
2010	470,171	255,405	214,766	326,104	116,858
2011	471,265	257,396	213,869	329,087	114,284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2012	484,550	267,221	217,329	327,073	114,316
2013	436,455	266,257	170,198	322,807	115,292
2014	435,435	267,692	167,743	305,507	115,510
2015	438,420	275,895	162,525	302,828	109,153
2016	406,243	280,827	125,416	281,635	107,328
2017	357,771	285,534	72,237	264,455	106,032
2018	326,822	298,820	28,002	257,622	108,684
2019	302,676	295,110	7,566	239,159	110,831
2020	272,337	304,948	-32,611	213,502	106,5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2020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5.3명으로 전년(5.9명)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시점인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5.9명으로 전년(5.7명)보다 0.2명 증가하였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차감한 자연증가율은 2020년 기준 -0.6명이었다.

2020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4.2건으로 2019년보다 0.5건 감소했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2.1건으로 2018년보다 0.1건 감소하였다.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을 추이

(단위 : 건(명), 1천 명당)

연도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1970	31.2	8.0	23.2	9.2	0.4
1975	24.8	7.7	17.1	8.0	0.5
1980	22.6	7.3	15.4	10.6	0.6
1985	16.1	5.9	10.2	9.4	0.9
1990	15.2	5.6	9.5	9.3	1.1
1995	15.7	5.3	10.3	8.7	1.5
2000	13.3	5.2	8.2	7.0	2.5



연도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05	8.9	5.0	3.9	6.5	2.6
2010	9.4	5.1	4.3	6.5	2.3
2011	9.4	5.1	4.3	6.6	2.3
2012	9.6	5.3	4.3	6.5	2.3
2013	8.6	5.3	3.4	6.4	2.3
2014	8.6	5.3	3.3	6.0	2.3
2015	8.6	5.4	3.2	5.9	2.1
2016	7.9	5.5	2.5	5.5	2.1
2017	7.0	5.6	1.4	5.2	2.1
2018	6.4	5.8	0.5	5.0	2.1
2019	5.9	5.7	0.1	4.7	2.2
2020	5.3	5.9	-0.6	4.2	2.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가. 출생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여 명,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5.3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 및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의 미혼자 비중이 늘고 초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2007년 출생아 수가 49만 3천여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과 2009년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이후에는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5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6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인구 1천 명당)

연도	출생아 수	증감		1일 평균	조출생률
		증감	증감률		
1995	715,020	-	-	1,959	15.7
1996	691,226	-23,794	-3.3	1,894	15.0
1997	668,344	-22,882	-3.3	1,831	14.4
1998	634,790	-33,554	-5.0	1,739	13.6
1999	614,233	-20,557	-3.2	1,683	13.0
2000	634,501	20,268	3.3	1,738	13.3
2001	554,895	-79,606	-12.5	1,520	11.6
2002	492,111	-62,784	-11.3	1,348	10.2
2003	490,543	-1,568	-0.3	1,344	10.2
2004	472,761	-17,782	-3.6	1,295	9.8
2005	435,031	-37,730	-8.0	1,192	8.9
2006	448,153	13,122	3.0	1,228	9.2
2007	493,189	45,036	10.0	1,351	10.0
2008	465,892	-27,297	-5.5	1,276	9.4
2009	444,849	-21,043	-4.5	1,219	9.0
2010	470,171	25,322	5.7	1,288	9.4
2011	471,265	1,094	0.2	1,291	9.4
2012	484,550	13,285	2.8	1,328	9.6
2013	436,455	-48,095	-9.9	1,196	8.6
2014	435,435	-1,020	-0.2	1,193	8.6
2015	438,420	2,985	0.7	1,201	8.6
2016	406,243	-32,177	-7.3	1,113	7.9
2017	357,771	-48,472	-11.9	980	7.0
2018	326,822	-30,949	-8.7	895	6.4
2019	302,676	-24,146	-7.4	829	5.9
2020	272,337	-30,339	-10.0	746	5.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2019년 0.918명에 비해 약 0.081명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지속적으로 1.3명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18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집계되었다.

2020년 출생아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이 78.9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이 42.3명,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이 30.6명 순으로 높았다. 미혼과 만혼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출산 연령층이 높아져 2007년에 처음으로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은 2000년 149.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30.6명까지 급감했다.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은 2000년 83.5명에서 2016년 110.1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97.7명)부터 2020년(78.9명)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도 2000년 17.2명에서 2016년 48.7명으로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47.2명)부터 2020년 42.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출산율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1.467
2001	2.2	31.4	129.2	77.5	17.0	2.4	0.2	1.297
2002	2.6	26.5	110.9	74.5	16.6	2.4	0.2	1.166
2003	2.5	23.6	111.7	79.1	17.1	2.4	0.2	1.180
2004	2.3	20.6	104.5	83.2	18.2	2.4	0.2	1.154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1.076
2006	2.2	17.6	89.4	89.4	21.2	2.6	0.2	1.123
2007	2.2	19.5	95.5	101.3	25.6	3.1	0.2	1.250
2008	1.7	18.2	85.6	101.5	26.5	3.2	0.2	1.192
2009	1.7	16.5	80.4	100.8	27.3	3.4	0.2	1.149
2010	1.8	16.5	79.7	112.4	32.6	4.1	0.2	1.226
2011	1.8	16.4	78.4	114.4	35.4	4.6	0.2	1.244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출산율
2012	1.8	16.0	77.4	121.9	39.0	4.9	0.2	1.297
2013	1.7	14.0	65.9	111.4	39.5	4.8	0.1	1.187
2014	1.6	13.1	63.4	113.8	43.2	5.2	0.1	1.205
2015	1.4	12.5	63.1	116.7	48.3	5.6	0.2	1.239
2016	1.3	11.5	56.4	110.1	48.7	5.9	0.2	1.172
2017	1.0	9.6	47.9	97.7	47.2	6.0	0.2	1.052
2018	0.9	8.2	41.0	91.4	46.1	6.4	0.2	0.977
2019	0.8	7.1	35.7	86.2	45.0	7.0	0.2	0.918
2020	0.7	6.2	30.6	78.9	42.3	7.1	0.2	0.837

주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가임여자 1명당 명)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020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4.8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는 105를 기준으로 ± 2 (103~107) 수준을 의미한다. 출생성비는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4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강화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 정상 성비 범위인 106.2 수준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정상 성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의 출산순위별로도 출생성비는 모두 정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성비는 각각 104.8과 104.7로,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성비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06.6으로 2019년 103.2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백 명당 남아 수)

연도	총출생성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2000	110.2	106.3	107.4	144.2
2001	109.1	105.5	106.4	141.5
2002	110.0	106.5	107.3	141.4
2003	108.7	104.9	107.0	136.9



연도	총출생성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2004	108.2	105.1	106.2	133.0
2005	107.8	104.8	106.5	128.5
2006	107.5	105.7	106.0	121.9
2007	106.2	104.5	106.0	115.7
2008	106.4	104.9	105.6	116.7
2009	106.4	105.1	105.8	114.3
2010	106.9	106.4	105.8	110.9
2011	105.7	105.0	105.3	109.5
2012	105.7	105.3	104.9	109.2
2013	105.3	105.4	104.5	108.0
2014	105.3	105.6	104.6	106.7
2015	105.3	105.9	104.5	105.6
2016	105.0	104.4	105.2	107.4
2017	106.3	106.5	106.1	106.4
2018	105.4	105.2	105.8	106.0
2019	105.5	106.2	105.3	103.2
2020	104.8	104.8	104.7	106.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나. 사망

2020년 총 사망자 약 30만 5천 명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1,88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0.6%를 차지한다. 청소년 사망자 중 10~14세는 10.8%(203명), 15~19세는 29.9%(563명), 20~24세는 59.3%(1,118명)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에 비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운수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높다. 청소년 사망의 68.8%인 1,297명은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었고,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211명(11.2%), 순환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87명(4.6%)의 순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연령의 사망원인은 신생물이 27.5%,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20.4%, 호흡계통의 질환 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및 징후 10.4%,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 8.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8〉 2020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사망원인	총 사망		청소년 사망						
	계	구성비	사망자 수			연령별 구성비			
			남녀 전체	남자	여자	10~24세	10~14세	15~19세	20~24세
전 체	304,948	100.0	1,884	1,136	748	100.0	100.0	100.0	100.0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0,419	3.4	15	5	10	0.8	0.5	0.7	0.9
신생물	83,776	27.5	211	138	73	11.2	24.1	11.4	8.8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과 면역 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880	0.3	17	9	8	0.9	2.0	1.1	0.6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0,052	3.3	22	12	10	1.2	2.5	0.9	1.1
정신 및 행동장애	4,348	1.4	6	2	4	0.3	1.0	0.2	0.3
신경계통의 질환	13,790	4.5	80	55	25	4.2	7.9	3.7	3.8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1	0.0	0	0	0	0.0	0.0	0.0	0.0
귀 및 유도의 질환	5	0.0	0	0	0	0.0	0.0	0.0	0.0
순환계통의 질환	62,196	20.4	87	61	26	4.6	9.4	3.9	4.1
호흡계통의 질환	36,368	11.9	31	17	14	1.6	1.0	2.3	1.4
소화계통의 질환	12,870	4.2	14	9	5	0.7	1.5	0.5	0.7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568	0.2	1	1	0	0.1	0.0	0.2	0.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413	0.5	9	1	8	0.5	1.5	0.5	0.3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9,343	3.1	6	3	3	0.3	0.0	0.5	0.3
임신, 출산 및 산후기	36	0.0	1	0	1	0.1	0.0	0.2	0.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331	0.1	1	0	1	0.1	0.0	0.2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09	0.1	26	15	11	1.4	2.5	1.2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31,801	10.4	60	34	26	3.2	3.9	1.8	3.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26,442	8.7	1,297	774	523	68.8	42.4	70.7	72.7

자료 : 통계청(2021). 사망원인통계.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청소년의 생활환경은 가족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미디어환경이 중심이 되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가족환경

가족환경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청소년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족구성 현황, 가구의 세대구성, 자녀가치관,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사회조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청소년 친화적 가족활동 요구조사를 근거로 하였다.

가. 가족구성 현황

가구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이다.

1975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 친족가구의 비율 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했다. 2020년 총 가구 수는 약 2,148만 가구로, 2015년에 비해 약 192만여 가구가 증가했고, 1975년에 비해서는 약 1,473만 가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2.3명으로 2015년보다 0.3명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75년 5.0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 이후 부터는 3명 이하로 줄었고,

2020년에는 2.3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단위 : 가구, 명)

연도	총 가구 수	일반가구 ¹⁾ 수	집단가구 ²⁾ 수	평균 가구원 수
1975	6,754,257	6,647,778	106,479	5.0
1980	7,992,968	7,969,201	23,767	4.5
1985	9,598,796	9,571,361	27,435	4.1
1990	11,370,160	11,354,540	15,620	3.7
1995	12,974,194	12,958,181	16,013	3.3
2000	14,326,224	14,311,807	14,417	3.1
2005	15,903,679	15,887,128	16,551	2.9
2010	17,574,067	17,339,422	20,727	2.7
2015	19,560,603	19,111,030	16,464	2.6
2018	20,499,543	19,979,188	17,209	2.4
2019	20,891,348	20,343,188	16,729	2.4
2020	21,484,785	20,926,710	16,388	2.3

주 :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대에는 1인 단독가구를 추정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나. 가구의 세대구성

2020년의 세대구성 유형별 가구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총 가구(일반가구 기준)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44.1%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31.7%, 1세대 가구 18.6%, 3세대 가구 3.6%, 비혈연가구 2.0%, 4세대 이상 가구 0.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2세대 가구 비율은 4.7%p 감소한 반면, 1세대 가구는 1.2%p, 1인 가구는 4.5%p, 비혈연가구는 0.9%p 증가했다.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동지역이 45.6%, 읍면지역은 37.1%로 읍면지역의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세대 가구 비중은 동지역이 17.4%, 읍면지역이 23.3%로 읍면지역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2-2〉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0년		2015년		2019년		2020년	
	가구 수	구성비						
전국	17,339	100.0	19,111	100.0	20,343	100.0	20,927	100.0
1세대 가구	3,027	17.5	3,324	17.4	3,752	18.5	3,893	18.6
2세대 가구	8,892	51.3	9,328	48.8	9,210	45.3	9,202	44.1
3세대 가구	1,063	6.1	1,029	5.4	840	4.1	760	3.6
4세대 이상 가구	13	0.1	11	0.1	6.9	0.0	5.4	0.0
1인 가구	4,142	23.9	5,203	27.2	6,148	30.2	6,643	31.7
비혈연가구	202	1.2	214	1.1	387	1.9	423	2.0
동지역	14,031	100.0	15,488	100.0	16,437	100.0	16,897	100.0
1세대 가구	2,182	15.6	2,504	16.2	2,844	17.3	2,953	17.4
2세대 가구	7,599	54.2	7,879	50.9	7,727	47.0	7,709	45.6
3세대 가구	842	6.0	810	5.2	663	4.0	600	3.6
4세대 이상 가구	9	0.1	8	0.1	5	0.0	4	0.0
1인 가구	3,244	23.1	4,125	26.6	4,899	29.9	5,300	31.4
비혈연가구	156	1.1	163	1.1	300	1.8	331	2.0
읍면지역	3,308	100.0	3,623	100.0	3,906	100.0	4,030	100.0
1세대 가구	846	25.6	821	22.7	908	23.2	9,403	23.3
2세대 가구	1,294	39.1	1,449	40.0	1,482	38.0	1,493	37.1
3세대 가구	221	6.7	220	6.1	176	4.5	160	4.0
4세대 이상 가구	4	0.1	4	0.1	2	0.1	1	0.0
1인 가구	898	27.1	1,078	29.8	1,250	32.0	1,343	33.3
비혈연 가구	46	1.4	52	1.4	87	2.2	93	2.3

자료 : 통계청(2010, 2015, 2019, 202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다. 자녀가치관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치관은 <표 2-2-3>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견해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9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91.5%,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8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24.8%로 나타나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기대감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21.1%로 이는 과거 자녀의 중요한 가치였던 '가문계승' 역할의 중요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에서 25세 미만은 45.5%, 25~29세는 31.6%의 비율을 보인 반면, 30세 이상은 22.6%~25.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20대의 경우 결혼생활 초기에 직업이나 소득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노후에 대한 자녀의 의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견해 역시 20대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연령층에 결혼 직후 자녀 출산을 앞둔 기혼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3>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단위 : %)

구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	96.8	91.5	81.7	24.8	21.1	
연령	25세 미만	97.2	89.9	83.1	45.5	33.6
	25~29세	95.6	90.2	83.1	31.6	29.5
	30~34세	96.9	91.6	81.4	24.7	21.8
	35~39세	97.4	91.7	81.2	22.6	19.0
	40~44세	96.2	91.7	82.1	23.7	19.9
	45~49세	96.9	91.5	81.6	25.9	22.0

주 : 기혼여성 15-49세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2-2-4>와 같다. 2020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90.7%로 2014년 90.5%, 2017년 90.2%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91.5%로 40대 91.0%, 50대 이상 87.4%에 비해 30대 이하 양육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이는 양육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성별로 여자양육자는 91.0%로 남자 양육자 87.1%보다 긍정응답률(그런 편 및 매우 그러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대도시가 92.6%로 농산어촌 91.2%, 중소도시 88.4%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자 양육자와 대도시 양육자가 다른 양육자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4> 양육관련 만족도 :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4년	0.9	8.6	59.6	30.9	
	2017년	0.3	9.5	59.3	30.9	
	2020년	0.2	9.1	62.7	28.0	
2020년	연령	30대 이하	-	8.5	58.3	33.2
		40대	0.2	8.8	63.8	27.2
		50대 이상	0.8	11.7	62.8	24.6
	성별	남자	-	12.9	67.6	19.5
		여자	0.3	8.7	62.1	28.9
	지역별	대도시	0.2	7.2	64.3	28.3
		중소도시	0.4	11.2	62.2	26.2
		농산어촌	-	8.9	60.4	30.8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에 대한 견해는 <표 2-2-5>와 같다. 평소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한 편이라는 긍정응답률이 2014년 79.6%에서 2017년 75.5%로 감소하다가 2020년 81.1%로 2017년 대비 5.6%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86.9%로 40대 80.8%, 50대 이상 74.4%보다 30대 이하 양육자의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 여자 양육자는 82.0%로 남자 양육자 72.8% 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농산어촌, 대도시가 각각 83.1%로 중소도시 78.1%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자 양육자와 농산어촌, 대도시 양육자가 다른 양육자에 비해 자녀와 충분하게 대화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2-5〉 양육관련 만족도 : 평소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하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4년	1.1	19.3	59.3	20.3	
	2017년	0.7	23.8	53.5	22.0	
	2020년	0.5	18.4	61.3	19.8	
2020년	연령	30대 이하	-	13.1	64.4	22.5
		40대	0.5	18.7	61.1	19.7
		50대 이상	1.2	24.4	58.2	16.2
	성별	남자	1.2	26.0	60.5	12.3
		여자	0.4	17.5	61.4	20.6
	지역별	대도시	0.4	16.5	60.8	22.3
		중소도시	0.6	21.2	61.0	17.1
		농산어촌	0.4	16.5	63.1	20.0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는 〈표 2-2-6〉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로 2012년에는 자녀가 대학졸업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20.4%,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5.7%, 고등학교 졸업까지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7.2%,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10.4%,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8년에는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가 5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7.4%,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14.7%,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62.4%로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를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에는 59.2%로 3.2%p 감소하였다. 유사하게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8.8%에서 2018년 7.1%로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에 자녀양육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는 약간 증가하였고,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10.4%에서 2018년 14.7%로 4.3%p 증가하였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소 증가한 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은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6〉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12년, 2015년, 2018년)

(단위 : %)

구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
2012년	8.9	49.6	15.7	20.4	4.6	-	0.8	100.0
2015년	10.4	62.4	17.2	8.8	1.2	-	-	100.0
2018년	14.7	59.2	17.4	7.1	1.6	-	-	100.0

자료 : 1)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표 2-2-7〉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는 2017년 71.9%에서 2020년 83.7%로 11.8%p 증가하였다. 자녀 사교육비에 대해 80% 이상의 양육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40대에서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 40대에서는 84.9%, 30대 이하에서는 83.2%가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데 반해 50대 이상에서는 77.8%만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상에서는 학령기 자녀가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성별로 여자 84.6%가 남자 75.4%보다 사교육비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중소도시 85.4%, 대도시 82.3%, 농산어촌 83.0%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양육자가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양육자의 경우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양육자의 연령이나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경우이건 10명 중 최소 7~8명 이상이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7년	8.3	19.9	53.5	18.4	
	2020년	0.8	15.5	65.0	18.7	
2020년	연령	30대 이하	1.3	15.6	64.7	18.5
		40대	0.5	14.5	65.7	19.2
		50대 이상	1.9	20.4	61.3	16.5
	성별	남자	0.7	23.9	62.6	12.8
		여자	0.8	14.5	65.2	19.4
	지역별	대도시	0.8	16.9	65.6	16.7
		중소도시	1.0	13.6	62.6	22.8
		농산어촌	0.6	16.4	68.4	14.6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라.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및 대화시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부모님과 대화시간,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자,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은 〈표 2-2-8〉과 같다. 2017년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중 저녁식사가 가장 많았다.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이 27.0%, 주 4~6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24.0%, 주 1~3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32.9%,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 4.5%이었다. 저녁식사 이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0%의 청소년은 부모와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도와 유사하게 2020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부모와 같이하는 활동은 저녁식사가 가장 많았다.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는 청소년은 31.4%, 주 4~6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26.1%, 주 1~3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28.1%,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 3.4%이었다. 2017년보다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은 증가하였고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 감소했다. 2017년보다 2020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는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이 소폭 감소하였다. 즉,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를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은 2017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2017년 19.2%에서 2020년 19.8%로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2-2-8〉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단위 : %)

구분		거의 안함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해당 없음	계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2017년	25.9	38.8	24.2	5.9	5.3	-	100.0
	2020년	18.9	44.9	25.3	5.9	5.0	-	100.0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2017년	16.3	29.8	28.1	9.2	9.1	7.3	100.0
	2020년	12.7	31.6	30.0	11.0	6.7	8.0	100.0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2017년	27.0	36.4	24.8	6.8	5.0	-	100.0
	2020년	23.3	35.9	27.9	8.5	4.5	-	100.0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	2017년	62.0	25.0	9.3	2.1	1.5	-	100.0
	2020년	60.1	23.6	10.8	3.7	1.7	-	100.0
여가활동 (영화, 운동, 외식, 여행 등)	2017년	19.2	41.4	26.5	7.9	5.0	-	100.0
	2020년	19.8	37.9	27.9	9.9	4.5	-	100.0
저녁식사	2017년	4.5	11.6	32.9	24.0	27.0	-	100.0
	2020년	3.4	11.0	28.1	26.1	31.4	-	100.0

주 : 1) 해당 없음은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계시지 않는 경우,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를 의미함.

2) 2017년에는 부모님 외에 양육자를 포함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항목만 '해당 없음' 있음.

자료 : 1)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부모와 청소년 관점에서 최근 1년간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유형을 보면 〈표 2-2-9〉와 같다. 지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1순위로 학부모는 외식 88.2%, 청소년은 TV보기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부모와 청소년이 인식한 여가문화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학부모는 영화보기 82.5%, TV보기 81.2%,

쇼핑 78.3%, 국내여행 72.1%,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41.6%, 캠핑, 자연학습 34.2%, 스포츠 관람 27.5%, 해외여행 27.3%, 종교 활동, 사회봉사 27.2%, 등산, 트레킹 27.1%, 스포츠 참여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은 외식 79.0%, 영화보기 68.9%, 쇼핑 67.3%, 국내여행 49.1%, 스포츠 관람 17.3%, 해외여행 16.5%, 캠핑, 자연학습 16.4%, 등산, 트레킹 15.7%, 종교 활동, 사회봉사 15.4%,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13.6%, 스포츠 참여 7.7%,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활동이 없음 2.8% 순이었다.

성별로 학부모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 외식이 86.3%와 9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남자는 TV보기 81.5%, 영화보기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는 영화보기 85.2%, 쇼핑 83.3% 순으로 높았다.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남자는 국내여행 73.9%, 쇼핑 73.2%,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38.8% 순이었지만 여자는 TV보기 80.9%, 국내여행 70.3%,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4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은 남녀 청소년 모두 TV보기가 77.1%와 8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은 외식 70.3%, 영화보기 62.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외식 83.3%, 쇼핑 75.0%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은 쇼핑 52.0%, 국내여행 41.0%, 스포츠 관람 17.1%, 등산, 트레킹 15.1% 순이었던 반면, 여자 청소년은 영화보기 72.0%, 국내여행 53.2%, 캠핑, 자연학습 18.1%, 해외여행 18.0%, 스포츠 관람 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9〉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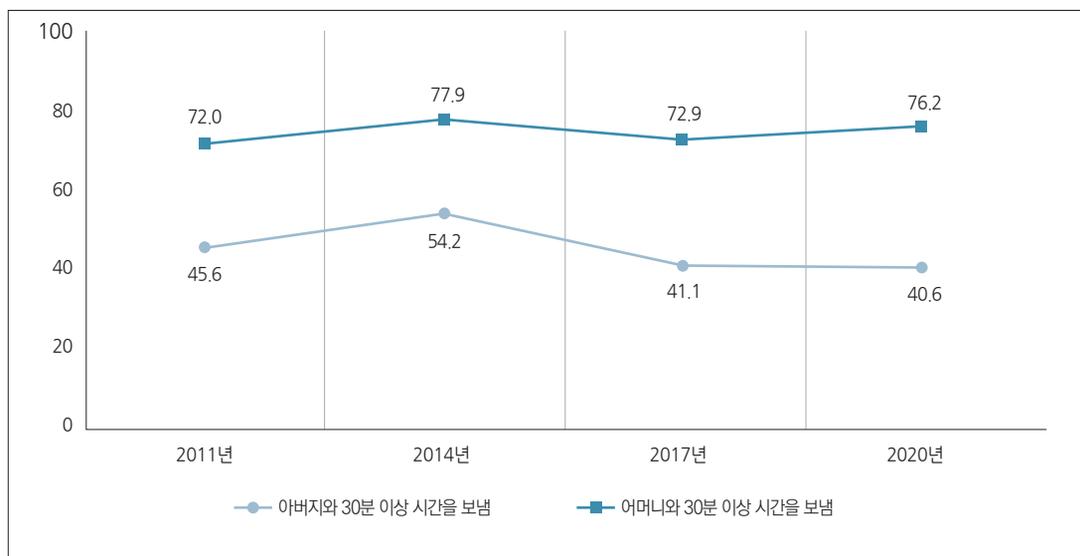
구분	TV 보기	영화 보기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등산, 트레킹	캠핑, 자연 학습	종교 활동, 사회 봉사	외식	쇼핑	없음	
학부모	전체	81.2	82.5	41.6	27.5	17.0	72.1	27.3	27.1	34.2	27.2	88.2	78.3	0.7
	남자	81.5	79.7	38.8	32.3	22.8	73.9	26.4	29.9	34.8	26.8	86.3	73.2	0.8
	여자	80.9	85.2	44.4	22.7	11.2	70.3	28.3	24.3	33.6	27.6	90.1	83.3	0.7
청소년	전체	84.5	68.9	13.6	17.3	7.7	49.1	16.5	15.7	16.4	15.4	79.0	67.3	2.8
	남자	77.1	62.7	8.2	17.1	7.4	41.0	13.7	15.1	13.1	13.3	70.3	52.0	5.4
	여자	88.2	72.0	16.3	17.4	7.8	53.2	18.0	16.1	18.1	16.5	83.3	75.0	1.5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대화시간을 포함하여 주중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림 2-2-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가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2011년 45.6%에서 2014년 54.2%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41.1%, 2020년 40.6%로 감소하였다. 어머니와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2011년에 72.0%에서 2014년 77.9%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72.9%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76.2%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7년과 비교하여 3년간 아버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시간은 0.5%p 줄어든 반면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3.3%p 증가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면서 대화하고 돌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낸다.

[그림 2-2-1] 주중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대화시간 포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조사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별로 부모님과과의 대화 여부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표 2-2-10>과 같다. 만 9~12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94.4%로 전체 88.3%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2.4%로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72.5%, 1시간 이상 21.9%로 전체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 14.4%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18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90.9%,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5.9%로 대화하는 비율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1일 평균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76.3%, 1시간 이상 14.6%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만 19~24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83.7%,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1.3%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 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72.9%,

1시간 이상 10.8%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 및 만 13~18세보다 낮았다. 이는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낮은 연령대보다 아버지와의 대화 비율과 1일 평균 대화시간이 적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에서 만 9~12세는 98.2%로 전체 96.0%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0.2%로 낮았다. 1일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43.5%, 1시간 이상 54.7%로 전체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 39.1%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18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7.3%,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0.9%로 대화하는 비율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55.5%, 1시간 이상 41.8%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만 19~24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3.9%,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3.5%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 시간은 1시간 미만 64.1%, 1시간 이상 29.8%로 1시간 이상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보다 낮았다.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어머니와의 대화비율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이 적었으며, 이는 아버지와의 대화 비율과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2-10〉 부모님과 대화 여부 및 대화시간(1일 평균)

(단위 : %)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없음	계
아버지	전체	7.6	47.7	26.2	8.9	5.5	4.0	100.0
	만 9~12세	2.4	40.0	32.5	11.9	10.0	3.2	100.0
	만 13~18세	5.9	49.5	26.8	9.3	5.3	3.2	100.0
	만 19~24세	11.3	50.2	22.7	7.3	3.5	5.0	100.0
어머니	전체	1.9	19.8	37.1	23.6	15.5	2.1	100.0
	만 9~12세	0.2	9.6	33.9	28.6	26.1	1.6	100.0
	만 13~18세	0.9	18.1	37.4	26.1	15.7	1.8	100.0
	만 19~24세	3.5	25.7	38.4	19.5	10.3	2.6	100.0

주 : 해당없음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에서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표 2-2-11〉에 의하면, 2012년 청소년의 상담대상은 친구동료가 44.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부모, 스스로 해결, 형제자매 순으로 많았다.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에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부모와 고민상담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부터 증감을

반복하였다. 또한,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 해결이라는 응답도 증감을 반복하였다. 2012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부모 및 형제자매와 고민상담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거나 친구동료와 고민상담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중 1/4 이상은 부모와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하여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11〉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단위: %)

구분	부모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 해결	인터넷(SNS)	기타	계
2012년	24.0	5.2	44.5	21.9	-	4.5	100.0
2014년	26.1	5.5	46.2	17.6	-	4.7	100.0
2016년	24.1	5.1	44.4	21.8	-	4.5	100.0
2018년	28.0	5.1	49.1	13.8	-	4.0	100.0
2020년	27.2	6.1	43.4	19.1	1.4	2.7	100.0

주: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포함. 2020년부터 '인터넷(SNS 등)'을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

자료: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2020). 사회조사.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표 2-2-12〉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전체 8.05점이었다.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9~12세 청소년은 8.33점, 13~18세 청소년은 8.10점, 19~24세 청소년은 7.88점으로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학생은 8.09점으로 남학생 8.01점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8.24점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7.88점과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7.94점보다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표 2-2-12〉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만족	평균		
												구분	
연령별	9~12세	-	0.0	0.0	0.1	0.2	1.8	5.5	14.0	30.7	30.1	17.5	8.33
	13~18세	-	0.0	0.0	0.1	0.6	3.4	7.1	17.9	30.4	26.4	14.1	8.10
	19~24세	0.0	0.0	0.0	0.2	0.4	4.2	9.4	19.1	34.6	22.3	9.7	7.88

구분		⑩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만족	평균
성별	남	-	0.0	0.0	0.2	0.4	4.0	8.5	17.2	32.8	24.4	12.5	8.01
	여	0.0	0.0	0.0	0.1	0.5	2.8	7.1	18.1	32.0	26.3	13.1	8.09
지역별	대도시	0.0	0.0	0.0	0.1	0.3	2.2	5.7	14.9	32.3	29.9	14.6	8.24
	중소도시	-	0.0	0.0	0.2	0.7	4.2	9.4	20.2	33.1	20.9	11.3	7.88
	농산어촌	-	0.0	0.0	0.2	0.2	4.7	9.5	18.5	31.4	23.9	11.7	7.94
전체		8.05											

자료 : 1)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기준 부모님의 비용 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2-2-13>과 같다. 모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학졸업까지는 60.7%, 그 이후 취업할 때까지 21.1%, 결혼할 때까지 5.4%로 2017년 대학졸업까지 52.0%, 취업할 때까지 18.6%보다 증가하였으며, 결혼할 때까지 5.7%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대학졸업까지는 3년 사이에 8.7%p나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목별 차이에서 대학졸업까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는 반면, 취업할 때까지와 결혼할 때까지의 비율이 낮고, 결혼할 때까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32.2%인 것으로 볼 때, 대학졸업 후 취업 이후에는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결혼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고,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대학졸업까지와 취업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도시는 대학졸업까지, 농산어촌은 취업할 때까지와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2-2-13> 부모님으로부터의 비용 지원

(단위 : %)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대학졸업까지	2010년	8.1	76.4	15.4
	2012년	6.8	77.6	15.6
	2017년	3.4	44.6	52.0
	2020년	1.9	37.4	60.7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대학졸업까지	연령	13~18세	1.6	33.4	65.0
		19~24세	2.1	40.2	57.6
	성별	남자	2.3	37.2	60.5
		여자	1.5	37.6	60.9
	지역별	대도시	1.2	37.0	61.8
		중소도시	2.6	36.3	61.1
농산어촌		2.2	40.8	57.0	
취업할 때까지	연도별	2010년	57.5	39.7	2.7
		2012년	50.3	45.6	4.1
		2017년	17.0	64.4	18.6
		2020년	9.4	69.5	21.1
	연령	13~18세	7.9	66.5	25.6
		19~24세	10.4	71.6	18.0
	성별	남자	10.3	69.3	20.4
		여자	8.4	69.7	21.9
	지역별	대도시	8.3	71.6	20.1
		중소도시	10.4	68.0	21.6
		농산어촌	9.8	67.7	22.5
	결혼할 때까지	연도별	2010년	65.3	32.8
2012년			60.9	35.4	3.7
2017년			40.5	53.8	5.7
2020년			32.2	62.4	5.4
연령		13~18세	30.8	61.9	7.3
		19~24세	33.2	62.8	4.1
성별		남자	33.5	60.9	5.6
		여자	30.8	64.0	5.2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결혼할 때까지	2020	지역별	대도시	35.4	60.1	4.6
		중소도시	30.5	63.5	6.0	
		농산어촌	28.1	65.8	6.1	

주 : 1) 무응답(2012년 무응답률(0.6%))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청소년가치관조사 문항으로 2010~2012년은 중·고등학생, 2017년은 13~24세 청소년의 응답률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학교환경

학교환경은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각된 학업성취도, 학교에 대한 느낌, 진로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가. 지각된 학업성취도

2020년 청소년들이 지각한 학업성취도는 ‘보통’이 4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우수한 편’ 40.2%, ‘못하는 편’ 6.2%, ‘매우 우수’ 3.5%, ‘매우 못함’ 0.5%의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2014년과 2017년도 청소년들이 지각한 학업성취도의 순서와 동일하다. 연도별로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이 2014년 36.9%, 2017년 42.2%, 2020년 43.7%로 계속 증가한 반면, ‘못하는 편’ 혹은 ‘매우 못함’이라고 하는 청소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성취도에 대해 청소년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고민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8세 청소년은 40.5%가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9~12세 청소년은 49.1%가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46.0%로 남자 청소년 41.6%보다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14〉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단위 : %)

구분		매우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우수한 편	매우 우수	
전체	2014년	2.5	15.7	44.9	28.0	8.9	
	2017년	1.2	8.6	48.0	38.2	4.0	
	2020년	0.5	6.2	49.6	40.2	3.5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 (9~12세)	0.4	5.8	44.7	44.5	4.6
		중·고생 (13~18세)	0.5	6.5	52.5	37.6	2.9
	성별	남	0.6	7.2	50.5	38.8	2.8
		여	0.3	5.2	48.5	41.7	4.3
	지역별	대도시	0.5	4.9	46.9	44.5	3.2
		중소도시	0.3	6.8	52.7	36.2	4.1
		농산어촌	0.7	7.8	48.5	39.8	3.2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나. 학교에 대한 느낌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2020년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의 경우, ‘그런 편이다’가 6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2%, ‘매우 그렇다’ 7.1%, ‘전혀 그렇지 않다’ 1.2%의 순이었다. 2017년의 경우에도 ‘그런 편이다’ 6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6%, ‘매우 그렇다’ 9.1%, ‘전혀 그렇지 않다’ 1.6%의 순이었다.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2014년 69.5%에 이어 2017년 71.8%, 2020년 76.6%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연령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83.4%, 13~18세 청소년은 72.2%로 9~12세 청소년이 11.2%p 더 높았다. 이것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대도시 청소년이 78.9%, 중소도시 75.8%, 농산어촌 73.4%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이 79.2%로 남자 청소년 74.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2-15〉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6.7	23.8	56.0	13.5	
	2017년	1.6	26.6	62.7	9.1	
	2020년	1.2	22.2	69.5	7.1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6	16.0	73.2	10.2
		중·고생(13~18세)	1.5	26.2	67.0	5.2
	성별	남	1.2	24.7	67.8	6.3
		여	1.2	19.6	71.2	8.0
	지역별	대도시	0.6	20.4	72.6	6.3
		중소도시	1.4	22.9	67.3	8.5
		농산어촌	1.8	24.8	67.4	6.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의 경우, 2020년 ‘그런 편이다’가 6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8%, ‘매우 그렇다’ 14.2%, ‘전혀 그렇지 않다’ 1.0%의 순이었다. 2014년 긍정응답률은 56.3%, 2017년 71.6%, 2020년 7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과거보다 학생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77.4%, 13~18세 청소년은 72.3%로 9~12세 청소년이 5.1%p 더 높았다. 한편 성별과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2-16〉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11.2	32.5	46.9	9.4	
	2017년	1.9	26.4	57.1	14.5	
	2020년	1.0	24.8	60.0	14.2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7	21.9	61.5	15.9
		중·고생(13~18세)	1.3	26.4	59.2	13.1
	성별	남	1.1	25.5	60.0	13.4
		여	1.0	24.0	60.0	15.0
	지역별	대도시	1.0	24.3	58.7	16.0
		중소도시	1.0	25.6	59.6	13.8
농산어촌		1.0	23.8	63.6	11.3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2020년에는 ‘그런 편이다’가 6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4%, ‘매우 그렇다’ 15.7%, ‘전혀 그렇지 않다’ 0.9%의 순이었다. 2017년에는 ‘그런 편이다’ 63.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2%, ‘매우 그렇다’ 15.9%, ‘전혀 그렇지 않다’ 1.7%로 나타났다.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긍정응답률은 2014년 65.6%, 2017년에는 79.1%에 이어 2020년에는 80.6%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학교가 좋은 분위기라고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가 점차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85.2%, 13~18세 청소년은 78.3%로 9~12세 청소년이 6.9%p 더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7〉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10.0	24.4	53.7	11.9	
	2017년	1.7	19.2	63.2	15.9	
	2020년	0.9	18.4	64.9	15.7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5	14.3	66.2	19.0
		중·고생(13~18세)	1.3	20.4	64.2	14.1
	성별	남	1.2	19.1	64.4	15.3
		여	0.7	17.6	65.5	16.2
	지역별	대도시	0.8	15.1	68.5	15.6
		중소도시	0.8	20.2	62.7	16.3
농산어촌		1.7	21.4	62.1	14.9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2020년에는 ‘그런 편이다’가 5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1%, ‘매우 그렇다’ 10.6%, ‘전혀 그렇지 않다’ 1.9%의 순이었다. 2017년에는 ‘그런 편이다’ 5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5%, ‘매우 그렇다’ 11.4%, ‘전혀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났다. 학교교칙이 엄격하다는 응답률은 2014년 53.5%, 2017년 64.2%, 2020년 66.1%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이것은 학교교칙이 엄격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가 점차적으로 교칙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학교교칙이 엄격하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64.7%, 13~18세 청소년은 67.2%로 13~18세 청소년이 2.5%p 더 높았다.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72.6%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61.6%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61.7%보다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18〉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10.0	36.5	41.3	12.2	
	2017년	3.3	32.5	52.8	11.4	
	2020년	1.9	32.1	55.5	10.6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2.5	32.7	54.1	10.6
		중·고생(13~18세)	1.4	31.4	56.8	10.4
	성별	남	1.7	32.3	55.5	10.5
		여	2.1	31.8	55.5	10.6
	지역별	대도시	1.2	26.2	61.3	11.3
		중소도시	2.5	35.9	52.2	9.4
농산어촌		2.1	36.3	50.1	11.6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의 경우, 2020년 ‘그런 편이다’ 7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6%, ‘매우 그렇다’ 9.5%, ‘전혀 그렇지 않다’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그런 편이다’ 75.0%, ‘매우 그렇다’ 1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1%, ‘전혀 그렇지 않다’ 0.6%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긍정응답률은 2014년 85.9%, 2017년 88.3%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83.0%로 5.3%p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과거보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2020년 학교생활 만족이 다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연령별로 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9~12세 청소년이 86.4%, 13~18세 청소년은 81.3%로 9~12세 청소년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86.9%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81.7%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77.7%보다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 여자 청소년이 84.8%로 남자 청소년 81.3%보다 학교생활만족이 다소 높았다.

〈표 2-2-19〉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3.7	10.4	61.7	24.2	
	2017년	0.6	11.1	75.0	13.3	
	2020년	0.4	16.6	73.5	9.5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2	13.5	74.7	11.7
		중·고생(13~18세)	0.6	18.2	73.0	8.3
	성별	남	0.5	18.2	72.6	8.7
		여	0.3	14.9	74.5	10.3
	지역별	대도시	0.1	13.0	78.4	8.5
		중소도시	0.4	18.0	70.5	11.2
농산어촌		1.0	21.3	69.9	7.8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다. 진로교육 경험

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에 대한 경험의 경우, 2020년 ‘경험 있음’이 73.7%로 2017년 63.5%보다는 10.2%p 증가하였다. 진로와 직업 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수업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률은 2014년 58.3%에서 2017년 65.0%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62.2%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이 청소년들의 요구나 흥미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3.9%로 19~24세 청소년 61.1%보다 2.8%p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연령에 따른 관심과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영역의 진로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서 남자 청소년은 64.9%로 여자 청소년 60.0%보다 긍정응답률이 약간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64.9%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59.0%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62.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20〉 진로교육 경험: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단위: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4년	19.0	81.0	9.8	31.8	50.0	8.3	
	2017년	36.5	63.5	4.1	31.0	59.9	5.1	
	2020년	26.3	73.7	5.0	32.8	58.5	3.7	
2020년	연령별	13~18세	32.5	67.5	5.5	30.6	60.2	3.7
		19~24세	21.9	78.1	4.7	34.2	57.4	3.7
	성별	남	26.1	73.9	4.5	31.9	59.9	3.7
		여	26.4	73.6	5.6	33.8	56.8	3.2
	지역별	대도시	32.5	67.5	4.1	36.9	55.8	3.2
		중소도시	22.1	77.9	5.4	29.7	60.2	4.7
농산어촌		19.8	80.2	6.1	31.1	60.2	2.6	

주: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현장학습 및 견학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현장학습 및 견학’ 경험의 경우, 2020년 ‘경험 있음’이 66.7%로 2017년 57.3%보다 9.4%p 증가하였다. 현장학습 및 견학을 경험한 학생 중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14년 60.5%에서 2017년 62.4%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57.4%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장학습 및 견학 중심의 진로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2020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다소 감소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 현장학습 및 견학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0.4%로 19~24세 청소년 55.6%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및 견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 현장학습 및 견학에 대한 긍정응답률에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21〉 진로교육 경험 : 현장학습 및 견학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4년	30.6	69.4	8.4	31.2	49.3	11.2	
	2017년	42.7	57.3	5.8	31.8	54.4	8.0	
	2020년	33.3	66.7	7.1	35.6	49.0	8.4	
2020년	연령별	13~18세	39.5	60.5	7.3	32.3	51.7	8.7
		19~24세	28.9	71.1	6.9	37.5	47.3	8.3
	성별	남	32.6	67.4	6.9	35.7	48.4	9.1
		여	34.0	66.0	7.2	35.4	49.6	7.7
	지역별	대도시	39.2	60.8	7.8	39.2	44.9	8.2
		중소도시	29.8	70.2	7.0	32.7	50.7	9.6
농산어촌		26.4	73.6	5.8	34.2	53.6	6.4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 상담교사의 상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상담교사의 상담' 경험의 경우, 2020년 '경험 있음'이 75.9%로 2014년 67.0%, 2017년 67.4%보다 증가하였다. '상담교사의 상담'을 경험한 학생 중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60.2%에서 2020년 59.1%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진로교육에서 상담교사의 상담은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상담교사의 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1.6%로 19~24세 청소년 57.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상담교사의 상담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22) 진로교육 경험 : 상담교사의 상담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4년	33.0	67.0	9.5	30.4	49.9	10.3	
	2017년	32.6	67.4	4.9	34.9	53.3	6.9	
	2020년	24.1	75.9	7.3	33.7	51.2	7.9	
2020년	연령별	13~18세	30.6	69.4	7.1	31.4	53.3	8.3
		19~24세	19.6	80.4	7.4	35.1	49.9	7.7
	성별	남	23.5	76.5	7.0	33.3	51.4	8.3
		여	24.9	75.1	7.5	34.1	50.9	7.4
	지역별	대도시	26.6	73.4	6.6	36.1	50.5	6.8
		중소도시	23.3	76.7	8.2	29.9	52.5	9.4
농산어촌		19.6	80.4	6.9	36.1	49.8	7.2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 진로관련 검사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진로관련 검사' 경험의 경우, 2020년 '경험 있음'이 75.7%로 2017년 67.0%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진로관련 검사'를 경험한 학생 중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14년 60.5%에서 2017년 59.1%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20년 59.3%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진로관련 검사가 청소년들에게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진로관련 검사의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13~18세 청소년이 60.8%로 19~24세 청소년 58.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진로관련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진로관련 검사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남자 청소년이 60.1%로 여자 청소년 58.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나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23〉 진로교육 경험 : 진로관련 검사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4년	19.2	80.8	8.8	30.7	50.1	10.4	
	2017년	33.0	67.0	6.3	34.5	52.8	6.3	
	2020년	24.3	75.7	7.5	33.1	51.8	7.5	
2020년	연령별	13~18세	30.1	69.9	7.1	32.1	53.1	7.7
		19~24세	20.3	79.7	7.8	33.7	51.1	7.4
	성별	남	24.2	75.8	6.7	33.1	51.8	8.3
		여	24.4	75.6	8.4	33.1	51.8	6.6
	지역별	대도시	28.4	71.6	7.4	34.2	52.3	6.1
		중소도시	22.8	77.2	8.0	30.5	52.5	9.0
농산어촌		17.4	82.6	6.7	36.2	49.5	7.5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 미디어환경

미디어환경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 스마트폰, 매체별 중요도,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활용된 자료는 '방송매체이용 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이다.

가. 인터넷

1) 인터넷 이용 빈도

2020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의 98.5%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의 경우, 2015년,

2017년, 2020년에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20대의 경우, 2020년 99.3%가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소년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였다. 인터넷 이용 빈도를 집계한 모든 연도에서 20대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가 10대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24〉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당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인터넷 이용 빈도				주 평균 이용시간	
	하루에1회 이상	일주일에1회 이상	한 달에1회 이상	한 달에1회 미만		
2012년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년	10대	95.8	4.1	0.0	0.0	14.1
	20대	99.3	0.7	0.0	-	20.3
2014년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	-	20.5
2015년	10대	96.6	3.3	0.1	0.1	14.5
	20대	99.8	0.2	-	-	21.0
2016년	10대	93.9	5.6	0.3	0.2	15.4
	20대	99.6	0.4	0.0	-	22.8
2017년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2018년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2019년	10대	96.9	2.6	0.5	0.0	17.6
	20대	98.6	0.9	0.4	0.0	24.3
2020년	10대	98.5	1.5	0.0	0.0	27.6
	20대	99.3	0.6	0.1	0.0	29.5

자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8, 2019,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4, 2015,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의 주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2020년 10대 청소년은 27.6시간으로, 2012년과 2013년 14.1시간, 2014년 14.4시간, 2015년 14.5시간, 2016년 15.4시간, 2017년 16.9시간, 2018년 17.8시간, 2019년 17.6시간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과 비교하면 주 평균 이용시간이 13.5시간이나 증가한 것이다. 20대도 2012년 21.7시간, 2013년 20.3시간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가 2014년 20.5시간, 2015년 21.0시간, 2016년 22.8시간, 2017년 23.6시간, 2018년 24.2시간, 2019년 24.3시간, 2020년 29.5시간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 평균 이용시간은 10대 청소년보다 20대가 1.9시간이 더 많았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 이용 용도

2020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용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의 경우, 교육학습이 9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여가활동 99.1%, 커뮤니케이션 98.5%, 자료정보검색 95.2%, 홈페이지 운영 64.8%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대 청소년의 경우, 자료정보검색이 1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99.9%, 여가활동 99.8%, 홈페이지 운영 87.4%, 교육학습 82.6%, 구직활동 51.5% 등의 순이었다. 10대와 20대 청소년은 인터넷 이용 용도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이 20대보다 교육학습을 위하여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대가 10대 청소년보다 인터넷을 다양한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대는 홈페이지 운영과 직업직장과 같은 구직활동을 10대 청소년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10대와 20대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이용 용도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특히 20대는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100%였다. 홈페이지 운영은 10대와 20대 모두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10대는 2019년부터 20대는 2020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목할 것은 교육학습의 경우, 2012년에는 이용 비율이 높다가 2013년에는 급감했으며,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16년에 급증하였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0대의 경우에는 2019년보다 2020년에 16.4%p 증가하였으며, 20대는 2019년보다 2020년에 12.4%p 증가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교육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25〉 인터넷 이용 용도(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자료정보 검색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거래 활동	교육 학습	커뮤니티	SW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운영	구직 활동 (직업직장)	파일공유 서비스	기타	
2012년	10대	91.4	98.0	96.3	58.5	91.2	55.0	9.4	71.3	2.9	25.2	-
	20대	99.8	98.3	99.6	91.1	75.9	71.7	20.7	74.7	28.2	48.0	-
2013년	10대	93.7	97.2	91.9	28.6	56.9	18.1	11.6	45.2	4.3	7.0	-
	20대	99.8	97.6	81.4	62.1	28.7	30.8	22.1	67.3	27.0	14.1	-
2014년	10대	91.0	93.3	94.4	32.0	59.2	-	14.0	-	4.2	8.6	-
	20대	99.8	95.0	99.8	86.2	43.0	-	22.6	-	29.3	18.7	-
2015년	10대	85.3	96.7	95.7	-	58.7	-	-	48.5	6.5	-	-
	20대	99.6	97.4	100.0	-	50.6	-	-	70.3	33.8	-	-
2016년	10대	88.4	97.5	95.1	-	72.4	-	-	51.5	7.9	-	-
	20대	99.8	98.5	99.9	-	60.4	-	-	74.7	42.2	-	-
2017년	10대	92.6	98.9	97.1	-	73.6	-	-	53.8	7.8	-	-
	20대	100.0	99.4	100.0	-	64.3	-	-	78.2	51.3	-	-
2018년	10대	95.6	99.5	98.2	-	83.8	-	-	70.1	7.7	-	-
	20대	100.0	99.7	100.0	-	65.5	-	-	90.9	59.8	-	-
2019년	10대	96.0	99.5	98.6	-	83.5	-	-	69.9	8.9	-	27.3
	20대	100.0	99.7	100.0	-	70.2	-	-	91.8	60.8	-	91.0
2020년	10대	95.2	99.1	98.5	-	99.9	-	-	64.8	9.4	-	37.7
	20대	100.0	99.8	99.9	-	82.6	-	-	87.4	51.5	-	96.2

자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8, 2019,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4, 2015,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청소년의 2020년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메일은 대학생 94.3%, 고등학생 65.1%, 중학생 52.0%, 초등학생 21.1%이었다. 인스턴트 메신저는 대학생 99.8%, 고등학생 99.2%, 중학생 98.7%, 초등학생 83.8%이었으며, SNS 이용은 대학생 90.8%, 고등학생 81.4%, 중학생 74.2%, 초등

학생 36.0%로 집계되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서비스 중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경우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83.8%에 달하며 중학생부터는 98%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차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준보다는 낮지만, SNS도 초등학생이 36.0%를 이용하며, 중학생부터는 70%를 넘는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6〉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¹⁾(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²⁾	SNS 이용 ³⁾	인터넷 쇼핑 ⁴⁾	인터넷 뱅킹 ⁴⁾
초등학생	21.1	83.8	36.0	28.6	11.6
중 학생	52.0	98.7	74.2	45.7	18.2
고등학생	65.1	99.2	81.4	63.1	39.6
대 학생	94.3	99.8	90.8	92.8	88.5

주 : 1) 최근 1년 이용자.

2)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행아웃 등이 포함.

3) 나이, 학력 등 개인정보 및 사진, 친구목록 등이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맥형성, 교류하는 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톡 스토리,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4)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은 12세 이상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다. 스마트폰

1) 스마트폰 이용 빈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빈도를 보면, 2020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매일’이 9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주일에 5~6일’이 2.9%였다. 20대는 ‘매일’이 9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혀 안 봄/이용 안함’ 2.1%였다. 이것은 대부분 청소년이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청소년의 경우 10대보다는 20대에서 더 많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지만 2020년에는 20대보다는 10대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10대 청소년은 2016년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87.6%에서 2018년에는 91.4%로 3.8%p 증가하였지만 2019년에 88.6%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에 95.3%로 전년대비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 20대는 2016년 94.0%에서 2019년 97.7%로 3.7%p 증가하였지만 2020년 96.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스마트폰을 전혀 안 보거나 이용 안 한다는 비율의 경우 10대 청소년은 2016년 6.7%에서 2020년 1.6%로 5.1%p 감소한 반면, 20대는 2016년 1.5%에서 2020년 2.1%로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7〉 스마트폰 이용 빈도

(단위: %)

구분		매일	1주일에 5~6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한 달에 1~3일	2~3달에 1~2일 이하	전혀 안 봄/ 이용 안함
2016년	10대	87.6	4.4	1.2	0.0	0.0	0.0	6.7
	20대	94.0	2.4	1.9	0.2	0.0	0.0	1.5
2017년	10대	89.2	1.8	1.1	1.2	3.6	0.0	3.2
	20대	95.2	1.8	0.5	1.6	0.4	0.2	0.2
2018년	10대	91.4	4.7	0.1	1.0	0.1	0.1	3.7
	20대	94.2	2.6	0.2	1.2	0.2	0.0	1.6
2019년	10대	88.6	7.6	1.1	1.1	0.0	0.0	1.7
	20대	97.7	1.1	1.0	0.0	0.1	0.1	0.0
2020년	10대	95.3	2.9	0.0	0.2	0.0	0.0	1.6
	20대	96.8	0.7	0.2	0.3	0.0	0.0	2.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6, 2017, 2018, 2019,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음성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020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2시간 이상'이 7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미만' 16.4%, '1시간 미만' 6.5%의 순이었다. 20대의 경우, '2시간 이상'이 7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21.7%, '1시간 미만' 5.6%의 순이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10대의 경우 2015년 46.6%에서 2020년 77.1%로 30.5%p가 증가했으며, 증가폭이 20대에 비하면 크다. 20대도 2015년 49.7%에서 2020년 72.8%로 23.1%p 증가했다.

음성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020년 10대 청소년은 190.8분이고, 20대는

174.4분으로 나타나 20대보다 10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16.4분 더 사용했다.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대가 10대 청소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2015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124.4분, 2016년 132.5분, 2017년 132.4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8년 140.8분, 2019년 154.7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보다 36.1분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대는 2015년 128.6분, 2016년 149.7분, 2017년에는 141.1분, 2018년 156.3분, 2019년 176.9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전년보다 2.5분 감소했다.

〈표 2-2-28〉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단위 : %)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평균(분)
2015년	10대	28.2	25.1	46.6	124.4
	20대	23.2	27.0	49.7	128.6
2016년	10대	20.6	25.9	53.5	132.5
	20대	15.9	25.8	58.3	149.7
2017년	10대	13.9	31.7	54.5	132.4
	20대	9.4	28.7	61.9	141.1
2018년	10대	13.1	24.5	62.2	140.8
	20대	9.8	25.1	65.2	156.3
2019년	10대	9.8	22.5	67.7	154.7
	20대	9.6	21.1	69.4	176.9
2020년	10대	6.5	16.4	77.1	190.8
	20대	5.6	21.7	72.8	174.4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3)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2020년 청소년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를 보면, 10대 청소년은 미디어 콘텐츠 시청이 89.0%(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합함)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86.4%, 정보검색 정보전달이 82.7%의 순이었다. 20대는 10대와 달리 정보검색 정보전달이 93.3%(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합함)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90.8%, 미디어 콘텐츠 시청 88.6%의 순이었다. 이것은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에게는 미디어

콘텐츠 시청의 기능이 중요한 반면에 20대에게는 정보검색 정보전달의 기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9〉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단위 :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정보검색 정보전달	10대	1.4	0.4	15.6	30.5	52.2	-
	20대	0.3	0.7	5.7	34.4	58.9	-
미디어 콘텐츠 시청	10대	1.2	0.7	9.1	33.1	55.9	-
	20대	0.6	0.8	10.0	35.4	53.2	-
커뮤니케이션	10대	1.5	2.3	9.9	23.6	62.8	-
	20대	0.7	0.5	8.0	30.9	59.9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라. 매체 중요도

2020년 청소년의 매체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10대는 스마트폰을 96.2%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다음 PC/노트북 2.7%, TV 0.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0대 역시 스마트폰이 91.6%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다음 TV 4.8%, PC/노트북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재난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10대는 89.0%가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다음으로 TV 4.7%, 라디오 4.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0대는 스마트폰이 87.4%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고, TV 6.7%, 태블릿PC 3.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신문, 서적은 0.0~0.6%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비상상황 발생 시 청소년들에게 활자매체는 덜 중요한 반면에 전자매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2-30〉 필수 매체 인식

(단위 : %)

구분		TV	라디오	신문	잡지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서적	기타
일상생활시	10대	0.6	0.0	0.3	0.0	2.7	0.0	96.2	0.2	0.0
	20대	4.8	0.0	0.0	0.1	3.2	0.3	91.6	0.0	0.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구분		TV	라디오	신문	잡지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서적	기타
비상상황 발생시	10대	4.7	4.1	0.0	-	1.2	1.1	89.0	-	0.0
	20대	6.7	0.6	0.6	-	1.2	3.5	87.4	-	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마.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2020년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6~19세는 2020년 영화 관람이 8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문 읽기 63.6%, TV 시청 49.1%, 잡지·서적 읽기 21.6%, 라디오 청취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2020년 영화 관람이 0.4%p 감소하였지만 다른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이 1.3~11.9%p 증가하였고, 특히 TV 시청은 11.9%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0대는 2020년 영화 관람이 9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문 읽기 94.4%, TV 시청 76.9%, 잡지·서적 읽기 36.3%, 라디오 청취 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볼 때, 라디오 청취는 1.3%p, 잡지·서적 읽기 1.9%p 감소하였지만 다른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이 1.4~19.6%p 증가하였고, 특히 TV 시청이 19.6%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표 2-2-31〉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률

(단위 : %)

구분		TV 시청	신문 읽기	라디오 청취	잡지·서적 읽기	영화 관람	
연령	6~19세	2017년	47.9	66.8	14.2	26.2	81.5
		2018년	56.7	71.3	12.7	25.4	78.7
		2019년	37.2	62.2	10.3	19.2	84.9
		2020년	49.1	63.6	11.6	21.6	84.5
연령	20대	2017년	71.2	99.2	32.2	50.6	92.6
		2018년	68.2	93.6	26.1	41.4	89.5
연령	20대	2019년	57.3	93.0	24.3	38.2	92.9
		2020년	76.9	94.4	23.0	36.3	96.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제3부 요약

제3부에서는 ‘청소년 권리·참여’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권리 및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국내에서 개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개소한 청소년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서, 청소년 권리교육 실시,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UN이나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234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331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583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고, 이 중 89.4%인 521건의 정책과제가 수용되었다. 2021년에는 청소년참여포탈을 통한 정책제안공모를 추진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제안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청소년 관련 대표적인 행사로는 ‘청소년의 달 기념식’,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국내 청소년정책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약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확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년)」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2003~2007년)」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이 되는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정책 참여기구가 만들어지고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시민역량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중점과제 내의 세부추진 과제로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이 추진되었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였다.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 생활보장은 물론 청소년의 권리·참여, 안전·보호, 교육 및 여가 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아동권리협약, 2004년 9월에 2개의 선택의정서(①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②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를 비준하였다. 동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돌봄과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제연합의 선언을 상기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지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념은 차별의 금지(제2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3조, 생명 존중(제6조), 아동의견 존중(제12조) 등이다.

동 협약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5년마다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1994. 8월, 2000. 5월)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공표(1996. 2월, 2003. 5월)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자체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3·4차부터 통합국가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2008. 12월)하였고, 협약 제44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가정보 요청에 대해 제3·4차 추가보고서를 제출(2011. 7월)하였으며 위원회는 권고문을 공표(2012년)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제3·4차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협약 조항별로 작성하여 제출(2017. 12월)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권고)가 2019년 9월에 진행되었다.

제1차 최초 국가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92~1996년)」에

아동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비준 시 유보한 조항에 대한 철회 및 협약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권고하였다.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2003년)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199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일부조항 유보 유지,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되는 아동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조정할 상설중앙기구 미설치, 정책수립단계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미흡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정부는 「어린이보호·육성 종합계획(2002년)», 「아동안전 종합대책(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2003~2007년)」 등 아동 관련 종합대책 수립, 청소년 복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 「아동복지법」 개정(2004~2007년)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실질적 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보건복지부, 2006~2014년)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재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2004년)을 통해 ‘어린이주간(5. 1.~5. 7.)’을 제정·선포하고, ‘대한민국아동총회’ 및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2012년)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를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2011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및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06년, 2008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0년) 등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노력, 교과 과정 내 아동권리 및 인권 관련 교육 확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2002년 유엔총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2003년)에서 제1 및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9월에 두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제1선택의정서 제8조제1항



및 제2선택의정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2007. 4월), 심의(2008. 6월) 받았다.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기존의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 개정(2004년)과 18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 공군규정 개정(2005년)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무력분쟁 지역으로부터 온 망명 및 난민 아동을 접하는 자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모든 전문가 대상 협약 및 선택의 정서 인식 제고 및 교육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는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性)착취와 성범죄 행위로부터 아동보호 수준을 제고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년) 등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추진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경찰·판사·검사 등 선택의정서 이행 관련 국내 모든 전문가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지원, 아동권리협약의 입양허가제 유보조항 철회 및 헤이그 협약(1993년) 비준 등을 권고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자 제3·4차 추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성과와 진전 상황 등을 포함하여 2017년 12월에 제출되었다.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입양특례법」 전부개정(2011. 8월), 입양허가 절차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2012. 2월) 등 입양제도를 보완하여 2017년 8월에 입양허가제 유보조항을 철회하였다. 또한, 협약의 기본원칙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 7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월) 등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에 배포(2016년)하였으며, 협약의 정신을 반영한 ‘아동권리헌장’을 제정(2016년)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 전 협약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및 조항별 변경 사항 및 추가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추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9월에 진행된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진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아동예산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체벌 금지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제기되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온라인 성매매 아동보호, 청소년 건강권·

근로권·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질의가 이루어졌다. 2020년 2월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국·영문본을 소관 부처에 배포하였으며, 2021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들의 참여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을 제작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과 민간, 정부관계자들의 소통 장을 마련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에 제출 예정인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대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제5·6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이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21~) 이후 제출 시기에 맞추어 2023년에는 보고서 집필진 지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부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5

나.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1) 추진배경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정부는 지역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운영모델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5월 중앙 차원의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로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차 위탁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2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2차 위탁, 2013년 1월, 2013~2014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차 위탁, 2015년 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차 위탁, 2016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차 위탁을 결정하였다. 청소년 권리침해 및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청소년의 권리 수준이 국제사회에 비해 낮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희망센터는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홍보·교육하였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기반 조성, 권리 보호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 증대로 2017년 1월 청소년희망센터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사업근거(법령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8조의2(교육 및 홍보)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중이다.

3) 사업목적

청소년 권리보호·증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수행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청소년 권리교육,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신규 권리교육 매뉴얼 개발·보급 등의 체계적 추진, 청소년 권리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주요 사업내용

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7가지로,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권리교육, ② 학교 밖·가출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③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양성과정(기초·심화·보수교육) 운영, ④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⑤ 청소년 권리교육 신청기관과 권리강사 매칭 시스템을 활용한 연계지원, ⑥ 권리침해 유형별 검색 DB시스템 운영, ⑦ 청소년 권리교육 사업 홍보이다. 더불어 2020년부터 청소년 인권증진 및 보호의 일환으로 기관 유형별 청소년 인권친화 선도기관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10개의 청소년 기관 내 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하고 협력하여 청소년 주도형 인권친화 활동을 운영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093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를 운영·지원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및 내실화 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세션’과 ‘UN 세계 청소년포럼’, 그리고 ‘UN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UN에서는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격려하고자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UN PSA)'을 시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실에 따라 2012년 6월 '공공행정상'의 정책결정 참여부문에서 한국은 청소년참여기구 중심의 청소년 정책으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이 체계화·활성화 되는 가운데, 기관·단체·학계 등 현장의 지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청소년정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기본적 권리로서 청소년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청소년 기본법」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운영 현황

2021년 10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240개가 운영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청소년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 내외이며, 공개모집,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된 4,100여 명의 청소년이 2021년 현재 활동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예산은 17개 시·도에서 각 1천만 원(국비 5백만 원, 지방비 5백만 원), 216개 시·군·구에서 각 2백 80만 원(국비 1백 40만 원, 지방비 1백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국고 미지원 포함)

(단위: 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운영 개소	197	204	216	221	230	239	239	240

자료: 여성가족부(2021).

〈표 3-2-2〉 2021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중앙참여위원회 제외)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	17	9	10	6	6	6	1	32	19	9	16	15	23	24	20	1

자료: 여성가족부(2021).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도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 지침 권장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후 「청소년활동 진흥법」(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확대 설치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2021년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331개소에서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의 전용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 제안·참여·평가, 홍보활동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5개소씩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발하고, 그 운영 결과와 성과를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공유하고 있다.

〈표 3-2-3〉 2021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5	15	10	13	7	11	8	2	64	34	17	15	18	16	15	17	24	331

자료: 여성가족부(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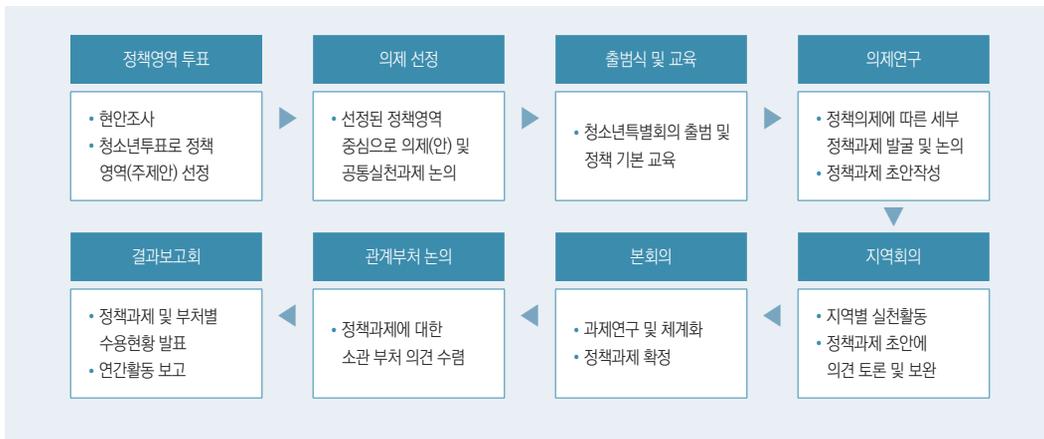
다. 청소년특별회의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2004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5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청소년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한 후 결과보고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한다.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운영 현황

2021년에는 청소년위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5~10월까지 예비회의, 본회의를 통한 논의 및 온라인 정책제안 활동을 거쳐 선정된 5개 영역 30개의 정책과제를 결과보고회에서 보고하였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583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결과 약 89.4%인 521건의 정책과제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연도	정책의제 및 과제	비고
2004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권 · 참여(13개 과제 제안)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 1회 개최 정례화 	-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31개 수용 88.6%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89.2%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 	15개 수용 83.3%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82.9%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14개 수용 70.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연도	정책의제 및 과제	비고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5%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6%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6%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올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양성평등, 학교밖청소년 지원, 안전, 경제활동 -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89.9%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 '자립' 정책영역의 취업, 정보, 보호, 경제 등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32개 수용 96.9%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3.3%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1년에는 청소년참여포털¹⁾을 통한 온라인 정책제안공모를 추진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제안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활동 관련 온라인 기반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www.youth.go.kr/ywwith

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참여분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참여분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원 관계 개선, 지역사회 변화·개선,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 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2년부터 참여·활동·보호 분야별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참여분야’로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하여 46개 참여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6, 6233, 6232

마.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제도는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2021년 현재,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사진 1매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발급기간은 4주 정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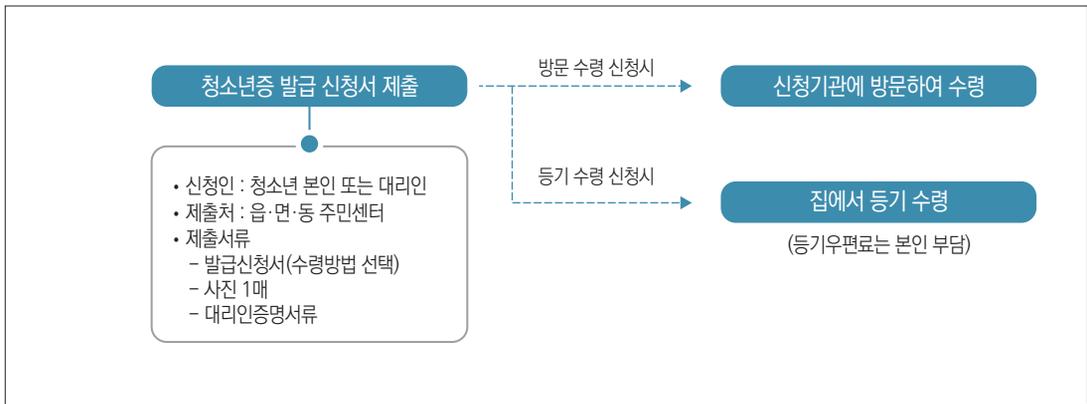
2008년부터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고 있다. 2011년에는 청소년증 재발급 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청소년증을 등기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대중교통 시설 및 편의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에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증의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와 더불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 병원, 투표소 등에서 신분확인 시 활용이 가능하다.

* 공직선거법 개정(2020.1.14.)에 따른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만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 가능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3-2-5〉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시범)	515	436	-	-	-	-	66	-	-	-	13	-	-	-	-	-	-	-
2004	11,848	1,515	381	181	751	282	103	86	-	4,381	148	648	311	1,266	244	521	983	47
2005	14,120	1,781	672	214	353	61	287	105	-	1,966	85	995	4,275	450	175	1,597	677	427
2006	12,478	4,355	971	580	640	110	304	220	-	2,894	341	350	368	164	141	486	418	136
2007	24,455	6,975	1,724	1,754	1,676	318	607	640	-	6,243	428	479	855	498	390	810	893	165
2008	30,265	8,251	2,198	1,905	2,464	416	853	844	-	7,477	566	614	720	1,027	499	1,048	1,165	218
2009	33,656	8,480	2,492	2,212	2,216	509	917	897	-	8,863	835	845	765	1,066	616	1,229	1,440	274
2010	36,244	8,949	2,399	2,069	2,527	576	944	950	-	9,892	908	913	889	1,226	624	1,369	1,738	271
2011	40,898	9,992	2,868	2,304	2,642	813	885	1,060	-	11,007	1,071	1,129	1,205	1,437	718	1,438	2,008	321
2012	43,543	10,633	2,944	2,216	2,916	1,025	1,044	1,180	32	11,232	1,173	1,206	1,244	1,506	896	1,663	2,326	307
2013	49,438	10,624	3,202	2,573	3,012	1,215	1,446	1,590	110	12,555	1,773	1,362	1,733	1,776	1,130	1,935	2,906	496
2014	50,663	9,779	3,174	3,006	3,126	1,561	1,447	1,243	99	12,737	1,704	1,306	1,701	1,942	1,362	2,334	3,640	502
2015	93,536	9,619	3,899	3,406	3,828	1,899	2,403	2,490	473	24,187	3,585	2,519	3,488	3,407	4,143	14,179	8,253	1,758
2016	104,391	8,037	5,746	2,515	2,822	1,539	1,439	1,130	1,402	36,829	5,531	1,385	4,736	4,229	5,453	10,283	10,034	1,281
2017	188,562	13,609	11,890	8,616	5,180	6,037	4,646	3,791	2,460	63,327	9,626	3,631	9,181	9,203	7,248	12,676	14,134	3,307
2018	165,408	11,395	6,432	9,225	4,001	8,891	5,913	4,125	3,381	34,855	8,921	2,648	6,290	11,406	11,769	17,885	15,475	2,796
2019	142,502	13,122	11,704	10,514	4,683	4,399	4,887	1,964	2,918	38,722	4,840	3,276	4,808	8,428	5,272	12,220	8,781	1,964
2020	182,644	15,155	9,332	6,291	7,801	5,487	6,779	2,071	3,798	60,701	6,572	6,646	8,617	8,280	8,963	10,494	13,621	2,036
2021	141,169	13,856	9,798	4,820	5,261	4,521	6,448	1,666	3,160	47,601	3,824	5,728	8,100	5,571	5,238	6,259	7,652	2,116

자료 : 1) 한국조폐공사(2016).

2) 여성가족부(2021).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1.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달 주제와 관련된 행사를 5월 중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 형성에 기여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단위: 명)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계
2	3	7	11	70	93

자료: 여성가족부(2021).

가. 청소년의 달 기념식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달의 의미를 공유하고 청소년정책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표 3-3-2〉 2021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청소년의 달 기념식	5. 27.(목), 대전컨벤션센터	- 청소년 육성 및 보호유공자 포상

자료: 여성가족부(2021).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미래 청소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4

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005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2008년부터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광주, 2009년 대구, 2010년 부산, 2011년 대전, 2012년 서울, 2013년 인천, 2014년 경기, 2015년 경북, 2016년 경남, 2017년 전남, 2018년 전북, 2019년 경기에서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부산에서 최초로 온라인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2021년 박람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청소년이 그리는 Green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 체험, 대회, 전시, 지역특화 프로그램과 환경을 키워드로 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구성된 메타버스 및 3D 전시관 운영,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쉽게 관람 가능한 UI 적용,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인 비대면 박람회를 통해 정식 개최기간 동안 약 5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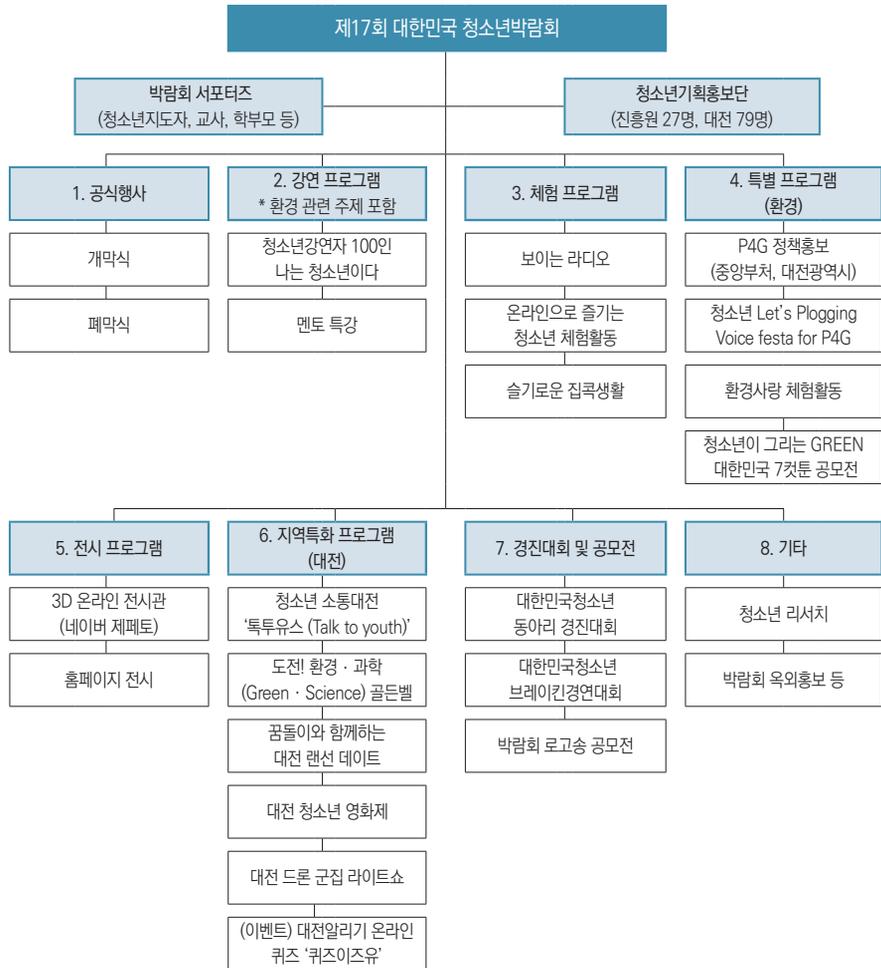
부 록

〈표 3-3-3〉 2021년 ‘대한민국청소년 온라인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구분	내용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 5월 29일(토), 3일간
장소	대전 컨벤션센터
주제	청소년이 그리는 Green 대한민국
주최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주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후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 개막식 : 5. 27.(목) 14:00, 대전 DCC
- * 박람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

행사 구성
(세부 내용)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회	2005. 5. 21. ~ 5. 22.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청소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2회	2006. 5. 19. ~ 5. 21.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3회	2007. 6. 1. ~ 6. 3.	코엑스 컨벤션홀 (서울)	“청소년 미래비전”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산업자원부, 노동부, KTF, LG전자, 내셔널지오그래픽, 알파
제4회	2008. 5. 29. ~ 6. 1.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희망/기회/ 성취의 빛”	보건복지 가족부, 광주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5회	2009. 5. 28. ~ 5. 31.	EXCO전시 컨벤션센터 (대구)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디자인하다.”	보건복지 가족부, 대구광역시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제6회	2010. 5. 27. ~ 5. 31.	부산 BEXCO (부산)	“청소년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교육청
제7회	2011. 5. 26. ~ 5. 28.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아!”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제8회	2012. 5. 24. ~ 5. 26.	SETEC (서울)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제9회	2013. 5. 23. ~ 5. 25.	송도컨벤시아 (인천)	“건강한 청소년, 함께 하는 열린 세상”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에너지관리공단
제10회	2014. 10. 23. ~ 10. 25.	KINTEX (경기)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기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1회	2015. 5. 21. ~ 5. 23.	구미코 (경북)	"나는 국가대표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회	2016. 5. 12. ~ 5. 14.	창원 CECO (경남)	"꿈꾸는대로 미래를 디자인 하라"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상남도 청소년 종합 지원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제13회	2017. 5. 25. ~ 5. 27.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전남)	"꿈꾸는대로 미래를 디자인 하라"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청소년 활동 진흥원, 전라남도 미래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제14회	2018. 5. 24. ~ 5. 26.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전북)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전라북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제15회	2019. 5. 23. ~ 5. 25.	수원 컨벤션센터 (경기)	"2019 다시 청소년이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수원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기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수원시 청소년재단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6회	2020. 12. 10. ~ 12. 12.	부산 벡스코 (부산)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부산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제17회	2021. 5. 27. ~ 5. 29.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청소년이 그리는 Green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대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실시 이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1년에는 ‘청소년과의 푸른 약속, 청소년지도자가 미래를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12월 1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수상자 포함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고,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은 SNS를 통한 생중계와 실시간 채팅 화면을 통해 올해의 청소년지도자 시상 및 교류의 시간 등을 함께하였다.

〈표 3-3-5〉유공자 포상 현황

(단위 : 명)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계
1	2	10	13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3-3-6〉 역대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회	2005. 9. 26. ~ 27.	올림픽파크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00여 명	청소년지도자의 삶과 도전 그리고 희망	기념식, 위원장과 대화, 콜로키움, 청소년지도자의 밤 등
제2회	2006. 12. 8. ~ 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00여 명	청소년지도자!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개회식, 배워봅시다, 청소년지도자의 밤 및 교류회, 한마음 체육대회
제3회	2007. 9. 16. ~ 17.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 등 4개 협의기구 공동주관)	1,500여 명	꿈과 희망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날 전야제 (축하공연, 기념식, 지도자 경연대회), 교류회, 청소년지도자 체육대회(대동제)
제4회	2008. 12. 19. ~ 20.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00여 명	아동·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소통의 장(단합, 민속 공연), 만남의 장(지도자 비전 공유), 화합의 장(지도자 친선 교류), 도약의 장(명랑 운동회 등)
제5회	2009. 8. 28. ~ 2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750여 명	꿈 + 미래, 행복 공감 지도자대회	주제발표 및 토론, 아동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전방안 기념식, 우수 운영사례 경진 대회, 단합대회
제6회	2010. 10. 19.	올림픽파크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여 명	만남+소통+공감 = 청소년지도자의 행복	창의적 체험활동 발표,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제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소개,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결의문 낭독 등
제7회	2011. 9. 27.	서울교육 문화회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1,000여 명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제 강연, 기념식(주제영상, 비전선언, 지도자의 다짐, CI 선포), 열린토론회, 상호교류의 밤 등
제8회	2012. 9. 21. ~ 22.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꿈의 날개! 열정의 비상!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우수사례 발표, 주제 강연, 기념식(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축하영상) 지도자 상호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제9회	2013. 9. 27. ~ 28.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청소년의 꿈과 행복!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힐링페스티벌, 정책강연,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 축하영상), 축하공연, 화합 및 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0회	2014. 9. 2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꿈과 희망을 이끄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비상(飛上)	소통의 장(포토존, 기 수상자와의 만남, 정책강연), 격려의 장(올해의 청소년 지도자 상 시상, 기념 퍼포먼스, 구호제창), 화합의 장 등
제11회	2015. 9. 2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과 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합니다.	식전행사(청소년활동 전시, 토크콘서트 등), 본행사(오프닝 공연, 주제영상 상영, 시상식,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특강, 교류 및 화합의 시간, 만찬 등)
제12회	2016. 11. 17. ~ 18.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청소년 희망의 별! 빛나는 청소년 지도자!	식전행사(포토존 히스토리전시), 본행사(오프닝공연, 주제영상, 시상식,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생생토크, 만찬)
제13회	2017. 9. 14. ~ 15.	천안상록리조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지도자의 행복! 청소년의 희망으로~	식전행사(사랑의 책 나눔), 본행사(오프닝공연, 축하영상, 시상식, 퍼포먼스 등), 식후행사(교류 및 화합의 시간 등)
제14회	2018. 9. 1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530여 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	식전행사(포토존, 감동계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존), 본행사(오프닝 공연, 청소년지도사 윤리헌장 선언, 청소년 유공 지도자 시상식, 청소년이 말하다, 청소년지도자 답변, 청소년 지도자 발언대, 퀴즈대회, 만찬)
제15회	2019. 10. 11.	AW 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510여 명	청소년에게 용기를, 청소년지도자에게 보람을! (부제 : 다시 청소년이다!)	식전행사(참여형 포토존 "컬러링 Wall", 플라워 포토존, 디지털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사전영상공모전 유튜브 부스, 지도자 소통존&힐링존)본 행사 (오프닝 공연, 디지털 식수 세리머니, 올해의 청소년지도자상 시상식), 식후행사(공감토크쇼, 퀴즈&FUN, 만찬 및 교류의 시간)
제16회	2020. 9. 24.	AW 컨벤션 센터 (SNS 생중계 및 실시간 채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현장: 20명 온라인: 380여 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도자, 청소년이 희망이다!	사전행사(SNS 릴레이 챌린지 응원 영상 업로드, 엽서 공모전, 퀴즈 이벤트, 방방곡곡 이벤트) 본 행사(사전 온라인 이벤트 영상 상영, 올해의 청소년 지도자상 시상식, 엽서 공모전 선정작 낭독, 재즈밴드 공연)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7회	2021. 12.1.	국제청소년센터 (SNS 생중계 및 실시간 채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현장: 50명 온라인: 250여 명	청소년과의 푸른 약속, 청소년 지도자가 미래를 응원합니다!	사전행사(SNS 릴레이 챌린지 응원 영상 업로드, 청소년의 푸른 미소 사진 공모전), 본 행사(사전 온라인 이벤트 영상 상영, 올해의 청소년 지도자상 시상식, 푸른미소 사진 공모전 수상작 소개, 사물놀이 축하 공연)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단체 및 바른 성장으로 또래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청소년동아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성인 부문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저한 업적을 5년 이상 쌓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추천하며, 청소년 부문은 1년 6개월 이상 능동적 활동으로 역량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청소년 개인 또는 동아리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총 5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2021년에는 성인 개인 500만 원, 성인 단체 1,000만 원, 청소년 개인 100만 원, 청소년동아리 2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기관·단체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동아리 누구나 수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다.



〈표 3-3-7〉 연도별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최 현황

연도	주최	주관	시상 부문	상금	위원장	시상식		
						일자	장소	참석자
2009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5개 부문 (활동, 복지, 정책, 학술, 미디어)	각 10백만 원	박완서 (서울대 명예 문학 박사)	11. 30. (월) 16:00	대한상공 회의소	250여 명
2010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청소년)	개인 10백만 원, 단체 15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2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2. 3. (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1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5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유인촌 (극단 유시어터 대표)	11. 25. (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2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최불암 (어린이재단 전국 후원회 회장)	11. 16. (금) 14: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3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이월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12. 6. (금) 14:00	MBC 드림 센터 공개홀	250여 명
2014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18. (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2015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3. (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2016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5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150만 원	배규한 (백석대 교수)	12. 15. (목) 14:00	MBC 골든 마우스홀	250여 명
2017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150만 원	최영희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사장)	12. 15. (금) 14:00	AW컨벤션 센터	200여 명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연도	주최	주관	시상 부문	상금	위원장	시상식		
						일자	장소	참석자
2018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5백만 원, 단체 20백만 원, 청소년 150만 원, 동아리 150만 원	최영희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사장)	12. 12. (수) 15:00	대림미술관 디라운지	100여 명
2019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2백만 원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	12. 4. (수) 14:00	AW컨벤션 센터	100여 명
2020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2백만 원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	12. 14. (월)	홈페이지 안내	-
2021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2백만 원	-	12. 16. (목)	홈페이지 안내	-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2

제4부 요약

제4부 '청소년활동'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의 국제교류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청소년의 여유시간 활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활동·참여·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청소년 젠더프로그램, 사회정서 역량 개발 등 91개 활동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과 '청소년어울림마당'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편,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11,026건에 이르며, 3,265건의 인증 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제도를 통해 수련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 요소를 점검할 수 있고, 범죄 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청소년교류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 등을 고민해 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봉사활동을 스스로 기획하여 실행하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을 4개 시·도에서 운영하였고, 2018년에는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2,109명의 청소년이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경우,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지속으로 해외 파견·초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의 경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지 청소년과 우리 청소년 간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였고,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국내에서 해외 청소년을 위해 교육봉사활동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였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한 국내 기반 국제교류를 위하여 총 15개 대학의 국내체류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민간 청소년단체가 개최하는 국제청소년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제2장 청소년수련활동 제도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통하여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역량 개발, 민주시민의식 제고, 문화·예술체험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2012년부터 활동·참여·보호 분야별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활동분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청소년 센터프로그램, 사회정서 역량 개발 등 44개 활동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4-1-1〉 2021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분야	소주제	선정 프로그램 수	지원 금액
활동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17	215.3
	청소년 센터프로그램	5	50.4
	사회정서 역량 개발	22	173.2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나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이 있다.

가.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시설 및 각급 학교(초·중·고 등)의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해 우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2,5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동아리 지원 수	구분	동아리 지원 수
서울	440	강원	158
부산	140	충북	77
대구	122	충남	98
인천	94	전북	115
광주	70	전남	75
대전	117	경북	162
울산	50	경남	146
세종	16	제주	84
경기	536	합계	2,500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진행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2004년과 2005년에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었으나,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5개 시·도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 90개 시·군·구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확대·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16개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과 110개 시·군·구 어울림마당이 지원·운영되고 있다.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2011~2021)

(단위: 개)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서울	1	11	강원	1	6
부산	1	6	충북	1	6
대구	1	7	충남	1	6
인천	1	4	전북	1	7
광주	1	4	전남	1	6
대전	1	4	경북	1	8
울산	1	2	경남	1	11
세종	-	1	제주	1	1
경기	1	20	합계	16	110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치열한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http://dovol.youth.go.kr>) 개발·운영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CS버전)은 2005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 또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 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의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에는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역별로 운영·관리되었던 시스템(CS버전)에서 통합 시스템(WEB버전)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존 청소년 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청소년 봉사활동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 등을 도모하였다. 2012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작업을 추진하여 기존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youth.go.kr)를 개편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하자는 정부3.0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1365 나눔포털)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Dovol-1365나눔포털 간의 자원봉사 실적 연계는 물론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를 통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youth.go.kr)와 통합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국제교류,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활동 등 타 청소년 활동 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청소년이 비대면 봉사활동¹⁾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1) 봉사자와 수혜자가 대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봉사활동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있도록 비대면 및 혼합형 봉사활동²⁾ 정보 제공, 신청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2)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현황

청소년자원봉사는 개인, 가족, 동아리·단체 등의 유형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일손 돕기·환경미화·취약계층 활동 보조 등의 노력봉사, 학습 지도·멘토링·공부방 운영 지원 등의 교육봉사, 지역행사 운영·보조, 캠페인 활동 등의 문화봉사,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봉사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인증터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터전'이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에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인증한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활동 인증터전으로는 청소년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체육·관광시설 및 단체, 의료보호시설 및 단체, 기업체(사회공헌재단 등) 등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청소년자원봉사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보장과 자발적 봉사참여 촉진을 위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자원봉사 포털(1365나눔포털, VMS) 간 종합보험 통합 제공 추진을 통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수혜 대상자를 크게 확대³⁾하였다.

한편, 2017년부터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나 변화가 필요한 주제를 스스로 조사·분석하고,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기존 봉사활동이 봉사시설 및 기관의 담당자(성인)가 계획한 봉사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의 목적과 수단, 실행 방법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7년에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으로 4개 시·도(대전, 경기, 광주, 전남)에서 27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매뉴얼(청소년용, 지도자용)이 개발·보급되었다. 2018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운영하여 총 930명, 2019년에는 총 1,393명, 2020년에는 총 2,064명, 2021년에는 2,109명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2) 대면과 비대면 봉사활동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봉사활동

3) Dovol 회원 중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가한 청소년(약 9만 명)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체 회원(약 27만 명)

〈표 4-1-4〉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단위 : 개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입 터전 수	8,620	9,014	9,541	9,249	8,336	8,464	8,509	8,544	8,661	8,391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1-5〉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

(단위 : 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프로그램 수	171,032	185,429	281,847	303,408	313,387	447,905	506,822	419,119	362,144	171,476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1-6〉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인원(명)	275,981	277,908	241,287	231,887	250,024	275,163	260,770	271,727	279,743	132,111
10시간(명)	86,529	91,223	73,936	74,293	84,110	99,289	97,907	99,425	105,347	37,767
비율(%)	31.35	32.82	30.64	32.04	33.64	36.08	37.55	36.59	37.65	28.58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8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가. 제도 안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이하 국제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군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3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제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재단(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에는 ‘국가사무국(National Award Operator)’과 ‘독립운영기관 (Independent Award

Center)’이 속해 있다.

국제포상제는 비경쟁성, 개별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자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국제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4세까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각 활동별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금장 활동의 경우 4가지 활동과 더불어 추가로 합숙활동을 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2개월), 금장(12~18개월)으로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7〉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분	봉 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 험	합 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회 이상	12개월 48회 이상	12개월 48회 이상	3박 4일 (1일 8시간)	4박 5일 ※ 금장 단계에 한함
	은장 미보유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회 이상	6개월 24회 이상	6개월 24회 이상	2박 3일 (1일 7시간)	-
	동장 미보유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회 이상	3개월 12회 이상	3개월 12회 이상	1박 2일 (1일 6시간)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나. 포상제 추진 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이하 “국제포상제”)는 2008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국제포상협회(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에서 국제포상제 독립운영기관 라이선스를 취득(2008. 5.)하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상제 운영을 확대한 결과 2009년 호주에서 개최된 총회를 통해 임시회원(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획득하였다(2009.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12년 정회원 자격 승급을 앞두고 국제포상재단(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의 신규 라이선스 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사업에 참여하여 2013년 개정된 정관에 의한 세계 최초 정식라이선스(Full Licence/Full Membership)체결 국가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사무국으로서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2013. 6). 또한 2014년 국제금장총회 및 국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동 제도의 국내 참가자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사무국의 위상을 고취시켰다.

국제포상제는 포상 자체보다는 포상활동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 활동에서 도전에 대한 실패는 없으며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여 도전가능하고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참여 청소년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표 4-1-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참가청소년	포상청소년	포상담당관	포상센터
2010년	3,942	110	1,830	192
2011년	3,467	567	1,569	289
2012년	3,545	572	1,787	370
2013년	3,463	607	1,048	462
2014년	2,257	492	1,197	552
2015년	2,046	416	567	632
2016년	1,832	622	528	696
2017년	1,960	795	778	775
2018년	1,959	834	336	820
2019년	1,283	431	290	876
2020년	577	256	417	919
2021년	643	156	454	946
누적 계	26,974	5,858	10,801	-

주 : 1) '21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정보시스템 데이터 전면 현행화 결과를 반영한 현황임.

2) 포상담당관은 매년 신규 위촉자 현황임.

3) 포상센터는 매년 취소·철회한 기관 수가 반영된 누적계 수치임.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가. 제도 현황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Korea Achievement Award)’는 200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를 모태로 2010년부터 연구되었으며, 2011년부터 3년 간 현장적용을 위한 단계별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2014년부터 정식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17개 전국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13개의 청소년단체 및 종교단체로 구성된 포상운영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성취 지향적 활동, 단계적 활동, 스스로 하는 활동, 다양한 활동, 재능의 발견 및 개발의 기회, 경쟁이 없는 활동,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활동,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는 8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 7~15세 청소년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4개월), 은장(4~8개월), 금장(8~16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9〉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분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동장 만 7세 이상	8주(회) 이상	8주(회) 이상	8주(회) 이상	1일(5시간)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8주(회)이상 수행			
은장 만 7세 이상	16주(회) 이상	16주(회) 이상	16주(회) 이상	1박 2일(10시간)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16주(회)이상 수행			
금장 만 10세 이상	24주(회) 이상	24주(회) 이상	24주(회) 이상	2박 3일(15시간)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24주(회)이상 수행			

-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은 각 1주에 1회 4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단계별로 4가지 활동 영역 모두 이수해야 함.
- 탐험활동은 사전 기본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한국의 저연령 청소년(만 7~15세)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성취포상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2011년 11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하였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21년 현재 포상운영사무국 31개, 포상센터 600개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포상사무국은 2014년 정식 운영 이후 가족형 포상제, 챌린지형 포상제, 자유학기제·학년제 연계 운영 등 신규 포상제 모형을 개발하여 저연령 청소년의 포상제 활동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상지도자의 불필요한 업무 소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청소년이 포상제 4가지 활동 영역에 모두 참여하고 각 단계에 맞는 활동 횟수를 충족하면 일련의 심사를 통해 포상활동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포상심사는 청소년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높고 낮음,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였는지, 계획을 세운대로 활동하였는지 등 활동 과정으로 청소년의 포상 여부를 판단한다.

〈표 4-1-10〉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현황

(기준: '21. 12. 31., 단위: 명, 개소)

구분	참가청소년	포상청소년	포상담당관	운영기관(누적)
2014년	1,291	551	450	117
2015년	1,422	901	405	180
2016년	2,510	1,595	646	264
2017년	3,263	2,019	868	360
2018년	3,092	1,850	443	442
2019년	3,562	1,747	213	501
2020년	1,719	1,252	542	557
2021년	2,196	1,468	497	597
연도별 누적계	19,055	11,383	4,064	-

주: 1) 운영기관은 매년 취소·철회한 기관 수가 반영된 누적계 수치임.

2) 참가청소년 및 포상청소년은 자유학기·년제 연계 운영, 신규 영역 모형 참가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6.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가. 운영 현황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가 정책에 따라 1996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출범하였으며, 당시 학교 교육정책에 자원봉사활동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의 지원과 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단일하고 명확한 과업을 수행하였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가 마련되었으며, 2006년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과 각 지방에서 ‘청소년활동의 진흥’이라는 포괄적인 과업이 강조되었고, 국가(중앙)-지방(시·도)-지역(시·군·구)으로 이어지는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기구로서의 조직과 기능도 확대되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게 규정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표 4-1-11〉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센터명칭	운영기관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흥사단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울산흥사단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건청소년회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센터명칭	운영기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북도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성지문화재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주요 기능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청소년활동 현장역량 증진 지원,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청소년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등이다.

〈표 4-1-1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 기능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사업 예시
1.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	1-1.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등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직무교육 및 정책사업 직무교육 • 현장 학습활동 지원 등
	1-2.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현장의 청소년활동 운영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예산 등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기관 컨설팅 운영 • 수련시설 평가 지원(설명회,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2-1.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국가 및 지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안 개발 및 정책수립지원 •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활용 등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사업 예시
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2-2. 국가 정책사업 실행 지원	국가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 국가 정책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비교과활동, 수련활동 인증제·신고제, 포상제 활성화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청소년참여 및 권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참정권 등
	2-3. 시·도 정책사업 실행지원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청소년정책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축제, 국내·외 청소년 교류 등
3. 청소년 정보 자원 관리 및 서비스	3-1.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 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제공 등
	3-2.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 홍보 청소년활동 인지도 개선
4.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4-1.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전문화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중장기 및 연간사업기획 등) 센터 성과관리
	4-2.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중앙·시·도·시·군·구의 정책네트워크와 현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네트워크 구축(학교, 교과 연계 포함) 네트워크 협력사업 운영(프로그램, 예산 등 지원) 청소년지도자 대회, 신년인사회, 사업설명회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6260

제2장 청소년수련활동 제도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기반 확립과 학교 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의 확대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2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증 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인증제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시작되어 당해 연도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 15인을 위촉하고,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하여 5월 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2007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 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을 통합·개정하여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 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32명)을 구성하여 시범·운영 하였다.

2009년에는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 교육정책과 인증제도와와의 연계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 관련 학과를 설치한 9개 대학과 대입 시 가산점 반영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학부모참관단(107명)을 운영하고,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활동영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에는 참여 청소년의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입학 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OU 체결 대학 : 15개교). 인증심의 317건 중 250건이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70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제도개선연구와 함께 정부부처 주관 활동프로그램 인증이추진되었으며 인증심사원 연수와 인증제 담당자 직무연수를 연계 운영하여 인증제 담당자의 역량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지표 추가 개발 연구(건강보건활동, 자기개발 활동 영역)를 통한 각 영역별 역량 강화와 2개 지방자치단체(도청,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결과, 인증수련활동기록을 이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나타나 인증제가 내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인증심사원 41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전문심사원을 활용한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을 운영하고,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홍보하는 청소년·학부모 모니터단(216명)을 구성·운영하고 인증제 홍보동영상 제작, SNS 개설, 웹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여부 자체 점검(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제3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가제도로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참여대상의 확대·다변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담당자 교육이 시작되었고, 인증기준을 공통기준 14개에서 6개로 통·폐합하여 인증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여 심사대상을 현실화 하였으며 수시점검 도입, 변경항목 세분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2014. 7. 2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모든 인증 신청 프로그램에는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등 제도 수혜자의 인지도 개선을 위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 인증제 설명회를 통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인증제도의 참여 대상자별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안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5. 2. 3.)시 신설되어 신규로 안전전문가 2인, 법조인 1인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의무인증)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이행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의 인증제 지원 및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근심사원 20명을 선발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배치하였다.

2016년에는 인증제도의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규정을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으로 분리하였다. 이는 심사원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체계 명확화, 현장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개 분야에 걸친 자문위원을 위촉(10명)하였고, 인증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인증마크를 선포하였으며, 2015년 5,000호 인증에 이어 1년 만에 6,000호 인증을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도 성장하였다.

2017년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유형을 신설, 별도의 인증기준과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별단위 프로그램의 인증 도입, 지도자 배치기준의 현실화, 수시 점검 확대 운영 등 안전한 활동 환경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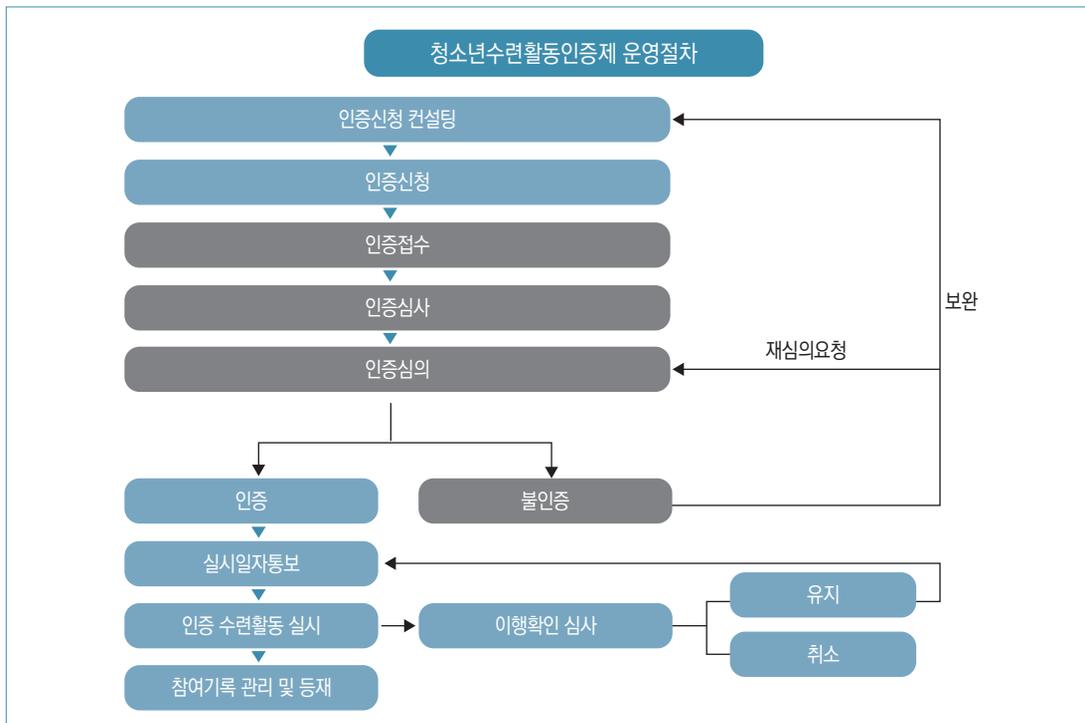
2018년에는 하강레포츠, 래프팅 등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과 드론 등 안전 고려 활동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증신청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간편 인증신청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제출되는 중복 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제출하였던 31개의 증빙서류를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반영 및 같음 등을 통해 19개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였다.

2019년에는 참여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수요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보급형 프로그램을 현장에 개발 및 보급하고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인증신청자가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청소년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시대 변화에 맞게 청소년활동의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인증수련활동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2021년에는 기본형 활동의 운영시간 기준 완화(3시간 → 2시간), 기본형 회기별 최소시간 폐지를 통해 인증수련활동 구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적극행정을 통한 인증제도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약 3~7일이 소요되었던 인증접수 형식요건검사 단계를 폐지하고, 자동 정합성검사 시스템 기능 개발, 인증심사 보완단계 신설 등 제도와 운영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운영 시 감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그림 4-2-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다. 인증기준 및 인증수련활동 현황

수련활동 인증신청은 상시적으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된 청소년수련 활동은 1개 프로그램 당 2명의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하고, 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하게 된다. 인증 기준은 국내 청소년활동과 국제 청소년활동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인증기준은 공통 기준과 개별기준 및 특별기준을 갖는다. 공통기준은 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 3가지 영역, 개별기준은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비대면방식 청소년 활동은 특별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표 4-2-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영역/유형		인증기준	확인요소	
공통 기준	❶ 활동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9	
		2. 프로그램 자원운영		
	❷ 지도력	3. 지도자 전문성 확보계획	8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❸ 활동환경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6. 안전관리 계획	7	
개별 기준	활동 유형	숙박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인력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5
		이동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인력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4. 휴식관리 5. 이동관리	7
특별 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1. 전문지도자의 배치 2. 공간과 설비, 안전관리	4
	학교단체 숙박형		1.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3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1.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	5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1.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6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1.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5

주 : 1) 프로그램 :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기획 여부와 내용 구성, 평가·환류체계의 포함 유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
 2) 지도력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니 여부, 프로그램 내용 및 청소년 참여 인원 수 대비 지도자 배치 수의 적정성, 안전 고려활동 운영 시 유자격자 등 배치 여부를 확인.
 3) 활동환경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활동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가를 공간과 설비, 사용여건, 보험 가입 등으로 확인.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2-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활동유형	내용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또는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단체 숙박형	학교의장이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개별 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11,026건이며, 이 중 27건은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통해 취소되고, 7,686건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며, 48건은 철회되어 2021년 12월 말까지 총 3,265건의 인증 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표 4-2-3〉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인증신청	132	352	508	348	340	329	276	1,291	2,895	2,026	1,317	1,517	2,095	1,555	1,494	739	17,214
인증	79	284	443	255	265	242	212	778	1,558	1,301	824	764	1,299	1,056	1,110	556	11,026
유지	79	359	802	1,057	1,297	1,382	1,314	1,702	2,971	3,743	4,146	4,159	3,725	3,113	3,299	3,265	3,265
종료	-	-	-	-	52	191	339	231	277	527	406	764	1,733	1,652	924	590	7,686
철회	-	5	4	12	3	-	3	11	10	-	-	-	-	-	-	-	48
취소	4	-	-	-	-	-	-	1	3	2	-	1	-	16	-	-	27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2-4〉 기관 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	1	3	1	1	1	3	-	1	8	23	6	5	1	1	-	55
공공기관	5	17	13	4	6	4	2	8	31	27	22	28	51	26	22	22	288
학교/교육청	-	-	-	3	2	3	2	4	14	38	7	3	7	1	3	15	102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20	165	273	139	175	120	85	127	215	185	149	128	162	160	319	170	2,592
청소년수련원	24	33	37	31	18	56	29	337	499	461	206	279	586	533	454	167	3,750
청소년문화의집	9	44	76	38	38	33	66	40	86	75	113	98	124	182	207	131	1,360
야영장, 유스호스텔	-	2	1	7	1	6	6	94	147	31	21	47	59	32	29	-	483
청소년보호 복지시설	1	16	20	17	9	6	3	8	11	5	14	11	4	4	5	2	136
청소년단체	11	4	13	10	6	4	2	14	44	7	4	4	0	3	1	-	127
일반	9	2	7	5	9	9	14	146	510	464	265	160	301	105	65	43	2,114
컨소시엄	-	-	-	-	-	-	-	-	-	-	-	-	-	9	4	6	19
합계	79	284	443	255	265	242	212	778	1,558	1,301	824	764	1,299	1,056	1,110	556	11,026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2-5〉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건)

구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교육청	청소년수련시설						복지 시설	청소년 단체	일반	컨소 시엄	합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 의집	야영장	특화 시설	유스 호스텔					
보유기관	34	7	156	105	207	6	6	15	7	3	106	8	660
유지건수	86	23	656	1,491	488	24	11	79	12	4	381	10	3,265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로 도입되어 2014년 7월부터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로 신고 대상과 활동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신고제도를 통해 수련활동의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에 관한 안전 요소를 점검하게 되고 범죄 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으며,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⁴⁾ 등에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수련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활동 선택과 참여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나.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서류를 갖추어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4-2-6〉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www.youth.go.kr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 	
신고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미만의 청소년(9~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하고, 모집 예정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다.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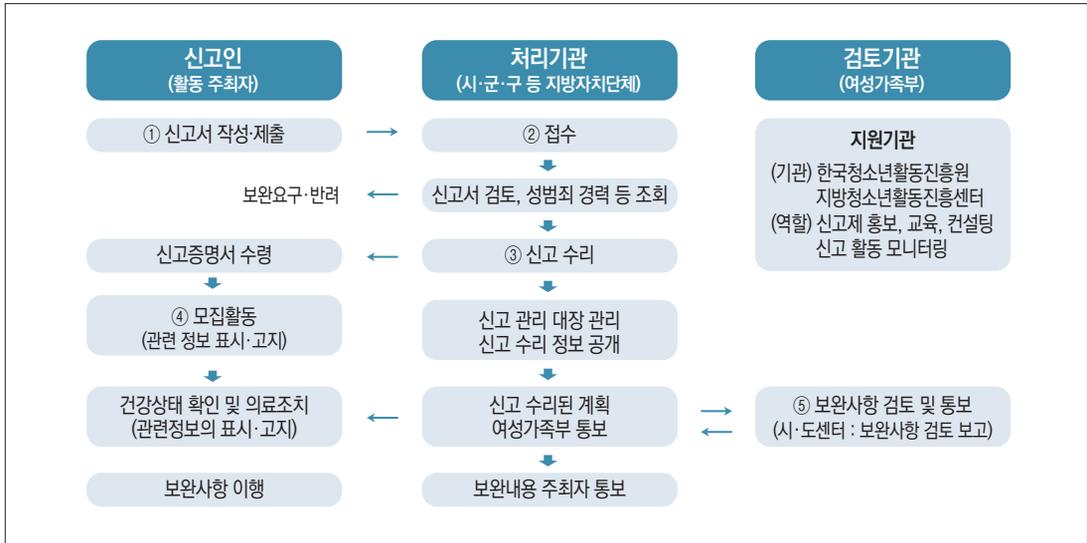
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운영계획서,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세부 내역서,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주최자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소관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는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⁵⁾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처리기관에서 구비서류의 요건을 점검하고, 주최자 등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반려한다. 신고 수리 후 처리기관 관할 지자체에서는 신고 수리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계획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기관에 보완사항을 통보하며, 처리기관은 주최기관에 지적된 보완사항을 통보한다.

활동 주최자는 신고 수리 사항 중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 활동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고지하여야 하고,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www.youth.go.kr

[그림 4-2-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라. 신고 현황

2021년 12월 말까지 신고 수리된 청소년수련활동은 경기도가 5,00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강원도가 2,441건으로 집계되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수련 활동 신고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및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운영중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신고 현황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다.

〈표 4-2-7〉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서울	42	357	308	409	405	396	363	33	18	2,331
부산	5	123	132	236	300	308	294	48	18	1,464
대구	4	54	37	53	63	79	80	9	7	386
인천	8	128	175	144	136	156	160	66	-	97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광주	3	29	36	45	57	86	82	47	31	416
대전	4	84	84	98	112	114	97	1	-	594
울산	4	29	28	24	32	22	22	2	1	164
세종	-	2	5	2	4	5	3	-	1	22
경기	40	540	782	814	979	927	844	72	5	5,003
강원	15	130	283	378	479	490	491	116	59	2,441
충북	1	57	243	340	339	324	423	102	-	1,829
충남	25	184	306	289	329	344	346	71	38	1,932
전북	10	233	343	384	326	311	230	114	78	2,029
전남	6	86	162	212	284	358	361	110	87	1,666
경북	3	185	233	220	192	175	223	87	55	1,373
경남	7	233	444	344	300	299	183	15	6	1,831
제주	3	25	87	61	67	76	81	19	12	431
전체	180	2,479	3,688	4,053	4,404	4,470	4,283	912	416	24,885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4-2-8〉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청소년수련관	61	654	742	853	859	863	788	129	35	4,984
청소년수련원	33	970	2,080	2,237	2,539	2,598	2,482	675	326	13,940
청소년문화의집	21	237	249	257	298	333	357	52	27	1,831
청소년특화시설	-	25	30	29	38	40	40	7	4	213
청소년야영장	1	11	22	36	38	13	24	-	2	147
유스호스텔	14	173	216	270	288	239	238	25	1	1,464
기타 (영리법인, 단체 등)	50	409	349	371	344	384	354	24	21	2,306
전체	180	2,479	3,688	4,053	4,404	4,470	4,283	912	416	24,885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1. 청소년 국제교류

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간의 토론, 가정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파견 및 초청이 불가능하여 일본, 브루나이 현지 청소년과 비대면 교류를 실시하여 온라인을 통한 각국 문화소개 및 공동 과제 수행, 토론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온라인 교류 규모를 확대하여 9개국과 온라인 교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캄보디아, 싱가포르(재체결),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와 청소년 교류 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9개국)

구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동북아시아(3개국)	중국, 일본, 몽골
남아시아·태평양(9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유럽(14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중남미(4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중동·아프리카(9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튀니지, 카메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21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온라인	총인원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한말 청 교류 약정('92. 4.) 지도자 15명 추가-공공행정처	'79	30명, 10일간 (15명씩 2회, 각 10일간)	768명	765명	20명	1,553명
사우디 (체육청)	양국정부합동위원회 합의('81)	'81	10명, 10일간	344명	333명	21명	698명
일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30명, 15일간	952명	1,044명	60명	2,056명
중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98)	'93	40명, 10일간	714명	751명	-	1,465명
헝가리 (인적자원부)	청소년협력약정서('92)	'93	10명, 10일간	25명	57명	-	82명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94	20명, 10일간	235명	225명	-	460명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95)	'96	10명, 10일간	140명	171명	-	311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94)	'96	16명, 10일간	233명	263명	-	496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협약각서('96) ('05 갱신)	'96	3명, 6일간	58명	87명	-	145명
칠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96)	'98	20명, 10일간	43명	72명	-	115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99) 재약정 체결('04), ('17)	'99	파견 20명 10일간, 초청 30명 10일간	592명	416명	23명	1,031명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사전합의 의거 교류시행('00) 청소년분야 협력약정서('01)	'00	10명, 10일간	214명	204명	19명	437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00) 재약정 체결('08)	'01	12명, 10일간	182명	197명	-	379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02)	'02	10명, 10일간	148명	157명	-	305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2)	-	10명, 10일간	2명	0명	-	2명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3)	'03	10명, 10일간	40명	40명	-	80명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21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온라인	총인원
수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04)	'05	10명, 10일간	82명	106명	-	188명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양해각서('04)	'05	10명, 10일간	90명	90명	-	180명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05)	'06	35명, 10일간	285명	238명	-	523명
파키스탄 (경제부)	문화교류계획서('05)	'06	10명, 10일간	39명	9명	-	48명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 양해각서('05)	'06	10명, 10일간	87명	100명	-	187명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 분야 양해각서('06)	'06	3명, 6일간	10명	8명	-	18명
터키 (청소년체육부)	2005~2008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05)	'07	20명, 10일간	168명	142명	-	310명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07)	'07	3명, 10~15일간	3명	3명	-	6명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양해각서('07)	'07	10명, 10일간	116명	117명	-	233명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07)	'07	6명, 7일간	57명	76명	-	133명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정부간문화협정근거('69)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09)	'10	10명, 10일간	76명	55명	-	131명
싱가폴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분야 양해각서('09) 청소년 분야 양해각서('21)	'09	10명, 7일간 (격년제)	30명	30명	43명	103명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문화협정근거('00)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09)	'10	35명, 10일간	198명	176명	39명	413명
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10)	'11	10명, 10일간	89명	90명	38명	217명
카메룬 (외교부)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11)	-	10명, 10일간	0명	0명	-	0명
콜롬비아 (교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13)	'13	10명, 10일간	0명	20명	-	20명
UAE (청소년체육청)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14)	'15	10명, 기간 명시 없음	39명	41명	-	80명
카타르 (문화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14)	'15	12명 이내, 7일 이내	22명	47명	-	69명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21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온라인	총인원
슬로바키아 (교육연구과학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17)	'18	10명, 10일간	6명	7명	-	13명
아르헨티나 (사회개발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17)	-	10명, 10일간	0명	0명	-	0명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21)	'21	20명, 10일간	-	-	20명	20명
오스트리아 (여성가족청소년통합부)	청소년교류 이행약정서('21)	-	10명, 10일간	-	-	-	0명
아르메니아 (교육과학문화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21)	-	공동협의	-	-	-	0명
39개국				6,087명	6,137명	283명	12,507명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한·중 청소년 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중 청소년교류가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 청소년 500명씩 교류하였다. 2016년 하반기 중국 측 사정으로 한·중 청소년 교류는 중단되었으나, 2018년 8월 한·중 청소년교류 재개를 위한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초청·파견 사업을 재개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입국 제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표 4-3-3〉 한·중 청소년 교류 현황

구분	초청				파견			총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4년	198명 (7. 21.~7. 30.)	189명 (11. 1.~11. 10.)	100명 (11. 17.~11. 26.)	487명	-	-	-	487명
2005년	192명 (7. 6.~7. 15.)	100명 (9. 7.~9. 16.)	191명 (11. 15.~11. 24.)	483명	-	-	-	483명
2006년	96명 (5. 24.~6. 2.)	193명 (7. 5.~7. 14.)	200명 (11. 1.~11. 10.)	489명	98명 (4. 12.~4. 21.)	-	98명	587명
2007년	200명 (4. 7.~4. 16.)	100명 (6. 13.~6. 22.)	191명 (11. 1.~11. 10.)	491명	97명 (7. 3.~7. 12.)	-	97명	588명

구분	초청				파견			총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8년	154명 (8. 18.~8. 27.)	100명 (10. 29.~11. 7.)	150명 (11. 5.~11. 14.)	404명	95명 (7. 22.~7. 31.)		95명	499명
2009년	196명 (7. 8.~7. 17.)	99명 (9. 16.~9. 25.)	185명 (11. 11.~11. 20.)	480명	96명 (5. 13.~5. 22.)	99명 (8. 3.~8. 12.)	195명	675명
2010년	192명 (6. 2.~6. 11.)	100명 (10. 13.~10. 22.)	187명 (11. 11.~11. 20.)	479명	192명 (5. 11.~5. 20.)	190명 (9. 7.~9. 16.)	382명	861명
2011년	191명 (6. 15.~6. 24.)	98명 (9. 21.~9. 30.)	193명 (10. 26.~11. 4.)	482명	197명 (5. 17.~5. 26.)		197명	679명
2012년	94명 (5. 9.~5. 16.)	200명 (6. 13.~6. 20.)	190명 (10. 21.~10. 28.)	484명	199명 (4. 13.~4. 20.)	293명 (8. 8.~8. 15.)	492명	976명
2013년	195명 (5. 21.~5. 28.)	100명 (7. 17.~7. 24.)	189명 (10. 23.~10. 30.)	484명	198명 (6. 13.~6. 20.)	287명 (9. 4.~9. 11.)	485명	969명
2014년	192명 (5. 8.~5. 15.)	99명 (9. 22.~9. 29.)	188명 (10. 22.~10. 29.)	479명	197명 (6. 4.~6. 11.)	297명 (9. 11.~9. 18.)	494명	973명
2015년	191명 (5. 14.~5. 21.)	98명 (9. 8.~9. 15.)	185명 (10. 22.~10. 29.)	474명	197명 (6. 4.~6. 11.)	294명 (9. 10.~9. 17.)	491명	965명
2016년	184명 (6. 23.~6. 30.)	-	-	184명	199명 (5. 25.~6.1.)	-	199명	383명
2018년	97명 (10. 23.~10. 27.)	-	-	97명	100명 (11. 20.~11. 24.)	-	100명	197명
2019년	98명 (7. 1.~7. 6.)	-	-	98명	99명 (9. 1.~9. 6.)	-	99명	197명

자료 : 여성가족부(2020).

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2017년에는 한·중 청소년 교류의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발전 모델 개발 및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내체류 중국유학생과 한국청소년 간 교류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대학과 민관협력을 통하여 국내 총 10개 대학 내 1,000여 명의 한·중 청소년 상호교류 활동을 지원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주제를 선택하여 오리엔테이션, 특강, 멘토링, 교류 활동, 지역, 문화, 역사, 스포츠, 생태 등 탐방, 팀별 결과 발표 등 다양한 청소년교류활동을 실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학별로 전문가 컨설팅, 현장 방문, 사업성과 정리, 결과 보고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지원 대상을 다국가 유학생으로 확대하여 34개국 유학생, 2019년에는 41개국 유학생이 한국 청소년과 교류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규모 팀별 활동을 통해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실질적, 심층적 교류 효과를 추구하고, 참여 대학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교류 발전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4〉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프로그램 현황(2021년)

구분	대학명	주제	주요 프로그램
1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 융합 UCC 프로젝트	문화 교류 및 문화 융합 관련 팀별 UCC 제작 및 공모전(Contest) 시상
2	강원대학교	정의의 관점에서 '빈곤·사회문화·환경문제' 토크보기	세계문제(빈곤, 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학습 후 그룹토의를 통해 TED 강연 기획 & Contest 시상
3	건양대학교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공동체 '논산'	논산과 각국의 문화비교를 통한 다문화의 이해 교류활동 및 콘텐츠 제작, 다문화 인식 개선(지식나눔활동) 활동
4	계명문화대학교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청소년 환경의식 고취프로그램	지역 내 생태보전 지역 탐방을 통한 환경생태 학습, 국제 청소년 대상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지역 내 유기농 로컬식자재를 활용한 세계 전통 건강 밥상 차리기 체험 등
5	광운대학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액션플랜 : Better than Today - 변화된 일상의 공유(온오프)를 통해 글로벌 역량 성장 지원	일상 속 환경문제 발견 및 개선 실천 인증 영상 제작, 조별 액션플랜 수립 및 공유
6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중·고 학생 대상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인식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팀별 자기주도적 SDGs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콘텐츠 개발,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7	대구대학교	다민족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출신국가의 문화 비교연구 및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팀별 자기주도적 프로젝트(자유주제, SDGs 주제) 기획 및 결과 공유
8	동서대학교	아시아의 HUB 부산, 부산을 디자인하다	창의적인 지역 기념품 등 아이템 개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도시 공공디자인 기획, 지역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9	백석대학교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KoInB(Korea culture In Baekseok)	팀별 문화(음식, K-Pop) 교류 활동, 한국의 특화상품 체험 및 기획
10	상명대학교	한국-베트남 미래의 주역 SDGs 구현 역량을 키우다.	SDGs 관련 이해 도모를 위한 특강, 한국과 베트남의 SDGs 구현 상황 토의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종합 워크숍을 통한 팀별 활동 결과물 공유(영상 등)

구분	대학명	주제	주요 프로그램
11	신한대학교	We are Equal(인종차별주의 타파를 위한 청소년들의 광고 캠페인)	인종차별 문제를 주제로 한 팀 프로젝트 활동 및 영상 제작, K-Culture, K-Beauty, K-martial Arts 체험
12	우석대학교	WOW! 행복가득, 기쁨가득, 웃음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 공동체	팀별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기획 및 결과 공유(멘토 협력), 문화 체험 프로그램(전통문화, 태권도, 역사), 전복 홍보 콘텐츠 제작
13	조선대학교	지역 내 산업과 연계를 통한 국제적 진로 탐색	각 국가별 비즈니스 특성 공유 및 지역 내 산업과 연계를 통하여 차세대 유망직종 탐색,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 제작 및 시상
14	호산대학교	나누는 글로벌 리더! Share your talent!	교내 특화전공(간호, 물리치료, 뷰티디자인, 호텔외식조리, 글로벌융합) 관련 재능기부 미션 수행
15	호서대학교	지구촌 예코면 푸르리	친환경·업사이클링 교육 및 지역 전문기업인 특강 운영 당일체험형 활동교류, 한·중 문화교류, 실내 스포츠 활동 온라인 체험키트를 활용한 개별활동, 메타버스 결과보고회 및 전시회 운영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라.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은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청소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기간 동안 각국 청소년들은 온택트 방식으로 한·아세안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는 등 한·아세안의 협력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2021년 개최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에는 총 100명(10개국 각 10명)이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표 4-3-5〉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행사명	일시	행사 취지	참석인원	주관기관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8. 10.~8. 13. (온라인)	아세안 국가와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아세안 협력 공감대 형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한·아세안 청소년 100명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과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 참가단’과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 등 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3-6〉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1	국제회의 참가단 (2008~)	주제: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다양한 국제회의·행사 등에 청소년들을 파견 * UN총회 제3위원회 파견 등
2	해외자원봉사단 (2005~)	주제: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 참가단

청소년들이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파견대상자를 선발한다. 2021년에는 UN ECOSOC 청소년 포럼과 UN 총회 제3위원회 관련 비공식 온라인 토의에 청소년 대표 6명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그 외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취소되었다.

나.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방학 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어 국내에서 해외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시아 5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필리핀) 청소년을 위해 교육봉사활동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국내 청소년 122명이 현지 청소년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4, 6256

3.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국제행사 지원

민간에서 개최하는 국제청소년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걸스카우트 e-국제야영’ 프로그램 개최를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한국걸스카우트 연맹은 기존 야영대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4-3-7〉 2021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행사명	일시	행사 취지	참석인원	주관기관
걸스카우트 e-국제야영	8. 1. ~ 8. 20. (온라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 지원 및 전세계 청소년과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국내외 참가자 약 8,000명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4, 6257

4.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25th World Scout Jamboree)」개최 지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세계 청소년 야영 행사다. 1920년 영국 런던 올림픽아 스타디움에서 34개국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한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시초가 되어 이후 4년마다 개최하는

정규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잼버리(Jamboree)는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경’이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Jamboree’라고 명명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올림픽과 같이 4년마다 개최국을 결정하며, 대회를 유치한 국가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스카우트 회원국(1개국당 6표 투표)의 투표로 선정된다. 2019년까지 24회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되었으며, 2023년에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표 4-3-8〉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역대 개최 현황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가	주제	비고
1회		'20. 07. 30.~08. 08.	영국 런던	34	8,000명	Develop world peace	실내에서 실시
2회		'24. 08. 10.~08. 17.	덴마크 코펜하겐	32	4,549명	World citizenship	첫 야외잼버리
3회		'29. 07. 31.~08.13.	영국 버킨헤드	69	32,000명	Coming of age	
4회		'33. 08. 02.~08. 15.	헝가리 고들로	33	25,792명	Face new adventures	
5회		'37. 07. 30.~08. 14.	네덜란드 보겔란쟁	54	28,750명	Lead happy lives	
6회		'47. 08. 09.~08. 18.	프랑스 무와송	71	24,152명	Jamboree of peace	프랑스 대통령 참가
7회		'51. 08. 03.~08.14.	오스트리아 베드이쉴	61	12,884명	Jamboree of simplicity	
8회		'55. 08. 18.~08. 28.	캐나다 나이아가라	71	11,139명	New horizons	비유럽 최초 잼버리
9회		'57. 08. 01.~08. 12.	영국 서튼파크	80	30,000명	50th anniversary of scouting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 가	주제	비 고
10회		'59. 07. 17.~07. 27.	필리핀 마킬링	44	12,203명	Building Tomorrow Today	아시아 최초
11회		'63. 07. 31.~08. 10.	그리스 마라톤	89	14,000명	Higher and wider	
12회		'67. 08. 01.~08. 09.	미국 아이다호	105	12,011명	For Friendship	
13회		'71. 08. 04.~08. 14.	일본 아사기리	87	23,758명	For Understanding	
14회		'75. 07. 24.~08. 07.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91	17,259명	Five Fingers, One Hand	
15회		'83. 07. 04.~07. 16.	캐나다 알버타	106	14,752명	The Spirit Lives On	
16회		'87. 12. 28.~'88. 01. 08.	호주 남웨일즈	84	14,434명	Bringing the World Together	
17회		'91. 08. 08.~08. 16.	대한민국 강원도	133	19,081명	Many Lands, One World	지구촌개발 프로그램 시작
18회		'95. 08. 01.~08. 11.	네덜란드 드론티	166	28,960명	Future is Now	
19회		'98. 12. 26.~'99. 01. 08.	칠레 피카킨	157	31,000명	Building Peace Together	
20회		'02. 12. 27.~'03. 01. 11.	태국 사타힙	147	24,000명	Share our world, Share our culture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작
21회		'07. 07. 27.~08. 08.	영국 챔스포트	162	37,868명	One World, One Promise	영국연맹 창립 100주년
22회		'11. 07. 27.~08. 08.	스웨덴	146	40,061명	Simply Scouting	
23회		'15. 07. 28.~08. 07.	일본 아마구치	155	33,628명	和(화 : A spirit of unity)	평화프로그램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가	주제	비고
24회		'19. 07. 22.~08. 02.	미국 버지니아	124	41,559명	Unlock a new world	미국연맹 창립 100주년
25회		'23. 08. 01.~08. 12.	대한민국 새만금	171	5만 여명	Draw your Dream	준비 중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우리나라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창립 100주년(2022년)을 기념하여 2016년 1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국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세계 6개 대륙 145개 국가를 돌며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폴란드(그단스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7월 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년)에 대한 국제행사 정부 지원 결정을 받고, 외교부와 협력하여 재외공관 등을 통해 160여개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였다. 2017년 2월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와 민간기업, 청소년정책 관계자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위원회'(위원장 이주영, 前국회부의장)가 만들어져 회원국 방문 등 유치활동, 온라인 홍보, 지역별 스카우트총회 대표단 구성·파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에 큰 기여를 했다.

여성가족부, 외교부 및 재외공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성공적인 민관 협력으로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16일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바쿠, 아제르바이잔)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대한민국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잼버리를 2회 이상 개최하는 세계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잼버리를 만들어가고, 잼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엠블럼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함께 모여 즐겁게 축제의 캠프를 벌이는 모습을 한국의 기와와 텐트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모습을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4-3-1]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엠블럼



여성가족부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8년에 조직위원회 설립 등 추진체계 구축·정부 차원의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을 담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관련 시설, 안전, 기금 등 필요사항을 규정한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2020년 7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김윤덕 국회의원)가 공식출범하였다. 이후 조직위원회는 2020년 7월 13일 재단법인 설립 등기 완료를 거쳐 실질적 사무집행기관인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2020년 7월 20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무국은 시기별로 단계적 조직 개편 및 인력 확대 등 탄력적 직제 개편을 통해 차질 없이 행사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7월부터 운영된 조직 1단계는 3본부 7팀 28명이었고, 2021년 7월부터 운영된 조직 2단계는 4본부 18팀 106명으로 전년대비 조직이 확대되었다.

〈표 4-3-9〉 조직위 사무국 구성(2단계 : '21. 7.-)



한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실시하는 지구촌 청소년 축제이자 간척지인 새만금에서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정부는 2021년 4월 국무총리(위원장), 각 부처 장관,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을 위원으로 한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1년 11월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반 시설 구축’, ‘청소년 참여활성화’, ‘안전사고 예방’ 등 부처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 청소년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 세계 5만 여명의 스카우트 대원(청소년)과 지도자의 한국 방문은 국내 관광자원 및 문화자원 등과 연계되어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최지인 새만금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4-3-10〉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 기 간 : 2023년 8월 1일~12일
- 장 소 :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부지(전북 부안군 일원)
- 주 제 : Draw your Dream
- 참가대상 : 만 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
- 참가규모 : 170여 개국 5만여 명(국외 4만 여명, 국내 1만 여명)
- 주요내용 : 개·폐영식, 과정활동(야영,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 한국의 밤, 국제의 밤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468

제5부 청소년 복지

제5부에서는 '청소년 복지'에 대해 다룬다.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상담·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상대아동 빈곤율)은 2020년 9.8%로 최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아동 빈곤율에 따른 2020년 빈곤아동 수는 전 가구 기준으로는 약 7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부모가구 비중은 2020년 7.1%로, 한부모가구 수는 약 15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66,321명으로 나타났다.

대상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22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지정·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등의 영역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돌봄취약계층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종합적인 학습·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아동 보호, 학습지도,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디딤씨앗 통장(CDA)' 사업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보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위험에 대처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설치하고, 2021년 기준으로 17개 시·도와 214개 시·군·구에 238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예방 및 문제발생 이후 대응 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청소년 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상담138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또래상담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

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제4장 청소년의 건강

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

1. 아동빈곤율 현황

본 백서에서 2016년까지는 아동빈곤율¹⁾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존 절대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하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선’은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2015년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산정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상대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에서 국가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중위소득의 40%, 50%, 6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는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2020년 청소년 백서부터 아동빈곤율과 관련하여 절대빈곤율은 제외하고, 상대아동빈곤율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상대아동빈곤율의 출처였던 ‘가계동향조사’가 2017년도부터 연간 자료가 아닌 분기별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따르게 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1인 가구와 전 가구를 나누어 제시하고, 농어가(농업 및 어업 종사 가구) 가구를 제외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 가구 대상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이 포함되어 있어 가계동향조사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아동빈곤율은 2011년 16.4%에서 2014년 16.5%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16.0%, 2016년 15.2%, 2017년 14.2%, 2018년 12.3%, 2019년 10.6%, 2020년 9.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대아동빈곤율에 따른 빈곤아동 수는 아동 인구 수 감소 및 빈곤율 감소로 인하여 2011년 162만 명에서 2020년 약 76만 명으로 약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빈곤율 계측에서 아동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였음.

〈표 5-1-1〉 연도별 아동빈곤율 현황

(단위 : %, 명)

구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동의 상대 빈곤율	16.4	16.8	16.4	16.5	16.0	15.2	14.2	12.3	10.6	9.8
아동 인구 수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7,710,946
빈곤 아동 수	1,627,046	1,628,235	1,546,799	1,515,829	1,433,889	1,327,880	1,204,223	1,005,689	840,464	755,673

주 : 빈곤 아동 수는 아동빈곤율을 이용하여 추계함(상대빈곤: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 가구 포함.

*** 아동 인구 수는 만 0 ~ 17세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포함함.

자료 : 1) 통계청(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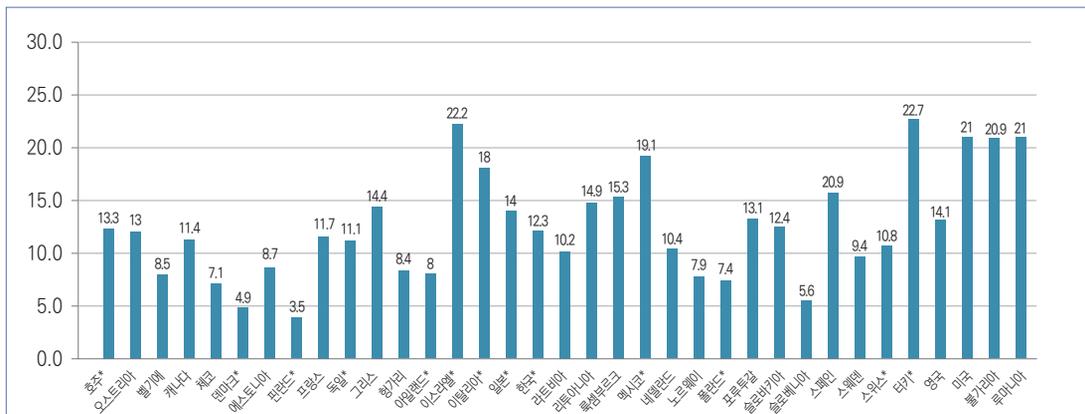
2) 아동 인구 현황. e-나라지표.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_cd=3053)에서 2021년 12월 22일에 인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빈곤수준을 국제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 및 신흥국들과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상대빈곤기준은 중위소득의 50%로 상대적 빈곤 기준이 사용되었으며, 국가별로 아동인구의 빈곤수준을 제시하였다.

최근 년도 수치 기준, 아동 상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3.5%였고, 그 다음은 덴마크로 4.9%였다. 한국은 12.3%로 프랑스(11.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계된 국가 중 아동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7.3%)였으며, 터키(22.7%), 이스라엘(22.2%), 루마니아(21%), 미국(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아동 5명 중 1명은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9년, 중위소득 50%)

(단위 : %)



주 : 1) 국가별 아동 상대빈곤율은 동일가구 가처분 소득을 적용. 빈곤임계값은 각 국가에서 평균 가처분 소득은 50%로 설정(수치는 기본적으로 2019년 수치이며,

*로 표시한 호주,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터키는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최근 년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나라들은 제시되지 않음.

자료 : OECD(n.d.).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670#>)에서 2021년 12월 22일에 인출함.

2. 한부모가구 현황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에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08년에는 9.0%, 약 151만 가구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9.3%, 약 160만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0.5%, 약 197만 가구로 확인되었다. 2015년부터는 당해년도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별거가구 등을 제외하고 혼인관계가 없는 한부모 가구 수를 보다 정확히 집계하기 시작하며, 2015년의 한부모 가구 수는 전체가구 중 8.2%에 해당하는 약 161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이후 한부모가구의 수와 비율은 2016년 7.8%로 약 154만 가구, 2017년 7.6%로 약 153만 가구, 2018년 7.6% 약 154만 가구, 2019년에는 7.5% 약 153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7.1%에 해당하는 약 153만 가구가 한부모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자립,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표 5-1-2〉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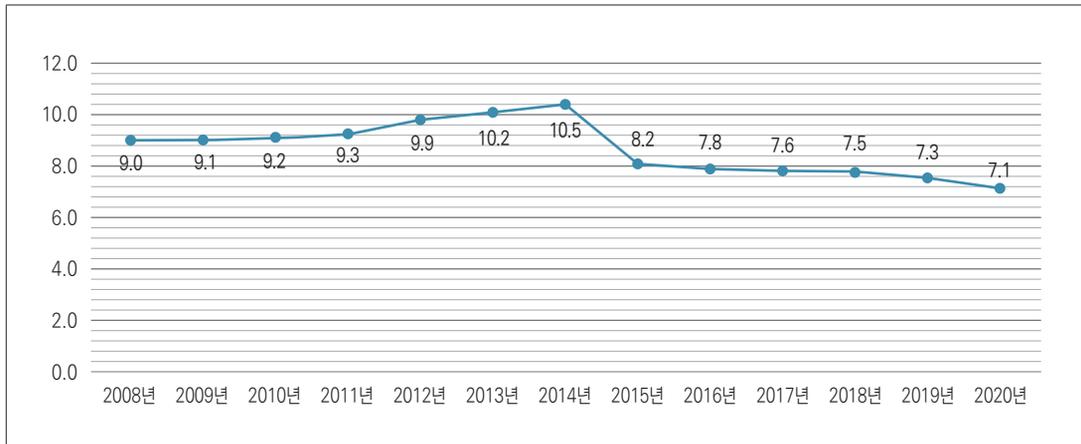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

연도	전체가구(A)	한부모가구(B)	한부모가구비율(B/A×100)
2008	16,791	1,509	9.0
2009	17,052	1,551	9.1
2010	17,339	1,594	9.2
2011	17,687	1,639	9.3
2012	18,119	1,796	9.9
2013	18,388	1,880	10.2
2014	18,705	1,970	10.5
2015	19,561	1,608	8.2
2016	19,838	1,540	7.8
2017	20,168	1,533	7.6
2018	20,500	1,539	7.5
2019	20,891	1,529	7.3
2020	21,485	1,533	7.1

자료 : 통계청(2021). 장래가구추계/인구총조사.

[그림 5-1-2] 한부모가구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2021). 장래가구추계/인구총조사.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형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을 의미한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07년에는 44,258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07,68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197,55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다시 2017년부터 222,455명, 2018년 237,705명, 2019년 264,626명, 2020년 266,32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만 6세 이하는 105,939명(39.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 7~12세 이하는 107,265명(40.3%)이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34,440명(12.9%)이며,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6~18세 이하 아동은 18,677명(7.0%)으로 만 6세 이하에 속하는 자녀 수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만 7세 이상 18세 범위에 있는 자녀 수의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07	44,258(100.0)	26,445(59.8)	14,392(32.5)	2,080(4.7)	1,341(3.0)
2008	58,007(100.0)	33,140(57.1)	18,691(32.2)	3,672(6.3)	2,504(4.3)
2009	107,689(100.0)	64,040(59.5)	28,922(26.9)	8,082(7.5)	6,645(6.2)
2010	121,935(100.0)	75,776(62.1)	30,587(25.1)	8,688(7.1)	6,884(5.6)
2011	151,154(100.0)	93,537(61.9)	37,590(24.9)	12,392(8.2)	7,635(5.1)
2012	168,583(100.0)	104,694(62.1)	40,235(23.9)	15,038(8.9)	8,616(5.1)
2013	191,328(100.0)	116,696(61.0)	45,156(23.6)	18,395(9.6)	1,1081(5.8)
2014	204,204(100.0)	121,310(59.4)	49,929(24.5)	19,499(9.5)	1,3466(6.6)
2015	197,550(100.0)	116,068(58.8)	61,625(31.2)	12,567(6.4)	7,290(3.7)
2016	201,333(100.0)	113,506(56.4)	56,768(28.2)	17,453(8.7)	13,606(6.8)
2017	222,455(100.0)	115,085(51.7)	81,826(36.8)	15,753(7.1)	9,791(4.4)
2018	237,705(100.0)	114,125(48.1)	92,368(38.9)	19,164(8.1)	11,849(4.9)
2019	264,626(100.0)	117,045(44.2)	104,064(39.3)	26,524(10.0)	16,993(6.4)
2020	266,321(100.0)	105,939(39.8)	107,265(40.3)	34,440(12.9)	18,677(7.0)

자료 : 행정안전부(2021).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부모의 자녀가 89,056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 출신 부모의 자녀가 49,680명(18.7%)이었다. 중국 출신 한국계 부모의 자녀는 세 번째로 많은 40,877명(15.3%), 필리핀 출신 부모의 자녀는 23,520명(8.8%)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이들 네 국가 출신 부모의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76.2%를 차지하였다.



〈표 5-1-4〉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합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
2008	58,007 (100.0)	16,681 (28.8)	10,889 (18.8)	8,194 (14.1)	6,378 (11.0)	6,508 (11.2)	-	816 (1.4)	870 (1.5)	2,406 (4.1)	303 (0.5)	1,515 (2.6)	3,447 (5.9)
2009	107,689 (100.0)	18,669 (17.3)	35,932 (33.4)	22,491 (20.9)	10,687 (9.9)	6,838 (6.3)	-	1,681 (1.6)	1,563 (1.5)	683 (0.6)	736 (0.7)	770 (0.7)	7,639 (7.1)
2010	121,935 (100.0)	31,404 (25.8)	29,800 (24.4)	27,517 (22.6)	11,926 (9.8)	5,734 (4.7)	2,554 (2.1)	1,807 (1.5)	1,711 (1.4)	821 (0.7)	766 (0.6)	1,129 (0.9)	6,766 (5.5)
2011	151,154 (100.0)	33,186 (22.0)	34,852 (23.1)	34,256 (22.7)	13,937 (9.2)	14,510 (9.6)	3,565 (2.4)	2,250 (1.5)	2,082 (1.4)	1,207 (0.8)	1,090 (0.7)	1,191 (0.8)	9,028 (6.0)
2012	168,583 (100.0)	39,278 (23.3)	33,231 (19.7)	41,238 (24.5)	15,820 (9.4)	16,237 (9.6)	4,690 (2.8)	2,468 (1.5)	2,427 (1.4)	1,422 (0.8)	1,139 (0.7)	1,615 (1.0)	9,018 (5.3)
2013	191,328 (100.0)	42,294 (22.1)	37,084 (19.4)	49,458 (25.8)	18,020 (9.4)	17,806 (9.3)	5,961 (3.1)	2,802 (1.5)	2,663 (1.4)	1,697 (0.9)	1,289 (0.7)	1,758 (0.9)	10,496 (5.5)
2014	204,204 (100.0)	43,890 (21.5)	38,824 (19.0)	54,737 (26.8)	19,568 (9.6)	18,185 (8.9)	6,777 (3.3)	2,952 (1.4)	2,767 (1.4)	1,855 (0.9)	1,319 (0.6)	1,892 (0.9)	11,438 (5.6)
2015	197,550 (100.0)	35,439 (17.9)	40,351 (20.4)	57,464 (29.1)	19,918 (10.1)	7,773 (3.9)	7,016 (3.6)	2,771 (1.4)	2,254 (1.1)	6,140 (3.1)	1,017 (0.5)	2,877 (1.5)	14,530 (7.4)
2016	201,333 (100.0)	36,610 (18.2)	37,963 (18.9)	56,468 (28.0)	20,146 (10.0)	9,485 (4.7)	6,909 (3.4)	2,719 (1.4)	2,543 (1.3)	5,874 (2.9)	1,058 (0.5)	2,522 (1.3)	19,036 (9.5)
2017	222,455 (100.0)	38,090 (17.1)	43,197 (19.4)	71,864 (32.3)	22,270 (10.0)	6,886 (3.1)	9,448 (4.2)	3,132 (1.4)	2,609 (1.2)	4,899 (2.2)	997 (0.4)	2,995 (1.3)	16,068 (7.2)
2018	237,506 (100.0)	39,642 (16.7)	44,016 (18.5)	77,218 (32.5)	22,873 (9.6)	6,930 (2.9)	10,037 (4.2)	3,212 (1.4)	2,875 (1.2)	5,581 (2.3)	1,034 (0.4)	3,081 (1.3)	21,007 (8.8)
2019	264,626 (100.0)	41,149 (15.5)	49,286 (18.6)	88,476 (33.4)	24,502 (9.3)	7,858 (3.0)	10,850 (4.1)	3,607 (1.4)	3,944 (1.5)	8,417 (3.2)	1,304 (0.5)	3,543 (1.3)	21,690 (8.2)
2020	266,321 (100.0)	40,877 (15.3)	49,680 (18.7)	89,056 (33.4)	23,520 (8.8)	7,487 (2.8)	10,867 (4.1)	3,589 (1.3)	3,939 (1.5)	9,477 (3.6)	1,289 (0.5)	3,483 (1.3)	23,057 (8.7)

주 : 캄보디아는 20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부터 별도로 분류되었음.

자료 : 행정안전부(2021).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다문화 초·중·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다문화 학생 수는 총 147,378 명으로 전체 학생(5,355,832명)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 별로는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은 2.0%, 중학생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은 0.5%, 고등학생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은 0.2%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문화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5〉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 수							
다문화학생(A)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전체 학생 수(B)	6,333,570	6,137,374	5,931,646	5,773,998	5,633,725	5,461,614	5,355,832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1.07	1.34	1.67	1.89	2.17	2.51	2.75

자료 :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표 5-1-6〉 2020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학교급	초	85,101	5,088	17,581	107,770 (73.1)
	중	19,556	2,488	4,791	26,835 (18.2)
	고	9,117	1,575	2,081	12,773 (8.7)
합계		113,774	9,151	24,453	147,378 (100.0)

자료 :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4.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권익을 증진시킬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 수는 2009년까지는 한국사회의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였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인원은 2002년에 22,34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고, 2010년이래로 1만 명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4,538명으로 199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5,053명으로 확인되었다. 보호대상아동 수의 감소는 아동 인구 수 감소의 영향과도 연관이 있다.

2020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총 5,053명이었고, 이 중 933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되었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원인은 학대(1,767명), 부모의 이혼 등(539명), 비행·가출·부랑 아동(46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20년 미아로 인한 발생 수는 전년(8명) 대비 증가하여 11명으로 나타났다.

〈표 5-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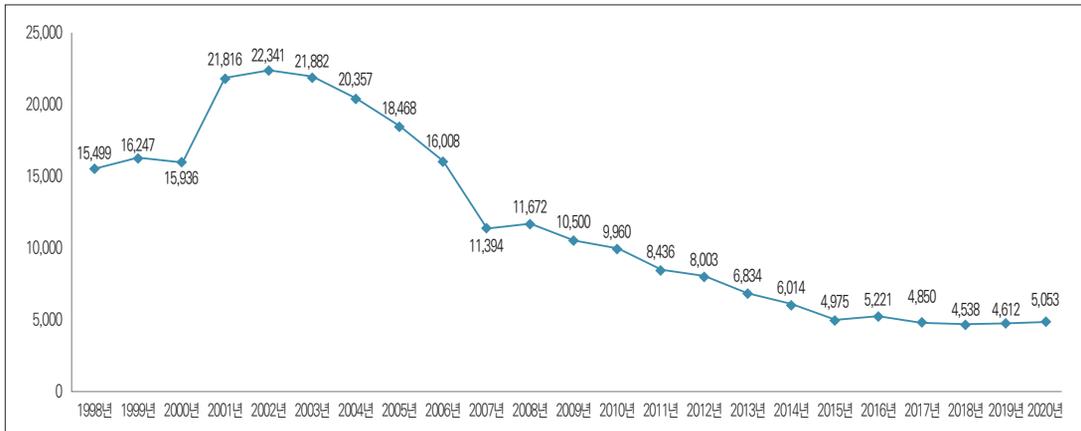
연도	총 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유기 ¹⁾	미혼 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1998년	15,499	4,699	10,800	1,654	5,451	286	3,409					
1999년	16,247	7,247	9,000	1,432	4,284	216	3,068					
2000년	15,936	6,851	9,085	1,270	4,190	152	1,757	1,716				
2001년	21,816	11,230	10,586	717	4,897	98	728	4,146				
2002년	22,341	12,284	10,057	634	4,337	74	749	4,263				
2003년	21,882	11,660	10,222	628	4,457	79	595	4,463				
2004년	20,357	10,964	9,393	481	4,004	62	581	4,265				
2005년	18,468	9,048	9,420	429	2,638	63	1,413	4,877				
2006년	16,008	6,974	9,034	230	3,022	55	802	4,925				
2007년	11,394	2,533	8,861	305	2,417	37	748	5,354				
2008년	11,672	2,388	9,284	202	2,349	151	706	891	1,036	732	274	2,943
2009년	10,500	1,472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2010년	9,960	1,37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2011년	8,436	953	7,483	218	2,515	81	741	1,125	418	536	154	1,695
2012년	8,003	1,077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533	166	1,675

연도	총 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유기 ¹⁾	미혼 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2013년	6,834	814	6,020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2014년	6,014	1,020	4,994	282	1,226	13	508	1,105	308	450	65	1,037
2015년	4,975	472	4,503	321	930	26	360	1,094	279	301	122	1,070
2016년	5,221	638	4,583	264	855	11	314	1,532	290	286	126	905
2017년	4,850	725	4,12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747
2018년	4,538	620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737
2019년	4,612	565	4,047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736
2020년	5,053	933	4,120	172	463	11	468	1,767	181	279	74	539

주 : 1) 2017년부터 '기아'가 '유기'로 변경되었음.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그림 5-1-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추이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19년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형태는 크게 시설입소와 가정보호로 구분된다. 2019년까지 시설입소에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가정보호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보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2020년에는 보호대상아동의 현황 조사 지표가 변경되었다.

〈표 5-1-8〉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단위 : 명)

연도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1998년	10,800	5,141	4,948		132	61	5,659	518	1,741	3,400	-
1999년	9,000	4,702	4,579		78	45	4,298	572	1,776	1,950	-
2000년	9,085	4,481	4,332		64	85	4,604	564	1,755	2,285	-
2001년	10,586	4,774	4,671		41	62	5,812	874	1,848	3,090	-
2002년	10,057	4,663	4,547		57	59	5,394	673	2,544	2,177	-
2003년	10,222	4,824	4,747		42	35	5,398	500	2,506	2,392	-
2004년	9,393	4,782	4,680		38	64	4,611	299	2,100	2,212	-
2005년	9,420	4,818	4,769		48	1	4,602	407	1,873	2,322	-
2006년	9,034	4,366	4,313		53	-	4,668	308	1,259	3,101	-
2007년	8,861	3,245	3,189		39	17	5,616	247	1,991	3,378	-
2008년	9,284	4,964	2,997	1,261	39	667	4,320	178	1,304	2,838	-
2009년	9,028	4,767	2,406	1,640	35	686	4,261	213	1,314	2,734	-
2010년	8,590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
2011년	7,483	3,752	2,246	862	32	612	3,731	128	1,253	2,350	-
2012년	6,926	3,748	2,272	676	25	775	3,178	117	772	2,289	-
2013년	6,020	3,257	1,731	801	39	686	2,763	20	478	1,749	516
2014년	4,994	2,900	1,818	566	10	506	2,094	13	393	1,300	388
2015년	4,503	2,682	1,412	799	13	458	1,821	-	239	1,206	376
2016년	4,583	2,887	1,736	548	11	592	1,696	6	243	1,022	425
2017년	4,125	2,421	1,467	310	19	625	1,704	2	285	994	423
2018년	3,918	2,449	1,300	494	7	648	1,469	1	174	937	357
2019년	4,047	2,739	1,707	401	6	625	1,308	5	104	1,003	196
2020년	4,120	2,727	1,603	342	68	714	1,393	0	88	1,068	237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2020년에는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의 조사 지표가 바뀌어 시설입소에 ‘자립지원시설’과 ‘보호치료 시설’, ‘기타’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시설입소와 가정보호의 각 세부 항목이 ‘비장애’와 ‘장애’로 구분 되었다.

〈표 5-1-9〉 2020년 보호대상아동 보호 세부 현황

(단위: 명)

년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일시보호 시설		자립지원 시설		보호치료 시설		공동생활 가정		기타	소계	소년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2020	4,120	2,727	1,085	48	336	7	18	2	443	8	665	47	54	14	1,393	0	0	86	2	1,037	31	224	13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2020년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입소 중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비장애 1,085명, 장애 4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동생활 가정은 비장애 665명과 장애 47명, 일시보호시설은 비장애 336명과 장애 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는 가정위탁이 비장애 1,037명과 장애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양전 위탁은 비장애 224명과 장애 13명, 입양은 비장애 86명과 장애 2명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과거의 주된 아동보호 형태 역시 변화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가가 원가정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원가정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대안 양육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정과 유사한형태의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보호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에서의 보호가 아닌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소규모 보호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로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의 절차와 결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내·외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도 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가. 추진배경 및 연혁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기준 2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동기 강화, 기초적인 자립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프로그램(두드림)이 운영되었고, 특히, 검정고시 지원 및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해밀)을 2009년부터 운영하였다. 2014년 5월 28일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 5월 29일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현재 전국 22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²⁾)’가 지정·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법정(法定) 명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나, 꿈드림은 ‘꿈=드림(Dream)’, ‘꿈을 드림’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혁

연도	추진내용
2007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201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자퇴 후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
2013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공동, 2013. 11.)
201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5. 28.)
201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 5. 29.)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2015. 5. 12.) • 전국 19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6	• 전국 20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마련(2016. 6. 14.)
2017	•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 기관 '내일이룸학교' 운영(구 취업사관학교)
2018	• 전국 206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9	• 전국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2019. 11. 21.)
2020	• 전국 21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2021	• 전국 220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 3. 23.) - 의무교육단계 학교밖청소년의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가능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요

1)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

2021년 꿈드림센터는 전국 220개소(시·도 센터 16개소, 시·군·구 센터 20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시·도 센터에 5명씩, 시·군·구 센터에 2~4명씩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5-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20	26	17	9	9	6	3	5	1	31	12	13	16	10	23	15	21	3
시·도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04	25	16	8	8	5	2	4	1	30	11	12	15	9	22	14	20	2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사업목표 및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초·중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

꿈드림센터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2015. 8. 27.)」을 토대로 학교, 경찰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연계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연계하고 있으며, '21. 9.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 절차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정보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계제도가 강화되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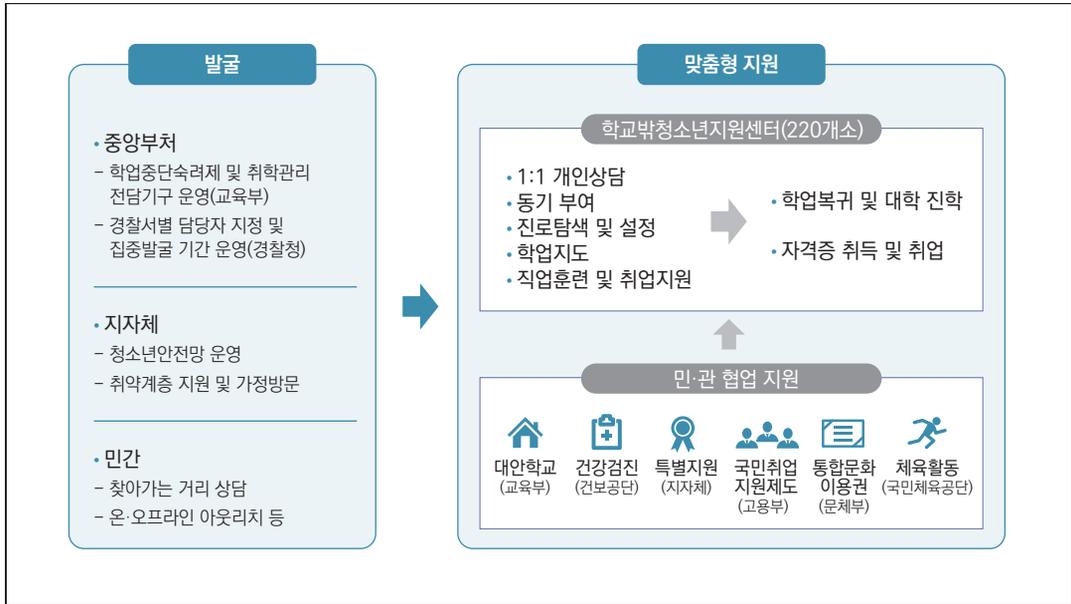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5-2-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단위 :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계 인원	68,459	70,684	47,358	31,622	32,267

자료 : 여성가족부(2021).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꿈드림센터에서는 연계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의 종류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이 있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형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형 청소년에게는 ‘직업역량강화사업’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장 체험’ 등을 통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직업훈련기관인 ‘내일이룸학교’에 연계하거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한다. 내일이룸학교에서는

전문직업훈련과 함께 상담,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자격증 준비, 인성·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화 활동 지원’, ‘봉사 기회 제공’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을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영·유아, 일반, 생애, 암 검진 등) 체계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생애전환기 연령(10대)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림 5-2-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영·유아(0~5세)	학동기(6~18세)	성인기(19~64세)	노년기(65세~)
영유아 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학 학동기 ※ 초1, 초4, 중1, 고1 학생 건강검사 비취학 학동기 (9~18세 학교 밖 청소년) (19세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검진 가능)	일반검진 및 암검진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만 66세 이상))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검진항목으로는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검진, 구강검사 등이 있으며,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메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의 범죄 및 비행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 정책의 변화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쉼터 확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 및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5-2-4〉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구분	내용
1. 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1993. 1. 1. 시행) • 1992년 최초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 1998년 5개 광역시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2. 확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2005. 2. 10. 시행) • 2004년 일시쉼터(드롭인센터) 설치·운영 •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운영

구분	내용
3. 성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부터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 • 2012년 청소년쉼터 신고제 도입 •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2012. 8. 2. 시행),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항 정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 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로서 쉼터의 활동범위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 보호 및 숙식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전국 청소년쉼터 134개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일시			단기			중장기			총계
	고정형	이동형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0년	8	2	10	24	25	49	10	14	24	83
2011년	8	2	10	24	24	48	10	15	25	83
2012년	8	5	13	25	24	49	11	19	30	92
2013년	15	6	21	26	24	50	11	21	32	103
2014년	16	6	22	26	24	50	16	21	37	109
2015년	18	8	26	26	26	52	17	24	41	119
2016년	18	10	28	26	25	51	18	22	40	119

구분	일시			단기			중장기			총계
	고정형	이동형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7년	20	10	30	27	26	53	18	22	40	123
2018년	19	11	30	30	32	62	18	20	38	130
2019년	18	13	31	30	33	63	19	21	40	134
2020년	19	13	32	30	31	61	19	21	40	133
2021년	19	13	32	30	33	63	18	21	39	134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다. 청소년쉼터 종류 및 유형별 기능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가 있고 그 유형별 기능은 아래 <표 5-2-6>과 같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YMCA 쉼터’이고, 2004년에 가정 밖 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 현재 일시쉼터 32개소, 단기쉼터 63개소, 중장기쉼터 3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6> 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2개소)	단기쉼터(63개소)	중장기쉼터(39개소)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정 밖·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결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실화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쉼터를 일시-단기-중장기 유형으로 특성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영모형 및 목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는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2017. 2. 4. 시행)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시설안전 의무를 강화하였다.

청소년쉼터 시설 운영인력 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구조·초기개입을 통한 신속한 가정 및 사회복지귀를 돕기 위해 거리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15명이 거리상담 전문요원으로 활동하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쉼터로 연계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이 24시간 생활하는 청소년쉼터의 특성상 야간 시간대 연계 의뢰 및 자해 등 응급상황발생이 잦아 야간 보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31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5-2-7〉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소청소년	9,350	11,657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31,197	32,109	32,402	20,401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9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 추진배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생리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대신 인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한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군·구를 통해 생리용품 지원을 지속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여성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표 5-2-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2016년 9월 ~ 2017년	2018년 ~ 2021년 현재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자격	-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 의료 급여 수급 자),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연령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앱·어플
지원방법	- 2016 ~ 2017년 : 현물 지급	- 2018년 : 현물 지급 - 2019년 ~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	- 2019년 : 연 최대 126천 원 - 2020년 : 연 최대 132천 원 - 2021년 : 연 최대 138천 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개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³⁾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원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림 5-2-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4.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시·군·구를 통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소득 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5-2-9>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자 (단,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사업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지원 등 (월 10만 원 이내 ~ 연 350만 원 이내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카드임.

〈표 5-2-10〉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비용 지원	월 55만 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연 200만 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월 15만 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 원 이내(검정고시, 학원비)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지원	월 36만 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연 350만 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3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월 30만 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3

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남북 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으로 이주배경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전부 개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표 5-2-1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단위 : 명)

북한이탈청소년 ¹⁾	중도입국청소년 ²⁾	외국인주민 자녀 ³⁾
815	3,240	266,321
통일부('21. 12월)	법무부('21. 12월)	행정안전부('20. 11월)

주 : 1) 북한이탈청소년 : 거주자 연령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
 2)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외국인등록·귀화한 미성년자.
 3) 외국인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흔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입국초기부터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학습 공백, 동급생보다 많은 나이, 교육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육생에게 ‘비교문화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하나원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성·인권·진로·건강 등 다각적 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대면·집단·찾아가는 상담 등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 상담통역지원사를 양성하여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다수의 다문화 청소년이 외모의 차이, 한국어 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주자로서의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 등을 동시에 겪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은 신분상의 불안정(미등록, 단기비자 등)으로 정규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진로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서적·환경적 요인이 취약한 경향이 있어, 낮은 학업 성취도 및 진로설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입국초기 적응과 후기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에서는 한국어 교육, 사회문화 체험, 특기적성 활동, 생활정보(편·입학) 등을 제공하며, 2021년 기준 전국 12개 시·도에서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과정은 진로기초과정 ‘무지개 잡(job)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아라'와 진로심화과정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각각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 인력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일반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과 각계각층의 청소년 교육 전문가를 위한 다문화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은 초등, 중등 프로그램으로 각각 1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4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청소년 지도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비 청소년지도사(대학생)와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식, 다문화 사회의 지도자로서 태도·인식,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역량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연간 300명을 목표로 연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건강한 정책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소개 계간지 '이주배경924'와 정책관심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인 '이슈브리핑'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출생, 국제결혼·외국인가정, 탈북배경 등 다양한 그룹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괄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외에 지역기반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 내의 청소년 관련 자원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이주민 밀집지역인 안산시, 화성시를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민·관·학 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어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급식 지원 등을 관련 자원을 지원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를 추진하였다. 안산시, 화성시에서는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의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및 관련 자원을 조사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교육 등 수요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연계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을 제시하였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홀로 방치되기 쉬운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돌봄취약 계층 청소년(초 4학년~중 3학년)에게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및 체험활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더불어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방학 기간 포함 연중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100개소) 전국 단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농산어촌형을, 2011년에는 장애형과 다문화형 등 신규 운영모형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2016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었던 기존의 참여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였고, 2020년에는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사업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하여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였다.

최근에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2018년 10개소 시범운영, 2019년 전국 확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정보 연계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를 개발하여 운영(2019년 9개소 시범운영, 2020년 전국 확대)하였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휴교 등 돌봄 공백이 있는 청소년 대상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신규 유형 모형(주말형)을 추가하여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표 5-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돌봄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보충학습·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지원,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완화									
사업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4~중2(2015년까지), 초4~중3(2016년부터)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소 수(개소)	200	200	244	250	250	260	280	304	332
	인원(명)	8,200	8,091	9,490	9,745	9,773	10,742	11,584	12,341	13,145
시행주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시설 등									
사업기간	2021. 1. ~ 12월 (1일 4시간, 방학 포함 연중 실시)									
사업규모	332개소 운영(2021년 12월 말 기준)									
지원 예산	개소 당 평균 1.6억 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3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13〉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수)

시도	이용대상			운영개소수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계	초	중	초+중
서울	895	600	295	23	13	5	5
부산	740	410	330	19	9	7	3
대구	710	510	200	19	12	4	3
인천	440	160	280	11	4	7	0
광주	420	290	130	11	7	3	1

시도	이용대상			운영개소수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계	초	중	초+중
대전	275	195	80	8	5	2	1
울산	240	0	240	6	0	6	0
세종	120	40	80	3	1	2	0
경기	2,325	1,370	955	58	25	14	19
강원	845	410	515	26	9	11	6
충북	520	460	60	13	9	0	4
충남	865	240	625	24	6	15	3
전북	920	370	550	24	6	11	7
전남	1,290	555	735	34	11	18	5
경북	740	460	280	18	8	4	6
경남	955	655	300	25	12	2	11
제주	400	240	160	10	4	2	4
계	12,700	6,965	5,815	332	141	113	78

주 : 332개소의 2021년 계획인원 기준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0

7. 지역아동센터 운영

가. 지역아동센터 일반 현황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하여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이용시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지역 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안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은 아동에게 기초학습지도, 학교생활관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에는 공연관람, 견학, 캠프 등이 포함된다.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아동과 부모상담 등을 통해 아동정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기능을 수행한다.

〈표 5-2-1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영역	세부 프로그램
보호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등
교육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등
문화	관람·견학, 캠프·여행, 행사 등
정서지원	상담(연고자, 아동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가족지원(보호자 교육,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홍보,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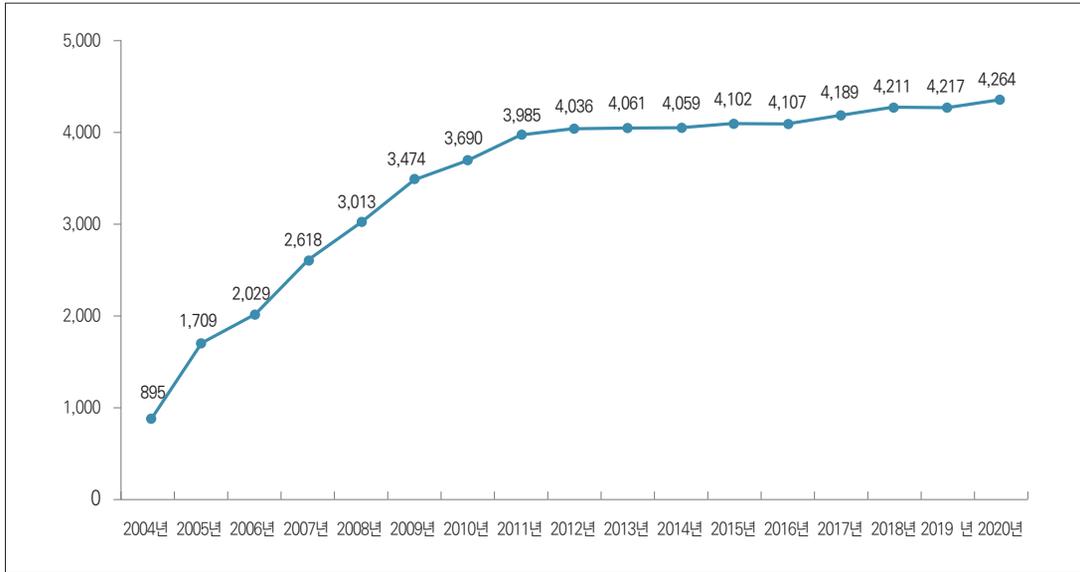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 현황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1년 3,985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20년 4,264개소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00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468개소, 전남 390개소 순이다.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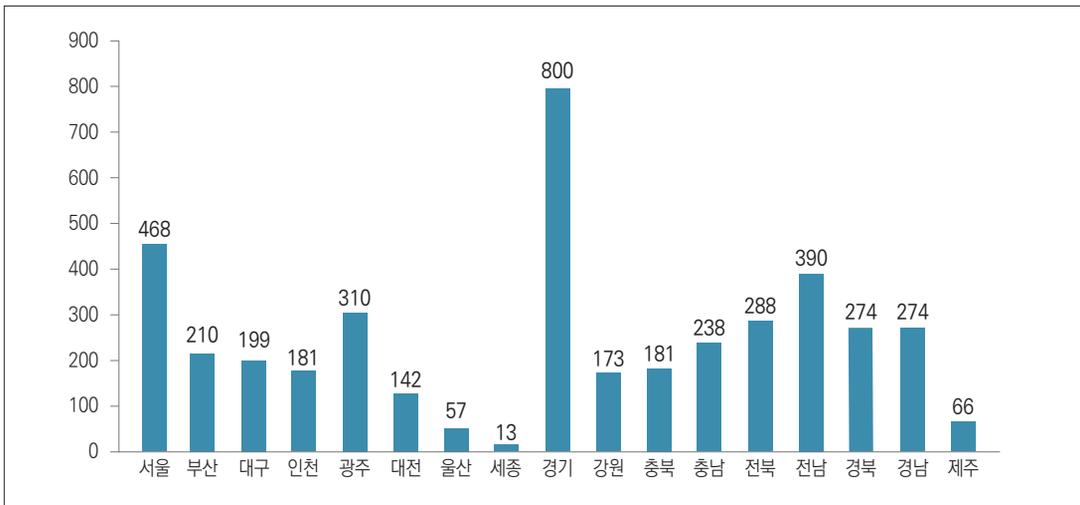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5-2-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단위 :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4)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증가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 아동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2004년 법제화 당시 23,34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06,510명으로 5배 가량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학년별 이용 아동 현황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40,199명,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43,492명, 중학생 17,207명, 고등학생 3,578명, 미취학 아동 1,900명, 학교 밖 청소년 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15〉 연도별·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소계	106,668	108,578	109,610	108,971	106,510	
	남	55,328	54,733	55,873	55,770	54,483	
	여	51,340	53,845	53,737	53,201	52,027	
미취학 아동	소계	1,872	1,111	1,798	2,146	1,900	
	남	929	527	852	1,050	962	
	여	943	584	946	1,096	938	
초등학생	전체	82,140	84,706	87,501	87,775	83,691	
	저학년	소계	41,750	41,970	43,438	44,094	40,199
		남	21,767	21,469	22,214	22,516	20,422
		여	19,983	20,501	21,224	21,578	19,777
	고학년	소계	40,390	42,736	44,063	43,681	43,492
		남	20,595	21,427	22,427	22,350	22,236
		여	19,795	21,309	21,636	21,331	21,256
	중학생	소계	18,156	17,563	16,321	15,531	17,207
		남	9,568	8,971	8,260	8,010	8,895
여		8,588	8,592	8,061	7,521	8,312	
고등학생	소계	4,377	4,185	3,902	3,443	3,578	
	남	2,401	2,209	2,079	1,802	1,906	
	여	1,976	1,976	1,823	1,641	1,672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교밖	소계	123	117	88	76	134
	남	68	64	41	42	62
	여	55	53	47	34	72
기타	소계	-	896	-	-	-
	남	-	66	-	-	-
	여	-	830	-	-	-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나.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설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4,148개 시설에 대해 월평균 569만 원의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표 5-2-1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편성 개소(개소)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4,113	4,113	4,113	4,124	4,135	4,148
지원 단가 (만원/월, 개소)	220	상:220 하:320	320	370	395	420	433	443	458	473	516	529	569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보건복지백서.

2007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 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지역사회복지사 분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심화평가 및 운영컨설팅을 시작하였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심화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76

8.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지도,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기능 회복, 양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지원 대상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복지 욕구조사와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서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 단, 만 12세 이상의 아동이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 가정을 기본대상으로 지원하며,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 지역)에 한하여 특화대상으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발달수준 및 양육환경 사정을 실시하여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 등급으로 판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드림스타트 수행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전반적 삶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별·가구별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생활 전반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특징이다.

〈표 5-2-17〉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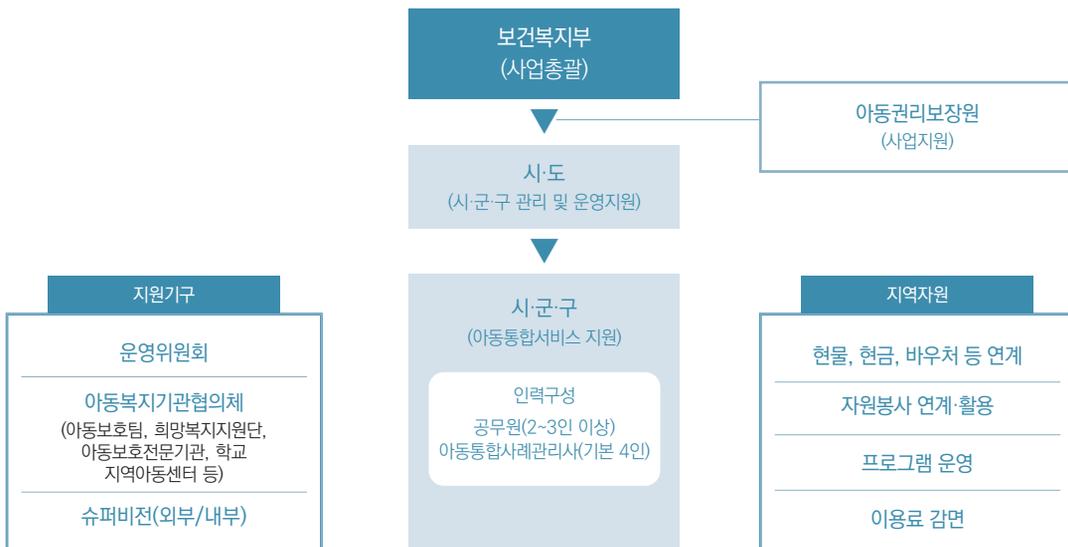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진 및 예방(신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 및 관련교육, 건강교육, 클리닉, 응급처치 및 영양 관련 교육 등) 건강관리(질병관련 치료지원 등)
인지/언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습(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 학습지원(교구재활용학습, 공부방, 도서관운영, 보충학습, 예체능, 학습지 지원 등)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정서/행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서(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진로지도 등) • 심리행동(심리상담 및 치료,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 • 보호(돌봄기관 연계, 야간 보호 및 교육 등), 문화체험
부모 및 가족, 임신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양육, 자조모임 등) • 양육지원(다문화가정지원, 취미, 여가, 안전 및 건강지원 등) 및 산전산후관리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이러한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 재정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 수행기구를 만들어 3인의 전담 공무원과 4~7인 이상의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을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이나 서비스는 기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지원, 전담인력 교육, 운영모델 연구·개발, 사업평가, 후원 개발 및 홍보 등의 아동 통합서비스 실무 지원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운영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2-6]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나.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2007년 16개에서 2008년에는 32개, 2009년에는 75개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2011년에는 131개, 2012년에는 181개, 2013년에는 211개, 2014년에는 220개, 그리고 2015년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서비스 수혜 아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20년에는 16만 50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5-2-18〉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단위 : 개소, 억원,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설치지역	16	32	75	101	131	181	211	220	229	229	229	229	229	229
증가수	-	16	43	26	30	50	30	9	9	-	-	-	-	-
사업예산	50	98	225	301	372	462	576	632	658	668	668	668	677	551
아동 수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134,853	144,289	150,052	156,439	160,501
가구 수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61,630	66,551	80,102	86,681	93,298	97,739	102,459	105,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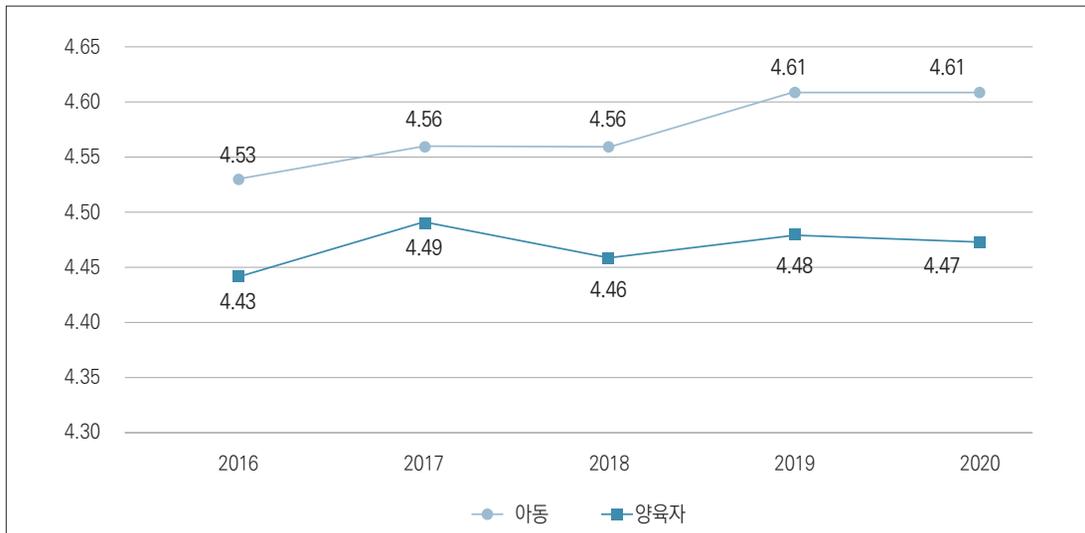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아동 및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드림스타트 사업만족도 조사(10~11월)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5개년간 아동 및 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아동 및 양육자 모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만족도 조사) 2020년 229개 드림스타트 아동 2,945명, 양육자 3,175명 대상으로 고객만족, 성과, 서비스 충성도, 서비스 만족 등 양육자 21문항, 아동 20문항

[그림 5-2-7] 최근 5개년('16~'20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21). 드림스타트 사업만족도 조사.

통합형 사례관리란 서비스의 통합과 전달체계의 통합을 뜻한다. 먼저 서비스의 통합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의 총 3개 영역에 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달체계의 통합이란,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민간 전문인력(아동통합사례관리사/보건, 복지, 보육 전문가)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개별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 및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맞춤형 사례관리란 단순히 서비스를 모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 개념을 지양하고, 아동 및 가정의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대상 아동과 가정을 선정할 때, 우선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시점에서부터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 관리, 비사례관리 대상으로 사례관리 등급을 구분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동 등급에 따라 재사정 주기 및 사례회의(사례점검) 주기를 정하여 대상자의 양육환경, 제공되는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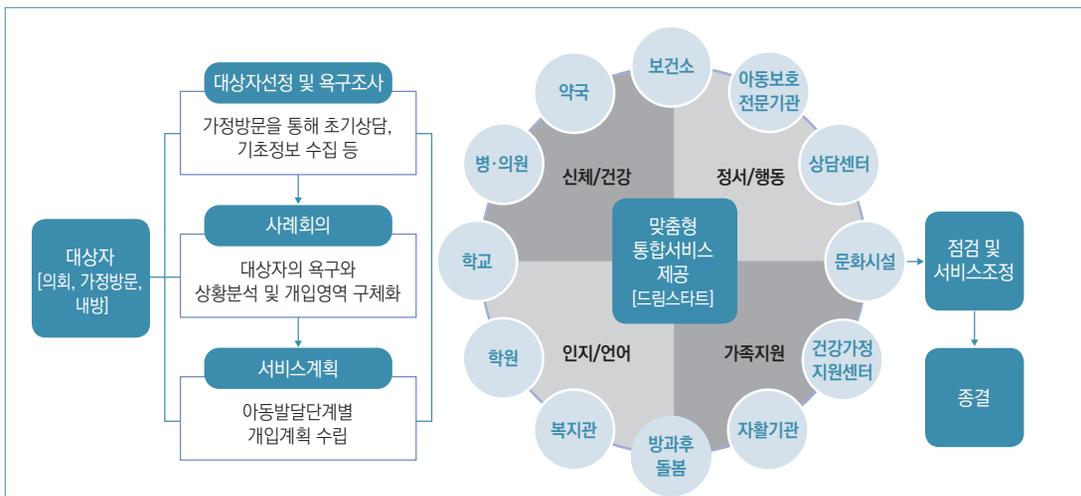
〈표 5-2-19〉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특징	내용
예방적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심각해진 뒤의 사후치료와 개입보다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예방과 보호의 사례관리를 지향
통합적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의 통합 :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서비스 방법론의 통합 : 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 사회실천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의 통합
맞춤형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아동 및 가족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었다. 시·군·구에 드림스타트가 설치되면,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육구와 인프라 조사, 가정방문 인테이크(가정방문 인테이크는 통합서비스 제공 전 단계로서 개별아동과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육·복지 등 세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치료,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방과 후 교실을 연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학력 보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드림스타트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기관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5-2-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자료 : 보건복지부(2021).

9.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 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2009년 1월부터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디딤씨앗 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들에게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초기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이다. 보호대상 아동은 만 0~17세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의 저축액 만큼 정부가 매칭금액을 적립하여 저축액이 두 배가 되도록 한다. 정부지원금액은 2016년까지 월 최대 3만 원 한도였으나 2017년부터 4만 원, 2020년에는 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 저소득 가구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디딤씨앗 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디딤씨앗 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것은 일반 후원자의 나눔 실천에 국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후원자가 아동의 디딤씨앗 통장에 매월 5만 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5만 원을 적립하여 총 10만 원이 아이들의 디딤씨앗 통장에 적립된다. 즉, 기부한 후원금이 두 배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디딤씨앗 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아동 스스로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사회 진출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경제적 자립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아동이 매월 10만 원(아동 5만 원, 국가 5만 원)을 만 0~17세까지 적립 시 2,16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2월 말 기준, 월평균 10만 5천 원을 저축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5-2-20〉 연도별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연도	지원아동수* (명)	월평균 적립금(원)	월평균 매칭금(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10	34,608	29,416	22,535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23,175	510	409	919
2012	46,703	31,792	24,057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25,356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26,006	1,063	808	1,871
2015	61,000	38,247	26,559	1,297	970	2,267
2016	70,417	39,196	26,485	1,564	1,151	2,715
2017	71,457	42,416	31,224	1,876	1,381	3,257
2018	81,412	46,970	32,538	2,244	1,636	3,880
2019	80,770	52,515	33,688	2,665	1,906	4,570
2020	74,685	65,013	39,632	3,179	2,219	5,397

주 : *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연도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10.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된 아동 시설부터 기능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동시설의 다기능화와 함께 가정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여 가정 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2012. 8. 5.)을 통해 보육사 배치기준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준으로 강화하여 보육사 배치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 양육을 위해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의 배치기준도



강화하였고, 자격증 기준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동 1인당 공간을 넓히고(3.3㎡ → 6.6㎡), 침실 1개의 정원도 현행 6인에서 3인 이하로 축소하였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사회 부적응이나 정서불안 장애가 있는 아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6억 원, 약 600명) 하였으며, 2020년에는 문제아동과 아동의 원가족 및 주양육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16억 원)하였다.

〈표 5-2-21〉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2008	285	17,992	242	16,706	2	69	10	477	12	257	14	341	5	142
2009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2010	280	17,119	238	15,787	2	69	11	495	12	235	14	402	3	131
2011	280	16,275	242	15,313	1	32	10	455	12	249	12	113	3	113
2012	281	15,916	243	14,700	-	-	11	497	12	256	12	335	3	128
2013	281	15,239	243	14,038	-	-	11	486	13	250	11	359	3	106
2014	278	14,630	242	13,437	-	-	10	481	12	252	11	336	3	124
2015	281	14,001	243	12,821	-	-	11	447	12	243	12	350	3	140
2016	281	13,689	243	12,448	-	-	11	485	12	230	12	356	3	170
2017	280	12,789	242	11,665	-	-	11	497	12	221	12	279	3	127
2018	279	12,193	241	11,100	-	-	11	447	12	227	12	272	3	147
2019	281	11,665	240	10,585	-	-	12	469	13	218	13	275	3	118
2020	274	11,356	236	10,351	-	-	12	436	15	253	10	315	-	-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의지·자립기술 능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퇴소 후 실제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2008~2010년 3년간 전국 13개 시설(양육시설 11개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에서 4~24세의 자립연장 아동까지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전체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그 대상을 그룹홈,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2012. 8. 5. 시행)에 자립지원 및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전담기구설치, 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의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생활(퇴소) 아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에는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전세자금우선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분양, 자립지원시설 거주, 폴리텍 대학 입학 우선기회 부여, 뉴스타트 프로젝트/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7

나. 가정위탁 지원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2012. 8. 5. 시행)하여 가정위탁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시·군·구에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위탁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20년 말 8,001세대, 9,923명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표 5-2-22〉 연도별 가정위탁 보호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08	11,914	16,454	7,488	10,709	3,436	4,519	990	1,226
2009	12,170	16,608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2010	12,120	16,359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2011	11,630	15,486	7,463	10,205	3,351	4,260	816	1,021
2012	11,030	14,502	7,230	9,732	3,037	3,831	763	939
2013	11,173	14,584	7,352	9,829	3,068	3,803	753	952
2014	11,077	14,385	7,162	9,550	3,089	3,816	826	1,019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15	10,706	13,728	6,944	9,127	2,927	3,556	835	1,045
2016	10,197	12,896	6,642	8,578	2,773	3,348	782	970
2017	9,575	11,983	6,207	7,950	2,605	3,100	763	933
2018	8,955	11,141	5,831	7,426	2,357	2,801	767	914
2019	8,359	10,384	5,442	6,905	2,167	2,572	750	907
2020	8,001	9,923	5,155	6,542	2,069	2,447	777	934

자료 : 보건복지부(2020).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었고, 2020년 10월 1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현재 총 18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다가, 2020년 1월 중앙가정위탁센터가 폐지되고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연령별 월 30~50만 원 이상 권고)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위탁이 종결될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준하여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 및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위탁가정에 대해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위탁아동 1인당 150만 원의 과세공제 혜택을 위탁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당시 1인당 기준 100,000원의 상해 보험료가 2020년에는 68,500원으로 단가는 낮아졌지만, 담보내용은 확대(15개)되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심리정서 검사·치료비를 월 20만 원 이내(심리 검사비 20만 원)로 증액하였다. 진료비 청구 부분에서 심리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월 2만 원 이내,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 이용 시 월 4만 원 이내)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가정을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3세대, 6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보조금(월 20만 원 이상 권고)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아동 관련 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멘토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후견인, 결연 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5~7인의 아동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었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의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과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공동생활가정 수는 2019년 578개에서 2020년 591개로 확대되었고, 보호아동의 수도 2019년 2,949명에서 2020년 3,126명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5-2-23〉 연도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시 설		보호인원
	신고시설	지원시설	
2009	397	290	1,993
2010	416	348	2,127
2011	460	348	2,241
2012	489	416	2,438
2013	480	416	2,481
2014	476	416	2,588
2015	480	448	2,636
2016	510	448	2,758
2017	533	448	2,811
2018	558	464	2,872
2019	578	482	2,949
2020	591	491	3,126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7

마. 입양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1년 8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입양특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일주일 이후부터 입양동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부모 자격 심사 강화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성인이 된 입양자들이 친가족 찾기 등을 위해 본인의 입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양특례법」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1) 입양제도의 개선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된다. 이에 따라 입양 성립요건이 입양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이주허가)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로 강화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는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고,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하였다.

2021년 4월부터는 입양기관에 외부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입양기관 종사자 개인이 아닌, 아동복지분야의 전문가와 입양기관 종사자 다수가 함께 논의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양부모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친생부모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숙려기간을 두었다. 한편, 2021년 6월 30일부터 입양을 보내려는 친생부모는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아동을 직접 양육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세심히 상담받은 후 입양을 숙고하여 입양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접근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부모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는데,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아동이 입양 의뢰된 때부터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6개월 → 1년) 하였으며 입양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 아동양육 정보 제공,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6개월 간 4회 이상의 대면 상담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이후 6개월 간 2번의 추가 상담 및 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입양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아동 및 그 친생부모, 양부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2) 국내 입양 활성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입양이 어려운 경우 국외 입양조치 되도록 2007년부터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앞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입양 중 장애아동 입양비율이 매우 낮으며, 장애아동 양육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2003. 2. 9.)을 통해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입양절차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18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표 5-2-24〉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국외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계	2,439 (100.0)	2,475 (100.0)	2,464 (100.0)	1,880 (100.0)	922 (100.0)	1,172 (100.0)	1,057 (100.0)	880 (100.0)	863 (100.0)	681 (100.0)	704 (100.0)	492 (100.0)

자료 : 1) 보건복지부(2020).

2) e-나라지표(<http://index.go.kr>).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기존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1인당 월 55만 1천 원을 지원 하였으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지원제도 도입으로 2010년 중증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이 월 57만 원으로, 2011년 중증 장애아동의 입양양육수당이 월 62만 7천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는 기존 연 252만 원에서 2011년 26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2012년부터 정부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심리 치료 지원한도를 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3세 미만 입양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2021년 18세 미만까지 확대되었다.

〈표 5-2-25〉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지원 내용		지원액
입양비용 지원(2007년~)		100~270만 원
양육수당(2007년~)		(만 18세 전까지) 월 15만 원/월
의료급여(2005년~)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심리치료지원(2010년~)		(만 18세 전까지) 월 20만 원 한도/월
장애아동(만 18세 전까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1996년~)	월 627천 원, 월 551천 원
	의료비(1996년~)	연간 260만 원 한도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이밖에도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2의 출산’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공개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20일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국내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국내가정 보호,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국민인식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요보호아동 입양 관련 국내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복지과 044-202-3412

11. 아동 급식 지원

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약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2000년 사업 시작 이후 1만 5천여 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방학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여름방학에는 3만 9천 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였다.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 대상을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지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7만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2009년에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조사 및 선정 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방법, 급식단가, 소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연중 조사하되,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지리적 여건 및 방문신청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온라인(복지로)으로 아동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아동 급식 전달 방법은 지역 실정에 따라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 급식과 인근지역의 일반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도시락업체를 통해 도시락 배달이 불가하고, 지역여건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식지원과 식품만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급식 전달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지원 대상의 확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인적자원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급식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물적 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2021년에는 아동 급식 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표 5-2-26〉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대상자	235,202	214,009	257,276	271,606	415,519	476,444	485,811	471,961	438,042	416,092	381,838	350,109	332,865	317,234	357,127	330,014	308,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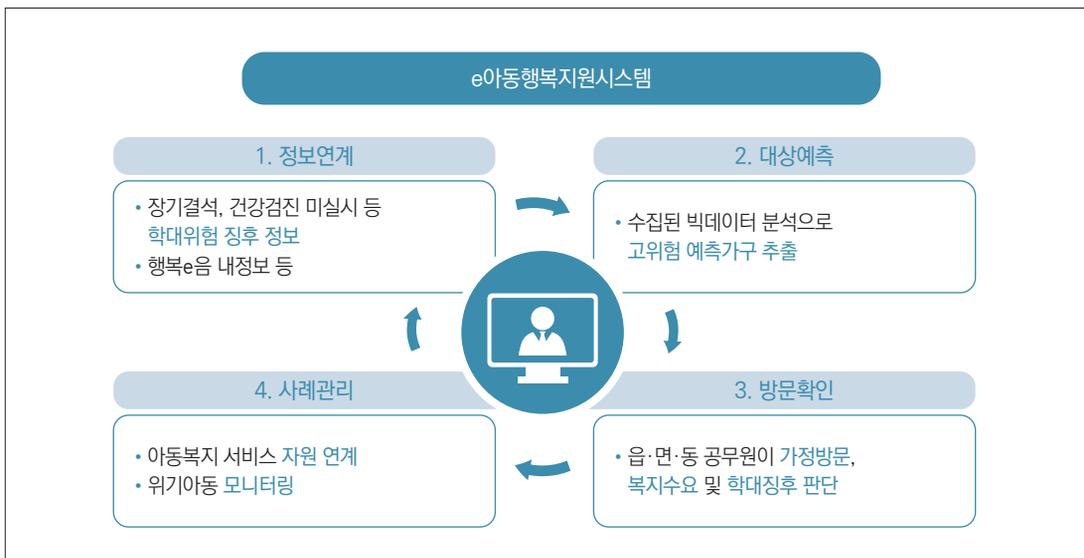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1).

12. 보호대상아동 조기 발견·지원(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예측 및 발굴하기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 및 가공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 또한 가능하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여부’,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으로 확인이 요구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면,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조치하고 있다.

[그림 5-2-9]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추진 체계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2018).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총 274,367명의 아동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9년 4분기부터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가정양육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해오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1. 상담서비스

가. 청소년상담서비스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를 방지할 경우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 내 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당시 체육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청소년종합상담실(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1년 현재 17개 시·도와 214개 시·군·구에 238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설치된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은 1993년에 ‘청소년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법인화됨으로써 중앙지도 차원의 상담시설과 지역 중심의 상담지원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영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대상의 제반 상담 서비스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 활동, 각종 매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서비스의 직·간접 제공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호 업무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청소년정책 환경의 일대 변혁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상담 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2일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업중단·취약계층·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문제(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폭력피해(성·가정·학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위기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 활동에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활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기존 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교육 연수 및 상담 실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영역별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청소년 상담업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밖에 지속적인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과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여 또래상담자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였으며, 품성계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고품질의 양성교육을 지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도를 위한

꿈드림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업은 전문상담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체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청소년상담 중추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담복지 전문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복지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5-3-1〉 2020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단위 : 명)

구분		수료인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3,463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3,280
품성개발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21
부모교육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7
센터직원 직무연수		779
센터직원 이리닝 직무연수		24,239
사업별 직무 연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1,437
	꿈드림센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868
	자살예방교육 지도자	510
총 계		34,614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다.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과 실적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2일 전부개정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전화1388’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 또래상담사업, 학부모상담자원봉사회 운영, 청소년상담관련 심리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도에 부산(현재 진구), 대전(현재 동구), 충북(청주), 1992년도에 인천(현재 동구),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현재 무안),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1999년 울산(중구)에 설치되었다. 이후 2006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8월부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2021년 기준 21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 94.3%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5-3-2)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개),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21	24	15	8	9	5	2	5	0	32	13	12	15	14	22	22	21	2
계	238	25	16	9	10	6	3	6	1	33	14	13	16	15	23	23	22	3
설치율	94.3	96.2	94.1	100.0	81.8	100.0	50.0	83.3	100.0	100.0	73.7	100.0	100.0	100.0	100.0	95.8	100.0	100.0

주 : 설치율은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비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활동

2020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안전망 서비스지원 실적은 4,692,127건으로 2019년 이용건수(6,456,858건)보다 27.3%p만큼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2,124,353건(45.3%), 여자 2,567,774건(54.7%)으로 남자 이용자보다 여자 이용자가 더 많았다.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유형별 추세를 살펴보면, ‘개별지원서비스’가 42.5%(1,994,639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단프로그램’ 16.9%(793,599건), ‘그룹지원서비스’ 15.3%(719,074건), ‘개인상담’ 10.0%(467,6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76.8%(3,601,370건), ‘성인’이 23.2%(1,090,757건)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 22.0%(1,034,545건), ‘중학생’ 24.5%(1,148,299건), ‘고등학생’ 21.0%(985,412건), ‘대학생’ 4.1%(194,504건), ‘근로청소년’ 0.4%(19,902건), ‘무직청소년’ 4.7%(218,708건)로 중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13.3%(623,7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7.3%(343,845건), ‘기타’가 2.6%(123,154건)이었다.

2021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안전망 서비스지원 실적은 6,082,537건으로 2020년 이용건수(4,692,127건)보다 29.6%p만큼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2,766,467건(45.5%), 여자 3,316,070건(54.5%)으로 남자 이용자보다 여자 이용자가 더 많았다.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유형별 추세를 살펴보면, ‘개별지원서비스’가 37.8%(2,298,995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단프로그램’ 21.1%(1,285,484건), ‘그룹지원서비스’ 16.2%(984,405건), ‘개인상담’ 11.4%(692,2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79.6%(4,842,923건), ‘성인’이 20.4%(1,239,614건)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 26.2%(1,591,162건), ‘중학생’ 25.8%(1,569,540건), ‘고등학생’ 19.9%(1,209,064건), ‘대학생’ 3.8%(229,754건), ‘근로청소년’ 0.4%(24,819건), ‘무직청소년’ 3.6%(218,584건)로 초등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11.5%(700,547건)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6.8%(416,436건), ‘기타’가 2.0%(122,631건)이었다.

〈표 5-3-3〉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기타	소계	
개인상담	126,419	130,078	106,896	20,254	2,396	25,137	45,341	10,187	964	467,672	
집단프로그램	316,347	253,594	139,485	10,248	235	5,278	42,658	21,977	3,777	793,599	
전화상담	15,203	34,720	61,271	37,872	2,417	23,539	80,391	98,682	71,591	425,686	
심리 검사	개별	19,760	23,420	17,821	2,497	331	2,807	5,754	1,060	269	73,719
	집단	16,502	33,082	13,828	803	10	462	2,652	917	296	68,552
사이버 상담	메일	3,193	11,877	11,916	3,136	49	1,768	1,248	205	2,046	35,438
	채팅	2,804	12,148	25,803	16,795	831	6,952	1,868	603	5,184	72,988
사업수행 프로그램	14,444	10,330	7,435	486	79	636	1,595	2,104	2,412	39,521	
지원 서비스	개별	359,739	475,011	424,464	93,500	12,567	143,033	337,676	134,304	14,345	1,994,639
	그룹	159,997	163,840	176,198	8,882	981	9,016	104,422	73,590	22,148	719,074
기타상담	137	199	295	31	6	80	153	216	122	1,239	
합계	1,034,545	1,148,299	985,412	194,504	19,902	218,708	623,758	343,845	123,154	4,692,127	

주 : 기타는 부모 및 가족을 제외한 교사, 지역사회 보호자 등을 의미함.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0).

〈표 5-3-4〉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기타	소계	
개인상담	192,575	195,306	153,187	32,292	3,379	31,135	69,400	13,552	1,462	692,288	
집단프로그램	585,443	412,269	199,191	12,829	722	6,203	39,519	26,328	2,980	1,285,484	
전화상담	20,285	43,592	63,947	44,112	2,022	26,642	100,497	108,157	71,484	480,738	
심리 검사	개별	29,366	31,190	21,501	3,546	347	3,485	9,821	684	286	100,226
	집단	21,968	33,594	19,893	1,974	13	674	3,401	698	486	82,701
사이버 상담	메일	3,454	13,699	11,588	2,737	42	1,733	693	422	1,608	35,976
	채팅	2,139	11,821	23,081	17,462	766	6,335	2,160	1,183	4,360	69,307
사업수행 프로그램	24,661	12,052	10,382	624	115	537	1,469	683	458	50,981	
지원 서비스	개별	453,724	550,009	464,230	96,520	13,624	129,315	397,288	178,240	16,045	2,298,995
	그룹	257,384	265,736	241,850	17,621	3,784	12,456	76,130	86,241	23,203	984,405
기타상담	163	272	214	37	5	69	169	248	259	1,436	
합 계	1,591,162	1,569,540	1,209,064	229,754	24,819	218,584	700,547	416,436	122,631	6,082,537	

주 : 기타는 부모 및 가족을 제외한 교사, 지역사회 보호자 등을 의미함.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대인관계’ 21.5%(854,287건)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신건강’ 19.9%(788,782건), ‘학업·진로 문제’ 12.9%(513,842건), ‘가족’ 10.5%(416,755건), ‘일탈·비행’ 10.2%(405,338건), ‘컴퓨터·인터넷 사용’ 8.2%(240,489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전년도 27.4%)’, ‘정신건강(전년도 16.1%)’, ‘학업·진로 문제(전년도 13.4%)’에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81.1%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7.1%, ‘이성교제’ 2.1%, ‘어른과의 관계’ 1.5%, ‘교사와의 관계’ 1.3% 순이었다. 정신건강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우울·위축 문제’가 40.4%로 가장 많았고, ‘강박·불안 문제’가 17.6%, ‘자살관련 문제’가 12.4%, ‘자해 문제’

5.9%, '충동(분노) 조절 문제' 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38.2%, '학업흥미·학업 동기 부족' 15.7%, '학교생활부적응' 12.5%,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8.0%, '진로의식부족' 7.2%, '학습능력 부족' 5.6% 순이었다. 그 밖에 일탈 및 비행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31.8%, '금품갈취·절도·도벽' 21.7%, '음주·흡연·약물오남용' 8.8%, '가출' 8.3%, '비행친구와 어울림' 7.5%, '학교 외의 폭력' 5.4%, '늦은 귀가·잡은 외박' 1.8% 순이었다.

202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정신건강' 22.2%(1,130,526건)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21.9%(1,116,861건), '학업·진로 문제' 12.1%(615,546건), '가족' 9.5%(485,261건), '일탈·비행' 9.0%(460,653건), '컴퓨터·인터넷 사용' 9.0%(459,028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전년도 21.5%)', '정신건강(전년도 19.9%)', '학업·진로 문제(전년도 12.9%)'에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83.6%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5.2%, '이성교제' 1.8%, '어른과의 관계' 1.3%, '교사와의 관계' 1.0% 순이었다. 정신건강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우울·위축 문제'가 34.5%로 가장 많았고, '자살관련 문제'가 18.3%, '강박·불안 문제'가 17.4%, '자해 문제' 6.6%, '충동(분노) 조절 문제' 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37.9%, '학업흥미·학업 동기 부족' 15.9%, '학교생활부적응' 12.4%,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8.9%, '학습능력 부족' 6.6%, '진로의식부족' 4.8% 순이었다. 그밖에 일탈 및 비행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35.4%, '금품갈취·절도·도벽' 20.3%, '음주·흡연·약물오남용' 9.3%, '비행친구와 어울림' 6.5%, '가출' 6.4%, '학교 외의 폭력' 5.8%, '늦은 귀가·잡은 외박' 1.8% 순이었다.

〈표 5-3-5〉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정보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개인 상담	56,768	52,731	62,460	9,283	39,874	89,971	102,310	5,446	43,419	3,940	69	1,267	134	467,672
집단 상담	36,165	109,425	108,234	9,589	25,713	282,183	99,237	885	98,172	9,429	663	13,904	0	793,599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정보인터넷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합계	
전화 상담	35,100	25,729	29,818	10,657	14,610	48,142	60,338	4,001	16,972	148,759	685	4,623	26,252	425,686	
심리 검사	개별	7,096	6,318	10,683	1,013	6,405	10,477	16,327	495	13,959	516	11	359	60	73,719
	집단	1,897	736	25,229	133	12,720	6,459	9,326	29	5,006	6,916	0	94	7	68,552
사이버 상담	메일	3,761	436	6,566	1,685	1,556	9,577	7,737	1,355	366	2,150	74	60	115	35,438
	채팅	10,409	1,133	8,869	2,308	3,590	13,079	21,835	1,496	902	2,983	190	294	5,900	72,988
사업수행 프로그램	2,255	4,566	4,848	177	1,371	9,650	3,403	254	7,000	3,582	101	2,314	0	39,521	
지원서비스(개별)	263,165	204,173	257,003	34,757	140,431	384,584	468,055	24,477	139,060	61,935	724	15,912	363	1,994,639	
기타 상담	139	91	132	10	59	165	214	6	75	279	7	55	7	1,239	
총합계	416,755	405,338	513,842	69,612	246,329	854,287	788,782	38,444	324,931	240,489	2,524	38,882	32,838	3,973,053	

주 :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0).

〈표 5-3-6〉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정보인터넷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합계	
개인 상담	87,791	62,356	85,387	12,931	65,406	128,601	172,500	7,364	63,668	3,819	209	2,187	69	692,288	
집단 상담	35,636	147,902	152,689	14,438	44,131	465,896	230,446	1,727	140,693	16,064	6,876	28,986	-	1,285,484	
전화 상담	39,293	26,778	35,074	10,588	17,614	54,681	79,773	3,708	18,291	162,703	1,074	5,557	25,604	480,738	
심리 검사	개별	10,735	7,168	14,901	1,528	10,131	13,647	23,381	656	17,392	490	35	40	122	100,226
	집단	2,798	1,244	29,764	748	18,210	12,468	9,897	151	5,899	248	-	1,274	-	82,701
사이버 상담	메일	3,517	527	6,856	1,318	1,875	9,914	7,776	1,455	296	2,065	78	173	126	35,976
	채팅	8,229	1,215	7,921	1,225	2,968	10,578	23,256	1,125	790	6,524	120	387	4,969	69,307
사업수행 프로그램	2,320	5,155	7,689	445	1,519	15,036	4,847	259	12,181	835	130	565	-	50,981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외모	컴퓨터/정보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지원서비스 (개별)	294,823	208,209	275,157	39,033	179,998	405,857	578,343	27,670	199,743	75,243	1,062	13,583	274	2,298,995
기타 상담	119	99	108	20	58	183	307	8	75	332	4	104	19	1,436
총합계	485,261	460,653	615,546	82,274	341,910	1,116,861	1,130,526	44,123	459,028	268,323	9,588	52,856	31,183	5,098,132

주 :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3, 6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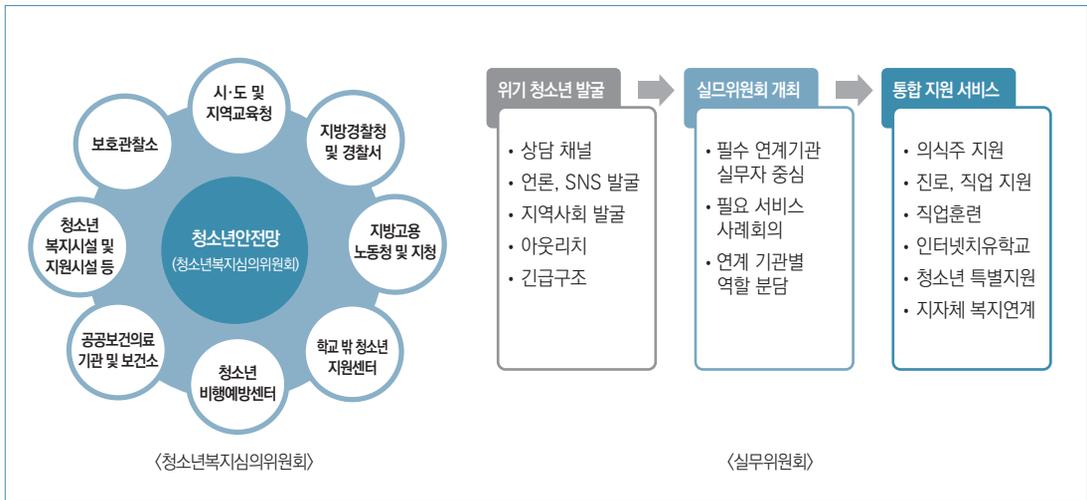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가. 운영배경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 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그림 5-3-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운영 현황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2020년 전국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의 23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23,022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2,713,713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021년은 전국 17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의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45,016명의 위기청소년에게 3,283,400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짬뽕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점차적으로 의료, 법률, 자활 등의 전문분야에서도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388 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청소년안전망의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구체적으로 2020년은 남자 청소년이 48.9%(60,144명), 여자 청소년이 51.1%(62,878명)였으며, 2021년은 남자 청소년이 48.5%(70,319명), 여자 청소년이

51.5%(74,697명)로, 2020년 및 2021년 모두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명)

연도	남	여	합계
2008	40,977	40,025	81,002
2009	47,825	50,195	98,020
2010	67,035	61,391	128,426
2011	77,836	67,540	145,376
2012	78,900	70,407	149,307
2013	94,901	88,427	183,328
2014	122,681	119,549	242,230
2015	113,482	111,310	224,792
2016	95,783	90,553	186,336
2017	90,779	87,349	178,128
2018	85,388	87,610	172,998
2019	82,548	85,829	168,377
2020	60,144	62,878	123,022
2021	70,319	74,697	145,016

자료: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2020년은 전체 2,713,713건으로 2019년 대비 17.2% 감소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73.9%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로 나타났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3.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전체 3,283,400건으로 2020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69.7%로 가장 많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4.8%,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8〉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지원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 건)

연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 계
2008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434,281
200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2010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403,494
2011	1,102,858	64,147	237,072	146,621	18,565	8,513	4,981	191,135	1,773,892
2012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2013	1,207,143	53,946	255,286	101,809	15,475	5,036	3,749	278,829	1,921,273
2014	1,249,266	68,958	246,078	99,013	20,317	14,391	2,487	180,879	1,881,389
2015	1,288,115	61,151	311,197	80,118	20,703	4,966	1,803	232,547	2,000,600
2016	1,363,329	80,908	352,116	105,745	9,231	9,322	1,644	400,269	2,322,564
2017	1,566,866	71,396	417,669	84,188	18,138	11,404	1,986	388,194	2,559,841
2018	1,802,537	100,715	531,865	103,778	12,023	13,170	3,413	413,958	2,981,459
2019	1,943,644	93,958	638,904	88,982	32,939	17,373	3,259	460,349	3,279,408
2020	2,005,457	60,528	369,778	74,020	6,374	55,782	2,352	139,422	2,713,713
2021	2,287,565	96,443	484,789	114,405	26,514	91,248	8,743	173,693	3,283,400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6277

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였다.

〈표 5-3-9〉 2020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경기 (3개소)	전북 (1개소)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사하구	남구	군포시 수원시 파주시	부안군

자료 : 여성가족부(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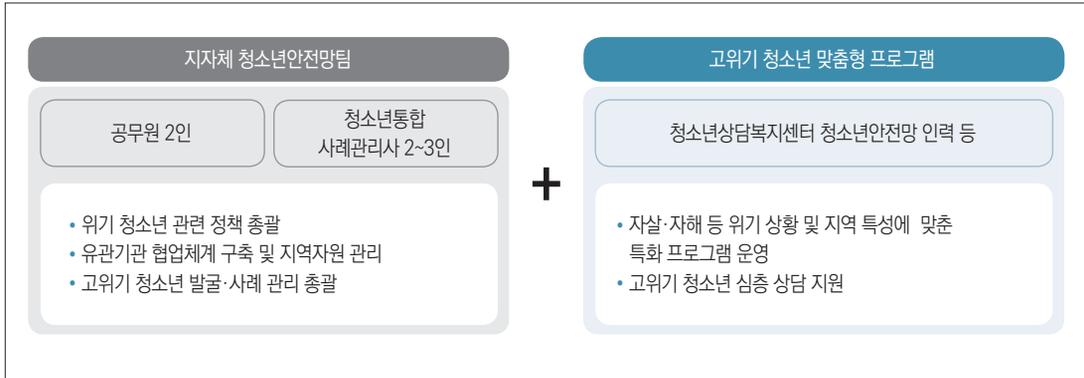
〈표 5-3-10〉 2021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울산 (2개소)	경기 (5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남 (1개소)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사하구	남구 북구	군포시 수원시 파주시 구리시 화성시	부안군	장흥군	김해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지자체 내에 전담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인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 연계기관 관리 등 지역의 위기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소년안전망팀 사업’과 해당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와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이 함께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모형을 발굴하고, 정책대상자인 청소년 중심의 요구를 바탕으로 고위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3-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자료: 여성가족부(2021).

3. 청소년상담1388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전화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화 등을 1388로 통합하고, 청소년의 생활환경 변화와 발맞춰 모바일(2007년)과 사이버(2011년) 등의 상담매체를 추가하여 청소년안전망의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상담채널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 제공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20,77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 98,46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모바일상담과 사이버상담을 합하여 2020년에는 936,037건, 2021년에는 852,431건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은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236개 센터에서, 2021년은 17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238개 센터에서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은 문자와 카카오톡, 사이버는 인터넷 채팅 및 게시판상담 등을 통하여 청소년상담1388을 운영하고 있다.



〈표 5-3-11〉 청소년상담1388 주요 실적

(단위 : 건)

구분	실적			증감	
	2019년(A)	2020년(B)	2021년(C)	B-A(%)	C-B(%)
청소년상담1388 이용실적(상담건수)	902,294	936,037	852,431	33,743(3.6)	-83,606(-8.9)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한편, 청소년상담1388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 배너,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했으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편의점 등의 다양한 시설 및 매체를 통하여 송출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다.

〈표 5-3-12〉 연도별 청소년상담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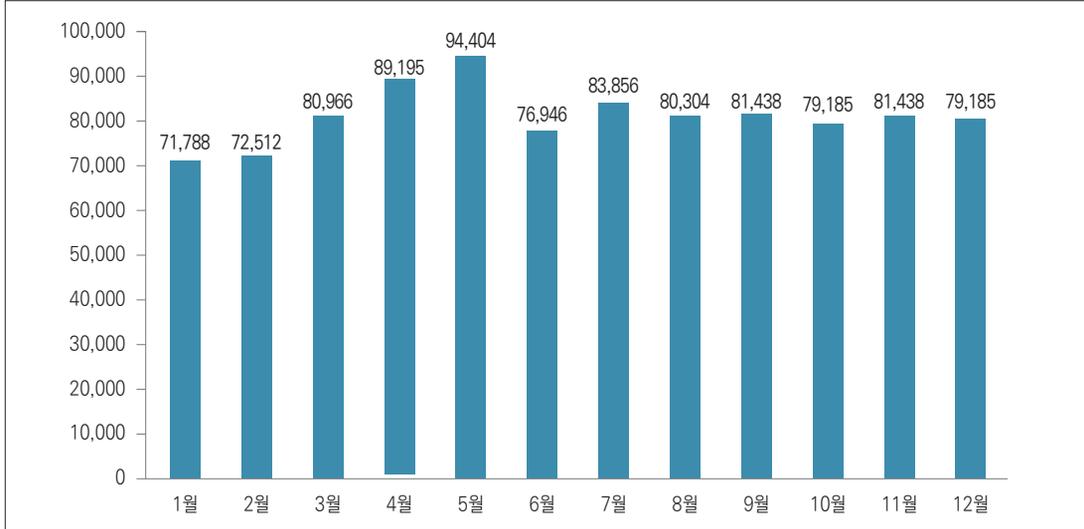
연도	가족	일탈/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관 계	정신 건 강	생활 습관/ 외모	인터넷 사용	근로	정보 제 공	법률 정 보	활동	기타	합계
2011	48,469	48,361	96,925	27,368	18,999	107,020	36,643	18,257	20,275	-	184,264	1,500	7,512	69,638	685,231
2012	45,703	41,610	58,147	25,361	17,816	103,236	46,021	12,361	17,727	-	224,768	1,763	8,215	72,327	675,055
2013	45,618	37,308	81,103	29,451	19,000	105,574	49,615	11,513	17,624	-	251,748	1,969	6,463	71,895	728,881
2014	59,072	37,885	93,708	30,060	21,691	135,286	60,135	12,742	19,788	9,715	188,712	806	6,549	75,132	751,281
2015	109,623	32,777	89,934	31,802	27,064	140,437	77,126	18,161	24,259	6,372	135,926	1,480	11,351	66,185	772,497
2016	126,701	38,408	98,222	29,200	29,003	145,958	92,597	15,829	17,451	4,936	143,386	1,786	11,041	78,930	833,448
2017	94,470	39,471	101,340	29,649	29,583	157,171	117,590	16,403	22,480	6,541	167,616	2,268	17,011	61,077	862,670
2018	101,372	41,120	98,797	30,528	27,032	157,056	150,229	15,658	19,529	16,216	151,800	2,174	12,257	54,169	877,937
2019	81,745	38,745	110,739	25,683	36,166	149,686	162,986	16,135	23,957	25,697	164,510	1,853	10,227	54,165	902,294
2020	97,619	31,758	84,611	27,006	31,520	128,302	190,330	16,433	23,718	17,820	171,297	1,578	7,543	106,502	936,037
2021	84,772	30,691	79,957	19,519	31,722	118,421	205,373	12,316	21,390	2,718	170,834	1,335	6,661	66,722	852,431

주 : 상담유형 중 근로는 2014년부터 별도 집계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그림 5-3-3] 2020년 청소년상담1388 월별 이용실적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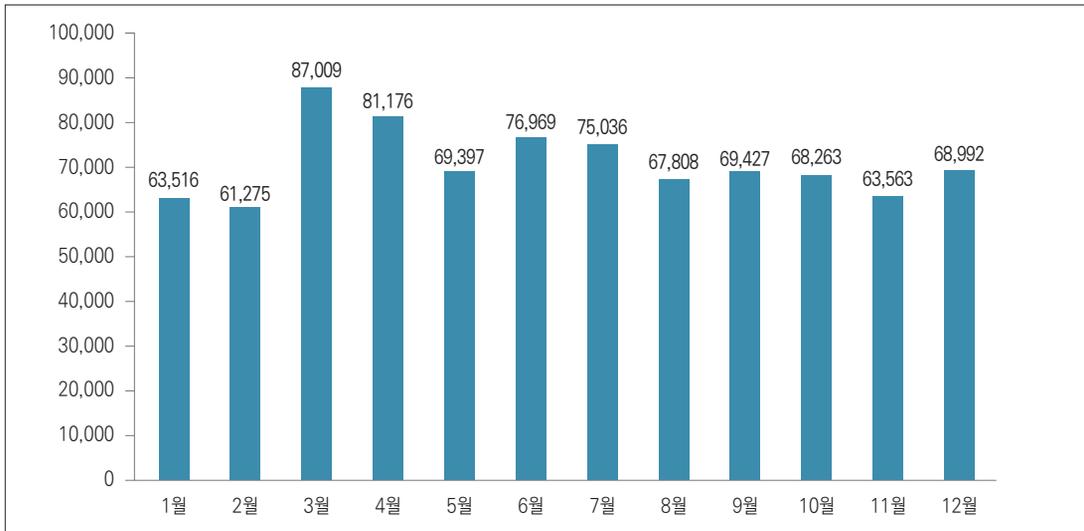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0

[그림 5-3-4] 2021년 청소년상담1388 월별 이용실적

(단위 : 건)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0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아 상담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후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을 돕고 위기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중심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에 힘쓰고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 (Youth Companion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청소년 동반자들은 위기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 4개 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동반자 223명이 활동하였고,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로 확대되어 운영되면서 청소년동반자도 470명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1,349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함에 따라 36,974명의 청소년이 지원받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보다 많은 고위기 청소년들이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표 5-3-13〉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소년동반자 수	470	1,270	880	880	980	985	1,000	1,044	1,066	1,146	1,261	1,313	1,349
수혜 청소년 수	14,510	24,515	25,675	26,324	31,226	31,190	33,471	34,775	35,710	38,456	41,392	43,246	36,974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6277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가. 또래상담 사업 개요

또래상담 사업은 교우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994년부터 개시되었다. 청소년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또래상담은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2021년 현재 전국 8,01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5-3-14〉 2021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단위 : 개교, 명)

구분	또래상담 운영학교	또래상담 지도교사	또래상담자
2021년	8,012	3,319	301,985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나. 또래상담 사업 추진현황

1994년에 처음 시작된 또래상담 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오다가 2012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

또래상담의 취지는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있으며, 교사나 부모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래상담 지도자 및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해 지도자 지침서 제작 및 또래상담 홈페이지⁴⁾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현장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래상담자용 스마트수첩을 개발하여 또래상담자 스스로 상담활동을 쉽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원활하지 않아 지도교사 양성체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또래상담자 양성을

4) 또래상담 홈페이지: <http://www.peer.or.kr/>

위한 온라인 콘텐츠와 또래상담자 대상 비대면 활동 안내 매뉴얼을 신규 개발 및 보급하였다. 2021년에는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러닝 콘텐츠)을 제작·보급하고, 온라인으로도 또래상담(채팅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또래상담 플랫폼’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다.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효과

또래상담은 일정시간 이상의 상담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력하는 상담활동으로, 또래상담 동아리를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청소년 자치활동이다. 또래상담자는 학교 내에서 따돌림, 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활동이 가능하도록 훈련받는다.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은 12시간 과정의 기본교육 및 이를 이수한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8시간 과정의 심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또래상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또래상담자 및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공감, 의사소통, 이타성, 리더십, 학교폭력 인지능력,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80.9점)의 점수 대비 실시 후(86.0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를 대상으로 또래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능력 등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프로그램 실시 전의 점수(73.1점)보다 실시 후의 점수(77.6점)가 높게 나타나 참여자 모두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5) 2021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도)

(단위: 점)

구분		사전(A)	사후(B)	변화량(B-A)
하위 요인	공감능력	83.4	89.2	5.8
	의사소통능력	78.7	85.0	6.3
	이타성	79.9	85.7	5.8
	리더십	79.2	84.8	5.7
	학교폭력 인지능력	81.9	84.2	2.3
	학교폭력 대처능력	82.4	87.0	4.5

구분	사전(A)	사후(B)	변화량(B-A)
전체	80.9	86.0	5.1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표 5-3-16〉 2021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내담자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점)

문항	사전(A)	사후(B)	변화량(B-A)
또래관계 만족도	72.1	77.0	4.9
학교생활 적응능력	74.1	78.1	4.0
전체	73.1	77.6	4.5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8

제4장 청소년의 건강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19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 6~17세)의 체격검사 결과, 17세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173.8cm, 여학생이 161.2cm로 2018년 남학생 173.6cm, 여학생 160.9cm와 비교할 때, 남학생은 0.2cm, 여학생은 0.3cm만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7세 청소년의 평균 신장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남학생은 동일하며, 여학생 0.1cm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연령별 체격의 성차를 살펴보면, 6~9세까지는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장이 약 1cm이상 크지만, 10세부터 11세까지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2세가 되면서부터 다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 신장이 커지기 시작하여 15세가 되면 11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단위: cm)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120.1	118.9	125.8	124.9	131.3	130.1	136.6	136.0	141.9	142.3	148.1	149.2
2005	120.6	119.3	126.5	125.3	132.0	131.0	137.3	137.1	143.0	143.7	149.1	150.3
2006	121.7	120.2	127.1	125.8	132.6	131.5	138.7	138.3	143.5	144.4	150.0	150.9
2007	121.6	120.4	127.4	126.1	132.9	131.8	138.6	138.4	143.7	144.7	150.4	151.1
2008	122.0	120.7	127.4	126.2	133.1	131.7	138.7	138.5	143.5	144.6	150.2	151.0
2009	121.9	120.6	127.7	126.2	133.0	132.0	138.3	138.0	143.9	144.7	150.5	151.0
2010	121.8	120.6	127.7	126.4	133.1	132.0	138.4	138.1	144.0	144.6	150.2	151.2
2011	121.7	120.5	127.8	126.4	133.5	132.3	138.7	138.4	143.9	144.8	150.4	151.1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2	121.6	120.2	127.8	126.5	133.4	132.3	139.1	138.5	144.1	144.9	150.6	151.1
2013	120.6	119.6	125.5	124.4	131.7	130.4	137.1	136.6	142.7	143.2	148.8	149.5
2014	120.5	119.4	125.9	124.5	131.6	130.3	137.1	136.4	142.5	142.7	148.9	149.8
2015	120.5	119.6	125.7	124.5	131.5	130.5	137.1	136.5	142.9	142.9	148.9	149.8
2016	120.5	119.3	125.7	124.5	131.8	130.2	137.4	136.6	142.7	143.1	149.2	150.1
2017	120.4	119.3	125.7	124.6	131.6	130.6	137.1	136.5	142.9	143.3	149.5	150.1
2018	120.9	119.8	125.7	124.6	131.7	130.5	137.4	136.6	143.0	143.2	149.6	150.0
2019	121.1	119.3	126.0	124.6	132.0	130.6	137.8	136.6	143.1	143.6	149.7	150.0
측정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154.9	154.4	161.8	157.3	167.2	158.9	170.4	159.5	172.2	160.2	173.0	160.5
2005	156.4	154.9	163.2	157.9	168.5	159.3	171.6	160.2	172.8	160.7	173.6	161.0
2006	158.1	156.1	164.2	158.2	168.7	159.5	171.8	160.4	173.0	160.7	173.9	161.1
2007	158.3	156.1	164.2	158.3	169.2	159.7	172.0	160.4	173.1	160.7	173.9	160.9
2008	158.1	155.9	164.3	158.4	169.1	159.7	172.0	160.5	173.3	160.8	173.9	161.2
2009	157.8	155.7	164.3	158.0	169.1	159.6	171.9	160.4	173.2	160.7	173.8	161.1
2010	157.9	155.5	164.2	158.2	168.9	159.6	171.8	160.6	173.0	160.7	173.7	160.9
2011	158.2	155.8	164.6	158.1	168.9	159.5	171.8	160.3	173.1	160.7	173.7	161.1
2012	158.2	155.7	164.3	158.0	168.7	159.3	171.8	160.2	172.9	160.6	173.6	160.9
2013	156.3	154.8	163.0	157.6	167.9	159.2	171.2	160.0	172.6	160.5	173.2	160.8
2014	156.4	155.1	163.4	157.7	168.1	159.5	171.3	160.2	172.7	160.5	173.4	160.9
2015	156.6	155.4	163.7	158.1	168.4	159.4	171.5	160.4	172.7	160.5	173.4	160.8
2016	157.2	155.3	164.0	158.4	168.9	159.7	171.6	160.3	172.8	160.6	173.5	160.8
2017	157.3	155.5	164.2	158.4	168.7	159.8	171.8	160.5	172.9	160.6	173.3	160.7
2018	157.2	155.5	164.3	158.4	169.1	159.9	171.8	160.8	173.1	160.9	173.6	160.9
2019	157.2	155.6	164.7	158.5	169.3	160.1	172.2	161.0	173.3	161.3	173.8	161.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019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중은 17세 남학생 평균 71.0kg, 여학생은 57.8kg로 2018년 남학생 평균 70.8kg에 비해 0.2kg만큼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평균 57.3kg에 비하여 0.5kg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17세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중은 평균 13.2kg 차이가 있었고, 10년 전인 2009년에는 남학생은 68.1kg, 여학생은 56.0kg으로 평균 12.1kg 차이가 있었다. 2019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중은 2009년 남학생과 여학생보다 각각 2.9kg, 1.8kg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단위 : kg)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23.3	22.4	26.4	25.4	29.9	28.5	33.6	32.2	37.8	36.3	42.0	41.8
2005	24.0	22.9	27.3	26.0	31.0	29.4	34.8	33.4	39.4	38.1	44.5	43.6
2006	24.5	23.2	27.7	26.4	31.6	29.7	35.8	34.0	39.8	38.6	44.7	43.7
2007	24.4	23.3	27.9	26.4	31.7	29.9	35.9	34.2	40.2	38.9	45.1	44.0
2008	24.7	23.5	27.9	26.4	31.9	29.9	36.0	34.3	40.1	38.6	45.5	44.0
2009	24.7	23.5	28.2	26.6	31.7	30.0	35.9	33.9	40.6	38.8	45.9	44.0
2010	24.9	23.7	28.4	26.9	32.1	30.3	35.9	34.2	41.1	39.2	46.1	44.4
2011	24.8	23.6	28.5	26.8	32.4	30.5	36.3	34.3	40.6	39.4	46.0	44.4
2012	24.7	23.5	28.4	26.8	32.4	30.4	37.0	34.9	41.0	39.6	46.2	44.2
2013	24.3	23.4	27.1	26.1	31.4	29.4	35.4	33.5	40.2	38.4	45.0	43.2
2014	24.1	23.1	27.2	25.7	30.9	29.1	35.3	33.0	39.7	37.8	45.1	43.6
2015	24.1	23.2	26.9	25.8	31.0	29.4	35.3	33.2	40.2	37.8	44.7	43.5
2016	24.2	22.9	27.1	25.7	31.4	29.0	35.6	33.1	40.3	38.0	45.9	43.6
2017	24.2	23.1	27.2	25.8	31.4	29.8	35.7	33.4	40.7	38.3	46.2	44.0
2018	24.4	23.6	27.4	26.1	31.9	29.6	36.0	33.5	41.0	38.6	47.0	43.8
2019	24.8	23.3	27.6	26.1	32.0	29.7	36.6	33.8	41.2	38.8	46.8	44.3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47.4	46.7	52.9	49.9	57.7	52.5	60.8	53.3	63.2	54.2	65.3	54.9
2005	50.2	47.8	55.7	51.0	61.0	53.1	64.1	54.4	66.1	55.2	68.1	56.1
2000	47.4	46.7	52.9	49.9	57.7	52.5	60.8	53.3	63.2	54.2	65.3	54.9
2005	50.2	47.8	55.7	51.0	61.0	53.1	64.1	54.4	66.1	55.2	68.1	56.1
2006	50.7	48.0	56.6	51.2	60.5	52.9	64.3	54.2	66.5	54.8	68.2	55.4
2007	50.9	48.1	56.7	51.4	61.1	53.2	64.0	54.0	66.3	54.8	68.3	55.4
2008	50.8	48.1	56.7	51.5	61.4	53.3	63.8	53.8	65.8	54.4	67.7	55.1
2009	51.9	48.0	57.0	51.2	61.5	53.3	64.2	54.3	66.5	55.2	68.1	56.0
2010	51.7	48.2	57.2	51.5	61.5	53.2	64.7	54.9	66.6	55.5	68.1	55.6
2011	52.0	48.6	57.7	51.8	61.6	53.6	64.5	54.8	66.5	55.7	68.3	56.2
2012	51.7	48.7	57.6	51.7	61.6	53.7	64.9	55.1	66.6	55.9	68.4	56.2
2013	50.5	48.4	56.1	51.7	60.8	53.6	64.7	55.3	66.5	56.3	68.2	56.0
2014	50.4	48.2	56.3	51.6	60.7	53.9	64.5	55.4	67.0	56.1	68.1	56.7
2015	50.6	48.2	56.8	51.7	61.3	53.9	64.8	55.4	67.3	56.5	68.9	56.9
2016	52.0	48.4	57.6	52.0	62.4	53.9	65.4	55.6	68.1	56.8	69.6	57.1
2017	52.2	48.4	57.8	51.9	62.3	54.4	66.0	55.7	68.4	57.0	70.2	57.6
2018	52.4	49.1	58.6	52.3	63.3	54.8	66.6	56.4	68.8	56.8	70.8	57.3
2019	52.7	48.8	58.8	52.5	63.7	54.7	67.4	56.4	69.6	57.5	71.0	57.8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020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0m 달리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9.5초, 여학생 10.1초이고, 중학교 3학년 남학생 8.1초, 여학생 9.9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7.9초, 여학생 10.2초이다. 50m 달리기의 경우 남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기록이 단축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기록에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기록은 5분 45초, 여학생 6분 24초, 중학교 3학년 남학생 8분 36초, 여학생 8분 6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8분 21초, 여학생은 8분 40초로 나타났다.

2020년 제자리멀리뛰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163.8cm, 여학생 141.8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200.0m, 여학생 148.6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14.0cm, 여학생 151.1cm이다.

2020년 윗몸일으키기(2011-윗몸말아올리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66.2회, 여학생 47.5회,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72.2회, 여학생 38.2회,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64.2회, 여학생 32.3회이다.

2020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8.3cm, 여학생 14.1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10.6cm, 여학생 16.8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1.8cm, 여학생 16.8cm이다.

〈표 5-4-3〉 성별·연령별 50m 달리기의 추이

(단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9.8	10.3	9.4	10.2	8.8	10.0	8.4	10.0	8.0	10.0	7.8	9.9	7.7	9.9	7.7	10.1
2007	9.9	10.5	9.5	10.3	8.8	10.1	8.4	10.2	8.1	10.3	7.9	10.1	7.8	10.1	8.1	10.4
2008	9.9	10.4	9.5	10.4	8.9	9.9	8.4	10.1	8.1	10.1	7.9	10.2	8.0	10.1	8.0	10.3
2009	10.0	10.5	9.6	10.4	8.7	9.9	8.4	9.9	8.1	9.9	7.8	9.9	7.7	9.9	7.7	10.1
2010	10.1	10.5	9.7	10.4	8.9	10.0	8.5	10.1	8.2	10.1	7.8	9.9	7.7	9.9	7.9	10.1
2011	9.9	10.3	9.5	10.2	8.9	10.0	8.4	10.0	8.1	10.0	7.9	10.0	7.9	10.1	7.9	10.2
2012	9.7	10.2	9.3	10.0	8.8	9.9	8.4	9.9	8.0	9.9	7.9	9.9	7.8	10.0	7.9	10.1
2013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8	7.8	9.9	7.8	9.9
2014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7	7.7	9.8	7.8	9.9
2015	9.6	10.0	9.2	9.8	8.6	9.6	8.2	9.7	7.9	9.7	7.8	9.7	7.7	9.7	7.8	9.9
2016	9.7	10.1	9.3	9.8	8.6	9.6	8.2	9.6	7.9	9.6	7.7	9.6	7.7	9.7	7.7	9.8
2017	9.7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8	9.6	7.7	9.8	7.8	9.9
2018	9.7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7	9.6	7.7	9.8	7.8	9.9
2019	9.8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8	9.6	7.7	9.7	7.8	9.9
2020	9.9	10.4	9.5	10.1	8.8	9.9	8.4	9.9	8.1	9.9	7.8	10.1	7.8	9.9	7.9	10.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단위 : 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6:02	6:04	5:05	6:03	9:03	7:05	8:05	7:05	8:03	7:05	8:00	7:05	7:05	7:05	7:06	8:01
2007	6:27	7:06	6:15	6:57	9:49	8:26	9:20	8:36	9:07	8:36	8:29	8:14	8:20	8:19	8:37	8:36
2008	6:26	6:55	6:14	7:00	9:43	8:30	9:17	8:22	8:54	8:26	8:28	8:07	8:20	8:17	8:40	8:42
2009	6:29	6:56	6:15	7:00	9:34	8:20	9:20	8:36	8:44	8:22	8:23	8:03	8:15	8:08	8:19	8:23
2010	6:31	6:59	6:15	6:57	9:57	8:44	9:31	8:44	9:06	8:41	8:07	8:01	7:97	7:91	8:21	8:24
2011	6:10	6:40	5:54	6:39	9:36	8:33	9:13	8:35	8:46	8:26	8:26	8:08	8:18	8:11	8:20	8:21
2012	5:54	6:24	5:37	6:19	9:13	8:15	8:53	8:17	8:29	8:11	8:18	8:08	8:10	8:08	8:10	8:14
2013	5:47	6:14	5:29	6:10	8:57	7:58	8:40	8:02	8:17	7:54	8:07	7:53	7:59	7:52	7:58	7:58
2014	5:40	6:06	5:23	6:00	8:47	7:42	8:31	7:49	8:13	7:45	8:00	7:47	7:54	7:49	7:54	7:56
2015	5:40	6:04	5:21	5:57	8:46	7:40	8:27	7:43	8:10	7:42	8:01	7:44	7:55	7:46	7:55	7:53
2016	5:44	6:07	5:26	5:58	8:56	7:41	8:29	7:41	8:11	7:40	8:02	7:44	7:58	7:48	7:59	7:54
2017	5:45	6:07	5:27	6:01	8:53	7:43	8:29	7:44	8:09	7:43	8:02	7:48	7:59	7:55	8:04	8:04
2018	5:50	6:14	5:32	6:06	9:05	7:48	8:40	7:50	8:19	7:49	8:05	7:50	8:04	8:01	8:05	8:10
2019	5:51	6:15	5:33	6:08	9:07	7:50	8:42	7:54	8:19	7:48	8:06	7:51	8:04	7:57	8:10	8:08
2020	6:04	6:28	5:45	6:24	9:12	8:00	8:42	7:57	8:36	8:06	8:17	8:12	8:16	8:20	8:21	8:40

주 : 초등학교 1,000m. 중·고 여자 1,200m. 중·고 남자 1,600m.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153.4	138.3	165.2	144.6	144.6	153.6	203.0	157.1	214.7	158.6	226.9	165.2	231.4	164.8	236.7	164.8
2007	151.8	136.0	163.9	139.8	139.8	149.9	195.8	151.7	207.5	153.9	216.9	156.9	223.4	159.4	222.8	155.4
2008	155.0	140.4	163.7	141.3	141.3	148.3	196.9	151.5	209.2	155.3	219.3	156.4	224.4	156.6	226.2	157.2
2009	151.2	134.5	161.6	137.9	137.9	151.1	199.3	153.9	210.1	155.3	217.8	156.5	222.9	158.5	226.6	158.4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0	148.5	132.6	157.8	135.9	135.9	140.7	186.6	142.4	197.5	144.6	219.5	155.6	223.4	156.8	226.0	156.6
2011	150.3	134.6	159.7	138.8	138.8	140.8	186.8	142.2	196.7	143.7	205.0	147.6	209.5	147.8	211.8	147.5
2012	152.9	136.7	162.7	140.9	140.9	143.6	188.9	144.3	199.1	146.1	205.9	148.4	211.1	149.2	215.0	149.6
2013	155.7	138.8	165.2	143.0	143.0	144.3	190.0	145.4	200.8	148.1	208.1	150.8	214.1	152.5	217.8	153.0
2014	154.9	138.4	165.0	142.6	177.1	145.2	188.2	145.6	198.6	147.9	207.4	150.2	213.3	150.8	16.6	152.2
2015	156.8	140.8	166.6	144.9	181.1	148.4	192.9	149.1	201.7	150.2	209.9	152.6	215.4	153.2	218.5	153.7
2016	156.3	141.4	166.9	146.2	180.7	149.0	193.4	151.0	202.8	152.4	209.8	152.8	214.0	153.8	216.7	154.9
2017	155.3	140.4	165.9	145.4	179.7	148.3	192.1	150.0	202.1	150.7	209.5	152.8	213.7	152.9	216.0	153.3
2018	154.8	140.0	166.0	145.9	178.6	147.2	191.2	148.8	201.4	150.2	209.7	152.7	213.6	152.5	216.0	152.5
2019	153.2	139.2	163.7	144.5	178.2	147.7	190.6	149.0	200.2	150.1	208.1	151.7	212.8	152.2	214.2	151.2
2020	151.5	136.5	163.8	141.8	177.8	144.8	190.1	147.8	200.0	148.6	205.0	149.4	210.4	150.3	214.0	151.1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6〉 성별·연령별 읽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읽몸말아올리기)

(단위 : 회)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32.2	24.5	34.9	26.3	27.7	26.4	40.5	27.7	43.2	29.2	45.6	30.1	47.0	31.0	49.4	32.2
2007	31.9	24.1	35.7	26.1	26.2	26.4	40.1	26.2	42.9	27.0	44.6	28.0	46.0	29.1	44.5	28.6
2008	31.9	25.3	35.8	25.8	27.6	26.4	40.8	27.6	43.0	28.3	45.6	29.2	47.1	29.9	44.4	29.3
2009	48.4	-	56.3	-	28.4	27.1	41.0	28.4	43.6	28.9	45.5	29.9	47.1	30.8	46.6	29.9
2010	49.7	39.0	55.9	38.9	33.0	32.6	58.2	33.0	59.2	33.0	45.6	30.9	47.0	31.2	45.6	30.3
2011	56.1	43.8	62.3	43.8	35.3	37.0	63.9	35.3	63.5	35.6	57.6	31.3	58.1	32.1	52.5	31.3
2012	62.2	49.0	69.8	50.1	38.6	40.2	65.2	38.6	67.4	38.0	61.4	32.6	60.1	33.0	56.4	32.8
2013	65.3	50.9	73.3	53.8	43.7	44.0	73.2	43.7	71.5	40.6	68.2	35.2	69.6	36.7	63.7	34.3
2014	69.7	55.4	76.2	56.0	75.7	47.9	77.7	46.2	79.2	45.5	68.8	35.9	68.3	36.3	64.9	35.9
2015	67.7	54.6	75.7	56.6	78.0	47.9	81.8	47.8	79.7	46.0	69.6	37.0	71.3	36.9	66.3	36.3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6	66.9	54.5	74.1	56.5	80.1	48.7	82.2	48.0	82.9	46.1	72.7	36.4	70.9	36.9	68.5	35.5
2017	65.6	53.5	73.1	56.4	79.3	48.4	83.3	48.6	83.2	45.6	76.0	37.0	73.0	36.3	69.2	36.3
2018	64.5	51.8	73.3	55.1	80.0	48.2	82.7	47.0	84.1	44.8	73.2	36.9	74.0	36.2	67.9	35.1
2019	64.5	52.7	71.7	54.3	79.9	48.5	82.9	47.1	82.9	44.7	75.3	36.9	74.2	36.7	69.3	35.1
2020	61.6	46.7	66.2	47.5	70.6	41.5	73.7	40.6	72.2	38.2	73.1	33.1	71.9	33.1	64.2	32.3

주 : 2011년부터 뿔뿔말아올리기로 개정.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7〉 성별·연령별 앞뿔뿔앞으로굽히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8.4	11.6	8.1	12.1	9.2	14.0	10.7	14.8	12.6	16.1	14.7	17.2	16.1	16.1	17.5	17.4
2007	8.2	12.0	8.2	12.8	9.0	14.4	9.9	14.9	11.2	15.6	12.4	16.5	13.4	13.4	13.8	16.1
2008	8.8	12.5	7.9	12.3	8.8	14.2	9.7	14.9	11.1	16.0	12.5	16.3	12.8	12.8	13.1	16.0
2009	7.7	12.0	7.5	12.8	9.0	14.7	10.2	15.6	11.4	16.3	12.4	17.3	14.5	14.5	13.4	16.7
2010	7.5	11.9	7.0	12.6	7.6	13.7	8.6	14.4	9.8	15.1	12.8	17.3	13.0	13.0	13.7	16.9
2011	7.8	12.4	7.3	13.1	7.5	13.7	8.5	14.4	9.6	15.1	11.0	15.8	11.7	11.7	11.9	15.9
2012	8.1	12.5	7.7	13.3	7.8	14.0	8.7	14.7	9.8	15.4	10.9	15.9	11.6	11.6	12.0	16.1
2013	8.6	13.0	8.3	13.8	8.4	14.5	9.1	15.1	10.1	15.8	11.2	16.2	11.7	11.7	12.2	16.5
2014	8.7	13.2	8.5	14.2	8.6	15.0	9.5	15.8	10.3	16.5	11.3	16.7	11.8	16.7	12.2	16.8
2015	8.6	13.4	8.4	14.6	8.7	15.4	9.5	16.1	10.5	16.8	11.4	17.0	11.9	17.0	12.1	16.7
2016	8.2	13.1	8.0	14.3	8.5	15.4	9.5	16.2	10.5	16.8	11.5	17.1	11.9	17.0	12.0	16.9
2017	8.0	13.0	7.8	14.1	8.3	15.1	9.3	15.9	10.4	16.5	11.5	16.9	11.9	16.9	11.9	16.8
2018	8.0	12.8	7.8	14.0	8.1	14.9	9.0	15.7	10.2	16.5	11.4	16.9	11.8	16.7	11.8	16.6
2019	7.6	12.5	7.4	13.5	7.8	14.6	8.7	15.4	9.8	16.1	11.1	16.6	11.6	16.6	11.6	16.4
2020	8.4	13.0	8.3	14.1	8.9	15.2	9.9	16.3	10.6	16.8	11.6	17.1	11.9	17.3	11.8	16.8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 청소년의 영양

아동·청소년의 연령층별로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연령층이 대부분의 영양소에 대해 권장섭취량에 근접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슘과 칼륨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타민A는 1~2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2~18세 청소년의 비타민A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5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C의 경우 6~11세(84.9%), 12~18세(66.1%), 19~29세(52.5%) 청소년에게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나트륨에 대한 섭취는 권장섭취량의 164.8%(12~18세), 172.1%(19~29세)로 과다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14.1	94.4	96.6	95.9	89.7
단백질	264.0	228.6	179.9	145.1	131.9
칼슘	90.5	76.3	65.6	63.7	66.5
인	151.7	136.4	112.7	94.7	153.5
나트륨	0.0	0.0	130.7	164.8	172.1
칼륨	75.5	72.7	69.5	70.3	70.2
철	105.6	114.4	91.4	79.8	102.8
비타민A	103.1	92.7	67.4	52.3	52.7
티아민	161.8	182.9	138.1	122.1	119.6
리보플라빈	205.6	199.7	148.8	133.6	127.5
나이아신	114.2	111.0	96.2	88.5	96.6
비타민C	132.5	136.6	84.9	66.1	52.5

주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목표섭취량; 칼륨, 총분섭취량; 그 외 영양소, 권장섭취량.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다음은 영양소별로 섭취량이 영양섭취기준 미만인 대상자 분율을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C의 섭취량은 전 연령층에서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한 사람이 약 40% 이상이었다. 특히, 칼슘의 경우 6세 이상부터 29세 이하까지 70% 이상이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칼슘에 대한 섭취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타민A 다음으로는 칼슘과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0.6	22.0	25.0	35.2	38.1
단백질	1.8	1.3	5.1	16.4	23.4
지방	38.0	12.7	8.6	10.2	13.4
칼슘	47.4	59.3	70.8	73.9	70.3
인	10.8	12.5	33.2	44.5	15.2
철	22.1	29.2	39.7	60.6	46.5
비타민A	42.6	44.9	64.4	77.7	81.2
티아민	10.7	6.7	16.2	36.5	34.9
리보플라빈	8.8	6.3	16.0	27.8	29.3
나이아신	13.0	19.1	35.7	49.8	44.8
비타민C	46.8	42.4	59.2	74.4	77.6

주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하한선; 그 외 영양소, 평균필요량.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영양섭취부족 대상자 분율은 12~18세 17.6%, 19~29세에 16.2%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12~18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의 분율은 6~11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의 비율이 같거나 높게 나타났으며 12~18세의 경우에는 영양섭취부족자의 분율에 이어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의 분율도 높게 나타나 영양 부족과 과잉 섭취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단위 : %)

연령 \ 구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¹⁾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2세	5.3	3.8	6.7	1.3	2.5	0.2
3~5세	3.8	3.0	4.9	2.0	2.7	1.0



연령	구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¹⁾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6~11세		8.4	8.3	8.5	4.9	4.3	5.5
12~18세		17.6	18.3	16.9	7.3	7.3	7.3
19~29세		16.2	10.2	23.1	7.3	8.0	6.5

주 : 1)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³⁾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³⁾ 미만인 비율.

2)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³⁾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지방에너지적정비율³⁾의 상한선을 초과한 비율.

3)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아침식사 결식률은 19~29세는 54.0%, 12~18세는 39.5%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6~11세(12.0%), 3~5세(10.2%), 1~2세(3.6%) 순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3~5세와 6~11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여자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모두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4-11〉 아침식사 결식률

(단위 : %)

구분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전체		3.6	10.2	12.0	39.5	54.0
남자		1.2	13.4	13.3	36.0	51.0
여자		5.8	6.5	10.7	43.5	57.4

주 : 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2019 국민건강통계.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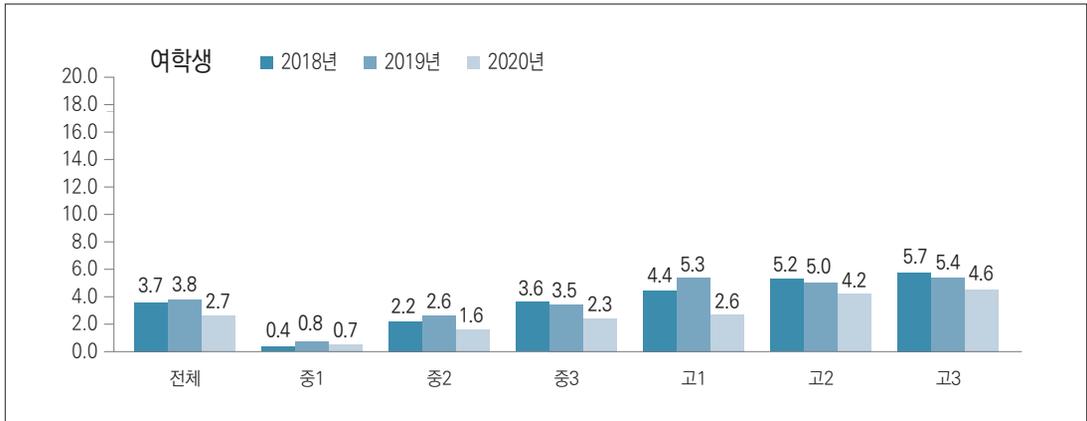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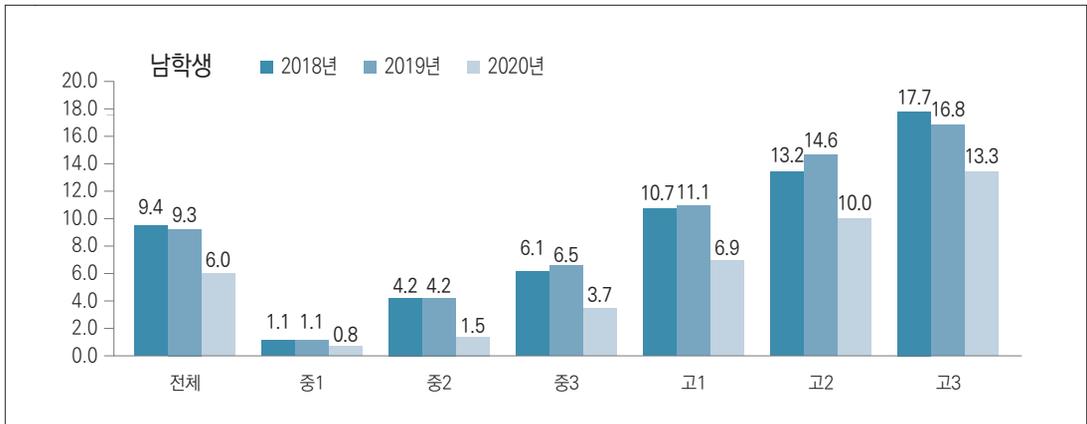
2020년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은 6.0%, 여학생은 2.7%로 나타나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이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8년 3.7%, 2019년 3.8%, 2020년 2.7%로 나타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6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14.1세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4세, 여학생은 13.9세이며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남학생 14.1세, 여학생 14.1세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학생 23.3%, 여학생 27.7%로 나타났다.

[그림 5-4-1]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



주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흡연 경험 연령(세) ¹⁾	13.0	12.8	13.5	13.2	13.1	13.6	13.6	13.4	13.9
매일 흡연 시작 연령(세) ²⁾	13.9	13.9	14.0	14.1	14.1	14.1	14.1	14.1	14.1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3)*}	32.9	31.1	23.0	31.7	29.3	34.3	25.4	23.3	27.7

주 : 1) 평생 흡연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의 평균.
 3)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피운 담배 연기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19년도 설문문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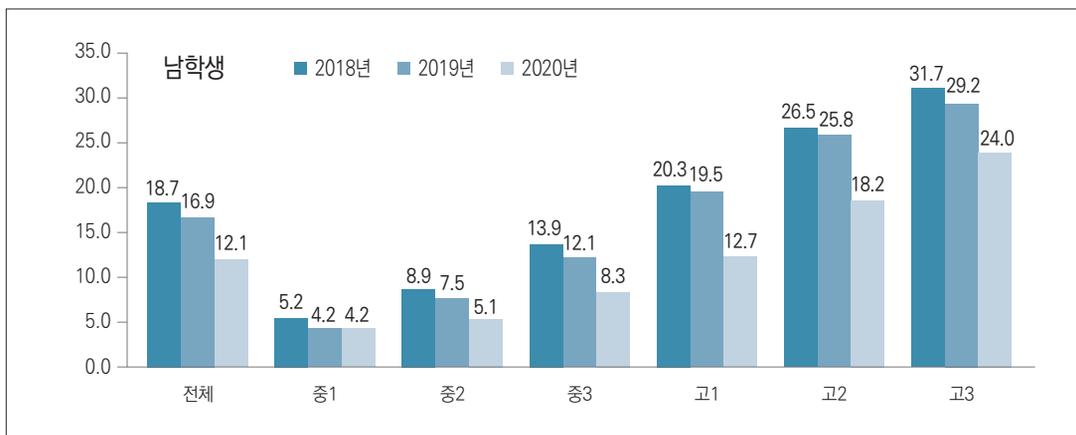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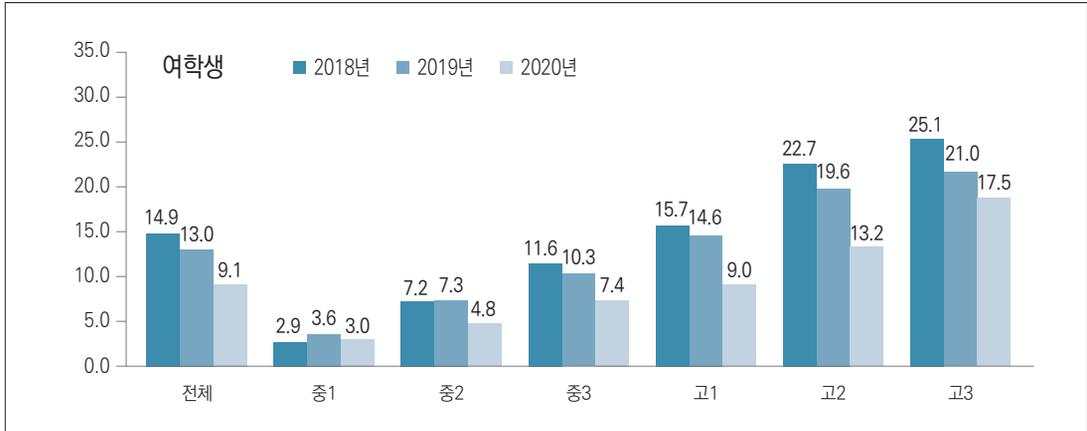
2020년 청소년의 현재 흡주율은 남학생 12.1%, 여학생 9.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고학년일수록 현재 흡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년별 현재 흡주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현재 흡주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19년 대비 2020년 현재 흡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의 처음 흡주 경험 연령은 남학생 13.2세, 여학생 13.7세로, 남녀 학생 간 차이는 0.5세였다. 위험흡주율은 남학생이 5.6%로 여학생의 위험흡주율(4.8%)보다 높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년대비 위험흡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2] 학년별 현재 흡주율

(단위 : %)





주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음주 경험 연령(세) ¹⁾	13.3	13.0	13.7	13.2	12.9	13.5	13.4	13.2	13.7
위험음주율 ²⁾	8.9	9.1	8.6	7.8	8.2	7.5	5.2	5.6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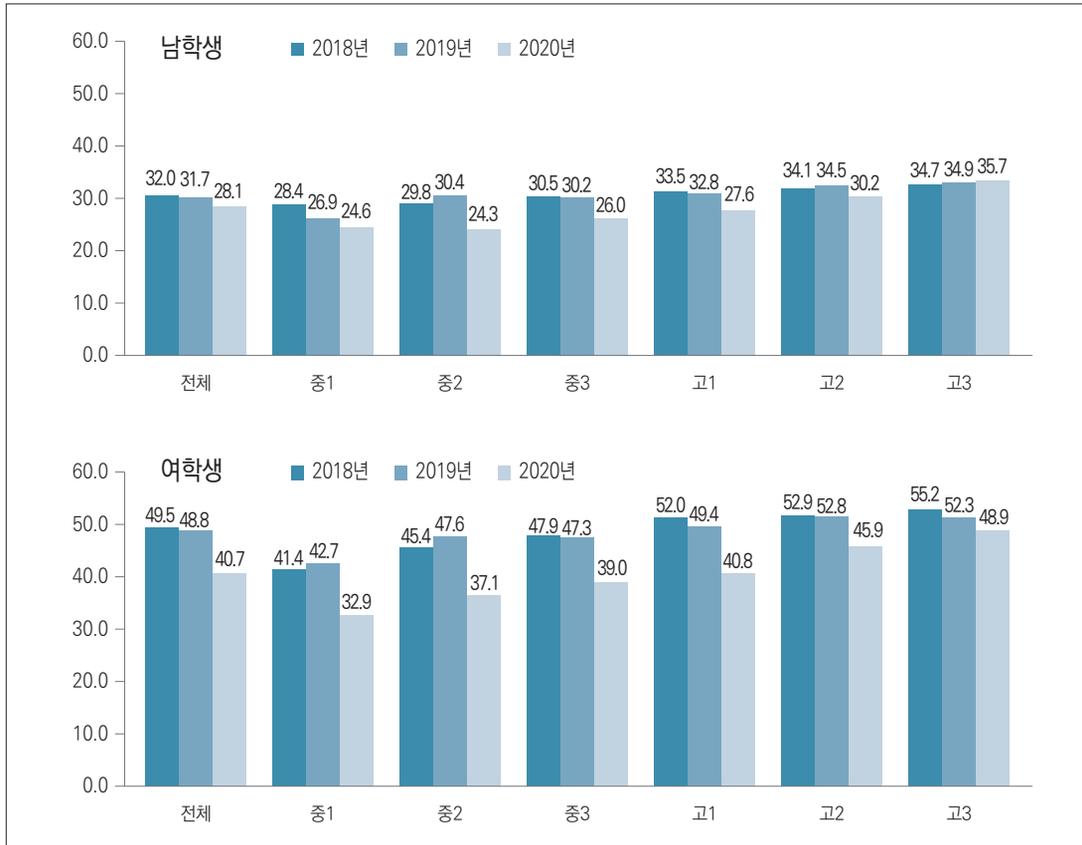
주 : 1) 평생 음주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마신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020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 28.1%, 여학생 40.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2018년에 비해서는 2019년과 2020년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3]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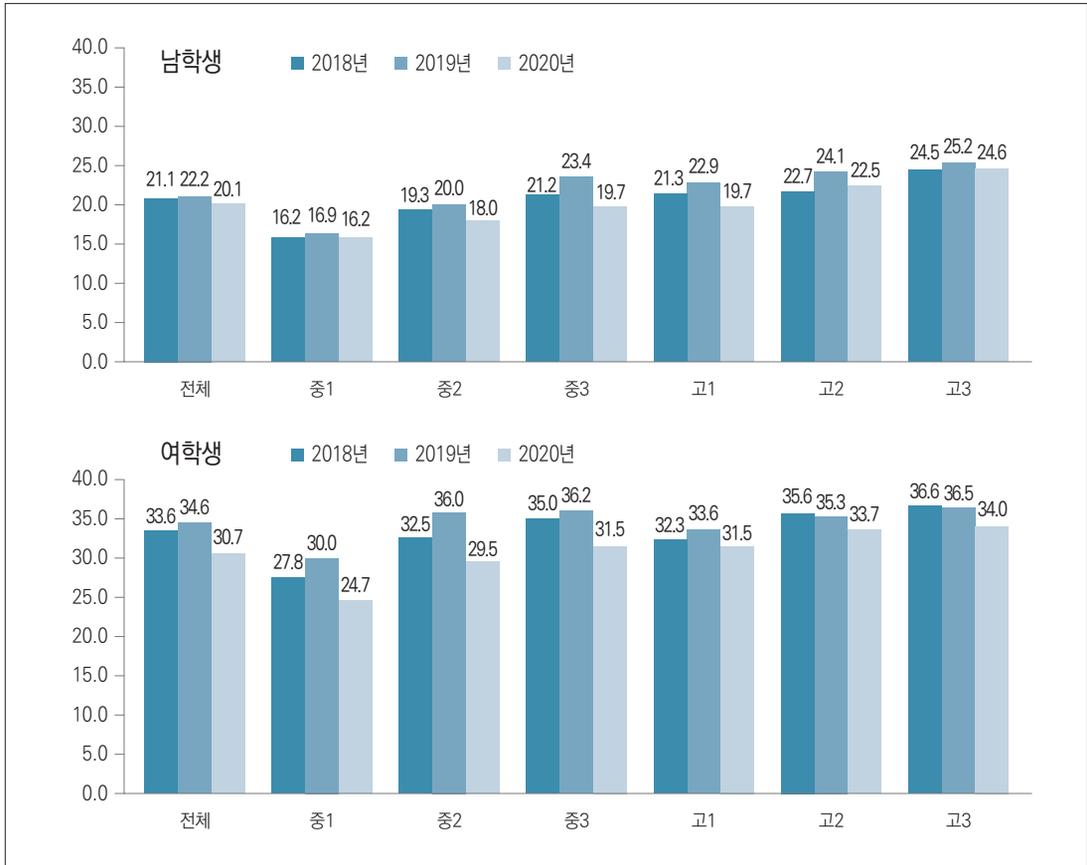
주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20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0.1%, 여학생 30.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우울감이 소폭 낮아지고, 고등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시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4]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주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제6부 요약

제6부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 다룬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을 각 분야별 안전점검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으며,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17. 12. 22.)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18. 8. 31.)을 발표하였다. 2019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2019. 1. 30.)하였다. 2020년에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를 수립(2020. 1. 15.)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2021. 4. 15.)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0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약물관련 제도 및 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및 강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의 일환으로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161개 치료협력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중앙지원센터 1개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역지원센터 17개소를 운영하였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고지 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 7월부터는 우편고지 된 고지정보에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누구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정청구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보호기관의 장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요령'을 인포그래픽과 카툰(Cartoon) 형식으로 제작하여 우편고지서와 함께 동봉·발송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우편고지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의견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였다. 전자고지는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의 세대주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세대주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정보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2018년 7월 17일부터는 대학, 학생상담 지원시설, 장애인특수 교육지원센터가, 2018년 9월 1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으며, 2020년 5월 27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다.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및 매체환경

제3장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가. 도입 배경 및 경과

청소년수련시설 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총 7개 분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년 주기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7. 3. 21.)에 따라 위생 분야에 대한 점검이 추가되었다.

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점검은 해당 분야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건축, 토목, 기계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소방 분야는 ‘한국소방안전원’, 전기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위생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분야별 점검등급과 안전점검 주요 내용 및 평가기준은 <표 6-1-1> ~ <표 6-1-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 점검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반영된다.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

점검분야	등급 구분	비고
건축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토목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기계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소방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전기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가스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위생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6-1-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주요 내용

분야	주요 점검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자체안전점검 수행여부 확인 및 검토 • 분야별 설비 및 각종 구비서류 현황 • 시설 환경(쾌적성 등) •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계획 • 보험가입여부 확인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 • 건축물 내·외부 균열 • 주요 부재 변형 상태(기울기, 처짐) • 콘크리트 부재 결함 상태(철근 부식 노출, 콘크리트 파손) • 철골 부재 결함 상태(철골 부식, 내화 피복 상태) • 마감재 결함 및 미끄럼 방지 상태(복도, 욕실, 계단 등) • 배수 상태(지붕, 욕실, 주방) • 증축 시 접합부 결함 상태 • 누수 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수영장 등) • 비상구 통로 관리 상태 • 각종 안전 난간 상태 • 방화 벽체, 각종 안전 표지판 등 부착 상태 등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축·옹벽 전도 및 토사 안전성 • 담장 전도 여부 • 파고라·벤치·담장 시설 등 결함 상태 • 단지 내 포장 및 배수 상태 • 부속시설 안전 상태(천막, 각종 수련시설) 등

분야	주요 점검 내용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설비 상태 • 반송설비 상태 • 위생설비 상태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리 및 위험물 관리상태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상태 • 소화활동설비 및 피난활동설비 상태 • 감지기 및 소방펌프 상태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정기점검 여부, 누전차단기, 분전반, 옥내내선 상태 등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정기점검 여부, 가스배관, 배기통, 자동 차단장치 등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청결상태, 식품유통기한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청소년수련 시설협회’에서 수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 수련시설 각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는 <표 6-1-3>와 같고,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1-3> 2021년 분야별 점검 결과

◎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분야

(개소 : 백분율)

분야	합계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건축	492	325	(66.1%)	159	(32.3%)	8	(1.6%)	-	-	-	-
토목	492	366	(74.4%)	113	(23%)	13	(2.6%)	-	-	-	-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



분야	합계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기계	492	361	(73.4%)	125	(25.4%)	6	(1.2%)	-	-	-	-
소방	492	469	(95.3%)	19	(3.9%)	4	(0.8%)	-	-	-	-
전기	492	490(99.6%)						2(0.4%)			
가스*	205	203(99.0%)						2(1.0%)			

주 : * (가스) 가스설비 설치시설 대상.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2005년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을 수립·시행하였고, 2007년 2월에 '5대 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2년간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추진하였다.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2009년 종료됨에 따라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시행하였다.

이후 학교폭력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집단 따돌림, 학생들의 자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 2월 6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2012. 2. 6.)하였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7대 영역 54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학교-가정-사회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수립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교사·학부모가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배려·공감 능력 향상 등 인성 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13년 정부는 학교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2013. 7. 23.)하였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12년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실태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기존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 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개발·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언어 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유형별·학교급별 대응을 강화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 하에 전반적인 학교문화 개선, 학교폭력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 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 활동 활성화 등이 포함된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가 설정되어 추진되었다.

한편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응답률에 비해 높았으며,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4대 중점 추진과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2015. 8. 7.)하였다. 또한, 2017년에 잇따른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고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 12. 22.)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2018. 8. 31.)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1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가해학생 간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의 교육역량이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해결하여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2019. 1. 30.)하였다. 2020년에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0~2024)」을 수립(2020. 1. 15.)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20. 9~10월) 결과 피해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2021년에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2021. 4. 15.)하고, ‘사이버폭력 제로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8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

2013년,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3년 7월 23일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되었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고 단위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와 피해학생 보호·지원 강화, 가해학생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표 6-1-4>와 같이 5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표 6-1-4>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영역	추진과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1.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 2.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3.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 4.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및 대안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5.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6.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 7. 처벌보다는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 따돌림 해소 8.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9.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10.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영역	추진과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11. 학교폭력 진단 및 관리 강화 12.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13.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14.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5. 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16.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17.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18.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9.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20. 학교폭력대책 추진체계 재정비

자료 : 교육부(2013).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5대 영역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국가 수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단위학교의 체험형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극 및 뮤지컬 등 감성 중심의 문화 체험형 예방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 자치법정’ 등 또래활동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교 (일명 ‘꾸미움 학교’) 3,000개교를 선정·육성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였다.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욕설 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등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확대하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설치 및 유관기관(상담복지센터)과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전담 전문상담사’를 양성·배치하였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내실화하였다. 시·도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전담 지원 기관’을 구축함은 물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 위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 치료연계, 사례관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해학생을 위한 가족 단위의 다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를 확대하였다.



넷째, 현장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제고하고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전국 교육장 및 학교장 대상 연수 실시를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신고하여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학교폭력특별점검단'을 운영하였다.

다섯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였고, CCTV와 학생보호인력을 확대하며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찰-학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교사와 전담경찰관 간 정례 협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하에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2013년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됨으로써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아지고,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센터' 신고 및 처리 건수도 줄어드는 등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가 확대되고, 대다수 학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등을 통한 예방교육 운영시간이 증가하였고 학생 참여·활동 중심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위(Wee)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상의 한계점도 일부 발견되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현장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상응하는 질적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즉, CCTV 설치 대수(설치율)는 2013년 141,790대(10.5%)에서 2014년 164,282대(25.5%)로 양적인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고화질 CCTV 비율이 여전히 낮고, 실시간 관제에 필요한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이 부족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중 '신고효과를 봤다'는 학생은 36%에 불과하여 신고 후 처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달라 상호 모순된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사회에 걸친 전반적인 폭력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제3차 기본계획」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표 6-1-5〉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영역	추진과제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6. 학생보호인력 확충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8.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9.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1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15.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6.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자료 : 교육부(2014).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5대 영역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인 학교 문화의 변화를 위해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주요 교과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폭력·신변 안전교육을 포함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을 확대하고 학교의 신·개축 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의무화하였으며,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확충하였다.



셋째,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담임교사의 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117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넷째,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해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학생 상담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대상 기관 및 치료비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학생 통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지원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수준에 따라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다섯째,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학교별 학교폭력 정보공시,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다.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제1차~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추진되어 학교폭력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 응답률에 비해 높고,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2015. 8. 7.) 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이 더 많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은 뇌의 감정조절기관이 발달하는 시기로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유해매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가정적 요인(맞벌이·학부모 가족 증가, 아동학대 등)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대책」은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표 6-1-6〉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영역	추진과제
1. 정신 의학적 지원 강화	1. 위기 의심학생 조기감지 2.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 3.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2. 유해매체 노출 대책	4.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 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 6.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강화
3. 가정의 역할 제고	7.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교육 확대 8. 학부모 소통 활성화 및 체험형 치유 강화
4.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9.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추진 10.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11.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12.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

자료 : 교육부(2015).

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2015)

2014년 4월 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을 비롯해 본드 흡입 남성의 돌봄교실 침입 사건, 학교 부적응 학생의 방화사건, 학교 인근 성범죄자 증가 등 학생과 학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2015. 10. 16.)하였다.

〈표 6-1-7〉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영역	추진과제
1.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내실화 • 학교전담경찰관 지원 체계 구축
2. 안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출입자 통제 및 관리 강화 • CCTV 성능 개선 및 관제 강화 •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셉테드 점진적 확대

영역	추진과제
3. 학생안전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 • 스마트폰 보유 학생을 위한 앱서비스 확충
4. 안전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책무성 강화 •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5. 부적응 학생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응 학생 조기 감지·진단 기능 강화 • 학교-Wee센터-전문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자료 : 교육부(2015).

마.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및 보완 대책((2017~2018)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강력한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엄정 대처하고, 동시에 피해자 지원과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 12. 22.)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2018. 8. 31.)을 발표하였다.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는 다음과 같이 6대 영역에서 24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표 6-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영역	추진과제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 청소년 집중관리 • 소년범 관리환경 개선을 통한 재범 예방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등을 위한 전국단위 전담지원 기관 확충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 전학관련 지침 마련 • 마을번호사와 청소년 폭력 사안처리 연계 강화 • 병원형/가정형 Wee센터 체제 구축 •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종합지원 강화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정보공유 • 신속한 가해자 정보 공유 • 자살 위기상황 신속 개입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영역	추진과제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 추진 • 학교폭력 피해자 특별교육 내실화 • '(가정) 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 강화 •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계 정비 및 심층분석 방안 도입
청소년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기반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체험형 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강화 • 모든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이버상의 2차 피해 대응 강화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동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자료 : 교육부(20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선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10~13세)과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무부와 협력하여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력하여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둘째,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 기준 1곳인 전국 단위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가정형 위(Wee)센터 확충, 병원형 위(Wee)센터 모델 추가개발 등 위(Wee) 프로젝트 내실화도 진행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청소년안전망(CYS-Net)을 기반으로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와 경찰 중심으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였으며, 경찰과 학교가 가해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자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대응체제를 정비하였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에 한하여 학생부에 미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징계를 강화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교육적 관계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치유·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임용과정을 내실화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체험·활동 중심의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칭)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민간기관이 청소년들의 참여와 함께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협업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2019)

정부는 2011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가해학생 간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의 교육역량이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민간전문가로 정책숙려제 참여단을 구성하고 토론을 거쳐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2019. 1. 30.)하였다. 첫째,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학부모 모두 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교육적 해결을 한 경우에도 피해학생, 학부모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판단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추가 신설하기로 하였다.

사.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에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2020. 1. 15.)하고, 이에 따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6-1-9〉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영역	추진과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3. 학교폭력 유형 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4. 전 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강화	5.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6.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7.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8.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9.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10.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11.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12.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13.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4.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첫째,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 증가와 초등학생 학교폭력 경험 증가 등 학교폭력 추세변화를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한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안착을 지원하고 심의의 공정성·전문성 신장을 위한 심의위원 연수를 실시한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넷째,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와 통고제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다섯째,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를 구축한다.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교육이수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실질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아.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20. 9~10월) 결과 피해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감소(’19, 1.6% → ’20, 0.9%)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 증가 등의 원인으로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19, 8.9% → ’20, 12.3%)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2021. 4. 15.)하고, ‘사이버폭력 제로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8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 6-1-10〉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영역	추진과제
교육공동체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제고	1.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유아) 교육·활동 지원 2. 교원의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3. 부모 대상 대면·비대면 교육·활동 지원 4. 디지털 성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5.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6.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신고체계 강화 7.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및 모니터링 활성화 8. 교육 현장의 사이버폭력 대응·심의역량 제고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	9. 피해학생 초기보호 강화 1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1.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지원 강화 12. 부처 협력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제도화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	13.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 14. 2차 가해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15. 디지털 성폭력 가해학생 대상 교육적 조치 시행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영역	추진과제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16. 민관협력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캠페인 전개 17.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체계 구축 18. 부처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첫째, 교육공동체 사이버폭력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연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이버폭력 예방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체계적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에 미디어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교과연계형 미디어 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통해 교원의 미디어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 원격연수 및 각종 웹콘텐츠 보급을 통해 학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및 가정의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사이버 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학교 사이버폭력의 유형별·지역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역량 제고를 위해 위원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유형/피해/처벌 등을 포함한 사이버폭력 이해 심층연수를 추진한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를 지정하여 상담·병원치료·법률상담 등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담임·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외부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한다.

넷째,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다섯째, 전사회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한다. 민관이 협력하여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사업'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활동·캠페인,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청)-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기업·학계·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입 이후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이후 20년 동안 특별한 수정 없이 존속되어오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91년에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후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를 받았다. 1996년 OECD 가입 시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11개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신고의무,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도입된 아동보호체계는 민간위탁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2012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신고 및 처벌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점진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2019년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발표를 통해 학대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학대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2022년까지 중앙-시·도-시·군·구 단위의 공적 아동보호 체계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가. 아동학대 실태²⁾

1) 아동학대 현황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³⁾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고,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2021)에 의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서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2020년 4.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0.19%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7.9%, 전라남도 7.5%, 울산광역시 6.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서울 2.3%, 경상남도 2.7%였다.

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각 년도).

3) 2018년 통계부터는 '아동학대 주요통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간함.

〈표 6-1-11〉 지역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2020)

(단위 : 명, 건, %)

구분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인구 천 명당)
서울	1,199,002	2,780	2.3
부산	436,150	1,558	3.6
대구	355,528	1,271	3.6
인천	445,512	2,427	5.4
광주	244,226	698	2.9
대전	231,275	1,363	5.9
울산	188,742	1,234	6.5
경기	2,174,093	7,669	3.5
강원	208,639	1,153	5.5
충북	242,263	1,025	4.2
충남	340,092	1,940	5.7
전북	262,910	2,086	7.9
전남	255,937	1,909	7.5
경북	366,978	1,450	4.0
경남	529,971	1,443	2.7
제주	116,760	562	4.8
세종	80,815	337	4.2
계	7,678,893	30,905	4.0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년 기준, 전국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42,251건으로 전년대비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총 38,92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율의 92.1%를 차지했으며, ‘일반상담’은 2,761건(6.5%), ‘동일 신고’는 557건(1.3%), 그리고 ‘해위발생 사례’는 4건(0.0%)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6년부터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1-12〉 학대피해아동 발견율(2016~2020)

(단위 : 건, %)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¹⁾	일반상담	해의발생 사례	계	전년대비 증가율
2016	25,878(87.2)	189(0.6)	3,604(12.1)	3(0.0)	29,674(100.0)	-
2017	30,923(90.5)	292(0.9)	2,951(8.6)	3(0.0)	34,169(100.0)	15.1
2018	33,532(92.1)	420(1.2)	2,464(6.8)	1(0.0)	36,417(100.0)	6.6
2019	38,380(92.7)	449(1.1)	2,560(6.2)	0(0.0)	41,389(100.0)	13.7
2020	38,929(92.1)	557(1.3)	2,761(6.5)	4(0.0)	42,251(100.0)	2.1

주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내용(동일시점 및 동일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른 신고자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0,905건으로 2019년보다 86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고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후 매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중복학대’로 분류될 수 있다. 2020년에는 중복학대가 14,934건(48.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학대 695건(2.2%)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는 14,934건(48.3%)이었다.

〈표 6-1-13〉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2016~2020)

(단위 : 건, %)

구분	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2016	18,700(100.0)	2,715(14.5)	3,588(19.2)	493(2.6)	2,924(15.6)	8,980(48.0)
2017	22,367(100.0)	3,285(14.7)	4,728(21.1)	692(3.1)	2,787(12.5)	10,875(48.6)
2018	24,604(100.0)	3,436(14.0)	5,862(23.8)	910(3.7)	2,604(10.6)	11,792(47.9)
2019	30,045(100.0)	4,179(13.9)	7,622(25.4)	883(2.9)	2,885(9.6)	14,476(48.2)
2020	30,905(100.0)	3,807(12.3)	8,732(28.3)	695(2.2)	2,737(8.9)	14,934(48.3)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각 년도).

2) 아동학대행위자, 학대 발생장소, 학대후 조치

2020년 기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25,380건(8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는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모두 포함하며, 학대행위자는 친부(43.6%), 친모(35.4%), 계부(1.9%), 계모(1.0%), 양부·모(각 0.1%)의 순이었다.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에서 2020년 82.1%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20년에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에 의한 학대율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발생은 2019년 16.6%에서 2020년 9.5%로 감소하였다.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와의 대면 접촉 급감이 원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학대행위자는 친인척으로 매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2019년 4.4%에서 2020년 5.4%로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6-1-14〉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6~2020)

(단위 : 건, %)

구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파악불가	기타	계
2016	15,048(80.5)	795(4.3)	2,173(11.6)	201(1.1)	29(0.2)	454(2.4)	18,700(100.0)
2017	17,177(76.8)	1,067(4.8)	3,343(14.9)	294(1.3)	45(0.2)	441(2.0)	22,367(100.0)
2018	18,919(76.9)	1,114(4.5)	3,906(15.9)	360(1.5)	-	305(1.2)	24,604(100.0)
2019	22,700(75.6)	1,332(4.4)	4,986(16.6)	663(2.2)	-	364(1.2)	30,045(100.0)
2020	25,380(82.1)	1,661(5.4)	2,930(9.5)	565(1.8)	-	369(1.2)	30,905(100.0)

주 : 대리양육자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각년도).

한편,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2020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7.4%(26,996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교 2.9%(893건),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보육기관 2.5%(787건), 복지시설 639건(2.1%)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2019년과 비교하면, 가정 내에서의 학대 발생은 9.9%p 증가한 반면, 학교나 아동보육기관에서의 학대 발생은 각각 4.7%p, 2.6%p 감소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 학대는 증가하고 보육·교육기관 내 학대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4) 2019년 아동학대 주요 발생장소는 가정 내 77.5%(23,270건), 학교 7.6%(2,277건), 아동보육기관 5.1%(1,510건의) 순임.

〈표 6-1-15〉 아동학대 발생장소(2020)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26,249	84.9
	학대행위자 가정 내	747	2.4
소계		26,996	87.4
집근처 또는 길가		586	1.9
친척집		193	0.6
이웃집		42	0.1
어린이집		658	2.1
유치원		129	0.4
학교		893	2.9
학원		174	0.6
병원		55	0.2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605	2.0
	기타복지시설	34	0.1
소계		639	2.1
숙박업소		126	0.4
종교시설		37	0.1
기타		377	1.2
계		30,905	100.0

주 : 대리양육자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학대사례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아동학대사례 30,905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9,870건 (31.9%), 서비스 지원 등 개입을 진행 중인 사례는 21,035건(68.1%)로 나타났다. 202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상황⁵⁾을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유지된 사례가 25,916건으로 전체의 83.9%였으며, 분리조치 3,926건(12.7%), 가정복귀 798건(2.6%)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사망한 경우는

5) 피해아동의 상황은 아동의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의미함.

90건(0.3%)으로, 전년대비 30건(0.1%p) 증가하였다.

〈표 6-1-16〉 피해아동 상황(2020)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원가정보호	최초			
	최종			
원가정보호 유지		25,916	83.9	
가정보귀	최초			
	원가정보호	82	0.3	
	분리조치	680	2.2	
	기타	36	0.1	
	소계	798	2.6	
분리조치	최초			
	최종			
	분리조치 유지		2,381	7.7
	원가정보호	445	1.4	
	분리조치	1,085	3.5	
	기타	15	0.0	
소계		3,926	12.7	
기타		175	0.6	
사망		90	0.3	
계		30,905	100.0	

주 : 1)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2) 분리조치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3) 가정보귀 : 아동학대로 원가정보호에서 분리보호 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4) 기타 :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1) 아동방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2006년 4월부터 ‘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방문건수 대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고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착수했다. 2008년 희망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16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드림스타트는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사례관리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방임을 예방하고 방임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다. 동 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 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 특례법에는 과거 「형법」에만 있었던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는 검사의 청구로 친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신고의무자제도(Mandatory Reporting)의 강화는 신고 및 조사를 기초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작동기제로 간주된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신변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15년부터 의료인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교육 및 강사양성 사업추진, 신고 직군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2020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0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총 38,929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는 10,973건(28.2%)으로 2019년의 8,836건(23%)에 비해 5.2%p 증가한 수치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 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법제처, 2021a)⁶⁾.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법제처, 2021a).

다.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 기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보호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가하여 시·도별로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이 발표(2.28)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9.28)되는 등 국가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였고, 별도로 운영되어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통합하였으며, 신고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의심되는 응급아동학대 신고인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기존의 상담원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전담

6) 법제처(2021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도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긴급으로 취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아동학대범죄현장에서 상담원,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조치 1,508건 중,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811건(53.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77건(5.1%),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620건(41.1%)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응급조치 중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상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모두 3호(학대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로, 각 766건(78.6%), 75건(80.6%), 444건(45.1%)이었다.

〈표 6-1-17〉 아동학대 응급조치 현황(2020)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조치내용				
			1호	2호	3호	4호	계(중복집계)
상담원	811	53.8	54(5.5)	97(10.0)	766(78.6)	57(5.9)	974(100.0)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77	5.1	4(4.3)	10(10.8)	75(80.6)	4(4.3)	93(100.0)
경찰	620	41.1	217(22.1)	258(26.2)	444(45.1)	65(6.6)	984(100.0)
계	1,508	100.0	275(13.4)	365(17.8)	1,285(62.7)	126(6.1)	2,051(100.0)

주 : 1) 1호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2) 2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3호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4호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200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도입하면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전국에 7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수행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이다.

지속적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에서 벗어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아동복지법」이 재개정되고 2018년에 시행되면서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작되었다. 2017년 6월부터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이 만들어져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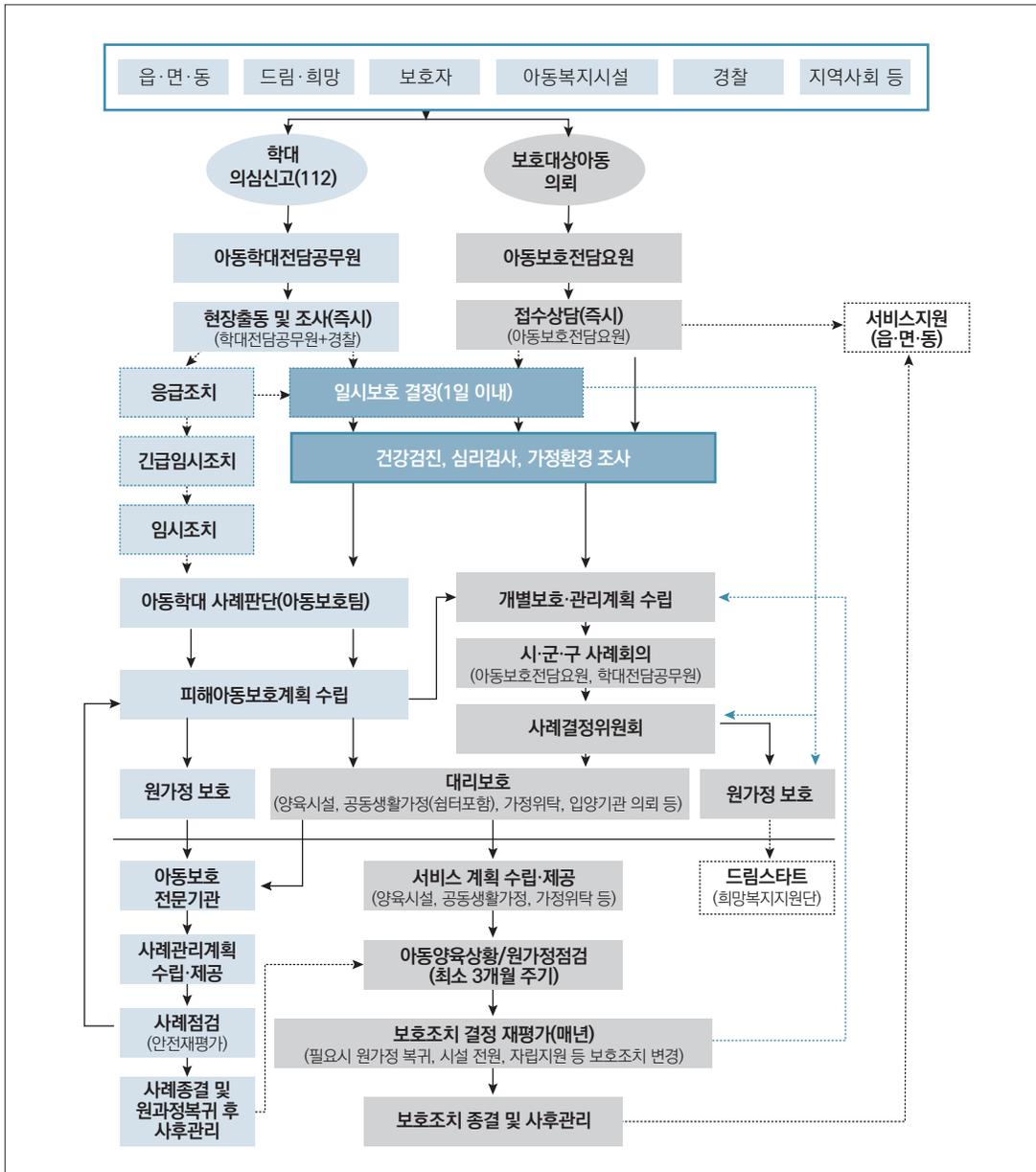
지자체에 배포되었고, 같은 해 7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동 국정과제는 학대피해아동과 보호대상아동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컨트롤 타워 구축,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019년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다(5. 23.).

2020년에는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선도지역 118개 시·군·구에 총 290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2021년 229개 시·군·구 및 5개 시·도에 총 374명의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하여 모든 시·군·구에 총 664명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보건복지부, 2020).⁷⁾ 2021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30명이 배치되어 배치 목표 664명 대비 110%의 달성률을 보였다.⁸⁾ 또한 2020년 10월부터는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아동보호전담요원(334명)이 시·군·구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1월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1년 10월부터 190명이 추가된 총 524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12. 29). 중앙·지방이 함께 아동학대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p.1.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68>에서 2021. 12. 15. 인출.

[그림 6-1-1]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2021)



자료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8.

라. 아동권리보장원 설치·운영⁹⁾

「아동복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에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이며 관련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 그 밖에 「아동복지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포함한다.

마. 보호대상아동 발굴 및 아동보호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¹⁰⁾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운영하여 아동학대 대응, 가정위탁, 입양 등 아동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가정위탁·입양·자립지원·취약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유형별로 존재하여 타 보호대상아동 유형의 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 관련 업무가 통합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보가 개별 업무 단위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나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 전 예방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파악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을 통해 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용하는 APO 업무관리시스템이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2021년 1월부터 통합이 완료되었다.

9) 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권리보장원 소개.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129&cntntslid=1105>에서 2021. 12. 7. 인출.

10) 김우림(2021).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p.24-26.

〈표 6-1-18〉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2021)

구분	위기가동 발굴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자립지원	취약계층아동
정보시스템명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가정위탁통합 전산시스템	입양정보통합 관리시스템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
관리주체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연계정보	학생 장기 결석 현황(교육부), 예방접종 정보 등	업무관리시스템 (경찰청) ¹⁾	X	X	X	X
계획	2022년 7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주 : 1) 2021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 완료.

자료 : 김우림(2021).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p.24.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보호대상아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법률 제17784호).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면 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권리 보장원의 역할이 일부 조정되고, 향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관련 정보,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등이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는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로 변경되어 조항의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계 정보는 다음의 13개 항목이 포함된다.

1.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에 관한 정보
5.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 10.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 11.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2.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3. 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된다.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 생활을 포기하고 아동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아동의 실종은 부모에게 실종아동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여 최악의 경우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3년 이전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송부누락 및 지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실종되었던 일명 개구리소년들의 유골이 2004년에 뒤늦게 발견되고, 같은 해에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으로 인해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예방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 실종아동 현황

1)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아동등”을 말한다.

장애아동을 제외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발생 건수는 2011년 28,099명에서 2015년 19,42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9년부터는 실종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2020년의 경우 신고접수 19,146건, 미발견 105건으로 나타났다. 미발견사례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9건, 2020년 105건으로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미발견 건수가 높으나 지속적인 추적과 발견 활동으로 시간에 따라 당해년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실종자 통계를 집계하고 있어 실종아동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의 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 6-1-19〉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2011~2020)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신고접수	43,080	42,169	38,695	37,522	36,785	38,281	38,789	42,992	42,390	38,496
	미발견	-	-	-	-	-	14	14	18	33	161
아동	신고접수	28,099	27,295	23,089	21,591	19,428	19,870	19,956	21,980	21,551	19,146
	미발견	-	-	-	-	-	3	3	6	9	105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연령불문)	신고접수	7,377	7,224	7,623	7,724	8,311	8,542	8,525	8,881	8,360	7,078
	미발견	-	-	-	-	-	5	5	9	21	47
치매환자 (연령불문)	신고접수	7,604	7,650	7,983	8,207	9,046	9,869	10,308	12,131	12,479	12,272
	미발견	-	-	-	-	-	6	6	3	3	9

주 : 1) 2013. 6.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 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어, 2011~2012년 통계자료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2) 신고접수건수: 실종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찾는 아동등 건수.

3) 미발견건수: 통계산정시점(매년 12월 31일)에 실종자정보시스템상 미해제상태인 찾는 아동 등 건수를 의미하며, 미발견 현황은 2020. 12. 31. 기준임.

자료 : 경찰청 내부행정자료(각년도).

2) 장기실종아동 현황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장기실종아동은 2021년 4월 말 기준, 총 840명이다. 20년 이상 장기간 실종상태인 아동은 663명(78.9%)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1년 미만 86명(10.2%), 10~20년 46명(5.5%),

1~5년 30명(3.6%), 5~10년 15명(1.8%)의 순이었다.

〈표 6-1-20〉 장기실종아동 현황(2021)

(단위 : 명, %)

구분	계	1년 미만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수	840	86	30	15	46	663
비중	100.0	10.2	3.6	1.8	5.5	78.9

주 : 2021. 4. 30.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2.

3) 실종아동 유전자 분석 현황

「실종아동법」 제11조제1항¹¹⁾에 따라 장기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2004년부터 ‘유전자 분석 제도’¹²⁾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38,226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분석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647명이 가족과 다시 만났다(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2021). 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제외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유전정보 채취건수는 2019년 841건, 2020년 467건, 2021년 4월 말 기준 1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한 실종아동등 발견건수는 2019년 26명, 2020년 27건, 2021년 4월 말 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2021).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고 있다.

〈표 6-1-21〉 실종아동등 유전정보 채취 현황(2019~2021)

(단위 : 건)

구분	계	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 보호자
		소계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2019	1,808	1,393	841	481	71	415
2020	816	546	467	73	6	270
2021. 4. 30.	238	167	157	10	0	71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3.

11)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등 및 실종아동등의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12) 무연고 아동 등과 실종자 가족 유전자 대조로 가족을 찾는 사업.

〈표 6-1-22〉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한 실종아동등 발견 현황(2019~2021)

(단위 : 건)

구분	계	아동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2019	50	26	23	1
2020	42	27	15	0
2021. 4. 30.	8	5	3	0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3.

4) 실종아동 지문 등 사전등록 현황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보호자 신청을 받아 사전에 아동 등의 신체특징(지문·사진 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고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실종아동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다. 아동 등은 실종 시 의사능력이 부족하므로 사전등록을 한 경우 정확하고 빠르게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 통계 현황에 의하면, 2021년 4월 말까지 총 473.7만 명이 사전등록을 완료하였다(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2021).

〈표 6-1-23〉 실종아동등 지문 사전등록 현황(2021)

(단위 : 명, %)

구분	계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대상자	8,886,225	7,928,907	344,594	612,724
등록실적	4,737,036	4,466,234	96,134	174,668
등록률	53.3	56.32	27.9	28.5

주 : 2021. 4. 30.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4.

나.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대책

1) 관련 법 및 제도 구축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아동실종예방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05년 5월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2008년에는 「실종아동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시행하였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거나 신상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2011년 8월에는 실종·유괴경보, 실종신고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 7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을 빨리 찾도록 하였으며,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지침을 마련하였다. 2017년까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된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중앙입양원이 이어 받았으며,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입양원을 비롯한 주요 아동정책 중앙기관을 통합하였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실종아동전문센터를 설치하여 실종아동 DB 구축 및 운영, 실종예방, 실종가족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고,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한다.

몇 차례의 「실종아동법」 제·개정에 따른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013년 6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실종아동의 대상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상의 치매환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종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종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실종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치매환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종 아동·장애인·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가족 지원 등 실종예방 및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의 신상카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설보호 대상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 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경찰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일곱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여덟째,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아홉째, 현행법은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2021b)¹³⁾.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법제처, 2021).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경찰청-지자체-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 전문센터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DB를 구축하며,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자체에서는 경찰관에게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여부를 지도한다. 보호시설 등은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을 발견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법제처(2021b).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 6-1-24〉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센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수립 • 무연고 아동 등 신상 카드 DB 구축 • 실태조사, 연구 •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침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신고 접수 • 수색 및 수사 •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제출 여부 지도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조기 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 시설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 • 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2.

2) 실종아동 예방 및 대응 종합정책

법적 변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실종아동 예방 및 대응 종합정책을 살펴보면, 2006년 11월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동 대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첫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및 아동범죄 다발지역 등 아동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지원하였다. 둘째,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지정(2010. 6. 8., 60개소)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일시 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이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자료 간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08. 12. 14. 시행)하고, 실종예방 인형극 순회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다섯째, 유괴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에게 알리기, 실종예방 공익광고 송출, 어린이안전 특별생방송 방영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을 기념하여 실종아동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발생 예방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다. 여섯째, 실종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활동비·전단제작지원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종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실종아동 정보 전자등록 및 연계를 통해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권역별 운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사례관리 미등록자 등록 권유·안내 등의 추진을 통해 맞춤형 실종아동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는 실종아동등 찾기 지원 서비스와 가족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종가족 지원 서비스'에는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지원,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실종아동등 유전자 코드화 및 DB 관리, 실종가족 상봉 서비스, 실종아동 제보가 있다. 그리고 실종(미아·유괴)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찾기 홍보 등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표 6-1-25〉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

구분	사업	지원내용
실종가족 지원 서비스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 실종아동 현재 나이 얼굴 추정 변환 작업 • 실종아동등 찾기 물품(전단지, 현수막, 명함 등) 지원 • 실종아동등 찾기 단말기(GPS) 지원 • 실종아동등 및 유전자 정보 포스터 제작·배포 • 경찰청과 연계한 일제 수색 지원
	가족 심리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가족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 찾기 활동과 실종가족 지원을 위해 활동비 및 의료비 지원
실종가족 지원 서비스	실종아동등 유전자 코드화 및 DB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로부터 송부받은 유전자 시료를 코드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및 DB 관리
	실종가족 상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가족이 상봉할 시에 센터에서 상봉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실종아동 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전문센터로 제보되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내용을 담당 경찰서로 의뢰

구분	사업	지원내용
실종(미아·유괴)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미아·유괴)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교사, 부모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실종 예방 교육 실시 실종예방 강사 양성교육, 아동교육, 성인(교사·부모)교육,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
	실종(미아·유괴) 예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미아·유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아동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광고 및 캠페인 진행 실종아동 홍보대사 위촉, 실종 예방 포스터 배포 등
	실종아동 찾기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아동 찾기 콘텐츠 제작 확산 사업의 결과물들을 활용하여 광고 송출 실종아동등 사진 홍보 기관·기업체 등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운영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2021).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3&cntntsId=1037>에서 2021.12.5. 인출.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아동·청소년 안전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위해없이 여러 환경요소로부터 건강하게 보호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안전사고는 이러한 안전 사고에 대비되는 사고, 부상, 상해 또는 사망 등을 의미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피해나 손실을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안전의 사전적인 정의는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 또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p.1).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청소년 안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2018, p.1)¹⁴⁾.

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청소년수련활동 종합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자면권 수련시설. file:///C:/Users/LG/Downloads/5_%ED%99%9C%EB%8F%99%EC%95%88%EC%A0%84%20%EB%A7%A4%EB%89%B4%EC%96%BC(%EC%9E%90%EC%97%B0%EA%B6%8C)%20(1).pdf 에서 2021. 12. 1. 인출.

가.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1) 아동(14세 이하) 안전사고

정부는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매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당시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점검해 나갔다. 2016년에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20년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150명(안전사고 사망률 2.4%)이었으며, 2005년 8.17명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표 6-1-26〉 14세 이하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 현황(2016~2020)

(단위 : 천명,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4세 이하 인구	6,982	6,845	6,701	6,466	6,307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	2.8	2.9	2.4	2.6	2.4
안전사고 사망자 수	196	196	163	167	150

주 : 안전사고는 사망원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해당하며,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 중독 및 노출, 기타 외인 등을 포함하며, 고의적 자해(자살)나 가해(타살)는 제외함.

자료 : 1) 통계청,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11&board_cd=INDX_001에서 2021.12.1. 인출 (2016~2019년 자료).

2) 통계청,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0005&conn_path=I3에서 2021.12.1. 인출(2020년 자료).

3) 통계청,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에서 2021.12.1. 인출(2020년 14세 이하 인구 자료).

2019년 기준,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4명 증가한 167명이었고, 사망원인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교통사고가 5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익사(27명), 추락(25명), 화재(2명), 중독(1명)의 순이었다.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하고 있다. 연차별로 살펴보면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이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표 6-1-27〉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유형별 사망자 현황(2015-2019)

(단위: 명)

구분	계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기타
2015	225	103	28	28	10	-	56
2016	196	87	19	28	5	1	56
2017	196	75	24	26	7	2	62
2018	163	54	18	28	8	4	51
2019	167	54	27	25	2	1	58

주: 1)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2)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

자료: 통계청(2021). 사망원인통계.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통계공표시기: 2020. 10. 22.).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11&board_cd=INDX_001에서 2021. 12. 1. 인출.

사이버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만 13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는 8,400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83건, 아동보행자 교통사고는 2,079건에 이르고 있으며, 아동의 교통사고는 2019년에 잠깐 증가하였으나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년 기준 만 13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명이며, 스쿨존 내에서는 3명, 보행 중에는 16명의 아동이 사망하였다. 사망자 수 역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동년 기준 만 13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10,500명,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507명,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135명이었다. 부상자수 역시 2016년 이후 지속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표 6-1-28〉 아동(만 13세 미만) 교통사고 현황(2016~2020)

(단위: 건, 명)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2016	11,264	480	4,288	71	8	36	14,215	510	4,402
2017	10,960	479	4,019	54	8	35	13,433	487	4,101
2018	10,009	435	3,582	34	3	22	12,543	473	3,695
2019	11,054	567	3,856	28	6	20	14,115	589	3,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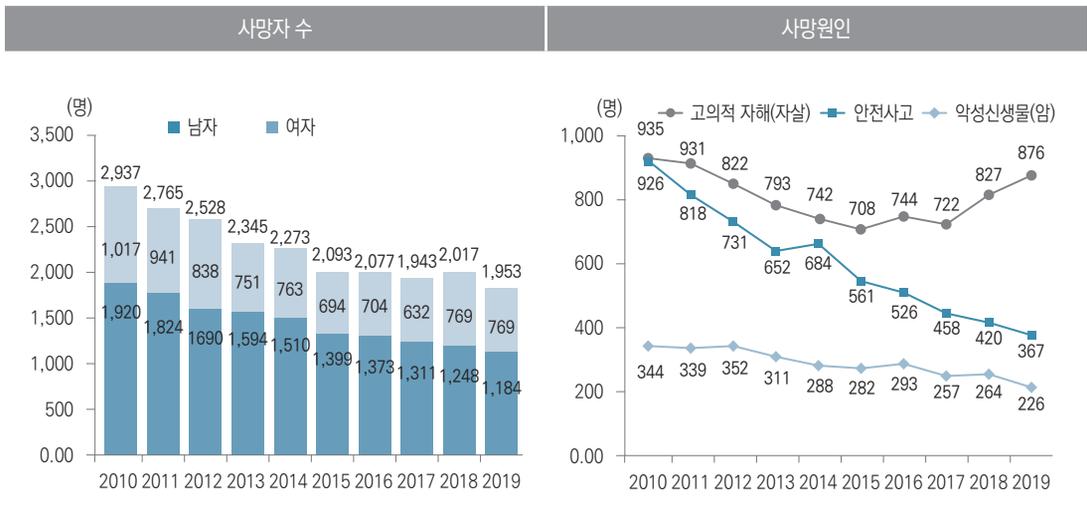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2020	8,400	483	2,079	24	3	16	10,500	507	2,135

자료 : 사이버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부문별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각 년도).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ChildTfaccad.do?menuId=WEB_KMP_OVT_MVT_TAS_CHT,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ShczTfaccad.do?menuId=WEB_KMP_OVT_MVT_TAS_SZT,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ChildPdstrnTfaccad.do?menuId=WEB_KMP_OVT_MVT_TAS_CPT에서 2021.12.1. 인출.

2) 청소년(9~24세) 안전사고

‘2021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2021)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1,953명이며, 사망자 중 남성 1,184명(60.6%), 여성 769명(39.4%)이었다. 사망 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8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사고 367명, 악성신생물(암) 2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망원인 중 안전사고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자살은 증감을 반복하며 2011년 이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그림 6-1-2] 청소년(9~24세) 안전사고 현황(2010~2019)



자료 : 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5. 25.), 2021 청소년 통계, p.12.

나.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대책

1)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¹⁵⁾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 분산된 아동 안전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2003년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2003~2008)”을 수립하였다. 13개 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12개 분야, 76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주요 성과로는 어린이안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12.5명에서 2007년 6.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08년 차기 정부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린이 연령별·활동공간별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제2차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4개 분야, 10개 과제, 2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2012년 4.3명에서 2014년 3명대, 2017년 2명대 진입을 목표로 하였다. 2016년에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통해 아동의 안전정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아동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은 반기별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특히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조하여 안전교육 콘텐츠, 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강사 확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마련하여 연령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이 포함되었다.

둘째, 학교 주변 교통 및 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 점검을 엄격하게 하는 등 놀이시설을 비롯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셋째,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및 수상안전교육 확대를 포함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이다.

15) 지광석(2018). 정부의 어린이안전대책 현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췌·요약함.

2017년에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5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 부처합동으로 5개 분야 14개 과제에 대해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교통, 제품, 식품, 생활 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공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 교육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매년 300여 개씩 확대하여 2022년까지 18,155개소로 지정, 보도와 통행로의 설치, 학교주변 CCTV를 2022년까지 10,949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사용량이 제한된 화장품 원료의 함량 표시 의무화, 영유아용 보존제, 색소 등의 사용금지 원료 어린이용으로 확대 등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확대 및 위생 관리 강화, 키즈카페 통합관리 운영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를 포함하였다. 어린이 안전대책의 추진과제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여 아동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6-1-29〉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과제(2018)

분야	과제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감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보급 및 교육·홍보 강화
제품안전	위해 어린이제품의 관리 및 감시 강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식품안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의 위생 점검 강화
생활공간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어린이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직원 등의 안전교육 역량 강화

자료 :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2018. 5. 31.) p.14.

2)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아동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장기 관점의 계획이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안전한 삶 영역을 설정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체계적 정책대응 상황을 고려해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가정·학교에서의 생활안전을 강조하였다. 생활안전에 있어서는 가정·학교(돌봄기관 포함) 등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위해요인을 줄이고, 도로 등 이동공간에서의 안전확보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동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습관 내면화를 도모하였다. 안전체험관 등 아동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을 확보하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개선 및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고, 보호구역 식별 용이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 표준모델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였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21)¹⁶⁾. 또한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기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일 평균 25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행정안전부, 2021).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통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통안전 기준을 신설(2020년, 교통안전법령 개정)하고 지자체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2021년~)하고 있다.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안전의무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목표인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종 시설로 확대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법규 위반 처벌수준을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조정하여 통학버스 안전의무 준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 교육대상을 운영자와 운전자에서 동승보호자까지 추가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매분기 시설 감독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구성원, 학부모 등이 협력하여 유아의 건강·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개선하는 모델인 ‘학부모안심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6) 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보도자료(2021. 3. 25.).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에서 인용.

지속 확대 중이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먹거리 안전·위생관리 강화, 아동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지속 확충 중이다.

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충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 과정에 안전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여 체험활동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복지·문화시설 및 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처에 수련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확대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2021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상담 범위는 상해·시설물 사고 등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항, 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령 해석·자문 등 청소년활동 운영 관련 사항 등이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¹⁷⁾.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2020년에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시설관리 종사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관련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련시설, 신고·인증수련활동 운영시설 등 청소년활동 운영시설 및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종사자이다. 컨설팅 내용은 분야별 시설안전 관리사항 전반 진단 컨설팅, 시설 및 활동안전 점검결과(자가점검 포함)와 연계한 컨설팅, 시설안전 관련 긴급사항 및 문제사항 발생 시 수습·복구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 분야별 시설안전 관련문의(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온라인 컨설팅 운영)가 포함된다.

〈표 6-1-30〉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2021)

상담 범위	주요 내용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성범죄, 시설물, 위생(음식, 식중독) • 기타 안전 등 관련한 사항

1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https://www.kywa.or.kr/business/business18.jsp>에서 2021. 12. 1. 인출.



상담 범위	주요 내용
청소년활동 운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지도자, 활동시설)에 관한 법령 해석 및 자문 •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 등에 관한 사항 등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https://www.kywa.or.kr/business/business18.jsp>에서 2021. 12. 1. 인출.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추락, 익사사고 등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안전 관련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 강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아동 안전체험 행사 개최, 아동 안전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콘텐츠 보완·개발 등 사회 전반의 아동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안전 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의 ‘사망통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시스템’간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각 부처별·기관별 어린이 안전관련 통계를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반영하도록 추진하였다.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아동·청소년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만 5세 이하)와 사고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 실시, 가정 안전꾸러미를 배포하는 등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물놀이, 가정, 학교, 승강기 및 자동계단, 놀이 안전 등 생활안전분야 추가로 아동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과제로 제시하고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를 주요 지원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당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6개 어린이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시행하였다. 워킹스쿨버스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 봉사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등·하굣길을 동행하고, 등·하교 상황, 학교 결석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제도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보호 장구 개발 지원 및 표준화, 저소득층 무상대여 등 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률 제고 대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및 매체환경

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등이며, 이 외에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 및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들데,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예방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 제도의 한계 등으로 청소년의 흡연·음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 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정책과 제도에 대한 효과적·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약물 중 빈번한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실태

2020년도 청소년 흡연율은 4.4%로, 2016년 6.3%, 2017년 6.4%였다가 2018년은 6.7%, 2019년 6.7%로, 최근에는 감소하는 정도가 주춤한 추세이다. 2020년 기준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6.0%,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7%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만 13.4세로 나타났다.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단위 : %, 세)

구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처음 흡연 연령
2016년		6.3	14.8	12.7
2017년		6.4	13.7	12.9
2018년		6.7	14.9	13.0
2019년		6.7	12.7	13.2
2020년		4.4	10.2	13.6
성별	남성	6.0	13.9	13.4
	여성	4.0	10.6	13.9

주 : 1) 현재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2) 평생 흡연 경험률 : 평생 동안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청소년 음주의 경우, 2020년도 현재 음주율은 10.7%, 평생 음주 경험률은 33.4%이며 청소년의 최초 음주 시작연령은 2020년 13.2세로 나타났다.

〈표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단위 : %, 세)

구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처음 음주 연령
2016년		15.0	38.8	13.1
2017년		16.1	40.2	13.2
2018년		16.9	42.3	13.2
2019년		15.0	39.4	13.3
2020년		10.7	33.4	13.2

구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처음 음주 연령
성별	남성	12.1	37.5	12.9
	여성	9.1	37.0	13.5

주 : 1) 현재 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평생 음주 경험률 : 평생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년도.

2)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1)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2005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회원국에 음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서는 회원국에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은 2006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청소년음주예방법」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흡연·음주 환경 규제내용이 각 개별법에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류·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2. 9. 16.)하였다.

또한,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5. 3. 25.)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류 및 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시행(2016. 3. 2.)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12월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추가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한편 계속 감소 추세였던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8년에 2.7%로 다시 증가하였고, 성인 사용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위한 권고문을 작성·배포하여 청소년과 교사·학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 추진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과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BIS(버스안내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은 좋지 못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및 유통업자 종사자 교육 • 시·군·구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실시(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계기별) •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추진 •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추진 •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추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 • 보건소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프로그램(금연교실, 금연지도자 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등) 제공 • 매스미디어 홍보(언론매체, 인터넷, 금연월간지, 스티커 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실태에 대한 주기적 파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흡연·음주예방 교육 실시(금연학교 운영)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유해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 제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규제 방안(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심의 강화 및 기준 보완)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흡연 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판매 업소 특별계도 및 단속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추진

그동안 우리 사회 특유의 관대한 음주문화의 영향 등으로 사회 전반에서 음주로 인한 수 조 원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주류협회, 주류관련 유통업체 등에 청소년신분증 확인 교육 동영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청소년 음주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계휴가지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 ‘학교 스쿨터치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흡연·음주예방 카드뉴스 온라인 홍보’ 등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연중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등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실시(방학, 수능 전·후 등 계기별) •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추진 •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추진 •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추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 • 생애집단별 교육 및 홍보(학생과 비행청소년, 또래 지도자와 교사, 주류 판매업자 대상 교육) •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조기발견과 음주폐해 예방(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적용) • 주류 판매자의 자정노력 강화(클린판매점 선정 및 운영) • 절주 상담실 운영 •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음주율 증가 및 저연령화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학생의 체계적 음주예방 교육(정규수업, 학교장 재량시간 활용) - 학생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능력 배양과 인식제고 -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소년원)들의 음주율 증가 문제 관련: 갱생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음주예방 교육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영상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주류 유통물 규제 방안: 인터넷상의 주류 유통물 심의 강화 및 기준보완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 시 "피의자 원표"에 음주여부 조사항목 신설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판매 업소 특별계도 단속

자료 : 1) 여성가족부(2021).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9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증가 추세는 아래의 <표 6-2-5>와 같다.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단위: 개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75,329	892,092	930,531	951,189	963,979	985,732	984,843	1,004,019

자료: 행정안전부 새움행정 시스템(2020).

도시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률은 코인노래방 70.7%, PC방 61.3%, 짬뽕방 25.4%, 전자오락실 25.0%, VR체험카페 13.1%, 술집(소주방, 호프집 등) 2.3%에 달한다.

특히,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에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존 시가지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거지, 학교, 학원 등이 혼재되어 입지하면서 청소년에게 교육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 ‘레드존(RED ZONE)’을 설정하였다.

2016년 11월 9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부산, 서울에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대한(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위헌소원에 대해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제3호 영업형태의 가항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불확실한 개념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마사지업소 및 피부미용실 등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되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33곳, ‘통행제한구역’ 19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도입(국토교통부)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화성·동탄 2신도시 실시계획에 중심상업용지 등 4개 구역에 한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건축을 허용하는 ‘레드존’을 지정, 격리·구획화 하도록 반영하고 시범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 주관부처 및 시행자 간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통하여 추후 신도시 개발 시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사업을 적극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6-2-6〉 2021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총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무도학원(무도장)	이용업, 목욕장	숙박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게임제공업계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장
'19년	985,732	28,036	13,519	657,825	165,962	858	24,053	27,108	33,862	639	24	21,594	254	6,817	2,696	2,485
'20년	984,843	26,975	12,776	658,451	175,484	772	23,155	26,118	31,212	530	19	18,589	250	5,797	2,619	2,096
'21년	1,004,019	26,298	12,386	669,242	189,266	744	22,555	25,259	29,810	482	15	18,006	241	5,133	2,542	2,040

주 : 1)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기타(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권리자 비디오물 소극장업).

2) 고용금지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숙박업, 게임제공업을 지칭(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되며, 숙박업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3)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자료 : 행정안전부 서울행정 시스템(2021).

1)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학교보건법」 상 절대·상대 정화구역의 지정·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유혹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퇴폐향락으로 이끌고 있다. 경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2020년 7,935명을 단속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11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의 불건전서비스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2011년 7월 해당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업소’로,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다. 2014년 3월에는 「한국마사회법」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경정법」의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일에 한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	
	총계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등 판매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유해매체물	구속	불구속
2014	8,393	870	6,933	401	189	5	8,388
2015	9,268	327	8,364	392	185	0	9,268
2016	9,313	412	8,444	371	86	1	9,312
2017	9,750	360	8,927	393	70	2	9,748
2018	9,567	276	8,800	420	71	3	9,564
2019	8,399	299	7,617	463	20	21	8,378
2020	7,935	229	7,093	573	40	9	7,926

자료 : 경찰청(2020).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 활동

최근 변화가 등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톨카페,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유해업소 및 신·변종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2021년 기준 전국 240여 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53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계	53	35	18
서울	8	5	3
부산	4	2	2
대구	1	1	0
인천	2	1	1
광주	2	1	1
대전	3	3	0
울산	0	0	0
세종	0	0	0
경기	7	5	2
강원	5	5	0
충북	1	1	0
충남	2	2	0
전북	8	4	4

구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전남	2	1	1
경북	5	3	2
경남	3	1	2
제주	0	0	0

주 : 1) 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24시간 통행금지).

2)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악물 등 판매·대여 등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 (일정시간 통행 제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여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용도제한구역을 설치하며,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주거지나 학교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에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되었다.

(3)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구역(구, 학교교육환경정화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설정되는데,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의미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종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학교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학교 주변 학생의 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6년 2월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과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총 206개소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가 125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신변종업소가 49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27,917개소 중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약 32.8%(9,15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대기/수질/약취/ 소음·진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폐수 종말, 가축분뇨, 분뇨)	0	2	2	4	1	0	0	5	0	0	47	7	0	1	56	0	0	125
가축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화장시설, 보안시설, 도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화방, 화상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기구취업소	3	0	0	0	4	1	0	0	3	0	0	1	1	1	0	0	0	14
신변종업소	9	8	0	0	0	0	0	0	32	0	0	0	0	0	0	0	0	49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폐기물수집장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포, 화약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감염병 격리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담배자동판매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미니게임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당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무도학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사행행위장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래연습장	0	1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4
비디오감상실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유흥·단란주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숙박업, 호텔업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3
만화가게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사고대비물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20	15	3	6	6	1	0	5	35	0	47	8	1	2	57	0	0	206

주 : 2021년 6월 기준 자료.
 자료 : 교육부(2021).

〈표 6-2-10〉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대기/수질/약취/ 소음·진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화장시설, 보안시설, 도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화방, 화상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기구취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신변종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69	118	15	49	2	12	0	1	79	8	13	8	20	11	8	12	7	432
폐기물수집장소	0	3	0	0	0	0	0	0	9	0	0	0	4	1	1	0	1	19
총포, 화학류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2
감염병 격리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담배자동판매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복합유동게임	575	83	109	140	180	133	0	2	365	68	61	160	265	66	52	124	7	2,390
미니게임기	0	6	0	0	0	0	0	0	3	2	0	0	2	0	0	0	0	13
당구장	598	108	65	237	89	72	0	9	380	70	75	114	109	84	47	134	25	2,216
무도학원	3	3	7	0	1	2	0	0	8	1	2	0	4	2	3	1	2	39
사행행위장 등	1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6
노래연습장	1,888	566	487	553	160	407	0	14	1,846	200	260	321	226	236	342	480	72	8,058
비디오감상실업	25	2	7	3	0	3	0	4	2	1	2	2	1	4	0	0	0	56
유흥·단란주점	1,487	1,178	385	517	68	101	0	15	1,610	333	245	388	281	566	543	1,023	413	9,153
숙박업, 호텔업	981	615	242	252	70	102	0	6	688	328	220	429	176	335	336	418	209	5,407
만화가게	10	10	2	3	1	5	0	0	23	2	3	4	23	5	0	19	2	112
사고대비물질	0	1	1	0	0	2	0	0	1	1	3	0	0	0	3	1	0	13
계	5,637	2,693	1,320	1,754	571	839	0	51	5,019	1,014	884	1,426	1,112	1,311	1,336	2,212	738	27,917

주 : 2021년 6월 기준 자료.

자료 : 교육부(2021).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작으로 민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 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규정이 마련됨

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8개의 감시단(총 19,576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6-2-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단위 : 개, 명)

시·도	시민단체감시단	
	단체 수	단원 수
합 계	238	19,576
서울특별시	49	7,558
부산광역시	17	1,532
대구광역시	6	470
인천광역시	6	172
광주광역시	5	371
대전광역시	5	323
울산광역시	7	402
세종특별자치시	2	431
경기도	57	4,422
강원도	12	476
충청북도	7	270
충청남도	18	1,643
전라북도	8	310
전라남도	14	537
경상북도	8	130
경상남도	12	370
제주특별자치도	5	159

주 :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가.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체물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의 경계 붕괴,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 실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법·제도 개선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체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로부터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지속발전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보호·교육 지원 등의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와 인터넷 중독 등 매체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효율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매체물 심의기관은 각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다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및 등급 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이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의 심의 및 등급 분류, 음반 및 음악 파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연령등급제는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와 문화 관련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급 분류 제도가 병행되고 있으며, 심의 및 등급 분류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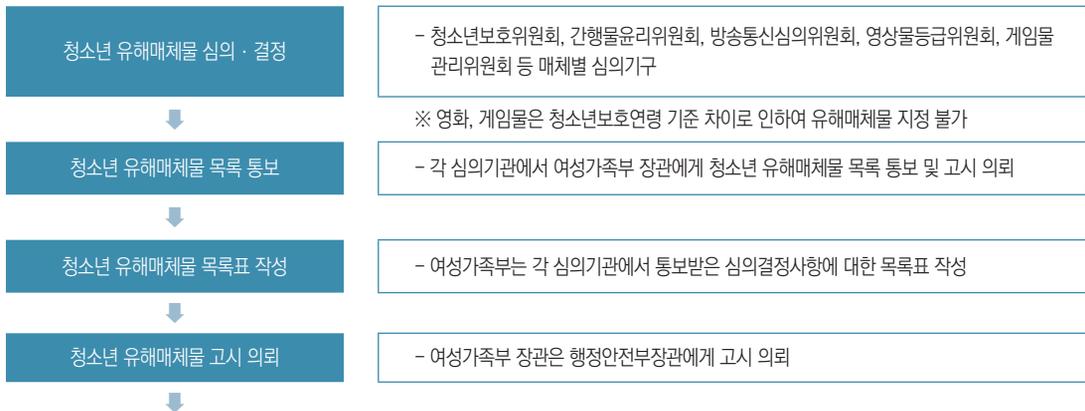
〈표 6-2-12〉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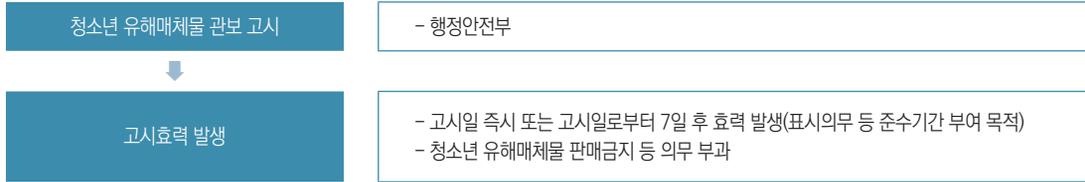
심의기관	담당 매체	소관부처·법률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비디오법」	사전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사후심의
	방송 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사전자율/사후심의 병행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등에 따라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 고시를 의뢰하고 있다.

[그림 6-2-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6-2-13〉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단위 : 건)

연도	고시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관리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
		도서	정기간행물	만화단행	만화잡지	광고	전자출판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뮤직비디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음악	버라이어티	데이터방송	인포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PC통신	전기통신	
97	14	59	105	1,994	29	11	0	102	444	0	0	0	1,688	0	1	19	9	0	0	0	0	8	607	0	5,076
98	43	173	416	1,140	52	0	0	151	762	0	0	0	808	30	12	52	14	0	0	0	0	0	755	0	4,365
99	45	304	388	1,501	14	1	0	71	428	0	4	0	271	2	5	2	0	0	0	0	0	4	61	31	3,087
00	28	366	699	1,227	0	0	0	0	0	0	0	0	158	0	9	4	0	0	0	0	0	67	53	10	2,593
01	42	289	983	1,387	1	0	0	0	0	0	0	0	597	58	5	99	451	0	0	0	0	962	7	41	4,880
02	51	259	1,098	1,492	8	0	0	0	0	0	0	0	1,399	33	1	114	19	0	0	0	0	189	435	836	5,883
03	66	611	1,220	1,802	131	0	0	0	0	0	0	0	2,623	145	0	3	510	0	0	0	0	284	0	3,510	10,839
04	62	371	528	1,810	269	2	0	0	0	0	0	0	202	67	2	0	0	0	0	0	0	0	0	7,641	10,892
05	35	324	307	1,413	191	0	0	0	0	0	0	0	1,067	237	0	15	2	0	0	0	0	179	0	17,115	20,850
06	45	351	324	1,347	72	0	0	0	0	0	4	0	2,794	207	0	29	3	0	0	0	0	480	0	18,715	24,326
07	63	414	377	1,867	46	0	0	0	0	0	344	0	6,316	190	0	151	1	0	0	0	0	840	0	16,044	26,590
08	45	433	264	1,653	48	0	584	0	0	0	651	0	1,041	1,059	0	142	0	0	0	0	0	626	0	884	7,385
09	48	809	223	1,756	229	0	658	0	0	0	941	0	2,557	1,462	0	436	0	0	0	0	0	3,109	0	227	12,407
10	36	822	276	2,066	188	0	1,131	0	0	0	991	0	1,041	902	0	459	0	491	0	63	3	412	0	280	9,125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연도	고시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관리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
		도서	정기간행물	만화단행	만화잡지	광고	전자출판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뮤직비디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음악	버라이어티	데이터방송	인포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PC통신	전기통신			
																									영화	드라마	
11	51	874	404	2,882	16	0	1031	0	0	0	671	171	1,628	1,706	0	340	0	3,350	0	177	52	217	0	351	13,870		
12	62	844	445	3,037	0	0	1075	0	0	0	1,049	101	2,218	2,077	0	555	0	4,424	2	0	0	61	0	447	16,335		
13	32	766	425	2,196	0	0	834	0	0	0	1,000	0	1,215	984	0	544	0	2,134	0	0	0	64	0	390	10,552		
14	35	824	518	1,840	0	0	926	0	0	0	1,140	0	969	795	0	1015	0	1,880	0	0	0	0	0	263	10,170		
15	58	783	504	2,095	0	0	821	0	0	0	2,033	0	2,243	793	0	549	0	3,442	0	0	0	0	0	138	13,401		
16	50	626	436	1,786	0	0	563	0	0	0	804	0	1,282	379	0	398	0	3,459	0	0	0	0	0	142	9,875		
17	43	525	457	1,821	0	0	660	0	0	0	1,078	0	489	272	4	280	0	1,590	0	0	0	0	0	70	7,246		
18	50	465	394	1,564	0	0	887	0	0	0	975	0	845	673	17	821	0	3,729	0	0	0	2	0	93	10,465		
19	41	352	412	1,504	0	0	960	0	0	0	833	0	860	810	11	351	0	1,469	0	0	1	0	0	104	7,667		
20	46	260	376	1,544	0	0	954	0	0	0	1,038	0	2,092	444	4	530	0	1,426	0	0	0	0	0	72	8,740		
21	40	243	32	1,053	0	0	759	0	0	0	2,706	0	2,575	863	7	801	0	830	0	0	0	0	0	39	9,908		
계	1,131	12,147	11,611	43,777	1,294	14	11,843	324	1,634	0	16,262	272	38,978	14,188	78	7,709	1,009	28,224	2	240	56	7,504	1,918	67,443	266,527		
심의기관별 총합계				80,686				1,958	0		16,534						97,988						69,361				

주 :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음반 심의제도는 그 근거가 되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6. 11.) 되면서 주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임을 고려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 결정 업무를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음반·음악파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성 심의, 유통 차단 등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27일까지 유해결정 곡은 총 16,262곡 (국내 8,048곡, 외국 8,214곡)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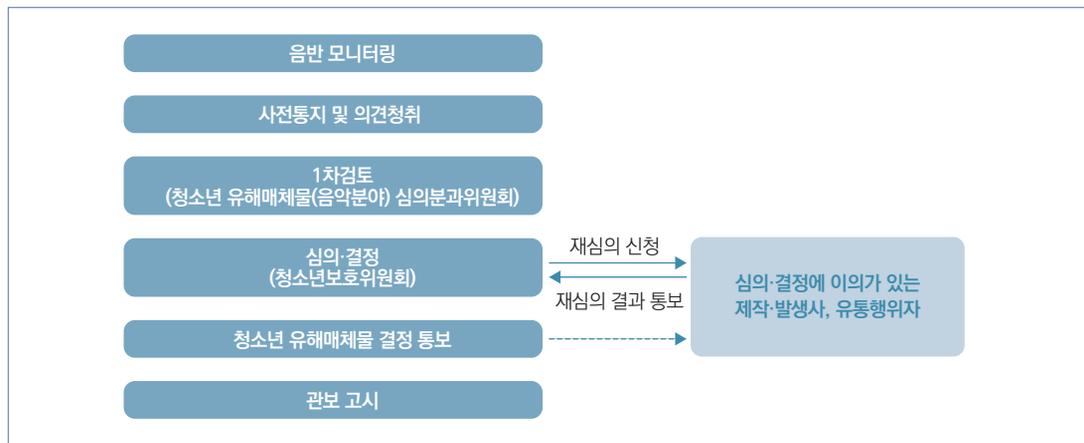
〈표 6-2-14〉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06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6,262	8	344	651	941	991	671	1,049	1,000	1,140	2,033	804	1,078	975	833	1,038	2,706
국내곡	8,048	4	151	228	445	427	253	361	382	438	566	399	475	311	400	885	2,323
국외곡	8,214	4	193	423	496	564	418	688	618	702	1,467	405	603	664	433	153	383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그림 6-2-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8

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매체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행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바, 업계자율정화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의 구축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청소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은 기업 혹은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규약이며,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려는 기업 혹은 사업자의 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과 함께,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이미지 개선과 사회공헌을 실현하려는 기업 혹은 사업자의 자율 의지를 내포한다. 또한, 법위반 행위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차단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간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사업자 및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를 통한 관련사업자 집합교육과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사업장 방문을 통해 포털사이트, 게임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분야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보호법」 해설, 유해매체물의 심의 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3)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그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추진된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선언,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대상 성인서비스 중단, 인터넷신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청소년 보호정책과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자율정화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자율규제단체 등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약 제·개정 및 자율심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16. 1.) 하였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3

3.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학업성적·사회성 저하, 가정불화, 건강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체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정책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매체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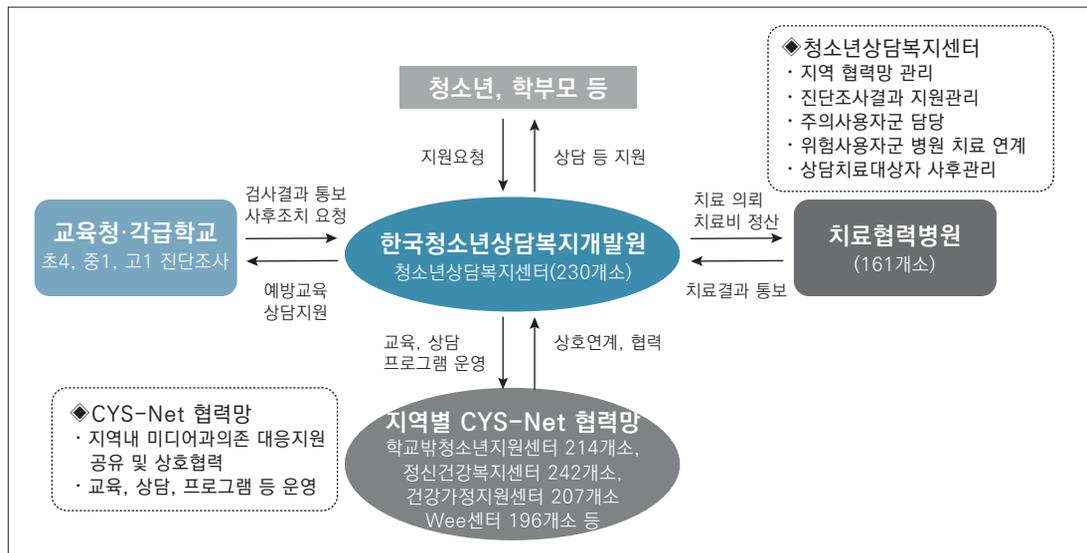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첫째, 잠재적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161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로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자체, 교육청,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지역 내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기관 간 연계·협력은 물론, 지역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조기 발굴 및 상담·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상담실적은 청소년안전망 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지역별 과의존 해소 서비스지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6-2-3]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서비스 등 지원

매년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전수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3~4월)를

실시하여 과의존 위험 정도별로 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 등 지원하고 있다. 위험사용자군에 대하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개인상담 지원하고 주의사용자군은 학교별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지원하고 있으며 공존질환보유군에 대하여는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일반계층 최대 40만 원,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한다.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차단 환경에서의 집중치유를 위한 기숙치유 프로그램으로 방학, 주말을 이용한 인터넷치유캠프 및 가족치유캠프 운영하여 21년도에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는 10회 115명, 가족치유캠프는 12회 178가족이 참여하였다. 상시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는 1~4주 프로그램을 총 18회 운영하여 32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해 위험군 청소년 부모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2021년도에 총 7,055명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과의존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2021년도에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54명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담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 1,437명이 참여하였다.

나.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운영

1) 제도 도입 배경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은 학습시간을 침해하고 수면부족을 야기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약화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셋다운제’)'를 도입하였다. 게임 셋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2011년 5월 19일 개정, 2011년 11월 20일 시행).

2) 제도 추진 현황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의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PC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청소년들에 대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보급률이 낮은 기기를 통해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다. 이후, 법 규정에 의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섯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친권자 등의 요청 시 심야시간에도 인터넷 게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입법으로 발의(2014년, 2016년)하였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3) 제도 개선 검토

2021년 정부는 게임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과 관련하여 가정 내 자율성과 양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재추진했다.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성능 향상, 5G 네트워크 진화 등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섯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게임시장을 주도하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섯다운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과거에 비해 학부모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가정 내 게임지도도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섯다운제를 재검토하였다.

4) 섯다운제 폐지 및 가정 내 자율적 섯택권 부여

그 결과 정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21년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섯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 시간 제한제도 중 「청소년 보호법」의 섯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섯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게임시간 섯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가정 내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일상회복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섯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이 발의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1. 9. 28.) 결과 위원회 대안이 의결(‘21. 10. 22.) 되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1. 11. 9.), 본회의 의결(‘21. 11. 11.)을 마쳤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 법률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02-2100-6308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3장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 아닌 ‘피해자’로 규정되었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중앙지원센터 1개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역지원센터 17개소를 운영하였다. 법 개정 이전인 2006~2020년에는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 위탁기관을 전국적으로 5~11개소를 운영하였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일상생활 복귀, 피해아동·청소년의 자립·자활 역량 강화 도모,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원기관 안내 및 성범죄 피해예방활동 전개,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적극 대응하였다.

지역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유관기관 등에서 연계된 피해아동·청소년을 중앙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지원하나, 온·오프라인에서의 아웃리치를 통해 성매매 피해 혹은 피해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발견하여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전담지원센터는 긴급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학업지원, 진로취업지원, 자활자립지원, 타기관 연계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와 주거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안전 보장이다. 교육지원은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법정대리인 교육이 병행되며, 보호자 및 가족의 교육과 심리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 법률지원은 경찰·검찰 조사 동행, 재판 동행, 민사소송 지원 등이다. 학업지원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등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지역전담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장애인지원기관 등 유관기관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표 6-3-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지원 현황

연번	시도	선정기관	비고
1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2	부산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3	대구	대구여성회	
4	인천	인권희망 강강술래	
5	광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6	대전	여성인권티움	
7	울산	울산여성의 전화	
8	경기	수원여성인권 톨음	
9	강원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10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11	충남	충남여성인권지원센터	
12	전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13	전남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14	경북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15	경남	사회복지법인 범숙	
16	제주	제주여성인권연대	
17	서울	(사)평화의샘	장애인 특성화센터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6-3-2〉 주요 프로그램 총괄 예시

분야	프로그램
신고 접수	• 범죄 신고 접수
아웃 리치	•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아웃리치 활동
긴급구조	• 긴급지원 및 일시보호(교통비, 일반숙박비 등) • 긴급1388 통합콜센터(17개) 및 청소년쉼터 등 보호체계 연계
상담 지원	• 1:1 개별상담 • 부모 및 가족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지원	•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진료 및 처방 지원 • 치료비 지원 및 병원 동행
법률 지원	• 법률 지원 연계 및 정보 제공 • 경찰서 및 법원 동행, 소견서 및 청원서 제출
학업 지원	• 일반 및 특수학교 복학·진학 정보 제공 •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관 및 관련 정보 제공(청소년지원시설 등록)
자립 지원	• 직업학교, 취업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제공 • 청소년 인턴십센터(십대자립훈련)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계
전문 멘토	• 전문상담사가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진로상담 등 개별 맞춤형 상담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업무 안내서.

〈표 6-3-3〉 상담 및 사례관리 인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원(명)	787	1,077	1,034	1,021	1,055	1,274	1,285	1,610	1,688	1,962	2,727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가. 신상정보 공개제도 목적과 의의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의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률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 방식에서 인터넷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관리 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미국은 1994년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 「메간법(The Megan’s Act)」을 만들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에 「아담월쉬 아동 보호 및 안전법(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내 성폭력전과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주(State)별 운영 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드루 소딘 국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만들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나. 신상정보 공개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되었다. 법원은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기간은 징역·금고 3년 초과인 경우 10년, 징역·금고 3년 이하인 경우 5년이다.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공개 명령을 받은 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된다. 공개 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전과 및 횡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되며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2016년에는 성범죄 예방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식별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성범죄자의 사진(4장) 중 전신사진을 정면·좌측·우측 사진보다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홍보·보급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국민들이 여름철 피서지, 놀이터나 공원 등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이동 중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법상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의 주소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 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다. 신상정보 고지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고지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정보를 공개 명령기간 동안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고지대상자는 공개대상자와 같다.

고지기간은 공개 명령 기간 동안이며, 고지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 주소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전과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실제 주소지 읍·면·동 행정구역에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 등을 대상으로 고지정보서를 송부한다.

2018년 7월부터는 공개 및 고지정보에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누구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정청구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우편고지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의견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도입하였다. 모바일고지는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의 세대주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세대주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을 통해 고지정보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모바일고지를 일정시간 내에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재송부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보호기관의 장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요령’을 인포그래픽과 카툰 형식으로 제작하여 고지정보서와 함께 동봉·발송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현황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5,445명(법무부)이고, 공개 명령이 선고되어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3,961명이다.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6406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 6. 30.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2010년 1월 1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 4월 15일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도교사, 2013년 6월 19일에는 경비업 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업, 2016년 11월 30일에는 위탁 교육기관이 추가되었다. 2018년 7월 17일부터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2018년 9월 1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 5월 27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최초 도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08년 2월 4일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4월 15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인·허가 또는 신고 등록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취업중인 자 포함)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는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도 가능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 연 1회 이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하도록 법제화되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7일부터 법원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취업제한자로 규정된 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 해당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유치원, 학교, 체육단체 등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대학,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단체가 해당되며 2020년 5월 27일부터는 국제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추가 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경력자 취업점검·확인, 성범죄 경력자 해임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3개 업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19,612명, 2019년 19,929명, 2020년 8,485명 2021년 8,5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6406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및 의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007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배경 및 경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및 인터넷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지적

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2006년 7월,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는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정부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민간 성교육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추진단은 표준 콘텐츠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콘텐츠를 탑재하여 농·산·어촌 등 교육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이 가능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참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특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발달단계별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은 ①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이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②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성교육 ③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 ④ 교사 및 보호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농·산·어촌 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200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표준 프로그램인 'SAY'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리뉴얼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인 ‘SAY2’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2022년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완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실적은 아래와 같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 교육 제한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6-3-4〉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인원	1,550,447	1,989,951	1,823,194	2,154,440	2,235,751	2,297,277	2,475,441	1,031,000	1,640,136

주 : 202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12월 현재 고정형 47개소와 이동형 10개소로,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6-3-5〉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정형	47	8	3	2	2	2	1	1	6	3	2	2	4	4	3	2	2
이동형	10	-	2	-	-	-	-	-	3	1	1	1	-	-	1	1	-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6-3-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

구분	고정형	이동형	기관명
서울	8	-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광진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송파구),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은평구), 아현청소년성문화센터(영등포구),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도봉구), 드림센터(강남구), 서울시립중앙청소년성문화센터(중랑구),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동작구)
부산	3	2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사상구),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동래구),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탄생의신비관이동형(I, II), 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인천	2	-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부평구)
대전	1	-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중구)
대구	2	-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달서구),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광주	2	-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북구),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광산구)
울산	1	-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경기	6	3	경기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 와~(안산시), 경기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소행성'(안산시),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달콩달콩'(파주시), 경기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큰키나무'(파주시),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용인시),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화성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안양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수원시)
강원	3	1	강원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강원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강릉시),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원주시)
충북	2	1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충주시)
충남	2	1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시),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홍성 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예산군)
전북	4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전주시),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군산시),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정읍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익산시)
전남	4	-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목포시),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여수시),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완도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순천시)
경북	3	1	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김천시),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포항시), 경북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북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남	2	1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사천시),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제주	2	-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서귀포시),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제주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12).

5.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가. 성 인권 교육 실시 목적 및 의의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계적인 성교육으로서 2011년 2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점차 사업 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1년 현재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8개 시·도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201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다. 학교 성 인권 교육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을 추진하여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학생용 핸드북은 2013년에 신규 제작하였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매뉴얼 제작은 2012~2013년에 걸쳐 완료하였다. 이후 2014~2015년에 걸쳐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4종을 추가하여 총 5종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후, 2018년 중·고등학생용 교재 개편, 2021년 개편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내용

성 인권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진행할 지역운영기관을 각 8개소, 27개소를 선정·운영하였다. 중앙지원기관에서는 운영 총괄 및 실적관리,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운영기관을 지원하고, 각 지역운영기관에서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 인권 및 성평등, 관계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주로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표준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이 운영되지만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6-3-7〉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인원	14,244	15,496	15,198	15,365	14,466	14,614
연인원	148,472	167,651	155,228	156,899	80,516	130,089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초·중·고등학교 지적·시각·청각·중복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외부 강사가 다양한 교구·교재를 활용하여 대상별 10차시 내외의 수업을 진행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계 존중과 관계 속에서의 의사표현, 성폭력 피해 예방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표 6-3-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인원	2,700	2,799	2,824	2,859	2,853	2,702
연인원	25,574	26,661	26,503	27,879	20,555	23,955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향후 학교 성 인권 교육 교재 개편, 강사 및 콘텐츠 관리 강화 등 품질 제고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속적인 만족도 관리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성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6407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7부 요약

제7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2021년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약 770만 명으로 1980년 약 1,44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부터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이후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 각각 14.0명, 11.9명, 9.9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대안교육 학교는 총 43개교이고, 학생 수는 4,245명, 교원 수는 857명으로 대안학교의 학생 수와 교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학교급별 진학률은 2020년도 졸업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과정 진학률은 100.0%,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과정 진학률은 99.7%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0년(75.4%)부터 2017년(69.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8년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2020년 73.7%로 확인되었다. 2020학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는 0.4%, 중학교는 0.5%, 고등학교는 1.1%로 나타났으며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예산은 2021년을 기준으로 약 75조 4,684억 원으로 2021년 전체 정부 예산의 16.0%에 해당하는 예산액이다.

다음으로 2020년 기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국어교과 75.3%, 수학교과 57.8%, 영어교과 63.9%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2학년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국어교과 69.7%, 수학교과 60.8%, 영어교과 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주변환경 만족도'는 모두 전체 학생의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20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금액도 2019년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에 대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원해주고자 농어촌 학생 대상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대여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으로는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였다. 탈북학생에게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며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였다.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제2장 교육복지정책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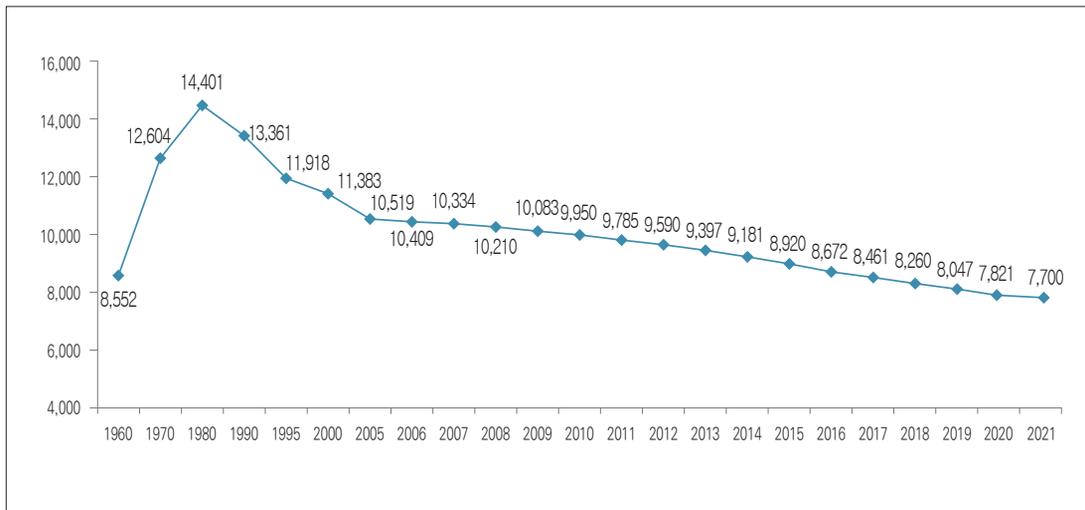
제1장 학교교육 현황

1. 학령인구

2021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해당하는 학령인구(6~21세)는 7,700천 명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학령인구를 살펴보면, 6~11세(초등학교)가 2,718천 명, 12~14세(중학교)가 1,379천 명, 15~17세(고등학교)가 1,344천 명, 18~21세(대학교)는 2,258천 명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1980년 1만 4,401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7-1-1] 연도별 학령인구

(단위: 천 명)



주: 6~21세 기준.

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표 7-1-1〉연도별 학령인구

(단위 : 천 명)

연도	계 (6~21세)	학교급별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0	8,552	3,629	1,566	1,417	1,941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	10,519	4,018	2,064	1,841	2,596
2006	10,409	3,919	2,104	1,888	2,497
2007	10,334	3,808	2,095	1,966	2,465
2008	10,210	3,631	2,070	2,039	2,471
2009	10,083	3,446	2,034	2,089	2,514
2010	9,950	3,280	1,985	2,084	2,601
2011	9,785	3,109	1,914	2,062	2,700
2012	9,590	2,926	1,867	2,028	2,769
2013	9,397	2,783	1,818	1,985	2,811
2014	9,181	2,751	1,719	1,912	2,799
2015	8,920	2,720	1,578	1,868	2,755
2016	8,672	2,688	1,458	1,816	2,710
2017	8,461	2,719	1,385	1,715	2,642
2018	8,260	2,757	1,340	1,574	2,589
2019	8,047	2,765	1,318	1,454	2,511
2020	7,821	2,717	1,358	1,382	2,364
2021	7,700	2,718	1,379	1,344	2,258

주 : 학령인구 수는 원자료 값의 백의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하였으므로 학령인구 합계는 학교급별 학령인구 수의 합계와 불일치 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2021년 학교급별 재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2,672,340명, 중학생은 1,350,770명, 고등학생은 1,101,501명이다. 고등학생 수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 수는 961,275명, 특성화고 학생 수는 198,663명이며, 특수목적고 학생 수는 63,181명, 자율고 학생 수는 76,846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1980년 565만여 명에서 1990년 486만여 명, 2000년 402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약 271만 명이었고, 2019년에는 약 275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269만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267만 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1980년 247만여 명에서 2000년 186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접어들면서 약 197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9만여 명이 되었다가, 2020년에 132만여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35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1980년 169만여 명에서 1990년 228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0년에는 약 207만 명, 2010년에는 196만여 명으로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재학생 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고 재학생 수는 2011년 143만여 명에서 2021년 95만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특성화고 재학생 수는 2011년 34만여 명에서 2021년 19만여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2011년 6만 3천여 명에서 2021년 6만 4천여 명으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였다. 자율고의 경우에는 2011년 11만 3천여 명에서 2013년 15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7만 6천여 명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 학생 수는 1,938,254명이고, 전문대 학생 수는 576,041명, 대학원생은 327,415명이다. 대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재학생 수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대학생 수(2,130,046명)는 1980년(402,979명)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고, 1990년(1,040,166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1980년 16만 5천여 명에서 2000년 91만 3천여 명으로 약 5배 증가 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57만 6천여 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계	5,658,002	2,471,997	1,696,792	932,605	764,187	-	-	-	-	402,979	33,939	9,425	165,051
	여	2,745,382	1,161,351	722,394	400,316	322,078	-	-	-	-	90,534	5,786	7,723	39,883
1990	계	4,868,520	2,275,751	2,283,806	1,473,155	810,651	-	-	-	-	1,040,166	86,911	15,960	323,825
	여	2,362,050	1,103,222	1,073,179	645,092	428,087	-	-	-	-	296,129	19,560	10,290	119,345
2000	계	4,019,991	1,860,539	2,071,468	1,324,482	746,986	-	-	-	-	1,665,398	229,437	20,907	913,273
	여	1,890,575	888,709	993,328	627,279	366,049	-	-	-	-	596,389	80,072	15,032	339,233
2010	계	3,299,094	1,974,798	1,962,356	1,496,227	466,129	-	-	-	-	2,028,841	316,633	21,618	767,087
	여	1,575,200	937,760	918,719	707,996	210,723	-	-	-	-	778,186	152,367	14,712	304,846
2011	계	3,132,477	1,910,572	1,943,798	-	-	1,425,882	340,227	63,727	113,962	2,065,451	329,933	20,241	776,738
	여	1,497,652	910,783	910,258	-	-	690,453	147,455	33,679	38,671	802,075	158,523	13,765	310,247
2012	계	2,951,995	1,849,094	1,920,087	-	-	1,381,130	330,797	64,468	143,692	2,103,958	329,544	18,789	769,888
	여	1,413,356	883,808	904,153	-	-	673,361	144,386	34,417	51,989	821,875	159,032	12,751	307,350
2013	계	2,784,000	1,804,189	1,893,303	-	-	1,356,070	320,374	67,099	149,760	2,120,296	329,822	17,500	757,721
	여	1,335,941	859,506	900,713	-	-	668,341	143,309	34,977	54,086	835,703	158,952	11,828	303,169
2014	계	2,728,509	1,717,911	1,839,372	-	-	1,314,073	313,449	66,928	144,922	2,130,046	330,872	16,566	740,801
	여	1,312,526	819,331	878,843	-	-	651,989	139,212	35,185	52,457	846,971	159,894	11,201	296,987
2015	계	2,714,610	1,585,951	1,788,266	-	-	1,278,008	302,021	67,529	140,708	2,113,293	333,478	15,967	720,466
	여	1,310,066	756,033	856,046	-	-	636,169	133,335	34,953	51,589	848,423	162,374	10,892	290,941
2016	계	2,672,843	1,457,490	1,752,457	-	-	1,256,108	290,632	67,607	138,110	2,084,807	332,768	15,903	697,214
	여	1,292,430	696,393	836,508	-	-	625,300	125,966	34,823	50,419	846,344	163,179	10,970	284,738

구분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2017	계	2,674,227	1,381,334	1,669,699	-	-	1,193,562	274,281	67,960	133,896	2,050,619	326,315	15,839	677,721
	여	1,294,670	661,045	797,705	-	-	595,811	118,237	34,932	48,725	839,929	162,008	10,988	278,246
2018	계	2,711,385	1,334,288	1,538,576	-	-	1,096,331	252,260	66,693	123,292	2,030,033	322,232	15,788	659,232
	여	1,315,080	640,686	733,769	-	-	546,101	108,561	33,939	45,168	841,808	161,393	10,948	273,328
2019	계	2,747,219	1,294,559	1,411,027	-	-	1,001,756	230,098	65,244	113,929	1,988,458	319,240	15,697	643,762
	여	1,334,340	623,115	673,802	-	-	499,335	99,758	32,645	42,064	834,052	161,381	10,726	271,283
2020	계	2,693,716	1,315,846	1,337,312	-	-	958,108	212,294	64,493	102,417	1,964,358	320,595	15,626	621,509
	여	1,309,376	635,421	639,232	-	-	477,366	93,023	31,867	36,976	830,456	164,151	10,476	267,409
2021	계	2,672,340	1,350,770	1,101,501	-	-	961,275	198,663	63,181	76,846	1,938,254	327,415	15,409	576,041
	여	1,300,128	654,046	624,355	-	-	479,387	87,604	31,281	26,083	826,880	168,983	10,129	251,829

주 : 1)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2)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021년 현재, 학교급별 학교 수는 초등학교 6,157개교, 중학교 3,245개교, 고등학교 2,375개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1,616개교, 특성화고 488개교, 특목고 161개교, 자율고 110개교이다. 2021년 초등학교 수는 1980년 6,487개교보다 330개교가 줄어들었지만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학교는 1980년 2,100개교보다 1,145개교가 늘어났으며, 고등학교의 수 역시 1980년 1,353개교보다 1,022개교 늘었고 중·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일반고는 그 수가 2014년까지 줄어들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1년은 전년대비 8개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99개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소폭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의 경우 2011년 120개교에서 2021년 161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율고의 경우에는 2011년 109개교에서 2016년 159개교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154개교, 2020년에는 145개교, 2021년에는 110개교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학은 1980년에 96개교에서 2021년 190개교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학원은 1980년 121개교에서 2021년 1,174개교로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육대학은 1980년 11개교에서

2021년 10개교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단위 : 개교)

구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 대학	전문 대학
			계	일반 계고	전문 계고	일반고	특성 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6,487	2,100	1,353	748	605	-	-	-	-	96	121	11	128
1990	6,335	2,474	1,683	1,096	587	-	-	-	-	118	298	11	117
1995	5,772	2,683	1,830	1,068	762	-	-	-	-	142	421	11	145
2000	5,267	2,731	1,957	1,193	764	-	-	-	-	172	829	11	158
2005	5,646	2,935	2,095	1,382	713	-	-	-	-	184	1,051	11	158
2006	5,733	2,999	2,144	1,437	707	-	-	-	-	186	1,051	11	152
2007	5,756	3,032	2,159	1,457	702	-	-	-	-	186	1,042	11	148
2008	5,813	3,077	2,190	1,493	697	-	-	-	-	185	1,055	10	147
2009	5,829	3,106	2,225	1,534	691	-	-	-	-	188	1,115	10	146
2010	5,854	3,130	2,253	1,561	692	-	-	-	-	179	1,138	10	145
2011	5,882	3,153	2,282	-	-	1,554	499	120	109	183	1,167	10	147
2012	5,895	3,162	2,303	-	-	1,529	499	128	147	189	1,177	10	142
2013	5,913	3,173	2,322	-	-	1,525	494	138	165	188	1,200	10	140
2014	5,934	3,186	2,326	-	-	1,520	499	143	164	189	1,209	10	139
2015	5,978	3,204	2,344	-	-	1,537	498	148	161	189	1,197	10	138
2016	6,001	3,209	2,353	-	-	1,545	497	152	159	189	1,195	10	138
2017	6,040	3,213	2,360	-	-	1,556	491	155	158	189	1,153	10	138
2018	6,064	3,214	2,358	-	-	1,556	490	157	155	191	1,198	10	137
2019	6,087	3,214	2,356	-	-	1,555	489	158	154	191	1,183	10	137
2020	6,120	3,223	2,367	-	-	1,573	489	160	145	191	1,169	10	136
2021	6,157	3,245	2,375	-	-	1,616	488	161	110	190	1,174	10	134

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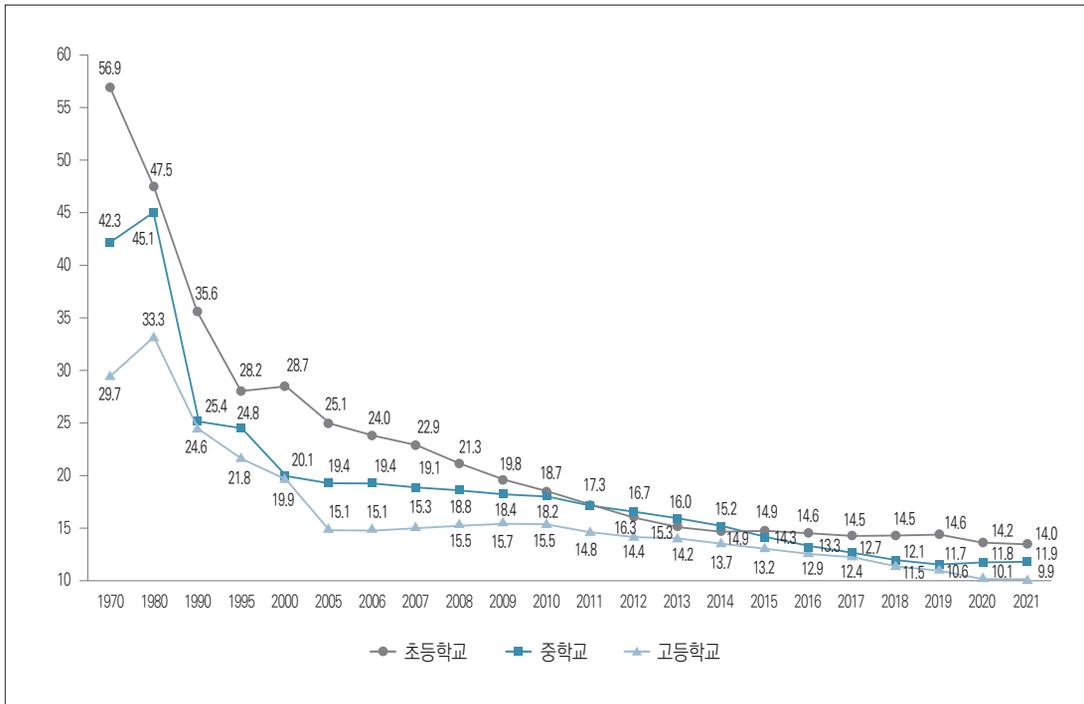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재적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21년 현재 초등학교 14.0명, 중학교 11.9명, 고등학교 9.9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대비 초등학교 14.7명, 중학교 8.2명, 고등학교 10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자율고 11.2명, 일반고 10.5, 특성화고 8.0명, 특목고 7.9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 명)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70	56.9	42.3	29.7	32.0	27.5	-	-	-	-
1980	47.5	45.1	33.3	33.9	32.6	-	-	-	-
1990	35.6	25.4	24.6	25.4	23.4	-	-	-	-
1995	28.2	24.8	21.8	22.1	21.4	-	-	-	-
2000	28.7	20.1	19.9	20.9	18.2	-	-	-	-
2005	25.1	19.4	15.1	15.9	13.5	-	-	-	-
2006	24.0	19.4	15.1	15.8	13.5	-	-	-	-
2007	22.9	19.1	15.3	16.1	13.5	-	-	-	-
2008	21.3	18.8	15.5	16.4	13.4	-	-	-	-
2009	19.8	18.4	15.7	16.7	13.3	-	-	-	-
2010	18.7	18.2	15.5	16.5	13.1	-	-	-	-
2011	17.3	17.3	14.8	-	-	15.8	11.0	12.5	15.2
2012	16.3	16.7	14.4	-	-	15.4	10.3	12.1	14.6
2013	15.3	16.0	14.2	-	-	15.2	10.0	12.0	14.3
2014	14.9	15.2	13.7	-	-	14.6	11.6	9.7	13.7
2015	14.9	14.3	13.2	-	-	14.1	11.4	9.3	13.7
2016	14.6	13.3	12.9	-	-	13.7	11.0	9.1	13.5
2017	14.5	12.7	12.4	-	-	13.1	10.6	8.9	13.2
2018	14.5	12.1	11.5	-	-	12.1	9.8	8.6	12.4
2019	14.6	11.7	10.6	-	-	11.1	9.1	8.3	11.5
2020	14.2	11.8	10.1	-	-	10.7	8.4	8.0	11.1
2021	14.0	11.9	9.9	-	-	10.5	8.0	7.9	11.2

주 : 1)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

2) 교원은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 및 기간제교원 포함(휴직교원 포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3)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3. 조기유학 현황

2020학년도(2020. 3. 1.~2021. 2. 29.) 조기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등 학생 수는 총 8,458명으로 2019학년도 8,961명보다 503명 감소한 수치이다.

조기 유학생 현황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5,705명(67.5%), 중학생 2,079명(24.6%), 고등학생 674명(8.0%)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기 유학생은 2006학년도 이후부터 2016학년도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학년도까지 소폭 증가하였고, 2020학년도 다시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유학 현황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05	8,148	6,670	5,582	20,400
2006	13,814	9,246	6,451	29,511
2007	12,341	9,201	6,126	27,668
2008	12,531	8,888	5,930	27,349
2009	8,369	5,723	4,026	18,118
2010	8,794	5,870	4,077	18,741
2011	7,477	5,468	3,570	16,515
2012	6,061	4,977	3,302	14,340
2013	5,154	4,377	2,843	12,374
2014	4,455	3,729	2,723	10,907
2015	4,271	3,226	2,428	9,925
2016	3,796	2,700	2,247	8,743
2017	4,103	2,761	2,028	8,892
2018	4,399	2,893	1,785	9,077
2019	4,693	2,752	1,516	8,961
2020	5,705	2,079	674	8,458

주 :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하며 2020학년도의 경우 2019년도에 조사된 자료임. 2020학년도(2021년도) 자료기준일은 2020. 3. 1.~2021. 2. 29.임.

2)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가 포함됨.

3) 해외이주 및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한 동행은 제외하였음.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4. 대안교육 학교

2021년 현재, 대안교육 학교는 고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대안교육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고등학생 2,470명, 중학생 1,775명으로 총 4,245명이었으며 2021년 대안교육 학교의 교원 수는 857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대안교육 학교의 수는 중학교가 1개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는 증감이 없이 동일한 수준을 보인 반면, 대안교육 학교의 학생 수 및 교원 수는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와 교원의 수 모두 증가하였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는 감소하였고 교원의 수는 증가하였다.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2007	29	2,823	392	8	669	86	21	2,154	306
2008	29	2,984	419	8	766	95	21	2,218	324
2009	29	3,410	416	8	974	94	21	2,436	322
2010	32	3,565	465	9	1,007	109	23	2,558	356
2011	33	3,829	519	10	1,101	131	23	2,728	388
2012	34	4,034	564	10	1,145	141	24	2,889	423
2013	34	4,060	573	10	1,131	142	24	2,929	431
2014	36	4,115	623	12	1,265	183	24	2,850	440
2015	38	4,179	660	13	1,381	210	25	2,798	450
2016	38	4,241	649	13	1,381	197	25	2,860	452
2017	39	4,244	660	14	1,409	212	25	2,835	448
2018	43	4,424	749	17	1,594	258	26	2,830	491
2019	43	4,438	786	17	1,671	286	26	2,767	500
2020	43	4,440	804	17	1,723	299	25	2,717	505
2021	43	4,245	857	18	1,775	320	25	2,470	537

- 주 : 1)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월 1일.
- 2) 학교 수는 폐교 제외, 휴교 포함됨.
- 3) 교원 수는 기간제 교원 및 휴직자 포함. 시간강사 및 퇴직자 제외.

자료 : 1) 교육부(2021). 2021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2) 학교알리미(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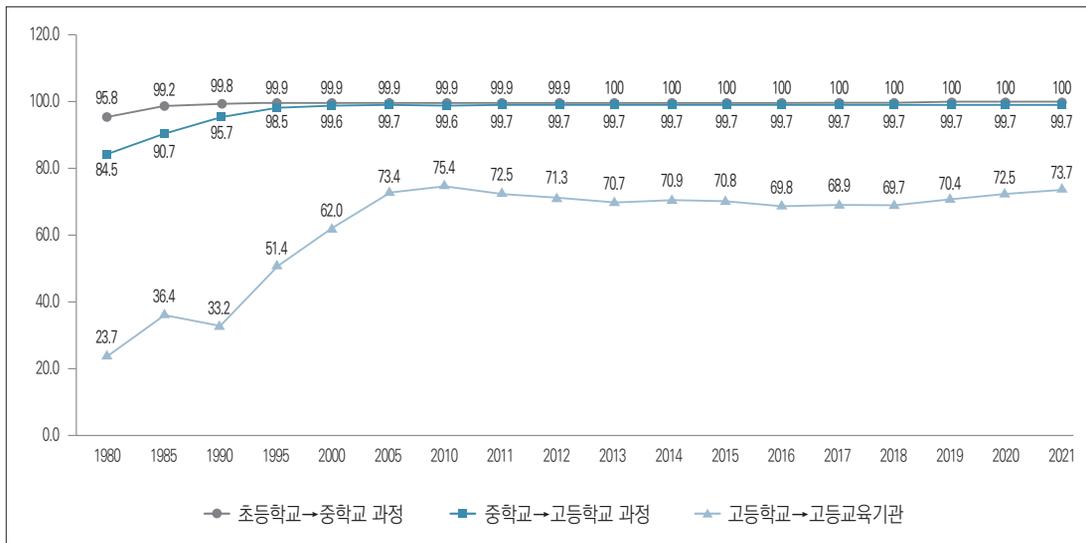
5. 진학률

2020년도 졸업자 기준(2021년도 진학자),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과정 진학률은 100.0%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과정 진학률은 99.7%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2.5%로,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도부터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90년의 33.2%와 비교했을 때 2020년도 졸업자의 진학률은 40.5%p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일반계고는 2005년(88.3%) 이후 2010년(81.5%)까지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 전문계고는 2005년(67.6%)부터 2010년(71.1%)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반고와 자율고의 진학률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일반고와 자율고의 진학률은 소폭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일반고의 진학률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자율고의 진학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특성화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6년까지 공통적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20년 44.8% 대비 3%p 증가하였고, 특목고의 진학률은 2020년 58.1% 대비 0.2%p 증가한 58.3%로 나타났다.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연도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	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계	계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95.8	84.5	23.7	39.2	5.0	-	-	-	-
1985	99.2	90.7	36.4	53.8	9.9	-	-	-	-
1990	99.8	95.7	33.2	47.2	6.3	-	-	-	-
1995	99.9	98.5	51.4	72.8	17.2	-	-	-	-
2000	100.0	99.6	62.0	83.9	42.0	-	-	-	-
2005	100.0	99.7	73.4	88.3	67.6	-	-	-	-
2010	100.0	99.6	75.4	81.5	71.1	-	-	-	-
2011	100.0	99.7	72.5	-	-	75.8	61.0	67.4	69.3
2012	100.0	99.7	71.3	-	-	76.6	50.0	64.2	72.6
2013	100.0	99.7	70.7	-	-	77.7	41.7	60.0	74.7
2014	100.0	99.7	70.9	-	-	78.7	37.9	59.6	75.7
2015	100.0	99.7	70.8	-	-	78.9	36.1	58.4	75.8
2016	100.0	99.7	69.8	-	-	78.0	35.0	55.9	74.9
2017	100.0	99.7	68.9	-	-	77.3	32.8	56.9	73.5
2018	100.0	99.7	69.7	-	-	77.6	35.9	57.6	72.6
2019	100.0	99.7	70.4	-	-	77.0	42.5	57.5	71.7
2020	100.0	99.7	72.5	-	-	79.4	44.8	58.1	74.3
2021	100.0	99.7	73.7	-	-	80.3	47.8	58.3	74.2

주 : 1) 진학률(%) = (해당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해당연도 졸업자)×100.

2) 2011년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함. 2014년 이후 개정된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임.

3) 고등교육기관 진학자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진학자 포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4) 중학교 과정 :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

5) 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

6) 대학 진학자 기준 : 2010년까지 대학 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됨.

7)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6. 학업중단율

2020학년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1.1%, 중학교는 0.5%, 초등학교는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자의 개념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정의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퇴와 퇴학한 자를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다.

학업중단율은 2000학년도 이후 초등학교는 소폭 상승하다가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0.4%를 보이고 있고, 중학교도 전년 대비 0.3% 감소한 0.5%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1.8% 내외를 유지하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고 2019학년도 다시 1.8% 수준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한 1.1%로 나타났다.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0	0.1	1.2	2.5
1985	0.0	1.1	3.0
1990	0.0	1.0	1.9
1995	0.0	1.0	2.5
2000	0.4	1.0	2.5
2005	0.5	0.8	1.3
2006	0.6	0.9	1.6
2007	0.5	1.0	1.8
2008	0.5	1.0	1.8
2009	0.3	0.8	1.8
2010	0.6	1.0	2.0
2011	0.6	0.9	1.9
2012	0.6	0.9	1.8
2013	0.6	0.8	1.6
2014	0.6	0.7	1.4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5	0.5	0.6	1.3
2016	0.6	0.6	1.4
2017	0.6	0.7	1.5
2018	0.7	0.7	1.6
2019	0.7	0.8	1.8
2020	0.4	0.5	1.1

주 : 1) 연도는 학년도임.

2)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수 / 전년도 재적학생 수 × 100.

3) 학업중단자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자퇴, 퇴학한 자들을 말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함.

4)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7. 교육재정

가.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은 약 75조 4,684억 원으로 1980년의 약 1조 992억 원, 1990년의 약 5조 624억 원에 이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비하여는 약 15억 원 감소하였다. 2021년 전체 정부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6.0%로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 18.2%로 증가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대비 2% 가량 감소하였다.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단위 : 천 원, %)

연도	정부 예산	교육부 예산	비율
1970	446,273,301	78,478,212	17.6
1980	5,804,061,441	1,099,159,170	18.9
1990	22,689,432,968	5,062,431,258	22.3

연도	정부 예산	교육부 예산	비율
2000	93,937,057,000	19,172,027,920	20.4
2001	102,528,518,000	20,034,364,710	19.5
2002	113,898,884,000	22,278,357,817	19.6
2003	120,477,623,000	24,404,401,310	20.3
2004	126,991,802,000	26,399,680,082	20.8
2005	134,370,378,000	27,982,002,000	20.8
2006	144,807,610,439	29,127,258,513	20.1
2007	200,951,945,139	31,044,747,984	15.4
2008	219,940,529,553	35,897,425,012	16.3
2009	247,953,607,658	41,215,064,889	16.6
2010	255,334,387,481	41,741,895,353	16.3
2011	264,092,862,471	45,116,643,669	17.1
2012	282,687,336,883	49,644,828,392	17.6
2013	298,405,676,810	50,303,968,503	16.9
2014	309,692,464,444	50,835,376,904	16.4
2015	322,787,071,554	51,224,093,676	15.9
2016	330,671,628,374	52,082,779,330	15.8
2017	339,661,568,102	61,832,103,743	18.2
2018	368,646,277,167	68,549,213,485	18.6
2019	399,769,097,900	74,947,793,000	18.7
2020	427,109,369,739	76,995,734,000	18.0
2021	459,880,082,000	75,468,432,000	16.0

주 : 1) 정부 예산(~2004)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 정부 예산(2005~)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본예산 기준).

4) 2009~20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나. GDP 대비 교육재정

2020년도 교육부 예산¹⁾ 중 교육 분야 예산은 약 72조 원이며 이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60조 원(83.5%)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예산은 약 11조 원으로 교육 예산의 약 15.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은 2.9%, 2012년 3.1%, 2013년 3.3%, 2014년 3.2%, 2015년과 2016년은 3.0%, 2017년은 3.1%, 2018년은 3.4%, 2019년은 3.1%, 2020년은 3.7%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후 2016년까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9년 다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단위 : 조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	유아 및 초·중등	38.6	41.2	41.1	39.6	41.4	47.1	53.7	59.4	60.4
	고등교육	6.0	7.6	8.7	9.0	9.3	9.3	9.5	10.1	10.8
	평생·직업교육	0.6	0.7	0.5	0.6	0.6	0.7	0.6	0.7	0.9
	교육일반	0.1	0.1	0.1	0.1	0.1	0.1	0.1	0.1	0.1
	소계	45.2	49.6	50.4	49.2	51.4	57.2	63.9	70.3	72.3
GDP 규모		1,440.1	1,500.8	1,562.9	1,658.0	1,740.8	1,835.7	1,898.2	1,924.5	1,933.2
GDP 대비 비율		3.1%	3.3%	3.2%	3.0%	3.0%	3.1%	3.4%	3.7%	3.7%

주 : 1)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GDP 규모의 기준년도는 2015년임.

자료 : 1) 교육부(2020).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통계청(2021).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에서 2021년 12월 30일 인출.

1) 교육부 예산은 분야(부문)별로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와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공적연금)로 구분함.

다.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4.9% 보다 0.2%p 높은 5.1% 수준이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구성 비율은 3.8%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4.1% 보다 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민간재원 비율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0.8% 보다 0.5%p 높은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8)

(단위 : %)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핀란드	영국	일본
GDP 대비 공교육비	4.9	5.1	6.0	5.2	5.1	6.1	4.0
정부재원	4.1	3.8	4.1	4.5	5	3.9	2.8
민간재원	0.8	1.3	1.9	0.7	0.1	2.1	1.1

주 : 1)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정부부담 =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 + 정부가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 기타민간이전금)/GDP × 100.

3) 민간부담 = (민간부담금(등록금 등) + 기타 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 - 정부가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및 기타민간이전금)/GDP × 100.

4) GDP대비 공교육비 = (정부부담 금액 + 민간부담 금액 + 해외부담 금액)/GDP × 100.

5)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단계(유아교육단계 제외). 자료 : OECD(2021). 2021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라.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2020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9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2만 원(10.0%p) 감소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보다 6.9만 원(23.8%p) 감소하였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1.0만 원(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8만 원으로 전년대비 2.3만 원(6.3%p)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가운데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4.8만 원으로 전년대비 2.3만 원(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평균 66.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8.3%p 감소한 수치이고,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69.2%로 초·중·고 학교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66.7%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60.7%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다. 일반고는 67.6%로 2019년 67.9%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사교육 참여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7.2	29.1	32.1	28.9	10.0	71.2	72.8	74.8	66.5	11.1
초등학교	25.3	26.3	29.0	22.1	23.8	82.7	82.5	83.5	69.2	17.1
중학교	29.1	31.2	33.8	32.8	3.0	67.4	69.6	71.4	66.7	6.6
고등학교	28.5	32.1	36.5	38.8	6.3	55.9	58.5	61.0	60.7	0.5
일반고	33.2	37.6	42.5	44.8	5.4	62.2	65.2	67.9	67.6	0.4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1

8. 청소년의 학업성취도²⁾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의 추이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학업성취도와 교육맥락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구성 요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보정 교육으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넷째, 질 높은 평가 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 방법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민희 외,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998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어 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일정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여 시행하다가 2009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도에 평가대상 중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로 작성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구남욱 외, 2021)를 정리·요약한 것이다.

2학년으로 전환되었으며, 평가범위는 동일하게 고1 전 과정을 유지하였다. 2012년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직업 기초 능력평가’를 시행하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일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의 평가 교과 중 국어, 수학, 영어는 전수평가를 실시하였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사회와 과학 교과는 표집학교만 시행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국·영·수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표본을 통해 얻어진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라는 점을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로 학생의 성취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과 이에 도달하지 못한 ‘기초학력 미달’의 성취수준으로 구분된다(서민희 외, 2020).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국·영·수 학업성취 학생 비율로 평균을 계산할 경우, 2020년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65.7%로 2017년 75.0%로 전년대비 감소하고 2018년에 69.8%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2.5%p 증가하였고, 2020년 6.6%p 감소하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7년 84.8%, 2018년 8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82.8%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75.3%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7년 12.6%, 2018년 14.3%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에는 13.0%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0년 1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7년 2.6%, 2018년 4.4%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4.1%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6.4%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7년 67.6%, 2018년 62.3%, 2019년 61.3%, 2020년 57.8%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수학교과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6년 26.8%에서 2017년 25.3%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26%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0년에는 28.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7.1%, 2018년 11.1%, 2019년 11.8%, 2020년 13.4%로 점차 증가하였다.

영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7년 72.6%로 감소하고, 2018년 65.7%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는 72.7%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63.9%로 다소 감소하였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7년 24.2%에 비하여 2018년 28.9%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9년 24.1%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 28.9%로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7년 3.2% , 2018년 5.3%, 2019년 3.3%였고, 2020년에는 7.1%으로 전년 대비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성별에 따라서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교과 모두에서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교과에서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 교과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7-1-13〉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	여									
국어	보통학력 이상	84.8	79.8	90.5	81.3	75.6	87.4	82.8	76.6	89.6	75.3	68.2	83.2
	기초학력	12.6	16.2	8.5	14.3	17.9	10.4	13.0	17.1	8.5	18.2	22.0	14.0
	기초학력 미달	2.6	4.0	1.0	4.4	6.5	2.2	4.1	6.2	1.9	6.4	9.8	2.9
수학	보통학력 이상	67.6	66.5	68.8	62.3	62.2	62.5	61.3	60.3	62.5	57.8	55.9	59.8
	기초학력	25.3	25.3	25.2	26.6	25.3	28.0	26.9	26.2	27.8	28.9	28.0	29.8
	기초학력 미달	7.1	8.2	6.0	11.1	12.5	9.5	11.8	13.6	9.7	13.4	16.0	10.5
영어	보통학력 이상	72.6	68.1	77.6	65.7	60.4	71.6	72.7	67.4	78.3	63.9	59.1	69.1
	기초학력	24.2	27.5	20.5	28.9	32.4	25.2	24.1	27.9	20.0	28.9	30.8	26.9
	기초학력 미달	3.2	4.4	1.9	5.3	7.2	3.3	3.3	4.7	1.7	7.1	10.1	4.0
평균	보통학력 이상	75.0	71.5	79.0	69.8	66.1	73.8	72.3	68.1	76.8	65.7	61.1	70.7
	기초학력	20.7	23.0	18.1	23.3	25.2	21.2	21.3	23.7	18.8	25.3	26.9	23.6
	기초학력 미달	4.3	5.5	3.0	6.9	8.7	5.0	6.4	8.2	4.4	9.0	12.0	5.8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구남욱 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중학교.

고등학교의 2020년 국·영·수 학업성취 학생 비율의 평균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69.1%로 2019년 73.9% 보다 4.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69.7%로 전년대비 7.8%p 감소하였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23.4%로 전년대비 4.9%p 증가하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년대비 2.8%p 증가하였다.

수학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60.8%로 2019년 대비 4.7%p 감소하였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2020년 25.7%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는 2020년 13.5%로 전년대비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7년 81.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76.7%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2017년 14.4%, 2018년 13.4%, 2019년 17.6%이었고, 2020년에는 14.7%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4.1%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3.6%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8.6%로 다소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 모두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와 영어교과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학교과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전 과목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4〉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	여									
국어	보통학력 이상	75.2	67.9	82.9	81.6	76.0	87.5	77.5	71.4	84.0	69.7	60.7	79.5
	기초학력	19.8	24.9	14.4	15.0	18.9	10.9	18.5	22.8	14.0	23.4	28.6	17.9
	기초학력 미달	5.0	7.2	2.7	3.4	5.2	1.5	4.0	5.8	2.0	6.8	10.8	2.6
수학	보통학력 이상	75.8	74.2	77.4	70.4	71.2	69.5	65.5	66.8	64.0	60.8	59.5	62.1
	기초학력	14.3	14.0	14.7	19.2	17.1	21.5	25.5	23.6	27.6	25.7	24.2	27.3
	기초학력 미달	9.9	11.8	7.9	10.4	11.7	9.0	9.0	9.6	8.4	13.5	16.3	10.6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	여									
영어	보통학력 이상	81.5	77.3	86.0	80.3	75.4	85.6	78.8	75.5	82.3	76.7	70.4	83.4
	기초학력	14.4	17.1	11.5	13.4	15.7	11.1	17.6	19.5	15.5	14.7	16.9	12.5
	기초학력 미달	4.1	5.6	2.5	6.2	8.9	3.3	3.6	5.0	2.1	8.6	12.8	4.1
평균	보통학력 이상	77.5	73.1	82.1	77.4	74.2	80.9	73.9	71.2	76.8	69.1	63.5	75.0
	기초학력	16.2	18.7	13.5	15.9	17.2	14.5	20.5	22.0	19.0	21.3	23.2	19.2
	기초학력 미달	6.3	8.2	4.4	6.7	8.6	4.3	5.5	6.8	4.2	9.6	13.3	5.8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구남욱 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고등학교.

지역규모에 따른 성취수준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전체 평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대도시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평균 70.8%였으며, 중소도시는 65.0%, 읍면지역은 55.3%였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 격차는 2017년 10.4%p, 2018년 7.9%p, 2019년 9.3%p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15.5%p로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목별로는 2020년 국어교과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78.8%, 중소도시 74.9%, 읍면지역 68.5%이었다. 수학교과의 경우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63.6%, 중소도시 56.8%, 읍면지역 46.2%였으며,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69.9%, 중소도시 63.2%, 읍면지역 51.1%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7.6%, 중소도시 8.9%, 읍면지역 12.5%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교과는 대도시 5.4%, 중소도시 6.2%, 읍면지역 9.6%였으며, 수학교과는 대도시 11.2%, 중소도시 13.4%, 읍면지역 18.5%, 영어교과는 대도시 6.1%, 중소도시 7.2%, 읍면지역 9.5%로 나타났다.

〈표 7-1-15〉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보통학력 이상	86.2	84.9	81.5	82.5	80.8	79.7	84.9	82.2	79.6	78.8	74.9	68.5
	기초학력	11.1	13.0	15.3	13.2	14.8	16.1	11.3	13.6	15.5	15.8	18.9	21.9
	기초학력 미달	2.7	2.2	3.2	4.4	4.5	4.3	3.8	4.2	4.9	5.4	6.2	9.6
수학	보통학력 이상	71.9	67.1	57.8	66.9	60.3	55.7	64.9	61.4	51.9	63.6	56.8	46.2
	기초학력	21.6	25.4	34.5	22.9	28.4	31.6	24.8	26.8	33.0	25.3	29.8	35.2
	기초학력 미달	6.5	7.5	7.7	10.3	11.3	12.7	10.3	11.9	15.2	11.2	13.4	18.5
영어	보통학력 이상	76.4	72.0	64.2	70.1	63.5	60.4	75.4	72.4	66.0	69.9	63.2	51.1
	기초학력	20.7	24.7	32.0	24.6	31.0	34.4	21.2	24.4	30.5	24.0	29.6	39.4
	기초학력 미달	2.9	3.3	3.8	5.3	5.4	5.2	3.4	3.1	3.6	6.1	7.2	9.5
평균	보통학력 이상	78.2	74.7	67.8	73.2	68.2	65.3	75.1	72.0	65.8	70.8	65.0	55.3
	기초학력	17.8	21.0	27.3	20.2	24.7	27.4	19.1	21.6	26.3	21.7	26.1	32.2
	기초학력 미달	4.0	4.3	4.9	6.7	7.1	7.4	5.8	6.4	7.9	7.6	8.9	12.5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구남욱 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의 지역규모에 따른 2020년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평균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평균적으로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69.9%, 중소도시 69.4%, 읍면지역 66.0%였으며, 과목별로는 국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70.2%, 중소도시 70.1%, 읍면지역 67.6%였으며, 수학교과는 대도시 62.9%, 중소도시 60.3%, 읍면지역 56.8%, 영어교과는 대도시 76.7%, 중소도시 77.7%, 읍면지역 73.7%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대도시 10.4%, 중소도시 9.0%, 읍면지역이 9.5%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대도시 7.9%, 중소도시 5.9%,



읍면지역 6.6%로 나타났고, 수학교과와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대도시 13.7%, 중소도시 13.3%, 읍면지역은 13.7%,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대도시 9.6%, 중소도시 7.8%, 읍면지역 8.1%로 나타났다.

〈표 7-1-16〉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보통학력 이상	77.2	75.3	68.7	82.5	81.6	78.8	77.7	78.1	74.9	70.2	70.1	67.6
	기초학력	17.7	20.4	24.2	13.4	15.4	18.1	18.4	17.5	22.0	21.9	23.9	25.8
	기초학력 미달	5.1	4.3	7.1	4.0	2.9	3.2	3.9	4.3	3.1	7.9	5.9	6.6
수학	보통학력 이상	78.4	75.1	70.4	73.4	69.7	64.4	68.2	64.5	61.1	62.9	60.3	56.8
	기초학력	12.6	15.3	16.4	17.2	19.7	23.1	24.2	25.3	29.6	23.4	26.4	29.5
	기초학력 미달	9.0	9.6	13.2	9.4	10.7	12.5	7.6	10.1	9.3	13.7	13.3	13.7
영어	보통학력 이상	83.9	81.3	75.2	83.6	79.5	74.2	80.0	78.9	75.3	76.7	77.7	73.7
	기초학력	12.4	14.9	18.5	10.9	13.9	19.0	16.5	17.2	21.6	13.7	14.5	18.2
	기초학력 미달	3.7	3.8	6.3	5.5	6.6	6.8	3.6	3.9	3.0	9.6	7.8	8.1
평균	보통학력 이상	79.8	77.2	71.4	79.8	76.9	72.5	75.3	73.8	70.4	69.9	69.4	66.0
	기초학력	14.2	16.9	19.7	13.8	16.3	20.1	19.7	20.0	24.4	19.7	21.6	24.5
	기초학력 미달	5.9	5.9	8.9	6.3	6.7	7.5	5.0	6.1	5.1	10.4	9.0	9.5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구남욱 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고등학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9.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49.7%로 나타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9.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47.7%, 2016년 48.6%, 2018년 53.1%, 2020년 57.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44.0%에서 2016년에는 42.9%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는 44.7%, 2020년에는 48.9%으로 전년대비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69.5%, 2016년에 68.8%, 2018년 76.6%, 2020년 73.3%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50.8%, 2016년 53.1%, 2018년 61.1%, 2020년 6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 시설 및 설비 만족도의 경우에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38.7%, 2016년 41.0%, 2018년 47.4%, 2020년 55.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37.5%, 2016년 39.8%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47.1%, 2020년에는 55.1%로 전년대비 8.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내용,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연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중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항목은 교우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7〉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만족	보통	불만족									
전반적인 학교생활	49.7	43.8	6.4	52.3	41.8	6.0	58.0	37.3	4.6	59.3	36.2	4.5
교육 내용	47.7	42.5	9.8	48.6	42.3	9.1	53.1	38.7	8.2	57.2	34.7	8.2
교육 방법	44.0	41.6	14.4	42.9	43.3	13.8	44.7	41.9	13.4	48.9	35.9	15.2
교우 관계	69.5	26.8	4.6	68.8	27.1	4.1	76.6	21.3	2.0	73.3	23.7	3.0
교사와의 관계	50.8	42.1	7.1	53.1	40.4	6.5	61.1	34.0	4.9	64.8	31.6	3.6
학교시설 및 설비	38.7	43.3	18.0	41.0	43.1	15.9	47.4	40.8	11.9	55.7	35.2	9.1
학교주변 환경	37.5	44.7	17.7	39.8	42.8	17.4	47.1	41.9	11.0	55.1	35.7	9.2

주 : 1) 통계청 "사회조사"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2~2016년까지는 13세 이상 재학생을 조사하였고, 2018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조사대상임.

2)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것이고,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2장 교육복지정책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게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예컨대 학습 결손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 결손을 치유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문화적 욕구 결핍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성취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삶의 질적 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이다. 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 원리는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개별 여건을 진단하여 그에 맞게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인해 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의 경과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에 서울, 부산 2곳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출발하였다. 시범사업 2년 후인 2005년부터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업대상지역을 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총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인구 25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16개 시·도에 걸친 총 30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말에는 모든 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까지 전국의 534개 초·중·고에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11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개칭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재원의 성격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 교부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대상은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로 변경되었다.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수는 총 3,475교이고 사업 대상학생 수는 총 301,442명으로 집계되었다(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2021). 그러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중 약 60%에 해당하는 179,554명만이 교육복지사 배치교(1,537교)에 소속되어 교내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40%에 해당하는 121,888명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1,938교) 학생으로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비사업학교도 있어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추진 체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등을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사업학교 선정기준, 학교별 예산 배부 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시·도의 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배포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청 내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발굴,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등을 실시하여 시·도의 자체적인 교육 복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관내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내 담당부서에 프로젝트 조정자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선 현장인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이외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교내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게 된다.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된다. 또한 교육복지사와 담임교사의 판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외적으로 현물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외에도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연구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단위의 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관련 담당자 연수,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협의회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육복지협의회,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다. 사업 내용 및 효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 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 사업 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학교 선정, 사업대상학생 선정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교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로 분류된다. 우선 학교는 지원 대상 학생에게 특기적성,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예시로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1:1 보충학습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만 특정 학생에게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학생이 노출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일반학생도 함께 참여하여 그룹 활동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학생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비용의 전부가 지원되나, 일반학생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부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 안내의 편의성을 위하여 학습영역, 문화영역, 정서·심리 발달영역, 복지 프로그램 영역 등으로 구분 지은 경우가 있었으나, 복지 프로그램 영역을 임의로 구분 짓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수요 파악에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일반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이외에도 사업학교의 장은 의·식·주, 보건, 위생, 건강 등 학생의 기본적인 욕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물서비스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 예컨대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사업대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쌀을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복지사가 학생을 데리고 치과에 동행해서 치과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효과성에 관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 수업태도, 학업 효능감, 사회성,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에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송지훈 외, 2018).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연구(교육복지 콘서트)에 따르면, 많은 시·도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의 학습태도, 기초학력, 자아존중감 등이 향상 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조사(2016년도 운영성과) 결과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의 무단결석 비율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서도 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역량(수업참여, 독서, 진로설계)이 비 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부수적으로 사업학교 내부의 교육복지 체계가 강화되었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 실시 이후 사업학교(초·중학교)의 교육복지 전달 부서 설치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내 교육복지위원회 설치율은 두 학교급 모두 98% 이상으로 학교 자체의 교육복지 체계가 매우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학습, 문화,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수업료, 급식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던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사업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사가 모든 단위학교에 배치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2020년 기준으로 1,545명의 교육복지사가 전국 1,537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약 44%에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복지사 1인당 담당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은 평균 195.1명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위학교 전문 인력 부족은 교육복지사의 소진과 높은 이직률, 그리고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1년도부터 교육복지 안전망 시범운영사업을 시작하였다.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복지 지원 강화사업계획 안내’(교육복지정책과-3276)와 관련된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개별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촘촘한 안전망에 근거한 통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진 배경과 목적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전국 교육복지안전망은 13개 시·도에서 총 45개가 구축되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와 같은 시(市)단위 교육지원청에서 15개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 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도(道)단위 교육지원청에서 30개가 운영되고 있다. 각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2-1〉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 수 및 교육지원청명

순	시도명	교육복지 안전망 수	교육지원청명	순	시도명	교육복지 안전망 수	교육지원청명
1	서울	4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7	경기	5개	광명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	부산	1개	북부교육지원청	8	충북	7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3	인천	5개	강화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9	충남	6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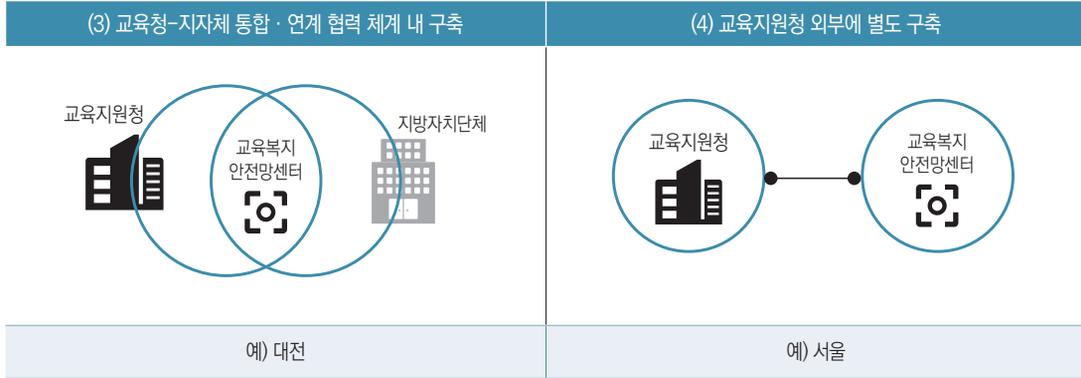


순	시도명	교육복지 안전망 수	교육지원청명	순	시도명	교육복지 안전망 수	교육지원청명
4	대전	1개	동구청	10	전남	3개	목포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
5	울산	2개	강남교육지원청	11	경북	4개	경산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안동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6	세종	2개	남부학교지원센터 북부학교지원센터	12	경남	3개	거창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13	제주	2개	서귀포교육지원청 제주교육지원청
시(15개)				도(30개)			

각 교육지원청의 사업 운영 전략에 따라 교육복지안전망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도 다양했다. 구성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1) 기존 교육지원청 내의 조직을 활용하여 교육복지안전망을 운영하는 형태, (2)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별도로 구축한 형태, (3) 교육청과 지자체 통합·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그 안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배치한 형태, 그리고 (4) 교육지원청 외부에 별도의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구축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림 7-2-1]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유형





마. 향후 발전방향

교육 취약 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꾸준히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복지서비스 역할을 강화하여 2021년도부터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안전망 구축은 (1) 기존사업과의 통합 및 연계적 접근, (2)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강화, (3) 사례관리 강화 등 크게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상대적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안전망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교육복지안전망은 내년 2022년에는 올해 45개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10개가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교육복지안전망이 올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규범과 제도가 하나씩 점검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방과후학교

가. 방과후학교 개요

1) 개념 및 추진 근거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21).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을 근거로 수요자 선택 중심, 수익자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의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설·운영되며, 학생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형태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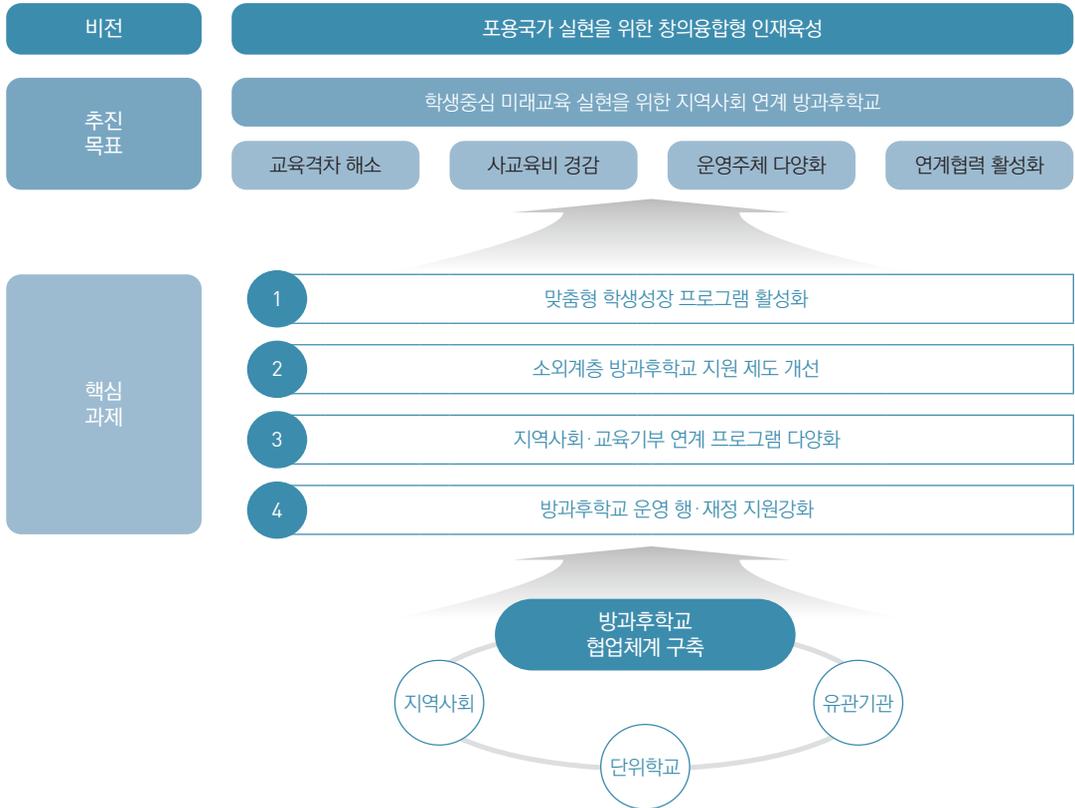
2) 비전 및 목표

2019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 이후 방과후학교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는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소재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교과외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 흡수 노력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를 통한 운영주체의 다양화 및 연계협력 활성화를 세부 추진 목표로 두었다.

방과후학교는 특히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생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및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방과후학교 운영 행·재정 지원 강화를 주요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추진하고 있다.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그림 7-2-2] 방과후학교 비전·목표·전략



자료 :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3)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방과후학교 정책의 주요 추진 주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이며, 행정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도 참여한다.

각 운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확대되었는데,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 단위학교는 학부모 및 학생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주요 주체이다.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부장교사 또는 담당교사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단위학교는 학교운영비(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예산) 또는 수용비 범위 내에서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와 보조 인력을 계약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나. 방과후학교 정책 변천

방과후학교 정책의 전신은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특기·적성교육’이며, 1996년 2월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명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였다. 1998년 10월 ‘교육비전 2002’에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의 탈피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계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1999년 2월 방과후 교육활동의 명칭을 ‘특기·적성 교육 활동’으로 변경하여 입시 중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연차적 폐지를 목표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고,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2004년 공교육의 사교육 흡수, 경쟁력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활용,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등 방과후 학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기적성, 보충 수업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의 명칭을 ‘방과후 학교’로 명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학교에서 방과 후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 ‘대학생 멘토링’ 지원,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 등의 방과후학교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 전국 확산을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2008년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차원에서 2009년 제1회 ‘방과후학교 대상’을 개최하였다. 2011년 발표된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에는 대학의 사회적 기업 설립과 방과후학교 우선위탁 장려 등을 통한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다. 이어 2016년 5월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초등 돌봄교실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법과 영역 확대를 통하여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11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의 핵심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표 7-2-2>와 같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7-2-2〉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핵심과제	세부추진과제
1. 맞춤형 학생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1. 학교급 및 학생발달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설 유도 2.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구축·지원 3.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
2.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제도 개선	1.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2. 차별화된 방과후학교 소외계층 지원 강화 3. 소외지역 중심 초·중·고 단계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확대
3.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1.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2.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 간 연계 시스템 강화 3. 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4. 방과후학교 운영 행·재정 지원 강화	1.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 강화 2. 교직원의 업무부담 감소 및 업무 편의성 제고 3.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4.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자료 : 교육부(2019).

다.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연간 60만 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수강권을 지급받는 학생 수와 연간 지원액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액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으나 60만 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금액	127,116	141,021	176,581	289,188	340,745	371,960	173,790	346,116	323,876	336,968	157,437	163,412
지원학생 수	353,445	392,070	482,070	602,480	567,907	622,933	362,062	721,077	698,761	624,015	601,652	591,230
연간지원액	30	36	36	48	60	60	60	60	60	60	60	60

자료 :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각년도.

2)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도시보다 많이 지원하는 등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수강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7-2-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금액	382	421	515	657	973	975	782	923	876	915	742	789	873
지원학급 수	14,605	16,210	17,162	46,948	46,323	46,401	46,508	46,660	47,513	46,952	47,377	47,833	48,120

자료 :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각 년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413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가. 농산어촌 지역 교육환경적 특성

1)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전국적으로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 역시 큰 폭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읍지역의 경우 2005년 67만 명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55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면지역의 경우 2000년 57만 명을 기록한 이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32만 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도서벽지 지역은 가장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서 학생 수가 2000년 9.4만 명에서 2019년 3.4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읍지역은 전국 수준보다 감소 비율이 낮은 수준인 반면에 면지역과 도서벽지에서의 현저한 학생 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읍지역에서의 학생 수 감소 완화추세에 힘입어 전국 학생 수에서 농산어촌 지역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미세하나마 조금 높아졌다.

〈표 7-2-5〉 2000년 이후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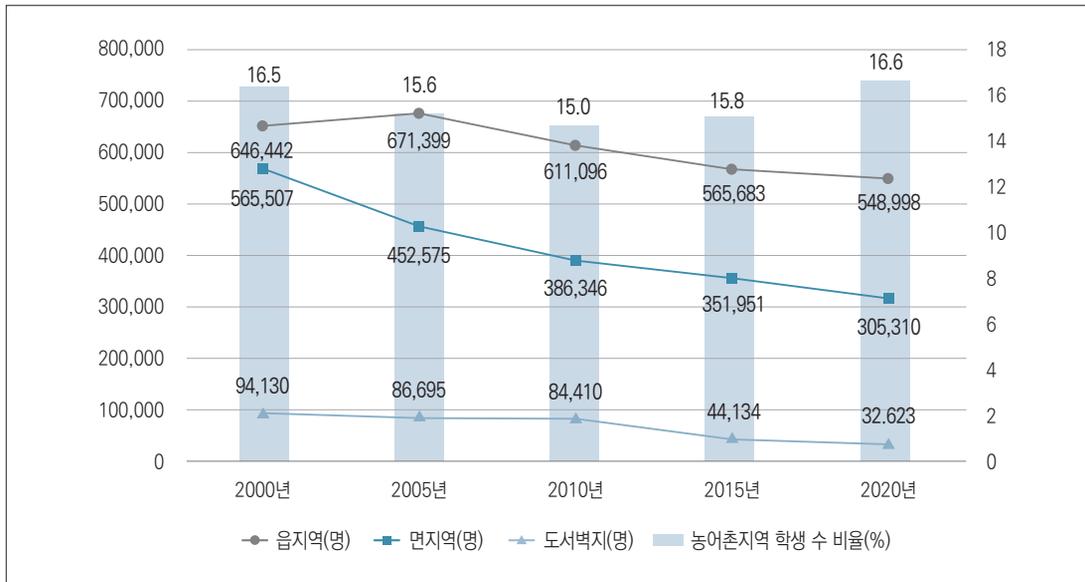
행정구역별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A)	7,931,600 (18,632)	7,782,67 (10,066)	7,227,693 (5,535)	6,085,508 (3,319)	5,344,42 (2,453)	
농 산 어 촌	계(B)	1,306,079 (17,662)	1,210,669 (9,546)	1,081,852 (4,958)	961,768 (3,013)	886,93 (2,228)
	읍지역	646,442 (1,173)	671,399(729)	611,096 (359)	565,683 (310)	548,998 (269)
	면지역	565,507 (7,118)	452,575 (4,113)	386,346 (1,959)	351,951 (1,082)	305,310 (851)
	도서벽지	94,130 (9,371)	86,695 (4,704)	84,410 (2,640)	44,134 (1,621)	32,623 (1,108)
구성비(B/A)	16.5	15.6	15.0	15.8	16.6	

주 : 폐교 및 휴교는 현황에 포함하지 않음. () 안의 수치는 분교 현황이며, 본교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공시자료 활용.

임연기(2021). 딜레마와 교육정책: 한국 농촌학교의 딜레마 상황과 정책대응. 서울: 학지사. 113면.

[그림 7-2-3] 농어촌 지역 학생 수 변화(본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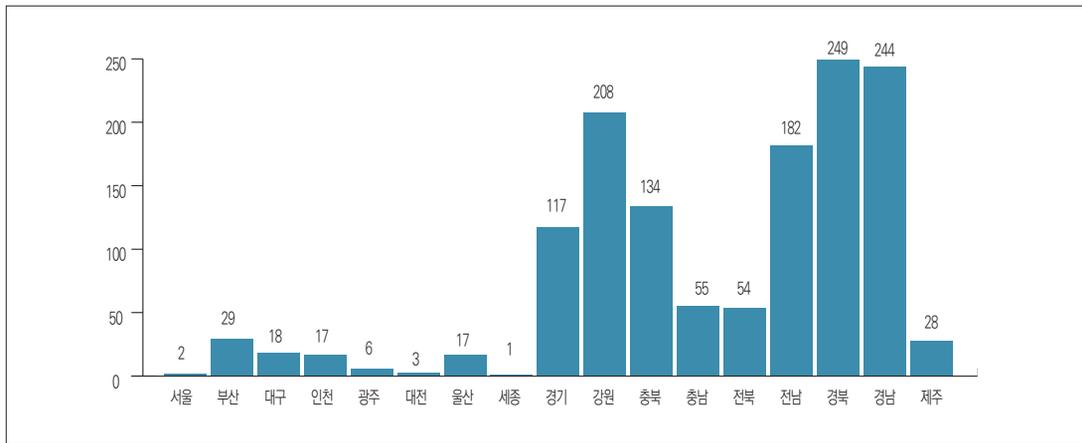


자료 : 임연기(2021). 딜레마와 교육정책: 한국 농촌학교의 딜레마 상황과 정책대응. 서울: 학지사. 113면.

2) 시·도별 폐교학교 현황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학교의 폐교로 이어져 2021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한해 전국적으로 1,364교가 폐교 되었으며 그 중 초등학교 1,183교, 중학교 143교, 고등학교 38교등 주로 초등학교의 폐교가 86.7%로 나타나 향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도시 지역은 폐교학교가 소수인데 반하여 농어촌 인구가 대부분인 지역의 폐교학교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의 폐교학교 수가 많은 점은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7-2-4] 시·도별 폐교학교 수(2020년도)



주 : 2021년 4월 1일 기준 자료.
 자료 : 학교알리미 시스템(2021).

3) 코로나19 사태와 학생등교 중단조치

2020학년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불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모든 유·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추세 속에서 결국 초등학교는 4월 16일부터, 중·고등학교는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통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도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4월 7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4월 25일에는 등교 및

학교를 포함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교직원 및 학교, 학원등 교육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완화 추이에 따라 5월 13일부터 고3부터 순차적인 등교를 시작하였으나 이태원 감염확산으로 등교수업을 1주일 연기하고,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따른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따라서 방학 전까지 등교수업을 추진하였으나 등교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결국 2학기를 맞이하였으나 학생들의 전면 등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 등교 상태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21학년도에도 지속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들쭉날쭉하는 상황속에 학교와 지역별로 부분 등교가 시행되다가 2021. 11. 22.일을 기해 전면 등교가 시행되었다.

〈표 7-2-6〉 학교별 등교수업 시기

단 계	일정	등교대상			비고
		고등학생	중학생	유 초등학생	
우선단계	5.20(수)	고3			* 당초계획 * 이태원감염 확산으로 1주일 연기
1단계	5.27(수)	고2	중3	초1, 2 + 유치원	
2단계	6.3(수)	고1	중2	초3 ~ 4	
3단계	6.8(월)		중1	초5 ~ 6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속출했고, 특히 학생들이 수업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체능 교육, 각종 실험·실습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또한, 현장체험, 소풍, 수학여행, 축제 등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각종 교육활동 등을 중단하거나 원격활동으로 대체 하는 상황을 빚었다.

다행인 점은 코로나 환자 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 속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은 상대적으로 적게나타났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2020. 10. 22. 0시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환자수는 25,543명 이고 그중 학생은 645명으로 2.53%, 교직원은 133명으로 0.52%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일반인이나 학생 모두 감염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월 22일 현재 전체 확진자 25,543명중 수도권이 11,748명(45.99%)이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가 8,658명(33.9%)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환자를 합치면 감염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감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은 인구 밀집화 현상과 협소한 공간적 제약 등이 있는 반면에 농산어촌 지역은 소규모 학생, 넓은 자연 공간 및 학습 공간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농산어촌 학교의 장점이기도 하다. 학생등교를 시작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등교 중단 조치가 반복적으로 취해졌으나 농산어촌 학교는 소인수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등교가 이루어져 왔고, 제한적이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10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1단계 조치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기존의 지침대로 전교생의 2/3 이내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며,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면 등교가능 방침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교총,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1학년의 등교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초등학교 1학년은 1주에 3일 이상 등교를 하도록 권고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오후반 혹은 오전/오후 학년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적극 권장했다.

나. 농산어촌 교육 지원

농산어촌 교육 재정지원 사업으로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과 도서벽지 화상교실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³⁾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제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1)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그동안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학교를 뒤따라가는 것보다 도시학교에서 찾기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으로는 청정 자연환경과의 근접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식품 생산의 기지이자, 면면히 지켜오고 있는 전통 문화 등 도시와 대비되는 농산어촌 교육자원의 특색이 있다. 또한, 도시 학교에 비해 학교에 대한 신뢰감과 의존성이 높고, 학력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 학교 구성원 간 긴밀한 인간관계가 상존하며,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가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농산어촌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점, 학생들의 학교활동 참여 및 상호 협동적 학습 기회가 많다는 점, 학교 구성원 간, 특히 교직원과 학생 간

3) 상세한 내용은 임연기 외(2020). 2019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사례. 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참조.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학생 수 대비 학습 환경 및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 학교운영의 탈 관료화, 인간화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농산어촌 학교는 교육력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취약점이 있다. 농산어촌은 도시와 비교하여 사회적 고립성, 문화적 지체성, 경제적 빈곤성, 공공서비스 질의 낙후성 등 교육환경으로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우수학생의 도시로의 이탈 지속화, 결손 가정 학생의 증가와 학습집단의 이질화, 교사들의 근무의욕 저하와 자녀 교육 문제로 학교소재 지역 거주 기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학습자의 등 상호 발전을 자극하는 심리적 학습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인간관계의 고정화 등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도모에 취약하다는 점, 다양한 교과 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특별 교실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점,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교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교사 의존성이 과다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과 농산어촌의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 특성화, 둘째, 농산어촌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 협력 활동 강화,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규모화 위협요인에 공동으로 대응 등이다.

아울러 그간의 단위학교 중심 농산어촌 학교 특색사업은 학교별로 성과 차원에서 편차가 크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지역사회 연계,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등 사업의 확산성 차원에서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위학교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농산어촌 여러 소규모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어 교육지원청형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 단위학교 사업으로 출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단위학교형과 교육지원청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각 유형별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표 7-2-7〉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단위학교형	교육지원청형
단위학교 수준에서 농촌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관내 작은 학교 간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

2018년도에는 읍·면·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281교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단위 학교형을 83개로 축소하고 교육지원청 사업을 추가하여 11개 교육지원청을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교육지원청형 9개, 단위학교형 65교로 축소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9개 교육지원청, 54개교 단위학교형 사업을 지원하여 매년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2-8〉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지원 현황

구분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단위 학교	2018년	2	4	4	1	44	30	18	32	24	42	36	38	6	281
	2019년	2	4	4	2	10	0	12	5	15	6	10	10	3	83
	2020년	0	6	3	0	0	0	16	9	0	5	6	12	8	65
	2021년	0	0	2	0	0	0	8	22	0	5	3	10	4	54
교육 지원청	2019년	0	1	0	0	1	0	1	1	2	1	1	1	2	11
	2020년	0	1	0	0	1	0	1	1	2	1	1	1	0	9
	2021년	0	1	0	0	1	0	1	1	2	1	1	1	0	9

자료 : 교육부(2021).

2) 도서벽지 화상교실 구축·운영 사업(2020년 사업완료)

본 사업의 목적은 첫째, 학생 수 급감으로 복식학급, 상치교사 운영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화상교실 구축 및 지원, 둘째, 복식학급 및 상치교사 문제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사의 업무경감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습능력 향상 도모, 셋째, 도서·벽지 극소규모 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운영 모델 창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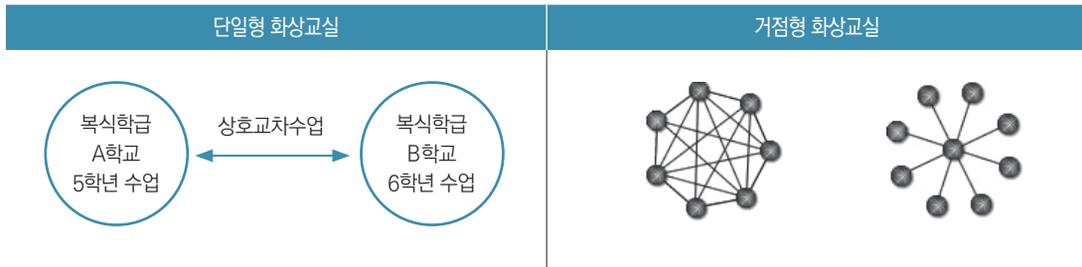
화상교실 운영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일형(1 : 1) 화상교실은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2개의 학교가 각기 다른 학년의 수업을 교차하여 상호 공유 운영할 수 있도록 화상교실을 구축한다.

둘째, 복수형(N : N) 화상교실은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3~5개 학교가 복식학급 수업을 교차 공유할 수 있도록 화상교실을 구축한다. 다수의 도서벽지 소규모학교를 화상교실로 연계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거점형(1 : N) 화상교실은 중심학교 수업을 2~4개 학교가 공유한다. 중점학교(본교)에서 운영하는 수업을 도서·벽지학교(분교)가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한다.

[그림 7-2-5] 도서벽지 화상교실 운영 유형(단일형, 거점형)



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인천, 전남, 경북 등 3개 시·도교육청 관내 도서·벽지학교를 지원하였다 (16+1학교⁴⁾). 2019년 화상교실 운영학교는 아래와 같다(인천: 4교, 전남: 6교, 경북: 6교). 2020년에는 안좌초등학교를 대신하여 청계남초, 해남고가 가거도 초등학교 연결학교로 참여하였다.

<표 7-2-9> 2019년 화상교실 운영학교 현황

지역	학교 수	학교명	연결 학교
인천	4	인천 남구 용현남초등학교	인천 응진 용현남초(자월분교)
		인천 중구 송도중학교	인천 응진 연평중학교
전남	7	전남 진도 의신초등학교	전남 진도 의신초(접도분교, 모도분교)
		전남 신안 가거도초등학교	2019: 안좌초등학교/2020: 청계남초, 해남고
		전남 신안 안좌중학교	전남 고흥 대서중학교
경북	6	경북 칠곡 북삼초등학교	북삼초 오평분교
		경북 울진 삼근초등학교	삼근초 옥방분교
		경북 봉화 봉성초등학교	경부 예천 감천초등학교

2019년 화상교실 구축 이후 2학기에 정규교과에서 8개 교과목, 17개 학교, 21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11개 비교과유형, 14개 비교과활동을 운영하였다. 참여교사들로부터 화상교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총 17교 가운데 16교는 화상교실 구축 지원 대상 학교이며, 1교(전남 안좌초등학교)는 기존에 구축된 화상교실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학교임.

〈표 7-2-10〉 화상교실의 교육적 효과 조사 결과

교육적 효과	세부 내용	빈도(총 17)
전문교사로 인한 수업 만족도 제고	SW 전문교사에 의한 컴퓨터수업 가능(지역격차 해소 기여)	12
	원어민교사에 의한 영어수업으로 영어회화능력 신장 및 원어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전문교사 수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향상	
	예체능 전문 수업 가능	
의사소통·협업역량 향상	발표 및 토의토론수업으로 인한 의사소통 역량 향상	10
	협력학습 및 프로젝트로 인한 협업경험	
체험학습 가능	과학관, 미술관 등 화상체험학습으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	4
학습내용 심화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내용이해 심화	2
	토의토론수업으로 인한 내용이해 심화	
심리상담 가능	개별/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기여	1
동기유발	화상교실 수업이 주는 흥미 유발 효과	1
기타	교사의 수업운영 부담 해소에 기여	1

다. 농산어촌 학교 코로나19 사태 대응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농산어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방역이나 학생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도시학생들이 학원 등에서 학력을 키우는 동안 농어촌 학생들은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여가는 원격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당면 과제였으나 긴급하게 추진한 원격수업은 시스템 불안정, PC 부족, 콘텐츠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약이 많았다. 다음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 실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교실에 와이파이드 없는데...원격수업 준비에 학교들 '진땀'
 초등학교 교실엔 웹캠 없는 데스크톱뿐...학교 간 디지털 격차 '확연'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학교 수업 대안으로 나온 '원격수업(온라인수업)' 준비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매 교시 교사들이 각자 교실에 들어가 온라인에 접속해 수업해야 하는데, 교실 내 무선망이 없는 학교가 수도룩하기 때문이다. 학교 간 디지털 격차(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간 발생하는 지식·소득 등의 격차)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20. 3. 29.〉에서

특히 초등 저학년일수록 교육 콘텐츠 부족과 장기간 긴급 돌봄에 따른 문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문제점 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PC와 패드 등을 긴급히 보급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라인 개학 1주일 만에 전국 어디서나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별, 학교 급별 특색 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역설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배움이 이어지고, 배움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게 펼쳐졌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학생·학부모와의 상시 소통채널 운영,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 구축,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원 등,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격 수업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설정하고, 원격수업 교육과정과 수업운영 방식을 결정해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교원 대상 학습관리시스템 활용법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예비비를 지원해 원격 수업용 도구와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다. 원격 수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통신료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며 통신료 역시 무료로 지원하였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수행중심수업, 기타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수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 부분은 등교수업 이후에 교사가 더 촘촘히 살펴봐야 하고, 학습클리닉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학습결손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 관련 질의응답 커뮤니티’를 개설,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원격 수업 등 다양한 질문 사항에 실시간으로 직접 응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장애의 특성이나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문수업’을 진행하였다. 충남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정보 소외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원격수업 진행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교와 학급 담임교사가 준비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및 과제 부여, 학습지와 학습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서는 5월 20일부터 학교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어 방역 등 감염병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학교들이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등교개학을 진행하여 원격수업으로 위축되었던 여러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⁵⁾

5) 공주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2020. 5.)가 개최한 2020 제1차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포럼 자료집 「코로나시대 농어촌 교육지원청의 역할」 참조.

4. 다문화학생 교육

가. 다문화학생 현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주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 증가하면서 학교에도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다문화학생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다문화학생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60,056명이다. 다문화가정의 6세 미만 유아 수를 고려하면 향후 초·중·고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학생 수와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7-2-11〉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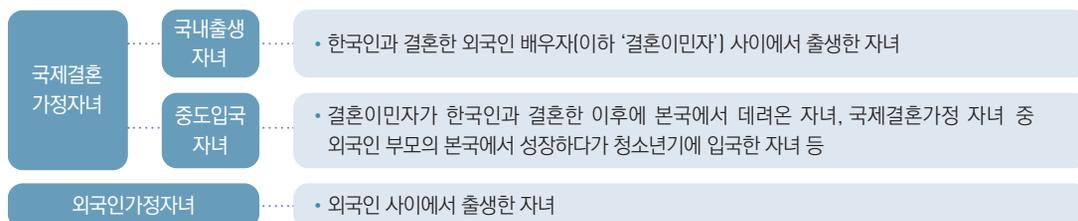
(단위 : 명, %)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다문화학생 수(A)	109,387	122,212	137,225	147,378	160,056
	전체 학생 수(B)	5,733,132	5,592,792	5,461,614	5,355,483	5,332,044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1.91	2.19	2.51	2.75	3.00

주 : 매년 4월 1일 기준.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초기 다문화교육 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중도입국 자녀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 7-2-6]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이 분류에 따라 2021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출생자녀가 약 76.3%, 중도입국자녀가 약 5.9%, 외국인가정자녀가 약 17.8% 정도이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다문화학생의 약 69.6%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약 21.3%가 중학교에, 약 9.1%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초등학생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중·고등학생 수가 전년대비 9,018명 증가하는 등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7-2-12〉 다문화학생 유형별·학교급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85,101	19,556	9,117	113,774	86,410	25,429	10,254	122,093
중도입국	5,088	2,488	1,575	9,151	4,969	2,801	1,657	9,427
외국인가정	17,581	4,791	2,081	24,453	20,051	5,817	2,668	28,536
계	107,770	26,835	12,773	147,378	111,430	34,047	14,579	160,056
비율	73.12	18.21	8.67	100.00	69.62	21.27	9.11	100.00

주: 매년 4월 1일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 추진 경과

학교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문화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내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적응지원을 위해 일반 학교 내 특별학급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도입(2012. 7.)함으로써 한국어를 한국어학급의 정규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보완 필요에 따라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내용 체계 및 문화교육 내용을 보완한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17. 7월 고시, ’19. 3월 적용)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증명만으로도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2008년, 2010년). 이에 더해 외국 학교를 다니다가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력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2013년). 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절차를 교육장 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였다.(’20. 8. 15. 시행)

이 외에도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2021년 주요 정책 내용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교육부는 유치원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언어 및 기초학습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유아에게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다문화 유치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업 개편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유아와 다문화 유아를 통합하여 교육하되, 필요할 경우 다문화 유아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추가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문화 유아 추가지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는 2015년 5개 시·도 30개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전국 162개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OO 유치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기 초에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아이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치원에서 도움을 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 (OO 유치원 교사) 다문화 유치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 교육을 실시하니, 언어 발달도 좋아지고 기본 생활습관과 사회성도 좋아졌어요.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4,0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진행되는데, 신청 다문화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순위로 매칭한다. 2017년부터는 외국어에 능통한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의 부(모)국 언어로 직접 멘토링을 실시하는 ‘모국어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이중언어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일본어·중국어·필리핀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태국어·캄보디아어·인도네시아어). 이와 함께 매년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는 제9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입상 다문화학생은 2018년 6월에 체결된 교육부-LG연암문화재단-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에 따라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체 학급이 함께 다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원격영상으로 진로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울림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2)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학생도 「유엔아동권리협약」(우리나라 1991년 비준)에 따라 의무교육기회를 보장받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거주지 증명만으로도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한국 교육제도, 입학절차, 교육기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책자를 14개 언어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중도입국·난민 자녀에게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를 연2회 실시하고 있고, 2020년에는 보다 많은 학부모에게 교육제도 안내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문-외국어 양면 1매로 구성된 리플릿(13개 언어)을 추가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2021년에는 한국 교육제도, 입학절차 등의 학교 입학 안내 영상을 다국어(13개 언어)로 제작·보급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안내 형태를 다양화하였다.

일반 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정규 학교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한국어 학급은 2020년에 245교(총 372학급)가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274교(총 408학급)로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중도입국자녀 등이 한국어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교육청(또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학교에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거나, 인근 한국어학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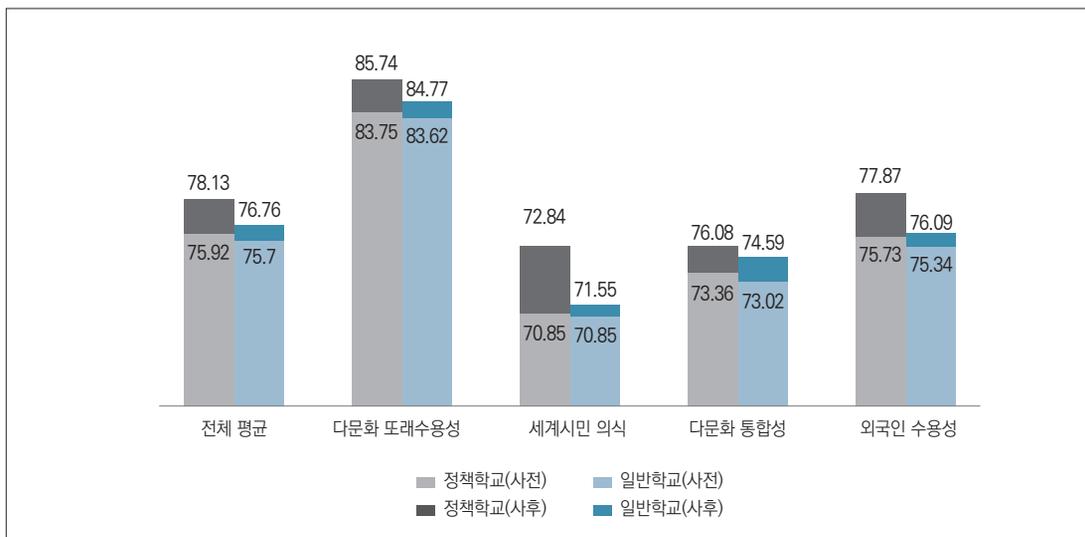
있는 한국어 강사가 순회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전체 학교 구성원이 다문화 교육에 참여하여 학교현장의 다문화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이해, 차별해소, 반(反)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기존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중점학교, 예비 학교로 운영되던 사업을 통합하여 개편한 것이다. 2018년부터는 각 학교에 우수한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수업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일반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다문화 수용성 각 영역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한 다문화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각 시·도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교육정책 학교는 2021년 713개교, 40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7-2-7]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일반학교 다문화 수용성 변화 비교

(단위: 점)



자료 : 교육부(2020).

다문화교육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가 의무화되었다. 교육부는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별 교육연수원을 통해 기초 연수(15시간) 3개 과정, 심화연수(30시간) 1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들이 3년 동안 15시간 이상 다문화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상담, 위기학생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상담의 이해’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현장에서 수업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지도하거나 다문화학생을 지원한 교사,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09년부터 전국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여 우수한 교육 자료를 현장에 안내하고 있으며, 2018년 제10회 공모전부터는 ‘다문화 상담사례’ 부문을 신설하여 다문화학생 정서·심리·진로상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개편하였다.

4)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앙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교육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사업 성과의 평가, 시·도 다문화교육 지원, 관계자 워크숍 개최, 자료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2015년부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각 시·도 단위에서 해당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다양한 다문화교육 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결과를 관내 학교에 공유 및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2015년 5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다.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가. 탈북학생 개념 및 현황

탈북학생이란 북한 또는 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이탈 주민⁶⁾의 자녀이다. 최근에는 북한 외에 중국 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착 지원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들이 부모의 탈북과정 중 외국에서 태어나 학습 결손이 크므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탈북학생 범주에 포함하여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정착지원 및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대상은 아니다.

〈표 7-2-13〉 탈북학생 출생지별 지원 비교

구분	북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학특례입학	가능(정원 외)	가능(정원 내)	해당 없음
학비지원	가능	일부 지원 가능	해당 없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가능	가능	교육청마다 다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탈북학생 멘토링 매뉴얼(10쪽).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보면 1948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누적 집계로 1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 말 2만 명에 이르렀고, 2021년 9월에는 잠정 통계치로 33,788명에 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북학생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 입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탈북학생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6)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온 북한주민을 의미함. 법령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7-2-1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여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합계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여성비율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합계
남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20	9,455
여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16	24,333
합계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36	33,788
여성비율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44.4	72.0

자료 : 통일부(2021). 북한이탈주민통계.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4월 조사결과, 총 2,546명의 탈북청소년이 학교 안팎의 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2,287명(전체의 89.8%)은 정규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학교(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으며, 259명(전체의 10.2%)의 청소년이 정규학교가 아닌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 중이다. 이 밖에 정규학교나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급별 재학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이 654명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재학생은 740명(32.4%), 고등학교 재학생은 739명(32.3%), 기타학교 재학생은 154명(6.7%)으로 집계되었다.

〈표 7-2-15〉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333	321	385	355	359	380	72	82	259	2,546
	654		740		739		154			
	2,287									

주 : 1)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함.

2) 대안교육시설(전일제) 재학생 현황은 2021. 8. 기준임(통일부 제공).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재학 중인 학생이 31.2%로 가장 많고, 서울이 21%, 인천 9.1%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61.3% 가량이 수도권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표 7-2-16〉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

(단위 : 개교, 명, %)

구분	재학 학교 수	학생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서울	200	137	134	154	56	481	21%
부산	57	32	29	30	4	95	4.2%
대구	32	23	9	15	0	47	2.1%
인천	78	63	62	80	2	207	9.1%
광주	42	14	22	19	0	55	2.4%
대전	38	22	17	11	1	51	2.2%
울산	25	13	20	7	0	40	1.8%
세종	7	3	3	2	0	8	0.3%
경기	319	178	247	231	58	714	31.2%
강원	40	17	18	23	0	58	2.5%
충북	61	39	33	31	3	106	4.6%
충남	86	38	45	44	26	153	6.7%
전북	31	9	13	13	0	35	1.5%
전남	30	9	15	13	1	38	1.7%
경북	66	22	31	25	2	80	3.5%
경남	72	27	34	32	1	94	4.1%
제주	19	8	8	9	0	25	1.1%
계	1,203	654	740	739	154	2,287	100%

주 : 2021. 4월 기준 재학 현황.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탈북학생 중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제3국 배경 학생의 규모는 2011년에는 36.2%에 불과했지만, 2021년은 65.5%로 증가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탈북학생의 순차적인 상급학교 진학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될 제3국 출생 학생 비율도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2-17〉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출생지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북한출생	127	19.4	238	32.2	355	48	69	44.8	789	34.5
중국 등 제3국 출생	527	80.6	502	67.8	384	52	85	55.2	1,498	65.5
계	654	100.0	740	100.0	739	100.0	154	100.0	2,287	10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표 7-2-18〉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2005. 4.	247(58.7)	131(31.1)	43(10.2)	-	421
2006. 4.	248(52.3)	166(35.0)	60(12.7)	-	474
2007. 4.	341(49.6)	232(33.8)	114(16.6)	-	687
2008. 4.	495(51.2)	288(29.8)	183(19.0)	-	966
2009. 4.	562(49.2)	305(26.7)	276(24.1)	-	1,143
2010. 4.	773(54.5)	297(21.0)	347(24.5)	-	1,417
2011. 4.	1,020(60.7)	288(17.1)	373(22.2)	-	1,681
2012. 4.	1,204(60.4)	351(17.6)	437(21.9)	-	1,992
2013. 4.	1,159(57.3)	478(23.6)	385(19.0)	-	2,022
2014. 4.	1,128(51.7)	684(31.3)	371(17.0)	-	2,183
2015. 4.	1,224(49.5)	824(33.3)	427(17.2)	-	2,475
2016. 4.	1,143(45.4)	773(30.7)	601(23.9)	-	2,517
2017. 4.	1,027(40.5)	726(28.6)	785(30.9)	-	2,538
2018. 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2019. 4.	877(34.6)	738(29.2)	752(29.7)	164(6.5)	2,531
2020. 4.	741(30.4)	782(32.1)	738(30.3)	176(7.2)	2,437
2021. 4.	654(28.6)	740(32.4)	739(32.3)	154(6.7)	2,28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나. 탈북학생 배경·특성 이해

탈북학생들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은둔 생활을 하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중국의 공안에 잡히거나 심지어는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한 생활을 겪은 경우 남한 입국 후에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탈북 학생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북한에 남겨두고 온 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다가 재결합한 경우 부모에게 친근함보다 불편함을 느끼며, 간혹 부모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기도 한다.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이 미흡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탈북학생마다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 탈북과정에서의 교육 공백이나 심리적 상처, 복잡한 가정환경 등에 따라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양하며 따라서 학습 수준이나 적응 양상도 천차만별이다. 이는 모든 탈북학생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탈북학생별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탈북학생의 특성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남북한 학교 교육의 차이, 탈북 학생임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등에 의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다. 탈북학생 교육의 목적 및 지원 체계

탈북학생 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성장시키고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탈북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온 입국 초기 단계부터 지역 사회 정착에 이르는 정착기 단계까지를 포괄하여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입국 초기 교육’, ‘전환기 교육’, ‘정착기 교육’ 순으로 교육경로를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교육지원을 한다. 정규 학교의 교육을 기본 토대로 하는 가운데 대안교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및 통일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금년에 정부합동 제3차(2021~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 계획(‘21. 5.)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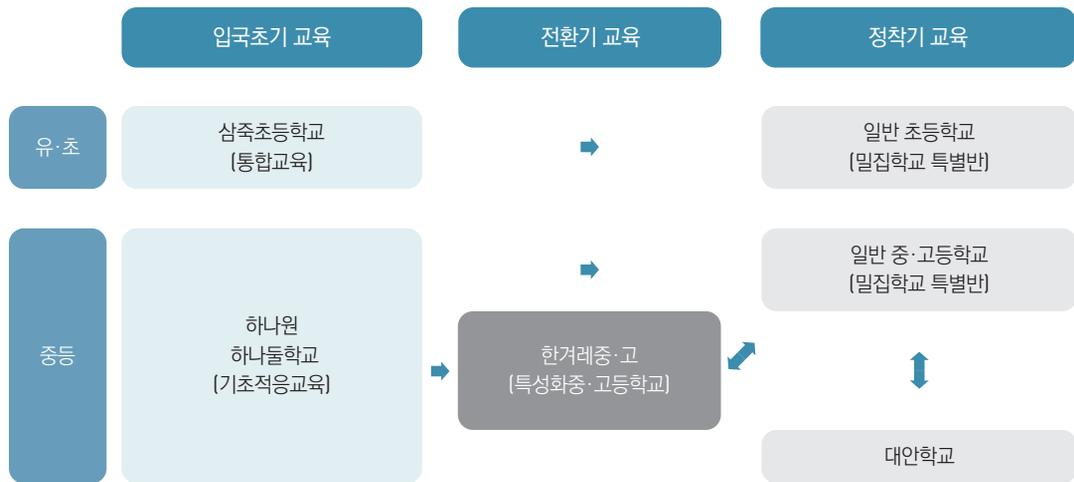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지역 단위의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학교 내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밖’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2-8] 탈북학생 단계별 교육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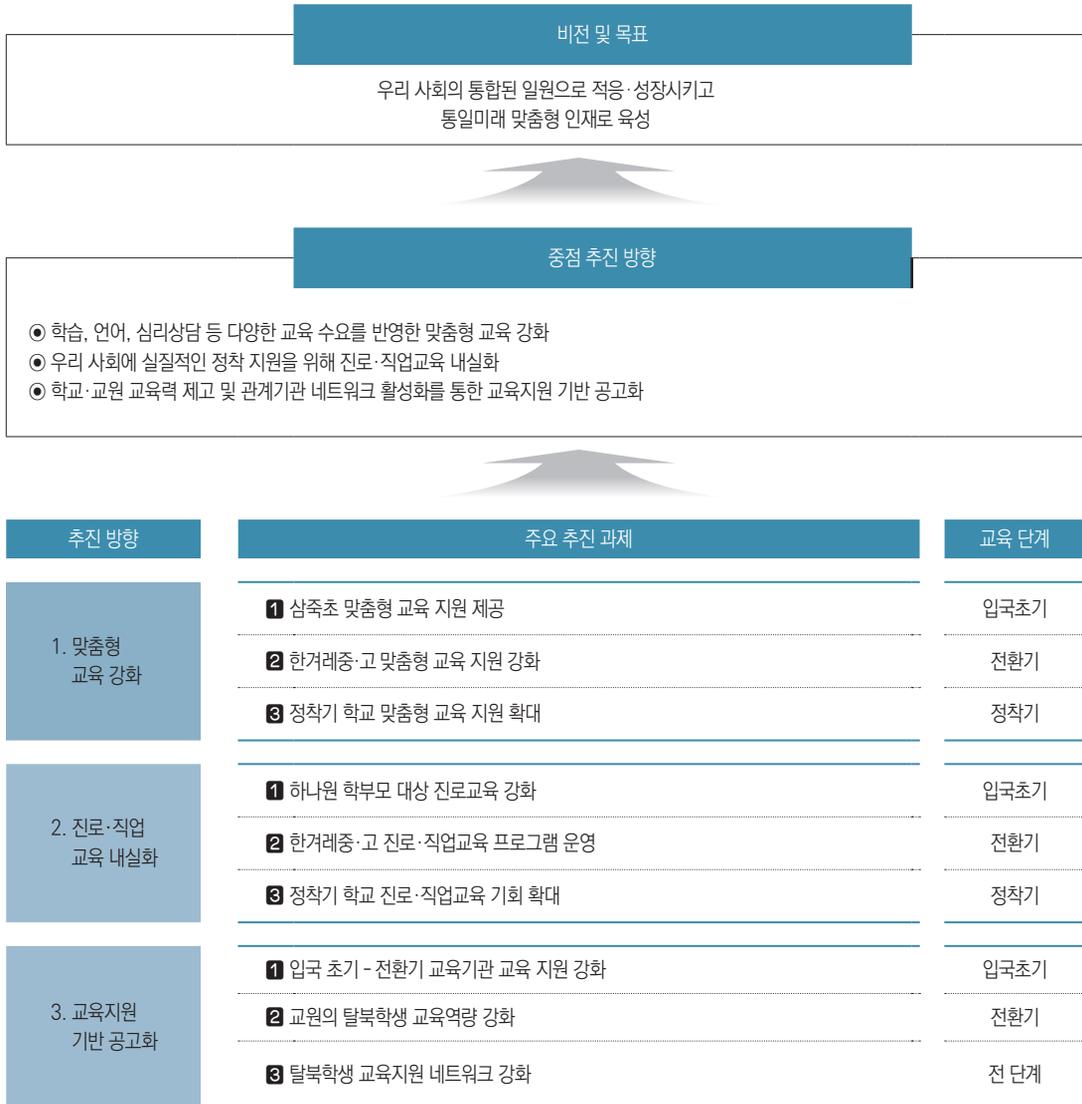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2021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① 맞춤형 교육 강화, ②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③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의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원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7-2-9]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1)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영역은 하나원(하나둘학교)에서 시작하여 정규학교에 이르는 교육 경로별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첫째, 삼죽초 맞춤형 교육 지원 제공(입국 초기), 둘째, 한겨레중·고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전환기), 셋째,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사업을 실시하였다.

각 사업별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삼죽초 맞춤형 교육 사업은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생활하며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탈북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특별학급을 운영하여 학업과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즉, 제3국에서의 은신, 부모와의 격리, 기타 탈북과정의 경험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탈북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삼죽초 재학 탈북학생의 학습, 체험활동 등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죽초등학교의 탈북학생들은 오전에는 일반학급에서 한국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특별학급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이와 함께 삼죽초에서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환기 맞춤형 교육’ 사업은 한겨레중·고와 정착기 일반 학교간의 협력사업 실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이중언어 강사 및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협력학교 운영 사업에서는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일반 중·고등학교가 참여하는 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의 정착기 정규학교의 통합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중국배경 탈북학생의 한겨레중·고등학교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제3국 배경 학생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되었고, 입국초기 교육 기관에서의 심리상담 결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가 배치되었다.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사업에서는 정규학교를 중심으로 탈북학생이 정착지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선 정착기 초기에 탈북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탈북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사(담임, 교과)의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인 ‘탈북학생 맞춤형 1:1 멘토링’과 2년 이상 탈북학생의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지속하는 ‘성장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습,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이 실시되었다. 또한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는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1:1 결연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다. 즉, 인문, 과학, 수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을 갖춘 탈북학생을 선발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 연극배우, 화가 등)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등 학생의 잠재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탈북학생 밀집지역의 초·중학교에서 탈북학생의 학습 부진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밀집학교 특별반(인천, 경기)’을 운영하였다. 탈북학생 밀집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습, 진로, 상담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토요거점 방과후 학교(서울)’를 운영하였다. 또한 ‘제3국 출생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은 다문화학생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부모의 상호 교류를 통한 가정·학교·사회의 상호이해·협력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남북한 상호이해 교육’ 사업도 실시하였다.

2)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에서는 탈북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둘째,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셋째,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예비교육기관인 하나원 진로교육은 입국초기 하나원 재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남북한 학교제도 비교, 취학, 전학, 편입학 관련 행정 절차, 한국 학교에서 학부모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하나원 퇴소 후 자녀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착기 학교 적응을 지원하였다. 둘째, 한겨레중·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전환기 교육 단계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고교 진학 및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직업 교육과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즉, 중장비, 바리스타, 피부미용 등의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진로설정을 지원하였다. 셋째,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에서는 정착기 단계 학생의 진로·직업 캠프,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먼저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캠프 운영에서는 정책연구학교, 교육연구회, 지역 하나센터 등과 연계하여 탈북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캠프를 실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 대면방식으로 실시되던 행사를 유튜브 등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소통을 기반으로 ‘선배와의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하여 취업 준비 등 경험 공유를 통하여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찾고, 적성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진로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탈북학생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상담 전문가로 꾸려진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단’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학생의 일반학교 적응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서 교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된 통일전담교육사를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5명 이상)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 배치(21, 22명)하여 학생 상담 및 ‘정착기 학교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교사와 학부모 간 상호 이해도 제고 및 소통을 강화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3) 탈북학생 교육 지원 기반 공고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영역에서는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입국초기 - 전환기 교육 기관 교육지원 강화, 둘째, 교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강화, 셋째, 탈북학생 교육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먼저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영역의 첫 번째 사업으로 입국초기 교육 기관인 하나둘학교 재학 학생의 중등학교 취·편입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학력심의를 하나원 퇴소 전에 실시하였다. 또한, 하나원 내 예비학교인 하나둘학교에 중등교사(국어, 수학, 사회, 영어, 역사, 과학, 중국어 등 9명)와 초등교사(1명), 유치원 교사(1명)를 파견(총 11명, '21년)하여 교과 학습 지도 및 진로진학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실질적인 정착기 학교 적응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하나둘학교 파견교사의 직무 전문성 제고와 정착기 학교 연계지도 강화를 위해 정례 연수 및 사례 공유 협의회를 운영. 또한, 한겨레 중·고 협의회 운영으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등 연계·협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교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맞춤형 멘토링 연수와 원격 연수 지원, 탈북학생 밀집학교 워크숍, 우수사례 보급을 추진하였다. 멘토링 담당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연수’를 통해 탈북학생 멘토링 역량 제고를 지원하였고,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제(15차시)’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제공(20.1.~)하여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 연수를 제공하였다. 5인 이상의 탈북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밀집학교로 지정하여 관리자, 담당 교원 대상 워크숍을 통해 탈북학생의 이해 및 관리자·교사 역할의 인식 제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례 공유, 입국초기교육기관 탐방 등 탈북학생 이해 및 지도역량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사례 발굴 및 사례집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셋째, 탈북학생 교육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서는 유관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탈북학생 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자료 개발, 교원연수, 관계기관 협력 및 현장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착근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협의를 추진하였다.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심리·신체적 건강, 가정배경, 학교 부적응 등 긴급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의 종합적인 학생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돋움지원팀'을 구성·운영('21.~)하였다. 사례 접수는 학교, 교육청, 탈북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콜 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하여 적합성 검토를 거친 후 긴급 교육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례마다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학교, 유관기관, 탈북민 네트워크 등)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기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탈북학생의 남한사회 적응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일 후 교육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육부 기회보장과** 044-203-6522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제8부 요약

제8부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의 고용 및 취업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의 고용 및 진로 관련 정책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2020년 기준)은 28.2%로, 코로나19 확산 후 다른 국가보다 감소폭이 적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45.9%)보다 낮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최하위 국가군에 속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등학교 졸업자 중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실업률(2020년 기준)은 10.5%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5%p 낮은 편이지만,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낮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용률은 25.2%이며, 전체 취업자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은 5.0%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20년 11.9%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2020년 15~24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7.2개월이 소요되어 학교-노동시장 이행기간이 다소 짧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처우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장에 근로현장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에서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충청권까지 확대하였다. 2022년도에는 사업 방식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통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전국 시·도로 지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전국 25개 지역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2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위반사례로는 근로계약 미작성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업주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정부는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외에 청소년의 창업지원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프로그램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창업지원사업 규모는 2019년 대비 29.8% 증가한 1조 4,517억 원으로 창업지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8부 청소년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제3장 청소년의 고용·노동정책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생산가능 연령대에 진입한 2010년대 전반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는 주로 고령인구 증대에서 기인하며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 연평균 청소년 생산가능인구는 532만 9천 명으로 2019년보다 21만 4천 명 감소하였다. 2020년의 감소율은 2018년과 같은 수준인 -3.8%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역시 2019년 164만 1천 명에서 14만 1천 명 감소한 150만 1천 명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후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난 변화가 청소년에게서도 발견된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29.6%에서 2020년 28.2%로 크게 하락했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의 추이를 나타낸 <표 8-1-1>에서 보듯이 2020년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대보다 낮지만 2010년대 초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6년까지 30%를 상회하였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부터 30%를 하회하게 되었으며 2009년에 25.1%로 저점을 찍고 회복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했다.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1.4%p 하락하였으므로 격차는 유지되었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2018년에 9.3%p까지 커졌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6.9%p로 줄었다.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가능인구 ¹⁾	6,949	6,164	5,953	6,053	6,113	6,165	6,180	6,163	6,110	5,946	5,717	5,543	5,329
경제활동인구 ¹⁾	2,295	2,074	1,503	1,544	1,617	1,628	1,758	1,841	1,843	1,801	1,672	1,641	1,501
경제활동참가율 ²⁾	33.0	33.7	25.2	25.5	26.5	26.4	28.5	29.9	30.2	30.3	29.3	29.6	28.2
남자	28.5	27.3	20.0	21.0	21.9	22.2	24.4	25.7	25.8	26.1	24.4	26.0	24.6
여자	37.0	39.2	30.1	29.8	30.7	30.3	32.3	33.8	34.3	34.3	33.7	32.9	31.5

주 : 1) 15~24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 15세 이상 청소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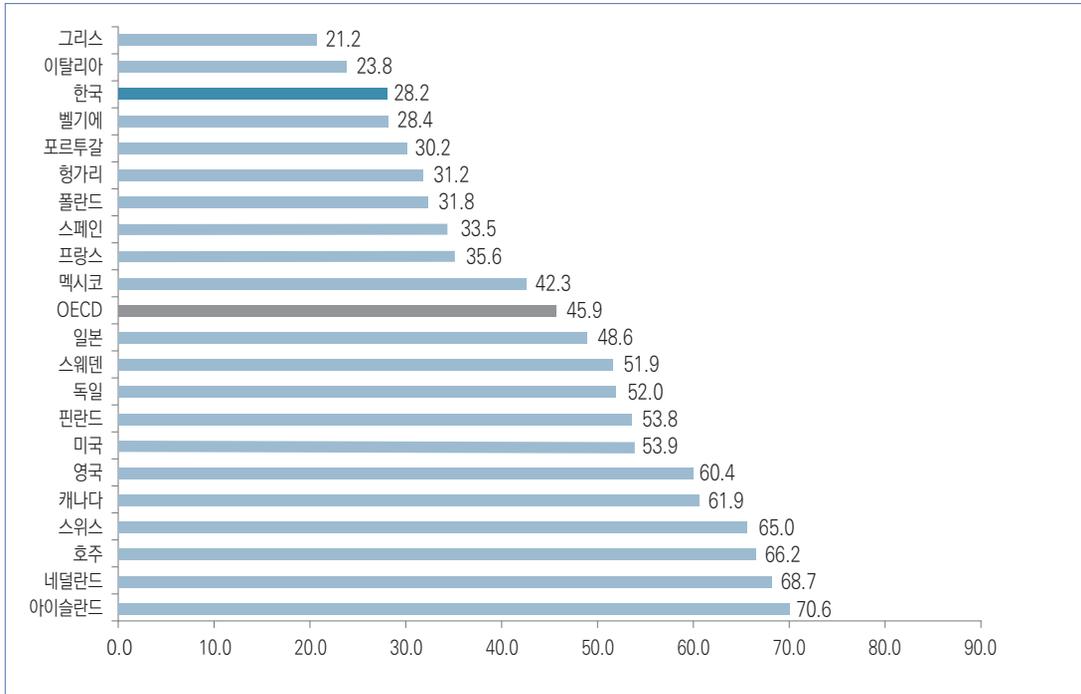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OECD 회원 국가 중 한국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에도 여전히 하위권이다. 2020년에 OECD 평균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2%p 하락하였으며 한국과 차이는 17.8%p로 약간 좁아졌다.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뿐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고, 청소년의 70.6%가 경제활동을 하는 아이슬란드와 68.7%를 기록한 네덜란드는 OECD 회원 국가 중 순위가 가장 높다. 이와 같이 낮은 한국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 전후 수준의 높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낮은 직업교육훈련 등록률¹⁾과 관계가 있다.

1) OECD 국가의 평균 직업교육훈련 등록률은 15~19세 36.7%, 20~24세 61.6%이며 한국은 각각 17.5%와 22.3% 수준이다.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8-1-1] 2020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Data(2021).

국가별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상이하지만 주로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낮은 직업교육훈련 등록률은 <표 8-1-2>의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에서 15~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OECD 회원 국가 평균 직업교육훈련 등록자의 약 3분의 2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그러나 한국의 낮은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잘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0년에 15~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보다 1.1%p 하락한 7.2%이다.

20~24세 청소년 중 일부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나오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전후 수준이다. 20~24세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이유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남자 청소년이 학업 중 병역의무 기간을 거치므로 졸업이 더 늦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OECD 회원 국가와 달리 한국은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다. 한국보다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낮은 국가는 그리스뿐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프랑스 바로 아래다. OECD 평균과 비교하여 한국의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9%p 낮고 여자 청소년은 10.8%p 낮다. 이러한 격차는 2019년보다는 줄었다.

〈표 8-1-2〉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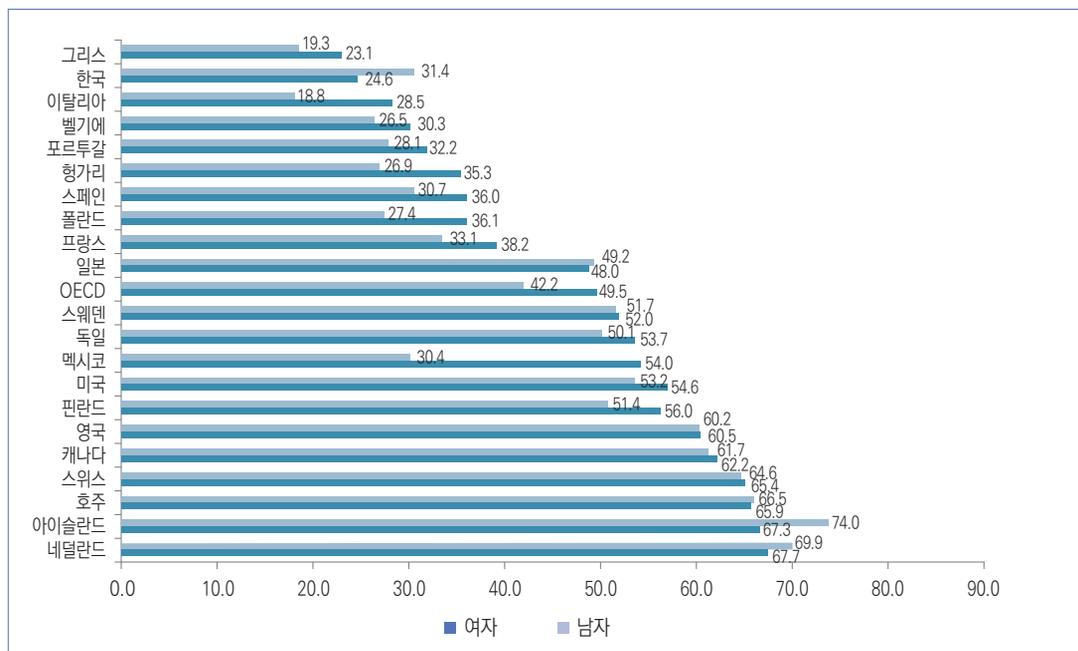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5~24세	33.0	33.7	25.2	25.5	26.5	26.4	28.5	29.9	30.2	30.3	29.3	29.6	28.2
남자	28.5	27.3	20.0	21.0	21.9	22.2	24.4	25.7	25.8	26.1	24.4	26.0	24.6
여자	37.0	39.2	30.1	29.8	30.7	30.3	32.3	33.8	34.3	34.3	33.7	32.9	31.5
15~19세	12.0	9.1	7.0	7.6	7.7	7.7	8.5	8.8	8.8	9.2	8.2	8.3	7.2
남자	11.6	8.1	5.5	6.3	6.3	6.6	7.5	7.7	8.1	8.5	7.2	7.6	6.5
여자	12.5	10.2	8.5	9.0	9.1	8.7	9.4	9.9	9.6	10.1	9.2	9.0	8.0
20~24세	57.9	57.3	48.9	47.9	49.0	47.6	49.9	51.6	51.6	50.6	48.9	48.7	46.0
남자	53.1	50.1	42.8	42.3	43.4	42.2	44.4	46.0	45.8	45.1	42.6	44.6	42.0
여자	61.2	62.6	53.5	52.3	53.5	52.2	54.5	56.3	56.6	55.3	54.1	52.1	49.3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 15세 이상 청소년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8-1-2] 2020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Data(2021).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20년에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모두 감소하였고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하였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부터 계속 감소하였으며 2017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함께 감소하였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규 교육기관 통학자(재학)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보다 7만 3천 명 감소한 382만 8천 명인데 재학 인구의 감소폭이 6만 8천 명이다. 입학학원에 통학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2019년보다 1만 2천 명 감소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에 통학하는 등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도 2019년보다 4천 명 감소한 22만 8천 명이다. 취업준비생은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 인구를 제외하고 6.0%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들 중 다수는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한 잠재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다른 사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오히려 2019년보다 1만 7천 명 늘어난 21만 7천 명이다. 육아 또는 가사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1만 명 감소하였다. 청소년 생산가능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폭이 더 크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했다. 다른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동안 '쉬었음' 인구만은 늘었다는 점에서 팬데믹이 선포된 2020년에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다른 해보다 더 어려웠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현황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비경제 활동인구		육아 및 가사		재학		입시 및 진학		취업 준비생		쉬었음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2005	4,090	100.0	93	2.3	3,307	80.9	190	4.7	173	4.2	190	4.6
2010	4,451	100.0	78	1.8	3,726	83.7	211	4.7	194	4.4	152	3.4
2011	4,508	100.0	83	1.8	3,754	83.3	219	4.9	183	4.1	183	4.1
2012	4,496	100.0	79	1.8	3,770	83.8	193	4.3	177	3.9	184	4.1
2013	4,538	100.0	72	1.6	3,827	84.3	168	3.7	192	4.2	186	4.1

연도	비경제 활동인구		육아 및 가사		재학		입시 및 진학		취업 준비생		쉬었음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2014	4,422	100.0	67	1.5	3,735	84.5	162	3.7	192	4.4	169	3.8
2015	4,322	100.0	68	1.6	3,560	82.4	168	3.9	225	5.2	188	4.4
2016	4,268	100.0	67	1.6	3,532	82.8	191	4.5	213	5.0	159	3.7
2017	4,145	100.0	57	1.4	3,414	82.4	160	3.9	218	5.3	184	4.4
2018	4,044	100.0	49	1.2	3,321	82.1	162	4.0	217	5.4	188	4.6
2019	3,902	100.0	49	1.3	3,172	81.3	153	3.9	232	5.9	200	5.1
2020	3,828	100.0	39	1.0	3,104	81.1	141	3.7	228	6.0	217	5.7

- 주 : 1) 육아 및 가사 : 육아, 가사 포함.
 2) 재학 : 정규교육기관 통학.
 3) 입시 및 진학 :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포함.
 4) 취업준비생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취업준비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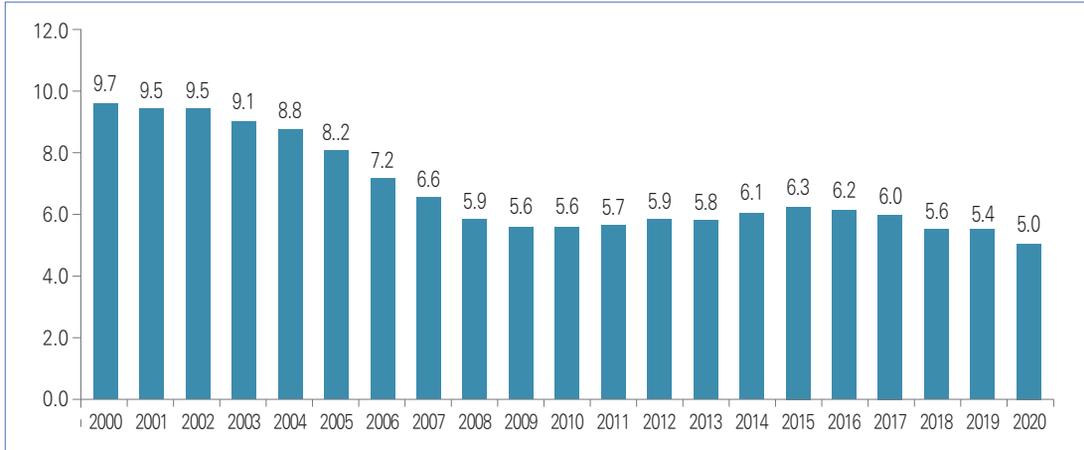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규모의 축소가 지속되므로 취업자 수 감소 없이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곤 했으나 2020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마저 하락했다. 2020년에 15~24세 청소년 취업자 수는 134만 3천 명으로 2019년 보다 12만 7천 명 감소했다.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으로 계산되는 고용률은 25.2%이며 이는 2019년 26.5%보다 1.3%p 하락한 수치이다. 전체 취업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4%에서 2020년 5.0%로 0.4%p 줄었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서 비롯한 인구효과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으로 위축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 취업자의 감소의 영향이 증첩되어 나타났다.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20년 11.9%로 계속 줄고 있다. 2000년에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은 9.7%였으나 2009년에 5.6%로 하락하였고 2020년에는 5.0%로 역대 최저치다. 2009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청소년 비중이 감소하는 동안에도 취업자 중 비중이 유지된 이유는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상승폭이 전체 생산

가능인구의 그것보다 컸던 까닭이다. 그러나 팬데믹은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더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을 구성했다.

[그림 8-1-3]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를 나타낸 <표 8-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24세 전체 청소년 취업자 중에서 15~19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9%에서 2010년에 15.2%로, 2020년에는 12.1%로 하락했다. <표 8-1-2>의 연령 계층별·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와 비교하면 최근 출생자의 인구 규모가 더 크게 축소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4세 취업자의 비중은 반대로 늘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중 대략 여섯 명이 여자이며, 전체 청소년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에 여자는 88.6%, 남자는 87.1%로 여자가 더 높다. 남자 청소년의 병역의무가 주된 사유이다.

<표 8-1-4>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천명	구성비																
15~24세	2,046	100.0	1,864	100.0	1,356	100.0	1,647	100.0	1,646	100.0	1,615	100.0	1,496	100.0	1,470	100.0	1,343	100.0
남자	796	38.9	693	37.2	508	37.4	684	41.5	680	41.3	665	41.2	595	39.8	616	41.9	556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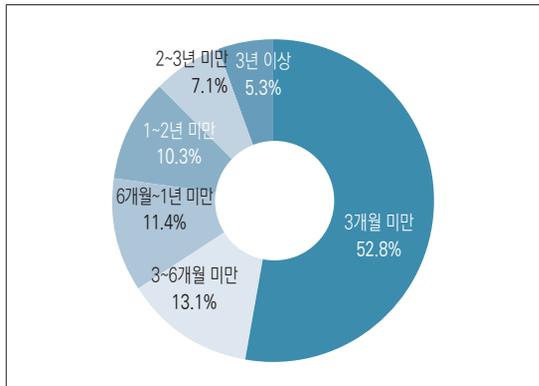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구성비																
여자	1,251	61.1	1,171	62.8	849	62.6	963	58.5	965	58.7	950	58.8	901	60.2	854	58.1	787	58.6
15~19세	387	100.0	241	100.0	206	100.0	245	100.0	244	100.0	247	100.0	205	100.0	198	100.0	162	100.0
남자	188	48.4	110	45.4	82	39.9	110	44.8	113	46.3	114	46.3	91	44.3	91	45.9	72	44.5
여자	200	51.6	132	54.6	124	60.1	135	55.2	131	53.7	132	53.7	114	55.7	107	54.1	90	55.5
20~24세	1,659	100.0	1,623	100.0	1,150	100.0	1,402	100.0	1,402	100.0	1,368	100.0	1,292	100.0	1,272	100.0	1,181	100.0
남자	608	36.6	583	36.0	425	37.0	574	40.9	567	40.5	551	40.3	505	39.1	525	41.3	484	41.0
여자	1,051	63.4	1,039	64.0	725	63.0	828	59.1	834	59.5	817	59.7	787	60.9	747	58.7	697	59.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8-1-4] 청소년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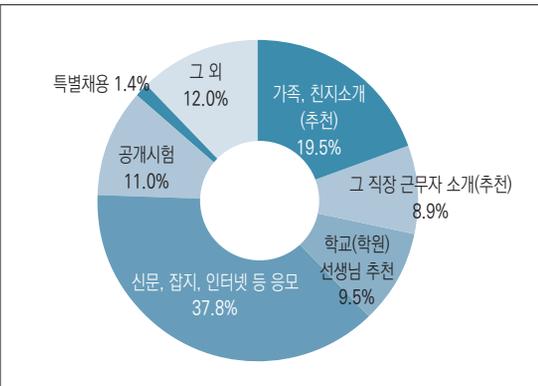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21년 5월.

[그림 8-1-5] 청소년 취업자의 취업경로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21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21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조사 시점 기준 15~24세 청소년이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 52.8%는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소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평균적인 첫 취업 소요기간은 7.2개월이다. 짧은 구직 기간은 노동시장의 매칭이 원활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임시적인 일자리로 입직하였음을 신호하기도 한다. 첫 취업 소요기간이 3~6개월 미만인 청소년의 비중은 13.1%, 6개월~1년 미만 11.4%, 1~2년 미만 10.3%, 2~3년 미만 7.1%, 3년 이상이 5.3%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 취업자의 취업 경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이며

37.8%를 차지한다. 가족과 친지나 취업한 직장의 근무자,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 등의 추천을 ‘연고 취업’ 범주로 묶었을 때 비중은 37.9%이며 각각의 비중은 19.5%, 8.9%, 9.5%이다. 높은 연고취업 비중은 청소년 취업자의 짧은 취업 소요 기간을 설명한다.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2014년부터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실업률은 10.5%로 2019년보다 0.1%p 상승하였으나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 4.0%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다. 일자리 경험이 없어 숙련이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여도 취업은 쉽지 않다. 연령 범위를 확대한 15~29세의 2020년 실업률 9.0%와 비교하면 저연령층인 청소년의 실업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1-5〉 연도별 청소년 실업률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업자	249	211	146	149	146	152	176	194	197	186	176	171	158
· 남자	124	96	64	74	63	65	82	87	84	84	74	77	69
· 여자	125	115	83	75	82	87	94	107	113	102	102	94	88
실업률	10.8	10	9.7	9.7	9	9	10	10.5	10.7	10.3	10.5	10.4	10.5
· 남자	13.5	12	11.1	12	9.7	10	11.2	11.3	11	11.2	11.1	11.1	11.1
· 여자	9.1	9	8.9	8.1	8.5	9	9.2	10	10.5	9.7	10.1	9.9	10.1

주 : 1) 15~24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2)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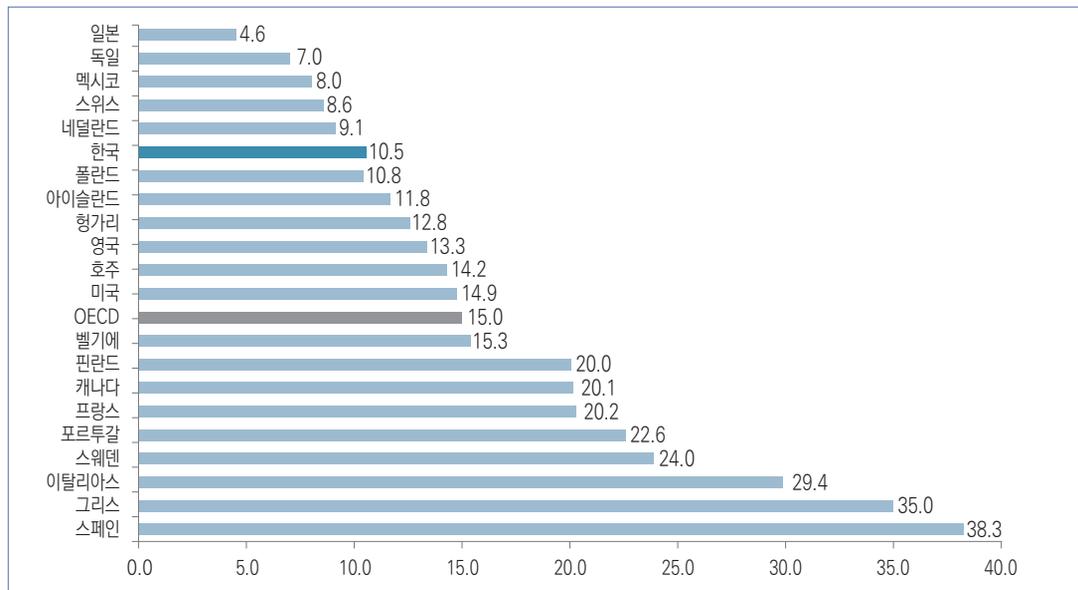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2020년의 OECD 평균 청소년 실업률 15.0%보다 약 4.5%p 낮다. 팬데믹으로 OECD 평균 청소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양호한 수치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청소년 실업률은 각각 35.0%와 24.0%로 순위가 역전되었다. 반면 청소년 실업률이 낮은

일본, 독일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도 청소년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언뜻 보면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듯하지만 한국은 청소년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OECD 회원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소 부침은 있으나 2010년 9.7%에서 현재 10%대로 높아졌다. 성별로 구분하면 특히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보다 1%p 이상 높다. 다만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 차이는 과거보다 작아졌다. 청소년 실업률의 성별 차이는 2000년에 4.4%p, 2005년에는 3.2%p였으나 2010년에는 2.2%p, 2020년에는 1.0%p로 줄었다. 청소년 실업률의 성별 차이가 줄어든 이유는 여자 청소년 실업률의 상승에 있다.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2020년 11.1%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지만, OECD 회원 국가 평균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여자 청소년 실업률이 특히 높고, 그리스의 경우에는 청소년 실업률의 성별 차이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이 유럽 남부 국가의 청소년 노동시장 특징으로 요약된다.

[그림 8-1-6] 2020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자료 : OECD Data(202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8-1-6〉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실업률																
15~24세	249	10.8	211	10.2	146	9.7	194	10.5	197	10.7	186	10.3	176	10.5	171	10.4	158	10.5
남자	124	13.5	96	12.1	64	11.1	87	11.3	84	11.0	84	11.2	74	11.1	77	11.1	69	11.1
여자	125	9.1	115	8.9	83	8.9	107	10.0	113	10.5	102	9.7	102	10.1	94	9.9	88	10.1
15~19세	66	14.5	34	12.3	28	11.9	29	10.6	27	10.0	23	8.7	21	9.3	19	8.6	16	8.8
남자	34	15.2	16	13.0	15	15.0	13	10.4	14	10.9	12	9.8	11	10.4	11	10.8	9	10.7
여자	32	13.9	18	11.7	13	9.6	16	10.7	13	9.2	11	7.7	10	8.3	8	6.6	7	7.1
20~24세	183	9.9	177	9.8	119	9.4	165	10.5	170	10.8	163	10.6	155	10.7	153	10.7	142	10.7
남자	90	12.9	79	12.0	49	10.3	74	11.5	70	11.0	72	11.5	64	11.2	66	11.2	61	11.1
여자	93	8.1	97	8.6	70	8.8	90	9.8	100	10.7	91	10.0	91	10.4	87	10.4	82	10.5

주 : 1) 15~24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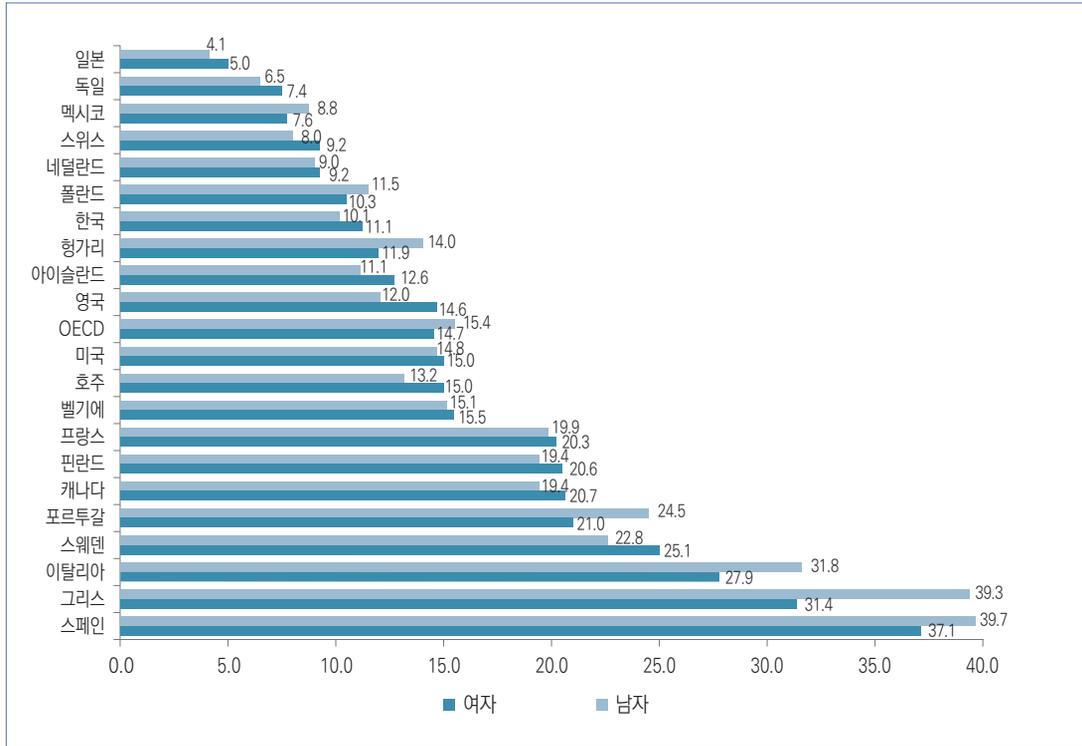
2)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연령 계층별 청소년 중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5~19세보다 네 배 이상 높지만 실업률의 차이는 훨씬 적다.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2010년 약 12% 수준으로 20~24세 청소년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2012년부터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한 반면 20~24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상승하여 2016년부터 역전하였다. 이는 연령 계층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상반된 경향이다. 청소년 실업률의 국제 비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국가 집단의 존재는 한국의 20~24세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간과하기 어렵게 한다.

[그림 8-1-7] 2020년 청소년의 성별 실업률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Data(2021).

5. 임금 및 노동시간

상용직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15~24세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상승해 오다가 2020년에 하락하였다. 20~24세 청소년의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산한 월급여액은 2010년대에 계속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2019년보다 -2.3% 하락한 160만 3천 원이다. 15~19세 청소년의 월급여액은 2019년보다 무려 -13.1% 하락하였다. 2012년과 2014년, 그리고 2015년에도 15~19세 청소년의 평균 월급여액이 감소하였으며 20~24세의 평균 월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실질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고용형태 중 높은 단시간 근로자 비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2019년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8.1%에

불과하지만 15~19세 청소년 중에서는 49.3%, 20~24세 청소년 중에서는 24.0%이다.

20~24세 청소년의 최종 학력에 따른 평균 월급여액은 2020년에 고등학교 졸업자 138만 2천 원, 전문대 졸업자 177만 1천 원, 대학교 이상 졸업자 202만 6천 원 순이다. 최종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관계에서 변화는 없으나 격차에서 변화를 보인다. 2010년에 대졸 이상의 평균 월급여액 대비 고졸과 전문대졸의 평균 월급여액 비율은 각각 73.0%와 88.8%였으나 2020년에는 68.2%와 87.4%이다. 2019년까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고졸과 전문대졸 학력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감소한 해가 있었으나, 2020년에는 모든 학력 수준에서 임금수준이 하락했다. 그러나 대졸 이상 학력자에 비해 고졸과 전문대졸 학력자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 계층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천 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감률	
	15~19세	20~24세	15~19세	20~24세
2010	677	1,162	9.3	1.4
2011	785	1,255	15.9	8.0
2012	763	1,298	-2.7	3.4
2013	830	1,319	8.7	1.6
2014	797	1,357	-4.0	2.9
2015	773	1,372	-3.1	1.1
2016	850	1,429	10.1	4.2
2017	893	1,448	5.1	1.3
2018	955	1,562	7.0	7.9
2019	987	1,641	3.3	5.1
2020	858	1,603	-13.1	-2.3

주 : 1) 임금수준은 월급여액(정액급여 + 초과급여)을 의미.

2) 고용형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계산.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8-1-8〉 20대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정책 및 초과급여

(단위: 천 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감률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10	1,020	1,241	1,398	-0.7	2.1	2.6
2011	1,111	1,355	1,509	8.9	9.2	8.0
2012	1,121	1,429	1,573	0.9	5.4	4.2
2013	1,147	1,463	1,600	2.3	2.4	1.7
2014	1,196	1,503	1,618	4.3	2.7	1.1
2015	1,188	1,510	1,688	-0.7	0.4	4.3
2016	1,247	1,598	1,703	4.9	5.9	0.9
2017	1,276	1,594	1,773	2.3	-0.3	4.1
2018	1,377	1,708	1,898	8.0	7.2	7.0
2019	1,422	1,875	2,053	3.3	9.7	8.2
2020	1,382	1,771	2,026	-2.8	-5.5	-1.3

주: 1) 20~24세 이하 기준.

2) 임금수준은 월급여액(정액급여 + 초과급여)을 의미.

3) 고용형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계산.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의 변화에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매년 6월은 총 30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과 평일 및 주말의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지만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이가 지속 되었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형 근로의 확대이다. 연령 계층별로 15~19세 근로자의 단시간 비중은 2010년 51.6%에서 2019년 49.3%로 감소하였고 20~24세 중에서 비중은 같은 기간에 16.9%에서 24.0%로 늘었다. 따라서 〈표 8-1-9〉의 연령계층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는 단지 단시간 비중 때문이 아니다. 두 번째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이다. 청소년의 일자리는 근속기간이 길게 유지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 변화를 비교적 민감하게 드러낸다. 단시간 비중의 증대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면 사회적 규범 변화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경기의 영향이다. 산업별로 청소년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는데 경기와 내수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으므로 고용 및 일자리에 영향이 즉각 투영된다.

2020년에 15~24세 청소년 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는 2019년보다 1.5일 늘어난 20.7일이고 근로시간은 11.2시간 늘어난 163.6시간이다. 15~19세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20~24세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늘었다. 이처럼 상반된 경향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서 모두 발견되지만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길다.

〈표 8-1-9〉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2010	전체	22.2	187.0	22.1	190.6	22.3	181.1
	15~19세	18.1	135.5	18.5	143.8	17.8	129.8
	20~24세	21.4	174.5	20.9	178.0	21.6	172.6
2011	전체	21.6	180.8	21.7	185.0	21.6	174.0
	15~19세	17.3	131.3	16.9	129.9	17.6	132.2
	20~24세	20.8	168.9	20.6	174.2	20.9	165.8
2012	전체	20.9	173.7	21.0	178.3	20.9	166.4
	15~19세	16.2	112.4	16.2	113.3	16.2	111.7
	20~24세	20.0	159.2	19.9	164.6	20.0	156.4
2013	전체	20.3	167.9	20.3	173.0	20.2	159.9
	15~19세	16.0	113.3	15.9	115.7	16.0	111.5
	20~24세	19.3	152.7	19.1	156.6	19.4	150.4
2014	전체	20.1	165.5	20.2	171.0	20.0	157.1
	15~19세	15.4	105.9	15.8	113.1	15.1	100.1
	20~24세	19.0	149.3	18.9	152.3	19.1	147.4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2015	전체	21.6	173.5	21.7	179.2	21.4	165.0
	15~19세	15.0	102.3	15.4	109.0	14.5	96.4
	20~24세	19.9	152.6	19.8	154.9	20.0	151.2
2016	전체	21.0	171.1	21.0	176.5	20.9	163.1
	15~19세	15.1	105.4	15.8	114.6	14.5	97.0
	20~24세	19.3	151.5	19.1	153.0	19.5	150.4
2017	전체	20.8	168.5	20.9	174.3	20.6	160.1
	15~19세	14.5	103.4	15.1	112.3	14.0	96.4
	20~24세	18.9	146.0	18.8	148.0	18.9	144.6
2018	전체	19.5	156.4	19.6	161.8	19.4	148.6
	15~19세	13.8	94.9	14.5	102.6	13.2	88.7
	20~24세	17.7	136.6	17.8	141.2	17.7	133.5
2019	전체	19.2	152.4	19.2	157.9	19.1	144.6
	15~19세	13.3	89.0	13.5	91.9	13.2	86.4
	20~24세	17.3	130.8	17.4	133.5	17.2	129.0
2020	전체	20.7	163.6	20.7	169.5	20.8	155.0
	15~19세	12.9	81.6	13.1	87.0	12.7	77.5
	20~24세	18.2	135.7	18.5	143.2	18.0	130.7

주 : 1) 근로일수 = 소정실근로일수 + 휴일실근로일수.

2) 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 초과실근로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6. 청소년 아르바이트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32만 4천 명으로 29.6%를 차지했으며, 2015년부터 비중이 계속 늘다가 2021년 들어 주춤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 10명 중 약 3명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에서 그 비중은 약간 적은 26.6% 수준이다.

〈표 8-1-10〉 근로시간 형태별 청소년 근로자 수 현황

(단위: 천명, %)

근로시간 형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일제 근로	1,032 (79.1)	1,098 (79.1)	1,087 (77.5)	952 (73.7)	880 (71.2)	795 (69.3)	770 (70.4)
시간제 근로	272 (20.9)	289 (20.9)	316 (22.5)	340 (26.3)	355 (28.8)	352 (30.7)	324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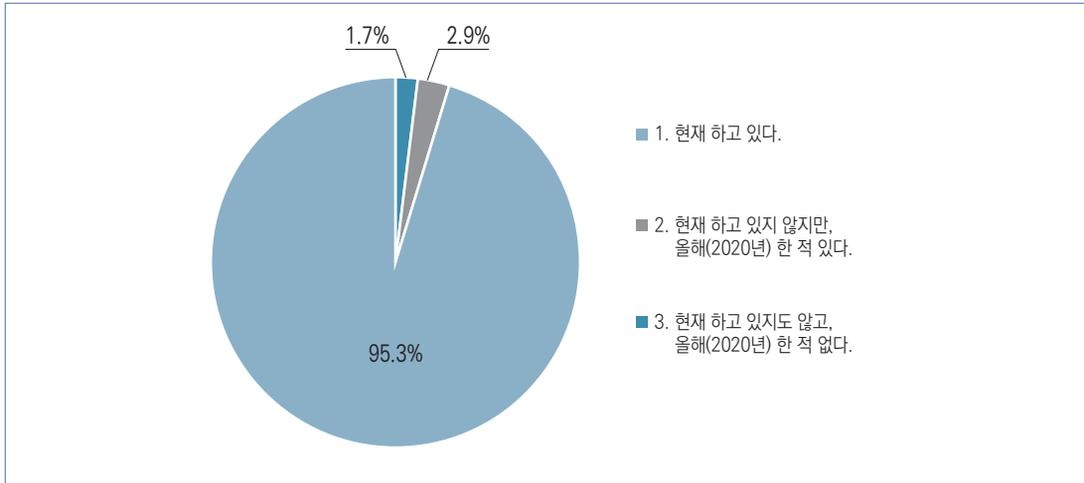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년도 5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는 많지 않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2년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2020년 조사는 14,5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체, 행위, 약물, 업소, 근로보호 및 사회 인구학적 배경 등 총 6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4.7%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라서(13.5%)’,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4.4%)’ 등을 포함하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61.6%를 차지한다. 한편 경제적 이유보다는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전체 응답 청소년의 약 18.4%로 나타났다.

[그림 8-1-8]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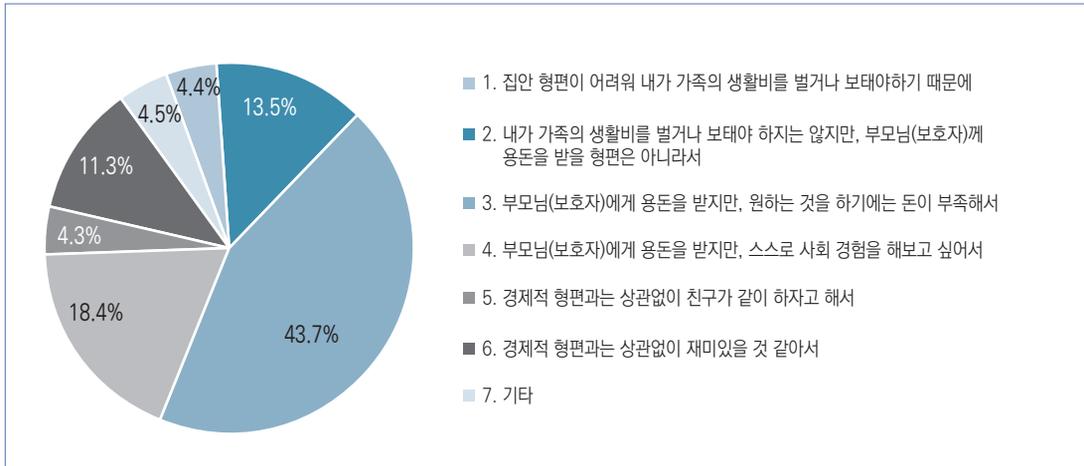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8-1-9]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2020년)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8-1-11〉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업종 및 근로조건 현황(2020년)

아르바이트 업종	매장관리		서빙, 주방		배달/운전		기타	
	12.7%		53.8%		15.2%		18.4%	
근속기간	1~6일	7일~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6.9%	14.1%	18.5%		13.3%		27.1%	
급여기준	시급	일당	주급		월급		건당	
	70.8%	11.9%	6.7%		9.6%		1.0%	
급여금액 (시급기준)	8,590원 미만	8,590원	8,590원 초과~9,000원 미만		9,000원		9,000원 초과	
	29.9%	22.7%	9.1%		11.1%		27.3%	
근로시간 (하루기준)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4시간 초과~6시간 이하		6시간 초과~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5.7%	27.6%	33.4%		18.2%		15.2%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청소년이 2020년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이 37.2%로 가장 많았고, ‘배달/운전’이 1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은 주로 ‘친구 또는 선후배 소개(48.4%)’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으며, ‘알바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30.1%)’, ‘부모님, 알고 지내는 어른, 형제·자매 등의 소개(18.4%)’ 순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평균 근속기간은 ‘1~6일’ 단기 아르바이트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27.1%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2.9일로 주당 ‘2일 이상~3일 미만(36.4%)’이 가장 많았으며, ‘5일 이상’ 근무하는 청소년은 19.4% 정도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기준은 시급으로 받았다는 응답이 약 70.8%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급여 수준은 평균 9,073원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중 53.1%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9.8%에 그쳤다. 청소년 열 명 중 일곱 명이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0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 미만을 받는 청소년이 29.9%에 달하였다.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기도 하고, 초과근무를 요구(14.7%) 받고도 초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5.1%)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해²⁾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결과, 2020년 ‘참고 계속 일했다’는 비중이 74.1%이었고, 그 다음으로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17.6%)’, ‘나 혼자 묻고 따졌다(9.6%)’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지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였다’한 경우는 0.6%에 불과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귀찮고 번거로워서(37.8%)’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9.5%)’, ‘신고/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7.5%)’ 등의 응답이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부당처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방법은 복수 응답이 가능.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21년도 우리나라 중학교 신규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자)는 412,562명이었으며, 대부분(99.7%)이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로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진학자 중 중졸 취업 인구수는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88명은 무직 혹은 미상자이다. 한편 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이 74.3%로 2020(73.2%)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71.7%)에 비해 여자(76.8%)의 일반계 고교진학률이 높았다.

〈표 8-2-1〉 2021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자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계	여자	비율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412,562	198,343	99.7	411,471	197,800	305,843	152,284	65,453	28,594	19,665	9,770	18,485	6,329	2,025	823
국립	1,362	640	99.6	1,356	637	845	404	254	117	70	40	177	74	10	2
공립	342,084	165,213	99.7	341,167	164,750	254,387	127,038	53,362	23,301	16,616	8,358	15,130	5,374	1,672	679
사립	69,116	32,490	99.8	68,948	32,413	50,611	24,842	11,837	5,176	2,979	1,372	3,178	881	343	14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21년도 우리나라 비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358,523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자는 5,776명으로 취업률은 8.1%이다.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78,994명이었고 이 중 취업자는 22,583명, 취업률은 5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직업계고의 전체 진학률은 80.0%이며, 여자의 진학률이 82.5%로 남자의 진학률(77.6%)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계고 진학률 또한 남자(41.3%)보다 여자(50.2%)가 높게 나타났으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자(6.7%)가 여자(5.8%)보다 진학률이 높았다. 비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16.3%로 가장 높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마이스터고가 74.6%로 가장 높았다.

〈표 8-2-2〉 2021년 비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명, %)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무직 이상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358,523	175,205	286,719	144,486	80.0	82.5	5,776	2,635	8.1	65,019	592	417
일반고	315,513	156,226	254,197	129,798	80.6	83.1	5,382	2,492	8.9	55,017	529	388
특수목적고	15,007	9,321	11,716	7,271	78.1	78.0	142	71	4.3	3,132	17	0
특성화고	1,264	562	956	454	75.6	80.8	50	18	16.3	251	1	6
자율고	26,739	9,096	19,850	6,963	74.2	76.6	202	54	3.0	6,619	45	23

주: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입대자 수) x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표 8-2-3〉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명, %)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미취업자		입대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78,994	32,544	35,529	16,343	45.0	50.2	22,583	8,920	54.2	18,211	6,985	1,809
특성화고(직업교육)	69,663	30,012	33,047	15,216	47.4	50.7	18,444	8,026	52.2	16,092	6,499	1,295
마이스터고	5,735	794	377	46	6.6	5.8	3,629	623	74.6	1,210	122	492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미취업자		입대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일반고 직업반	3,596	1,738	2,105	1,081	58.5	62.2	510	271	34.7	909	364	22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입대자 수) x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21년도 우리나라 특수학교 졸업자 수는 2,116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자는 146명, 취업률은 4.8%이었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직업계고등학교(8.1%) 혹은 직업계고등학교(54.2%) 취업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특수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남자(4.7%)의 취업률이 여자의 취업률(4.3%)보다 약간 높다.

〈표 8-2-4〉 2021년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장애유형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및 미상		취업률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2,116	729	146	56	94	29	94	29	4.8	4.3
시각장애	93	33	29	12	7	3	7	3	10.9	14.3
청각장애	96	42	32	16	14	3	14	3	21.9	11.5
지적장애	1,575	530	58	19	60	22	60	22	4.0	4.3
지체장애	241	102	11	5	7	1	7	1	3.0	1.0
정서장애	111	22	16	4	6	-	6	-	6.3	-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수 - 진학자 수) x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상황

고등교육기관 신규졸업자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20년 2월 및 2019년 8월 졸업자)는 553,521명으로, 2019년 대비 3,167명이 증가하였다. 취업대상자 48만 149명 중 31만 2,430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65.1%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68.7%로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61.0%보다 높았으며,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각각 61.4%, 70.5%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2.2%p가 감소하고, 일반 대학은 2.3%p 감소, 일반대학원 0.3%p가 증가하였다. 고등교육기관 남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성별 취업률 격차는 2019년 3.8%p에서 2020년 4.0%p로 소폭 벌어졌다.

〈표 8-2-5〉 2020년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전체	553,521	480,149	312,430	65.1
전문대학	168,153	146,373	100,520	68.7
대학	324,019	284,994	173,932	61.0
교육대학	3,717	3,549	2,180	61.4
산업대학	2,756	2,631	1,854	70.5
각종학교	550	455	249	54.7
기능대학	7,351	6,836	5,384	78.8
일반대학원	46,975	35,311	28,311	80.2

자료 : 교육부(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표 8-2-6〉 2020년 성별·학제별 취업자 및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고등교육기관 전체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취업자 수	취업률	취업자 수	취업률	취업자 수	취업률	취업자 수	취업률	
2020	합계	312,430	65.1	100,520	68.7	173,932	61.0	28,311	80.2
	남	157,718	67.1	44,817	68.1	89,861	63.7	16,554	85.3
	여	154,712	63.1	55,703	69.1	84,071	58.4	11,757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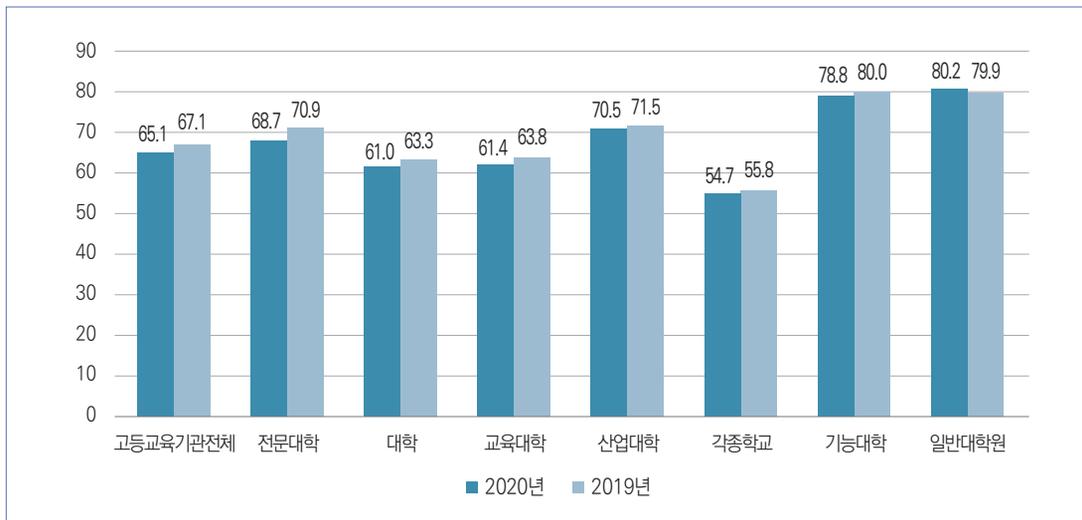
자료 : 교육부(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일반대학원을 제외하면 2020년도 학제별 취업률은 201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교육대학의 취업률은 2019년보다 2.4%p가 감소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p 감소하였다. 전체 계열 중 의약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이 8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학계열(67.7%), 자연계열(62.3%), 예체능계열(62.2%), 교육계열(62.2%), 사회계열(60.9%), 인문계열(53.5%) 순으로 높았다. 모든 계열의 2019년도 취업률보다 2020년 취업률이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2-1]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2020·2019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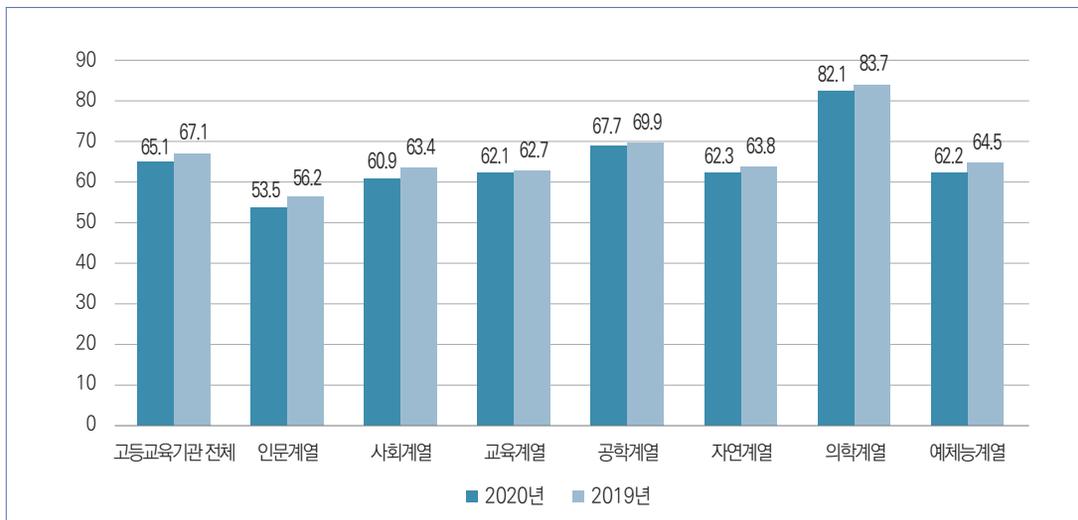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부(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그림 8-2-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취업률(2020·2019년 비교)

(단위 : %)



자료 : 교육부(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3장 청소년의 고용·노동정책

1.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가.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정부는 2005년 6월 20일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대책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의 제고방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 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2012년 11월)」을 마련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신고체계 구축,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실시, 사업주들의 법 준수 의식 확립 및 청소년들도 노동관계법을 인지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을 마련하였는데,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제재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취업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또한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사례에 대해 24시간 문자 상담(#1388)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의 부당처우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장에 근로현장 도우미를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 수도권 외에도 경상권, 전라권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충청권까지 확대하였다. 2022년도에는 사업방식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통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전국 시·도로 지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현장 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중재해결하고 있으며, 권익침해 사례 및 성희롱·폭언·폭행 등이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신고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여건, 사유 등을 파악하여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청 및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상담 107,908건, 현장지원상담 327건으로 집계되었다.

나.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정부는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해 연중 4회 이상 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사업장의 10%는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방학시점에 주요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업체별 위반율을 발표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 및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효과를 꾀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청소년 리더들의 활동을 통하여 법 위반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전국 25개 지역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29건의 위반사건을 적발하였다. 적발사건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명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고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었으며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업주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에 의거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근로가 제한되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의무 위반,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대한 제재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기준을 2014년 8월부터 강화하였다. 아울러 방학기간동안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등에 대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외의 종합대책에서는 사례별 구제방법 지정,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숍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전문계 고교 CEO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은 관련 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문계 고교 및 평생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인문계 고교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 스쿨(Job School)’ 운영 시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실 운영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교실에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1:1 집중상담이 진행되는 상담교실 등이 있다. 한편,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다수고용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 되었다.

2018년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제고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외에도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근로권익 전문 강사를 파견,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을 실시·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법령, 부당처우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작성하기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0년에는 학교별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노동인권 의식 교육을 위해 교육부, 서울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를 개발하였으며, 12월에는 교과서에 대한 교사용 해설서를 완성하였다.

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 협회 등과 협약 체결, 온라인 사이트 운영, 지역 청소년단체와 공동 캠페인 전개, 팸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중·고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2006년에 구축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싸이월드 타운 홈페이지에 이어, 2008년 3월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이웃맺기 이벤트, 오행시 콘테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 법령 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010년부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정책프로슈머가 될 수 있도록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선발하였고, 월별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 리더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이 연계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알바십계명 홍보를 위한 ‘알·지·최·서·방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활용해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중·고·대학생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45개 팀, 220명)’로 선발하여 또래 집단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블로그 개설 및 운영, 교내 홍보활동, 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참여도와 홍보 효과를 높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2021년 12월 238개 단체, 1만 9천여 명 활동)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활용하여 편의점, 카페,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길잡이 책자를 배포하여 업주의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노동관계법·청소년 보호법 제도 및 캠페인 활동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민·관 협업체계(경찰청, 지자체 등)를 구축하여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등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워크넷(Work-Net)에서는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청소년 직장 체험, 진로와 직업 관련 이러닝 학습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잡영(jobyoung)을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워크넷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들이 권리 구제방법을 몰라서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1318 알바신고센터'를 2011년 도입하였다.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알바신고센터를 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는 1318 알바신고센터에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사례를 지방 고용노동관서(총 47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근로감독관은 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12월에는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구축하고, 전국노동관서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48명)을 지정하는 등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퇴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반기별 130명)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알바신고센터(10개소)를 지정·운영해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국 공인노무사 131명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로 권리구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방 고용청마다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현장 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많은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침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 및 4개 권역의 지역본부로 운영 중인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주요 국가들이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취업난에 따른 고학력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창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로 민간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창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창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업 활력 또한 저하되었는데, 기업이 정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기업의 등장은 창업기업에서의 일자리창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난 정부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우수한 청년 창업가 발굴양성’이나 ‘원활한 재도전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여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창업교육에서부터 시설 공간 제공,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원, 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정책자금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청년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창업성공 패키지,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운영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매해 운영되어온 ‘청년전용 창업 자금’ 사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기업당 1억 원 이내에서 6년간 지원한다. 일반창업기업지원과 달리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운영하며 자금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을 결정(용자상환금 조정형)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년부터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시작해 2020년까지 누적 13,190개 사를 지원했다.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청년 CEO들의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예비)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공간(개별·공동) 제공에서부터 전문 인력을 전담 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코칭,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교육, 제품설계(CAE·역설계 등),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기술창업 One-Stop 패키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17개 지역의 20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에서부터 법률, 회계, 기술 등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데,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창업 절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각 대학에 마련된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예비)창업기업에 사무 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이나 연구소가 사업자로 지정받는데, 2021년 말 기준 262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on: BI)가 지정되어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창업 관련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사한 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1인 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 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 상담 및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9월 말 기준 2,103개사에 경영자문 870건, 교육 4,885건을 지원하였다.

2015년 정부는 「창업지원사업 효율화방안(2015.10.14.)」을 발표하고, 복잡한 창업지원 사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바 있다. 유사 목적·방식의 사업들을 통합(99개→72개)하고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해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분야 지원 사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9개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K-스타트업³⁾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정부의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도약)로 주요 지원 사업정보(사업화,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행사·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에서 원스톱 서비스, 전국 벤처·창업 입지정보, 창업기초·창업실전·창업특화 등 창업 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예비)창업자의 사업역량과 사업 아이템에서 부족한 점을 스스로 진단 및 보완할 수 있는 창업역량 자가 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창업교육 분야로는 청소년 비즈쿨, 창업 아카데미,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청소년 비즈쿨은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

3)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448개교(초등학교 124개, 중학교 109개, 고등학교 202개, 특수학교 13개)에서 특강, 캠프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창업아카데미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실전형 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네트워킹 조성 등 창업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창업 강좌 115개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는 앱/웹, 콘텐츠, 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의 경우 전국의 4개 창업학교에서 170개 창업팀을 지원하였다.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창업 대학원은 2016년에 5개 대학원에 9억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대학의 풍부한 자원 극대화를 통해 교육, 네트워크, 연구개발을 통한 창업모델 도입·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학기업가센터,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업을 대상으로 체험형 창업교육과 사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시제품 구체화 등 초기사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창작터도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업가 정신과 창의적 진로 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 YEEP(YEEP: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⁴⁾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YEEP는 창업가 정신 함양을 통한 인재양성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아리(미션을 통한 가상 창업과정 이해)-수업(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모듈형 수업)-가상창업체험(사용자 맞춤형 모의 창업 과정 체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선도대학육성’,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CEO 발굴과 전 국민 창업분위기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창업리그’, 대학·연구소의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각종 특례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을 촉진키 위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제도’, 도심 내 벤처기업의 입주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집적 시설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정부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관련한 21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청년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 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아이템 발굴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기상분야 창업 저변

4) YEEP 홈페이지(www.yeep.go.kr).

확대 및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등이 있다. 2019년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⁵⁾에 의하면 전체 창업자(2,030,987명) 중 20대 이하 및 30대의 비중은 15.7%를 차지했으며, 교육서비스업(26.4%) 및 전문·과학 기술업(16.8%)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향후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사업 중 학생 창업유망팀 300은 잠재력이 높은 전국의 학생(초·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창업팀 300개를 선발하여 체계적 교육·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16개 부처의 90개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 바 있다. 전체 창업지원 예산규모는 1조 4,51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9.8%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사업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학생 창업유망팀 300’, ‘청년 등 협동조합창업지원’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창업 지원(임대료, 컨설팅 등) 고용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는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총 35,500백만 원을 약 4500명에게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에서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우수한 제조 창업 아이템 및 4차 산업분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융복합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의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총 93,250백만 원, 1,035개 사를 지원하였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CEO 중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예산은 10,870백만 원이며, 50개 사를 지원하였다.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에서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만 34세 이하의 1인 또는 팀단위 기상 기후분야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였다. 시제품 개발은 팀당 80백만 원, 창업자금은 팀당 60백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에서는 ‘학생 창업유망팀 300’ 사업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고 약 300개 팀에게 1,600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5)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대상규모는 8,000개 기업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에도 창업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총 32개 기관이 194개 사업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예산규모는 총 1조 5,17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662억 원(4.6%)이 증가하였다. 194개 사업 중 24개 사업이 청년층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2021년 새로 등장한 사업으로는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업사이클 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1839 청년창업프로젝트' 등이 소개되었다.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전통문화산업 진입 지원 및 분야 간 융합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을 통해 지역 탐색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자원연계 아이템 발굴 지원,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분야별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업사이클 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사이클(재활용) 산업생태계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1839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공공데이터 활용하여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청년 주도의 지역혁신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여 신규 고용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청소년 고용촉진 대책

가.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기별 청년고용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종합대책,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왔다.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해외취업 등 장단기 대책을 종합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2005년에는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 「청년고용촉진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고졸 이하 학력 청년층의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실업률도 전체 청년실업률보다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2007년도에는 그간의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청년고용 장려금 사업’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청년학생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학교의 취업 지원 인프라 확대, 취약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서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주도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업으로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친화적 일자리지원, 직업체험 확대,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청년실업 대책차원에서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말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실희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 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013년 10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나이를 만 34세로 상향조정해 30대 미취업자들의 취업기회 제한을 해소하였다. 청년고용지원정책 일환으로 ‘청년취업 인턴제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에 주력하며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아울러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해소,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라는 3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2015~2017년간 20만 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기회창출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자리 발굴 및 채용연계,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청년내일

채용공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다.

2018년 3월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고착화되고, 체감실업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를 제고하고,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즉,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업·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통해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2018~2021년까지 18~2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 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을 돕고 청년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 혁신형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고,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 모험펀드로 투자를 유도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현직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며 해외 창업 청년도 지원한다.

2018년 정부는 청년에게 와 닿는 정책을 위해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청년 일자리대책 TF’를 마련하였다. 이 TF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청년구직자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려 하였다. 그리고 청년대상 훈련을 확대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의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고, 취업성공 패키지의 내실화·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통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년 대상의 주요 일자리 정책은 주로 15~34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실제 사업을 신청한 청년의 근속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제공하여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보다 쉽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진로지도를 통해 취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기업이 청년을 우선 채용한 후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일·학습 병행제,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 정부는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때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3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18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2018년 1분기(예산 집행률: 1.5%) 대비 2019년 1분기(예산 집행률: 34.7%)의 중소·중견 기업의 제도 활용률이 높았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기간보다 평균 26.7%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률은 78.1%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청년 근속률 48.4%보다 높아 일자리의 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7월 1일부터 지침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변경 전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변경 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관계법 상습위반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었다. 2021년 신규 9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은 청년고용의무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써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2023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법에 포함된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말까지만 연장됐다. 2019년 9월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전문인력과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만 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 5,676명으로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9.4%(442개소 중 395개소)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 고용인원은 28,689명으로 2018년

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청년고용 의무제에 따른 청년 채용 인원은 2016년 1.9만 명, 2017년 1.9만 명, 2018년 2.6만 명, 2019년 2.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8년 82.1%에서 7.3%p,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8년 6.9%에서 0.5%p 각각 높아졌다.

2021년 고용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서는,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소의 84.6%(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년 전체 정원(38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2,798명)의 비율은 5.9%로,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하였다. 하지만 '18~'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청년 신규고용비율, 의무이행기관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워크넷⁶⁾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 제공 및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직업지도(CAP+)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취업특강프로그램', '고졸청년취업지원(Hi) 프로그램',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 하면, '청년직업지도(CAP+) 프로그램'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직업흥미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 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 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개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진로탐색과 기업탐색, 취업서류 준비, 실전 모의면접, 취업성공요소의 분석을 통한 취업준비행동 실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성취 프로그램'은 구직 의욕과 취업자신감이 낮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효능감 제고 및 구직기술 습득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취업희망 프로그램' 역시 구직자의 원만한 사회진출 및 적응지원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졸청년취업지원(Hi)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고졸예정 취업준비생과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졸청년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미래 삶을 고민해보고 일터와 채용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서류와 면접 요령, 그리고 취업과 직장적응을 위한 기초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청년 중 특히 오랜 실직이나 취업

6)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empSpt/empSptPgm/youngJobGuide/intro.do>).

실패로 인해 취업 의욕이 꺾이고 자신감이 낮아진 청년들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북돋고 커리어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협력적 문제 해결에 관련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청년 10~15명이 소그룹을 구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체활동, 게임, 표현하기 등 커리큘럼을 이수하도록 한다. 진행자와 참가자 간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구직실패로 좌절된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심리검사를 비롯한 직업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원, 커리어코치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을 통해 가장 최근에 표준화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흥미, 적성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했다. 검사는 온라인과 지필검사 모두 받을 수 있고,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검사는 검사 실시 후 결과표를 즉각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요청도 가능하다. 검사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위한 검사들이 있으며, 적성,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특성을 파악하여 진로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는 검사들이 있다. 워크넷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심리검사는 실시간 검사를 통해 워크넷의 방대한 직업정보 및 구직정보 탐색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직업심리검사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로발달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진로결정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상담원 및 교사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가능하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탐색지원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직업심리검사는 개인별 자기탐색 및 진로방향 설정에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다.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초등학교 5-6학년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수준 측정 및 자기이해
청소년직업흥미검사	중·고등학생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직업정보 제공
청소년 적성검사(고등학생)	고등학생	학업적성능력에 적합한 직업/학업분야 추천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중2~고3	진로 성숙도 및 발달 수준을 측정하여 적합한 진로설계 지원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중1~고2	성격의 5요인(민감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기초로 성격 특성 측정
대학전공(학과) 흥미검사	고등학생	흥미에 적합한 전공계열 및 학과 추천
직업가치관검사	중3~고3	가치요인별 개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현직자 특성과 비교, 적합한 직종 추천
고등학생 적성검사	고등학생	학업 흥미에 따른 적합 고교계열 안내 및 진로지도

자료 : 워크넷(<http://www.work.go.kr>).

〈표 8-3-2〉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직업가치관 검사	18세 이상	가치요인별 개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적합한 직종 추천
직업선호도 검사(L형)	18세 이상	직업흥미, 성격, 생활경험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해 및 이를 통한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직업선호도 검사(S형)	18세 이상	직업흥미를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성인용 직업적성 검사	18세 이상	적성에 따른 적합 직업탐색 및 추천
영업직무 기본역량 검사	18세 이상	영업직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IT직무 기본역량 검사	18세 이상	IT직종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대학생 진로준비도 검사	대학생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진로발달 및 행동수준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취업준비 지원
구직준비도 검사	성인	구직활동과 관련한 특성을 측정하여 실직자에게 구직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창업적성 검사	성인	창업에의 소질여부를 확인하고 성공 가능한 최적의 업종을 추천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직업전환검사	성인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1년 이상 유지할 전환직종을 추천
이주민취업준비도검사	이주민	구직을 원하는 이주민의 취업준비도 진단을 통한 취업 상담 지원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역량 평가를 통한 후기 경력개발 지원

자료 : 워크넷(<http://www.work.go.kr>).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 초·중·고·대·특성화고용 진로지도 프로그램(CDP), 사회과·과학과 진로탐색자료(중·고), 특성화고 취업지원 로드맵, 대학교 취업지원 로드맵, 직업카드, 직업동영상 활용매뉴얼,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등의 진로교육 자료와 진로지도기법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으로 2003년도에 개발·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초등학교 2007년 개정, 중학교 2011년 개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0년 개발 보급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CDP)은 초·중·고·특성화고·대학 등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 학기용 자료로서 총 5종으로 개발·보급되었으며, 교사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수업진행용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급(특성화고/대학교)에 따라 학년별로 강조해야 할 구직역량과 이를 위한 활용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교급별 취업지원 로드맵을 개발·보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및 교과통합형 진로지도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과학과 세부 과목들에 대해 단위별 진로지도를 위한 탐색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학부모대상 진로특강 자료, 직업심리검사 해석을 위한 동영상과 슬라이드 등을 개발하여 단위학교로 보급하였다. 카드형태의 직업 진로교육 매체인 '직업카드' 역시 전국 고용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되어 청소년 워크넷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직업 진로지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진로교육센터⁷⁾를 개원하여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필요한 강좌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취업지원을 위해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이 학년별로 특화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지도를 체계화하고, 전담진로교수 매칭, 컨설턴트 연계, 진로실적 관련 교수평가제 도입 등 대학 내 교수·학사제도 또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아울러 대학 내 학생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맞춤형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7)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cyberedu/main.do>).

심리검사결과와 관심 있는 직업과 직무, 자격, 훈련 정보 등을 윈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 산업 및 직업전망을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맞춰 체험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3D프린팅, 로봇, 드론 등), 「근로기준법」 강의, 일터 안전보건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4대 유망분야 12개 신산업에서 총 17만 명(신규인력 9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산업 고급직업훈련과정 Test-Bed를 구축하여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훈련으로 신산업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하이테크 과정을 만들어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신산업 분야 학과·직종에 고급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2017년 9개 학과에서 2018~2022년 총 40개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분야, 즉 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무인이동체, 실감형 콘텐츠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제시하고 운영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선도훈련과정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진로교육센터에서 또한 진로정보망 커리어넷(Career Net)⁸⁾을 운영함으로써, 진로심리검사(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 등) 및 진로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라.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현재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 탭에서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래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별 직무내용, 임금수준, 직업전망 및 직업과 관련된 학과(전공), 자격, 훈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및 취업 문제를 온라인으로 상담해주고 있다. 직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직종별 직업사전’, ‘진로진학 Q&A’ 등 초등학교에서 성인까지의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자료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업명이나 학과명 키워드만으로 관련 직업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및 취업지원 동영상 제작하였다. 직업동영상은 전 산업

8) 커리어넷 홈페이지(<https://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직업들을 선정, 해당 직업의 생생한 현장모습 및 인터뷰를 담고, 취업지원동영상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면접기법, 이력서 작성 등의 구직기술과 직장생활 적응, 비즈니스 매너, 기업직무 등 직장생활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각급 학교에 DVD로 배포되며, 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매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기법이 소개된 직업동영상 활용 매뉴얼도 함께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과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과정보 동영상은 해당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를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수님과 학과 선배인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학과의 변화양상과 관련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진로모색의 필요성과 새롭게 등장하거나 부각되는 진출 직업 및 분야를 소개해주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커리어넷에서도 직업분류별, 적성유형별 직업 정보와 맞춤형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직업의 연봉정보, 발전가능성, 고용평등성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진로탐험대 신청, 공개상담 내용 공유를 통해 무료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확대

취업지원서비스는 1987년 5월 텍스트위주의 서비스제공으로 시작했으나 1996년 9월 국내·외 취업 알선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8년 11월 인터넷 방식의 '워크넷(Work-Net)'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일자리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맞춰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력서작성과 구직신청, 채용정보 북마크, 알선요청, 직업상담 등의 개별 온라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에 '대기업채용정보'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대기업의 구인정보를 취합·제공하였고, '지역 고용동향' 항목의 신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한 각종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밖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력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취업자료실'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여 취업관련 뉴스와 가이드, 동영상, 직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직종별, 지역·산업단지별, 역세권별, 대기업채용정보, 단시간 근로채용정보, 전공계열별, 청년인턴인재정보 등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 7월부터는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정보를 워크넷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3.0 공동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Open API 제공과 지역 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시간선택제, 강소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PC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워크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워크넷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지역별, 역세권별, 직종별, 기업형태별 등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직신청, 이메일 입사지원, 맞춤형 서비스, 구직활동 내역 조회/출력, 메일링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구인기업은 지역별, 직종별, 전공계열별 등 다양한 인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인신청, 인재정보 관리, 맞춤형 서비스, 째하기, e-채용마당 등의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직업 심리검사, 직업·학과정보검색, 직업탐방, 진로상담 등 직업·진로 서비스와 Job Map, 일자리/인재 동향, 통계 간행물/연구자료 등의 고용동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자, 산재되어 있는 범부처 취업지원 사업 정보를 모아 한 번에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청년워크넷을 구축하여 2016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⁹⁾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규모, 혜택, 지원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 업로드하고 있으며, 청년고용 정책참여단을 통한 취업지원사업 모니터링, 청년친화적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등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메뉴구조 단순화, 검색기능 개선 등의 노력에 힘입어 청년 워크넷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청년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¹⁰⁾를 구축했다.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검색과 청년정책 간 핵심정보를 비교해주고, 일자리·창업·주거 등 분야별로 수요에 따라 배치하여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기반으로 실시간채팅 상담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온라인청년센터에서는

9) 커리어넷 홈페이지(<https://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

10)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intro/centerIntro.do>).

구직활동을 할 때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과 관련된 용어가 낯선 청년들을 위해 용어 풀이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청년에게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주요 기업들의 청년 고용 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이 멤버십에 가입한 기업들은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 면접 불합격자 피드백 등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온라인 청년센터는 각 지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비대면 면접장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구직자들이 근접한 곳에서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9부 요약

제9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발생 및 처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청소년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교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5.8%이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에 3.9%를 기록하였다. 2020년 청소년 범죄의 발생비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으로 높았으며, 다른 범죄유형이 2010년 대비 발생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력범죄(흉악)은 2010년 대비 강력범죄(흉악) 0.3% 증가하였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유해환경 정화활동,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검찰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검사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실',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자특별교육'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은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각종 교과교육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비행청소년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제9부 청소년 범죄

제1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제2장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제3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제4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제1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1. 청소년 범죄의 동향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5.8%이었다가 2015년 3.8%(71,035명)까지 감소하였다. 2016년이후 잠시 증가하긴 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21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이는 최근 우려와 달리 일반 범죄에 비하여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청소년 범죄자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소폭 증가하여 여전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

〈표 9-1-1〉 연도별 청소년 범죄자 현황 및 구성비(2011~2020)

(단위 : 명, %)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범죄자	1,711,687	1,843,289	1,859,697	1,851,150	1,888,959	1,973,655	1,818,237	1,704,086	1,723,499	1,638,387
청소년 범죄자	100,032	104,780	88,731	77,594	71,035	76,000	72,759	66,142	66,247	64,480
구성비	5.8	5.7	4.8	4.2	3.8	3.9	4.0	3.9	3.8	3.9

주 : 청소년 범죄자의 기준은 18세 이하임.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2020년 청소년 범죄 발생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351.7, 강력범죄(폭력) 179.7, 교통범죄 100.7, 강력범죄(흉악) 3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12년 442.4건으로 가장 높았던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여 2019년과 2020년에만 약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1년 38.1건에서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38.2건을 기록하고 있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2년 3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179.7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2010년 대비 32.2% 감소한 수치이다.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100.7건으로 2010년 대비 26.1% 감소하였다. 절대적인 발생비는 재산범죄가 가장 높고, 강력범죄(홍약)가 가장 낮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최근 강력범죄(홍약)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9-1-2〉 주요 범죄군별 청소년 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2020)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약)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1	403.0	0.6	38.1	13.1	265.2	5.8	136.3	-9.7
2012	442.4	10.4	34.7	3.0	310.0	23.7	115.1	-23.7
2013	430.9	7.6	34.4	2.1	215.4	-14.0	96.2	-36.3
2014	367.4	-8.3	32.0	-5.0	196.0	-21.8	93.7	-37.9
2015	332.9	-16.9	28.2	-16.4	181.4	-27.6	89.4	-40.8
2016	352.9	-11.9	35.7	5.9	207.7	-17.1	99.4	-34.1
2017	319.3	-20.3	38.1	13.0	231.2	-7.7	105.8	-29.9
2018	300.6	-25.0	39.8	18.2	224.0	-10.6	86.7	-42.6
2019	327.6	-18.2	43.2	28.2	219.4	-12.4	88.0	-41.7
2020	351.7	-12.7	38.2	0.3	179.7	-32.2	100.7	-26.1

주 : 1) 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2) 강력범죄(홍약)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3) 강력범죄(폭력)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 등),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활동).

4) 청소년 범죄 발생비는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18세 이하 인원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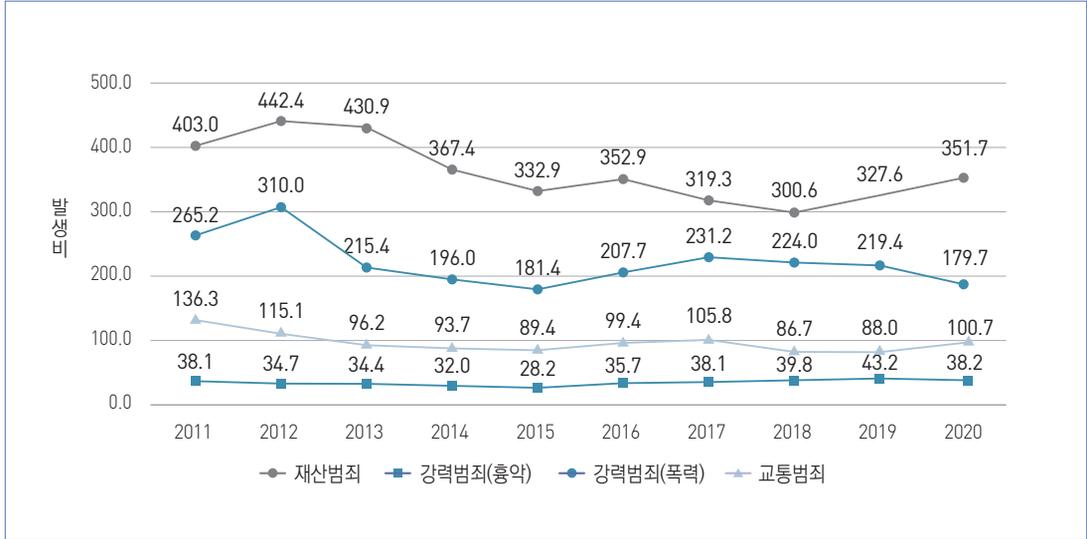
5) 발생비는 청소년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비를 나타내는 것임.

6) 증감률은 기준년도인 2010년 발생비 대비 변화율임.

자료 : 대검찰청(2021). 범죄분석.

[그림 9-1-1]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2020)

(단위 : 발생비)



자료 : 대검찰청(2020). 범죄분석.

2020년 전체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세가 25.0%(16,09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7세 21.3%, 16세 21.1%, 15세 18.5%, 14세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추세를 볼 때 17~18세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9-1-3>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1	83,068 (10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2012	107,490 (10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2013	91,633 (10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2014	77,594 (10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5)
2017	72,759 (100.0)	93 (0.1)	7,703 (10.6)	12,376 (17.0)	16,391 (22.5)	17,358 (23.9)	18,838 (25.9)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2019	66,247 (100.0)	-	9,053 (16.4)	11,730 (17.7)	13,548 (20.5)	14,338 (21.6)	17,578 (26.5)
2020	64,480 (100.0)	-	9,124 (14.1)	11,956 (18.5)	13,578 (21.1)	13,725 (21.3)	16,097 (25.0)

주 : 2018년 이후 14세 미만 통계에서 제외.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최근 10년간 전과가 있는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과를 가진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11년 40.5%에서 2013년 46.1%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나타나 2020년 36.5%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4범 이상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12.0%에서 2020년 15.3%로, 청소년 범죄자의 전과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4범 이상 범죄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상습화가 심각한 수준에 있고, 향후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9-1-4〉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연도	계	소계 (미상 제외)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11	83,068	75,658 (100.0)	45,047 (59.5)	11,391 (15.1)	6,254 (8.3)	3,900 (5.2)	9,066 (12.0)
2012	107,490	96,728 (100.0)	56,527 (58.4)	14,403 (14.9)	7,669 (7.9)	5,001 (5.2)	13,128 (13.6)
2013	91,633	82,548 (100.0)	44,502 (53.9)	12,388 (15.0)	6,782 (8.2)	4,552 (5.5)	14,324 (17.4)
2014	77,594	70,648 (100.0)	40,996 (58.0)	9,853 (13.9)	5,244 (7.4)	3,429 (4.9)	11,126 (15.7)
2015	71,035	62,705 (100.0)	35,650 (56.9)	8,636 (13.8)	4,518 (7.2)	3,110 (5.0)	10,791 (17.2)
2016	76,000	67,433 (100.0)	41,173 (61.1)	8,444 (12.5)	4,493 (6.7)	2,978 (4.4)	10,345 (15.3)

연령 연도	계	소계 (미상 제외)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17	72,759	64,208 (100.0)	40,168 (62.6)	8,039 (12.5)	4,191 (6.5)	2,773 (4.3)	9,037 (14.1)
2018	66,142	66,135 (100.0)	43,827 (66.3)	7,164 (10.8)	3,705 (5.6)	2,554 (3.9)	8,885 (13.4)
2019	66,247	59,729 (100.0)	38,272 (64.1)	6,681 (11.2)	3,360 (5.6)	2,517 (4.2)	8,899 (14.9)
2020	64,480	58,377 (100.0)	37,079 (63.5)	6,636 (11.4)	3,368 (5.8)	2,362 (4.0)	8,932 (15.3)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2020년도 청소년 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3.7%, 여자가 16.3%로, 남자의 비율이 약 5배 정도 많다. 2011년 남자청소년의 범죄율이 82.8%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과 2015년 85.2%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여 2018년 81.5%를 나타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표 9-1-5〉 청소년 범죄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1	계	83,068	82.8	14,326	17.2
2012	계	107,490	83.1	18,151	16.9
2013	계	91,633	83.8	14,866	16.2
2014	계	77,594	85.2	11,480	14.8
2015	계	71,035	85.2	10,501	14.8
2016	계	76,000	83.9	12,223	16.1
2017	계	72,759	82.8	12,495	17.2
2018	계	66,142	81.5	12,263	18.5
2019	계	66,243	82.2	11,806	17.8
2020	계	64,480	83.7	10,484	16.3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범죄분석.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데인, 모르핀, 코카인 등)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마약류사범 대비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비율을 보면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마약류가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여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적발인원은 313명으로 전년대비(전년도 239명)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마약류 사범	청소년 마약류 사범	
			인원	비율
2011		9,174	41	0.4
2012		9,255	38	0.4
2013		9,764	58	0.6
2014		9,984	102	1.0
2015		11,916	128	1.1
2016		14,214	121	0.9
2017		14,123	119	0.8
2018		12,613	143	1.1
2019		16,044	239	1.5
2020		18,050	313	1.7

주 : 마약류 통계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은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마약류범죄백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써, '메스암 페라민(속칭 히로뽕)', 'MDMA(엑스터시)', 'LSD(무색·무미·무취 환각제)' 등을 가리킨다. 2020년 청소년 마약범죄 중 마약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체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이 6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마의 비중은 24.9%로 대마로 인한 문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정신발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 이상으로 중독 예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2009~2019)

(단위 : 명, %)

구분 연도	전체	청소년 마약류			
		합계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
2011	9,174	41 (100.0)	34 (82.9)	7 (17.1)	-
2012	9,255	38 (100.0)	26 (68.4)	12 (31.6)	-
2013	9,764	58 (100.0)	39 (67.2)	17 (29.3)	2 (3.4)
2014	9,742	102 (100.0)	48 (47.1)	54 (52.9)	-
2015	11,916	128 (100.0)	78 (60.9)	50 (39.1)	-
2016	14,214	121 (100.0)	91 (75.2)	28 (23.1)	2 (1.7)
2017	14,123	119 (100.0)	70 (58.8)	49 (41.2)	-
2018	12,613	143 (100.0)	105 (73.4)	36 (25.2)	2 (1.4)
2019	16,044	239 (100.0)	167 (69.9)	69 (28.9)	3 (1.2)
2020	18,050	313 (100.0)	196 (62.6)	78 (24.9)	39 (12.5)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마약류 범죄백서.

3. 학생 범죄의 동향

전체 청소년 범죄자 대비 학생 범죄자의 구성 비율은 2011년 57.7%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76.9%를 기록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여전히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9-1-8〉 연도별 학생 범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전체범죄(A)	청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B)	구성비(B/A × 100)	인원(C)	구성비(C/B × 100)
2011	1,711,687	100,032	5.8	57,672	57.7
2012	1,843,289	104,780	5.7	73,684	70.3
2013	1,859,697	88,731	4.8	60,438	68.1
2014	1,851,150	77,594	4.2	54,627	70.4
2015	1,888,959	71,035	3.8	57,672	81.2
2016	1,973,655	76,000	3.9	56,625	74.5
2017	1,818,237	72,759	4.0	55,074	75.7
2018	1,704,086	66,142	3.9	54,205	82.0
2019	1,723,499	66,247	3.8	49,726	75.1
2020	1,638,387	64,480	3.9	49,599	76.9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범죄분석.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2장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1. 경찰의 예방활동

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 초부터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전국 약 12,0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하여도 담당 SPO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SPO가 위기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면담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역별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폭행·상해’에 이어 ‘금품갈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성폭력’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데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 2020년에는 11,331명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중 성폭력은 무려 2,462명을 차지하였다. 2020년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전년도 13,584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인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등이 운영되면서 학생간 접촉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전체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11	21,957	14,837	3,902	444	2,774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2016	12,805	9,396	1,161	1,364	884
2017	14,000	10,038	1,191	1,695	1,076
2018	13,367	7,935	1,377	2,529	1,526
2019	13,584	7,485	1,328	3,060	1,711
2020	11,331	5,863	1,184	2,462	1,822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로 경찰단계로 들어오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불구속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20년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가해학생 중 구속은 79명, 불구속은 7,710명이었다. 특히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과 경미초범에 대한 즉심·훈방 등 선도조치로 처리되는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3년간 2018년 18.1%, 2019년 19.7%, 2020년 19.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즉심·훈방 등
2011	21,957 (100.0)	103 (0.5)	16,228 (73.9)	1,473 (6.7)	4,153 (18.9)
2012	23,877 (100.0)	333 (1.4)	15,615 (65.4)	2,657 (11.1)	5,272 (22.1)
2013	17,385 (100.0)	294 (1.7)	11,016 (63.4)	1,824 (10.5)	4,251 (24.4)
2014	13,268 (100.0)	167 (1.3)	8,586 (64.7)	1,191 (9.0)	3,324 (25.0)
2015	12,495 (100.0)	93 (0.7)	9,157 (73.3)	1,059 (8.5)	2,186 (17.5)

연도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즉심·훈방 등
2016		12,805 (100.0)	62 (0.5)	9,852 (76.9)	1,097 (8.6)	1,794 (14.0)
2017		14,000 (100.0)	61 (0.4)	10,556 (75.4)	1,296 (9.3)	2,087 (14.9)
2018		13,367 (100.0)	86 (0.6)	9,546 (71.4)	1,319 (9.9)	2,416 (18.1)
2019		13,584 (100.0)	84 (0.6)	9,233 (68.0)	1,587 (11.7)	2,680 (19.7)
2020		11,381 (100.0)	79 (0.7)	7,710 (68.0)	1,332 (11.8)	2,210 (19.5)

자료 : 경찰청(2018~2021). 경찰백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012년 6월 18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117신고센터’를 개소하여 경찰·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117채팅 신고앱인 ‘117챗’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17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콜백(call back)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2020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8,241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에서의 비대면 수업이 운영되면서 학생간 접촉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9-2-3〉 학교폭력 신고 추이(2018~2020)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폭행	모욕	법률 상담	왕따	협박	성폭력	공갈	교사 관련	기타
2018	61,887 (100.0)	15,702 (25.4)	18,179 (29.4)	19,995 (32.3)	2,588 (4.2)	1,821 (2.9)	1,289 (2.1)	881 (1.4)	808 (1.3)	624 (1.0)
2019	61,302 (100.0)	15,752 (25.7)	16,589 (27.1)	21,198 (34.6)	2,311 (3.8)	1,719 (2.8)	1,587 (2.6)	770 (1.3)	724 (1.2)	652 (1.0)
2020	28,241 (100.0)	6,629 (23.5)	7,926 (28.1)	9,553 (33.8)	870 (3.1)	1,157 (4.1)	968 (3.4)	449 (1.6)	150 (0.5)	538 (1.9)

자료 : 경찰청(2019~2021). 경찰백서.

경찰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도입하였다. 학교전담 경찰관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위, 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대상

으로 선발하며, 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폭력의 예방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신고접수·처리, 보호·선도, 경찰과 학교간 긴밀한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 6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활성화되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건처리는 물론이고, 가·피해학생 사후관리도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해 왔다. 2012년 193명을 시작으로 2020년에 전국 지역별로 1,128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1인당 12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영역을 폭력사안 대응 및 위기청소년 집중관리 중심으로 전문화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및 교사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하며 117 홍보 및 학교폭력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사례 위주의 특별 예방교육, 폭력사안 대응, 위기청소년 선도·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와 일반적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나. 유해환경 정화활동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미디어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종 풍속업소 등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각종 음란·폭력성 매체물과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연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총 7,935명을 적발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 유해약물 단속 위반자가 7,0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적퇴폐나 풍기문란 등 유해행위를 한 자는 573명,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키거나 출입하게 한 자는 229명,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통해 판매·대여하거나 포장 표시한 자는 40명에 이르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9-2-4〉 연도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단속내용				조치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	구속	불구속
2011	9,575	1,690	1,039	6,337	509	6	9,569
2012	14,067	1,414	870	11,158	625	46	14,021
2013	13,438	1,707	1,287	9,980	464	8	13,430
2014	8,348	870	189	6,888	401	5	8,343
2015	9,268	327	185	8,364	392	0	9,268
2016	9,313	412	86	8,444	371	1	9,312
2017	9,750	360	70	8,927	393	-	-
2018	9,567	276	71	8,800	420	-	-
2019	8,399	299	20	7,617	463	-	-
2020	7,935	229	40	7,093	573	-	-

주 : 2017년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자료 : 경찰청(2010~2021), 경찰백서.

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경찰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32개 프로그램을 총 15,243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사랑의 교실’ 외에도 신경정신과 의사 및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치유선도프로그램(마음나눔교실)’과 경찰관서 SPO가 경찰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을 활용하여 회복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찰선도프로그램(희망동행교실)’이 있다. 2015년에는 21,789명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나, 2020년에는 23,464명으로 참여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경찰에서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서류에 결과보고서 또는 수료증을 첨부하여 사법처리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9-2-5〉 연도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2015~2020)

(단위 : 개소, 명)

구분 연도	참여 인원	사랑의 교실		치유선도 프로그램		경찰선도프로그램	
		운영단체	참여인원	운영병원	참여인원	운영관서	참여인원
2015	21,789	118	5,985	45	463	228	23,366
2016	20,105	126	5,861	52	254	235	15,341
2017	20,092	145	9,559	60	179	195	13,990
2018	25,714	183	12,508	51	214	185	10,354
2019	25,940	245	18,929	51	196	165	6,815
2020	23,464	232	15,243	43	56	179	8,165

자료 : 경찰청(2016~2021), 경찰백서.

라.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참여제 운영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란 청소년 범죄자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 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있다. 전문가 참여비율은 2009년 4.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전체 청소년 범죄자의 15.2%에 해당하는 9,826명이 전문가 참여조사를 받았다.

〈표 9-2-6〉 연도별 청소년범죄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2011~2020)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운영관서(개소)	100	120	137	180	251	252	254	254	255	257
전체소년범(명)	86,621	107,018	90,694	78,794	80,231	76,356	72,752	66,259	66,204	64,584
참여소년범(명)	7,639	10,258	11,548	8,968	10,401	15,312	11,879	10,501	10,847	9,826
참여비율(%)	8.8	9.6	12.7	11.4	13.0	20.1	16.3	15.8	16.4	15.2

주 : 경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와 검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가 다른 것은 검찰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마.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을 대상으로 첩뉴 여부와 선도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 조기에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가해학생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즉결심판 처분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모든 소년사건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4년부터 선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의료 시설 등을 참여하도록 하였다. 2020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460명을 훈방하고, 1,915명을 즉결심판 청구하였으며, 2,428명의 가·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의료·법률·상담 지원 2,641건을 실시하였다.

〈표 9-2-7〉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2015~2020)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개회 횟수	처분 결정				지원 결정							
		계	입건	훈방	즉심	지원 인원			지원 건수				
						계	가해	피해	계	생활	상담	의료	법률
2015	1,602	2,970	273	1,524	1,173	2,376	1,434	942	2,649	572	1,879	126	72
2016	1,550	2,835	205	1,395	1,235	2,310	1,297	1,013	2,581	881	1,579	47	91
2017	1,577	3,726	110	1,712	1,904	2,613	1,657	956	2,779	908	1,712	33	126
2018	1,507	3,401	97	1,474	1,830	2,151	1,221	930	2,317	915	1,277	75	50



연도	구분 개최 횟수	처분 결정				지원 결정							
		계	입건	훈방	즉심	지원 인원			지원 건수				
						계	가해	피해	계	생활	상담	의료	법률
2019	-	3,526	119	1,611	1,796	1,851	842	1,009	2,099	902	1,120	64	13
2020	-	3,501	126	1,460	1,915	2,428	1,329	1,099	2,641	1,077	1,513	35	16

주 : 경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와 검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가 다른 것은 검찰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경찰청(2016~2021), 경찰백서.

바.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운영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발대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 명예경찰소년단 전국 확대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전국 학교로 선발 대상을 확대하여 2016년 전국 1,327개교 15,883명의 명예경찰소년단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는 명예경찰소년단을 희망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명칭을 '명예경찰소년소녀단'으로 변경하였다.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은 학교전담경찰과 학부모 순찰대, 교사 등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 내 취약장소를 순찰하거나, 봉사활동 등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친구 맺기' 또래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또래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56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3,031명의 학생을 명예경찰소년소녀단으로 선발하였다.

〈표 9-2-8〉 연도별 명예경찰소년소녀단 현황(2011~2020)

(단위 : 개교, 명)

연도	구분	실시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2011		1,510	19,250
2012		1,422	16,935

연도	구분	실시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2013		1,644	17,853
2014		1,520	17,395
2015		1,431	17,690
2016		1,327	15,883
2017		632	7,606
2018		444	5,648
2019		265	3,556
2020		156	3,031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사.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경찰청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계획 및 발굴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학교·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5,393명을 발견하여 이 중 5,642건에 대하여 ‘청소년지원센터’ 등 연계하였고, 가정 밖 청소년 1,451명을 발견하여 이 중 1,741건에 대하여 ‘가정 복귀’ 등 연계하였다.

〈표 9-2-9〉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현황(2017~2020)

(단위 : 명, 건)

구분	발견인원	연계조치건수				
		계	지원센터	학교복귀	청소년 안전망	선도 프로그램
2017	8,607	7,129	5,158	412	876	683
2018	6,753	6,070	4,801	417	185	657
2019	6,335	6,576	5,640	170	281	485
2020	5,393	5,642	4,590	182	393	477

자료 : 경찰청(2018~2021). 경찰백서.

〈표 9-2-10〉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현황(2017~2020)

(단위 : 명, 건)

구분	발견인원	연계조치건수					가출범	
		계	가정 복귀	쉼터 연계	청소년 안전망	선도 프로그램	개	명
2017	3,655	3,536	3,048	161	131	196	51	254
2018	3,654	3,615	3,223	145	107	140	91	435
2019	1,642	1,812	1,247	233	139	193	108	567
2020	1,451	1,741	1,071	286	252	132	125	674

자료 : 경찰청(2018~2021), 경찰백서.

2. 검찰의 예방활동

가.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부산·광주·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하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법사랑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은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우범소년 결연사업 가운데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는 817회 개최되었고, 법사랑위원 교육은 79회 실시되었다. 우범소년 중 결연 대상 3,457명을 선정하여 실제로 4,316명과 결연을 맺었다.

〈표 9-2-11〉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 실적(2011~2020)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	결연대상 선정인원	결연인원	지역추진 대회	법사량위원 교육
2011		1,721	3,546	3,545	386	1,857
2012		2,206	7,049	7,205	473	2,348
2013		2,221	5,332	7,101	465	1,271
2014		1,956	4,868	5,723	353	401
2015		2,581	5,050	6,032	342	602
2016		2,447	5,925	6,567	349	1,118
2017		2,718	6,129	7,169	372	654
2018		2,387	5,046	5,955	567	432
2019		1,976	4,461	5,263	751	524
2020		817	3,457	4,316	224	79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나.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 폭력근절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의 수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유관기관이나 민간 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 위원 등의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도에 학교담당검사는 4,134회 합동순찰을 실시하였고, 1,223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392명의 우범학생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395건의 선도강연을 하였다.

〈표 9-2-12〉 연도별 학교담당감사제 활동 실적(2011~2020)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합동순찰	간담회	우범학생 면담인원	선도강연
2011		6,125	1,667	8,971	879
2012		6,632	2,079	15,360	1,904
2013		8,537	1,917	12,750	1,377
2014		7,430	2,259	13,398	1,380
2015		7,464	2,120	8,752	1,501
2016		6,840	2,346	8,310	1,472
2017		8,040	2,387	7,762	1,645
2018		7,472	2,911	7,189	979
2019		8,431	2,130	5,587	1,595
2020		4,134	1,223	3,392	395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소년이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사랑위원에게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였고,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 방법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歸住處)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 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돌아가게 할 곳이 적당하지 않은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20년에는 1,315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특히 단순 기소유예에 비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검찰단계에서도 일정한 개입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2-13〉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2011~2020)

(단위 : 명, %)

연도	구분	소년사건 처리인원(A)	기소유예(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C/B×100)
2011		104,201	41,720	1,363	3.3
2012		118,714	44,349	5,812	13.1
2013		101,148	34,866	4,548	13.0
2014		87,854	28,759	3,473	12.1
2015		88,733	28,333	3,413	12.0
2016		82,277	26,558	3,409	12.8
2017		84,030	25,416	3,495	13.8
2018		75,150	20,237	3,031	15.0
2019		75,197	19,157	3,000	15.0
2020		72,344	15,952	1,315	8.2

자료 : 1)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기존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 유예 이외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육’, ‘분노 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년과 1: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다. 2020년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절도가 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280명, 폭력 190명, 교통사범 171명, 재산범죄 127명의 순이었다.

〈표 9-2-1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2013~2020)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폭력행위 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3		4,548	1,015	2,068	12	32	424	345	652
2014		3,473	672	1,477	6	12	375	241	690
2015		3,413	664	1,503	1	23	328	325	569
2016		3,409	521	1,314	3	39	368	353	811
2017		3,495	582	1,422	3	8	515	293	672
2018		3,031	571	1,220	2	16	397	217	608
2019		3,000	539	1,182	4	30	401	230	614
2020		1,315	190	543	0	4	171	127	280

자료 : 대검찰청(2014~2021), 검찰연감.

2019년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16세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7세, 15세, 18세, 19세, 14세 순으로 높았다.

〈표 9-2-1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2013~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3	4,548	649	928	1,122	1,081	607	161
2014	3,473	477	723	874	830	488	81
2015	3,413	341	671	866	780	534	221
2016	3,409	258	492	755	856	643	405
2017	3,495	334	662	877	893	585	144
2018	3,031	329	669	637	655	518	223
2019	3,000	285	541	674	645	573	282
2020	1,315	104	232	319	306	215	139

자료 : 대검찰청(2014~2020). 검찰연감.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을 일부 개정하여 ‘검사결정전조사제도(「소년법」 제49조의2)’를 도입하여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을 진단함으로써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비행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5월 8일부터 학교폭력 등 학생사건에 대한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여,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조건부기소유예 제도 등과 연계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동법 제15조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620호(2008. 6. 3.)에 따라 위탁·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선도교육·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 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2020년 998명으로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73명이었다.

(표 9-2-1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1~2020)

(단위: 명)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 제	취 소
2011		353,564	4,950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	7,900	2,439	269
2014		324,748	5,112	4,360	2,638	255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2018		266,032	2,519	2,011	1,162	112
2019		226,842	1,845	1,373	905	100
2020		206,374	998	977	455	73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3. 법무부의 예방활동

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직원 56명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현재 19개 센터(비직제 1개 기관 포함)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교육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2013년 11월부터 대외명칭을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 학교에서 의뢰)과 초기단계의 비행 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 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표 9-2-17〉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구분	기관명	설립일	교육과정
청소년 꿈키움 센터	부산·대전	2007. 7.	청소년꿈키움센터 ※ 설립일 : 부산(07. 7.), 대전(17. 4.)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솔로몬로파크 ※ 설립일 : 대전(07.7.), 부산 (16.7.) - 법교육 및 법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안산	2007. 7.	
	창원·청주·광주	2007. 7.	
	대구·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2012. 6.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순천·전주·춘천	2013. 11.	- 대안교육
	부산동부·울산·수원	2014. 12.	- 보호자교육
	제주	2016. 5.	- 청소년 심리상담
	천안·의정부	2020. 9.	

주 : 부산·대전센터는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솔로몬로파크 기능 병행.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추진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캠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말 학교폭력 예방캠프,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등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 대안교육 실시

2002년부터 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진단과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장 등이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선도처분 특별교육, ② 「소년법」 제49조의3 제2호에 따라 검찰이 의뢰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③ 「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대안교육명령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명령, ④ 기타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안교육으로는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활 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방식으로 심리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검찰에서 의뢰된 대안교육대상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학교외뢰, 법원의뢰 순이다. 2020년에 총 5,491명이 대안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해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1,184명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되어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이 2,975명, 법원에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774명이다.

〈표 9-2-1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2014	9,563	4,026	4,993	278	266
2015	9,735	4,035	5,123	217	360
2016	11,127	4,824	5,757	255	291
2017	13,578	6,623	5,416	193	1,346
2018	13,801	7,028	4,365	1,090	1,318
2019	13,002	4,930	4,608	2,533	931
2020	5,491	1,184	2,975	774	558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다.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1996년 2월부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심리상담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적성·성격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 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이용한 청소년은 2020년 3,871명이었다.

〈표 9-2-19〉 연도별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7,973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10,868	12,322	3,871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라. 법교육

법교육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

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교육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수어영상 및 디지털 음성서비스를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등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교육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민간 법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전에 법 체험기관인 ‘솔로몬로파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고, 2022년에는 광주에 솔로몬로파크를 준공하여 개소할 예정이다.

마. 보호자특별교육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학교, 법원,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년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20년에 총 3,341명에 대한 보호자 교육이 실시되었고, 그중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는 1,398명, 자원에 의한 경우는 1,943명이었다.

〈표 9-2-20〉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자교육 현황(2014~2020)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의무)	일반위탁소년 보호자(자원)
2014		9,192	1,237	7,955
2015		8,964	1,432	7,532
2016		9,465	1,871	7,594
2017		6,977	1,388	5,589
2018		7,046	2,497	4,549
2019		7,320	3,455	3,865
2020		3,341	1,398	1,94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제3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1. 경찰단계의 사건처리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 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015년부터 청소년 범죄자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 범죄자 수는 64,584명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범이 17,097명, 폭력범이 15,791명, 강력범이 1,903명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강력범죄자 가운데 강간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9-3-1) 청소년 범죄자 유형별 검거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강력범				절도	폭력	특별법범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등				방화
2011		86,643	3,202	12	1,143	1,881	166	32,707	23,797	26,937
2012		107,018	3,243	23	861	2,160	199	37,058	33,351	33,366



연도	구분	계	강력범				절도	폭력	특별법범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등				방화
2013		90,694	3,081	21	616	2,303	141	32,819	22,739	32,055
2014		78,794	2,630	33	414	2,026	157	26,209	20,082	29,873
2015		80,321	2,392	18	448	1,830	96	26,100	20,144	31,685
2016		76,356	2,418	19	316	1,936	147	22,589	20,468	30,881
2017		72,752	2,312	17	243	1,933	119	20,032	21,996	28,412
2018		66,259	2,272	9	215	1,939	109	16,957	20,695	26,335
2019		66,204	2,367	19	361	1,888	99	17,151	19,699	26,987
2020		64,584	1,903	9	321	1,474	99	17,097	15,791	29,793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2. 검찰단계의 사건처리

검찰에서는 경찰로 넘겨받은 청소년사건을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소유에 처분을 하고(「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제1항).

최근 10년간 검찰의 청소년 범죄 처리내역을 보면, 청소년 범죄의 기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불기소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년보호송치 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범죄자 52,062명 중 소년보호송치 42.4%, 기소유에 25.0%, 구공판 9.9%, 구약식 4.2%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낮은 반면에, 기소유에 등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검찰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는 다이버전이나 보호처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 9-3-2〉 연도별 청소년범죄 처리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아동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11	83,060 (10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	86 (0.1)	1,455 (1.8)
2012	102,871 (10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0.0)	-	141 (0.1)	1,686 (1.6)
2013	88,062 (100.0)	8,758 (9.9)	5,293 (6.0)	3,465 (3.9)	47,486 (53.9)	5,925 (6.7)	34,914 (39.6)	202 (0.2)	6,445 (7.3)	29,641 (33.7)	35 (0.0)	2 (0.0)	-	108 (0.1)	2,032 (2.3)
2014	72,964 (100.0)	7,038 (9.6)	4,191 (5.7)	2,847 (3.9)	39,559 (54.2)	5,379 (7.4)	27,601 (37.8)	182 (0.2)	6,397 (8.8)	23,743 (32.5)	50 (0.1)	4 (0.0)	-	130 (0.2)	2,440 (3.3)
2015	56,050 (100.0)	6,252 (11.2)	4,034 (7.2)	2,218 (4.0)	30,198 (53.9)	4,518 (8.1)	19,623 (36.0)	105 (0.2)	5,952 (10.6)	18,216 (32.5)	119 (0.2)	-	-	54 (0.1)	1,211 (2.2)
2016	60,669 (100.0)	6,113 (10.1)	3,755 (6.2)	2,358 (3.9)	32,235 (53.1)	4,815 (7.9)	21,044 (34.7)	136 (0.2)	6,240 (10.3)	20,597 (33.9)	147 (0.2)	-	4 (0.0)	34 (0.1)	1,539 (2.5)
2017	58,218 (100.0)	5,833 (10.0)	3,449 (5.9)	2,384 (4.1)	31,371 (53.9)	4,636 (8.0)	20,108 (34.5)	121 (0.2)	6,506 (11.2)	20,578 (35.3)	136 (0.2)	-	2 (0.0)	29 (0.0)	269 (0.5)
2018	52,278 (100.0)	6,168 (11.8)	3,950 (7.6)	2,218 (4.2)	25,964 (49.7)	4,255 (8.1)	15,939 (30.5)	126 (0.2)	5,644 (10.8)	19,648 (37.6)	131 (0.3)	-	3 (0.0)	27 (0.1)	337 (0.6)
2019	52,973 (100.0)	6,498 (12.3)	4,308 (9.1)	2,190 (4.1)	25,102 (47.4)	4,729 (8.9)	15,129 (28.6)	114 (0.2)	5,130 (9.7)	20,885 (39.4)	177 (0.3)	-	4 (0.0)	26 (0.0)	281 (0.5)
2020	52,062 (100.0)	7,349 (14.1)	5,163 (9.9)	2,186 (4.2)	21,766 (41.8)	4,478 (8.6)	13,032 (25.0)	83 (0.2)	4,173 (8.0)	22,053 (42.4)	180 (0.3)	-	-	22 (0.0)	225 (0.4)

주 : 2020년 검찰처리 총 인원에서 보완수사요구 467명 제외.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 및 처우

가.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였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 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 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 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11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수용인원은 6,682명이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20년 4,297명을 기록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9-3-3〉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수용인원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4,955	4,297
1일 평균 수용인원	456	464	471	471	436	398	443	431	396	33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법무부(2021), 법무연감.

다. 처우·교육활동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 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 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육·독서지도·레크리에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탁 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단이 분류심사에서 중요요소가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인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증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인찰,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 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4,267명이었다.

〈표 9-3-4〉 연도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1~202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007	5,435	6,357	5,543	5,804	5,116	5,614	5,385	4,755	4,267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마. 소년심판절차 개선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오던 분류심사 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2003년 7월에 새롭게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청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대상청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의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소년의 비행성을 없애기 위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모든 소년사건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처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사의 소년사건 심리 시 심층적·과학적 판단에 기여하며, 상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보호자에게 자녀의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상청소년에게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 등을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조사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7개의 대행소년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에서 하고 있으며, 2020년 2,589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표 9-3-5〉 연도별 청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2011~2020)

(단위: 명)

연도	구분	합계	분류심사	상담조사	결정전 조사
2011		11,429	6,007	5,296	126
2012		10,590	5,435	5,148	7
2013		10,739	6,357	4,382	-
2014		9,804	5,543	4,261	-
2015		9,924	5,805	4,119	-
2016		9,134	5,116	3,993	25
2017		11,222	5,614	4,179	-
2018		8,609	5,385	3,224	-
2019		7,176	4,755	2,421	-
2020		6,855	4,266	2,589	-

주 : 상담조사 인원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원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2)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결과 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 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의 일환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4. 소년법원에서의 사건처리

소년법이나 법원 조직상 소년법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를 일컫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외에, 의정부·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이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꾸준히 가정법원이 확대되어 왔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20년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인원은 38,590명으로, 검사로부터 송치된 인원이 24,872명(6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된 인원이 11,063명(28.6%),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인원이 1,362명(3.5%), 형사법원에서 송치된 인원이 1,023명(2.7%)이었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접수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여 2020년 270명(0.7%)을 차지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9-3-6〉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2011~2020)

(단위 : 명, %)

연도 \ 구분	계	법원 송치	검사 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법원 소년부에서 이송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
2011	46,497 (100.0)	2,417 (5.2)	32,803 (70.5)	9,401 (20.2)	1,818 (3.9)	58 (0.1)
2012	53,536 (100.0)	2,848 (5.3)	36,133 (67.5)	12,799 (23.9)	1,588 (3.0)	168 (0.3)
2013	43,035 (100.0)	2,695 (6.3)	29,284 (68.0)	9,500 (22.1)	1,368 (3.2)	188 (0.4)
2014	34,165 (100.0)	1,610 (4.7)	24,110 (70.6)	7,104 (20.8)	1,146 (3.4)	195 (0.6)
2015	34,075 (100.0)	1,494 (4.4)	24,527 (72.0)	6,756 (19.8)	989 (2.9)	309 (0.9)
2016	33,738 (100.0)	1,357 (4.0)	24,319 (72.1)	6,788 (20.1)	915 (2.7)	359 (1.1)
2017	34,110 (100.0)	1,124 (3.3)	24,014 (70.4)	7,743 (22.7)	876 (2.6)	353 (1.0)
2018	33,301 (100.0)	954 (2.9)	22,578 (67.8)	8,335 (25.0)	1,027 (3.1)	407 (1.2)
2019	36,576 (100.0)	876 (2.4)	23,511 (64.3)	10,460 (28.6)	1,285 (3.5)	444 (1.2)
2020	38,590 (100.0)	1,023 (2.7)	24,872 (64.5)	11,063 (28.6)	1,362 (3.5)	270 (0.7)

자료 : 법원행정처(2012~2021). 사법연감.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보호처분 비율은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 불처분결정률은 7.5%, 심리불개시율은 20.7%인 반면, 보호처분을 결정한 비율은 66.8%였다.



〈표 9-3-7〉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검사송치	기타
2011	48,713 (100.0)	35,072 (72.0)	2,579 (5.3)	7,905 (16.2)	621 (1.3)	2,536 (5.2)
2012	50,771 (100.0)	36,150 (71.2)	2,278 (4.5)	9,209 (18.1)	693 (1.4)	2,441 (4.8)
2013	45,393 (100.0)	31,952 (70.4)	2,663 (5.9)	8,065 (17.8)	534 (1.2)	2,179 (4.8)
2014	34,600 (100.0)	24,529 (70.9)	2,543 (7.3)	5,669 (16.4)	456 (1.3)	1,403 (4.1)
2015	35,920 (100.0)	25,911 (72.1)	2,763 (7.7)	5,703 (15.9)	450 (1.3)	1,093 (3.0)
2016	33,142 (100.0)	23,526 (71.0)	2,650 (8.0)	5,547 (16.7)	313 (0.9)	1,106 (3.4)
2017	34,474 (100.0)	24,383 (70.7)	2,986 (8.7)	5,676 (16.5)	370 (1.1)	1,060 (3.1)
2018	34,276 (100.0)	24,494 (71.5)	2,805 (8.2)	5,590 (16.3)	1,082 (3.2)	1,082 (3.2)
2019	34,890 (100.0)	24,131 (69.2)	2,557 (7.3)	6,556 (18.8)	351 (1.0)	1,295 (3.7)
2020	38,293 (100.0)	25,579 (66.8)	2,886 (7.5)	7,948 (20.7)	364 (1.0)	1,516 (4.0)

자료 : 법원행정처(2012~2021). 사법연감.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현재 10가지의 보호처분이 운용되고 있다. 기존에 보호관찰과 병합되었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독립처분으로 활용되고,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단기보호관찰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중 실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은 보호자감호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이다. 2020년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38,293명) 중 보호처분을 받는 비율은 66.8%(25,579명)이다. 보호처분 가운데 50% 이상이 1호 보호자감호위탁과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형태로 받고 있고, 소년원 송치가 6.3% 정도에 이르고 있다. 2020년 소년법원에서 처리한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1·2호 병합처분이 13.8%로 가장 높고, 1·2·4호 병합처분의 비율이 13.1%, 1호 처분이 12.3%로 나타났다.

〈표 9-3-8〉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 현황(2013~2020)

(단위 : 명, %)

구분(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31,952 (100.0)	24,529 (100.0)	25,911 (100.0)	23,526 (100.0)	24,383 (100.0)	24,494 (100.0)	24,131 (100.0)	25,579 (100.0)
1	3,822 (12.0)	2,960 (12.1)	3,771 (14.6)	3,142 (13.4)	3,135 (12.9)	3,104 (12.7)	3,103 (12.8)	3,054 (12.3)
1+2	3,522 (11.0)	2,420 (9.9)	2,609 (10.1)	2,554 (10.9)	2,504 (10.3)	2,963 (12.1)	3,143 (13.2)	3,531 (13.8)
1+2+3	646 (2.0)	445 (1.8)	581 (2.2)	557 (2.4)	727 (3.0)	776 (3.2)	574 (2.4)	776 (3.0)
1+2+4	4,020 (12.6)	3,163 (12.9)	3,696 (14.3)	3,255 (13.8)	3,025 (12.4)	3,022 (12.3)	2,844 (11.8)	3,361 (13.1)
1+2+5	1,496 (4.7)	1,026 (4.2)	803 (3.1)	1,009 (4.3)	969 (4.0)	886 (3.6)	1,048 (4.3)	1,293 (5.1)
1+2+3+4	1,557 (4.9)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62 (5.2)	838 (3.5)	940 (3.7)
1+2+3+5	1,901 (5.9)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5.3)	1,432 (5.6)
1+3	1,297 (4.1)	982 (4.0)	1,133 (4.4)	851 (3.6)	851 (3.5)	754 (3.1)	759 (3.1)	743 (2.9)
1+3+4	1,868 (5.8)	1,844 (7.5)	1,832 (7.1)	1,194 (5.1)	1,086 (4.5)	958 (3.9)	915 (3.8)	940 (3.7)
1+3+5	1,843 (5.8)	1,535 (6.3)	1,082 (4.2)	891 (3.8)	802 (3.3)	754 (3.1)	847 (3.5)	859 (3.4)
1+4	2,746 (8.6)	2,354 (9.6)	2,299 (8.9)	1,923 (8.2)	1,508 (6.2)	1,447 (5.9)	1,517 (6.3)	1,769 (6.9)
1+5	900 (2.8)	742 (3.0)	647 (2.5)	522 (2.2)	505 (2.1)	443 (1.8)	627 (2.6)	467 (1.8)
2	107 (0.3)	70 (0.3)	16 (0.1)	59 (0.3)	159 (0.7)	274 (1.1)	187 (0.8)	294 (1.2)
3	125 (0.4)	92 (0.4)	49 (0.2)	87 (0.4)	67 (0.3)	175 (0.7)	200 (0.8)	208 (0.8)
4	91 (0.3)	63 (0.3)	40 (0.2)	154 (0.7)	270 (1.1)	279 (1.1)	231 (1.0)	264 (1.0)
4+6	22 (0.1)	39 (0.2)	46 (0.2)	33 (0.1)	41 (0.2)	32 (0.1)	52 (0.2)	102 (0.4)

구분(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	41 (0.1)	32 (0.1)	19 (0.1)	27 (0.1)	80 (0.3)	81 (0.3)	109 (0.4)	81 (0.3)
5+6	1,150 (3.6)	834 (3.4)	883 (3.4)	1,063 (4.5)	986 (4.0)	1,229 (5.0)	1,440 (6.0)	1,508 (5.9)
5+8	1,879 (5.9)	1,257 (5.1)	1,316 (5.1)	1,012 (4.3)	1,099 (4.5)	1,194 (4.9)	1,036 (4.3)	1,005 (3.9)
6	13 (0.0)	9 (0.0)	2 (0.0)	5 (0.0)	7 (0.0)	5 (0.0)	5 (0.0)	4 (0.0)
7	149 (0.5)	183 (0.7)	141 (0.5)	105 (0.4)	198 (0.8)	230 (0.9)	269 (0.7)	189 (0.7)
8	3 (0.0)	-	5 (0.0)	3 (0.0)	-	9 (0.0)	25 (0.0)	6 (0.0)
9	1,153 (3.6)	812 (3.3)	794 (3.1)	770 (3.3)	972 (4.0)	842 (3.4)	821 (3.4)	750 (2.9)
10	1,252 (3.9)	813 (3.3)	866 (3.3)	770 (3.3)	756 (3.1)	779 (3.2)	780 (3.2)	823 (3.2)
병과 기타	349 (1.1)	153 (0.6)	83 (0.3)	855 (3.6)	1,724 (7.1)	1,758 (7.2)	1,429 (5.9)	1,180 (4.6)

자료 :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5.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처리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19세 미만 청소년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부송치 처분을 제외하고 부정기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2020년에 종국처리된 소년범 2,841명 중 사형이 선고된 예는 없었고, 무기형과 정기형이 선고된 사례도 없었다. 소년부로 송치되던 인원이 1,419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정기형을 받은 인원이 626명(22.0%), 집행유예를 받은 인원이 367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9-3-9〉 연도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2011~2020)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2011	3,499 (100.0)	-	-	14 (0.4)	492 (14.1)	610 (17.4)	133 (3.8)	24 (0.7)	10 (0.3)	1,958 (56.0)	258 (7.4)
2012	4,422 (100.0)	-	-	7 (0.2)	804 (18.2)	557 (12.6)	118 (2.7)	28 (0.6)	20 (0.5)	2,561 (57.9)	327 (7.4)
2013	4,126 (100.0)	-	-	3 (0.1)	676 (16.4)	407 (9.9)	15 (0.4)	3 (0.1)	12 (0.3)	2,689 (65.2)	321 (7.8)
2014	3,574 (100.0)	-	-	14 (0.4)	634 (17.7)	405 (11.3)	110 (3.1)	15 (0.4)	7 (0.2)	2,082 (58.3)	307 (8.6)
2015	3,516 (100.0)	-	-	7 (0.2)	630 (17.9)	440 (12.5)	102 (2.9)	18 (0.5)	18 (0.5)	1,981 (56.3)	320 (9.1)
2016	3,242 (100.0)	-	-	1 (0.0)	697 (21.5)	395 (12.2)	94 (2.9)	15 (0.5)	8 (0.2)	1,721 (53.1)	311 (9.6)
2017	2,716 (100.0)	-	1 (0.0)	4 (0.1)	502 (18.5)	386 (14.2)	109 (4.0)	20 (0.7)	19 (0.7)	1,428 (52.6)	247 (9.1)
2018	2,837 (100.0)	-	-	-	626 (22.1)	367 (12.9)	77 (2.7)	14 (0.5)	15 (0.5)	1,419 (50.0)	319 (11.2)
2019	3,036 (100.0)	-	-	4 (0.1)	712 (23.5)	546 (18.0)	78(집유2) (2.7)(0.1)	4 (0.1)	10 (0.3)	1,386 (45.7)	294 (9.7)
2020	2,841 (100.0)	-	-	-	626 (22.0)	367 (12.9)	77(집유4) (2.7)(0.1)	14 (0.5)	15 (0.6)	1,419 (50.0)	319 (11.2)

자료 : 법원행정처(2010~2020), 사법연감.

제4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1. 소년원의 교정교육

가.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공포된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증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 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 및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 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 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 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 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대덕소년원을 ‘대산학교’로 개교하고 8호 처분자의 경우 개방형 단기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대덕소년원을 대전소년원으로 직제상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1일 부터는 청주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여자소년원으로 개칭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 중 8호, 9호 처분 대상자를 청주로 인수 하였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과거의 수용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증원된 감호전담인력(2018년 38명, 2019년 34명, 2020년 42명)을 활용하여 주간 교육 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제4부제)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수용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부산과 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서울, 전주, 청주, 안양 4개 소년원에, 2020년 대구, 대전, 춘천 3개 소년원에 확대 실시하여 전문화된 처우 제공 등으로 교정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표 9-4-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분	기관(학교명)	대 상	교 육 과 정
서울 경기 기 권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한식조리,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女) • 직업능력개발훈련(, 피부미용, 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중부 권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7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재활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女)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호남 권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男)교육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광주소년원 (고령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에너지실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영남 권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강원	춘천소년원 (신춘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디저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제주 권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제주지역男)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나. 보호소년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 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 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 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 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 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0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 수용자가 6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개월 이상자가 394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자가 257명, 3개월 미만자가 232명 순으로 많았다. 평균 수용기간은 2011년 4.66개월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 6.9개월을 차지하였다.

〈표 9-4-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2011~2020)

(단위 : 명, 월)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1,943	1,546
1월 미만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830	16	11
3월 미만	76	125	96	80	62	62	47	64	705	232
6월 미만	649	796	894	769	670	676	777	773	535	652
6월 이상 12월 미만	160	209	232	208	181	189	179	214	300	257
12월 이상	461	589	435	505	375	438	370	447	387	394
평균 수용기간	4.66	4.66	4.90	5.18	4.80	5.35	4.85	5.1	5.6	6.9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보호소년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 추세를 보면 2013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 1,637명을 기록하였다. 1일 평균 수용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 927명을 기록하였다.

〈표 9-4-3〉 연도별 보호소년 수용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수용인원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일 평균 수용인원	1,264	1,390	1,380	1,236	1,112	1,131	1,166	1,078	946	927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다. 소년원 교육

소년원 교육혁신의 결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및 ‘컴퓨터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소년원학생이 각종 수상을 하였으며, 컴퓨터 및 각종 기능 자격을 취득하였다. 최근 10년간 소년원생의 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최근에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훈련분야인 자동차정비, 용접, 헤어 디자인 등의 직종에서 전문기능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소년원생은 총 3,025명이고, 이 중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793명, 일반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838명이었다.

보호소년들이 임시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 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81명이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였다.

소년원에서는 지속적인 교과교육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0년 상급 학교에 진학한 인원은 고등학교 66명, 대학교 64명 등 총 130명이었다.

〈표 9-4-4〉 연도별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2011~202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980	3,125	2,687	3,301	3,106	3,681	4,710	4,762	4,188	3,025
외국어	41	48	-	-	-	-	-	-	-	-
컴퓨터	1,642	1,581	1,292	1,590	1,288	1,415	1,524	1,341	1,181	793
일반기능	670	900	774	947	992	1,238	1,524	1,634	1,478	838
기타	627	596	621	764	826	1,028	1,662	1,787	1,529	1,394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표 9-4-5〉 연도별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취업인원	261	313	273	327	234	423	417	352	303	181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표 9-4-6〉 연도별 상급학교 진학 현황(2011~202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1	137	115	134	154	159	167	165	104	130
대학교	22	45	45	71	91	93	88	86	55	64
고등학교	89	92	70	63	63	66	79	79	49	66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라.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관을 운영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에 16평 규모의 가정관을 신축하여 학생과 가족이 함께 2~3일간 생활하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심리적 안정 하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총 17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보호자 좌담회 93명, 가족합숙제 7명, 1일 생활제 60명, 가정관 면회제 16명이었다.

전국 소년원에서는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원 후 취업 및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취업 알선, 구인업체 방문, 취업후견인 지정 지원,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하고 있다. 2020년에 취업후견인 4명, 취업알선 187명, 산업체 현장실습 14명, 구인업체 방문 12명 등 총 217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이 이루어졌다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기숙사 형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경기를 시작으로 2005년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안양(여자 전용) 등 5개 지역에 추가 설치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주와 춘천지역에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다.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53명이 신규 입주하였고,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찾기,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2020년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입주정원은 총 130명이었고, 12월 31일 현재 91명이 입주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인 YES센터를 신축하였고, 2019년 2월에 YES센터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자동차 정비, 용접, IT, 골프매니지먼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등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여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설립되어 자격증 취득반과 취업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정원은 2020년 기준 40명이었고, 12월 31일 현재 입주인원은 20명이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정원은 20명이나, 12월 31일 현재 입주인원은 12명이다.

마.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하도록 하고, 22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 중인 학생이 교과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입시퇴원 심사를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시퇴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시퇴원생이 임시퇴원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소년원 출원 사유별 인원 현황을 보면, 임시퇴원이 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퇴원이 41.0%였다.

〈표 9-4-7〉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2011~2020)

(단위 : 명, %)

연도	출원사유	계	퇴원	임시퇴원	처분변경 · 취소	기타
2011		2,761 (100.0)	1,790 (64.8)	926 (33.5)	33 (1.2)	12 (0.4)
2012		3,399 (100.0)	2,151 (63.3)	1,195 (35.2)	38 (1.1)	15 (0.4)
2013		3,085 (100.0)	1,919 (62.2)	1,086 (35.2)	60 (1.9)	20 (0.6)
2014		2,608 (100.0)	1,442 (55.3)	1,089 (41.8)	54 (2.1)	23 (0.9)
2015		2,242 (100.0)	1,283 (57.2)	889 (39.7)	56 (2.5)	14 (0.6)
2016		2,216 (100.0)	1,192 (53.8)	946 (42.7)	51 (2.3)	27 (1.2)
2017		2,349 (100.0)	1,329 (56.6)	946 (40.3)	44 (1.9)	30 (1.3)
2018		2,416 (100.0)	1,259 (52.1)	1,069 (44.2)	68 (2.8)	20 (0.8)
2019		2,058 (100.0)	1,060 (51.5)	884 (43.0)	93 (4.5)	21 (1.0)
2020		1,675 (100.0)	687 (41.0)	859 (51.3)	93 (5.6)	36 (2.1)

주 : 기타는 유죄판결, 사망, 이탈 등 인원.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2.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 다만, 소년 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 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 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가. 수용 현황

최근 10년 동안 소년교도소 수형인원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146명이었던 것이 2020년 115명이 수용되어 있다. 최근 청소년 인구 수 감소와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자제 경향으로 인해 수형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표 9-4-8〉 연도별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7	2019	2020
수형인원	114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28	116	115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최근 10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살인·강도 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강간 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소년수형자 중 절도범과 강간범 등이 각각 21명(18.3%), 강도범과 폭력·상해범이 각각 13명(11.3%)이었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표 9-4-9〉 청소년 수형자 죄명별 인원(2011~2020)

(단위 : 명, %)

연도 죄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4 (100.0)	170 (100.0)	152 (100.0)	131 (100.0)	130 (100.0)	150 (100.0)	128 (100.0)	105 (100.0)	116 (100.0)	115 (100.0)
절도	26 (22.8)	42 (24.7)	43 (28.3)	34 (26.0)	26 (20.0)	23 (15.3)	24 (18.8)	17 (16.2)	10 (8.6)	21 (18.3)
사기· 횡령	-	2 (1.2)	1 (0.7)	2 (1.5)	10 (7.7)	2 (1.3)	12 (9.4)	12 (11.4)	9 (7.8)	8 (7.0)
폭력· 상해	5 (4.4)	17 (10.0)	17 (11.2)	5 (3.8)	10 (7.7)	27 (18.0)	4 (3.1)	3 (2.9)	11 (9.5)	13 (11.3)
강간 등	33 (28.9)	54 (31.8)	46 (30.3)	34 (26.0)	27 (20.8)	35 (23.3)	44 (34.4)	24 (22.9)	26 (22.4)	21 (18.3)
강도 등	18 (15.8)	24 (14.1)	16 (10.5)	11 (8.4)	14 (10.8)	19 (12.7)	8 (6.3)	5 (4.8)	14 (12.1)	13 (11.3)
살인	10 (8.8)	11 (6.5)	7 (4.6)	6 (4.6)	5 (3.8)	5 (3.3)	4 (3.1)	4 (3.8)	3 (2.6)	1 (0.8)
과실범	1 (0.9)	2 (1.2)	-	2 (1.5)	2 (1.5)	2 (1.3)	-	1 (1.0)	4 (3.4)	1 (0.8)
기타	21 (18.4)	18 (10.6)	22 (14.5)	37 (28.2)	36 (27.7)	37 (24.7)	32 (25.0)	39 (37.1)	39 (33.6)	37 (32.2)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청소년 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수형자의 형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형, '1년 미만' 징역형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장기징역형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2020년도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35.7%,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10〉 청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11~2020)

(단위 : 명, %)

형명·형기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4 (100.0)	170 (100.0)	152 (100.0)	131 (100.0)	130 (100.0)	150 (100.0)	128 (100.0)	105 (100.0)	116 (100.0)	115 (100.0)
영 고 형	무기	-	-	-	-	-	-	-	-	-	-
	20년 이상	1 (0.9)	2 (1.2)	4 (2.6)	1 (0.8)	-	-	-	1 (1.0)	-	-
	10년 이상	4 (3.5)	5 (2.9)	4 (2.6)	3 (2.3)	2 (1.5)	2 (1.3)	-	-	1 (0.9)	-
	5년 이상	12 (10.5)	13 (7.6)	10 (6.6)	11 (8.4)	12 (9.2)	13 (8.7)	9 (7.0)	13 (12.4)	21 (18.1)	15 (13.1)
	3년 이상	38 (33.3)	44 (25.9)	39 (25.7)	42 (32.1)	48 (36.9)	56 (37.3)	47 (36.7)	33 (31.4)	45 (38.8)	41 (35.7)
	1년 이상	48 (42.1)	94 (55.3)	87 (57.2)	67 (51.1)	56 (43.1)	69 (46.0)	64 (50.0)	55 (52.4)	45 (38.8)	55 (47.8)
	1년 미만	10 (8.8)	12 (7.1)	8 (5.3)	7 (5.3)	11 (8.5)	8 (5.3)	8 (6.3)	2 (1.9)	4 (3.4)	2 (1.7)
	6개월 미만	1 (0.9)	-	-	-	1 (0.8)	1 (0.7)	-	1 (1.0)	-	2 (1.7)
영 고 미	3년 미만	-	-	-	-	-	-	-	-	-	-
	1년 미만	-	-	-	-	-	1 (0.7)	-	-	-	-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나. 출소

청소년수형자는 해당 형기가 종료하면 출소하게 되지만, 형기가 종료하기 전에도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1/3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청소년 수형자 중 가석방된 자의 비율은 2011년 40.8%에서 2015년 22.9%로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3.2%를 차지하였다.

〈표 9-4-11〉 청소년 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2011~2020)

(단위 : 명, %)

연도	석방사유	계	가석방	형기종료	기타
2011		157 (100.0)	64 (40.8)	75 (47.8)	18 (11.5)
2012		115 (100.0)	56 (48.7)	45 (39.1)	14 (12.2)
2013		122 (100.0)	53 (43.4)	45 (36.9)	24 (19.7)
2014		124 (100.0)	33 (26.6)	68 (54.8)	23 (18.6)
2015		118 (100.0)	27 (22.9)	78 (66.1)	13 (11.0)
2016		97 (100.0)	31 (32.0)	53 (54.6)	13 (13.4)
2017		113 (100.0)	28 (24.8)	64 (56.6)	21 (18.6)
2018		99 (100.0)	26 (26.3)	38 (38.4)	35 (35.4)
2019		97 (100.0)	35 (36.1)	43 (44.3)	19 (19.6)
2020		81 (100.0)	35 (43.2)	37 (45.7)	9 (11.1)

주 : 1) 집행종료결정은 단기만료 후 장기도래 전의 석방을 의미함.
 2) '기타'는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사망, 노역종료 등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3. 보호관찰소의 교정교육

가. 개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 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 대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우수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조직

보호관찰행정 중앙조직으로는 인사 및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있다. 2020년 말 기준 18개 보호관찰소, 39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5개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다.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청소년 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20년 현재 청소년 보호관찰 인원은 39,291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중 청소년 보호관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17.3%를 차지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9-4-12〉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도 \ 구분	전체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비율
2011	179,767	70,549	40.0
2012	178,199	71,760	40.3
2013	175,318	65,815	37.5
2014	184,362	57,064	31.0
2015	199,713	51,978	26.0
2016	227,141	49,687	21.9
2017	240,073	47,493	20.0
2018	227,733	45,364	19.9
2019	223,072	40,587	18.2
2020	227,020	39,291	17.3

자료 : 법무부(2012~2021), 법무연감.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을 보면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의 한 유형으로 실시되는 선도위탁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20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처분이 51,28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시퇴원이 15,293명, 치료감호법에 의한 보호관찰이 4,403명, 선도위탁이 1,821명, 집행유예 796명 순이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임시퇴원자에게 실시되는 보호관찰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9-4-13〉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형법			소년법		가정 폭력법	성 폭력법	성 매매법	선도 위탁	성 구매자 교육	벌금 미납	아청법	아동 학대법	치료 감호법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보호 처분	임시 퇴원									
2011	70,546	-	1,679	44	60,116	1,650	3	236	11	6,694	9	50	54	-	-
2012	71,756	1	1,365	51	61,850	2,009	10	193	1	6,172	9	34	61	-	-

구분 연도	계	형법			소년법		가정 폭력법	성 폭력법	성 매매법	선도 위탁	성 구매자 교육	벌금 미납	아청법	아동 학대법	치료 감호법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보호 처분	임시 퇴원									
2013	65,813	1	1,073	45	55,724	2,091	13	153	1	6,585	10	50	67	-	-
2014	57,064	-	1,025	28	45,831	2,043	28	145	5	7,774	3	85	97	-	-
2015	51,978	1	801	21	42,318	1,732	31	118	7	6,714	2	91	142	-	-
2016	49,687	2	731	12	38,967	1,726	61	105	8	7,864	17	67	122	5	-
2017	47,493	5	709	13	38,675	1,807	55	107	12	5,894	11	68	129	5	3
2018	45,364	6	666	12	58,302	16,271	40	104	12	4,173	5	56	173	3	5
2019	40,587	3	755	19	34,842	1,787	61	127	7	2,750	3	37	185	3	3
2020	39,291	1	796	17	51,287	15,293	48	114	4	1,821	3	26	172	1	4,403

자료 : 법무부(2012~2021). 법무연감.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법정 준수사항¹⁾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대상자, 주요 대상자, 집중 대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 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 전담 직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특화된 처우와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 변경,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또는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33조제4항). 2020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봉사명령은 6,292명에게 실시되었는데, 이 중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부과받은 청소년은 4,004명, 사회봉사명령만 단독으로 명령받은 청소년은 2,288명이었다.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소년법」 제33조제4항). 2020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집행된 인원은 총 6,724명이었는데, 이 중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된 청소년은 4,143명이었고, 수강명령만 단독으로 명령받은 청소년은 2,581명이었다.



〈표 9-4-14〉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1		300	255	45	139	114	25
2012		10,347	7,482	2,865	13,792	9,339	4,453
2013		10,606	7,291	3,315	10,176	7,088	3,088
2014		9,442	6,017	3,425	7,297	4,991	2,306
2015		8,677	5,641	3,036	6,056	4,250	1,806
2016		7,616	4,973	2,643	5,587	3,999	1,588
2017		8,321	5,465	2,856	6,139	4,446	1,693
2018		7,845	5,111	2,734	5,952	4,151	1,801
2019		6,787	4,359	2,428	5,182	3,355	1,827
2020		6,292	4,004	2,288	6,724	4,143	2,581

자료 : 법무부(2012~2021), 법무연감.

마.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판결전조사는 법원이 형사 피고인(성인 및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판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 제도는 보호 관찰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판결전조사는 2014년 676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384건 실시하였다.

판결전조사 이외에도 법원은 「소년법」 제12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해 결정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즉, 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처분의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신설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2). 청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결정전조사는 2014년 8,154건에서 2020년 7,644건으로 감소하였다.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한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교정 교육자료와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 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소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소년원에 의뢰된 환경조사는 2014년 1,488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1,351건으로 나타났다.

〈표 9-4-15〉 연도별 청소년 대상 판결(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 현황(2014~2020)

(단위 : 건)

구분 \ 연도	판결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환경조사
2014	676	8,154	5,818	1,488
2015	698	8,847	3,553	1,486
2016	592	8,046	3,761	1,473
2017	476	7,795	2,967	1,851
2018	513	8,601	1,225	1,472
2019	557	7,578	528	1,430
2020	384	7,644	642	1,351

주 : 법원 결정전조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전조사를 말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제10부 요약

제10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포함된다.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그리고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시설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시설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단체 관련기관 종사자를 총칭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친 자이다. 지속적인 청소년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을 기준으로 누적된 청소년지도자 양성 인원은 청소년지도사는 총 62,337명, 청소년상담사는 총 30,313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단체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으며, 행정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등이 존재한다. 그 중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있으며, 청소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청소년정책 평가 및 자문·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원에 청소년 관련 학과나 전공을 둔 학교는 2021년 현재 전국 13개 시·도, 총 56개교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협의체로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연구개발기관 간 정보 및 학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자 세계청소년 연구개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설립되어 2021년 현재 11개국 18개 기관 및 1개 국제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정책 본예산은 약 2,344억 원이며, 추경은 약 2,357억 원으로 본예산에서 약 13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 예산은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시설

제2장 청소년지도자

제3장 청소년 단체

제4장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제5장 청소년 관련 연구·개발기관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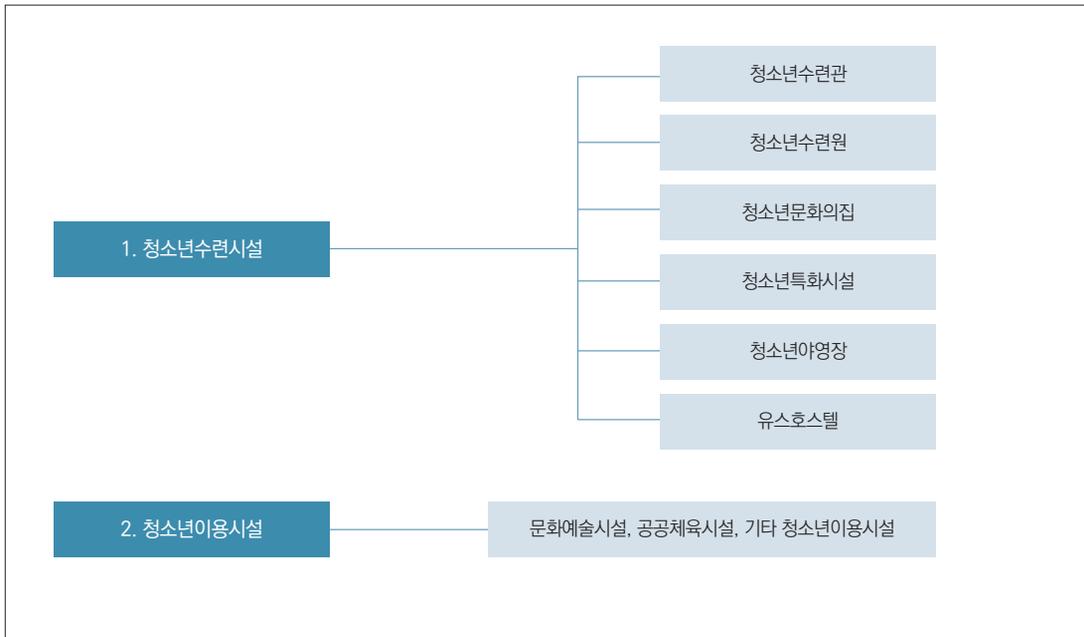
10

제1장 청소년시설

1.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0-1-1]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가. 청소년수련시설

1)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시설과 역할에 따라 구분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 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813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13	195	314	154	33	103	14
공공	622	193	310	62	19	25	13
민간	191	2	4	92	14	78	1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13	195	314	154	33	103	14
서울	70	32	23	3	0	4	8
부산	22	8	9	3	1	1	0
대구	19	5	8	2	0	2	2
인천	20	8	6	2	0	4	0
광주	16	5	9	1	0	0	1
대전	14	4	8	2	0	0	0
울산	12	3	7	1	1	0	0
세종	5	2	3	0	0	0	0
경기	166	38	73	32	8	14	1
강원	76	16	33	13	3	10	1
충북	43	6	15	17	1	4	0
충남	48	11	15	12	3	7	0
전북	57	11	22	13	3	7	1
전남	58	9	23	13	5	8	0
경북	62	16	18	13	2	13	0
경남	75	18	18	23	4	12	0
제주	50	3	24	4	2	17	0

주 : 국립청소년시설(5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라북도 김제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수련시설의 설치

가)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국립청소년 해양센터’를 건립·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를 준공하여 2022년 개원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내(동곡)에 부지 540,641㎡, 연면적 35,401㎡ 내외 규모로 약 6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 수련 시설로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부지 483,818㎡, 연면적 22,348㎡ 규모에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우주분야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우주체험 활동의 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부지 320,757㎡, 연면적 13,711㎡ 규모의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을 약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농업생명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생명과학·농업 기술·생태환경의 특화된 체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부지 38,806㎡, 연면적 11,893㎡ 규모의 농·생명 실험시설 등을 약 2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해양환경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해양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부지 50,169㎡, 연면적 13,664㎡ 규모의 해양환경체험시설 등을 약 372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는 산림생태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에너지, 환경, 산림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장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에 부지 106,222㎡, 연면적 8,572㎡ 규모의 온실체험관, 환경실험실 등을 약 2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7월에 준공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많은 생활권 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으로 건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2019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신규건립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지원하여, 2017년도에는 51개소 신규건립, 79개소 기능보강, 2018년도에는 49개소 신규건립, 74개소 기능보강, 2019년에는 42개소 신규건립, 70개소 기능보강을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 수련시설 설립 사전검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입지조건이나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각각 5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수련시설 운영지원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옹벽,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2014년 7월부터는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에 따라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 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가 의무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제19조의2)되었다.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련 전문 기관과 연계한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사항에 대하여

시설 종류별 2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청소년야영장)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시설 붕괴 우려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리·감독 주체의 안전관리와 수련시설 운영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유지되고 있다.

나. 청소년이용시설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 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 「과학관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⑤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⑧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 권장 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가)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나) 과학관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 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다) 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6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가.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2003년 9월부터 운영된 ‘청소년보호 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가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는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 center)를 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1년 「청소년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문적·효과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설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2014년 8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따라 1주, 2주, 3주, 4주 과정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집단상담, 가족상담 및 대안활동, 관계증진활동 등을 통해 참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기숙형 청소년치료재활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2012년 10월 경기도 용인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2021년 11월 개원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기과정(디딤과정)은 12주간이며 전문상담, 심리치료, 대안교육, 진로탐색 및 대인관계 기술 등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보호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이 있다. 그리고 상담 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있다.

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1)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청소년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유형에 따라 일시 7일 이내, 단기 3개월(최장 9개월) 이내, 중장기 3년(필요시 1년 연장)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2년 최초로 서울 YMCA에 청소년쉼터를 설치·지원하였으며,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21년 국가에서는 전국 총 134개소 쉼터의 운영을 지원 중이며,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긴급구조 및 초기개입으로 신속한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는 거리상담 전문인력 및 야간 시간대 청소년의 연계 의뢰 및 자해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야간보호상담원을 배치·지원하고 있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여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립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2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2018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총 4개소에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 현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에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 시설에서는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보호, 자립지도, 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거주형 치유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입교대상자는 ADHD, 우울증, 불안장애, 품행장애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만 9~18세 청소년이고,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원 이후 2021년까지 총 7,509명의 청소년이 장·단기 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20년 197명, ’21년 251명), 이중 상당수가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고 문제행동이 감소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를 추가 개원하여 2021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는 복합시설로서 운영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역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호남권역에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1개소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설계비)을 반영하고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6년 11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그동안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위해 민간 차원(일명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시설이 운영되어 왔는데, 법적근거의 마련을 통해 해당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되었고, 2019년에는 최초 국비 확보를 통해 종사자 대상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에 총 15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처분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지원, 심리 지원, 학업·진로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호 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며, 향후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운영 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6278~9

제2장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 전문 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21년까지 총 62,337명이 배출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26,364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등급	응시자격 기준
3급 청소년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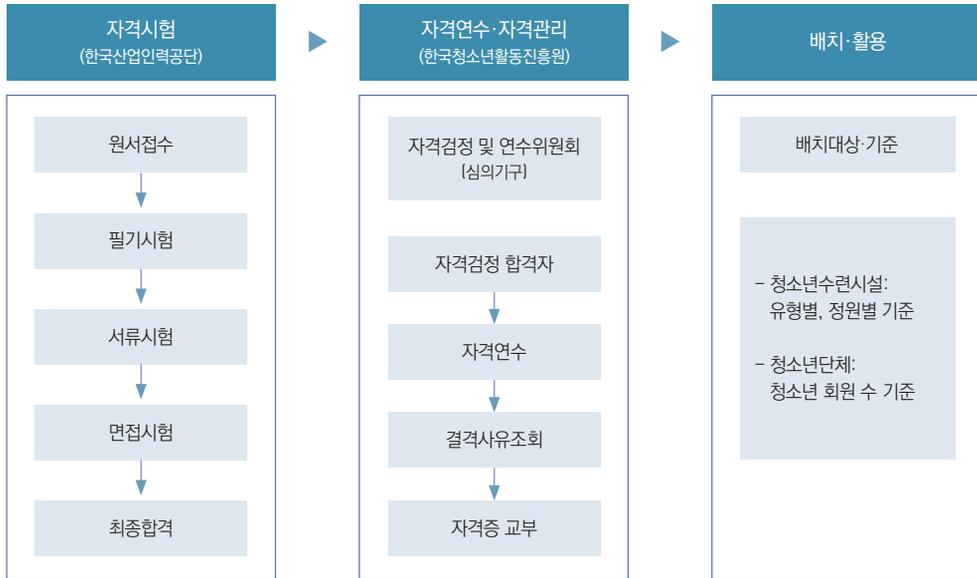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3항 관련).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기준 중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21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2,151명, 2급 청소년지도사 45,089명, 3급 청소년지도사 15,097명 등 총 62,337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21년도의 경우 총 4,317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데 이 중 여성이 3,065명으로

7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179명, 2급은 3,404명, 3급은 734명이었다. 연도별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계	1급		2급		3급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62,337	2,151	3.4%	45,089	71.8%	15,097	24.8%	18,215	29.2%	44,122	70.8%
2021	4,317	179	4.1%	3,404	78.9%	734	17.0%	1,252	29.0%	3,065	71.0%
2020	4,245	107	2.5%	3,294	77.6%	844	19.9%	1,172	27.6%	3,073	72.4%
2019	3,929	135	3.4%	2,966	75.5%	828	21.1%	1,114	28.4%	2,815	71.6%
2018	3,872	64	1.7%	3,024	78.1%	784	20.2%	1,092	28.2%	2,780	71.8%
2017	3,781	51	1.3%	3,032	80.2%	698	18.5%	1,032	27.3%	2,749	72.7%
2016	4,096	76	1.9%	3,346	81.7%	674	16.5%	1,137	27.8%	2,959	72.2%
2015	4,062	28	0.7%	3,275	80.6%	759	18.7%	1,062	26.1%	3,000	73.9%
2014	106	-	-	62	58.5%	44	41.5%	25	23.6%	81	76.4%
2013	3,837	41	1.1%	3,041	79.3%	755	19.7%	935	24.4%	2,902	75.6%
2012	3,262	8	0.2%	2,502	76.7%	752	23.1%	620	19.0%	2,642	81.0%
2011	3,051	82	2.7%	2,262	74.1%	707	23.2%	606	19.9%	2,445	80.1%
2010	3,295	53	1.6%	2,374	72.0%	868	26.3%	634	19.2%	2,661	80.8%
2009	2,931	34	1.2%	2,165	73.9%	732	25.0%	556	19.0%	2,375	81.0%
2008	2,744	27	1.0%	2,086	76.0%	631	23.0%	463	16.9%	2,281	83.1%
2007	909	31	3.4%	695	76.5%	183	20.1%	295	32.5%	614	67.5%
2006	1,248	90	7.2%	792	63.5%	366	29.3%	505	40.5%	743	59.5%
2005	1,392	31	2.2%	456	32.8%	905	65.0%	391	28.1%	1,001	71.9%
2004	1,317	74	5.6%	663	50.3%	580	44.0%	440	33.4%	877	66.6%
2003	1,370	90	6.6%	700	51.1%	580	42.3%	510	37.2%	860	62.8%
2002	1,429	117	8.2%	837	58.6%	475	33.2%	577	40.4%	852	59.6%
2001	1,583	97	6.1%	990	62.5%	496	31.3%	700	44.2%	883	55.8%

연도별	계	1급		2급		3급		남		여	
		인원	비율								
2000	988	113	11.4%	585	59.2%	290	29.4%	464	47.0%	524	53.0%
1999	868	128	14.7%	530	61.1%	210	24.2%	439	50.6%	429	49.4%
1998	593	120	20.2%	280	47.2%	193	32.5%	302	50.9%	291	49.1%
1997	635	131	20.6%	314	49.4%	190	29.9%	375	59.1%	260	40.9%
1996	341	47	13.8%	193	56.6%	101	29.6%	195	57.2%	146	42.8%
1995	715	101	14.1%	361	50.5%	253	35.4%	411	57.5%	304	42.5%
1994	708	96	13.6%	375	53.0%	237	33.5%	444	62.7%	264	37.3%
1993	713	-	-	485	68.0%	228	32.0%	467	65.5%	246	34.5%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9

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 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9

마.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역량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2017년 1월,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개정(2017. 1. 1. 시행)으로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청소년정책 및 권리교육, 성평등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현장에 필요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9

3. 청소년상담사

가.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초·중·고·대학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 대상 병원, 일반 청소년 관련 사업체, 근로 청소년 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 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 : 1) 상담 실무경력에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은 1급 5과목, 2급과 3급은 각각 6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를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로 본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택	•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택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택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주 :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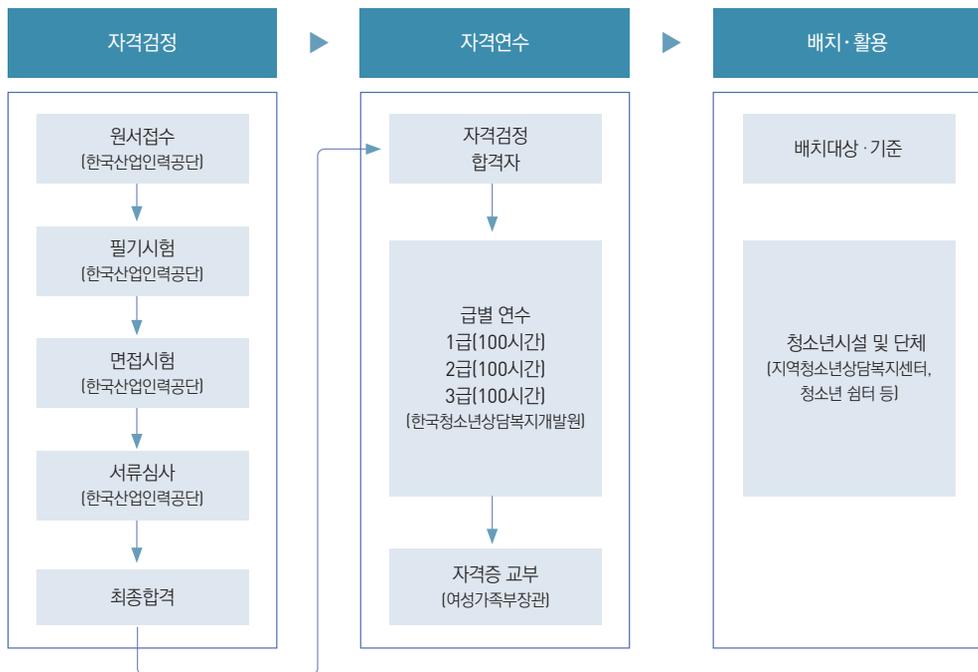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4.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이상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활용된다.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은 청소년 상담관련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급·2급·3급 모두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연수 형태는 급별 책무에 맞는 질적 교육을 위하여 이론, 세미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등급	연수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수퍼비전 • 청소년문제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위기개입II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과정과 기법 • 청소년 위기개입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상담 • 청소년 진로·학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상담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개인상담 • 청소년 상담 현장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집단상담 • 청소년 발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매체상담

자료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별표 5.

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총 20회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969명, 2급 10,940명, 3급 18,404명으로 총 30,313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8	99	22	271	37	247	684
2004	4	17	6	84	11	92	214
2005	5	16	21	150	19	132	343
2006	6	24	17	154	10	196	407
2007	0	1	11	166	17	279	474
2008	6	41	23	171	39	411	691
2009	3	12	20	219	56	461	771
2010	1	13	12	128	21	311	486
2011	1	18	16	282	27	391	735
2012	3	26	31	304	65	863	1,292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13	3	9	17	208	94	896	1,227
2014	3	12	39	370	142	1,416	1,982
2015	9	43	48	516	135	1,396	2,147
2016	5	34	74	756	239	1,902	3,010
2017	10	78	98	944	193	1,401	2,724
2018	15	94	84	703	193	1,322	2,411
2019	17	70	155	1,438	223	1,400	3,303
2020	20	159	175	1,649	213	1,247	3,463
2021	9	75	150	1,408	351	1,956	3,949
계	128	841	1,019	9,921	2,085	16,319	30,313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라.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별표 5.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된 청소년 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마.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3장 청소년 단체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는 “국제 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청소년단체의 상호연락과 제휴 및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로 창립되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유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및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1966년 8월 10일에는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 WAY)’에 가입 하였으며, 1972년 8월 15일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 AYC)’의 창설멤버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청소년육성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 제정 등 청소년정책이 추진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2005년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수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9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64개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262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26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287만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단체 가입은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신청하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WAY, AYC, UN Youth Unit, AUN 등) 활동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 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우수 청소년단체와 모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 국제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관리, 기타 청소년 및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회원단체, 유관기관,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정책토론회 등 관련 활동에 진력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소속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국내·외 연수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분야 정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특히 청소년학과목의 기본·전문지식 습득과 청소년지도자의 교양 함양을 위해 2017년부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이버 평생교육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연간 사업실적을 망라한 사업 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등 홍보·출판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23개 회원단체를 선정하여 단체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제17회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성 모색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단체별 활성화방안 및 활동결과를 결과보고회(12. 23, 온라인)를 통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국제기구의 정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영상회의 등을 활용한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통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내·외 청소년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유스호스텔인 ‘국제 청소년 센터’를 2000년에 개원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개최하고 있고, 이 외에도 기업 및 기관의 교육연수 장소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청소년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s)’는 전국의 800여 개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1989년 10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창립하였다. 1994년 6월에 사단법인(문화체육관광부)으로 승인받았으며, 2002년도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였으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명칭을 정하여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 의거 2005년 9월에 특수법인(국가청소년위원회)으로 재출범하였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14개소)와 시설유형별협의회(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지원,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사업 및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사업 개발·운영지원,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실천 방안 수립,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협회 구성 및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 수용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지원,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운영 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간담회 개최 및 홍보,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사업과 국제교류사업, 청소년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지도자 양성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설간의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오픈강좌 등 청소년수련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책 개발 및 추진 체제 구축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이 직접 자문·평가·참여토록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및 사례 발표,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구성·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대표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 안전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국가 성장 동력이 됨은 물론, 그들과 함께 땀 흘려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6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4장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 설치 경위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청소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체육부의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 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 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활동하여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라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능(육성 및 보호)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 설치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에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

청소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3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여성부의 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2010년 1월 18일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 사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가족정책 및 청소년 육성·보호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등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보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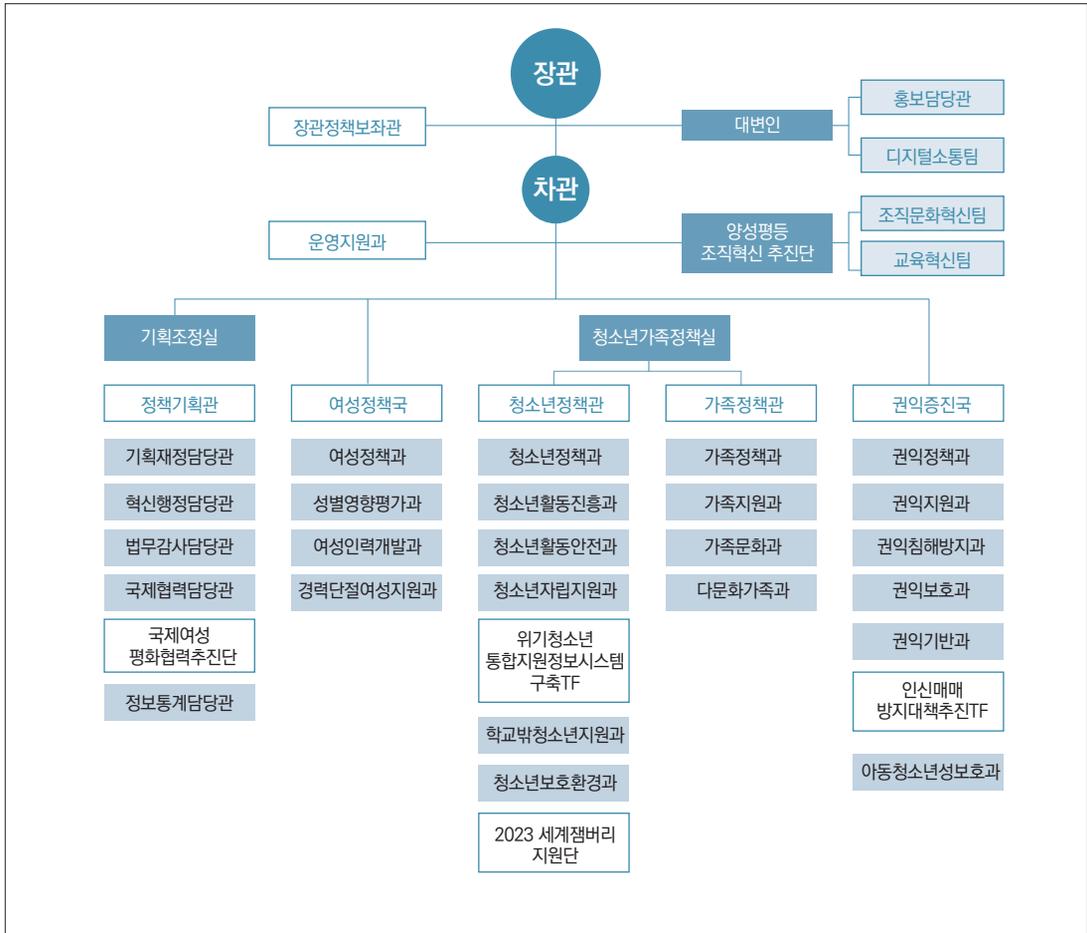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¹⁾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www.mogef.go.kr.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구분	내용
청소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감독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청소년활동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축제, 동아리,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관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감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공개에 관한 사항 •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감독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구분	내용
청소년자립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감독 •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밖청소년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소년보호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악영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신·변종 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 •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유도 및 평가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 종합 점검·관리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2023 세계잼버리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설립 준비 • 세계잼버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협업 • 세계잼버리 6대 유치공약(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등) 추진 • 세계잼버리 홍보 및 붙임 조성 • 세계잼버리 영내의 프로그램 개발·지원

주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조직은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청소년 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2023 세계잼버리 지원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 정책실 청소년 정책관'의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단위: 명)

직급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	1	5	3	19	16	7	3	2	58

자료: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상의 정책 영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4-3〉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1. 청소년 참여 확대	1-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1-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전 부처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2-1.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2.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2-3. 아동·청소년 여가권 신장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1-2-4.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1-2-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1-3-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1-3-2. 양성평등 의식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1-3-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2-1-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2-1-3. 과학기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2-1-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여성가족부
	2-2.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2-2-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2-2-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2-2-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2-2-4.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통일부
		2-2-5.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2-3. 청소년 진로교육 체계 강화	2-3-1.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2-3-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2-3-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2-3-4.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3-5.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1-1.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3-1-2.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3-1-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1-4.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부
3-1-5.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2-2.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2-3.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2-4.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3-2-5.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3-2-6.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2-7.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3-3-1.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3-2.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3-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4-1-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4-1-3.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여성가족부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4-2-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4-2-3. 청소년 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여성가족부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4-3-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4-3-2.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부처별 청소년 업무의 특성을 보면 ‘부’단위 기관에서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정책 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청소년 관련 시·도 행정조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구분되어 추진되던 아동·보육·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2010년 1월에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7개 시·도의 청소년 관련 행정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 업무 연계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10-4-4〉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현황

구분	담당 실·국	청소년 분야
서울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부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대구	여성청소년교육국	청소년과
인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광주	여성가족국	교육청소년과
대전	청년가족국	교육청소년과
울산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종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경기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강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충북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전남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경북	아이여성행복국	아이세상지원과
경남	여성가족아동국	아동청소년과
제주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 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충북을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구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구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서울	심의	강원	심의
부산	심의	충북	미설치('22. 1.1~) 구성·운영
대구	심의	충남	심의
인천	심의	전북	심의
광주	심의	전남	심의
대전	심의	경북	심의
울산	심의	경남	심의
세종	심의	제주	심의
경기	심의	-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2021. 12. 31. 기준).

5. 정부 산하기관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그리고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여 2021년 말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남 고흥),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북 영덕) 총 5개소의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각 원별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1급, 2급, 3급)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 연수와 함께 현직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연수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 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청소년활동을 조성하며, 수련·참여·교류·권리 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9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KYCI)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관계자 회의, 지도·지원 등을 실시하고,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청소년 문제들을 분석·연구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에 대한 증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하고 심각해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청소년 유관 기관에 보급·운영하는 등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청소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의 전문화, 청소년 상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위탁 운영하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친구의 문제해결을 돕는 또래상담자 양성, 건강한 청소년 성장에 목적을 둔 인성 및 품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이나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학교복귀,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내 학대,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조기발견하여 생활보호, 심리상담, 학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인터넷·스마트폰치유캠프(11박 12일, 중·고생 대상), 가족치유캠프(2박 3일, 초등생 및 보호자 대상)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을 위탁 운영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상담·치료, 대안교육, 자립지원 등의 장·단기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 등의 전문상담과 사이버 상담 등 청소년상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
-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3

제5장 청소년 관련 연구·개발기관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 설립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은 「청소년육성법」 제19조에 의거하여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으로 설립되어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해오고 있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 및 개편 되었고,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로 소속이 이관되었고, 2007년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청소년정책평가 및 자문·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분야의 중추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및 이론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둘째, 청소년정책 연구 및 평가·분석을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 셋째, 국내·외 교류협력과 결과 홍보를 통하여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이와 같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에 따른 주요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 정책 수립의 시제열적 기초 자료를 축적한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자문 등을 지원한다. 넷째, 국내·외 청소년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다섯째, 청소년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정책연구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나. 조직 및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계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및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영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부서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3실 1국 1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5년 초반에는 청소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2009년에는 1본부 1국 4실 5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기획조정



본부에 연구기획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자격검정팀 등 3팀으로, 감사실 외에 청소년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실, 통계조사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로, 사무국에 총무팀과 경리팀 등 2팀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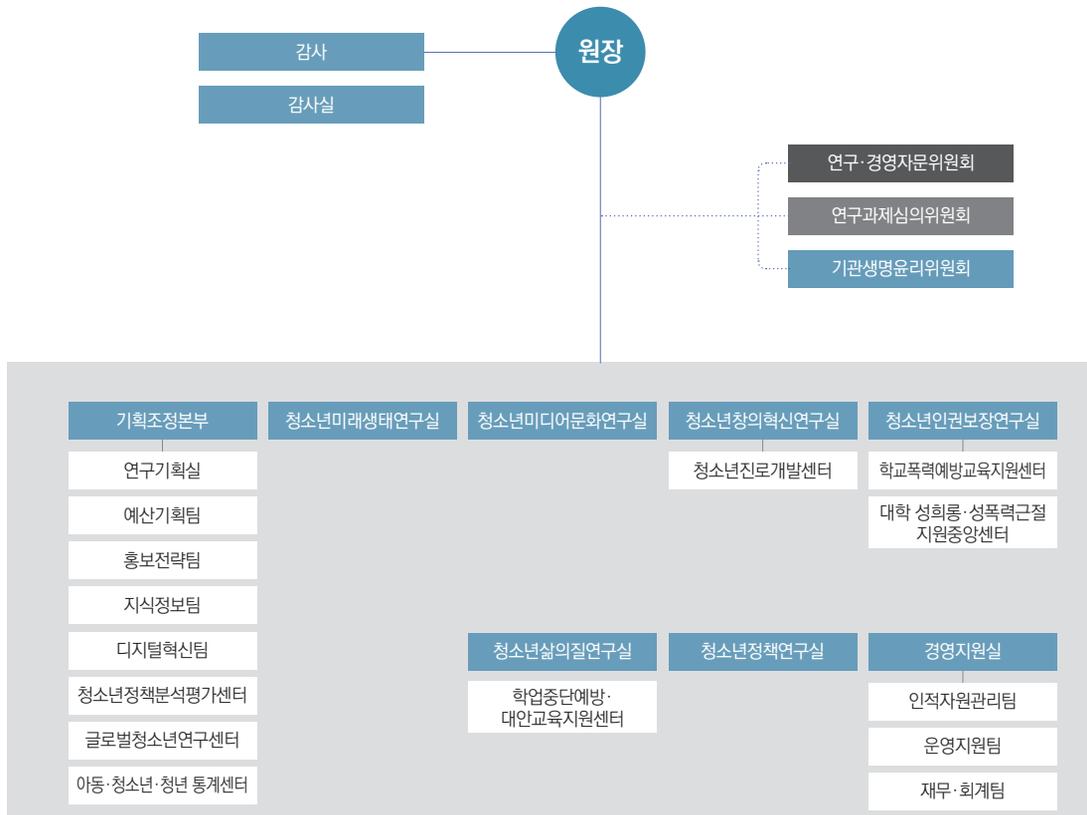
이후 201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실적 분석·평가를 위해 ‘청소년 정책분석평가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에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015년에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를 설치하였다. 연구실의 경우 2012년 활동·역량 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로 개편하였고, 2015년에는 현안정책전략실을 신설 하였으며 2016년에는 활동·참여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자립·역량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의 4개 연구실로 개편하였다. 기획조정본부는 2011년에 연구기획·대외협력팀과 예산기획·성과 관리팀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정보자료전산보안팀이 추가되었다. 2016년에는 연구·성과 기획팀, 예산기획팀, 현안·협력팀, 학술·정보팀의 4팀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2017년에는 부원장 직제가 신설되면서 기획조정본부는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었고, 원내 통합조사 등 기타 통계·기초조사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계아카이브센터’가 신설되었다. 또한, ‘동북아 청소년분석센터’는 연구 대상을 동북아지역으로 특정하지 않고, 확대하기 위해 ‘청년연구센터’로 센터명이 변경되었으며,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업중단예방센터’와 ‘대안교육지원 센터’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2018년에는 1본부 5실 5센터로 다시 개편되었다. 부원장 제도가 폐지되고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 본부로 승격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기획팀을 연구조정팀과 성과관리팀으로 분리하였고, 글로벌 역량 강화차원에서 현안·협력팀을 대외·국제협력팀으로 변경하였으며, 패널조사 강조를 위해 통계·기초연구실을 통계·패널연구실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학업중단예방센터’와 ‘대안교육 지원센터’는 통합되어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5월부터 지속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가 신설 되어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1본부, 7실, 6센터로 개편되었다. 기획조정본부의 연구기획팀은 연구기획실로 승격 되었으며, 경영지원실의 총무·인사팀은 총무팀과 인사팀으로 분리되었다. 신설된 센터는 ‘청소년 진로개발센터’로 진로교육지원을 목적으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미디어연구센터’는 2019년 4월에 개소되어 청소년 미디어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청소년 미디어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미디어 캠프 등 관련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1본부, 7실, 6센터로 조직을 유지하여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1본부 7실, 6센터로 개편되었다. 2021년에 신설된 센터는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와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다.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는 국제기구와 국외의 청소년 정책을 파악하고 해외의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관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는 대학 내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신설되었다.

[그림 10-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 현황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연구에 기반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으로써 융합적인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의 바른 성장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융합적 청소년정책연구 추진, 둘째, 청소년

정책연구 허브기관으로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강화와 고객체감 연구 성과 확산, 셋째, 조직의 윤리성·공공성 강화와 조직의 역량 극대화를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다. 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사업목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연구기획의 체계화 및 과학적 연구관리 체제 확립, 둘째, 고객중심 현장중심 연구체제 구축, 셋째, 연구 성과의 정책반영 및 사회적 확산 강화, 넷째, 청소년정책 관련 교류·협력체제 강화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도 연구과제는 ① 정관상의 기관설립 목적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한 과제, ③ 아동·청소년·가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제, ④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과제, ⑤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구성, ⑥ 원내 각 실별 고유기능 및 주요 연구 영역에의 부합성 등 6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은 크게 기관고유사업과 특수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기관 고유사업 중 기본연구사업은 5가지 연구목표와 방향을 토대로 추진된다. 첫째, 연구원의 정관상 설립목적 및 전문화된 특성, 둘째,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셋째, 국정과제 및 국가의제, 넷째, 연구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다섯째, 사회적·정책적 환경 및 시대적 요구 변화 관련 사항이다. 2021년 기본연구사업 과제로 총 9개의 연구과제가 수행 중이다. 수행 중인 기본연구사업은 ①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②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③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④ 아동·청소년의 놀이문화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⑤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⑥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⑦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⑧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⑨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사업은 일반사업, 협동연구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사업은 4개, 협동연구사업 5개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사업 과제는 ①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인권 실태, ②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제 구축 방안 연구 III,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이며, 협동연구사업은 ①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② 청년 사회 첫 출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③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I, ④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⑤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연구 IV: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청소년진로개발센터’를, 교육부 지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청소년연구센터’를 두어 국제의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교류를 기획 및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통계 아카이브센터’를 두어 NYPI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통계아카이브센터’는 「NYPI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를 구축하여 통합조사시스템의 구성을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대내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구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의 책임성 강화와 정책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 개소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사업 추진, 둘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분석·지표개발, 셋째, 청소년정책 포럼·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 추진, 넷째,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다섯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종합분석, 여섯째, 청소년백서 발간 지원 등이 있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및 대안학교의 대안교육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3월 교육부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학업중단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동년 8월 추가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함에 따라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사업으로는 크게 연구/프로그램 개발 사업, 교육청/학교지원 사업, 정책홍보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는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모듈개발(초등용), 미인가 대안학교 실태조사 연구,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며, 교육청/학교지원 사업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지원,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추진 지원, 원격연수 활성화,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UCC 공모전 등을 통해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교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5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설치되었다. 정책 추진전략은 크게 3가지로, 단위학교 국가수준 예방 프로그램 적용 확대 및 자율적 예방 활동 강화, 언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체제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진로개발센터’는 소외계층 학생 유형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에 개소되었다. 정책 추진방안은 크게 3가지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및 상담지원 자료 개발과 보급, 학생 진로탄력성 지원단 활동 지원 및 선도교원 양성, 캠프 및 포럼 등을 통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확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탄력성 심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학생 맞춤형 상담지원 진로카드 개발 및 보급, 진로탄력성 지원단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선도교원 컨설팅 활동 지원, 진로탄탄 TV(youtube채널) 운영,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는 국제기구와 국외의 최신 청소년 정책을 파악하여 해외의 관련 연구기관과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관장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월에 신설되었다. 해외의 청소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선진국을 포함하여 말라위, 감비아, 몽골, 과테말라, 아프가니스탄 등의 청소년 현안과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주축으로 10개국 18개 청소년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의 허브 조직으로서 회원기관과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는 2021년 4월에 신설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첫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다. 이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 조사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맞춤형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를 전문화하고, 전담기구 운영의 우수사례를 공모 및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역량 강화다. 이를 위하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를 체계화하고 내실화하며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자문 및 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있다.

2. 청소년 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문제가 대두되었지만, 1990년 초반까지는 청소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학문적 기반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대학에 청소년 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현재, 청소년 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포함)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56개교²⁾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위과정별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9개교로, 2년제 3개교, 3년제 5개교, 사이버대학 1개교가 운영 중이다. 다음으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29개교로 일반 4년제 대학교(21개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1개교), 4년제 사이버대학(7개교)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석사, 박사, 석·박 통합과정은 28개 대학교(대학원대학교 포함)의 36개 대학원에 존재한다. 이들 대학원 과정은 일반대학원(11개교)과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등을 포함하는 특수대학원(23개교), 전문대학원(1개교)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다³⁾.

1991년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최초로 개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기인하여 청소년 관련 학과의 수가 증가해왔으나,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대학구조조정 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청소년 관련 학회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회로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 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학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는 2004년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미래청소년학회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 창립되었다.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확대 방안 및 기존 시설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 시설물의 연계 활용 방법, 시설물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국제교류, 봉사활동, 국제심포지엄, 학술대회, 작품집 발간, 월례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시설

2) 2021년 12월 기준, 청소년 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과정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는 서울(17개교), 경기(6개교), 강원(1개교), 충남(8개교), 충북(2개교), 경북(4개교), 전남(3개교), 부산(3개교), 대구(2개교), 전북(3개교), 광주(2개교), 대전(2개교), 인천(1개교)에 소재하고 있음.

3)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명 및 학과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1에서 제시하고 있음.

환경'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 청소년복지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복지연구' 학술지를 발간하고, 비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는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 및 청소년활동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는 학술발표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학회지(한국청소년 활동연구)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학회는 2013년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청소년문제 예방 및 해결, 청소년 상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이다. 부설기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연구소'를 두어 현장상담사례 중심의 학술지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를 발간하고,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학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해 세미나, 학술대회 등도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대구한의대학교 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 (사)청소년교육 전략 21 등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다.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세계 각국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개발관련 기관 간의 협의회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연구개발기관 간 정보 및 학술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연구에 도움이 되고, 21세기 지구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의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청소년 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청년사회학연구회)은 이러한 취지의 세계협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97년 10월 7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6개국의 8개 기관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를 발족하였고, 2020년 현재까지 11개국 18개 기관

1개 국제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개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둘째,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 추진, 셋째, 청소년 관련 국제 학술회의 등 회원국 간의 상호교류와 연대를 통한 연구협력 강화, 넷째, 청소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이다.

협의회의 주요 실적은 크게 국제세미나 개최와 공동연구 수행으로 구분된다. 국제세미나는 1997년 협의회 발족 이후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다. 제1차 WARDY 국제학술회의는 1997년 10월 7일 ‘청소년폭력의 국제 비교’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WARDY 국제학술회의는 1999년 10월 11일 중국 북경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과 청소년 연구’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청소년 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사이버상의 청소년 보호와 역량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다문화주의’, ‘미래시민주로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 ‘청소년정치참여실태’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정책 이슈에 대한 공통의 내용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기관인 유로필로 조피와 함께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또한 협의회는 1997년 이후 매년 1~3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한 연구 주제로는 1997년 ‘청소년의식에 관한 한·중·일 국제비교연구’, 1999년 ‘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한·중·일을 중심으로’, 2000년 ‘새천년 청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한·미·일·프를 중심으로’, 2001년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연구’ 등이 있다. 최근 2010년대에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한·중·일·미)’,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4개국(한·중·미·일)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등이 수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한·중·일·미 청소년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비교’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NO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1	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6~7층	http://www.nypi.re.kr	82-44-415-2114



NO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2	중국	중국청년정치학원 (Chinese Youth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25 Xisanhuan Beilu, Haidian District,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100089	http://international. cyu.edu.cn/	86-10-88567233
3		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Shanghai Youth College of Management)	Hongkou District, 573 West Bay Road, Shanghai, China	http://www.shqgy. com.cn	86-21-56662668
4	일본	게이오대학 (Keio University)	6th Floor, Mita Toho Building 3-1-7 Mita, Minato-ku Tokyo 108-0073, Japan	http://www.coe-ccc. keio.ac.jp	81-3-5427-1045
5		일본청소년연구원 (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15, Kasumigaokacho. Shinjuku- ku, Tok 0160, Japan	www1.odn.ne.jp/ youth-study	81-3-3475-2535
6		아시아진로개발학회 (Asia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1-1, East 9, North 16, Higashi-ku, Sapporo, Hokkaido 065-8567, Japan	http://www.aracd. asia/	81-11-742-1965
7		슈레 대학교 (Shure University)	28-27, Wakamatsu-cho, Shinjuku-ku, Tokyo, Japan	http://shureuniv.org/	81-3-5155-9801
8	몽골	과학기술대학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T))	International Affairs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8th khoroo, Baga toiruu 34,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14191	http://www.must. edu.mn	976-11-329081
9	말레이 시아	사회과학연구원 (Institute Pengajian Sains Sosial(IPSAS))	43400 UPM Serd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http://www.ipsas. upm.edu.my/	60-3-8947-1865
10		말레이시아 푸트라 대학교 (Universiti Putra Malaysia)	Universiti Putra Malaysia 43400 UPM Serd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http://www.upm. edu.my/	60-3-8947-1865
11	호주	멜버른대학 청소년연구센터 (Youth Research Centre)	Youth Research Centre 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Victoria 3010	http://web.education. unimelb.edu.au/ycrc/	61-3-8344-9633
12		태즈메이니아대학교 청소년연구센터 (Center for Applied Youth Research)	PO Box 5011 UTAS LPO, Sandy Bay Tasmania 7005, Australia	http://cayr.info/	61-3-5294-0444

NO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13	핀란드	핀란드 청소년연구네트워크 (The Finnish Research Network)	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 Asemapäälikönkatu 1 (2nd and 3rd floors) FI-00520 Helsinki Finland	http://www.youthresearch.fi/	358-20-755-2662
14	미국	뉴욕아동환경연구그룹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365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6	https://cernyc.org/	212-817-1902
15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김영옥 센터 (UCR, The Young Oak Kim Center for Korean American Studies)	900 University Ave. 4031 CHASS INTN Riverside, CA92521	http://www.yokcenter.ucr.edu	951-827-5661
16		재외한인사회연구소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Community at Queens College)	Kissena Hall I, Room 333 Queens College 65-30 Kissena Blvd Flushing, New York 11367	http://www.qc.cuny.edu/Academics/Centers/RCKC/Pages/default.aspx	718-570-0300
17	베트남	청소년연구소 (Youth Research Institute)	No.5 Chua Lang st., Dong Da dist. Hanoi, Vietnam	http://www.yri.edu.vn/	0084-4-3-7754263
18	노르웨이	노르웨이 응용과학대학교 (Inland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land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Postboks 400 2418 Elverum Norway	https://eng.inn.no/	47-61-28-8286
19	프랑스	유로필로조피 (EuroPhilosophie)	Bureau de coordination EuroPhilosophie Université Toulouse II – Jean Jaurès 5 allée Antonio Machado 31058 Toulouse Cedex 9	https://europhilomem.hypotheses.org/	33-5-6150-4308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2021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2,344억 여원으로 일반회계 1,019억 여원, 청소년육성기금 1,338억 여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균특회계 (구. 광특회계)	청소년육성기금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1995	-	-	28,098	2,000	-	-	-	13,654	4,309	10,000	58,061
1996	-	-	37,896	3,000	-	-	-	18,984	6,300	10,000	76,180
1997	-	-	52,591	3,000	-	-	-	21,645	10,803	10,000	98,039
2000	-	-	25,954	1,000	4,111	-	-	26,525	10,814	12,350	80,754
2003	-	-	25,084	-	7,077	-	-	36,607	13,979	7,000	89,747
2004	-	-	23,149	-	8,817	-	-	30,248	41,610	6,000	109,824
2005	-	-	10,872	-	9,950	-	8,138	37,643	52,436	6,000	125,039
2006	-	-	-	-	-	19,825	321	45,442	67,727	4,500	137,815
2007	-	-	-	-	-	35,388	-	43,128	74,812	-	153,328
2008	-	116,433	-	-	-	-	-	39,251	75,182	-	230,866
2009	-	182,641	-	-	-	-	-	36,522	81,741 (증진기금 3,463 포함)	-	300,904

구분 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군특회계 (구, 광특회계)	청소년육성기금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2010	20,885	-	-	-	-	-	-	34,215	90,652	145,752	
2011	21,671	-	-	-	-	-	-	49,417	73,491	144,579	
2012	47,435	-	-	-	-	-	320	41,477	58,036	147,268	
2013	58,427	-	-	-	-	-	-	50,550	62,435	171,412	
2014	67,694	-	-	-	-	-	-	44,991	64,405	177,090	
2015	67,711	-	-	-	-	-	-	65,564	80,472	213,747	
2016	68,691	-	-	-	-	-	-	48,117	89,364	206,172	
2017	87,469	-	-	-	-	-	-	62,491	95,310	245,270	
2018	77,948	-	-	-	-	-	-	87,931	102,404	268,283	
2019	87,267	-	-	-	-	-	-	78,180	114,518	279,965	
2020 (추경)	102,585 (102,173)	-	-	-	-	-	-	-	130,327 (126,647)	232,912 (228,820)	
2021 (추경)	100,564 (101,876)	-	-	-	-	-	-	-	133,808 (133,808)	234,372 (235,684)	

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권익기반과(구 폭력예방교육과) 청소년 예산은 제외되었음.

- 2010년 : 4,603백만 원(일반회계 1,085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518백만 원).
- 2011년 : 5,687백만 원(일반회계 1,580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 원, 여성발전기금 181백만 원).
- 2012년 : 5,979백만 원(일반회계 2,053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 원).
- 2013년 : 8,623백만 원(일반회계 3,441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 원).
- 2013년 : 8,623백만 원(일반회계 3,441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 원).
- 2014년 : 11,664백만 원(일반회계 6,310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354백만 원).
- 2015년 : 13,97백만 원(일반회계 8,032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965백만 원).
- 2016년 : 13,785백만 원(일반회계 8,040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745백만 원).
- 2017년 : 12,292백만 원(일반회계 6,813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479백만 원).
- 2018년 : 12,359백만 원(일반회계 7,029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330백만 원).
- 2019년 : 12,894백만 원(일반회계 7,441백만 원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5,453백만 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 2020년(본예산) : 12,946백만 원(일반회계 7,378백만 원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5,568백만 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 2021년(본예산) : 12,632백만 원(일반회계 6,903백만 원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5,669백만 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일반예산은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 설치되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청소년 기본법」 제54조)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청소년 기본법」 제55조)는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밖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 수입 재원이었으나 현재는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주로 조성되고 있다. 그나마 2011년에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익금의 30%를 받던 것이 19.5%로 축소되었다.

2021년까지의 누계 조성규모는 16,635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 원, 국민 체육진흥 기금전입금 766억 원, 경륜·경정사업수익 법정출연금 4,560억 원, 복권기금전입금 8,390억 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570억 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15,766억 원, 기타 경비 등에 91억 원, 복권기금 반납금 189억 원을 합하여 총 16,046억여 원을 사용하였으며, 순 조성액 누계는 2021년 590억 원이다.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륜· 경정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 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복권 기금 반납금	계		
1989	-	5,000	-	-	206	5,206	132	-	-	132	5,074	5,074
1990	-	5,000	-	-	1,363	6,363	847	3	-	850	5,513	10,587
1991	-	5,010	-	-	2,299	7,309	1,031	9	-	1,040	6,269	16,856
1992	-	8,150	-	-	3,415	11,565	1,507	12	-	1,519	10,046	26,902
1993	10,000	5,000	-	-	3,965	18,965	1,613	6	-	1,619	17,346	44,248
1994	-	11,000	-	-	5,285	16,285	9,034	13	-	9,047	7,238	51,486
1995	10,000	10,000	-	-	7,749	27,749	4,484	15	-	4,499	23,250	74,736
1996	10,000	10,000	-	-	8,739	28,739	5,415	8	-	5,423	23,316	98,052
1997	5,000	10,000	111	-	11,598	26,709	8,209	6	-	8,215	18,494	116,546
1998	-	4,400	5,888	-	15,453	25,741	6,245	6	-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13,271	22,522	12,547	7	-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11,201	23,037	9,905	7	-	9,912	13,125	159,129
2001	-	-	32,320	-	13,160	45,480	7,284	84	-	7,368	38,112	197,241
2002	-	-	46,920	-	10,094	57,014	9,443	21	-	9,464	47,550	244,791
2003	-	-	70,805	-	14,725	85,530	14,363	31	-	14,394	71,136	315,927
2004	-	-	40,786	-	14,686	55,472	40,670	72	-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19,710	44,333	48,721	57	-	48,778	-4,445	326,212
2006	-	-	14,330	-	16,878	31,208	68,857	48	-	68,905	-37,697	288,515
2007	-	-	2,846	735	17,634	21,215	74,750	62	-	74,812	-53,597	234,918



구분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륜· 경정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 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복권 기금 반납금	계		
2008	-	-	17,489	255	8,141	25,885	75,138	45	-	75,183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11,085	27,617	61,060	262	22	61,344	-33,727	151,893
2010	-	-	19,312	2,964	5,947	28,223	69,473	113	213	69,799	-41,576	110,317
2011	-	-	20,266	4,318	2,841	27,425	70,247	3,286	306	73,839	-46,414	63,903
2012	-	-	22,235	34,417	1,955	58,607	58,650	3,207	30	61,887	-3,280	60,623
2013	-	-	16,933	43,403	2,074	62,410	68,238	49	622	68,909	-6,499	54,124
2014	-	-	12,744	46,694	4,707	64,145	70,096	1,088	1,408	72,592	-8,447	45,677
2015	-	-	9,655	76,412	1,744	87,722	85,568	38	1,118	86,724	998	46,675
2016	-	-	16,441	85,230	3,236	104,907	95,499	41	1,179	96,719	8,188	54,863
2017	-	-	17,285	91,235	3,897	112,417	101,548	320	3,527	105,395	7,022	61,885
2018	-	-	15,853	97,605	3,206	116,664	108,758	37	3,219	112,014	4,650	66,535
2019	-	-	8,511	107,598	3,631	119,740	119,390	40	1,211	120,641	-901	62,228
2020	-	-	6,900	119,418	5,511	131,829	131,751	36	2,308	134,095	-2,266	59,962
2021(결산)	-	-	-	127,857	8,919	136,776	163,718	42	3,699	167,459	-30,683	29,279
계	35,000	76,560	456,012	839,001	258,325	1,664,809	1,604,191	9,091	18,862	1,632,124	32,685	3,877,501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부록 1. 청소년 관련 학과(전공) 현황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부록 4.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부록 5.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부록 8. 청소년백서 용어집

부록 1 청소년 관련 학과(전공) 현황

(2021년 12월 기준)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Tel: 031-2803471
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청소년전공(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박사)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상담교육전공(석사)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249-9490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가족전공(학사)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3299-8657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6332
고구려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58280)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Tel: 061-330-7400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학사)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6 Tel: 02-6361-1862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석사)	(3255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Tel: 041-850-1361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Tel: 041-850-8159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석사)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Tel: 062-605-1125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전공(석사)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02-940-5411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학사)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Tel: 062-670-2057
군장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전문학사)	(5404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13 Tel: 063-450-8240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학전공(학사)	(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Tel: 041-570-7772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지도과(전문학사)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Tel: 053-320-1139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학사)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053-850-5000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보건·복지대학원 청소년가족상담학과(석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Tel: 053-819-1348
대원대학교	청소년지도상담과(전문학사)	(27135)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 Tel: 043-645-3143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학사)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34520)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Tel: 042-280-2452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학습컨설팅전공(석사)	(11159)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Tel: 031-539-2128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심리상담학과 (석·박사·석·박통합)	(38066)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Tel: 054-770-2508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학사)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Tel: 051-320-1908
동아보건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평생교육복지전공(전문학사)	(58439)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76-57 Tel: 061-470-1746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학사)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석사)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Tel: 051-890-2180
디지털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사회문화계열 평생교육·청소년학과(학사)	(036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7길 60 Tel: 02-2287-0253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학사) 사회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복지전공(석사)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박사)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02-300-0620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전문학사) 청소년교육복지학과(학사)	(036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Tel: 02-300-1207, 3961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학사) 상담대학원 청소년상담학전공(석사)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Tel: 041-550-2527, 2597-8
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치료학부 아동청소년상담학전공(학사)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Tel: 051-320-2782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2287-5120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학사)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매로49길 60 Tel: 02-944-5631~3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년학전공(학사)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Tel: 02-970-7931
서정대학교	상담아동청소년과(전문학사)	(11429) 경기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Tel: 031-860-5100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석·박통합)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525
성산호대학원대학교	HYO아동청소년교육학과(석·박사)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Tel: 032-433-1996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학부 청소년학과(학사)	(05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21 Tel: 02-2204-866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청소년상담전공(석·박·석·박통합) 일반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석·박·석·박통합)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청소년교육전공(석사)	(31538)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2 Tel: 041-530-1146
송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학사)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02-828-5501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교육전공(석사)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Tel: 031-467-0700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Tel: 063-270-2739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석사)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063-220-2693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석·박통합)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49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청소년상담교육학과(학사)	(32244)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Tel: 041-630-3114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5853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Tel: 061-450-1881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보건보육청소년과(전문학사)	(28150)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길 10 Tel: 043-210-8260
칼빈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상담학과(학사)	(169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4 Tel: 031-284-4752-5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사) 사회복지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석사)	(17869)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Tel: 031-659-8114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학사) 특수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석사)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Tel: 02-3668-4400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38695)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46-10 Tel: 1644-9775
한국체육대학교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학사)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석사)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Tel: 02-410-6753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Tel: 042-629-7226~7, 8098
한려대학교	사회복지청소년학과(학사)	(5776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94-13 Tel: 061-760-1117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과(학사)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Tel: 033-248-1740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석·박사)	(31962)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Tel: 041-660-1049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아동청소년상담전공(석사)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2611
한양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 청소년코칭상담학과(학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02-2290-0340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사)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사)	(3106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12 Tel: 041-560-8140, 8114

자료 : 대학알리미(202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2021년 12월 기준)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회원 수 (명)	청소년 회원 수 (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용권	이사장	1996-12-30	83,537	83,327	아동·청소년 육성, 복지, 자선사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	2009-03-03	6,214	5,97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청소년 교육, 자원봉사 활동, 국제교류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제청소년연합	박문택	회장	2001-05-31	106,267	105,665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시대 주도 청소년 양성
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정진해	이사장	1995-10-30	3,854	3,140	기독교정신에 의한 청소년상담 교육으로 인재양성
대건청소년회	이성효	이사장	1998-09-21	1,136	1,000	청소년활동을 통해 건전 사회기풍 조성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청소년육성
대한불교청년회	하재길	중앙회장	1920-06-20	9,311	8,389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대한안전연합	정현민	대표	2008-06-05	4,468	3,813	재해·재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RCY)	신희영	회장	1953-04-05	259,522	245,936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김순권	이사장	1929-12-01	9,627	9,004	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김영희	총재	1997-12-30	16,960	15,930	충·효·예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송귀영	회장	2000-07-24	6,018	5,956	청소년에게 불교이념을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
빅드림	강미소	대표	2011-09-02	5,487	5,350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
삼동청소년회	양재호	이사장	1989-01-18	8,270	7,508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정순택	이사장	1999-09-01	22,026	21,262	가톨릭정신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회원 수 (명)	청소년 회원 수 (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성산청소년호재단	최성규	이사장	1994-02-28	110,042	107,200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 지도육성 및 가치관 확립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차광선	총재	1948-06-21	41,157	40,457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
세계학교교육문화재단	이돈희	이사장	2009-02-13	3,880	3,580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단체활동
아름기청소년문화재단	안구현	이사장	1992-06-29	451	431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육성과 한민족의 주체성 전파
아이섹코리아	조은비	중앙위원장	1962-11-26	700	700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적 교류
어린이재단	지훈상	대표이사	1948-10-15	614,221	587,029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김일수	회장	1977-03-17	3,514	1,013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육영재단	조수연	이사장	1969-04-24	-	-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인터넷꿈희망터	김은호	이사장	2011-03-07	3,167	3,160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청소년과사람사랑	신명철	이사장	1994-12-22	5,560	5,161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교육전략21	김영성	이사장	2002-01-15	307	220	아동, 청소년과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자연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	1995-03-01	334	95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정성호 (지현)	회장	1996-09-30	47,216	46,396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이사장	1995-10-31	400,132	398,830	청소년 수련활동·선도·유해환경 정화, 복지증진
한국119소년단연맹	윤명오	총재	2013-03-21	17,203	16,442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육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
한국4-H본부	고문삼	회장	1954-11-09	30,809	20,042	4-H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한국YMCA전국연맹	안재웅	이사장	1903-04-03	12,123	9,327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 문화 창조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회원 수 (명)	청소년 회원 수 (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	1922-04-20	11,526	5,683	젊은 여성의 기독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김종희	총재	1946-05-10	109,558	94,969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잠재력 계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상기	총재	1989-03-11	58,042	55,042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화 선진과학입국 실현
한국라보	유시경	이사장	1973-12-31	3,932	3,512	각국 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장기윤	이사장	1997-07-15	161,192	39,232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간의 이해 증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김명전	이사장	1991-07-24	10,910	10,439	국토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전개 및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	1922-10-05	158,153	136,443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신용우	총재	1967-04-17	28,389	28,235	야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골프협회	김창연	회장	2005-12-24	1,988	1,877	청소년골프선수 선발 및 육성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미영	총재	2002-03-22	2,543	2,411	발명영재의 발굴지원을 통해 유능한 발명인 육성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최노사	회장	1991-05-04	22,079	21,809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박승주	총재	2011-04-19	18,155	15,507	국제사회에 기둥이 될 청소년세대를 육성하는데 기여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김동연	이사장	1999-8-16	4,774	4,753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화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강경순	총재	2003-10-06	10,548	10,000	해양스포츠 지도교육 능력 함양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한국청소년연맹	한기호	총재	1981-03-19	243,868	240,313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한국청소년육성회	박문서	총재	1970-11-11	3,879	3,151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 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한국청소년인권센터	강병연	이사장	1993-08-25	388	256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확립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장	2002-02-25	360	350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한국항공소년단	안현호	총재	2005-08-02	6,876	6,849	항공, 우주교육을 통한 도전, 개척정신 함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강무현	총재	1962-12-07	106,453	100,021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증진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회원 수 (명)	청소년 회원 수 (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박계홍	회장	1989-07-10	62,335	62,321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한국환경청소년단	양광선	총재	2001-05-09	5,909	5,149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착과 자연환경 계몽 감시운동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이원희	이사장	2011-04-21	358	200	소외계층·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및 청소년 활동을 지원
흥사단	박만규	이사장	1913-05-13	7,775	6,586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경기청소년단체협의회	곽진현	회장	2018-11-01	8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 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건전육성원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박춘현 (도제스님)	회장	2008-03-24	30개 지역청소년단체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김영민	회장	1996-03-01	22개 지역청소년단체**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유덕순	회장	2002-10-11	36개 지역청소년단체**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백명숙	회장	2001-09-26	36개 지역청소년단체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김진	회장	1998-03-05	17개 지역청소년단체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김말숙	회장	2002-06-07	16개 지역청소년단체**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1995-05-11	13개 지역청소년단체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윤현중	회장	1992-09-26	9개 지역청소년단체		

주 : 1) 청소년단체 현황은 2021년 12월 기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 해당 단체에 문의하여 파악하였음.

자료 :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21).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ncyok.or.kr).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2021년 11월 기준)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송파청소년센터	수련관	송파구청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서울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서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청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카톨릭청소년회
서울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마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송파구청장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서울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세상
서울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엔젤스헤이븐
서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서울중구청청소년센터	수련관	중구청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관악청소년회관	수련관	관악구청장	사)온터드레회
서울	구립강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장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서울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장	사)홀리비전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구립서초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청장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흥사단
서울	마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서울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구립용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산구청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시립성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서울시립광진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흥사단
서울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울	삼성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재)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도봉숲속마을	수련원	박형호	재)송석교육문화재단
서울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수련원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양천구청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서울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작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작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동구청장	서울YWCA
서울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대문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장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서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문화의집	노원구청장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등포구청장	재)청소년과사람사랑
서울	은평구청청소년문화의집신나는에프터센터	문화의집	은평구청장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서울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북구청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	용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산구청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갈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은평구청장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서울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구로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송파구립잠실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송파구청장	사)인터넷꿈희망터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재)대산문화재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학)연세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재)한국천주교살례시교회
서울	서울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특화시설	송파구청장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서울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특화시설	조광운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	서울올림픽파크텔	유스호텔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하이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텔	유스호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	사상구청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사상구청장	부산YMCA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재)내원청소년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금곡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해운대구청장	부산YMCA
부산	기장문화예절학교	수련원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청
부산	부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북구청장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부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산진구청장	재)부산YMCA
부산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사하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부산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부산진구청장	사)틴스토리
부산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영구청장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해운대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부산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대구	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달서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함께하는 마음 재단
대구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성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수련관	북구청장	재)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대구	달성군청소년센터	수련관	달성군수	재)달성복지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구광역시장	(재)대구가톨릭청년회
대구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수성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광역시장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대구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달성군수	재)달성복지재단
대구	대구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동구청	사)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청소년문화의집꿈지락발전소	문화의집	대구광역시청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	동구청소년문화의집아름드리	문화의집	대구광역시동구청장	사)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창작센터	특화시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구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특화시설	대구광역시	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	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유스호텔	곽성근	주)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대구	비슬산유스호텔	유스호텔	달성군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인천광역시청	인천시설공단
인천	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구청장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평구청장	재) 부평구문화재단
인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연수구청장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미추홀구청장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신철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성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그레이스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유승배, 박근원	서울도시가스(주)
인천	마니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마니산수련원	(주)마니산수련원
인천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남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동구청장	남동구청
인천	가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인천	연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연수구청장	연수구청
인천	서해청소년유스호텔	유스호텔	주)서해교육문화	주)서해교육문화 고재용
인천	강화로얄호텔	유스호텔	주)강화로얄호텔	주)강화로얄호텔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북구청장	사)한국청소년인권센터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구청장	사)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광주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산구청	(재)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구청장	학)호심학원
광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재)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광주광역시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광주	화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장	사)흥사단광주지부
광주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박금호	사)광천사랑숲
광주	광주광역시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	한국스카우트광주연맹
광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광주	광주광역시각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장	사)꿈과도전
광주	광주광역시용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	사)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
광주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문화의집	광산구청장	광산구청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살디자인센터	특화시설	광주광역시장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	대전대덕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대덕구청장	재)대전가톨릭청소년회
대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유성구청장	백석대학교
대전	대전청소년위캔(WeCan)센터	수련관	대전광역시장	대전YWCA
대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수련원	대전광역시장	사)대전청소년심신수련회
대전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대전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대전흥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대전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대전YWCA
대전	탄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대전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유성구청장	백석대학교
대전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월드유스비전 대전시지부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한국항공소년단
대전	도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은누리청소년문화재단
울산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주군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주군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청소년차오름센터	수련관	울산남구청장	사)울산흥사단
울산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순식	사)삼동청소년회
울산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구청장	울산YMCA
울산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구청장	사)마이코즈
울산	문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구청장	한국걸스카우트울산연맹
울산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구청장	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
울산	울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사)꿈빛소금
울산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북구청장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	성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울산YWCA
경기	토당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동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경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상록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왕시장	재)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리시장	재)구리시청소년재단
경기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시흥시장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경기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과천시장	과천시청
경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화성시장	재)화성시문화재단
경기	성남시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양주시장	남양주도시공사
경기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포천시장	포천시청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기	권선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이천시장	재)이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광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연천군수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고양시마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주시장	재)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	동두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두천시청	동두천시청
경기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청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단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산시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하남시장	사)한국청소년재단
경기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신필호	신필호
경기	미리내캠프	수련원	이광섭	(주)미리내
경기	여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홍영광	홍영광
경기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성식	김성식
경기	하내테마파크	수련원	전학열	전학열
경기	한울유스센터	수련원	임화순	임화순
경기	한터캠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용실	김용실
경기	양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양주시청	양주시청
경기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민용	효정국제문화재단
경기	새싹동산청려수련원	수련원	김종희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경기	엄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계두	너리굴문화마을
경기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기도지사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	서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경대학교	학)서경대학교
경기	아침햇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바로교육	(주)바로교육
경기	영산수련원	수련원	재)순복음선교회	(재)순복음선교회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경기	(주)축구마을	수련원	(주)축구마을	(주)축구마을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재)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서울YMCA	재)서울YMCA
경기	자연나라수련원	수련원	정신	농업회사법인(주)자연나라
경기	포천염광수련원	수련원	학)염광학원	학)염광학원
경기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여주시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	김포로그밸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형금	김형금
경기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수련원	서재욱	서재욱
경기	덕평수련원	수련원	덕평골프장	덕평수련원
경기	상천수련원	수련원	남상순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선교재단
경기	대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윤은도	사회복지법인 대순진리회복지재단
경기	삐띠프랑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홍섭	주)삐띠프랑스
경기	국제광림비전랜드	수련원	광림교회	광림교회
경기	해찬여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영섭	(주)해찬여울청소년수련원
경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경기	문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청소년문화원
경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문화의집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안양시만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양시석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평택시 팽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고양시성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청소년문화원
경기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영통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오름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이천부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해남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하남시장	사)인터넷꿈희망터
경기	사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장	재)부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경기	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안산YWCA
경기	양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주시장	양주시청
경기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YMCA
경기	금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영삼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경기	동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성시장	재)화성시여성가족재단
경기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사)오산예일
경기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가평군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시흥시구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여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주시장	여주시청
경기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양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유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고양시탄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양시호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오산시
경기	사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새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기	수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운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기독교청년회
경기	청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포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포천시장	포천시청 교육지원과
경기	누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성시장	재)화성시여성가족재단
경기	서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사)평택YFC
경기	안양시평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연천군수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원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사)흥사단평택안성지부
경기	철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시흥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성시	사)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
경기	천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흥선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기	고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정왕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왕시장	재)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	서삼릉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사)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경기	중앙(근지암)야영장	야영장	재)한국스카우트재단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가평힐링캠프	야영장	남상환	남상환
경기	안성시다목적야영장	야영장	안성시장	안성시청
경기	골목대장 잉클 팜	특화시설	장지성	㈜농업회사법인 골목대장잉클팜
경기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	수원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강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원주시장	원주YMCA
강원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해시장	사)푸른동해
강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수련관	철원군수	철원군청
강원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월군수	원주YMCA
강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천군수	춘천YMCA
강원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릉시장	강릉시
강원	고성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성군수	고성군
강원	춘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춘천시장	재)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강원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삼척시장	삼척시청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화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횡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횡성군수	횡성군청
강원	양양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양양군수	양양군청
강원	속초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속초시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태백시장	재)태백시복지재단
강원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정선군수	사)한국BBS중앙연맹
강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주)호림동산 평창점
강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수련원	강릉시장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강원	강원도치악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원도지사	사)한국청소년야외활동협회
강원	미리내 캠프	수련원	이지연	(주)미리내 캠프
강원	안전문화수련원	수련원	정기성	안전문화수련원
강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수련원	강원도지사	한국스카우트연맹
강원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수련원	철원군수	철원군수
강원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원	간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황민혜	황민혜
강원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원도청	재)춘천가톨릭청소년회
강원	평창힐링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리드패밀리	(주)리드패밀리
강원	치악산환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성주	(주)피노키오
강원	강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원윤희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강원	거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고성군
강원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춘천시장	춘천동부디아코니아
강원	도계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속초시아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속초시장	속초YMCA
강원	북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수	인제군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장	원주YMCA
강원	기린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수	인제군청
강원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강릉시장	강릉시청
강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장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강원	현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고성군
강원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연맹
강원	동해시향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해시장	사)푸른동해
강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원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사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임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정선군청	사)한국BBS중앙연맹
강원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월군수	사)아름다운청소년들
강원	진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창군수	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창군수	평창군청
강원	근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회성군수	횡성군청
강원	철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태백시장	재)태백시복지재단
강원	상장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태백시장	재)태백시복지재단
강원	화천청소년야영장	야영장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한국안전체험관	특화시설	태백시장	태백시청
강원	동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주)동서울레스피아	(주)동서울레스피아
강원	신안종합유스호텔	유스호텔	신안종합리조트(주)	신안종합리조트(주)
강원	휘닉스빌유스호텔	유스호텔	휘닉스중앙 주식회사	휘닉스중앙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청주시장	학)주성학원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북	증평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증평군수	재)증평복지재단
충북	진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천군수	진천군청
충북	영동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동군	영동군청
충북	나인밸리포레스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박주희	박주희, 최지수
충북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수련원	박명숙	월악민속놀이학교
충북	청소년수련마을보람원	수련원	서윤덕	(재)오운문화재단
충북	속리산유스타운	수련원	주)계룡산업	주)계룡산업
충북	박달재수련원	수련원	이종진	재)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괴산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괴산군수	대한청소년총효단
충북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수련원	충청북도지사	학)주성학원
충북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수련원	오웅진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충북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충주시장	재)단촌법인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송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묘진	(주)송호연수원
충북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천군수	진천군
충북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창환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충북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제천시장	사)아름다운대한민국
충북	로하스아카데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상부	주)로하스아카데미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청주시장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충북	음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음성군수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충북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천시장	(재)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괴산군수	괴산군수
충북	단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수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매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청	매포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은군수	한국BBS충북연맹 보은군지회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북	금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회
충북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음성군청
충북	황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동군	영동군청
충북	덕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진천군수	진천군
충북	장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천시장	제천시청
충북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청주시장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충북	태동유스호텔	유스호텔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충남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성군수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보령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보령시장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충남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태안군수	태안군
충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아산시장	학)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충남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천안시장	호서대학교
충남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예산군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천안시장	학)백석대학교
충남	서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산시장	재)서산시복지재단
충남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천군수	사)서천청소년문화마당 봄
충남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논산시장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충남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반재홍	사)한국인성문화원
충남	청양송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충남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여군수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충남	만리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오인근	주)만리포수련원
충남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군포시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충남	서해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차군규	재)서해안청소년수련원
충남	청포대썬셋수련원	수련원	함승우	(주)케이와이엠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남	대전오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경석	대전오성청소년수련원
충남	삼정부여유스타운	수련원	박명길	(주)삼정관광호텔
충남	한양여자대학교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종량	한양여자대학교
충남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황춘광	재)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충남	아산늘푸름수련원	수련원	재)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대한청소년총효단
충남	케이티엔지상상마당논산	수련원	주)케이티엔지	컴퍼니에스에스(주)
충남	제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경수, 김미숙	제천청소년수련원(주)
충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충남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시장	당진시청
충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령시장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
충남	당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시장	당진시청
충남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산시장	재)서산시복지재단
충남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서천군수	재)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
충남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공주시장	사)한국B.B.S 대전·충남연맹 공주시지회
충남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홍성군수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문화의집	예산군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금산청소년미래센터	문화의집	금산군수	금산군청
충남	청양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청양군	청양군청
충남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문화의집	공주시장	사)한국BBS 대전충남 공주시지회
충남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아산시장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충남	공주유스호텔	유스호텔	서경원	공주유스호텔
충남	해기든유스호텔	유스호텔	오백근	주)해기든유스호텔
충남	부여군유스호텔	유스호텔	부여군수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전북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익산시장	사)새벽이슬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북	슬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전주시장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안군수	진안YMCA
전북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정읍시장	정읍YMCA
전북	무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무주군수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군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산시장	사)군산기독교청년회(군산YMCA)
전북	김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원시청	삼동청소년회
전북	고창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창군수	고창군청
전북	청정테마힐링센터	수련원	이강동	이강동
전북	진실되게하는 지리산유스캠프	수련원	이종범	주)진실되게하는 지리산유스캠프
전북	무주수련원	수련원	이장호	이장호
전북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실군수	임실군청
전북	대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장흥기	장흥기
전북	상생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사)상생복지회	사)상생복지회
전북	부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모악산유스타운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지승	최지승
전북	무주덕유산유스타운	수련원	이종혁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산시장	사)군산기독교청년회(군산YMCA)
전북	덕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흥사단
전북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익산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재)한기장복지재단
전북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아모스청소년회
전북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원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북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무주군수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주군수	사)봉상청소년육영회
전북	부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만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한국스카우트송광훈련장	야영장	홍오남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전북	진안군마이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진안군수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진안지회
전북	부안군청림청소년수련시설	특화시설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익산유스호텔	유스호텔	익산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전북 JK유스호텔	유스호텔	조희천	전주기전대학 학교기업 JK여행사
전남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나주시장	광주YMCA
전남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암군수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광양시장	광양기독교청년회(광양YMCA)
전남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장성군수	사)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전남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여수시	사)여수기독교청년회
전남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장흥군수	사)한들청소년센터
전남	무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무안군수	무안군청
전남	완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사)삼동청소년회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진도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도군수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목포시장	목포YMCA
전남	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순천시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전라남도지사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호성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전남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보성군수	(사)흥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남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곡성군수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성군수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흥군수	고흥군청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양시장	광양YMCA
전남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담양군수	담양군청
전남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목포시장	목포YMCA
전남	완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도군수	사)꿈틀
전남	삼호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암군수	사)청우인재육성회
전남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함평군수	재)광주가톨릭청소년회
전남	황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해남군	사)청소년공용왕국
전남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목포시	목포YMCA
전남	여수시여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수시	사)여수기독교청년회(여수YMCA)
전남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곡성군청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수시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여수지구회
경북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문경시장	한국청소년경북연맹
경북	영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천시장	영천시
경북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상주시장	상주시
경북	칠곡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칠곡군수	칠곡군
경북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경주시장	경주시청
경북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미시장	구미대학교
경북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진군수	울진군청
경북	안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동시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봉화군청소년센터	수련관	봉화군수	봉화군청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포항시장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북	보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보문청소년수련원	(주)보문청소년수련원
경북	국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주환	(주)국민관광농원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북도지사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	포항시구룡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포항시장	(재)포항시청소년재단
경북	오케이그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노장환
경북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영양군수	영양군청
경북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영주시장	사)한국B.B.S 경북지회
경북	안동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안동시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화랑마을	수련원	경주시장	경주시청
경북	경산시계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산시장	학)대구한의대학교
경북	군위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군위군청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경북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상주시장	상주시
경북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천시장	김천시청
경북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문경시장	문경시청
경북	영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천시장	영천시청
경북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장채기	(재)고운청소년재단
경북	칠곡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칠곡군수	칠곡군청
경북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주군수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경북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령군	고령군청
경북	산내유스호텔	유스호텔	경주시장	사)청소년서라벌문화원
경북	문경새재유스호텔	유스호텔	문경시장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	Remember유스호텔	유스호텔	김성기	김성기
경북	성보촌유스호텔	유스호텔	주)성보문화재단	주)성보문화재단
경남	김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해시장	김해시복지재단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남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주시장	진주시청
경남	창원시늘푸른전당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창녕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녕군수	(재)푸른섬터장학회
경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양산시청소년회관	수련관	양산시장	양산시장
경남	진해청소년전당	수련관	창원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원시장	사)봉림
경남	함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함안군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진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원시장	재)반석청소년재단
경남	거창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창군청	거창군수
경남	밀양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밀양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하동군수	하동군
경남	남해유스타운	수련원	조문권	남해유스타운
경남	김해수련장	수련원	김은진	김은진
경남	거제그린유스타운	수련원	임만규	임만규
경남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윤희	김윤희
경남	지리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조임순	조임순
경남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보곤	김보곤
경남	해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박해운	해운개발(주)
경남	황석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철상	박미화
경남	통영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통영시장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남도지사	한국스카우트경남연맹
경남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거창군	거창흥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남	남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대섭	한려개발
경남	덕유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철훈	덕유산청소년수련원
경남	홍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학교법인)문화교육원	사)경남청소년교육개발원
경남	부일수련원	수련원	윤영화	윤영화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하동군수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경남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흥석	서흥석
경남	가배강리조트수련원	수련원	주)거제해양복합리조트	주)거제해양복합리조트
경남	알펜라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엔데버주식회사	엔데버주식회사
경남	사랑도천문대수련원	수련원	김학	주)사랑도천문대
경남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원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산시청	양산시장
경남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수	고성군청
경남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창군수	거창군수
경남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원시장	마산YMCA
경남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밀양시장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사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사천시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남	남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의령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령군수	경남홍의청소년육성회
경남	통영동원유스호텔	유스호텔	장정규	주)남양종합개발
제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흥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제주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식회사 부영주택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YWCA
제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강정마을회	강정마을회
제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제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예래마을회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제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자면사무소
제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청
제주	하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하효마을회
제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청소년과미래
제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YMCA
제주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주)아트오브리빙	(주)아트오브리빙
세종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수련관	세종특별자치시	사)삼동청소년회
세종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장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세종특별자치시지부
세종시	새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세종시장	세종YMCA
세종시	고운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주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은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21).

부록 4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2022년 기준)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 (인사동 YMCA 별관)	02-722-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 (인사동 YMCA 별관)	02-722-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권)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1길 39(성내동) B1층	02-6239-2014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1길 39(성내동) B1층	02-6239-2014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일시쉼터(용산일시)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 156-1(서계로)	02-718-1318
서울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 (수유3동)	02-6435-7979
서울	서울시립강남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신관 5층	02-2051-1371
서울	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9길 6-20(갈현동)	02-382-1388
서울	강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초록마을로10길 5, 201호	02-2697-7377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로 376, 대경빌딩 3층	02-876-7942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신관 1층	02-3281-8200
서울	서울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02-493-1388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가길 54, 301호	02-3281-7942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16 (독산동)	02-6959-1011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길 37-6 (불광동 동산출타운)	02-6959-2401
서울	어울림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76, 예루뜨빌 303호	02-302-9006
부산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1층 112호	051-303-9677
부산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1층 122호	051-303-9670
부산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 211호	051-303-9672
부산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255번길 58 (구. 부산광역시 민락동165-7)	051-756-0924
부산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39번길 109, 2층	051-581-1388
대구	대구광역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다운)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34길 16, 3층 302호	053-754-1388
대구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길 5, 흥사단회관 2층(범어동)	053-764-1388
대구	달서구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0안길 11	053-526-1318
대구	대구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4층	053-659-6290
대구	대구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8길 14(3층)	053-426-2275
대구	대구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06(성당동 4층)	053-426-2276
인천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꿈꾸는별)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6	032-817-1318
인천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한울타리)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59번길 10	032-516-1318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우리들)	청소년쉼터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60번길 4	032-442-1388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바다의별)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125번길 5	032-438-131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하늘목장)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45-2, 201호	032-528-2216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하모니)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01 대영빌딩 5층	032-468-1318
인천	인천시청소년증장기쉼터(남자, 별마루)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40번길 85, 401호 (대창스페이스빌라 가동)	032-875-7718
인천	인천시증장기청소년쉼터(여자, 예꿈)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57번길 34-15 원빌리지 301호	032-465-1393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46번길 1, 2/3층	062-527-1318
광주	광주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87, 3층	062-227-1388
광주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43, 5층	062-525-1318
광주	광주광역시남자증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24번길 5-1 풍암빌402~404호	062-714-1388
광주	광주광역시여자증장기청소년쉼터 (맥지쉼터)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4, 5층	062-366-131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이동일시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서대로1466번길 53	042-221-1092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59, 503호 지앤지 빌딩	042-673-1092
대전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88번길 9 보육정보센터 5층	042-223-7179
대전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88번길 9 보육정보센터 4층	042-256-7942
대전	대전시남자증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42번길 현진빌라 402호	042-528-7179
대전	대전광역시증장기청소년쉼터(여자)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51번길 18-54 상희빌 402호/403호	042-534-0179
울산	울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중구 먹자거리 31(성남동) 2층	052-245-1388
울산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1길 28(화봉동)	052-261-138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울산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돈길로27번길 14(신정동)	052-269-1388
울산	울산울주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북2길 18-1	052-223-5186
울산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15번길 6, 드림타운	052-265-1388
경기	김포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76	031-980-1604
경기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95, 5층(기능동)	031-871-1318
경기	성남시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80, 2층	031-758-1388
경기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54번길 9(삼곡동)	032-654-1318
경기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안양동)	031-464-1388
경기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248번길 39 다남빌딩 203호	031-591-1319
경기	고양남자단기청소년쉼터 동지	청소년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61번길 77	031-969-0091
경기	성남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세일로 12 우남이타워프라자 8층	031-722-6260
경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청소년달보동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 (세류동, 리치타워 3층)	031-216-4313
경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꿈다락)	청소년쉼터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73번길 4-2	031-314-9072
경기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징검다리)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 501, 502호(제일프라자)	031-481-8232
경기	안양남자단기청소년쉼터(FORYOU)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46 (관양동, 코오롱동산타워) 상가동 401호	031-455-9182
경기	용인남자단기청소년쉼터(푸른꿈)	청소년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9번길 7 (풍덕천동 667-3)	031-276-0770
경기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56, 유평빌딩 5층	031-829-131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경기	구리여자단기청소년쉼터(보급자리)	청소년쉼터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2-1	031-564-7707
경기	부천모듬이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763번길 16-23(역곡동)	032-343-1880
경기	성남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9 력키참조은 201, 202호	031-758-1213
경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7, 3층 (송산빌딩)	031-216-8677
경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5층	031-434-1318
경기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8길 17 (월피동)	031-486-0079
경기	화성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봉로 478, 대호프라자 303호	031-227-7935
경기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곁동 366(2층)	031-374-1388
경기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청소년비전센터 3, 4층	031-837-1318
경기	이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나르샤)	청소년쉼터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227번길 28, 대호 2차@ 111호	031-631-7305
경기	평택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4길 26(비전동825-15)	031-652-1384
경기	구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민들레)	청소년쉼터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1, 3~4층(수택동)	031-568-1318
경기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	청소년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031-399-7997
경기	성남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51번길 25 (성남동)	031-752-9050
경기	하남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08(덕풍동)	031-791-1337
경기	고양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충로26번길 37-9	031-918-1366
경기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106번길 4, 요림빌딩 3층	031-758-1720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경기	안양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호숙)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6, 5층 (호계동, 봉성빌딩)	031-468-5141
경기	용인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푸른꿈)	청소년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89번길 4-11 (풍덕천동 738-9)	031-264-7733
강원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1층	033-255-1005
강원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3층	033-256-0924
강원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쉼터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2718번길 17 (101호-102호)	033-742-0924
강원	강원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4층	033-255-1002
강원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 28-2, 2층(금학동)	033-655-1424
강원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원주시 라옹정길3-21, 1층	033-761-7591
강원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2층	033-255-1004
강원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166	033-244-5118
강원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033-256-7179
충북	청주시청소년일시이동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21 (서운동)	043-225-1888
충북	청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31-9 (수곡동)	043-231-2676
충북	친구청소년쉼터(남자)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3길 27 (용산동)	043-911-3479
충북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4가길 3	043-643-7946
충북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느티나무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94번길 60-4 (가경동)	043-231-2676
충북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울로 166(3층)	043-266-2204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충북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109	043-852-0924
충남	아산시남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2층	041-578-1388
충남	천안남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29 성심빌딩 4층	041-548-1326
충남	홍성남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다기능복지센터 3층	041-634-6564
충남	논산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원양로1348번길 97	041-735-1075
충남	아산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896-36	041-534-1388
충남	천안여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4길 77	041-576-1316
충남	홍성여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다기능복지센터 4층	041-631-6560
충남	공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5-1(금성동)	041-853-1337
충남	공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버드나무1길 64(옥룡동)	041-853-4486
전북	익산일시청소년센터(디딤돌)	청소년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8길 31(영등동), 3층	063-857-1091
전북	전주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범안1길 26-8, 402호	063-251-3530
전북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 5-6	063-903-1091
전북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30-22	063-244-1774
전북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안길 6-6(2층)	063-451-1091
전남	목포남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52번길 19-1, 3~4층	061-278-1388
전남	여수시남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전라남도 여주시 대교로 51, 2층	061-644-091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전남	여수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2, 3층	061-661-0924
전남	목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남도 목포시 상리로15번길 19	061-287-1388
경북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34길 31(형곡동)	054-455-1234
경북	구미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10길 13-3	054-444-1388
경북	경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168(성건동)	054-748-1388
경북	포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번길 43-1	054-284-1388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70 (안막동)	054-857-6137
경북	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100번길 64, 2층	054-244-1318
경남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남.여)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 11 (3층)	055-285-7361
경남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하라)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37번길 6-4	055-237-1318
경남	김해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77, 5층	055-332-1318
경남	경상남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마야)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읍로55번길 14-3	055-274-0924
경남	경상남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클라라의 집)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142번길 3	055-745-1316
제주	제주버프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벌랑길 47(삼양삼동)	064-723-017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324-3	064-796-0922
제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 서귀포시 신동로 35	064-739-9805
제주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 제주시 만덕로3길 2, 3층(건입동)	064-751-138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제주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량길 47(삼양삼동)	064-759-1388
제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2(동홍동)	064-733-1376
서울	관악돌꽃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1층(신림동)	02-851-1924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길 93(방학동) 대원리츠빌 102동 203호	02-6959-5012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303-9671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대구광역시 남구 자유6길 45-1 1층	053-657-1924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67번길 40	032-875-1319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행복자리	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40-17, B동 301호(간석동, 가람주택)	032-467-1398
경기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청소년비전센터 1층	031-928-1316
경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	031-360-1824
경기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21-13	031-723-7942
충남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3층	041-578-1380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022).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5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2022년 기준)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54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길 23, 7층	02-2285-1318
서울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6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12-19, 2층	02-2091-1388
서울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067)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2층	02-2646-8341
서울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2층	02-844-0924
서울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슬기동 2층	02-834-1355
서울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수서동 749), 2층	02-2226-8555
서울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54)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17, 청소년수련관 3층	02-490-0222
서울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012)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강북청소년수련관 3층	02-6715-6661
서울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	02-6956-4508
서울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7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24-15	02-2299-1388
서울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6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30길 54(시흥동) 금천청소년수련관 2층	02-803-1873
서울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6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휴먼센터 3~4층	02-3141-1318
서울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은평청소년수련관	02-384-1318
서울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길 11, 2층 (방배동, 구립방배유스센터 내)	02-525-912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송파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58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4길 4 송파청소년센터(구. 송파청소년수련관) 3층	02-407-7179
서울	마포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4009)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02-6376-9900
서울	광진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507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공공유희센터 3층	02-2205-2300
서울	강서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771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8길 14-5	02-2649-1318
서울	관악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879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신설빙글교육센터 빙글동 4층	02-871-7942
서울	동대문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신설동북지지원센터 2층	02-2236-1318
서울	용산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4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 1가) 꿈나무종합타운 4층	02-3273-5829
서울	구로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836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15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02-867-1318
서울	강동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5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2층	02-6252-1388
서울	종로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30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가길 13	02-762-1318
서울	성북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028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	02-3292-1780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 6층(전포동)	051-804-5001
부산	영도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49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21 함지골청소년수련관 1층	051-405-5224
부산	부산진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051-868-0950
부산	금정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4626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 2층	051-581-2072
부산	북구청소녀상담복지센터	(465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3(구포1동 610-1)	051-334-3000
부산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해운대청소년수련관 4층	051-715-138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부산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30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3층	051-759-8411
부산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4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61	051-207-7179
부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49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5층	051-621-4831
부산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06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051-792-4932
부산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7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6호	051-555-1388
부산	부산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206)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 125, 1층	051-714-0701
부산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927)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2, 사상아동보건센터 3층	051-327-0808
부산	부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723)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로 9, 비전센터 3층	051-632-1388
부산	부산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954)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39-2, 3층	051-245-1388
부산	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5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거제동원타워상가 503호	051-506-1388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대구청소년지원재단 3층	053-659-6272
대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726)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7길 39(월성동)	053-638-1388
대구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동, 범어도서관 5층)	053-666-4201
대구	대구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155)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2층	053-984-1318
대구	대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77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053-216-8310
대구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439) 대구광역시 북구칠곡중앙대로 561 읍내동행정복지센터 3층	053-324-1388
대구	대구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98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053-614-138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대구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으로 541, 8층	053-423-1388
대구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41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9길 25, 2층	053-624-1388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인천교구 가톨릭청소년센터 1층	032-721-2300
인천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9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83 연수3동 주민센터 4층	032-819-7308
인천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0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37 계양구청소년수련관 4층	032-547-0856
인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4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3층	032-777-1389
인천	인천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1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82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	032-728-6840
인천	인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2 가좌청소년센터 2층	032-584-1388
인천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3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번길 1	032-509-8910
인천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평생학습관 2층	032-471-1388
인천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 3층	032-773-1318
인천	중구영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379)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2층	032-747-1318
인천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03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30-1, 2층	032-932-1388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5, 4층	062-232-2000
광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132)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북구청소년수련관 1층(문흥동 1009-1)	062-268-1388
광주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2층	062-951-1380
광주	광주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727)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93	070-4044-7081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광주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048)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국민생활관 2층, 213~215호(풍암동염주체육관 내)	062-375-1388
광주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6, 광주YMCA 3층	062-229-330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6층	042-257-2000
대전	대전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334)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72, 3층	042-527-3112
대전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40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유성대로 158 유성구청소년수련관 3층	042-862-7942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05, 상가동 2층 (성남동, 롯데캐슬스카이)	052-227-2000
울산	울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01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13(서부동) 남목청소년문화의집 4층	052-209-3435
울산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22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복음빌딩 4층	052-283-1390
울산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106, 마이코즈건물 3층	052-227-2011
울산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500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5, JS빌딩 3층	052-229-9630
울산	울주군중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9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20 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3층, 중부거점상담실	052-229-965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08, 2층	044-867-2000
경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행정동우회관 1층	031-248-1318
경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43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7, 4층	031-756-1388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청소년수련관 3층	031-872-1388
경기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안양로263번길 31	031-8045-2745
경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5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301호	032-325-3002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241)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 34, 노들동 1동 1층	02-809-2000
경기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903)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16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4층	031-654-1388
경기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362)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5 청소년수련관 3층	031-865-0785
경기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	031-482-3181
경기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5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031-970-4003
경기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922)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 구리시청소년수련관 3층	031-557-2000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90-8098
경기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13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3(오산동 2층)	031-372-4004
경기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914)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별관 1층	031-318-7100
경기	시흥시정왕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049)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금광빌딩 3층	031-318-7101
경기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919) 경기도 하남시 조청대로 111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790-6681
경기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823)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슬기관 2층 (산본동, 수리산상마을)	031-390-1468
경기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077) 경기도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3층	031-458-5037
경기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청소년수련관 4층	031-324-9300
경기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894)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6	031-540-5300
경기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371)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031-634-2777
경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591) 경기도 안성시 낙원길 108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 2층 (낙원동)	031-676-1318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099)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76, 중봉청소년수련관 2층	031-980-1681
경기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469)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행복플러스 어린이집 2층	031-8082-4326
경기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623)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88, 3층	031-882-8889
경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732)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2층(병점동)	031-267-8771
경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779)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청소년수련관 3층	031-762-2219
경기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026)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2층	031-839-2000
경기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45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39,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1층	031-582-2000
경기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556) 경기도 양평군 양근로 183, 삼진빌딩 2층	031-770-2715
경기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 59-56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2층	031-538-2219
경기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28) 경기도 과천시 참마음로 9 과천시청소년수련관 1층	02-502-1318
경기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희망당대센터 3층	031-212-1318
강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4	033-256-2000
강원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033-646-8666
강원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47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이음관 2층	033-734-1388
강원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4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79번길 26	033-450-5622
강원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033-375-1328
강원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86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77	033-633-0741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강원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033-591-1311
강원	동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735) 강원도 동해시 부곡1길 6	033-532-3070
강원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044)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663(문곡동)	033-582-1387
강원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1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2길 31 청소년수련관 2층	033-432-1386
강원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40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19번길 45	033-818-1389
강원	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236)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청소년수련관 1층	033-340-2078
강원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919)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0-1, 3층	070-4469-7735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문화동 69-1)	043-220-6826
충북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24	043-856-7804
충북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54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0, 청하빌딩 5층	043-223-0755
충북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152)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264, 비둘기상가A동 2층	043-642-7939
충북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8 단양군청소년수련관 2층	043-420-3142
충북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4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 (청주시청소년수련관 3층)	043-297-8802
충북	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14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8, 청소년수련관 2층	043-740-3968
충북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70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6 음성청소년문화의집 1층	043-873-1320
충북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04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수련관 1층	043-731-1388
충북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37-10, 4층 (청소년수련관)	043-536-3430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충북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035)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 괴산경찰서 앞	043-834-7944
충북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2	043-835-4189
충북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93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043-542-1388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4층 (두정동, 진압빌딩)	041-554-2000
충남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546)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7	041-858-1318
충남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726)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1559 다락원 만남의 집 3층	041-751-1383
충남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논산시청소년수련관 1층	041-730-6041
충남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2-26	041-360-6963
충남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36-3893
충남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14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일로 43	041-837-1898
충남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967)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136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3층(동문동)	041-669-2000
충남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3, 2층	041-953-9799
충남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303호	041-541-0039
충남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4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 예산군청소년수련관 2층	041-335-5700
충남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33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07-50 청양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42-1388
충남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청소년수련관 1층	041-674-2800
충남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2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14	041-632-4859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충남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829)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13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042-841-0343
충남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도시창조두드림센터 4층	041-523-1318
전북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9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063-274-1388
전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0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3층	063-227-1005
전북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121) 전라북도 군산시 동리2길 7	063-468-2870
전북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620)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5층	063-853-1388
전북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청소년문화체육관 3층	063-536-1388
전북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74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	063-633-1977
전북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378) 전라북도 김제시 오촌길 45 지평선어울림센터 2층	063-545-0112
전북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43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54-14 청소년수련관 3층	063-430-8073
전북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34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완주군청소년수련관 2층	063-291-3303
전북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5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2층	063-324-6688
전북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631)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1 장수군여성청소년문화센터 1층	063-351-2000
전북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927)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50 임실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063-640-3028
전북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04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순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063-652-1388
전북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43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11 커뮤니티센터 1층	063-563-6793
전북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2층	063-580-451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여진누리길 30 전남여성가족재단 4층	061-280-9005
전남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254)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34, 2층	061-333-1368
전남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14, 복지동 2층 (옥암동, 목련아파트)	061-272-2546
전남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761) 전라남도 여주시 신월로 648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 1층	061-662-4646
전남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2층)	061-537-1318
전남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32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37-23 2층	061-863-1317
전남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927)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진도여성플라자 2층	061-540-3156
전남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992) 전라남도 순천시 명말1길 57, 3층	061-749-4232
전남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11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2층	061-555-1318
전남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7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795-7008
전남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04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0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353-9188
전남	화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11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061-375-7444
전남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418)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로 1511, 2층	061-470-1004
전남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53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93 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830-6652
전남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45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7	061-853-1381
전남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226)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청림길1, 청소년수련관 3층	061-432-1387
전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344)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 3층	061-381-9845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전남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7-83	061-450-5508
전남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22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별관	061-393-1388
전남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504)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5길 11-5 옥과문화의집 5층	061-363-9586
전남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156)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36-33 군립도서관 3층	061-323-9995
전남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63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로 508 청소년문화의 집 2층	061-782-0882
전남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82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동 4층	061-240-8703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옥야동, 398-22번)	054-850-1000
경북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62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75, 2층	053-815-4105
경북	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088)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31	054-760-7740
경북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3	054-639-5865
경북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844)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92, 체육시설사업소 2층	054-338-2000
경북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청소년수련관	054-240-9140
경북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570) 경상북도 김천시 다삼로 3	054-431-2009
경북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2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 13	054-472-2000
경북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949)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후관 문경시드림스타트 3층	054-550-6600
경북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195) 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219-11번지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054-534-3511
경북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길 2 고우이청소년수련관 2층	054-783-8284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북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433)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복지타운길77 청소년수련관 2층 상담센터	054-870-6696
경북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33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054-830-6947
경북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88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3층	054-971-0419
경북	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333)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 청소년수련관 3층	054-373-1611
경북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054-650-8237
경북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03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청소년문화의집 3층	054-931-1397
경북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번지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층	054-841-7933
경북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봉화군청소년센터 2층)	054-673-1231
경북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4층	054-956-1384
경북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427)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	054-730-7371
경북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58, 군위국민체육센터 3층	070-4922-8001
경북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540)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영양군청소년수련관 2층	054-683-1387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3층, 4층	055-711-1388
경남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 3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225-3901
경남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별관 2층	055-225-7299
경남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686)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6번길 9, 1층(인사동)	055-749-6222
경남	창원시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62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호	055-225-6812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남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01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187 통영체육청소년센터 3층	055-644-2000
경남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4길 23 청소년수련관 3층	055-832-7942
경남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9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	055-330-4635
경남	김해서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01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210 김해서부문화센터 2층	055-340-7181
경남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2층	055-352-7942
경남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246)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 집 2층	055-639-4981
경남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62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3길 36, 양산시청소년회관 2층	055-372-2000
경남	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청소년문화의집 2층	055-570-4971
경남	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0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583-0924
경남	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5층	055-533-4288
경남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93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055-670-2951
경남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4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860-3885
경남	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3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하동군청소년수련관 3층	055-880-6039
경남	산청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22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응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91
경남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03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055-583-0924
경남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055-940-8860
경남	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3층	055-930-3911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2층	064-759-9950
제주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3층	064-763-9190
제주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0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39, 3층	064-725-3799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022).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2021년 11월 기준)

시도명	센터 명칭	센터 주소	
서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02-849-0404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구월동 경인일보사), 3층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61477)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13-3번지 흥사단회관 2층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층	042-488-0924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466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052-227-0606~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30026)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84, 2층	044-864-7935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031-232-9383~5
강원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6428)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033-731-3704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033-641-3990
충북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충북도청 제3별관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4층 (두정동 진암빌딩)	041-554-2000
전북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49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사이언스 2층	063-232-0479

시도명	센터 명칭	센터 주소	
전남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30 전남여성가족재단 4층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 3층	055-711-13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이도2동)	064-751-5041~3

자료 :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2021).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4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7층	02-2285-1318
서울	용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4층	02-706-1318
서울	광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07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3층	02-2205-2300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신설동복지지원센터 2층, 3층	02-2237-1318
서울	중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254)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17, 3층	02-490-0222
서울	성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84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다길 8-2	02-3292-1785
서울	강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012)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강북청소년수련관 3층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715-6665
서울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956-4505
서울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6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12-19, 3층	02-930-1388
서울	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1층	02-384-1318
서울	서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6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3층, 4층	02-3141-1388
서울	마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016)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376-9900
서울	강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6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2길 23-19 강서청소년회관 3층	02-3662-1388
서울	구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36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15, 2층	02-863-1318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금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6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30길 54, 2층	02-803-1873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3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2층	02-2637-1318
서울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층	02-834-1358
서울	관악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79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싱글빙글교육센터 빙글동 4층	02-877-9400
서울	서초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길 11, 2층	02-525-9128
서울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 2층 상담복지센터	02-2226-8555
서울	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8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4길 7, 2층	02-3402-1318
서울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9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5길 19, 2층	02-2250-0543
서울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252-1388
서울	성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7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24-15	02-2296-1318
서울	양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067)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3길 53, 2층	02-2645-1318
서울	종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06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90, 4층	02-742-138
부산	부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 6층 꿈드림 사무실	051-304-1318
부산	영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21, 1층	051-405-5224
부산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2층	051-868-0905
부산	동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7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6호	051-555-1389
부산	부산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245)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47, 2층	051-253-2525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	부산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49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5층	051-621-4831
부산	부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5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3	051-334-3003
부산	부산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954)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39-2, 3층	051-245-1388
부산	해운대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0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해운대청소년수련관 4층	051-715-1377
부산	사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320)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 59, 대티까지어울림센터 3층	051-207-7142
부산	금정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26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	051-714-2079
부산	부산 강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7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31	051-972-4595
부산	연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5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동원타워상가 23동 503호	051-506-1385
부산	수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30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21번길 77, 청소년문화의집 3층	051-759-8422
부산	사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93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29	051-316-2214
부산	기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06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051-792-4927
부산	부산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723)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로 9, 3층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632-1388
대구	대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761)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1길 10, 4층	053-431-1388
대구	대구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41, 8층	053-422-2121
대구	대구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155)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2층	053-963-9400
대구	대구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77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053-216-8310
대구	대구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45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 대구YWCA 3층	053-652-5656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	대구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516)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 북구청소년회관 2층 207호	053-384-6985
대구	수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5층	053-666-4207
대구	달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676)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053-638-1378
대구	달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98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053-614-1389
인천	인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1층	032-721-2320
인천	인천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	032-765-1009
인천	인천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54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3층	032-777-1383
인천	인천 미추홀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1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82, 2층	032-728-6845
인천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9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429, 4층	032-822-9840
인천	남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2층	032-471-1318
인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3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37번길 1, 3층	032-509-8919
인천	계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0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37, 4층	032-547-0853
인천	인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2 가좌청소년문화의집 2층	032-584-1387
광주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024)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7, 2층	062-376-1324
광주	광주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50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4, 1층	061-673-1318
광주	광주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048)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국민생활관 2층 213-215호	062-710-1388
광주	광주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727)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93, 1층	062-716-1324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광주	광주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132)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1층	062-268-1318
광주	광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101동 2층	062-951-1378
대전	대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청소년위캔센터 6층 꿈드림	042-222-1388
대전	대전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5334)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72, 3층	042-527-1388
대전	유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16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98-1, 2층	042-826-1388
울산	울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105 롯데캐슬 스키야 2층	052-227-2000
울산	울산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106, 3층	052-291-1388
울산	울산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01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13, 4층	052-232-5900
울산	울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22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4층	052-281-0924
울산	울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50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5, 4층	052-229-9635
세종	세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08 세종조치원금융센터 2층	044-868-1318
경기	경기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이의동, 광고비즈니스센터) 105호	031-253-1519
경기	수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 B1층	031-236-1317
경기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43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7, 금담빌딩 4층	031-729-9171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5층	031-828-9570
경기	안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031-8045-5012
경기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72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5층	032-327-2322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241)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4 노들마을 1호동 3층	02-6677-1318
경기	평택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903)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16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층	070-4159-5482
경기	동두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362)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5 동두천청소년수련관 3층	031-865-2000
경기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	031-414-1318
경기	고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5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70-4032
경기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828) 경기도 과천시 참마음로 9, 1층	02-502-1318
경기	구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934)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2-1, 1층	031-565-1388
경기	남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90-3951
경기	오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13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3, 2층	031-372-4004
경기	시흥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914)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 (대야동, 청소년수련관)	031-318-7100
경기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823)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군포책마을 슬기관 2층	031-399-1366
경기	의왕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01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031-347-1334
경기	하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919)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11,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790-6314
경기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2, 2층	031-328-9848
경기	파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915)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5, 금릉역사 2층	031-540-5340
경기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371)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3층	031-634-2777
경기	안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56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28	031-647-6151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	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099) 경기도 김포시 길포로 76, 2층	031-980-1691
경기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299)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 2층	031-278-0179
경기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779)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광주시청소년수련관 4층	031-762-1318
경기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492)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05 양주시청소년문화의집 2층	031-8082-4121
경기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 59-56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38-3398
경기	여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623)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88, 3층	031-886-0542
경기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45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39, 1층	031-582-2000
경기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515)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복길 59-7, 청소년문화공간	031-775-1317
강원	강원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4, 1층	033-257-9805
강원	원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47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이음관 3층 꿈드림센터	033-813-1318
강원	강릉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경기장길 72-21, 2층	033-646-7942
강원	동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735) 강원도 동해시 부곡1길 6, 2층	033-535-1038
강원	속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86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363번길 14, 1층	033-635-0924
강원	홍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1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2길 31	033-432-1386
강원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033-375-1328
강원	정선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033-591-1311
강원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03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79번길 26	033-450-5388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	춘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046)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지길70, 2층	033-818-1318
강원	삼척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919)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0-1, 3층	033-575-5002
강원	태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044)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663	033-582-1389
충북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50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3층	043-257-0105
충북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54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0, 7층(청하빌딩)	043-223-0753
충북	청주시 서청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4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	043-264-8807
충북	충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24	043-842-2007
충북	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152)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64, 2층	043-642-7950
충북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93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043-542-1388
충북	옥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04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수련관 1층	043-731-1388
충북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14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2층	043-744-5700
충북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2 증평군청소년수련관 2층	043-835-4193
충북	진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4층	043-536-3430
충북	괴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	043-834-7945
충북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70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22, 2층	043-872-9024
충북	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8 청소년수련관 2층	043-421-8370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1, 3층(대연빌딩)	041-554-1380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2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1길 45	041-415-1318
충남	공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546)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7	041-854-7942
충남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원길 9, 3층	041-935-1388
충남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31, 동성빌딩 6층	041-544-1388
충남	서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967)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36 청소년수련관 3층	041-669-9056
충남	논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청소년수련관 1층, 논산시청소년지원센터	041-730-6051
충남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829)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13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042-551-1318
충남	당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2-26	041-357-2000
충남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726)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1559 다락원 만남의 집 3층	041-751-1383
충남	서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3, 2층	041-953-4040
충남	청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33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1 청양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40-4810
충남	홍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2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14	041-642-1388
충남	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4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2층	041-335-1388
충남	태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태안군청소년수련관 내 1층	041-674-2800
충남	부여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14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041-837-1898
전북	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9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063-274-1388
전북	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0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3층	063-227-1005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북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121) 전라북도 군산시 동리2길 7, 청소년지원센터	063-468-2870
전북	익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621)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5층	063-853-1388
전북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2층	063-537-5003
전북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74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	063-633-1977
전북	김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368)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224-32	070-4190-8246
전북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34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063-291-3303
전북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5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2층	063-324-6688
전북	순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04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3층	063-652-1388
전남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726)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길 22, 3층	061-242-7474
전남	목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14, 목련아파트 북지동 1층	061-284-0924
전남	여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761) 전라남도 여수시 신흥로 648, 1층	070-4165-0087
전남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956)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안길 9, 2층	061-749-4235
전남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254)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34, 2층	061-335-1388
전남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7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795-7953
전남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344)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 3층	061-381-0924
전남	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504)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5길 11-5	061-363-9586
전남	보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45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7	061-853-1377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남	강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226)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청렴길 1, 3층	061-432-1388
전남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 2층	061-535-1315
전남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향로 347-83	061-450-5527
전남	함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156) 전라남도 함평군 곤재로 36-33, 3층	061-323-9995
전남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04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19, 1층	061-353-6188
전남	장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22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청소년수련관 별관 노란원형건물 1층	061-393-1387
전남	신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동 4층	061-240-8702
전남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114) 전라남도 화순군 광덕로 231	061-375-7443
전남	장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32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	061-863-1318
전남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418)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1층	061-470-6791
전남	구례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63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2층	061-782-0882
전남	진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92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061-540-3156
전남	완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11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061-555-2323
전남	고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53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93, 2층	061-830-6056
경북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054-850-1003
경북	포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054-240-9140
경북	경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088)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31	054-760-7744-5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북	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570) 경상북도 김천시 다삼로 3	054-431-2009
경북	안동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층	054-841-7937
경북	구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2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13	054-472-2000
경북	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3 영주청소년문화의집 2층	054-639-5865
경북	영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844)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92 체육시설사업소 2층	054-338-2000
경북	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195) 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291-11, 2층	054-534-3513
경북	문경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949)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0, 3층	054-556-6600
경북	경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62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75 경산문화원 2층	053-815-4105
경북	칠곡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88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3층	054-971-0425
경북	고령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문화누리 3층	054-956-1320
경북	봉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2층	054-674-1318
경북	울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나라향길 2 고우이청소년수련관 2층 상담실	054-789-5436
경남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1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4층	055-711-1336
경남	창원시 창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055-225-3907
경남	창원시 마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별관 2층	055-225-7292
경남	창원시 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62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101번길, 203호	055-225-3893
경남	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686)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6번길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층	055-749-7939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	통영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017)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해안로 187, 3층	055-641-0079
경남	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4길 23 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복지센터 사무실	055-832-7942
경남	김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9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	055-324-9190
경남	밀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청소년수련관 2층	055-352-0924
경남	거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246)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집 2층	055-639-4980
경남	양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520)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009-2, 지하 1층	055-367-1318
경남	의령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2층	055-570-4972
경남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0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055-583-0921
경남	고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93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3층	055-670-2921
경남	남해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4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864-7962
경남	하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3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청소년수련관 2층	055-884-3001
경남	산청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22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북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91
경남	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03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2층	055-960-4972
경남	거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청소년수련관 3층	055-940-3969
경남	합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3층	055-930-3909
경남	창녕군 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양산1로 46, 창녕군청소년수련관 5층	055-532-2000
제주	제주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2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52(2층)	064-759-9982
제주	서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2층	064-763-7191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부록 8

청소년백서 용어집

● 가족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와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가 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로 인하여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6학년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되는 캠프이다. 가족치유캠프에서는 가족 간 소통·친밀감 향상과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지도를 위한 상담지원(집단상담, 가족/부모교육, 심리검사), 활동지원(체험활동, 대안활동), 생활지원(멘토링, 숙식 제공), 사후관리지원(사후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경제활동인구(經濟活動人口,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학생, 주부, 환자 등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인구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教育福祉于先支援事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대상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에서 사업 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 체험, 심리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학교 및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실업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의미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國民基礎生活保障受給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 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건 불이행시 생계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국제금장총회(International Gold Event : IGE)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과 교육학자들이 고안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을 통해 금장을 포상 받은 청소년 중 20~3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으로 매 3년마다 개최되며 한국이 주최한 2014년에는 40개국에서 100명의 금장 포상 청소년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석해 자신의 포상활동 경험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만 14~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및 탐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1956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143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강조하는 평가로 평가 주기는 3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 기소유예제도(起訴猶豫制度)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수단·

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다.

●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공간’으로, 학교 밖에서 학업을 희망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를 원하는 등,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꿈’과 ‘드림(Dream)’의 합성어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

●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는 ‘청소년의 내일(미래 또는 내일일)을 이룬다’는 의미로 학교밖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청소년학부모, 가족청소년 등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이다.

●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反)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학교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 드림스타트(Dream Start)

드림스타트의 시초는 학대, 방임 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6년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이다.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사업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레드존(Red Zone)

윤락가나 유흥가,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범죄비행탈선 위험이 있는 유해환경에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레드존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

통화 동맹, 노동조건 통일외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명목임금(名目賃金, Nominal Wage)

현행 구매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으로, 명목임금은 생활용품 구입량이 물가변동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즉, 가격이 오르면 생활용품의 구입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구입량이 증가하므로 이것으로는 생활 실태 변화의 파악이 어렵다.

● 명예경찰소년단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서에서 호신술을 배우는 명예경찰 무도학교, 경찰관서 치안시스템 견학, 지역경찰관과 합동순찰 등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학교폭력예방활동, 교통질서·기초질서 캠페인,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 활동을 말한다.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상 ‘보호대상아동’을 의미한다.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사랑의교실

폭력, 절도 등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경찰조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이다. 보호자와 청소년이 사랑의 교실 입교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경찰관서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전문선도기관에 의뢰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산학협동(産學協同)

학계와 산업계가 교육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산업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자매결연·협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서로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을 산업체에 파견하여 현장실습 경험을 얻게 하거나 학계와 산업계 인사가 상호 교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 자원인사들의 교육 참여 등 각종 인적·물적 교류 관계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밋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등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무차별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 어린이 의견 존중 원칙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동법 제3조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행정·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아동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웃리치(Outreach)**

일반적으로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에게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 이유로 인해 복지 기관이나 상담소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구제지원활동을 말한다. 한 예로, 노숙인 지원 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에서도 직접 거리로 나가 노숙인이나 청소년을 만나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 **우범소년(虞犯少年)**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다.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인을 보호교도 개선시키기 위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보호처분)을 과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예로 되어 있다. 한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矯正)을 위하여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에 비준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 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해의 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가지로 구성되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를 의미한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인프라구축, 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인터넷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11박 12일의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캠프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과 단절된 환경에서 상담지원, 활동지원, 생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프 종료 후에도 청소년동반자, 멘토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사후모임을 실시하여 참여 청소년 치유 효과가 지속되도록 돕는다.

● 조사망률(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1년간의 사망수를 그 해의 인구로 나눈 것으로 보통 1,000배하여 인구 1,000대로 표시한다. 연령, 계층, 성별, 사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나타난 사망률을 말한다.

※ 조사망률(%) = (특정 1년간의 총 사망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 조이혼율(%)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혼인율(粗婚姻率, crude marriage rate)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 조혼인율(%) = (특정 1년간의 총 혼인 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 ADHD)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이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 하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청소년육성·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자문,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대한 자문,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심의기구, 자문기구 등의 성격을 갖는다.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신고제 지원 등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 CYS-Net,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에 빠진 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아동 복지이용시설로서,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靑少年, Youth)**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靑少年基本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4477호, 1991. 12. 31., 제정).

● **청소년 보호법(靑少年 保護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5297호, 1997. 3. 7., 제정).

●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해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따른다. 동법 제7조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다.

● **청소년 유해약물**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및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물을 말한다.

●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 **청소년동반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핵심인력으로 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피해 등 심화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되, 청소년의 시간에 맞추어 저녁, 휴일 등에 탄력적으로 근무한다. 반면 시간제 동반자는 주 12시간 근무하며 이들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근거로 움직이나 실제적인 사무실은 '청소년이 있는 현장'이다.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매체물(인터넷, 음반, 게임물, 영상물 등) 모니터링 사업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주요 업무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의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靑少年福祉 支援法)**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7164호, 2004. 2. 9., 제정).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상담1388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정기간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상담선생님과 상담이 진행되며,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상담사

국가 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대학의 학생 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 대상 병원, 일반 청소년 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 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 중심의 성교육장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기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및 운영할 의무가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는 기관들도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게 되고, 범죄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활동 운영을 막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 기능을 하며 자기 계발 및 진로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제공한다.

● 청소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법적 근거로 한다.

● 청소년어울림마당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상설 공간)을 의미한다.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 육성을 위해 놀이 마당식 체험 공간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제61조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민간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 및 고발과 청소년유해매체를 모니터링 및 유해 환경 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하고자 한다.

●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기금의 주요조성 재원은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었으나 2020년 현재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한 달로, 해마다 5월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6조). 행사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및 직장별로 각각 실정에 따라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 내용은 ①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②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③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④ 대중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⑤ 그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이다.

● 청소년자기지도전포상제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중 저연령인 만 9~13세(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모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기 개발, 신체단련, 봉사 및 탐험활동 4가지 활동영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여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립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유관부처 간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청소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촉하는 민간 청소년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2018년 12월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청소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이 된다. 2017년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중교통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가능하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 친화적 정책의 구현이 가능하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재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청소년복지시설이다. 2012년 12월에 거주형 치유기관인 '국립중앙 청소년다임센터'가 처음으로 개원하였으며, 입교대상자는 ADHD, 우울증, 불안장애, 품행장애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만 9~18세 청소년이고,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青少年活動振興法)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7163호, 2004. 2. 9., 제정).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12700호, 2014. 5. 28., 제정).

●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등을 담당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강의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담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선도 및 보호하며 학부모, 교사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는 것이다.

● 학교폭력(學校暴力)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

● 학령인구(學齡人口)

학령인구는 교육인구 규모를 가능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 인구, 즉 6~11세는 초등학교 해당 인구이고, 12~17세는 중등학교, 18~21세는 고등교육인구에 해당한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내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인 민간협의체로 약칭 '청협(靑協)'이라 한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유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및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책 상담복지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과 관련된 정책의 연구,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이 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특히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연령별출산율의 합으로 계산된다.

● Wee센터

Wee는 We(우리들)와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 지원 서비스망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2021 청소년백서 편집위원 및 집필진 명단

기획·편집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재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유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임혜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집필진(부처별)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인정숙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공 석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은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김영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장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여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한수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연구원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주무관

김은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주무관

조수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주무관

강지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주무관

조혜령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서기관

문성혁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유다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주무관

박대선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

전보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사

차병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연구사

권동주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주무관

임경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2부 대리

김다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2부 대리

홍예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부원

2021 청소년백서

발행인 | 정영애
발행처 | 여성가족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기 획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 화 | 02-2100-6000
인 쇄 |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발행일 | 2022. 3.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
